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9-01

---

##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5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5)

---

2012. 9.



- 목 차 -

1. 영조실록 <2> 기사자료집 : 영조 17년 1월 ~ 영조 42년 6월 ..... 1



# 1. 영 조 실 록 <2> 기 사 자 료 집



## 영조실록 <2> 기사자료집 : 영조 17년 1월 ~ 영조 42년 6월

출처	내용	원문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1월 12일 (무인) 2번째기사 관동의 재해를 근심하 여 신포 및 진상 바치 는 것을 정지하라 하 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고 특별히 관동(關東)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및 재해를 입은 고을의 기보포(騎保布)를 가을까지 기한하여 바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관동을 근심하여 어사 홍상한(洪象漢)을 소견(召見)하고 하문하니, 홍상한이 말하기를, “굶주린 백성들이 쪼을 캐다가 먹고 있으며, 식량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대동미(大同米) 및 신포(身布)의 봉납(捧納)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유독 개성 유수 김약로(金若魯)만이 생령(生靈)이 소중하고 대동미는 대수롭지 않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들에게 이롭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김약로의 말이 옳다.” 하고, 이어서 신포 및 진상(進上)은 모두 바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고, 대동미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上引見大臣備堂，特命關東方物、物膳及災邑騎保布，限秋停捧。上以關東爲憂，召見御史洪象漢問之，象漢曰：“飢民採葛而食，絕粒已久也。”仍請大同及身布，竝令停捧。大臣、諸臣，皆以爲不可，獨開城留守金若魯言：“生靈爲重而大同爲輕。”上曰：“苟利於民，予何所惜？若魯言是。”仍命身布及進上，竝停捧，大同則不許。</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1월 12일 (무인) 5번째기사</p>	<p>간원(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교리 윤득경(尹得敬)이 의관(醫官)을 추고하게 한 비망기(備忘記)의 내용이 중도에 지나친 것을 도로 거두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의관 김응삼(金應三)이 임금의 옥체가 불편한 것은 거동에 연유하였다고 말하니,</p>	<p>諫院申前啓，不允。校理尹得敬請還收醫官推考備忘之辭旨過中者，上從之。先是醫官金應三言，上候之不平，由於行幸，上下嚴教曰：“辛丑以後，</p>

<p>의관을 추고하게 한 비망기가 지나친 점이 있다고 윤득경이 아뢰니 도로 거두라 하다</p>	<p>임금이 엄중히 하교하기를,  “신축년9629) 이후로 이 마음이 두려워하여 그대로 괴로워하는 증세를 이룬 것이다. 조정이 화합했다면 내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나에게는 편당(偏黨)을 제거하려는 고심(苦心)이 있으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두 퍼진 후에야 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수명(壽命)도 혹시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나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조정의 신하들에게 시달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이어서 의관을 추고하도록 명하였었다. 그래서 윤득경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p>	<p>此心危懼，仍成煩惱之症。朝廷和則予豈至此？予有祛黨苦心，志願畢展，然後病可勿藥，壽或可延。”又教曰：“予氣之不便，困於廷臣而然。”仍命醫官推考。故得敬之言如此。</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월 26일 (임진) 3번째기사  평안도의 유학 최성의 등이 야인의 피해가 없으니 본도 강변의 4군을 설치하자고 상소하다</p>	<p>평안도의 유학(幼學) 최성의(崔省義)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본도 강변의 4군(郡)을 없애어 강계부(江界府)에 소속시킨 것이 너비와 둘레가 7백여 리가 되는데, 지세가 험준하여 지키기 쉽고 토양이 비옥하여 경작할 만합니다. 지난날에 없었던 것은 단지 야인(野人)이 침입하여 뺏박한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야인의 피해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땅은 그대로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1천 리에 가까운 땅이 쓸대밭이 되어 있으니,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숙묘조(肅廟朝)에 일찍이 다시 설치하려는 계책을 의논하고, 지나간 해에 어사 이성효(李性孝) 또한 다시 설치하도록 계청(啓請)한 것은 진실로 변강(邊疆)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길을 열어주려는 뜻이었는데, 도신이 간혹 범월(犯越)하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관부(官府)로 하여금 서로 바라보면서 과수할 곳을 설치하게 한다면, 범월은 조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연(閔延)의 동쪽과 갑산(甲山)의 북쪽에 허항령(虛項嶺)이 있는데, 수천리의 산에 두루 산삼(山蔘)이 생산되니, 만약 4군을 이 허항령과 근접한 곳에다 설치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삼(蔘)을 캐어 공물(貢物)에 충당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충실하고 변성해질 것입니다.</p>	<p>平安道幼學崔省義等上疏，略曰：  本道江邊四郡之廢屬江界府者，幅員爲七百餘里，地險易守，壤沃可耕。而前日之廢，只緣野人侵逼，而今野人之害已去。地猶荒棄，近千里爲蓬蒿之場，豈不惜哉？肅廟朝嘗議復設之策，頃年御史李性孝亦啓請復設者，誠得重邊疆開民利之意，而道臣或慮犯越之患。然誠使官府相望，把守加設，則犯越非所可憂。而閔延之東、甲山之北有虛項嶺，數千里遍山產蔘，若設四郡近接此嶺，使民採蔘充貢，則人民充盛。舊日城郭之規，模尙完，官隸之子孫猶存，可一朝而成官府也。  批曰：“所陳當問大臣而處之。”上以</p>



	<p>지난날의 성곽 규모가 아직도 완전하고, 관례(官隸)의 자손들도 그대로 살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관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p> <p>“진달한 바는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p> <p>하고, 임금이 그 소장을 가지고 대신에게 물으니,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p> <p>“4군(郡)을 다시 설치하는 의논은 중고(中古)에 명신(名臣) 가운데 말하는 이가 많았지만 지역이 피국(彼國)과 경계가 맞닿아 있으니 경솔하게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p> <p>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p> <p>“7백 리의 비옥한 들판이 공연히 버려져 있어 아깝게 여길 만하기 때문에 고상신 남구만(南九萬)이 일찍이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의논했었는데, 고상신 유상운(柳尙運)은 이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의 뜻은 남구만과 같습니다마는, 시의(時議)가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오래된 일을 다시 창설하기는 어렵다.”</p> <p>하자, 마침내 정지되었다.</p>	<p>其疏， 問于大臣， 左議政宋寅明曰：“四郡復設之議， 中古名臣多言之， 而地接彼境， 難以輕許也。” 右議政趙顯命曰：“七百里沃野， 空棄可惜， 故相臣南九萬， 曾有復設之議， 而故相臣柳尙運難之。 臣意與九萬同， 然時議難之矣。” 上曰：“久遠之事， 難以更創。” 遂寢之。</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월 26일 (임진) 7번째기사 무지개의 변고로 인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전교를 내리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마침내 자신을 책망하는 전교를 내리기를,</p> <p>“소자(小子)의 부덕(否德)으로 외람되게 어려운 시기에 &lt;왕위를&gt; 계승하여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고, 덕(德)은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고, 은혜는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명령은 조정의 신하들에게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오히려 두렵게 여겨야 하는데 더구나 겸해서 둔 것이겠는가? 아! 당습(黨習)을 외면(外面)으로 관찰하면 엉기어 모인 듯하지만, 거둬 이면(裏面)을 구명해 보면 옛날 그대로 얼음과 솟 같으니, 이것은 내가</p>	<p>上引見大臣、備堂， 遂下責躬之教曰：“以小子之否德， 叨承艱(否) [若] 之時， 誠不能以格天， 德不足以御國， 惠不及於元元， 令不行於廷臣。 有一於此， 其尙瞿然， 況兼有者乎? 吁嗟! 黨習以外面觀， 似乎凝聚， 申究裏面， 依舊氷炭， 此予不能身教之過也。 古語云， ‘不見其形， 願察其影。’ 昔於丙</p>

	<p>몸소 가르치지 못한 과실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그 형체를 보지 못하면 그 그림자를 살펴보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전 병자년(9639)에 무지개가 해를 꿰뚫은 변고를 그려서 궁중(宮中)에 두셨으니, 선왕께서 경계를 전하신 뜻이 매우 절실하였다. 그런데도 지금 단지 7세의 원량(元良)(9640)이 있는데, 문관·무관이 편당을 짓는 것은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인가? 나의 고심이 거의 하늘에 이르렀다.”</p> <p>하고, 마침내 10일 동안 감선(減膳)하도록 명하였다.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p> <p>“인애(仁愛)하신 저 하늘을 정성이 아니면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빠뜨린 것과 조정 신하들의 과실을 경 등은 모두 말하라.”</p> <p>하니, 여러 대신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면직(免職)되기를 원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p> <p>“신 등이 무지개의 변고를 가지고 차자(筴子)를 진달하려고 하였지만, 아마도 형식에 가까운 듯하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붕당(朋黨)을 깨뜨리려고 하신다면 이쪽 저쪽과 귀(貴)하고 천(賤)함을 논하지 말고 전하께서 점차로 주장(主張)하심이 마땅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묻기를,</p> <p>“주장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p> <p>하자, 송인명이 말하기를,</p> <p>“주장이란 바로 특지(特旨)로 제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한결같이 전관에게 맡긴다면 간혹 사사로운 뜻을 따를 것이니, 어찌 엄준(嚴峻)한 의논이 되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어떻게 내가 번번이 제수할 수 있겠는가? 총재(冢宰)(9641)에게 위임하는</p>	<p>子, 以虹貫之變, 畫置宮中, 先王垂戒之意深切。而今只有七歲元良, 文武偏黨, 抑獨何心? 予之苦心, 庶格蒼蒼。” 遂命減膳十日。復謂諸臣曰: “仁愛彼蒼, 非誠何以格乎? 予之闕遺, 暨廷臣之過失, 卿等可盡言之。” 諸大臣皆引咎乞免。左議政宋寅明曰: “臣等以虹變欲陳筴, 而恐近文具, 亦不爲之也。” 又曰: “欲破朋黨, 則無論彼此貴賤, 殿下宜稍主張也。” 上問曰: “主張者何謂也?” 寅明曰: “主張者, 卽特旨除授之謂也。若一任銓官, 則或循私意, 豈不爲峻論乎?” 上曰: “何可每每除授? 莫如委任冢宰也。” 其後, 吏曹判書趙尙綱, 因寅明所奏上疏, 略曰: “大臣論銓曹之私意用人, 至請自上主張除授, 罔非罪臣之言也。” 仍辭職, 批不許。</p>
--	---	--

	<p>것만 못하다.”          하였다. 그 뒤에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綱)이 송인명이 아뢰는 것으로 인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대신이 전조에서 사사로운 뜻으로 사람을 임용한다고 논하면서 심지어 성상께서 주장하여 임명하도록 청하였으니, 신을 죄주라는 말이 아님이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사직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2월 11일          (병오) 1번째기사          영희전에 나아가 작헌례를 의식대로 행하다</p>	<p>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의식을 마치고 전에 올라가 봉심(奉審)하고, 또 전조(殿竈) 및 제정(祭井)을 직접 살펴보고 준여(餽餘)를 근시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내려 주고 저녁에 궁궐로 돌아왔다.</p>	<p>丙午/上詣永禧殿，行酌獻禮如儀。禮畢，登殿奉審，又親審殿竈及祭井，以餽餘賜近侍諸臣，夕還宮。</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2월 27일          (임술) 2번째기사          승지 조명리를 불러 황단의 초헌 악장을 삼헌에 그대로 쓸 것인지 묻다</p>	<p>임금이 승지 조명리(趙明履)를 불러 하문하기를,          “황단(皇壇)의 초헌 악장(初獻樂章)을 삼헌(三獻)에 그대로 쓰는가?”          하니, 조명리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는 모두 곡배(曲拜)9653 하는데, 유독 황단(皇壇)에서는 북쪽을 향하여 직배(直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의당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묘에는 속악(俗樂)을 쓰는데, 황단에는 아악(雅樂)을 쓰니 이것도 알 수 없다.”          하자, 조명리가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황단의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성(九成)9654) 과 신관(神祿)9655) 하는 예(禮)는 모두 갖추어졌다. 모든</p>	<p>上召承旨趙明履問曰：“皇壇初獻樂章，仍用於三獻乎？”明履曰：“然矣。”上曰：“太廟、社稷，皆曲拜，獨於皇壇，北向直拜者何也？此宜考於《大明集禮》也。且太廟用俗樂，皇壇用雅樂，亦未可曉也。”明履曰：“此乃隨壇禮而然矣。”上曰：“九成、神祿之禮，皆具焉。凡事當一遵廟禮，而獨於樂章，從壇禮，至於亞、終獻及迎神、送神，俱闕樂章，其宜釐正。況祭當用黑牛，而用黃牛亦何意也？”後又引見大臣、備堂，問皇壇事。承旨趙明履言：“考出《集禮》，則無諸侯朝見之</p>

	<p>일은 마땅히 한결같이 묘례(廟禮)를 준수해야 하는데, 유독 악장(樂章)만은 단례(壇禮)를 따르고, 심지어 아헌(亞獻)과 종헌(終獻) 및 영신(迎神)과 송신(送神)에 이르러서는 모두 악장이 빠졌으니, 그것을 이정(釐正)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제사(祭祀)에는 마땅히 흑우(黑牛)를 써야 하는데, 황우(黃牛)를 쓰는 것 또한 무슨 뜻인가?”</p> <p>하였다. 뒤에 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황단(皇壇)의 일에 대하여 하문하였다. 승지 조명리가 말하기를,</p> <p>“《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해 보았더니, 제후(諸侯)가 조현(朝見)하는 의식은 없고, 문무(文武)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며, 태묘(太廟)의 시향(時享)도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의심스럽게 여겨 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에게 묻자, 김재로가 말하기를,</p> <p>“《오례의(五禮儀)》에 종묘의 예를 반드시 곡배(曲拜)로 하는 것은 신(神)을 공경하는 예로 삼기기 때문이며, 황단(皇壇)의 예에 직배(直拜)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군신(君臣)의 도리로 행하기 때문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또 황우를 쓰는 의미를 묻자, 조명리가 말하기를,</p> <p>“명(明)나라는 화덕(火德)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성우(騂牛)를 써야 하는데, 성(騂)은 짙은 황색으로, 황색은 성(騂)에 가깝기 때문에 황색을 쓰는 것입니다.”</p> <p>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p> <p>“마땅히 명(明)나라의 제례(祭禮)를 따라 성색(騂色)으로 쓰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또 악장(樂章)에 대한 일을 묻자, 김재로가 말하기를,</p> <p>“아헌(亞獻)·종헌(終獻)·영신(迎神)·송신(送神)에 악장을 쓰지 않음은 조리가</p>	<p>儀，而文武諸臣皆北向拜，太廟時享亦如之。” 上疑之，又問領議政金在魯，在魯曰：“五禮儀，宗廟之禮，必以曲拜者，以神祇之禮事之也，皇壇之禮，定以直拜者，以君臣之道行之也。” 上又問黃牛之義，明履曰：“明以火德，故當用騂牛，而騂爲深黃色，黃近於騂，故用之以黃也。” 在魯曰：“宜從大明祭禮，以騂色用之也。” 上許之。又問樂章事，在魯曰：“亞、終、迎、送之不用樂章，似斑駁。然當初收議中，故相臣李奮合奏於九變之樂云者，乃迎神、九成之樂也。皇壇比之太廟、文廟，事體最尊，最尊者惟國社，故用社壇。禮而社壇乃地祇，皇壇卽人神，故九變者，乃用先農壇之禮，而樂章更定，今難輕議也。”</p>
--	--	--

	<p>뒤섞인 듯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수의(收議)하던 가운데 고 상신 이여(李畬)가 아홉 번 변하는 음악을 합주(合奏)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영신(迎神)과 구성(九成)의 악(樂)입니다. 황단(皇壇)을 태묘(太廟)와 문묘(文廟)에 비교하면 사체(事體)가 가장 높는데, 가장 높은 것은 오직 국사(國社)이기 때문에 사단례(社壇禮)를 씁니다. 그리고 사단(社壇)은 바로 지신[地祇]이고, 황단은 바로 인신(人神)이기 때문에 아홉 번 변한다는 것은 바로 선농단(先農壇)의 예를 쓴 것이니, 악장을 다시 정하는 것은 지금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4월 2일 (병신) 1번째기사 태묘에 나아가 의식대로 봉심하다</p>	<p>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의식대로 봉심(奉審)하였는데, 제향(祭享)의 희생(犧牲)이 규격에 차지 않고 또 살지지 않았다 하여 책망하는 교지를 내리고, 해서(該署)의 제거(提舉) 및 해당 낭관을 과직하게 하였다.</p>	<p>丙申/上詣太廟，奉審如儀，以祭享犧牲，不滿尺量，且不肥腠，下責教，罷該署提舉及該郎官職。</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4월 3일 (정유) 1번째기사 태묘의 하향을 친히 행하다</p>	<p>임금이 태묘(太廟)의 하향(夏享)을 친히 행하였다. 예를 마치고 재실(齋室)에 나아가 예방 승지 원경하(元景夏)를 불러 묻기를,  “국가에서 소제(素祭)하는 규례는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인가?”  하자, 원경하가 말하기를,  “고 상신 황희(黃喜)가 정난중(鄭蘭宗)과 상의하여 강정(講定)한 것입니다. 정난중은 국가에서 이미 소제(素祭)를 행하면 사가(私家)에서도 역시 고기를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겼으며, 정씨(鄭氏)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소제를 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심하고 경계하여 법을 지키는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p>	<p>丁酉/上親行太廟夏享。禮畢御齋室，召禮房承旨元景夏，問：“國家素祭之規，乃何人所定乎？”景夏曰：“故相臣黃喜，與鄭蘭宗相議講定者。而蘭宗以爲國家既行素祭，則私家亦不當用肉也，鄭氏家至今行素祭云。此可見謹飭守法之規也。”</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4월 3일 (정유) 1번째기사 태묘의 하향을 친히 행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봉상시 제조를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고, 제물(祭物) 가운데 토끼젓이나 사슴젓 및 절여서 말린 것은 냄새와 맛이</p>	<p>上引見大臣、備堂。命奉常提調進前，以祭物中兔、鹿醢及菹之乾者，臭、味</p>

<p>(乾隆) 6년) 4월 8일 (임인)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제물 가운데 맛이 쉽게 변하는 것 을 바꾸자고 하다</p>	<p>쉽게 변하는 것으로써 대신에게 물어서 고치고자 하였는데, 대신이 품질을 숭상하고 맛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의논이 결정되지 않으니 그대로 정지하게 하고, 절이는 것은 그때에 이르러 소금에 조금 담갔다가 간장을 제거하고 쓰게 하였다.</p>	<p>易變，詢于大臣，欲改之，大臣謂以尚質不尚味。議未決，仍寢之，蒞則臨時略爲醎沈而去漿用之。</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5월 22일 (을유) 2번째기사 우참찬 이덕수가 이광 의를 국문하라는 명으 로 길거리의 부녀자가 두려워 한다고 상소하 다</p>	<p>처음에 이광의(李匡誼)를 국문하라는 명을 받고 우참찬 이덕수(李德壽)가 상소하기를, “신은 가만히 이광의는 당연히 죽어야 할 죄가 두 가지 있다고 여깁니다. 이광의가 전하께서 일찍이 대신(臺臣)을 국문한 것을 알면서도 일찍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임금의 위엄을 범하여 실책을 이루게 하였으니, 그 죄의 첫번째입니다. 전하의 병원(病源)은 일찍이 화기(火氣)가 치솟는 데 있으므로, 일에 부딪칠 적마다 번번이 발생하여 스스로 버티지 못함을 이광의가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망령되게 임금의 위엄을 범하여 전하로 하여금 조섭(調攝)해야 하는 절차를 잃게 하였으니, 그 죄의 두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명이 있고부터 비록 길거리의 부녀자나 어린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여 도망가서 행동거지를 잃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성세(聖世)의 기상(氣象)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답을 내리지 아니하였다.</p>	<p>始，李匡誼之被鞫命也，右參贊李德壽上疏曰： 臣竊以爲匡誼有當死之罪二焉。匡誼知殿下嘗鞫臺臣，而曾不知戒，妄干天威，俾成過舉，其罪一也。殿下之病源，嘗在火升，觸事輒發，不能自持，匡誼豈不知此？而妄干天威，俾殿下失調攝之宜，其罪二也。然自有此命，雖婦孺之在街路者，莫不惶怖奔走，失其舉措，此豈聖世之氣象哉？ 不報。</p>
<p>영조 53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6월 4일 (정유) 3번째기사 관동 안집 어사 김상 적이 복명하니, 진구하 는 행정 및 수령의 현</p>	<p>관동 안집 어사(關東安集御史) 김상적(金尙迪)이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불러다 진구(賑救)하는 행정 및 수령(守令)의 현명함과 무능함을 하문하자, 김상적이 매우 상세하게 대답하고, 이어서 관동의 삼(蔘)에 대한 폐단을 아뢰기를, “1년의 공삼(貢蔘)이 합계가 40여 근(斤)인데, 그 값과 잡비(雜費)를 모두 백성들의 전결(田結)에서 내게 하니, 합하면 2만 8천여 냥(兩)입니다. 그 수효를 헤아려 감해 준다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p>	<p>關東安集御史金尙迪復命。上召問賑政及守令賢否，尙迪對甚悉，仍言關東蔘弊曰：“一年貢蔘，合爲四十餘斤，而其價與雜費，皆出民結，合爲二萬八千餘兩。量減其數，則爲惠大矣。”且言楊口白土之掘納燔院，爲民弊甚多，上命廟堂稟處。</p>

부를 하문하다	하고, 또 양구(楊口)에서 백토(白土)를 파서 번원(燔院)9698) 에 바치게 하므로 백성들의 폐단이 매우 많다고 말하니, 임금(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7월 3일 (을축) 1번째기사 서원 철폐에 대해 반유가 소회를 적어 올리다	<p>대사성이 지관사(知館事)가 같이 모여서 들어가도록 권고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유(洋儒)9714) 가 소회(所懷)를 적어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p> <p>“갑오년(9715) 이후에 세운 서원(書院)과 영당(影堂)을 모두 훼철(毀撤)하도록 하여 선현(先賢)의 영위(靈位)를 모시는 장소로 하여금 곤궁하여 잡초가 무성한 곳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신 등은 서로 이끌고 상소하여 전지(前旨)를 회수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갑자기 현관(賢關)9716) 을 적간(摘奸)하라는 분부가 있었고, 추고(推考)할 것과 재색(齋色)9717) 을 정거(停擧)9718) 시키라는 하교가 있었으며, 그리고 또 즉시 권당(捲堂)하지 않는 것으로써 회책(誨責)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적간을 시행하는 것이 혹은 도기(到記)9719) 로 인하고 혹은 원점(圓點)으로 인하여 하는데 이번의 분부는 이 두 가지 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적간을 하여 무고하게 최억(催抑)하여 처음에는 회책하는 것 같다가 끝내는 허물을 잡게 되었습니다. 소비(疏批) 가운데, ‘한심하다.[寒心]’는 두 글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짐작하여 하교를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세도(世道)는 비록 타락하고 사기(士氣)는 비록 없어졌으나, 전하께서는 군사(君師)의 지위에 처하였으니, 배식(培植)하고 우용(優容)하여 오히려 사기가 진작(振作)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질욕(叱辱)하고 만매(慢罵)할 수가 있겠습니까? 뇌위(雷威)9720) 의 가하는 바에 저절로 사기가 소저(消沮)됩니다. 신 등은 족히 걱정할 것이 없지만, 유독 성조(聖朝)의 원기(元氣)를 배양(培養)하는 방도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p> <p>하니, 답하기를,</p>	<p>乙丑/大司成啓請知館事同會勸入，從之。泮儒書進所懷，其略曰：</p> <p>甲午以後所建書院、影堂，竝令撤毀，使先賢妥靈之所，鞠爲茂草，臣等相率封章，冀收前旨。此際忽有賢關摘奸之命，又繼而有師席重推及齋色停擧之教，且以不卽捲堂，誨責甚摯。夫摘奸之擧，或因到記，或因圓點，而今者之命，非因此兩件事。非時摘奸，無故摧抑，始若誨責，終焉執咎。至於疏批中寒心二字，猶是斟酌爲教。顧今世道雖下，士氣雖亡，殿下處君師之位，培植優容，猶患士氣之不能振作，況叱辱之慢罵之？雷威所加，自爾消沮。臣等雖不足恤，獨不有歉於聖朝培養元氣之方耶？</p> <p>答曰：“其在道理，極涉過矣，期於勸入。”及泮儒還入，大司成尹汲又上疏，略曰：</p> <p>殿下深惟元氣之所在，凡於待士之道，益懋誠禮，毋輕摧折。處事有失，則降黃封而罰之如仁廟故事，食堂或捲，</p>

	<p>“그 일은 도리에 있어 몹시 잘못된 바가 있으니, 기필코 들어오기를 권고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반유(泮儒)가 다시 들어감에 미쳐서 대사성 윤급(尹汲)이 또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전하께서는 원기의 소재(所在)를 깊이 생각하셔서 무릇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에 더욱 성례(誠禮)를 힘쓰시고, 경솔하게 최절(催折)하지 마소서. 일을 처리하는 데 실수가 있으면 황봉(黃封)9721) 을 내려 벌주기를 인조[仁廟] 때의 고사(故事)와 같이 하시고, 식당(食堂)에서 흑시 권당을 하면 종백(宗伯)을 보내 위로하기를 숙종[肅廟] 때의 구례(舊禮)와 같이 하소서. 그러면 비록 오늘날 이미 무너진 사기일지라도 또한 반드시 감동해 분발하여 떨치고 일어날 것입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p> <p>“권면(勸勉)한 바가 옳으니, 마땅히 유의하겠다.”</p> <p>하였다.</p>	<p>則遣宗伯而慰之如肅廟舊例。 雖今日已頹之士氣，亦必感發而興起矣。</p> <p>批曰：“其勉是矣，當留意。”</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3월 14일 (계유) 3번째기사 대리의 명을 거두기를 김재로가 청하다</p>	<p>약원에서 ‘문후(問候)도 하지 말고 의약(議藥)도 하지 말라.’는 전교로써 서로 이끌고 나와서 명을 거두기를 청하고 연거푸 재계(再啓)를 올리니, 임금이 소견(召見)하고 말하기를,</p> <p>“나의 현기증은 실로 세상을 개탄스럽게 여기는 데에 연유하여 생긴 것이다.”</p> <p>하고, 이어 대리(代理)의 명을 내리면서 전교하기를,</p> <p>“‘대리(代理)’의 두 글자는 문득 시회(時諱)처럼 여기나, 한 번 뜻을 하유하려고 약원을 불러 본 것이다.”</p> <p>하니, 도제조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대유(大諭)를 못 신하들에게 반포하지 않으시고 다만 군민에게만 하유하시니, 신 등으로 하여금 부끄러워 죽겠금 하신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藥院以 ‘勿問候勿議藥’ 之教，相率請還寢連再啓，上召見之曰：“予之眩氣，實由於慨世而發也。” 仍下代理之命，教曰：“代理二字，便作時諱，然一欲諭意，召見藥院矣。” 都提調金在魯曰：“大諭不頒於群臣，只諭於軍民，將使臣等愧死矣。” 上曰：“右相既聞大諭，不胥命而猶引入，豈曰臣分乎？” 諸臣請還收代理之命，而上不許。 是日，顯命因嚴教胥命，上命勿待命。</p>



	<p>“우상이 이미 대유를 듣고도 대명[胥命]하지 않고 오히려 인혐(引嫌)하고 들어가니, 어찌 신자(臣子)의 분의(分義)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p> <p>하니, 여러 신하들이 대리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는데, 임금(上)이 윤희하지 않았다. 이날 조현명(趙顯命)이 엄한 하교로 인하여 대명하니, 임금이 대명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영조 56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7월 20일 (정축) 1번째기사 김재로가 종묘와 사직의 일을 다른 사람이 섭행하도록 상소하다</p>	<p>약방(藥房)에서 진대(診對)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재로(金在魯)가 날이 덥다 하여 종묘(宗廟)의 전알례(展謁禮)와 사직(社稷)의 친제(親祭)를 정지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라의 소중한 바가 종묘와 사직에 있는데, 내가 직접 행하지 못한 것이 이미 3년이나 되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신명(神明)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결단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섭행(攝行)하게 할 수는 없다.”</p>	<p>丁丑/藥房診對。 都提調金在魯，以日熱請停宗廟展謁禮及社稷親祭， 上曰：“國之所重在廟與社， 予之未得躬行已三年。 尙何以感格神祇乎？ 決不當使人攝之也。”</p>
<p>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8월 25일 (정사) 1번째기사 안변 부사 이철보가 상소하여 본읍의 흉황을 진휼하도록 청하다</p>	<p>안변 부사(安邊府事) 이철보(李喆輔)가 상소하기를,</p> <p>“본읍(本邑)의 흉황(凶荒)은 다른 읍(邑)에 비해서 더욱 심합니다. 영남(嶺南)과 포항(浦項)의 창고의 곡식을 옮겨서 진휼(賑恤)하게 하소서.”</p> <p>하니,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비국에서 회계(回啓)9771) 하기를,</p> <p>“청컨대 영남의 모맥[牟] 2천 곡(斛)과 포항 창고의 콩[太] 1천 곡(斛)을 옮겨서 획급(劃給)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p>	<p>丁巳/安邊府使李喆輔上疏言： 本邑凶荒比他邑尤甚。 請移嶺南、浦項倉穀以賑之。 令備局稟處。 備局回啓：“請以嶺南牟二千斛、浦項倉太一千斛， 移轉劃給。” 上許之。</p>
<p>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8월 28일 (경신) 1번째기사 효릉을 전알하다</p>	<p>임금이 효릉(孝陵)9772) 을 전알(展謁)하였다. 이날 임금이 주정소(晝停所)에 나가서 경기 감사 박필균(朴弼均) 및 도내(道內)의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고 농사의 상황과 백성의 일에 대하여 물었다. 회릉(禧陵)9773) 에 이르러 능을 배알하고 봉심(奉審)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서 다음 효릉(孝陵)에 나아가 친제(親祭)를 행하고 제사가 끝나자 재실(齋室)에 나아갔다. 승지(承旨) 박사창(朴師昌)이 아뢰기를,</p>	<p>庚申/上展謁孝陵。 是日上御晝停所， 召見京畿監司朴弼均及道內守令， 問農形民事。 至禧陵， 謁陵奉審如儀， 次詣孝陵， 行親祭， 祭罷御齋室。 承旨朴師昌奏曰：“仁廟聖德， 高出百王。 登極初儒生等上疏， 請伸己卯諸臣之</p>

	<p>“인종[仁廟]의 성덕(聖德)은 백왕(百王)에 높이 뛰어납니다. 등극(登極)하신 처음에 유생(儒生) 등이 상소하여 기묘년(1519 중종 14년.) 여러 신하들 9774) 의 원통함을 꾀주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너희들이 시비(是非)를 논의하는 것은 가하지만 시비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임금의 병세(病勢)가 위급함에 미쳐서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 등의 관작(官爵)을 회복시킬 것을 특명(特命)하였고, 또 현량과(賢良科)를 회복시켰습니다. 승하(昇遐)하시던 날에는 심산 궁곡(深山窮谷)의 부유(婦孺)·노소(老少) 할 것 없이 모두 달려나와 호곡(號哭)하였으니, 즉위(即位)하신 지 1년도 채 안되었지만 덕교(德教)가 사람에게 스며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p> <p>하고, 도승지(都承旨) 권적(權黻)이 말하기를,</p> <p>“인종께서는 김인후(金麟厚)를 궁관(宮官)으로 삼아 대우(待遇)가 절이(絶異)하였으며, 을사년(9775) 이후로 김인후는 벼슬하지 않고 매양 휘일(諱日) 9776) 을 만나면 번번이 산중(山中)으로 가서 통곡(痛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7월이 되면[年年七月日] 만산중(萬山中)에 가서 통곡한다. [痛哭萬山中]’는 시(詩)가 있었습니다.”</p> <p>하였다. 주서(注書) 이의중(李毅中)이 말하기를,</p> <p>“본릉(本陵)의 재실 벽(壁) 위에 인종께서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墨竹)의 인본(印本)이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보기를 끝나치고 나서 어제시(御製詩) 1절(一絶)을 써서 내리어 아울러 재실 벽 위에 붙였다.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묘소에 이르러 예(禮)를 행하고 말하기를,</p> <p>“내가 이 묘소에 대하여 특별히 창상(愴傷)한 바가 있다. 당습(黨習)의 연고로 인해서 무신년(9777) 에 이탄(李坦) 9778) 의 일이 있게 된 것이다.”</p> <p>하였다. 송선군(崇善君)의 형제(兄弟) 사당에 치제(致祭)하고 그 자손(子孫)에게 식물(食物)을 내려 줄 것을 명하니, 여러 승지(承旨)가 말하기를,</p>	<p>冤, 教以 ‘汝等論是非則可, 定是非則不可’ 矣。 及至大漸, 特命復先正臣 趙光祖等官, 又復賢良科。 昇遐之日, 深山窮谷婦孺老少, 莫不奔走號哭, 卽阼未滿一年, 而德教之入人者, 可見矣。” 都承旨權黻曰: “仁廟以金麟厚爲宮官, 而待遇絶異, 乙巳後麟厚不仕, 每值諱日, 輒往山中痛哭。 故有年年七月日痛哭萬山中之詩矣。” 注書李毅中曰: “本陵齋室壁上有仁廟賜金麟厚墨竹印本矣。” 上覽訖, 書下御製詩一絶, 竝付於齋室壁上。 至昭顯墓行禮曰: “予於此墓, 別有愴傷者。 以黨習之故, 有戊申坦事矣。” 命致祭崇善君兄弟廟, 給子孫食物, 諸承旨言: “臺啓方以孥籍爲請, 其子孫豈可給食物乎?” 仍請還寢, 上不答。</p>
--	--	---

	<p>“대계(臺啓)가 바야흐로 노적(弩籍)으로써 칭하고 있는데, 그 자손들에게 어찌 식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이어서 환침(還寢)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의 답하지 않았다.</p>	
<p>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9월 2일 (갑자) 2번째기사 북도의 독운 어사 이 창의가 포항의 곡식을 운송하여 진자로 삼기 를 청하니 따르다</p>	<p>북도(北道)의 독운 어사(督運御史) 이창의(李昌誼)가 포항(浦項)의 곡식 1만斛(斛)을 운송하여 진자(賑資)로 삼을 것을 청하니, 편의한대로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p>	<p>北道督運御史李昌誼請運浦項穀一萬斛爲賑資，命便宜行之。</p>
<p>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 (乾隆) 6년) 9월 2일 (갑자) 4번째기사 간원에서 삼성사를 휘 철하지 말기를 청하다</p>	<p>간원(諫院) 【정언(正言) 어석윤(魚錫胤)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공성(孔聖)과 주자(朱子)는 천하(天下) 만세(萬世)의 스승으로 함께 높이는 바인데 기자(箕子)가 우리 동방(東方)에 와서 오랑캐를 변화시켜 예의(禮義)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은혜는 비록 집집마다 제사지낸다 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생(儒生)의 무리들이 혹은 지명(地名)이 우연히 같은 것에 감동하고 혹은 고의(古義)의 근거가 있음을 사모하여 원우(院宇)를 세워 봉안(奉安)하고 저두(俎豆)를 갖추어 제향(祭享)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철거(撤去)를 하게 되니 안으로는 관학(館學)으로부터 밖으로는 팔도[八路]에 이르기까지 분주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끝내 유음(兪音)을 아끼신다면 어찌 대성인(大聖人)의 전환(轉圜)하는 아름다움에 불만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기자·공자·주자의 사우(祠宇)를 휘철하라는 분부를 도로 정지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계씨(季氏)가 태산(泰山)에 여제(旅祭)를 지낸 것은 그 시초가 비록 미미한</p>	<p>諫院【正言魚錫胤。】申前啓，不允。又啓言：“孔聖及朱子，天下萬世之所共師者，而箕子之於我東變夷爲夏之恩，雖家侑戶祝未爲不可。故儒生輩，或感地名之偶同，或慕古義之有據，院宇而奉之，俎豆而享之。今一朝撤而去之，內自館學，外至八路，奔走號籲。終斬兪音，豈不有歉於大聖人轉圜之美乎？請還寢箕子、孔子、朱子祠宇毀撤之命。”上怒曰：“季氏泰山，其初雖微，孔子猶譏以不若林放。今之末流之弊，必將至於旅泰山。若使魯君先正季氏僭濫之誅，則昭公豈至於乾侯？”錫胤以聖教未安，引避請遞，依啓，因大臣救解，上更命</p>

	<p>것이지만 공자(孔子)가 오히려 ‘임방(林放)만 같지 못하구나!’ 하고 비난하였다. 오늘날의 말류(末流)의 폐단이 반드시 장차 태산에 여제를 지내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만일 노(魯)나라 임금이 먼저 계씨의 참람(僭濫)한 처벌을 바르게 하였다면 소공(昭公)이 어찌 간후(幹侯)9782) 에 추방(追放)되었겠는가?”</p> <p>하였다. 어석윤이 성상(聖上)의 하교가 미안(未安)한 것으로써 인피(引避)하여 체직(遞職)하기를 청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가 대신(大臣)의 구해(救解)로 인하여 임금이 다시 사직(辭職)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p>	<p>勿辭。</p>
<p>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0월 14일(을사) 2번째기사 자전의 명으로 관동·관북의 삭전과 방물을 정지시키다</p>	<p>임금이 자전(慈殿)의 명(命)으로써 관동(關東)·관북(關北)의 삭전(朔膳)9847)과 방물(方物)9848) 을 정지시켰다. 이때 동북(東北) 지방에 계속 흉년(凶年)이 들어 각전(各殿)의 물선(物膳)을 정지시켰으나, 유독 동조(東朝)9849) 에게는 정지시키지 않았었는데 왕대비(王大妃)가 이것을 듣고 모두 정지시킬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자성(慈聖)께서 정봉(停封)하라는 하교가 계셨으니 마땅히 성덕(盛德)을 유양(揄揚)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 지방의 삭전·방물을 특별히 정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上以慈殿命停關東、關北朔膳·方物。時東北荐饑，停各殿物膳，而獨於東朝不停，王大妃聞之，命竝停之。上教曰：“慈聖有停封之教，宜揄揚盛德。東北朔膳方物，特爲停封。</p>
<p>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1월 7일(무진) 1번째기사 시사하여 수석을 차지한 유학 이문제를 직부 전시하도록 하다</p>	<p>태학(太學)에 귤[柑]을 나누어 주고 예문 제학(藝文提學) 정우량(鄭羽良)에게 시사(試士)할 것을 명하여, 수석(首席)을 차지한 유학(幼學) 이문제(李文濟)를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p>	<p>戊辰/頒柑于太學，命藝文提學鄭羽良試士，居首幼學李文濟，直赴殿試。</p>
<p>영조 54권, 17년 (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12월 9일</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진휼 당상(賑恤堂上)을 보내어 수안(遂安)의 동산(銅山)을 가서 살펴보고 주전(鑄錢)의 도구를 미리 저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옹계 여겼</p>	<p>庚子/上引見大臣、備堂。左議政宋寅明請送賑恤堂上，往審遂安銅山，預儲鑄錢之具，上可之。右議政趙顯命</p>

(경자)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진홀 문제와  
수령의 비석을 세우는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고 상신(相臣) 이경석(李景奭)의 문집(文集) 가운데 왕세자(王世子)가 입학(入學)할 때 먼저 태묘(太廟)를 배알(拜謁)하는 예(禮)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典禮)가 그러할 것 같다.”  
하였다. 송인명이 또 수령(守令)의 비석(碑石)을 세우는 폐단에 대해 금지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공조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또한 진선(津船)을 개조(改造)하는 것의 폐단이 많은 점을 진달하고 각 군문(軍門)에 분속(分屬)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또한 그 청을 따랐다. 예조 참판 김약로(金若魯)가 아뢰기를,  
“중궁전(中宮殿)의 탄일(誕日)이 온릉(溫陵)9862) 의 국기(國忌)와 상치(相值) 되는데, 일찍이 재계(齋戒)로 인해서 진하(陳賀)를 퇴행(退行)한 예(例)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미년(9863) 이후에는 연이어 당일로써 진하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해당 당상(堂上)을 추고(推考)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탄일(誕日)의 진하를 물려서 행하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하교에 따라 무고(無故)한 날로 퇴행하는 일로써 마땅히 정식(定式)을 삼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온릉의 기신(忌辰)에 3일 동안 소사(素食)를 하신다고 하니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3년의 의미를 약간 간직하여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온릉의 신하 누가 온릉을 아는가?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은통(隱痛)하여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런 까닭이다. 제왕(帝王)의 효도는 예(禮)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 내가 3년의 의미를 간직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였다.

曰：“故相臣李景奭文集中，有王世子入學時，先謁太廟之禮矣。” 上曰：“典禮似然矣。” 寅明又請禁守令立碑之弊，上許之。 工曹判書金始炯，亦陳津船改造之多弊，請分屬各軍門，上亦從其請。 禮曹參判金若魯奏曰：“中宮殿誕日，與溫陵國忌相值，而曾無以齋戒，退李字夏之例。 故己未以後，連以當日請賀矣。 昨有該堂推考之命，而誕日賀之退行，既無其例，自今依下教，以無故日退行事，宜爲定式。” 上從之。 領議政金在魯曰：“伏聞溫陵忌辰，三日行素云，伏想殿下，略存三年之意而然矣。” 上曰：“溫陵之臣，孰知溫陵？此予所以隱痛于中，不忍食肉而然也。 帝王之孝，不過於禮，予非欲存三年之意也。”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1월 4일 (갑자) 1번째기사 송인명·조현명 등이 재변이 거듭 닥친 일을 진계하다</p>	<p>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우의정 조현명(趙顯命) 등이 세시(歲時)가 신정(新正)에 속하는데 재변이 거듭 닥친 일로써 서로 함께 진계(陳戒)하기를,  “성상께서 춘추가 점점 높아지시니 분발하는 의지가 아마도 처음과 같지 못한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호령을 내려 시행할 즈음에 몹시 성찰(省察)을 더하시어 거경(居敬)·궁리(窮理)로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을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나이 이제 50에서 한 살이 모자라는데 정신도 따라서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국사를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세 곳 변방은 편안하고 조정도 일이 없으나, 삼남(三南)9875)의 백성들은 군역(軍役)에 시달려 변란(變亂)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양서(兩西)9876)의 백성들은 기근(飢饉)에 쪼들려 유리(流離)할 걱정이 있습니다. 신 등처럼 반식(伴食)하는 자는 논할 것도 없거니와, 분발하고 면려하여 억만년 끝없는 경상(慶祥)을 여는 일은 그 책임이 어찌 성상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  “성상의 춘추가 마침 거백옥(蘧伯玉)의 지비지년(知非之年)9877)에 미쳤으니, 경척(警惕)하는 마음이 다른 때와는 자별하실 것입니다. 성상의 학문이 고명(高明)하시니 어찌 49년 동안의 잘못됨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일마다 마음을 두고 살피시되 심술(心術)의 기미(機微)와 희로 애락(喜怒哀樂)의 발현에 있어서 언제나 절도(節度)에 맞는가 안맞는가와 대궐의 안과 조정의 사이에 일이 의리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새겨보시어,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는 경우 더욱 힘써서 실용상의 공부를 하시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甲子/太白晝見。 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宋寅明、右議政趙顯命等、以歲屬新正、災又荐臻、相率陳戒曰：“聖上春秋漸暮、奮發之志恐不如初。伏願發號施令之際、猛加省察、以居敬、窮理爲治心之本焉。” 上曰：“予今年五十減一、精神亦隨以減、安能做國事乎？” 寅明曰：“顧今三陴晏然、朝廷無事、而三南之民困於軍役、有思亂之慮、兩西之民迫於飢饉、有渙散之憂。如臣等伴食者、固無論已、若其奮發淬勵、以開億萬年無疆之休者、其責豈不在於聖上乎？” 顯命曰：“聖壽適及蘧伯玉知非之年、警惕之念、宜與他時自別。 聖學高明、豈有四十九年之非、而隨事存省、心術之微、喜怒之發、必曰中節乎否乎、闔闔之內、朝廷之上、亦曰當理乎否乎、有改無勉、實用工夫、則豈不好乎？” 上曰：“卿言切實、當爲自勉。” 寅明又請依孝廟朝待兩宋故事、以至誠招來儒賢、 上曰：“山野之人、每多固執。頃年僅得踈野一梁得中、而亦逐之使去。 在上者若欠誠禮、則在下者固當勉戒、然今也勉之於上、逐之於下、 予將親與之携來</p>
--	---	--

	<p>“경의 말이 매우 절실하니, 마땅히 힘써 보겠다.”</p> <p>하였다. 송인명이 또 효종조에 양송(兩宋)9878) 을 대우하던 고사(故事)에 준하여 지성으로 유현(儒賢)을 초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산림의 선비는 매양 고집이 많은 편이다. 근년에 한 사람의 거칠고 질박(質朴)한 양득중(梁得中)을 겨우 불러들였더니, 그 역시 쫓아서 보내버렸다. 윗사람이 만약 정성과 예의가 모자라면 아래에 있는 자가 진실로 힘써 면계(勉戒)해야 하는데도 지금은 위에서 권면하고 아래에서는 쫓아내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끌고 오라는 말인가?”</p> <p>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p> <p>“어유봉(魚有鳳)이 만약 세자가 입학할 때에 맞추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하유(下諭)하셨을 뿐이니 어찌 즐기어 오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에 정원으로 하여금 경연에서 뽑힌 신하들에게 다시 별유(別諭)를 매겨 세자의 입학에 맞추어 진참(進參)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송인명이 또 90세는 대질(大耋)의 나이이니, 마땅히 품계를 변경시키는 은전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몇 사람을 들면서 청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p> <p>“늙은이를 우대하는 은전은 음식물을 후히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경솔히 관작을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p> <p>“이들은 얼마 안되어 죽을 사람들입니다. 설혹 은전이 과하다 한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또 고례(古例)도 있습니다.”</p> <p>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p> <p>“고례가 비록 있기는 하나 잘못된 전례를 따라서는 부당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임금이란 효도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니, 나이가 구질(九耋)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그 아들의 애일(愛日)9879) 하는 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p>	<p>乎?” 寅明曰: “魚有鳳若趁世子入學時上來則好矣, 而一番下諭而已, 則豈肯來乎?” 上於是, 令政院更下別諭於經筵抄選之臣, 俾趁參入學。 寅明又言, 九十是大耋之年, 宜施變品之典, 因舉數人以請之, 顯命曰: “優老之典, 厚其食物宜矣。 何可輕授官爵乎?” 寅明曰: “此朝暮人耳。 設或過於恩典, 庸何傷乎? 且有古例也。” 顯命曰: “古例雖有之, 不當遵謬例也。” 上曰: “王者以孝爲治, 年至九耋, 則宜念其子愛日之心也。” 顯命曰: “爵祿終非養老之資, 何可恤其子孫私情乎?” 上是之。 寅明言: “公洪道敬差官洪益三請量後陳田之降續減稅, 宜許其請。” 從之。 寅明又以北道荐飢, 民事渴悶, 宜別遣香祝, 虔禱名山, 以祈有年, 禮曹參判金若魯曰: “祀典至重, 祈年尤盛禮也。 外方祈年, 既是無於禮之禮, 不當義起而行之。” 上曰: “禮官之言誠然。 其置之。”</p>
--	---	--

	<p>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작록(爵祿)은 끝내 양로(養老)를 위한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그 자손의 사정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공홍도 경차관(公洪道敬差官) 홍익삼(洪益三)이 양전(量田)한 후에 묵은 전답은 강속전(降續田)9880) 으로 세미(稅米)를 감면해 줄 것을 청했는데, 그 청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북도는 연이어 기근(饑饉)이 들어 백성의 사정이 목마르게 괴로워하는 형편이니 마땅히 향축(香祝)을 특별히 보내어 명산(名山)에 공경히 빌어서 풍년을 기원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예조 참판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사전(祀典)은 지극히 중대한 것이고 풍년을 비는 것은 더욱 성대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외방(外方)에 가서 풍년을 비는 일은 이미 이 예문에 없는 예이니, 새로 창시(創始)하여 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예관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1월 4일 (갑자) 2번째기사  주장을 행하고 북도의 진정을 의논하다</p>	<p>임금이 주장(晝講)을 행하였다. 대신과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를 소견하고 북도의 진정(賑政)을 의논하였는데, 영남의 곡물 1만 곡(斛)을 더 주기로 하고 영남과 관동의 배에 실어서 보내기로 하였다. 이때에 함경 감사 윤용(尹容)이 굶주린 백성이 30만 명이나 되어 전에 보내 준 영남의 곡물 10만 곡(斛)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하여 더 보내 줄 것을 장계로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박문수가 북도의 사정을 잘 안다 하여 자주 물었는데, 박문수가 대답해 아릴 때 목소리가 너무 컸고 또 경재(卿宰)들과 옳고 그름을 다투어 목소리와 얼굴빛이 매우 날카로우니, 승지가 추고(推考)하기를 청하였으나,</p>	<p>上行晝講。 召見大臣及靈城君朴文秀， 議北道賑政， 加劃嶺南穀一萬斛， 令嶺南及關東船運以送。 時咸鏡監司尹容， 以飢口爲三十萬， 而前所劃送嶺穀十萬斛， 不足以接濟， 狀請加劃故也。 上以文秀能知北事， 輒加顧問， 文秀奏對， 聲音太高， 又與卿宰爭論是非， 聲色甚厲， 承旨請推， 上命勿推。</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1월 6일 (병인) 2번째기사 박문수가 육진의 청차의 폐단과 관서의 곡물로 북도의 진휼을 청하다</p>	<p>임금이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주장(晝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궐내에 입직한 무신들에게 앞으로 나와 소회를 아뢰라고 하였으나 모두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문법(文法)에 구애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평상시에 생각해 둔 바가 있으면 마땅히 평온한 마음으로 말하라.”          하였다. 부장(部將) 최필형(崔弼衡)은 북도 사람인데, 육진(六鎭)의 청차(淸差)9886)의 폐단을 들어 말하니,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 인심이 교약스럽습니다. 육진의 이교(吏校)9887)가 청차를 꺾어 그들을 빙자하여 정수(定數) 이상을 받아내는데 해마다 증가하여 전에 1필(疋)을 주던 것이 지금은 20필이 되었으며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거두는 것이 자그마치 수십 필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육진의 백성이 텅 비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묘당에서 의당 상의하여 변통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박문수가 또 관서(關西)의 곡물 1만 5천斛(斛)을 북도로 덜어주어 진휼의 밀천으로 삼기를 청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가부를 물었다. 비국 당상 민응수(閔應洙)가 말하기를,          “대동강에서 배로 운반하여 성천(成川)에 이르면, 거기서 북도까지는 4, 5일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옮기도록 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上御晝講。講訖，命闕內入直武臣等，令進前奏所懷，皆不肯對，上曰：“當不以文法拘之，如有常時所講究者，宜平心以言之。”部將崔弼衡北路人也，以六鎭淸差之弊爲言，靈城君朴文秀曰：“我國人心巧惡。六鎭吏校，教誘淸差，憑藉徵索於定數之外，逐年增加，前之給一疋者，今爲二十疋，他物稱是。每戶徵歛，多至數十疋。十年之間，六鎭之民，有空虛之慮，自廟堂宜商確變通。”上可之。文秀又請以關西穀一萬五千斛，移劃於北道賑資，上問諸臣。備堂閔應洙曰：“自大同江船運至於成川，則去北道不過四五日程。使北民移轉，亦似不難。”上從之。</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1월 10일 (경오) 1번째기사 김재로가 북도의 흉년</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신이 병이 있어 그동안 등대하지 못했습니다. 북도의 흉년은 아득한 먼 옛날에도 없던 바인데, 지난 을묘년(9888)·병진년(9889)의 큰 흉년에는 본도의 곡물 저축이 꽤 많아 그것으로 진휼하였으나, 그 후에 점차 줄어들어 작년에는 창고를 털어서 나눠 주었고 되받은 것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토</p>	<p>庚午/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金在魯曰：“臣病未登對。而北道凶荒，振古所無，在昔乙、丙年大歉，而本道穀物猶多儲蓄，賴以賑濟，其後漸致耗縮，昨年又傾庫分糶，還捧至少。而</p>

으로 사정의 촉박함을 논하다

록 거듭 흉년을 만났으니, 풍문으로 듣기에도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합니다. 포항(浦項)의 곡물은 오로지 북도를 위해서 저축해 둔 것이고 그 밖에 통영(統營)의 곡물을 비축해 둔 것이나 호남의 곡물을 옮겨 온 것도 역시 북도를 위해서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의당 4, 5만 곡은 더 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다만 1만 곡을 더 준 뒤에 또 박문수(朴文秀)의 말에 의하여 추가로 관서의 곡물 1만 5천 곡을 주고 영남의 1만 곡은 도로 정지하였다 합니다. 영성군(靈城君)의 이듬해 걱정은 신 등도 어찌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겠습니까마는, 어떻게 이듬해의 미연(未然)의 걱정 때문에 목전에 꼭 죽게 된 백성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도 ‘금년에 눈 속에서 제가 얼어 죽어버리면 명년에 비록 큰 주밭에 떡국이 있다 한들 누가 먹을지 알지 못한다.’ 했는데, 이는 참으로 애통한 말입니다. 삼가 듣건대 옛그제 영성군이 ‘제도(諸道)에서 진휼곡을 더 청해와도 지금부터 일체 윤택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아뢰니, 성상의 전교에도 또한 ‘이 뒤로는 비록 한 되 한 말이라도 결코 윤택할 수 없다.’고 하셨다 하는데, 이는 말 한마디가 나라를 망친다는 것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제사 음식은 제한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사의 음식도 오히려 미리 제한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만백성의 의지할 곳 없는 목숨을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미리 제한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것으로 원망을 한다면, 이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내가 만약 말을 달려 사냥의 비용으로 재물을 쓰려 한다면 참으로 잘못이지만, 아끼는 것은 결국 백성에게 돌리려 함인데 또 무엇이 그르겠는가?”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영상의 말은 대신의 도리에서 하는 말이고 신이 아뢰는 바는 유사(有司)의 책임에서 드린 말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혹시나 곡물이 다하여 백성들이 죽어가

值此荐凶，得之風聞，聞甚驚慘云。浦項穀，專爲北道留置者，其他統營穀之備待、湖南穀之移運，亦爲北路地。臣意宜加劃四五萬斛，而始只以一萬斛加劃後，又以朴文秀之言加劃關西穀一萬五千斛，而嶺南萬斛則還寢云。靈城嗣歲之憂，臣等亦豈不慮及於此，而何可爲嗣歲未然之憂，不救目前必死之民命乎？古語云，‘今年自家雪裏凍死，明年雖有大椀不托，不知何人喫此，’此誠哀痛之言也。伏聞日昨靈城陳‘諸道加請賑穀，自今一切勿許’之意，則聖教亦以爲‘此後雖升斗，決不可許’云，此不幾於一言喪邦者乎？《禮》曰：‘祀饗不爲概。’祀饗猶不可爲概，況救萬民顛連之命，何可預爲之概限耶？”上曰：“百姓以此爲怨，則是不知予心者。予若欲用財於馳騁弋獵之費，則固非也，所惜者，竟歸於民，又何非乎？”朴文秀曰：“首相之言，大臣之道也，臣之所奏，有司之責也。所慮者或恐穀垂盡而民亦劉矣，臣之靳許，所以爲儲穀備荒之計也。”左議政宋寅明曰：“領相、靈城之言，可竝存而不可偏廢也。”上曰：“然。”

	<p>는 일인데, 신이 윤희를 아끼시라 한 것도 곡물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계책을 삼으려는 까닭입니다.”</p> <p>하니,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영상과 영성군의 말은 둘 다 새겨 두어야 하고 하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p> <p>하였다.</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1월 11일  (신미) 2번째기사  이제담이 신하의 진언  에 대한 지나친 형벌  을 상소하다</p>	<p>장령 이제담(李齊聃)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요(堯)·순(舜)의 시대에도 오히려 비방목(誹謗木)9890) 을 설치했었습니다. 요·순 같은 성인으로서 어찌 비방하거나 헐뜯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실성을 하거나 환장한 자가 아니면 필시 천일(天日)을 꾸짖어 욕하는 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순은 오히려 비방을 듣지 못할까 걱정을 하였고 비방함으로써 죄를 얻는 자는 듣지 못했으니, 이 점은 요·순이 더욱 성인다워지고 더욱 잘 다스려지는 까닭이었습니다.</p> <p>또 우리 나라 열성(列聖)으로 말하더라도 세종조 말년에 장차 거동할 일이 있었는데 아래에서 간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난여(鑾輿)가 장차 떠나려 하여 경계를 고하고 노부(鹵簿)9891) 가 앞서 나갔는데, 지평 허척(許倜)이 그 이에(吏隸)를 이끌고 지공(支供)9892) 할 것을 두들겨 부수어 그 행차를 막았습니다. 지금으로써 본다면 대불경(大不敬)으로 논해도 되고 무군 범상(無君犯上)으로 다스려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죄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리어 충애를 더하여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연(河演)이 이조 판서를 겸하여 주의(注擬)를 한번 잘못하자 대사헌 정갑손(鄭甲孫)이 곧바로 정국(庭鞫)을 청하였으니 격렬함이 크게 지나치다고 할 만하는데, 세종께서는 온화한 안색으로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지나치게 격렬하다는 것으로써 정갑손을 지척(指斥)하지를 않았습니다.</p>	<p>掌令李齊聃上疏，略曰：  堯舜之世，猶設誹謗之木。夫堯舜之聖，寧有可誹可謗之事哉？苟非喪心易性，必是詬天罵日者也。然堯舜猶以不聞誹謗爲懼，未聞以誹謗獲罪者，此堯舜所以聖益聖治益治也。且以我朝列聖言之，英廟晚年，將有幸行，諫而不聽。伊時鑾輿將戒，鹵簿先出，而持平許倜率其吏隸，擊破支供以沮其行。自今觀之，則雖論以大不敬可也，雖繩以無君犯上亦可也。而英廟不惟不罪反加寵納。河演以兼吏判，一誤注學，大憲鄭甲孫直請庭鞫，可謂激之大過，而英廟怡顏兩解，不以過激斥甲孫。且朴元宗元勳也。出入殿陛，中廟至於起立，而持平許磁面斥跋扈，跋扈者，梁冀之題目也。元宗伏泣不已，中廟只慰以持平之見過矣，終不</p>

또 박원종(朴元宗)은 원훈(元勳)입니다. 전폐(殿陛)를 출입할 때 중중께서 일어서기까지 하시니 지평 허평(許砮)이 면전에서 발호자(跋扈者)9893) 라고 지적하였는데, 발호란 말은 양기(梁冀)9894) 에 대한 제목(題目)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옳드려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중중께서 지평의 보는 바가 지나쳤다고 위로하였으며, 끝내 그 일로써 허평을 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수신(盧守愼)은 어진 정승이었습니다. 일찍이 어미를 위하여 선물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장령 김성일(金誠一)이 곧바로 연석(筵席)에서 노수신을 참(斬)하자고 청하였으니 그 논의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만하였으나, 선조께서는 노수신의 인책(引責)을 가납하시고 김성일은 직신(直臣)으로 하여내셨습니다. 우리 조종(祖宗)께서 대신(大臣)을 총애하여 우대하시고 당언(讜言)9895) 을 높여 추장(推獎)하시기를 이같이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덕(聖德)과 지치(至治)는 하늘과 같이 크고 해가 솟아오름과 같아 바로 요·순과 더불어 그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시니, 이 어찌 우리의 문자(文字)·문손(文孫)이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그웁이 보건대, 근세에 대간(臺諫)을 선출한 것은 잘 살펴서 가리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신처럼 천부당 만부당한 자가 또한 혹 그속에 끼이기도 하여 인품은 중망(衆望)에 차지 못하고 말은 성상의 마음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전하처럼 포용하는 아량을 가지신 분으로서도 혹 가벼이 보시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 한마디의 말만 사리에 닿치 않으면 바로 위노(威怒)를 내리시어 경한 자는 찬축(竄逐)하고 중한 자는 정국(庭鞫)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대간의 자리를 마치 덧이나 함정처럼 보고 모면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함묵(含默)하는 것을 중책(中策)으로 여겨, 혹 한 두 가지 진언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천번 만번 읽고 외고 하여 어떤 글자가 의사에 저촉될까 어떤 귀절이 눈에 걸릴까를 살핀 뒤에 조심스레 올리고, 올린 뒤에는 혹은 미리 변방으로 귀양갈 행장을 꾸리기도 하고 혹은 모여서 주

以此責許砮。 盧守愼賢相也。 嘗爲母受贈， 而掌令金誠一直於筵中請斬之， 其論可謂太刻酷， 而宣廟嘉守愼以引過， 許誠一以直臣。 我祖宗寵待臺臣， 崇獎讜言如此之盛， 故聖德至治， 與天同大如日方升， 直與堯舜齊美匹休， 此豈非我文子文孫所可法者乎？ 臣竊矚近世臺選， 多不審簡。 如臣之千不近萬不似者亦或廁數， 人不足以厭於衆望， 言不足以概於聖心， 故雖以我殿下包容之量， 或不無輕視之心， 一言不當， 遽下威怒， 輕者竄逐， 重者庭鞫。 由是人皆以臺地視若罟獲陷穽， 規免爲上策， 含默爲中計， 或有一二進言者， 必千誦萬讀， 審其何文字觸犯何句語礙眼， 然後敢進， 既呈之後， 或預治投荒之裝， 或聚待誅罰之命。 於乎！ 烏鳶見殺， 仁禽增逝， 狂夫受戮， 直士深藏。 彼以言獲罪者， 孰敢曰無罪哉？ 然而人既臺臣言是臺言， 而陷於刑辟淪於荒裔， 則臣竊恐不但規避含默而止， 必一轉再轉， 終至於諛佞成風而後已。 諛佞之成風， 非西漢之所以亡乎？ 上下優批。

	<p>벌(誅罰)의 명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 까마귀나 솔개가 죽임을 당하면 봉황은 피하여 멀리 떠나 가고, 미친 이가 베임을 당해도 곧은 선비는 더 깊이 숨는 법입니다. 저 말로써 죄를 얻는 자를 누가 감히 죄가 없다고야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미 대신(臺臣)이요 말은 바로 대언(臺言)인데 형벌에 처해지고 변방에 내쳐진다면, 신은 그욕이 규피(規避)·함묵(含默)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 결국은 아첨하는 것이 풍조가 되고야 말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첨이 풍조를 이루는 것은 서한(西漢)이 망하게 된 까닭이 아니었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1월 25일 (을유) 3번째기사 임금이 춘전알을 행하고 북도의 진휼을 명하다</p>	<p>임금이 종묘[太廟]에 나아가 춘전알(春展謁)을 행하였는데, 왕세자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따랐다. 임금이 장차 종묘에 전알하려 하면서 하고하기를, “나는 가례(嘉禮) 후 종묘에 전알할 때에 또한 배례를 행하였다. 예조(禮曹)에 서는 어찌 세자의 배례 의주(儀註)를 올리지 아니하는가? 이는 예조의 실수이다.”</p> <p>하고, 위판(位版)을 옮겨 놓으라 명하고 세자도 함께 배례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그때에 세자의 나이 겨우 여덟 살이었는데 진퇴(進退)와 배례(拜跪)가 모두 절도에 맞으니 좌우에서 모두 우러러보았으며, 저녁이 되어 환궁하였다. 밤에 북도의 감진 어사(監賑御史) 홍계희(洪啓禧)를 불러 진휼한 일을 물으니, 홍계희가 진휼 곡물이 넉넉지 못한 실상을 아뢰면서 말하기를, “이 곡물로 이 백성을 살리는 것은 다만 신만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재능이 있는 자라도 또한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p> <p>하고, 이어 북도의 백성이 자식을 버린 자가 잇달았고 어민들은 간혹 어린이의 시체가 어망(魚網)에 걸리는 것을 보았으며 온 도의 정경이 놀랍고 참혹한데 진휼할 곡물은 다 되어 백성들이 장차 다 죽게 되었다고 성대하게 말하니, 임금이 즉연히 여겨 영남의 감사에게 명하여 포항(浦項)의 곡물 수만 곡(數萬</p>	<p>上詣太廟，行春展謁，王世子具冕服以從。上將謁廟，教曰：“予於嘉禮後廟見時，亦行拜禮。儀曹豈不進世子拜禮儀註乎？此儀曹之失也。”命移置版位，命世子同行拜禮。時世子年甫八歲，進退、拜跪咸中節度，左右聳觀，及夕還宮。夜召北道監賑御史洪啓禧問賑事，啓禧陳賑穀不敷狀曰：“以此穀活此民，非但臣所不能，雖有才能者，恐亦沒策也。”仍盛言北民棄子者相續，浦民或得兒屍於魚網中，一路景色，驚心慘目，賑穀且盡，民將盡劉，上聞之惻然，命嶺南道臣，加送浦項穀數萬斛以濟之。凡御史所請竝許施，至各司所納及御供進上之需，亦減其半，命啓禧促還監賑。</p>

	<p>斛)을 더 보내어 구제하게 하였다. 무릇 어사가 청한 것은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심지어 각사(各司)에 납입할 것과 어공(御供)에 진상할 물품까지 또한 그 절반을 감하게 하였으며, 홍계희에게 빨리 돌아가서 감진(監賑)하라고 명하였다.</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2월 3일 (계사) 5번째기사 김상로가 관동에 영남 의 곡물 운송을 독촉 해 주기를 상소하다</p>	<p>강원 감사 김상로(金尙魯)가 상소하기를, “백성의 굶주림을 날로 심해지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으니, 믿을 것은 오직 영남의 곡물뿐입니다. 황급한 나머지 연속 공문을 띄워 조정의 명령에 따라 구획(區劃)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으나, 경상 감사의 회답에는 ‘북도에 곡물을 실어보낸 뒤에 여분이 있으면 본도(本道)에 줄 수가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비국에서 4천 곡(斛)을 더 덜어 주라고 하였으나 결코 묶어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은 바로 나라의 백성이고 곡물은 바로 나라의 곡물인데, 동과 북이 무슨 차별이 있겠으며 사랑하고 미워함이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북도에 곡물을 다 실어보낸 뒤에 비로소 추후하여 주기로 한다면, 관동의 백성은 죽어버린 지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청컨대 비국의 낭청(郎廳)을 보내어 기한을 정하고 운송을 독촉하여 관동 백성의 죽어가는 목숨을 구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비국의 낭청이 왕래하자면 폐를 끼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비국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p>	<p>江原監司金尙魯上疏言： 民飢日急，救濟無策，所靠者惟嶺南穀也。 遑急之極，連續論移，要依朝令區劃，而嶺伯回移有曰，‘北關移粟之後，如有餘穀，則方可及於本道，’ 又曰，‘備局加劃四千斛，決難括送’ 云。 民是國民，穀是國穀，東北何間，愛憎何有？ 若待北穀之盡輸，始許追給，則東民死已久矣。 請遣備郎，刻期督運，以濟東民瀕死之命。 批曰：“備郎往來，不無貽弊，其令備局嚴飭。</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4월 10일 (기해) 6번째기사 굶주린 백성의 신포를 감해 주고 귀농케 하</p>	<p>굶주린 백성의 신포(身布)를 감해 주고 타일러 본토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영동(嶺東)의 유민(流民)으로 서울에 들어온 자가 매우 많아서, 진흙이 이미 끝났어도 오히려 돌아가려 하지 않자 대신이 말을 하였는데,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만일 신포를 감해 주면 저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건감(蠲減)을 허락하고 효유하여 귀농(歸農)케 하라고 명한 것이</p>	<p>命減饑民身布，諭還本土。 時嶺東流民之入京者甚多，賑既畢猶不肯還，大臣以爲言，朴文秀曰：“若減身布，則自當還去。” 上命許蠲減，使之曉諭歸農。 文秀曰：“浦項倉牟、米，今方裝載入北，而第聞北路聲息，則永興以</p>

<p>다</p>	<p>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포항창(浦項倉)의 쌀과 보리를 지금 배에 실어서 북도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북도의 소식을 들은즉 영흥(永興) 이남은 5월에 진휼이 끝나므로 진휼곡을 혹 잇대어 줄 수 있거니와, 정평(定平) 이북은 6월 그믐께나 진휼이 끝날 것인데 진휼할 밀천이 계속 잇대어 줄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신히 살려놓은 백성이 장차 모두 죽게 되었으니, 만약 몇만 곡(斛)의 알곡을 얻을 수 있다면 거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하(嶺下) 7읍의 세미(稅米)와 야읍(野邑)에 있는 공목 작미(公木作米)9985) 를 연해(沿海)의 군작미(軍作米)와 교환하여 북도로 실어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2만 곡은 대신이 이미 어렵게 여기니, 5,6천 곡만이라도 우선 바꾸어서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도의 일이 급하니 속히 거행해야 할텐데, 2만 곡의 수량을 대신이 이미 어렵게 여긴다면 우선 5천 곡만이라도 바꾸어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p>	<p>南, 五月當畢賑, 故賑穀或可繼給, 而定平以北, 則畢賑在六月之晦, 賑資無繼給之勢。艱辛救活之民, 必將盡劉, 若得數萬斛實穀, 則庶可救得。嶺底七邑稅米及公木作米在野邑者, 以沿海軍作米相換, 令北道運去似好。而二萬斛, 爲大臣所持難, 則雖五六千斛, 宜先換送焉。” 上曰: “北路事急矣, 速爲舉行, 而二萬之數, 大臣既難之, 則先以五千斛, 換送宜矣。”</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4월 23일 (임자) 3번째기사  박문수가 청나라 돈을 무역해 올 것과 유기를 거두어 주전할 것을 청하다</p>	<p>임금이 주장을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진휼하는 고을의 수량을 교체하는 것은 크게 민폐가 따르는 일입니다. 대관(臺官)의 말을 굽어 따르는 것은 대간(臺諫)의 체통을 중히 여기시는 데서 나온 것이겠으나, 우선 참작하여 용서하고 앞으로의 공효를 책(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때에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철보(李喆輔)와 회양 부사(淮陽府使) 이이장(李彝章)도 좌파(坐罷) 중에 끼여 있으므로 박문수가 말을 한 것이다. 박문수가 또 말하기를,  “북도의 운곡 어사(運穀御史)와 감진 어사(監賑御史)에게 포상을 더하여 그 노고를 위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에게 물었는데, 김재로가 말하기를,</p>	<p>上行畫講。特進官朴文秀言: “賑邑守令之遞易, 大爲民弊。俯從臺言, 雖出於重臺體, 然宜姑參恕, 以責來效。” 上允之。時安邊府使李喆輔、淮陽府使李彝章, 亦在坐罷中, 文秀爲之言。文秀又言: “北道運穀御史及監賑御史, 宜加褒賞, 以酬其勞。” 上以問領議政金在魯, 在魯曰: “御史本無施賞之規矣。” 遂寢之。文秀又極言錢貴之弊, 請移咨質來北錢, 又令自大臣以至小民, 全用沙器, 而盡聚國中鑿</p>

	<p>“어사는 본래 시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자, 드디어 정지하였다. 박문수가 또 돈이 귀한 폐단을 극진히 말하고 자문(咨文)을 보내서 청나라 돈[北錢]을 무역해 오기를 청하고, 또 대신으로부터 소민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사기(沙器)만을 쓰도록 하고 국내의 유기를 모조리 거두어 돈을 주조하기를 청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의논해 보겠다.”  하였다.</p>	<p>器以鑄錢，上曰：“當與大臣議之。”</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5월 14일  (임신) 2번째기사  송인명이 재이를 진계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재이(災異)로써 진계하고, 이어 말하기를,  “신이 들은즉 중외(中外)에서 기근(饑饉)과 여역(癘疫)으로 사망자가 서로 잇달고 있다 하니 바야흐로 구제하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즈음에 지금 다행히 비가 내렸으니, 혹 풍년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비가 내렸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야 있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장기 현감(長鬐縣監) 서성경(徐性慶)은 백성이 굶주린다 하여 마음대로 군작미(軍作米)를 풀어 조곡(糶穀)으로 내어 주고 그 죄를 자청하였습니다. 그 정상이 용서해 줄 만하니, 곧바로 사목(事目)을 가지고 죄줄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나문(拿問)을 참작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모두 사목대로 엄벌해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드디어 송인명의 말에 따르지 않았고, 감사 심성희(沈聖希)는 그의 죄를 계청하지 않았다 하여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저번에 관동의 기민(饑民) 중에서 귀농(歸農)을 자원한 자에게는 금년의 신포(身布)를 탕감해 주라시는 하명이 계셨습니다. 또 들은즉 진흥청에서 기민으로 신역(身役)이 있는 자를 가려내 보니 관동의 기민 중에는 신역이 있는</p>	<p>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宋寅明，以災異陳戒， 仍言：“臣聞中外飢饉、癘疫，死亡相續，方思救濟之道，而今幸雨下，或冀有年矣。” 上曰：“豈可得雨而弛心乎？” 寅明又言：“長鬐縣監徐性慶，以民飢擅發軍作米以糶之，自請其罪。 其情容有可恕，不可直以事目罪之。 宜參酌拿問。” 上問諸臣，皆以爲當依事目嚴處，上遂不從寅明之言。 以道臣沈聖希不爲啓請其罪，命罷其職。 寅明曰：“向者，關東饑民自願歸農者， 自上有今年身布蕩滅之命矣。 且聞自賑所，抄出饑民之有身役者，關東饑民中有身役者甚尠云。 今則賑事已畢，又當還歸本土，竝與前日歸農者，今年身布一併蠲減似宜。” 上從之。 寅明又言：“北運穀致敗於關東，而拯出時不無弄奸、偷食之弊，故</p>



	<p>자가 극히 적었다 합니다. 이제는 진흙하는 일도 이미 끝났으니 또 마땅히 본토로 돌려보내야 할텐데, 전일에 귀농한 자들과 아울러 금년의 신포를 똑같이 건감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북도로 곡물을 운송하던 배가 관동에서 치패(致敗)하였는데 곡물을 건져낼 때에 농간과 투식(偷食)의 폐단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거둬 들고 있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건져낼 때에 굶주린 백성들이 설사 훔쳐 먹었다 하더라도 심하게 다룰 만한 일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또 운송하는 일도 이미 끝났으니 눈감아 주되 갇힌 무리들은 아울러 놓아보냄이 마땅하며, 곡물 또한 탕감해 줌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道臣今方徵捧云。 臣意則拯出之際，飢民設或偷食，非可深治。 且運役已畢，宜皆闕略，見囚之類，竝令放送，穀物亦宜蕩減。” 上許之。</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5월 15일 (계유) 2번째기사  기민에게 식량을 주어 돌려보내고 환자는 완쾌될 때까지 돌보기로 하다</p>	<p>진흙청에서 아뢰기를,  “기민(飢民)에게 마른 곡식과 죽을 쑤어 주던 일을 이달 15일 거두는 일로 이미 윤허를 받들었습니다. 마른 곡식을 주던 기민 1천 7백여 구(口)와 죽을 쑤어 주던 기민 3백여 구를 오늘 일제히 밥을 먹인 뒤에 식량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병막(病幕)에서 앓고 있는 기민 20여 구는 우선 막에 머물게 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연속 구료하여 완쾌되기를 기다려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p>	<p>賑恤廳啓言：“乾糧及饋粥飢民，今月十五日掇罷事，既已蒙允。 乾糧飢民一千七百餘口及饋粥飢民三百餘口，今日竝皆饋飯後，給糧放送，病幕飢民方痛者二十口，姑令留幕給糧，連爲救療，待其蘇完放送。” 上可之。</p>
<p>영조 55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6월 4일 (신묘) 2번째기사  주조의 여부와 대소전 병행에 대해 의논하다</p>	<p>돈을 더 주조해야 할 것인가와 대소전(大小錢)의 편부(便否)를 중외에 물어보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돈을 주조하자는 의논을 주장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박문수가 청나라 돈[燕錢]을 무역해다가 우리 나라 돈과 병행하자고 하는데, 만일 저들 돈을 가지고 합해서 주조한다면 이는 잠상(潛商)과 다를 것이 없고, 또 병행해서 쓰게 한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彼我)의 분별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사단이 생기기 쉬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 나라 돈을 금하</p>	<p>命以加鑄錢及大小錢便否，詢于中外。 時靈城君朴文秀主鑄鐵之議，領議政金在魯言：“朴文秀請得燕錢，欲與我國錢竝行，而若以彼錢合鑄，則此無異潛商，又令并行，則愚民何以知彼我之分乎？必易生事矣。 若禁我國錢而專用彼錢，則貨權在彼，初雖設行，未必有</p>

고 오로지 저들의 돈만 쓰게 한다면, 화폐의 권한은 저들에게 있으니 처음에는 비록 실행한다 해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여러 재신(宰臣)들과 상의해 보니 모두 어렵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돈이 권한이 두 곳에 있게 되면 큰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천하의 일이란 한 집안의 사의(私議)가 아닙니다. 여러 재신 이하가 모두 불편함을 말하면,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박문수에게 이르기를,  
“영성(靈城)은 그 이해(利害)를 분명히 말해 보라.”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지금 경외(京外)에서는 전화(錢貨)가 크게 흉년 들어 부자 형제가 장차 보전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해서 크게 흠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나라 돈을 무역해 와서 쓰는 것이 과연 불편할 것 같으면, 재상이나 사민(士民)을 막론하고 사기(沙器)로써 유기(鑰器)를 대신하여 쓰되, 모든 일용(日用)의 유기를 아울러 거두어 모아 돈을 주조하면, 족히 오늘날의 물고기가 입을 오물거리며 괴로워하듯 하는 위급함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말도 또한 학철(涸轍)10011)의 위급을 구해보자는 계획에서 나온 것으로 부득이해서 한 말입니다. 숙종 초년에 명신(名臣)·석보(碩輔)들이 어찌 지금만 같지 못했겠습니까마는, 모두 청나라 돈을 무역해다가 쓰자고 하여 주문을 보내기까지 하였으니, 이 말은 신이 창출(創出)한 말이 아닙니다.”

하고, 송인명이 말하기를,  
“지금은 돈을 더 주조하는 길 외에는 다른 좋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천하의 권한은 위에 있어야지 아래로 돌아감은 불가합니다. 사주(私鑄)에 이르러서는 더욱 엄금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년을 한정하여 구전(舊錢)을 통행(通

弊。臣與諸宰商議，則皆以爲難矣。”

上曰：“錢權有二，則有大弊矣。”寅明曰：“天下事非一家私議。諸宰以下皆言不便，則亦無奈矣。”上謂文秀曰：“靈城，其明言利害也。”文秀曰：“即今京外錢貨大荒，父子兄弟將至於不保之境。民心幾何不至於大渙散乎？燕錢貿來，果若不便，則勿論宰相、士民，以沙器代鑰器，而凡日用鑰器，並收聚鑄錢，足救今日魚喁之急。臣言亦出於救涸之計而不得已也。肅廟初年，名臣、碩輔豈不若今朝，而皆以貿用燕錢，至於移咨，此非臣創出之言也。”寅明曰：“今則加鑄之外，無他善策。而第貨權，宜在於上，而不可歸之於下。至於私鑄，尤可嚴禁。自今限三年通行舊錢，三年以後，令行新錢，則富民雖欲藏置舊錢，亦不可得矣。”上曰：“卿言是也。以加鑄爲定，諸臣各陳所見。”備堂金始炯、閔應洙、趙尙綱等皆以爲當加鑄，尹陽來以鑄用鐵錢爲便，金若魯對以宜別鑄當十錢、當百錢，而舊錢則仍置並行爲便。上又問三司及承旨，掌令柳萬樞曰：“大小錢並行爲便。”玉堂尹光毅

	<p>行)하게 하고 3년 뒤에는 신전(新錢)을 통행하게 하면, 부민(富民)들이 비록 구전을 저장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경의 말이 옳다. 더 주조하는 것으로 정할 것이니, 여러 신하들도 각자 소견을 진달하라.”</p> <p>하였는데, 비국(秘國) 당상(堂上) 김시형(金始炯)·민응수(閔應洙)·조상경(趙尙綱) 등은 모두 더 주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윤양래(尹陽來)는 철전(鐵錢)을 주조해 쓰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하였으며, 김약로는 따로 당십전(當十錢)·당백전(當百錢)을 주조하되 구전은 그대로 두고서 병행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다.</p> <p>임금(上)이 또 삼사(三司)와 승지(承旨)에게 물으니, 장령(張令) 유만추(柳萬樞)는 말하기를,</p> <p>“대소전(大小錢)을 병행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p> <p>하였고, 옥당(玉堂) 윤광의(尹光毅)는 말하기를,</p> <p>“오늘날의 걱정은 돈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주(人主)의 절용(節用)과 애민(愛民)에 있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그것은 오유(迂儒)의 말이다.”</p> <p>하였다. 임금(上)이 또 말하기를,</p> <p>“나의 뜻은 돈을 없애버리면 편리할 것으로 여겼으나 여러 신하들의 의논은 없앨 수 없다고 여기는데, 옛사람의 말에 ‘피는 경서(卿庶)에까지 물어봐야 한다.[謀及卿庶]’라고 하였다. 더 주조하는 편부(便否)와 대소전을 병행한다는 말로 한성(韓城) 관윤(官潤)이 오부(五部)의 방민(坊民)을 불러서 물어보고 또 관문(關文)으로 제도(諸道)에 물어보도록 하라.”</p> <p>하였다.</p>	<p>曰：“今日之憂，不在於錢之多小，而惟在於人主之節用、愛民。” 上曰：“此迂儒之言也。” 上又曰：“予意則以罷錢爲便，而諸臣之議以爲不可罷，古人云，‘謀及卿庶。’以加鑄便否及大小錢並行之說，漢城判尹招問五部坊民，又以關文詢諸道。</p>
<p>영조 56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p>	<p>황해(黃海) 수사(水使) 홍원익(洪元益)을 나문(拿問)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청나라(淸) 사람들의 배가 어채(漁採)하기 위해 해서(海西) 지방의 경계를 들락거리며</p>	<p>命拿問黃海水使洪元益。時淸人船爲漁採，出入海西界，有奪掠人物、軍器</p>

<p>(乾隆) 7년) 8월 5일 (신묘) 7번째기사 청인들이 노략질함에 해당임 관리를 벌주다</p>	<p>사람과 군기(軍器)를 노략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황해 감사(黃海監司) 송수형(宋秀衡)이 지방관인 장연 부사(長淵府使)와 오차포 첨사(吾叉浦僉使)가 능히 금집(禁戢)하지 못하였다 하여 장문(狀聞)해 파출(罷黜)시켰다. 또 수사(水使)가 즉각 감영(監營)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여 엄하게 핵문(覈問)한 뒤에 장문하여 죄줄 것을 청하였다. 대신(大臣)도 또한 그렇게 말을 하였으므로,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p>	<p>者，黃海監司宋秀衡，以地方官長淵府使及吾叉浦僉使不能禁戢，狀聞罷黜。又以水使不卽報營，嚴覈狀聞，請罪之。大臣亦以爲言，上從之。</p>
<p>영조 56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9월 19일 (을해) 1번째기사 동조에 진봉하는 것 외에는 가을보리까지 한정하여 정봉하라고 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관동백(關東伯)이 환곡(還穀)의 묵은 포흙(逋欠)을 정지시켜 줄 것을 장청(狀請)하였는데 반을 감해 주도록 허락함이 마땅하여, 북백(北伯) 또한 관서(關西)에서 빌린 돈 2만 민(緡)을 우선 그대로 보류해 진휼(賑恤)에 보태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또한 허락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병영(平安兵營)의 장십부군(壯十部軍)의 군제(軍制)가 문란한 것과 안주목(安州牧)의 성첩(城堞)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는 도신(道臣)과 수신(師臣)에게 이정(釐正)하고 수리하도록 신칙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오랫동안 인입(引入)하다가 이때에 와서 또한 나와 입시(入侍)했는데, 상직(相職)을 굳이 사양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경상 감사 김상성(金尙星)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경(卿)에게 방면(方面)을 맡겼고 경이 바야흐로 부임(赴任)하려 하니, 내가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없게 되었다. 힘쓸지어다.” 하고, 드디어 하교하기를, “영남의 좌도(左道) 연안(沿岸)에 관한 일은 이미 하교하였지만, 바닷가의 백성들을 상상한다면 먹고 쉬는 것을 어찌 방중하게 할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진상(進上)으로서 좌도 연안에서 봉진(封進)하는 것은 가을보리까지를 한</p>	<p>乙亥/上引見大臣、備堂。左議政宋寅明：“以關東伯，狀請停還穀舊逋，宜許半減，北伯亦請關西所貸錢二萬緡，姑許仍留補賑，亦宜許之。平安兵營壯十部軍制之紊亂、安州牧城堞之頽圯者，宜飭道、帥臣，釐正繕修。”上竝從之。右議政趙顯命久引入，至是亦出而入侍，固辭相職，上慰諭不許。上諭慶尙監司金尙星曰：“任卿方面，卿方赴任，予無南顧之憂。其勗之哉。”遂教曰：“嶺南左沿事，頃已下教，而想像海民，食息奚弛？大小進上，左沿所封者，限麥秋停捧，示我伸慈聖之德意，軫小民之矜惻。”上初以東朝所進者外，停捧爲教，旋又教曰：“慈聖之意，旣欲蠲減，恤民之德至矣。事親若曾子可也，予曷敢不仰體？”</p>

	<p>정하여 정봉(停奉)함으로써 내가 자성(慈聖)의 덕의(德意)를 펴고 소민(小民)의 불쌍하고 측은한 정상을 진념(軫念)함을 보이게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동조(東周)에 진봉하는 것 외에는 정봉(停封)하라고 하고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하고하기를,</p> <p>“자성의 뜻은 이미 견감(鑷減)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백성을 애휼(愛恤)하는 덕이 지극하다. 아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증자(曾子)와 같이 해야 옳으니, 내가 어찌 감히 우러러 체득(體得)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영조 56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乾隆) 7년) 10월 5일 (경인) 1번째기사</p> <p>황당선·사대부의 여가 침탈과 천경의 꺾직하는 폐단에 대해 묻다</p>	<p>임금이 주장(晝講)을 행하였다. 황해 수사(黃海水使) 이의익(李義翼)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이의익이 황당선(荒唐船)10095)의 폐단을 진달하기를,</p> <p>“해삼(海蔘)을 채취하는 황당선이 우리 경내(境內)에 표박(漂泊)하는 일이 근래에 자못 잦아 바닷가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낮이 익어 혹은 서로 상거래를 하여, 마침내 변금(邊禁)이 점차 해이해지게 만들고 있으니, 이것은 엄격하게 막아야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이 병위(兵威)를 많이 베풀고 황당선을 쫓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이후로 황당선이 지경을 범할 경우 수령과 변장은 율(律)에 의거해 엄하게 결곤(決棍)하고 서로 내통하여 상거래를 한 바닷가의 백성은 먼저 참(斬)하고 뒤에 아뢰이 마땅하다.”</p> <p>하였다. 또 한성 주부(漢城主簿) 이맹휴(李孟休)와 오부(五部)의 관원을 불러 사대부가 여가(閭家)를 탈입(奪入)하는 것과 천경(踐更)10096)이 꺾직(闕直)하는 폐단에 대해 묻고, 말하기를,</p> <p>“범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귀가(貴家)·세가(勢家)라 할지라도 숨기지 말라.”</p> <p>하였다. 중부(中部)의 관원이 말하기를,</p>	<p>庚寅/上行晝講。 黃海水使李義翼辭朝，上召見之。 義翼陳荒唐船之弊曰：“唐船之採蔘者，漂泊我境，近頗頻數，故濱海愚氓，與之慣熟，或相賣買，遂使邊禁漸弛，此宜嚴防也。” 上曰：“守令、邊將多設兵威，逐去唐船云者，明是欺君。 此後唐船犯境者，守令、邊將依律嚴棍，沿民之交通賣買者，宜先斬後啓也。” 又召漢城主簿李孟休及五部官，問士夫閭家奪入、踐更闕直之弊，曰：“有犯者，雖貴勢家，其毋隱。” 中部官言：“奪入之弊，間或有之。” 東部官言：“朝士家，或有不踐更者。” 上并命秋曹查治。 以李孟休對策，有經綸才亟稱之，教曰：“京兆，古之開封府也，部官，昔之雒陽令。 既不能令行禁止，府隸又無料布，至以</p>

	<p>“탈입하는 폐단이 간혹 있습니다.”        하고, 동부(東部)의 관원이 말하기를,        “조사(朝士)의 집에서 간혹 천경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君)이 모두 추조(秋曹)로 하여금 조사해서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그러        고 이맹휴의 대책(對策)에 경륜(經綸)의 재주가 있다고 크게 칭찬하고, 하교하        기를,        “경조(京兆)는 옛날의 개봉부(開封府)이며, 부관(部官)은 옛날의 낙양령(雒陽        令)이다. 그런데 이미 능히 명령을 시행하여 금지시키지도 못하고, 부례(府        隸)10097) 는 또 요포(料布)가 없어서 심지어 금속(禁贖)으로 겨우 먹고 산다        고 하니, 이와 같고서도 어떻게 도민(都民)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비국(備局)        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해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p>	<p>禁贖糊口云，若是而何以濟都民？其令        備局，商確稟處。”</p>
<p>영조 56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10월 21        일(병오) 1번째기사        김한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영수 관수의        1/8로 줄이게 하다</p>	<p>김한철(金漢喆)·이제원(李濟遠)을 부교리(副校理)로, 남태제(南泰齊)를 교리(校        理)로, 김광세(金光世)를 수찬(修撰)으로, 이천보(李天輔)를 헌납(獻納)으로 삼        았다. 제도(諸道)의 영수(營需) 및 관수(官需)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선혜청(宣        惠廳)에서 아뢰기를,        “동북(東北) 지방에는 흉년이 들었고 제도(諸道)도 모두 풍년은 아니니, 청컨        대 영수·관수의 8분의 1을 줄이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p>	<p>丙午/以金漢喆、李濟遠爲副校理，南        泰齊爲校理，金光世爲修撰，李天輔爲        獻納。命減諸道營需及官需。宣惠        廳啓言：“東北凶荒，諸道俱不豐登，        請減營、官需八分之一。”從之</p>
<p>영조 56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11월 13        일(무진) 2번째기사        숭문당에서 총영현관        이라는 어제(御製)를 내리다</p>	<p>임금이 태학(太學)의 재임(齋任)을 숭문당(崇文堂)에서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이 당(堂)은 곧 선조(先朝) 때 지은 것으로 ‘숭문(崇文)’이라 편액(扁額)한 것        은 ‘숭유(崇儒)’의 뜻이며, 이 당에서 너희들을 소견하였으니 내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드디어 어제문(御製文)을 내렸는데, 제목은 총영현관(寵榮賢        關)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저 현관(賢關)을 바라보매 경전(經傳)에 실려 있도다. 열조(列朝)의 배양(培</p>	<p>上召見太學齋任于崇文堂，教曰：“此        堂卽先朝所建，而扁以崇文，卽崇儒之        意，而召見爾等於此堂，予意非偶        也。”遂下御製文題曰寵榮賢關。其        文曰：        瞻彼賢關，經傳載焉。列朝培養，賢        關爲先。命修舊例，意豈偶然？面賜</p>

	<p>養)은 현관을 우선으로 하였도다. 옛 전례(前例)를 수명(修明)케 하였으니, 뜻이 어찌 우연하라? 마주 대하여 주효(酒肴)를 내리노니, 더욱 힘씀이 마땅하다.”</p> <p>하였다. 이어서 주효를 내리고 여러 유생과 함께 마시도록 하였다.</p>	<p>酒肴, 益宜勉旃。 仍賜以酒肴, 令與諸生共飲。</p>
<p>영조 56권, 18년 (1742 임술 / 청 건륭 (乾隆) 7년) 12월 1일 (병술) 1번째기사 태학에 감관을 하사하 다</p>	<p>태학(太學)에 감관을 하사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익정(二益正)에게 서제(書題)를 가지고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서종급(徐宗汲)과 함께 태학에 가서 선비에게 시험을 보이라고 명하였다.</p>	<p>朔丙戌/頒柑于太學, 命都承旨李益正, 持書題, 與弘文提學徐宗汲, 詣太學試士。</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1월 1일 (병진) 2번째기사 정석오가 성수가 50이 므로 잔치를 베풀 것 을 청하다</p>	<p>예조 판서 정석오(鄭錫五)가 숙묘 경인년(10128)의 고사(故事)를 인용하면서 아뢰기를, “성수(聖壽)가 이미 50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동조(東朝)를 모시고 아래로는 동궁(東宮)이 있으니, 칭경(稱慶)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참으로 합당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가지 정사(政事)도 행하지 못하였고 한 가지 은혜도 강구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실로 낮이 부끄럽다. 무슨 마음으로 잔치를 받는단 말인가? 선조(先朝) 을유년(10129)에는 진연(進宴)을 행할 것을 청하여 병술년(10130)에 비로소 행하였으며, 경인년의 고사는 성수(聖壽)가 50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곧 성후(聖候)가 회복된 경사 때문이었으니, 오늘날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위로 자성(慈聖)을 받들고 있으니, 어찌 칭상(稱觴)10131)하기를 원하지 않으랴마는, 자교(慈教)가 겸억(謙抑)하신지라 감히 우러러 청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지극한 소원은 오직 조용히 지내고 싶은 것일 뿐이니, 경(卿)들은 마땅히 이 일을 청해서는 안될 것이다.”</p> <p>하였다. 대신(大臣) 등이 말하기를,</p>	<p>禮曹判書鄭錫五引肅廟庚寅故事, 奏曰: “聖壽既躋五旬。上奉東朝, 下有春宮, 稱慶設宴, 允合繼述之道。”上曰: “一政未舉, 一惠未究, 予實靦顏。何心受宴? 先朝乙酉, 請行進宴, 而至丙戌始行, 庚寅故事, 則非以聖壽爲五十也, 卽以聖候平復之慶, 則非可援於今日者也。今予上奉慈聖, 豈無稱觴之願, 而慈教謙抑, 不敢仰請。予之至願, 惟欲就閒, 卿等不當以此爲請也。”大臣等曰: “至願之教, 非臣等所敢承聞者。惟以進宴事, 積誠仰請于東朝, 是臣等之望也。”</p> <p>【史臣曰: 聖上每以辛、壬誣獄之危逼聖躬, 常有脫屣千乘之意, 書揭孤竹清風四字于擘上, 而及至苦心調劑, 屢發</p>

	<p>“지극한 소원’이란 하교는 신 등이 감히 받들어 들을 바가 아닙니다. 오로지 진연하는 일을 정성껏 동조께 우러러 청하는 것이 신 등의 소망입니다.” 하였다.</p> <p>사신은 말한다. “성상께서 매년 신축년(10132)·임인년(10133)의 무옥(誣獄)이 성공(聖躬)을 위협하고 꺾박한 것 때문에 항상 임금의 지위를 헌신짝처럼 벗어버릴 뜻이 있어 ‘고죽청풍(孤竹淸風)’(10134) 네 글자를 벽위에 써 걸어 두었는데, 고심(告心)으로 조제(調劑)하기에 미처서는 사교(辭教)에 누차 나타내었지만 조정이 조용하지 아니하고 당의(黨議)가 횡행하니, 서글픈 나머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지극한 소원’이란 등의 하교를 여러 신료를 인접(引接)할 때 꺼내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찌 다만 성심(聖心)의 번뇌일 뿐이라! 곧 못 신하들의 죄이니, 통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p>	<p>辭教，而朝著不靖，黨議橫肆，則愀然不樂，至發至願等教於引接群僚之際，嗚呼！此豈但聖心之煩惱而已？及群下之罪，可勝痛哉？】</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월 1일 (병진) 3번째기사 권농의 윤음을 팔도와 양도에 내리다</p>	<p>권농(勸農)의 윤음(綸音)을 8도와 양도(兩都)(10135)에 내리며 말하기를, “삼양(三陽)(10136)이 회태(回泰)(10137)하니, 봄철의 농사일이 가까이 닳쳤다. 해마다 세수(歲首)에 반드시 권농하는 뜻을 내렸건만 문구(文具)가 되고 말아 마음속으로 항상 개탄스럽게 생각해 왔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데, 먹는 것의 근본이란 농사이다. 아! 제도(諸道)의 도신(道臣)과 양도의 유수(留守)는 공경히 이러한 뜻을 체념(體念)하여 힘쓰고 또 힘쓸지어다.” 하였다.</p>	<p>下勸農綸音于八道、兩都曰：“三陽回泰，東作在近。每年歲首，必下勸農之旨，而作爲文具，心常慨然。國以民爲本，民以食爲本，食之本，農也。咨！諸道道臣、兩都留守，欽體此意，懋哉懋哉！”</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월 17일 (임신) 2번째기사 임금이 담 증세가 있어 내국에서 입진하다</p>	<p>내국(內局)에서 입진(入診)하니, 이 때 임금이 담(痰) 증세가 있어 몸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었다.</p>	<p>內局入診時，上以痰候，有不安節也。</p>
<p>영조 57권, 19년</p>	<p>사옹원(司饗院)에서 아뢰기를,</p>	<p>癸酉/司饗院啓言：“今年磁器所白土，</p>



<p>(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1월 18일 (계유) 1번째기사  사용원에서 자기소의 백토를 본도에서 차원을 정해 보내도록 아뢰다</p>	<p>“올해 자기소(磁器所)의 백토(白土)는 전례에 의거하여 본도(本道)에서 차원(差員)을 정해 파서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윤허하였다. 이에 앞서 자기를 굶는 백토는 백성을 부려 강원도 양구(楊口) 땅에서 파내게 하였는데, 몇 해의 재황(災荒) 때문에 본원의 낭관(郎官)을 파견해 상정미(詳定米)를 획급(劃給)하고 백성을 모아 파내게 함으로써 백성의 폐막(弊瘼)을 덜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다시 구례(舊例)대로 복구한 것이다.</p>	<p>依例自本道，定差員掘送。”上允之。  先是磁器所燔白土，役民掘取於江原道楊口地，而以數年災荒，遣本院郎，劃給詳定米，募民掘取，以省民弊。至是年稍豐，還復舊例。</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1월 25일 (경진) 3번째기사  강원도 삼척의 옥원창에 불이 나다</p>	<p>강원도 삼척(三陟)의 옥원창(沃原倉)에 불이 일어나 모두 타 버렸다. 타다 남은 조곡(糶穀)은 모곡(耗穀)을 덜어 나누어 주고, 비국(備局)의 회모(會耗)로 창고 건물을 짓는 것을 돕도록 하였으니, 도신(道臣)의 장청(狀請)을 따른 것이었다.</p>	<p>江原道三陟沃原倉失火，延燒以糶穀。餘燼，除耗分給，以備局會耗，助建倉舍，從道臣狀請也。</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1월 25일 (경진) 6번째기사  이의현에게는 식물(食物)을, 심수현의 부인에게는 월름(月廩)을 내리라고 명하다</p>	<p>봉조하(奉朝賀) 이의현(李宜顯)에게 식물(食物)을, 그리고 고(故) 상신(相臣) 심수현(沈壽賢)의 부인에게 월름(月廩)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의현은 청백·소탈한데다 집이 가난하여 지위가 원로(元老)에 올랐지만, 거친 음식조차 자주 못먹을 때가 있었다. 심수현 역시 엄근(廉謹)하여 죽었을 때 처자가 먹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 대신(大臣)이 혜양(惠養)의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던 것이었다. 조신(朝臣) 집안의 부인(婦人)으로 나이 아흔이 넘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봉작(封爵)을 허락했는데, 대개 선조(先朝) 때 이미 시행한 전례로 나이 많은 사람을 존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작년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참혹하게도 많아 몇 만 명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몰살한 경우는 환곡(還穀)을 탕감해 주고, 장례와 매장 등에 관한 일을 제도(諸道)의 도신에게 신칙해 조정에서 불쌍히 여기고 애휼(愛恤)한다는 뜻을 보여 주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남녀가 혼인하여 같</p>	<p>命賜奉朝賀李宜顯食物及故相沈壽賢夫人月廩。宜顯清疎家貧，位躋元老，而蔬糲屢空。壽賢亦廉謹，及卒，妻子艱食。大臣請施惠養之典，上從之。朝臣家婦人年九十者，特許封爵，蓋以先朝已行之例而出於尊年之意也。右議政趙顯命曰：“昨年癘疫，死亡孔慘，不知爲幾萬。全家闔沒者，蕩滅其還穀，而葬、埋等節，宜飭諸道道臣，以示朝家愍恤之意。且男女居室，人倫所重，民無怨曠，王政攸先。方當東宮嘉禮之時，宜推太王同樂之恩，貧窮過時無以嫁娶者，男子限三十</p>

	<p>이 사는 것은 인륜의 중대한 바이니, 백성들이 홀로 사는 것을 원망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왕자(王者)의 정치에서 먼저 할 바입니다. 바야흐로 동궁(東宮)의 가례(嘉禮)하는 날을 당하였으니, 태왕(太王)의 같이 즐겼던 것과 같은 은혜를 미루어, 가난하고 궁핍하여 때를 넘기고도 시집 장가 못한 사람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5세로 한정하여 정밀하게 뽑고 구별하되, 서울은 호조와 선혜청에 지방은 도신과 수령에게 모두 혼인을 돕도록 하여 필부 필부(匹夫匹婦)가 짝을 얻지 못하는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歲，女子限二十五歲，精抄區別，內而戶曹、惠廳，外而道臣、守令，皆令助婚，俾無匹夫匹婦不獲之怨。” 上從之。</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월 28일 (계미) 6번째기사 첩가의 비곡과 모곡으로 주홀케하다</p>	<p>첩가(帖價)의 비곡(備穀) 3천 곡(斛) 및 모곡(耗穀) 1천 곡에서 경기 감사 홍경보(洪景輔)에게 주어 바닷가의 재해를 입은 일곱 고을을 주홀(賙恤)케 하라고 명하였다. 또 영남·호남의 쌀과 콩으로 관동에 봉류(捧留)한 것 1만 곡과 영남의 군작 저치미(軍作儲置米) 1만 곡을 함경 감사 윤용(尹容)에게 대여해 줄 것을 허락하고는 북관(北關)으로 수송해 기민(飢民)을 분진(分賑)케 하였다.</p>	<p>命給帖價自備穀三千斛及耗穀一千斛于京畿監司洪景輔， 賙恤沿海被災七邑。 又許貸嶺、湖米太之捧留關東者一萬斛及嶺南軍作儲置米一萬斛于咸鏡監司尹容， 轉輸北關， 分賑飢民。</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2월 8일 (임진) 2번째기사 오광운이 당론의 화가 있어도 성의를 더할 것을 상소하다</p>	<p>예조 참판 오광운(吳光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어제 약원(藥院)에 내리신 비답을 보고 신이 홀로 몰래 자탄(自嘆)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또 기(氣)에 동요되셨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계복(啓覆) 때 신이 ‘이치에 따르고 기에 동요되어서는 안된다.[循乎理不動乎氣]’란 일곱 글자를 우러러 전석(前席)에 바쳤는데, 이제 와서 보건대 전하께서는 기분(氣分)에 대해 성찰(省察)하심이 없고, 신의 말은 성심(聖心)에 편하도록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청심(淸心)’ 두 글자로 하교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제일가는 요결(要訣)입니다. 대개 움직이는 것은 기(氣)요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理)입니다. 그 움직여 타당함에 지나치고 말하여 중도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가 이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가 그 기를 관섭(管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금이고 기는 신하이니, 기가 이를 따름은 신하가 임금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하의 한 마음의</p>	<p>禮曹參判吳光運上疏， 略曰： 伏見昨下藥院之批， 臣獨自竊嘆曰， ‘吾君又動乎氣矣。’ 昨冬啓覆時， 臣以 ‘循乎理不動乎氣’ 七字， 仰獻前席， 以今觀之， 殿下無所省察於氣分， 而臣言未蒙有概於聖心也。 殿下以淸心二字爲教， 此今日之第一要訣。 而蓋動者， 氣也， 使之動者， 理也。 其動而過當， 發而不中者， 是氣不聽命於理， 而理不能管攝其氣也。 理者， 君也， 氣者， 臣也， 氣之從理， 如臣之從君。 殿下—心之氣， 不能聽命於理， 則其何</p>

기가 능히 이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 세상을 관섭하여 극(極)이 있는 곳에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聖人)의 혈기(血氣)는 때로 쇠하는 경우가 있으되 성인의 지기(志氣)는 쇠할 때가 없습니다. 지기는 이를 위주로 하고 혈기는 기를 위주로 하는데, 전하의 기가 더욱더 지치게 된 것은 그 기를 위주로 하고 그 이를 위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리개가 하늘로 날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는 자연(自然)의 도(道)와 자신을 공손히 하여 남면(南面)하는 다스림에 있어서 돌아보건대, 어찌 일찍이 일분(一分)의 기력(氣力)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당론(黨論)의 화(禍)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서가 한 번 열리고 이 이름이 한 번 서자 일찍이 나라를 망치지 않은 경우가 없었으며, 그 잘못된 전례가 줄을 이었으되, 황명(皇明)처럼 혹심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 다. 신종 황제(神宗皇帝)가 당론이 골수에 박힌 것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한 사람을 의심하자 온 신료(臣僚)들을 의심하게 되고, 한 가지 일에 노하자 만사에 의심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 신하들을 두고 죽히 더불어 정치를 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나랏 일이 다시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함문(閹門)을 닫고 깊이 들어앉아 우불(吁拂)10172) 하는 바가 없게 되자, 위 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서로 믿는 마음이 없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는 의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인심은 흩어지고 온 법도가 허물어져 천하의 일이 한 번 떠나가자 미칠 도리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조정 신하들로 전하를 저버리는 자는 그 죄가 큼니다만, 다행스럽게 여길 것은, 성상께서 군하(群下)가 저버림이 있다 하여 혹시라도 깨우쳐 인도함에 게으르지 않으시고, 성지(聖志)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혹시라도 진쇄(振刷)에 해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혹 때로 격뇌(激惱)를 면치 못하기는 하지만, 또한 모두 멀지 않아 바른 데로 돌아오시

以管攝一世而會其有極乎? 聖人之血氣, 有時而衰, 聖人之志氣, 無時而衰。 志氣主理, 血氣主氣, 殿下之氣益憊者, 以其主氣而不主理也。 鳶飛魚躍之天, 恭己南面之治, 顧何嘗費一分氣力哉?

又曰:  
 黨論之禍, 可勝言哉? 此端一開, 此名一立, 未嘗不亡人家國, 覆轍相尋, 而未有如皇明之酷者。 神皇帝憤疾黨論, 入於骨髓, 疑一人而遍疑百僚, 怒一事而移怒萬事。 謂廷臣無足與有爲, 謂國事不復入心。 於是閉閣深居, 無所吁拂, 上下無相信之情, 君臣無相重之義。 馴致人心渙散, 百度蠱壞, 天下事一去而無可及矣。 今日廷臣之負殿下者, 其罪多矣, 所可幸者, 聖上不以群下之有負, 而或懈於訓迪, 不以聖志之不後, 而或弛於振刷。 時或不免於激惱, 而亦皆不遠而復是, 誠皇天佑我宗祔啓我聖衷, 使不與前代黨論之禍同歸於一轍也。 然殿下處分之際, 動氣如此, 則天理日弱, 客氣日盛。 一人二人安知不至於厭薄群下, 一事二事安知不至於膠固聖志, 而他日國事茫然無

	<p>니, 이것은 참으로 황천(皇天)이 우리 종쟁(宗祚)10173) 을 돕고 우리 성충(聖衷)을 열어 주시어 전대에 있었던 당론의 화(禍)와 같은 전철(前轍)로 함께 돌아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처분(處分)하실 즈음에 기를 움직이심이 이와 같으니, 천리(天理)는 날로 약해지고 객기(客氣)는 날로 왕성해 집니다. 따라서 한두 사람의 경우가 군하를 싫어하고 박대하는 데 이르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으며, 한두 일이 성지(聖志)를 굳게 만들어 뒷날 나랏 일이 아득하여 탈가(稅駕)10174) 하는 곳이 없게 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더욱 성의(聖意)를 더하여 스스로 힘쓰심이 마땅합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  “일에 따라 진면(陳勉)하니, 깊이 가상하게 여긴다. 상신(相臣)과 정신(廷臣)은 나를 업신여겼으니,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외에 다시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정신들을 돌아보건대, 단지 절로 텅 비어 쓸쓸할 뿐이니, 경은 그래도 힘쓰라. 나에게 비록 신하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찌 보잘것 없는 소신(小臣)을 위하여 마음을 쓰겠는가?”</p> <p>하였다.</p>	<p>稅駕之地也? 宜加聖意而自勉焉。  批曰: “隨事陳勉, 深庸尙矣。 相臣廷臣, 其謾我矣, 清心之外, 復何道乎? 環顧廷臣, 只自寥寥, 卿猶勉戒。 予曰有臣, 予豈爲么麼小臣而費心乎?”</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3월 20일 (갑술) 7번째기사  임금이 금주의 폐단에 대해 묻다</p>	<p>임금이 형조 참의 유복명(柳復明)을 불러 풍문으로 들은 금주(禁酒)의 폐단에 대해 묻기를,  “금주를 비록 그만둘 수는 없다 해도, 염문(廉問) 또한 폐단이 많으니, 도민(都民)으로 하여금 연못 속의 물고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p> <p>하니, 유복명이 대답하기를,  “신이 신금(申禁)하던 초기에 세 차례에 걸쳐 알아듣도록 하였고, 이어 또 방(榜)을 걸어 효유(曉諭)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릇 금법을 범하는 자는 일체 각부(各部)에 맡겨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본조(本曹)에서 금리(禁吏)를 내 보내면 빙자하여 침요(侵僥)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상 풍문으로 들어 알아차리고는 빗은 술의 대·중·소에 따라 율(律)에 의거해 다스리곤 하</p>	<p>上召刑曹參議柳復明, 問以風聞禁酒之弊曰: “禁酒雖不可已, 廉問亦多有弊, 使都民不至爲淵魚可也。” 復明對曰: “臣於申禁之初, 三度知委, 繼又揭榜曉諭。 凡犯禁者一委各部, 使之報來。 本曹出禁吏, 則不無憑藉侵撓之慮, 故常以風聞而知之, 隨其大中小釀, 依律治之。 豈有紛拏苛細之端哉?” 時復明以禁酒爲己任, 都民之犯法被罪者多。 是日疏決也, 秋曹文案</p>

	<p>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끄럽고 가혹하며 잔단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유복명은 금주를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었는데, 도민 중에 법을 범하여 죄를 받은 자가 많았다. 이날 소결(疏決) 때 추조(秋曹)의 문안(文案)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주금(酒禁)으로 충군(充軍)된 사람이었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대개 ‘충군’ 두 글자는 ‘정배(定配)’를 잘못 쓴 것이었다. 임금이 그래도 살피지 않은 것이라 하여 유복명을 종종 추고하라고 명하였다.</p>	<p>中有女人，以酒禁充軍者。上怪問之，蓋充軍二字，定配之誤書者也。上猶以爲不察也，命重推復明。</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3월 26일      (경진) 1번째기사      대신 등이 진연을 청      하나 거절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신 등이 내외(內外)의 진연(進宴)을 거듭 청하여 번갈아 아뢰고 다시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재물이 부족한 때에 낭비하는 일이라 하면서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p>	<p>庚辰/上引見大臣·備堂。大臣等申請內外進宴，迭奏更陳，上以時詘舉贏，終不許。</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3월 26일      (경진) 5번째기사      춘궁기 소민의 식량을      더해 주게 하다</p>	<p>경기(京畿) 각 고을의 혜청(惠廳)에 바칠 바 군작미(軍作米)로서 미처 상납하지 못한 것을 본읍(本邑)에 남겨 두어 환곡을 타가는 백성들에게 더 주고 가을을 기다려 징납(徵納)하게 함으로써 춘궁기에 소민(小民)들의 식량이 곤란한 근심을 덜어 주라고 명하였다. 좌상 송인명(宋寅明)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p>	<p>命以京畿各邑惠廳所納軍作米之未及上納者，留之本邑，添給糶民，待秋徵納，以除窮春小民艱食之患，從左相宋寅明之請也。</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3월 26일      (경진) 7번째기사      박필주가 식물 하사를      사양하다</p>	<p>찬선(贊善) 박필주(朴弼周)가 상소하여 식물(食物)의 하사를 사양하며 말하기를,      “열조(列朝)에서 유현(儒賢)을 대우하던 법을 천신(賤臣)에게 베풀은 부당합니다. 성상께서는 잘못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신은 외람되게 받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일찍이 전례가 있었다. 유현을 존중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니, 사양하고 말</p>	<p>贊善朴弼周上疏，辭食物之賜曰：“列朝優賢之典，不當施之於賤臣。在上爲誤恩，在臣爲濫受”，批曰：“曾有其例。意在尊儒，勿辭領受。”</p>

	<p>고 받도록 하라.” 하였다.</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 (乾隆) 8년) 3월 26일 (경진) 10번째기사 유복명이 주폐 다섯 조항을 논하다</p>	<p>형조 참의 유복명(柳復明)이 금주(禁酒)에 관한 일 때문에 특별히 추고(推考)를 받자,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 주폐(酒弊) 다섯 조항을 논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이 삼가 국조(國朝)의 금양(禁釀)에 대한 율(律)을 상고해 보았더니,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는 즉위하신 초년(初年)에 주금(酒禁)을 거듭 엄하게 하시고, 이어서 하교하시기를, ‘비록 금주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아니하니, 이것은 내가 술을 끊지 아니하여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올리지 말라고 명하시자, 나랏사람들 중에 감히 마시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일찍이 신(臣) 김극휼(金克愾)에게 계주문(戒酒文)을 지으라 명하시고 대소 신민(臣民)들에게 효유(曉諭)하셨는데, 곧 《서경(書經)》의 주고(酒誥)와 표리(表裏)를 이루었습니다. 숙종대왕(肅宗大王)께서는 일찍이 계해년(10233)에 숭상하여 마시는 것을 아주 없애라는 뜻으로써 신료들을 계칙(戒飭)하셨으며, 또 세종의 계주문을 경외(京外)에 반포하셨으니, 전후의 영갑(令甲)10234)이 지극히 엄절(嚴截)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시자 누차 비망기(備忘記)를 내온(內醞)에 내리시어 특별히 무신년(10235)의 ‘술을 크게 빚는 자는 형배(刑配)한다.’는 법을 감하셨습니다. 기유년(10236)에는 ‘여러 궁가(宮家)나 세가(勢家)의 행랑 아래서 술을 파는 자를 먼곳으로 유배시키고 주인(主人)을 입계(入啓)하여 무겁게 감율(勘律)하라.’는 법이 있었으며, 임자년(10237)에는 또 ‘술을 크게 빚으면 3차 형추(刑推)하고, 중간 정도는 2차 형추하며, 조금 빚은 자는 형추하거나 태형(笞刑)으로 다스리되, 수십 석(石) 이상 크게 빚은 자는 무신년의 수교(受教)에 의해 형배(刑配)하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백성의 고</p>	<p>○刑曹參議柳復明以禁酒事，至被特推，上疏辭職，仍論酒弊五條。又曰：“臣謹稽國朝禁釀之律，則太宗大王卽位初年，申嚴酒禁，仍又下教曰，‘雖下禁酒之令，飲酒者不止，是予不斷酒而使然也。’命不進酒，國人無敢飲者。世宗大王嘗命臣金克愾撰戒酒文，曉諭大小臣民，直與《書》之酒《誥》相爲表裏。肅宗大王嘗於癸亥，以痛祛崇飲之意，戒飭臣僚，又以世宗戒酒文頒布京外，前後令甲，已極嚴截。逮夫我聖上臨御，備忘屢下內醞，特減戊申有大釀者刑配之令。己酉又有諸宮家・勢家廊底賣酒者遠配，而主人入啓重勘之令，壬子又有‘大釀刑推三次，中釀二次，小釀或刑或笞，而累十石以上大釀者，依戊申受教刑配’之令。我聖上深軫民隱，痛革時弊之意，出尋常萬萬，而奉令承教之臣，不能一心仰體，或禁或否，乍弛乍張。臣之任怨任謗，不憚勞苦者，亶出於爲國也爲民也。”批曰：“五條酒弊，意則是也，</p>

통을 깊이 염려하시어 시폐(時弊)를 통렬히 혁파하고자 하시는 뜻이 보통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었건만, 명령과 분부를 받들어 행하는 신이 능히 한마음으로 우러러 깊이 유념하지 못한 나머지 혹은 금했다가 혹은 금하지 않았고 잠시 동안은 느슨하게 했다가 잠시 동안은 팽팽하게 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원망과 비망을 불러 일으키며 노고를 꺼리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다섯 조목의 주폐(酒弊)는 뜻인즉 옳다만, 지난번의 하교 또한 뜻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의적(義狄)이 술을 만들기 전에는 오로지 현주(玄酒)만 썼으니, 어찌 주폐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술의 폐해를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기는 하나, 예(禮)에 ‘한 잔을 마시면 백 번 절한다.’ 하였고, 《시경(詩經)》에는 ‘이미 술에 취하였다.’고 하였다. 왕공(王公)과 사부(士夫)는 모두 그 술을 쓰고 어주(御酒)를 바침도 또한 그대로인데, 오직 소민(小民)에 대해서만 술을 금한다면, 이 어찌 윗사람이 행하고 아랫사람이 본받는 도리이겠는가? 아! 사대부는 제사(祭祀) 때 비록 술을 사온 것을 경계한다 하지만, 소민은 술을 산 것이 아닌데, 어찌 그리 엄하게 금하는가? 현주로 제사를 지내게 함이 장차 아래에서만 행해진다면 영(令)이 어찌 행해지랴? 지나해 비록 계주문을 내리기는 하였으되, 금법(禁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윤택을 아꼈던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다. 술을 많이 빚는 것은 의당 금해야 하고 또 술주정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이란 마땅히 삼령 오신(三令五申)해야 하는 것이다. 술을 많이 빚었다 하여 충군(充軍)시킨 경우가 각도(各道)마다 편안하니, 많이 빚는 데 대한 율은 변방 유배면 가하지, 충군은 불가하다. 지금 소민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는데, 먼저 가르쳐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법을 적용하는 것을 시원하게 여기니, 아! 소민들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여인이 충군된 것은 목란(木蘭)10238)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찍이 들은 적이

頃者下教意亦在焉。 儀狄作酒之前，純用玄酒，豈有酒弊？而酒之弊，可勝言哉？雖然禮 ‘一飲百拜’，《詩》曰 ‘既醉以酒。’ 王公·士夫皆用其酒，御酒之供亦自如，而惟於小民禁其酒，則此豈上行下效之道乎？噫！士大夫於祭，雖有沽酒之戒，小民非沽酒，而何其若嚴禁？玄酒之祭，將只行於下，令豈行也？頃年雖下戒酒之文，設禁則斬允者蓋此也。 宜禁多釀，且飭使酒。況法當三令而五申，以多釀充軍者遍各道，多釀之律，邊配則可，而充軍則不可也。 于今小民，不能措手足，而不先教導繩法爲快，吁嗟！小民焉能支乎？況女人充軍，木蘭之外，曾無所聞。 其雖誤書，焉可無問備之飭也？”

	<p>없다. 비록 잘못 쓴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문비(問備)로 신척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윤4월 8일(신유) 2번째기사 작헌 대의 집사 95명을 소견하고 술과 안주를 대접하다</p>	<p>대사성 김상로(金尙魯)가 작헌(酌獻) 때의 집사(執事) 95명을 인솔해 와서 대령하니, 임금이 소견(召見)하고 성명을 물었다. 그리고 술과 안주로 대접했는데, 찬(饌)은 5품(品), 술은 세 순배였다. 대개 성묘조(成廟朝)의 그 다음날 궐중(闕中) 사람을 대접해 먹인 고사를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서책(書冊)과 필묵(筆墨)을 하사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으며, 이튿날에는 반제(泮製)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대전(貸錢)을 구획(區劃)하여 반궁(泮宮)의 노복(奴僕)을 구휼하고 방역(坊役)에 동원되는 것을 엄하게 금하여 마구잡이로 침징(侵徵)당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김상로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p>	<p>大司成金尙魯率酌獻時執事九十五人來待，上召見問姓名。饋以酒肴，饌五品，酒三行。蓋遵成廟朝翌日饋食闕中之故事也。贈書冊、紙、筆、墨各有差，命以翌日設講製。令廟堂區劃貸錢，以恤泮僕，嚴禁坊役，俾無橫侵之弊，從尙魯之請也。</p>
<p>영조 57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윤4월 23일(병자) 1번째기사 비가 충분히 올 때까지 어공하는 쌀을 줄이게 하다</p>	<p>하교하기를, “덕이 박하고 정성이 얇아 하늘을 능히 감동시키지 못하여 가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민사(民事)가 더욱 막하다. 실로 나의 비덕(否德)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옥식(玉食)이 어찌 달겠는가? 오늘부터 비가 충분히 올 때까지 어공(御供)하는 쌀을 줄이고 어공하는 술을 정지시키라.” 하였다.</p>	<p>丙子/教曰：“涼德誠淺，不能感孚，旱氣日甚，民事尤憫。良由否德，何甘玉食？自今日周洽間，減御供之米，停御供之醞。”</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5월 5일(정해) 1번째기사 대신들이 가뭄에 대한 기도를 대리인으로 할 것을 계청했으나 몸소</p>	<p>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북교(北郊)에 나아가 몸소 기도하겠다는 분부가 있었는데, 대신(大臣)과 약원(藥院)에서 여러 번 몸소 기도를 행하여 성체(聖體)에 손상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섭행(攝行)하기를 여러 차례 계청하였으나, 운허하지 않았다.</p>	<p>丁亥/以久旱有親禱北郊之命，大臣、藥院以屢行躬禱，恐損聖體，屢啓請攝行，不許。</p>



<p>하려고 하다</p>	<p>수찬 원경순(元景淳)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우리 전하께서 한재(旱災)를 당한 이래로 몸소 기도를 올리신 것이 세 차례에 이르렀고, 주방(酒房)의 찬품(饌品)을 감손하고 옹주의 혼구(婚具)를 재감(裁減)하기에 이르렀으니, 감무를 민망히 여겨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하신 데 대하여 누군들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먼저 유사(有司)가 제공하지 않는 것과 외인(外人)이 알지 못하는 것부터 일체 삭감하여 무릇 재억(裁抑)하고 절약(節約)하는 데 관계된 방도가 순수하여 한결같이 불쌍히 여기는 정성에서 나와 털끝만큼이라도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 따르는 뜻이 그 사이에 섞이지 않아야만 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릇 한재를 만나 죄수를 구휼(救恤)하는 일은 성명(成命)을 내렸는데도 여러 날 지연하였으니, 수화(水火)에서 건지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뜻에 아마도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또 적당히 헤아려 재처(裁處)할 즈음에 혹시라도 선후의 차례를 잃었거나 경중(輕重)의 마땅함에 어긋나서, 악역(惡逆)에 관계된 자도 혼동하여 석방되고, 죄가 생재(眚災)에 관계된 자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더욱 화기(和氣)를 인도하여 재앙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없고, 한갓 제방(堤防)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조장(助長)하는 데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을 또한 신은 깊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권면한 바는 마땅히 힘쓰겠다.”  하였다.</p>	<p>修撰元景淳上疏，略曰：  我殿下遇災以來，躬禱至三，至若特減酒房之御供、裁省貴主之婚具，悶旱警省，孰不感歎？而必先自有司所不供、外人所不知者，一切減削，凡係抑畏節約之方，純然一出於惻怛之誠，而不以一毫循人觀瞻之意雜於其間，則可以孚格彼蒼矣。且夫遇旱恤囚，成命之下，遷就屢日，恐有歉於救焚如不及之意。而又於稱量裁處之際，如或先後失序，輕重乖宜，干係惡逆，而混被解釋，罪涉眚災，而未蒙宥釋，則尤無以導和弭災，而徒歸於壞隄防長亂階矣，此亦臣之所深懼也。  批曰：“其勉者宜勉。”</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6월 13일 (갑자) 1번째기사  진휼 대책 강구, 개성</p>	<p>헌납 박준(朴駿)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의 급선무는 진휼(賑恤)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만한 것이 없는데, 그 요령은 오직 절용(節用)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무릇 어용(御用)의 복식과 여러 가지 하사하는 물건을 절약하는 데에 힘쓰시고, 안으로 여러 궁방(宮房)으로부터 밖으로 경대부에 이르기까지 일체 사치의 풍습을 제거하도록 하</p>	<p>甲子/獻納朴駿上疏，略曰：  今之先務，莫若預講賑賑之策，而其要惟在節用而已。凡於御服用飾，諸般賜予務從裁省，內自諸宮房，外至卿大夫，一祛靡麗之習。</p>

<p>부 경력 위창조의 횡포와 그 처벌을 청하는 박준의 상소문</p>	<p>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개성부 경력 위창조(魏昌祖)는 집이 북관(北關)10298) 에 있는데, 그 권속(眷屬)을 데리고 오는데 인부와 말값이 1천 냥에 이르도록 많았다 하니, 외람된 경비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부임하는 날 으레 공계하는 다담상(茶啖床)을 돈으로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 위창조는 특별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고, 유수 조명교(曹命敎)는 이를 금지하지 못했으니, 또한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함이 마땅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권면한 일은 마땅히 힘쓰겠으나, 과연 진달한 바와 같다면 해괴한 데에 관계되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처치하도록 할 것이며, 추고하는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겠다.”          하였다.</p>	<p>又曰：          開城經歷魏昌祖家在北關，其率眷夫馬之價，多至一千兩，浮濫之費莫此爲甚。而且其爲人庸陋鄙瑣，上官日例供茶啖，以錢代捧。臣謂魏昌祖特削仕版，留守曹命敎不能禁裁，亦宜推考警責。          批曰：“其勉者宜勉，果若所陳，其涉駭然，令該府處之，推考事依施。”</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6월 22일 (계유) 1번째기사          인빈의 사우에 거동하여 대원군 사우처럼 수리하게 하고 숙빈의 사우도 전배하다</p>	<p>임금이 인빈(仁嬪)의 사우에 거동하였다. 해조에 명하여 대원군 사우의 예에 따라 수리하도록 하고, 임양군(臨陽君) 부인에게 식물(食物)을 내렸으며, 안흥군(安興君) 숙(淑)과 해은군(海恩君) 당(燾)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숙빈(淑嬪)의 사우에도 두루 전배하였다.</p>	<p>癸酉/上幸仁嬪廟。命該曹修理如大院君祠宇之例，賜臨陽君夫人食物，安興君淑、海恩君燾並命加資。歷拜淑嬪廟</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7월 18일 (무술) 3번째기사</p>	<p>하교하기를,          “자전의 마음에 우러러 보답하고 군정(群情)에 애써 따라서 어연(御宴)이라고 이름했으니, 심중(深重)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무릇 여러 의절을 어찌 차마 옛날에 진연한 예(禮)를 모방하겠는가? 무릇 진연에는 으레 9작(九爵)을 행하</p>	<p>敎曰：“仰答慈心，勉循群情，稱名御宴，意蓋深也。凡諸儀節，豈忍倣昔年進宴之禮？凡進宴例，行九爵，而先二爵則有致詞之節矣。今者之宴，不</p>

<p>하교하여 자신의 진연은 간소하게 하고, 자성의 진연에는 음악 등을 더하게 하다</p>	<p>는 것인데, 먼저 2작에는 치사(致詞)의 예절이 있으나, 이번의 연회는 자전의 뜻을 본받아 군신이 잔치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니, 그 치사하는 2작은 제거하고 오직 7작만 행할 것이며, 세자와 정부의 작헌(爵獻)은 그 가운데에 들어 있으니, 재신은 5원(員)만 수점(受點)하도록 하라. 갑오년(10313) 이후로 외연(外宴) 때에는 먼저 악장(樂章)을 창(唱)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의 거조에서는 번거로운 형식을 제거하였으니, 이 또한 그만두도록 하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  “갑오년 내연(內宴) 때부터 존승 악장(尊崇樂章)을 선창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 자전계 진연할 때에는 경신년(10314)에 이정(釐正)한 두 악장을 겸하여 선창하도록 하라. 악범(樂範) 가운데 몽금척(夢金尺)·수보록(受寶籙)은 곧 국조(國朝)의 창업(創業)한 일이고, 하황은(荷皇恩)은 곧 황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인데, 하황은 1장을 자전계 진연할 때 마땅히 연주해야 할 것이니, 그것을 미리 익히도록 하라.”</p> <p>하였다.</p>	<p>過體慈意宴君臣而已， 祛其致詞二爵， 惟行七爵， 而世子及政府爵獻， 在於此中， 宰臣只五員受點。 甲午以後外宴時， 有先唱樂章之例， 而今者之舉， 既祛繁文， 此亦置之。” 又教曰：“自甲午年內宴時， 有先唱尊崇樂章之例， 今番慈殿進宴時， 以庚申釐正者兩樂章兼爲先唱。 而《樂範》中夢金尺、受寶籙， 乃是國朝創業之事也， 荷皇恩， 卽感皇恩之辭也， 荷皇恩一章， 當奏於慈殿進宴時， 其令肄習。”</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7월 21일 (신축) 3번째기사  진연을 간소하게 할 것을 하교하고, 아울러 진연의 참석자를 정하다</p>	<p>임금이 진연 도감 당상(進宴都監堂上)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이번의 어연은 자성의 뜻을 받들어 즐기고, 남은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 신하들과 잔치하려는 것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풍성하게 할 뜻이 있겠는가? 더구나 경인년(10315)에 견주어 차등(差等)을 두어야 하니, 다만 오미(五味)만 행하되, 제1작(第一爵)·제2작은 세자와 의정이 행하고, 술잔을 올릴 재신도 한결같이 저번의 하교에 의하여 5원(員)만 수점(受點)하도록 하라. 내연(內宴)·외연(外宴)의 찬품(饌品)의 미수(味數)는 도감·주원(廚院)으로 하여금 써서 들여 품재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연·외연의 과반(果盤)의 그릇 수도 또한 전에 견주어 줄여서 내가 자전의 뜻을 본받아 감히 지나간 해에 견주지 못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 【행과(行果)는 대왕 대비전에 13기(器)이고, 대전(大殿) 이하는 8기이</p>	<p>上召見進宴都監堂上， 教曰：“今者御宴， 奉慈聖而歡娛， 因餘喜而宴臣， 豈一毫豫大之意乎？ 況比庚寅， 宜有差等， 只行五味， 第一爵、二爵世子·議政行之， 進爵宰臣， 一依頃日下教， 以五員受點。 內、外宴饌品味數， 令都監、廚院書入稟裁。 內外宴果盤器數， 亦爲比前省焉， 以示予體慈意不敢比昔年之意。” 【行果， 大王大妃殿十三器， 大殿以下八器， 味數， 大王大妃殿七味七器， 大殿以下五味五器。 御宴時大</p>

	<p>며, 미수(味數)는 대왕 대비전에 7미(味) 7기이고, 대전 이하는 5미 5기이다. 어연(御宴) 때에는 대전 및 세자궁(世子宮)의 행과는 8기이고, 미수는 대전이 5미 5기이고, 세자궁도 같다. 내선상(內宣床)은 10상(床)에 5미 3기요, 어떤 때의 선상(宣床)은 그 인원수에 따라 5미 3기이다.】 잔치에 참여할 여러 신하들은 시임·원임의 대신과 의빈(儀賓) 이외에 종신(宗臣)은 도정(都正) 이상이며, 문신은 기사(耆社)의 여러 관원과 육조 당상, 대사성·대사헌·대사간·승지·부제학 및 그날 &lt;입직할&gt; 한림·주서(注書)이다. 음관(蔭官)은 2품으로 바야흐로 실직(實職)에 있는 자와 일찍이 실직 총관(總管)을 겪은 자와 그 이름이 충훈분(忠勳府)에 실려 있는 자이다. 무신은 장신(將臣)과 시임 총관(時任總管)이다. 양도 유수와 부임하지 않은 도신과 그날 시위(侍衛) 및 시임 시종(侍從)·춘방(春坊)은 모두 연회에 참석하게 하였다.</p>	<p>殿、世子宮行果八器，味數 大殿五味五器，世子宮同。內宣床，十床五味三器，御宴時宣床，從其員數五味三器。】參宴諸臣，時原任大臣、儀賓外，宗臣則都正以上，文臣則耆社諸員、六曹堂上、師儒長·柏府·薇垣長·承旨·副提學、其日翰·注。蔭官則二品方帶實職者、曾經實職總管、名在勳府者。武臣則將臣、時任總管。兩都留守、未赴任道臣、伊日侍衛及時任侍從·春坊，皆參宴。</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7월 21일 (신축) 4번째기사 진연에 쓸 쌀 1천 곡에서 2백 곡을 감하고, 진연과 겹치는 시험을 늦추다</p>	<p>진연 도감(進宴都監)에서 쌀 1천 곡(斛)을 전례에 의하여 진연의 용도에 충당할 것을 계청하니, 임금이 2백 곡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연과 상치(相值)되었으니, 청컨대, 정시 초시(庭試初試) 및 전시(殿試)를 늦추어 설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進宴都監啓請米一千斛，依例備進宴之用，上命減二百斛。禮曹啓：“進宴相值，請退行庭試初試及殿試。”上可之。</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9월 5일 (갑신) 7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천거, 진연, 세자빈 간택, 서연, 신</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직 대관(大官)이라야 사람을 천진(遷進)할 수 있는 것이다. 전번에 한 승선이 사람을 임용하는 방도를 올렸는데 감히 영성(靈城)을 천거했으니, 영성이 어찌 승선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이광덕(李匡德)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있으나, 연좌된 죄가 매우 무거운 때문인데,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다시 장해(瘴海)를 건넌겠는가? 승선의 일은 그르니, 중추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하교에서 지적한 승선은 곧 신치운(申致雲)이었는데, 좌의정</p>	<p>上引見大臣、備堂。上曰：“惟大官，可以人進。頃者一承宣，進用人之道，而敢薦靈城，靈城何待承宣之言乎？至如李匡德，則有向國之心，而所坐甚重故也，非予則何以復越瘴海耶？承宣事非矣，其重推。”上教所指承宣，卽申致雲也，左議政宋寅明請罷其職，上從</p>

<p>하 배향 등을 의논하다</p>	<p>송인명(宋寅明)이 파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여러 신하들이 진연 의주(進宴儀註)를 의정(議定)하여 올렸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진연은 동조(東朝)를 위한 애일(愛日)의 정성에서 나온 것인데, 매양 심양(瀋陽)의 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간혹 꿈에 나타날 때도 있다.”  하자, 송인명이 말하기를,  “낮에 생각하는 바를 밤에 반드시 꿈을 꾸는 법이니, 성상께서 일을 당하여 애태우는 것이 아마도 지나친 듯싶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못에 임하고 얽은 얼음을 밟으며 썩은 새끼로 말을 어거하듯이 조심하는 것은 또한 임금이 국운(國運)을 장구(長久)하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연에 반드시 예주(醴酒)를 쓰고자 함은 원량(元良)으로 하여금 지주(旨酒)를 경계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반드시 아악을 쓰고자 함은 원량으로 하여금 음탕한 정성(鄭聲)10332) 을 내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자빈을 간택하는 때를 당하여 나라의 흥망이 이에 달려 있으므로, 십분 삼가고자 하지 않음이 아니었는데, 원량의 의사는 용모를 취하지 않고 숙덕(淑德)을 구하고자 한다 하니, 그 마음이 진정 기특하다. 저번에 ‘관의(寬毅)’ 두 글자를 써서 동궁(東宮)에 내리고 인하여 그 함(閣)의 이름을 삼았으니, 대개 항상 눈에 접하여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엄의(嚴毅)는 본디 좋으나 한갓 엄의하기만 하면 폐단이 있으니, 반드시 관대함을 겸해야 옳을 것이다. 세자가 지나치게 침묵하므로 경 등과 낮이 익숙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래에 들건대, 계방(桂坊)10333) 에서 문의(文義)를 진달하지 않는 자가 많은데 유독 부술(副率) 임석헌(林錫憲)이 문난(問難)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의를 해석하는 것이 많다 하니, 이는 특별히 제수한 뜻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가 계방에서 구임(久任)한 것으로써 특별히 6품</p>	<p>之。諸臣議定進宴儀註，上曰：“今者進宴，爲東朝愛日之意，每以瀋陽事關心，時或發之夢寐矣。”寅明曰：“晝之所思，夜必夢焉，而聖上之遇事憧憧，亦恐爲過。然臨深履薄，朽索馭馬，亦人君壽國脈之方也。”上曰：“進宴之必欲用醴酒者，欲使元良戒旨酒也，必欲用雅樂者，欲使元良放鄭聲也。方當擇嬪之時，國之興替在此，非不欲十分詳慎，而元良之意，不以貌取，欲求淑德云，其心固奇矣。頃以寬毅二字，書賜東宮，仍以名其閣，蓋欲使常目在之。毅固好矣，徒毅則有其弊，必濟之以寬可也。世子沈默過焉，故與卿等面不熟矣。近聞桂坊多不陳文義，而獨副率林錫憲，不待問難，多釋文義云，此不負特授之意，予甚嘉之。其令以桂坊久任陞六可也。予之在東宮時，桂坊如尹東源、李眞洙、梁得中、李顯謨、沈鎬者皆有經術，而予有善言文義處，則鎬必起拜，其質實可貴矣。”寅明曰：“湖南萬戶、僉使之醉鬪相殺傷，實關變怪。水使之梟示狀聞，非不得體，而初未檢下，致有此變，不可無警。水使朴泰</p>
---------------------	--	---

	<p>에 승진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동궁에 있을 때에 계방의 윤동원(尹東源)·이진수(李眞洙)·양득중(梁得中)·이현모(李顯謨)·심육(沈鎔) 등은 모두 경술(經術)이 있었고, 내가 문의를 잘 설명하는 곳이 있으면 심육은 반드시 일어나 절을 했으니, 그 질박함이 귀중하다.”</p> <p>하였다.</p> <p>송인명이 말하기를,</p> <p>“호남의 만호와 첨사가 술에 취해 싸우다가 서로 살상한 것은 실로 변괴에 관계됩니다. 수사(水使)가 효시(梟示)하고 장문(狀聞)한 것이 사체(事體)에 있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당초에 아랫사람을 검칙(檢飭)하지 못하여 이런 변괴를 초래하였으니,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박태신(朴泰新)은 중추하고 함께 취한 변장(邊將)도 아울러 나쳐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모두 취중에 빚어진 일이고, 수신(帥臣)의 처치가 마땅함을 얻었으니, 정지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송인명이 또 이재(李穡)와 이덕수(李德壽) 등을 유시해서 불러들여 서연(書筵)에 출입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영남 유생이 이재를 불러들이기를 청한 상소는 참으로 어리석다. 화전(花田)에 있는 이재가 저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들은 모두 모군(募軍)들이고 유생이 아니다.”</p> <p>하자, 송인명이 말하기를,</p> <p>“이미 유생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저들이 비록 무상(無狀)하다 하더라도 사교(辭教)가 박절한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군사(君師)의 지위에 있는데 이러한 유생들을 어찌 통렬히 배척하지 않</p>	<p>新重推，同醉邊將，竝宜拿處。”上曰：“此皆醉中事，帥臣處置得宜，其寢之。”寅明又請諭召李緯、李德壽等，使出入書筵，上曰：“嶺儒請召李緯之疏誠愚矣。在花田之李緯，何關於渠輩？此皆募軍，非儒生也。”寅明曰：“既以儒名，則渠雖無狀，辭教得不近於迫切乎？”上曰：“予在君師之位，如此之儒，何可不痛斥乎？雖然元良輔導不容少緩，在外儒臣，皆令上來焉。”仍命敦召李緯、李德壽等。寅明曰：“儒疏又請兩宋配食廟庭，而追配事重，此路一開，則廟廡肅穆之地，恐將不嚴矣。”上曰：“卿言是矣。一開此弊，請享之人，必將相續矣。”寅明又曰：“安州牧使李日躋，請築壘江邊，防守嶺隘，一依江邊之例，而且於附近處或開酒幕或置僧寺，使之看護云，宜許其請。”上從之。寅明又盛陳日躋之治績、履歷，宜加陞擢，上特命加資。持平趙明鼎申前啓，不允。前啓中吏曹判書鄭羽良從重推考，英陵參奉李學中汰去，吏曹堂上竝從重推考，當該郎官罷職，昌城府使盧啓禎削版，平壤庶尹趙鎮泰、庇仁縣監文天</p>
--	---	---

겠는가? 그러나 원량을 보필하고 인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외방에 있는 유신들을 모두 올라오게 하라.”

하고, 이어 이재와 이덕수 등을 돈소(敦召)하라고 명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유생의 상소에 또 양송(兩宋)10334 을 묘정에 배향하기를 청하였는데, 추배(追配)하는 것은 그 일이 중대하니,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묘무(廟廡)의 엄숙한 자리가 아마 장차 엄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한 번 이 폐단이 열리게 되면 배향을 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장차 잇달게 될 것이다.”

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안주 목사(安州牧使) 이일제(李日躋)가 강변에 보류(堡壘)를 쌓고 영애(領陔)를 방수(防守)하는 것을 한결같이 강변의 규례에 따를 것을 청하였으며, 또 그 부근에 혹은 주막(酒幕)을 개설(開設)하고 혹은 승사(僧寺)를 설치하여 보살피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이일제의 치적과 이력이 뛰어난을 성대하게 진달하고, 승진(陞進)시킴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특별히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지평 조명정(趙明鼎)이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계 가운데 이조 판서 정우량(鄭羽良)을 종종 추고하고, 영릉 참봉 이학중(李學中)을 태거(汰去)하고, 이조 당상을 모두 종종 추고하고, 해당 낭관을 파직하고, 창성 부사(昌城府使) 노계정(盧啓禎)을 사판하고 삭제하고, 평양 서윤(平壤庶尹) 조진태(趙鎭泰)와 비인 현감(庇仁縣監) 문천경(文天擎)과 동몽 교관(童蒙教官) 정항령(鄭恒齡)을 개차하라는 계사는 모두 윤택하였다. 또 아뢰기를,

擎、童蒙教官鄭恒齡改差之啓， 竝依允。 又啓：“頃筵之承旨申致雲， 乃敢先發語端， 薦進人才， 指陳姓名， 已極僭猥。 至於李匡德方在罪削中， 而亦請收用， 此實前所未有。 足見其放肆無嚴， 罷職之命， 罪重罰輕。 請削職。” 依啓。 又啓：“二品之官， 乃是命德之器， 安州牧使李日躋， 因大臣陳達， 遽陞嘉善， 未知所褒者何功， 所賞者何事。 而今者特陞， 殆近無名， 殊非明主愛嘆笑之意。 請還收其加資之命。” 上曰：“此人之沈滯， 每惜其才。 今者所請， 不過臺例， 而其陞資， 亦非無端。” 不允。 明鼎引避而退， 上曰：“明鼎自翰林， 知有氣， 今能洗近日臺閣寥寥之羞矣。” 寅明曰：“臺臣所論， 皆是吏判之公罪也。” 上曰：“以其用洪宇遠、許穆之孫見之， 其無私可知矣。”

“지난번에 연석에서 승지 신치운(申致雲)이 감히 먼저 말을 꺼내어 인재를 천진(薦進)한다 하면서 성명을 지적하여 진달한 것은 이미 지극히 외람된 일이 있습니다. 이광덕(李匡德)에 이르러서는 방금 죄로 인해 삭직한 가운데 있는데, 또한 수용(收用)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는 일입니다. 이에서 족히 그 방자하고 무엄함을 볼 수 있으니, 파직하라는 명은 죄는 무거운데 벌이 가볍습니다. 청컨대 삭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2품의 관직은 곧바로 덕망(德望)이 있는 자에게 주는 중요한 벼슬인데, 안주 목사 이일제는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갑자기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었으니, 포장(褒獎)한 바가 무슨 공로이며 상전(賞典)을 베풀 바가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금번에 특별히 승진시킨 것은 자못 아무 명목(名目)이 없는 데에 가까우니, 특히 명철한 임금의 한 번 쟁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꼈던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가자(加資)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오래 침체되어 있으므로 매양 그 재능을 아깝게 여겨왔다. 이제 청한 바는 대각(臺閣)의 체례(體例)에 지나지 않으며, 그 승천한 것도 또한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 윤희하지 않았다. 이에 조명정이 인피하여 물러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명정은 한림에 있을 때부터 기재가 있음을 알았는데, 이제 근일에 대각에서 침묵을 지켜왔던 부끄러움을 말끔이 씻어버렸다.”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논한 바는 모두 이판(吏判)의 공죄(公罪)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우원(洪宇遠)과 허목(許穆)의 손자를 등용한 것으로써 본다면 그 사심(私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9월 11일 (경인) 3번째기사 밀창군 직이 진연 때에 쓸 유자가 없으므로 다른 과일로 대신할 것을 청하다</p>	<p>하였다. 임금이 사옹원 점거 제조 밀창군(密昌君) 직(楫)과 예조 참판 이주진(李周鎭)과 장악원 제조 윤득화(尹得和)를 불러 보았다. 밀창군 직이 말하기를, “진연 때에 유자(柚子)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 봉진(封進)한 것이 없으니 다른 과일로 대신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령 제때에 맞추어 온다 하더라도 태묘에 천신(薦新)하기 전에는 진연에 쓸 수 없으니, 다른 과일을 대신 쓰도록 하라.” 하였다.</p>	<p>上召見司饗院檢學提調密昌君楫、禮曹參判李周鎭、掌樂提調尹得和。楫曰：“進宴時當用柚子，而尚無封進者，以他果代用乎？”上曰：“假使趁來，未及薦於太廟，則不可用於進宴，以他果代之可也。”</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9월 16일 (을미) 1번째기사 어연을 거행하고 죄수 석방, 노인 우대, 빈민 구제, 환곡 감면 등을 하교하다</p>	<p>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서 어연(御宴)을 거행하였다. 상례(相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을 거쳐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사배(四拜)를 행하고, 예를 마치자 전(殿)에 올라 속악(俗樂)과 아악(雅樂)을 연주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옛 규례에 진연에는 술 9작(九酌)을 행하였는데 이날은 다만 7작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제1작(第一爵)을 올리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제2작을 올리고, 판부사 유척기(兪拓基)가 제3작을 올리고, 밀창군(密昌君) 직(楫)이 제4작을 올리고,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이 제5작을 올리고,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이 제6작을 올렸으며,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제7작을 올렸다. 승지가 유지를 선포하기를, “삼가 경 등이 올린 술잔을 들고 비로소 아악을 쓰고, 춤은 육일무(六佾舞)를 쓰고, 술은 예주(醴酒)를 썼으니, 이는 모두 구례를 감하여 겸양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바야흐로 꽃을 올릴 때에 임금이 옛날을 추모하여 은연중에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소매를 들어 씻었다. 예를 마치자, 하교하기를, “금부와 형조의 가벼운 죄수를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번의 이 거조는 내가 어찌 즐겨서 하는 것이겠는가? 위로 자전의 뜻을 받</p>	<p>乙未/上行御宴于明政殿。相禮引王世子，由東門入就位行四拜，禮畢陞殿，參奏俗、雅樂。舊例進宴酒九行，而是日只行七酌。王世子進第一爵，領議政金在魯進第二爵，判府事兪拓基進第三爵，密昌君楫進第四爵，錦平尉朴弼成進第五爵，月城尉金漢薰進第六爵，錦城尉朴明源進第七爵。承旨宣諭曰：“敬舉卿等之觴，始用雅樂，舞用六佾，酒用醴酒，皆減舊謙挹之意也。”方進花時，上追慕昔年，潛然出涕，舉袖拭之者良久。禮畢，教曰：“王府及秋曹輕囚，其特釋之。”又教曰：“今者此舉，予豈樂爲？上承慈旨，黽勉以行，而追惟昔年，一倍此心。與民共樂，是繼述之道。況奉慈闈而稱觴，與舊臣而同宴，《絜矩章》不云</p>

들어 마지못해 거행하였는데, 옛날을 돌이켜 생각건대, 사모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더하다.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니, 이는 옛날을 계승하는 도리이다. 더구나 자전을 받들어 헌수(獻壽)하고, 기구(耆舊)의 신하들과 더불어 연회를 같이 하였으니, <《대학(大學)》> 혈구장(絜矩章)에 ‘위에서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면 백성들의 효행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혈구(絜矩)의 뜻인 것이다. 맹자(孟子)는 또 이르기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면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 하였다. 해조로 하여금 병술년(1036)의 전례에 따라 <서울에 있는> 늙은 백성에게 모두 술과 안주를 내려주고 외방의 늙은 백성에게도 여러 도로 하여금 식물을 주도록 하여, 내가 옛일을 따라서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미루어 미치게 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왕손(王孫)의 부녀로 생존해 있는 자는 다만 임양 부인(臨陽夫人)뿐인데, 나이 80이 넘었다. 저번에 그 집에 거동했던 일이 지금도 추억이 된다 해조로 하여금 연수(宴需)를 후하게 주어 그 손자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게 하라. 백세에 가까운 늙은 도위(都尉)가 오늘 술잔을 올린 것 또한 드문 일이다. 옛날을 생각하니,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금평 도위 박필성에게 특별히 구마(廐馬)를 내려주고, 또 그 자손에게 잔치를 베풀 연수를 주어 내가 옛일을 돌이켜 보며 노인을 높이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적이 생각건대, 오막살이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과연 함께 즐거워하겠는가? 아! 우리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겠는가? 혹 얼굴을 찌푸리거나 앓겠는가? 이런 때에 백성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정사를 더욱 강구함이 마땅하다.”

하고, 우선 가장 오래 된 환곡(還穀) 1년조에 대해 정봉(停捧)했던 것을 감면해 주라고 명하였다. 대신 이하 당하관에 이르기까지 어연에 참여하여 전에 오른 자가 모두 1백 40인이었다.

乎, ‘上老老而民興孝.’ 此正《絜矩》之義也。 孟子又曰: ‘與民同樂則王.’ 其令該曹, 依丙戌年例, 耆民并饋酒肴, 外方耆民, 亦令諸道給食物, 以示予遵昔推下之意。” 又教曰: “王孫婦在世者, 只有臨陽夫人, 年過八耋。 頃者臨幸, 尚今追憶。 其令該曹, 厚給宴需, 令其孫設酌。 近百耆舊都尉之今日進爵, 亦謂稀矣。 仰惟昔年, 益切此心。 特賜錦平都尉朴弼成廐馬, 又給其子孫設宴之需, 以示予追昔尊年之意。” 又教曰: “興思菴屋, 其果共樂? 吁嗟! 吾民其將欣欣乎? 其將蹙頰否乎? 此等之時, 濟民保民之政, 宜益講確也。” 命先減最久還穀一年條之停捧者。 參宴大臣以下至堂下陞殿者, 凡爲一百四十人。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9월 19일 (무술) 2번째기사 허물이 있는 헌신·김시형·이징하 등을 처벌할 것을 청하는 이위보의 상소문</p>	<p>헌납 이위보(李渭輔)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제 녹사의 무리들이 잠화(簪花)10339) 를 약탈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대개 지금의 헌부는 곧 한(漢)나라 때의 어사(御史)입니다. 한나라 고조(高祖)가 숙손통(叔孫通)으로 하여금 조의(朝儀)를 제정하게 하고 의례를 어긴 자는 어사가 문득 끌어 가자, 조정의 반열이 엄숙해졌습니다. 이로써 논한다면 어제 입시한 헌신은 직무(職務)를 저버린 실수가 있으니 특별히 견책을 베푸시고, 해당 금훤랑(禁喧郎)은 당초의 하교에 의하여 나문(拿問)하여 엄중히 처치하게 하소서. 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은 여러 차례 중대한 임무를 맡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인(貢人)에게 폐단을 끼쳐 도성 백성들의 원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진연의 한 절차에 있어서도 유사(有司)의 신하는 더욱 삼가는 것이 마땅한데, 응당 지급할 물건을 제때에 주지 아니하여 구차한 일이 많았다고 하니, 과직의 벌을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장령 이징하(李徵夏)는 본래 용렬한 무리로서 남의 응견(鷹犬)이 되어 이번의 처치를 앞장서서 담당하고 이를 말한 사람은 논열(論列)하여 과직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대각(臺閣)의 체통은 일찍이 없던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길이 대각의 천망에서 삭제하여 징계함이 마땅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큰 전례(典禮)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절목을 어찌 신칙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진달한 바가 모두 지나치다. 이징하에 관한 일은 이러한 버릇을 오늘날에도 어찌 감히 서로 부리는가? 하였다.</p>	<p>獻納李渭輔上疏, 略曰: 昨日錄事輩, 掠奪簪花之舉, 前所未有者。 蓋今之憲府, 卽漢之御史。 高祖使叔孫通制定朝儀, 御史輒引去不如儀者, 朝班肅穆。 其時入侍憲臣, 不無負職之失, 特施譴責, 當該禁喧郎, 依當初下教, 拿問嚴處。 戶曹判書金始炯, 屢當重務, 未能稱塞, 貽害貢人, 斂怨都民。 若其進宴一節, 有司之臣, 尤宜致謹, 而凡其應給之物, 趁不舉行, 事多苟簡云, 宜施譴罷之罰也。 掌令李徵夏本以關茸之類, 爲人鷹犬, 今此處置, 挺身擔當, 論列言事之人, 至於駁罷, 如許臺體, 曾所未有。 臣謂永刊臺望, 以爲懲勵之地也。 批曰: “大禮已成, 此等節目, 其何尋飭? 其所陳皆過矣。 李徵夏事, 此等之習, 何敢互售於今日乎?”</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0월 8일 (정사) 2번째기사</p>	<p>남양 부사(南陽府使) 정내주(鄭來周)가 상소하여 본고을의 재해를 입은 백성들의 황급한 정상을 진달하고 진휼청의 쌀 8백 곡을 사서 요리하여 진휼에 보충하게 하되 진휼청에서 발매(發賣)하는 규례에 의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갚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p>	<p>南陽府使鄭來周上疏, 陳本邑被災民情遑急之狀, 請買賑廳米八百斛, 許令料理補賑, 作錢還報, 依賑廳發賣之例, 批曰: “令備局稟處。</p>

<p>남양 부사 정내주가 그곳 재해민들에게 진휼청의 쌀을 주고 돈으로 갚기를 청하다</p>	<p>“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0월 14일(계해) 4번째기사 그만 둘 수 없는 예법과 의장 외에는 간략히 할 것을 청하는 김재로의 상소문</p>	<p>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미를 받아 광주(廣州)에 내려가 있으면서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귀주(貴主)의 혼인 때 마침 한재를 당했으므로, 특별히 의물(儀物)을 줄여서 절약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외면상의 의물은 비록 감손하였으나, 내면의 기구가 화사함이 여전하여 소박한 유가(儒家)의 자제는 감당할 수 없는 바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이목(耳目)에 벗어나는 일이지만, 만약 전하께서 아셨다면 반드시 금지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혼(大婚)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여 진실로 의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옛날의 성왕(聖王)은 재난을 당한 해에는 비록 제사에 쓰는 물품과 공어(供御)에 관한 물건 또는 감손한 적이 많았으니, 이는 경전(經傳)에 실려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미리 유사(有司)에게 신칙하여 그만둘 수 없는 예법(禮法)과 의장(儀仗) 이외에 무릇 낭비에 관계되는 것은 간략함을 따름으로써 국력을 펴게 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맞이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면계(勉戒)를 진달한 말은 깊이 흠탄(欽歎)하는 바이니, 모두 아뢴 대로 하겠다.” 하고, 원소(原疏)는 유중(留中)하도록 명하였다.</p>	<p>領議政金在魯受暇左廣州上疏, 略曰: 向於貴主之婚, 適值旱災, 特命減省儀物, 務從儉約。而臣嘗得於傳聞, 則外儀雖減, 而內具之華侈則自如, 有非儒素家子弟所能堪云。此在殿下耳目之外, 倘殿下覺知, 則必有所禁止矣。前頭大婚, 事體至重, 固難容議, 而古之聖王遇災歲, 則雖祭祀之品、供御之物, 亦多減殺, 載在經傳。伏願預飭有司, 禮法儀仗之不可已者外凡干浮費, 悉令從簡, 以紓國力, 以迓天休焉。 批曰: “陳勉深用欽歎, 皆當依施。” 原疏留中。</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0월 27일(병자) 3번째기사 진연과 관련한 김재로</p>	<p>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병술년(10342) 에 기로연(耆老宴)을 설행한 후 80세의 사족(士族)과 90세의 상한(常漢)에게 가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례(故例)에 다만 주육(酒肉)을 내려 주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 들건대 가자</p>	<p>領議政金在魯曰: “丙戌耆老宴後, 有士族八十、常漢九十加資之例矣。” 上曰: “只知故例爲賜酒肉, 而今聞加資, 此與民同樂推恩之盛意也。予既上承慈旨, 黽勉受宴, 追念昔日, 其豈</p>

<p>의 의견에 따라 80세의 사족, 90세의 평민에게 가자하게 하다</p>	<p>했다 하니, 이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고, 은전을 미루어 미치게 하는 성의(盛意)이다. 내가 이미 위로 자성의 뜻을 받들어 마지못해 진연을 받았으니, 옛날을 돌이켜 생각하건대, 어찌 그대로 넘길 수 있겠는가? 한결같이 병술년의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泯焉? 一依丙戌之例。</p>
<p>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2월 27일(병자) 2번째기사 탐라에서 진상 물품을 가지고 오던 자가 표류 3개월 만에 오니 옷감을 주다</p>	<p>하교하기를, “탐라(耽羅)에서 진상 물품을 압령(押領)하여 오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다가 3개월 만에 왔으니, 그 돌보아 줌이 마땅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옷감을 주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p>	<p>教曰: “耽羅進上領來之人, 漂流海中, 三朔後來, 其宜顧恤。 令該曹, 給衣資以遣。</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월 4일(임오) 2번째기사 김재로의 청에 따라 흥년이 든 제주도에 나리포의 곡식 5천 곡을 이급하게 하다</p>	<p>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나리포(羅里浦)의 곡식 5천 곡(斛)을 제주(濟州)로 이급(移給)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이는 본도(本島)에서 흉년이 들었음을 고하여 왔기 때문이었다.</p>	<p>領議政金在魯請移給羅里浦穀五千斛于濟州, 上允之。 以本島告歉也。</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월 11일(기축) 2번째기사 왕세자의 가례를 행하</p>	<p>이날 왕세자의 가례(嘉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임어하니 궁관(宮官)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을 경유하여 들어와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한 다음 서계(西階)로 올라가 자리에 나아가 서남쪽을 향하여 섰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술을 술잔에 따르고 사옹원 정(司饗院正)이 찬탁(饌卓)을 올리니, 왕세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술을 입에 댔다가 떼고 나아가</p>	<p>是日行王世子嘉禮。 上御仁政殿, 宮官引王世子, 由東門入行四拜禮, 陞自西階, 就席西南向立。 司饗院提調酌酒, 司饗正薦饌卓, 王世子降席啐酒進跪御座前。 上命之曰: “往迎爾相, 承</p>

다	<p>어좌(御座) 앞에 꿇어앉았다. 임금이 명하기를, “가서 너의 아내를 맞이하여 나의 종사를 받들게 하되 엄하게 거느리도록 힘 쓰라.”</p> <p>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신 모(某)는 삼가 교명을 받들겠습니다.”</p> <p>하고, 사배(四拜)를 행한 다음 서계(西階)로 내려와 어의궁(於義宮)으로 나아가 빈(嬪)을 맞이하였고 대내(大內)로 돌아와 초례(醮禮)를 행하였다.</p>	<p>我宗事，勸率以嚴。”世子曰：“臣某謹奉教。”行四拜訖，降自西階，出迎嬪于於義宮，還大內，行醮禮。</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1월 26일 (갑진) 3번째기사</p> <p>민응수가 수어청 별고에 있는 어공용 곡식의 개색을 청하니 전세와 교환케 하다</p>	<p>수어사(守禦使) 민응수(閔應洙)가 본청(本廳) 별고(別庫)에 저장된 갯미(粳米) 2백斛(斛), 중미(中米) 2천斛은 곧 긴급할 때 어공(御供)에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썩고 손상되었으니 개색(改色)하는 준례에 의거하여 기내(畿內)의 군민(軍民)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도로 거두어 들임으로써 손상되는 폐단을 제거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당한 국가에서 어공물(御供物)으로써 출납(出納)하고 염산(斂散)한다는 것은 매우 구차스러운 일이다. 지부(地部)10387)의 전세(田稅)와 서로 바꾸도록 하라.”</p> <p>하였다.</p>	<p>守禦使閔應洙，以本廳別庫所儲粳米二百斛、中米二千斛，乃緩急御供之需，年久腐傷，請依改色例，分畿內軍民，待秋還捧，以除其弊，上曰：“堂堂國家，以御供之物，出納斂散，大是苟且。與地部田稅，相換可也。”</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2월 19일 (정묘) 2번째기사</p> <p>임금에게 현기증이 있자 약방 도제조 유척기가 부득이 탕제를 올리고 귀향하다</p>	<p>임금이 약방(藥房)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도제조 유척기(兪拓基)가 미호(溟湖)에 물러가 있으면서 일이 있으면 들어오고 일이 끝나면 즉시 되돌아가곤 하였는데 이 직임에 제수되기에 이르러서는 성궁(聖躬)을 보호하는 책임이 중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라고 하유하였는데도 유척기가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것으로 사양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에게 현후(眩候)가 있었으므로 약원에서 탕제를 올릴 것을 청하였는데 도제조가 들어온 뒤에 야 된다고 하교하였다. 이리하여 유척기가 부득이 명을 받들었으나 곧 이어 또 고향으로 되돌아갔다.</p>	<p>上引見藥房諸臣。都提調兪拓基，退處溟湖，有事則入來，事定即歸，及授是任，以保護任重，諭令將母上來，拓基以母病辭。至是上有眩候，藥院請進湯劑，教以都提調入來後始可。拓基於是不得已承命，尋又還鄉。</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p>	<p>황해 수사(黃海水使)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당선(唐船)이 어채(漁採)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여름이 되면 오지 않는 해가</p>	<p>黃海水使朴文秀啓言：“唐船利於漁採，無夏不來，因與沿民，有無交易，其慢</p>

<p>(乾隆) 9년 2월 27일 (을해) 2번째기사 황해 수사 박문수는 황당선의 어로와 밀무역 역을 근절시키기 위한 계책 등을 아뢰다</p>	<p>없는데 이를 인하여 연해의 백성들과 물건을 교역(交易)하는 등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습관이 더욱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포(追捕)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다 썼지만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에 있어 최상의 계책은 비선(飛船)을 많이 만들어 밤낮으로 바다 위에 띄워 놓고 당선의 어채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먼저 비선 20척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만 본영(本營)의 재력으로서는 실로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영의 유고전(留庫錢)과 병영의 별비전(別備錢) 각 2백 민(緡), 상정미(詳定米) 50곡(斛)을 특별히 획급해 주도록 허락하면 제때에 배를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그 말을 따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간과(干戈)가 극렬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전선(戰船)을 만들었는데 용진(瓮津)이 아무리 피폐되었다고 해도 돈 4백 냥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청을 한단 말인가? 수신(帥臣)은 추고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p> <p>하였다. 형조 참판 이주진(李周鎭)이 말하기를, “황해 수사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만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어리(漁利)가 4,5천 냥에 가까워서 그 재력이 호곤(湖關)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어떻게 영곤(營關)에 있는 물력(物力)의 풍박(豐薄)에 대해 비교하여 진달할 수 있는가?”</p> <p>하고, 이주진을 추고하라고 명하였다.</p>	<p>侮橫肆之習益長。百計追捕，得力無路。即今上計，莫如多造飛船，晝夜浮海，以奪唐船漁採之利，故欲先造二十隻飛船，而本營財力實難措手。監營留庫錢·兵營別備錢各二百緡、詳定米五十斛，特許劃給，則庶可趁時造用矣。”左議政宋寅明請從其言，上曰：“忠武公李舜臣，干戈搶攘之中，能造戰船，瓮津雖疲弊，不能辦四百兩錢而有此請乎？帥臣推考，其令自備造船。”刑曹參判李周鎭曰：“黃海水使以新到，故有此請，而一年漁利所收，將近四五千，財力非湖關比。”上曰：“廈氈之上，何可以營關物力之豐薄，較挈陳達乎？”命推周鎭。</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3월 14일</p>	<p>이에 앞서 좌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강도(江都) 각진(各鎭)의 변장(邊將)들에 대한 조식(朝夕)의 뇨료(廩料)를 아직도 잇대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마음을 내어 수거(修舉)하겠습니까? 군항(軍</p>	<p>先是左議政宋寅明言：“江都各鎭邊將朝夕廩料，尚患不繼，其何能生意修舉耶？軍餉之分屬各鎭者，不過爲一二</p>

<p>(임진) 4번째기사 급료가 부족한 강화도 각진의 변장들에게 군 향미를 더 지급하고 모곡을 면제하다</p>	<p>餉) 가운데 각진에 분속(分屬)시킨 것이 1, 2백 석에 불과한데, 이것을 진민(鎭民)에게 나누어 주고 그 모곡(耗穀)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참작하여 더 지급한다면 향미(餉米)를 개색(改色)하는 것과 각진을 더 보조해주는 방도에 있어 둘 다 마땅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강화 유수 김시혁(金始燠)이 장문하기를, “본부(本府) 각진의 변장들에게 매달 주는 능료가 수십 두(斗)에도 차지 않고 병조에서 급대(給代)하는 배도 또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전에 획급하여 준 환곡도 각각 1백여 석에 불과한데 지금 더 지급하여 준다고 해도 각진의 창고가 곧 본부의 창고이니 여기 것을 옮겨 저기다 저축하는 셈이어서 조금도 손해나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모곡(耗穀)을 면제하고 해마다 개색(改色)한다 하더라도 이를 본창(本倉)에 쌓아 두는 것보다는 나아가 그래도 각진보(鎭堡)에 조금이나마 보조할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니, 청컨대 향미(餉米)를 1백 석을 한도로 모곡을 면제해 주고 더 지급해 주게 하소서.”</p> <p>했는데, 대신이 복주(覆奏)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石, 使分鎭民, 取用其耗。 今若參酌加給, 則其在餉米改色及各鎭添補之道, 兩得其宜。” 至是, 江華留守金始燠狀聞曰: 本府各鎭邊將朔下之料, 不滿數十斗, 兵曹給代之布, 亦無餘剩。 而曾前劃給還穀, 各不過百餘石, 則今雖加給, 各鎭倉庫, 便是本府倉庫, 移此儲彼, 少無損益。 雖許除耗, 年年改色, 亦有勝於本倉之積置, 而猶可爲各鎭堡一分補助之道, 請以餉米限百石, 除耗加給。</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4월 25일 (임신)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염선의 내수 사 예속, 도고의 폐단 등등을 논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 말하기를, “안주(安州)의 남당(南塘)에서 실화(失火)하여 근 3백 호가 잇따라 불에 탔는데 도신(道臣)이 호마다 각각 모소미(耗小米) 1석씩을 지급해 주고 묘당으로 하여금 회감(會減)10452) 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마땅히 그 청을 따라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외방의 염선(鹽船) 가운데 강두(江頭)에 와서 정박해 있는 것을 모두 내사(內司)에 예속시키게 한 것은 사체(事體)나 명목(名目)에 있어서 진실로 미안스러운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 말류의 폐단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진(鹽塵)의 도고(都庫)가 부리는 침학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선인(船人)들이 스스로 내사에 예속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 마땅히</p>	<p>壬申/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曰: “安州南塘失火, 延燒近三百戶, 道臣請每戶各給耗小米一石, 而令廟堂會減。 宜從其請。” 上從之。 在魯又言: “外方鹽船之來泊江頭者, 皆屬內司, 事體、名目固已未安, 而其流之弊, 不可不深慮。 鹽塵都庫, 侵虐孔劇, 故船人輩自願屬於內司, 宜痛加禁斷。” 副提調洪象漢陳都庫之弊。 右議政趙顯命曰: “自都庫出後, 雖柴束之微, 江民不得任意賣買, 此不</p>



	<p>통렬히 금단해야 됩니다.”</p> <p>하고, 부제조 홍상한도 도고의 폐단을 상세하게 진달했다. 우의정 조현명이 말하기를,</p> <p>“도고가 나온 뒤로부터 하찮은 뽕나무 묶음도 강민(江民)들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염선을 내사에 예속시키는 것을 파기하게 하고 도고는 각별히 금단하게 하라.”</p> <p>하였다. 조현명이 문언박(文彦博)의 고사(10453) 를 원용하여 정실(鄭實)·민백상(閔百祥)을 방면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문언박이 당개(唐介)를 부르라고 청한 것은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인데 뒷사람이 이를 모방하는 것은 사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경이 문언박을 본받으려하니, 나는 마땅히 송나라 인종(仁宗)을 배울 것이다. 정실에 대해서는 그 청을 따를 수 없으나 민백상은 특별히 석방하겠다.”</p> <p>하였다. 조현명이 또 말하기를,</p> <p>“홍주(洪州)·옹진(甯津)은 모두 바닷가의 지역인데 이기진(李箕鎮)은 본디 풍점(風漸)10454) 이 있고 박문수(朴文秀)는 독한 학질을 앓고 있으니, 두 중신은 조정에서 마땅히 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경하(元景夏)도 조정을 오래 떠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옹게 여겨 모두 내직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p>	<p>可不禁也。” 上曰：“鹽船之屬內司，其令罷之，都庫各別禁斷。” 顯命援文彦博故事，請放鄭察、閔百祥，上曰：“彦博之請召唐介，出於公心，後人若效之則私也。然卿欲效文彦博，予當學宋仁宗矣。鄭察不可從其請，而閔百祥特爲放釋。” 顯命又言曰：“洪州、瓮津俱是濱海之地，而李箕鎮素有風漸，朴文秀方患毒疔，兩重臣朝家所當軫念。而元景夏亦非久離朝廷之人也。” 上可之，并命內移。</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5월 2일 (기묘) 1번째기사 약원의 신하들을 사용</p>	<p>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사용원(司饗院)으로 옮겨 숙직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뜰을 맞았는데 원임(原任)·시임(時任) 대신들이 사현합(思賢閣)에 입사하였으니, 곧 와내(臥內)이다. 임금이 의관(醫官)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p> <p>“나의 병은 광란도 아니고 회충도 아니다. 바로 기(氣)와 가래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징후는 산기(疝氣)이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본말(本末)</p>	<p>己卯/命藥院諸臣，移直于司饗院。上受灸，時、原任大臣入侍于思賢閣，卽臥內也。上顧謂醫官曰：“予疾非癰非蛔，乃氣與痰耳。牽引之候則疝氣也。治病之道，有本有末，有內有表，</p>

<p>원으로 옮겨 숙직하도록 명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다</p>	<p>이 있고 내표(內表)가 있는 것이어서 먼저 본(本)과 내(內)를 다스린 이후에는 말(末)과 표(表)는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병을 다스리는 것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는 삼우(三隅)10459)를 반증(反證)할 수 있는 것이다.”</p> <p>하니, 도제조 유척기(兪拓基)가 말하기를,  “사람의 한 몸은 한 나라와 같은 것이어서 이미 원기(元氣)가 있으면 외사(外邪)가 어떻게 감히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제왕(帝王)의 50세는 곧 보통 사람의 6,70세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상께서 침선(寢膳)과 의대(衣櫛)에 대해 조심하고 보호하는 것이 도리어 여염집의 소년이 병을 조심하는 것만큼도 못하시니, 신은 이를 안타깝게 여깁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는 늙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p> <p>하였다. 이때 임금이 목면으로 된 침의(寢衣)를 입고 소자모(小紫帽)를 썼으며 이불 하나 요 하나가 모두 명주로 만든 것이었으며 병장(屏障)도 진설하지 않았다. 또 기완(器玩)도 없어서 화려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제구가 여항(閭巷)의 호귀(豪貴)한 집에 견주어도 도리어 그만 못한 것이 있었다. 여러 신하들이 물러 나와 임금의 검소한 덕에 대해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p>	<p>先治其本與內，然後末與表自可治也。治病比如治郡，何難之有？此可以三隅反也。” 都提調兪拓基曰：“人之一身如一國，既有元氣，則外邪何敢侵乎？帝王五十之年，即凡人之六七十，而聖上凡於寢膳、衣櫛所以慎護者，反不如閭家少年之慎疾者，臣以爲悶。” 上曰：“年雖老，而心則不然矣。” 時上御木綿寢衣，着小紫帽，一衾一褥，皆紬絹之屬，不設屏障。又無器玩，其華靡便體之具，比閭巷豪貴之家，反有遜焉。諸臣退出，莫不歎上之儉德。</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5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  약원의 숙직을 파하고 신하들의 1일 2회의 진찰도 중지하게 하다</p>	<p>약원의 숙직을 파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하루에 두번씩 들어와 진찰했는데 이 또한 중지하라고 명하였다.</p>	<p>丁亥/命罷藥院直宿。時藥院諸臣，日再入診，至是亦命止之。</p>
<p>영조 59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p>	<p>승지에게 명하여 태묘(太廟)의 망제(望祭) 때 쓸 제물을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승지가 돌아와서 아뢰기를,</p>	<p>命承旨，往審太廟望祭祭物。承旨歸奏曰：“祭物，午時已爲陳設矣。” 上</p>

<p>(乾隆) 9년 7월 14일 (기축) 3번째기사 승지에게 태묘의 망제에 쓸 제물을 살펴보고 하고 너무 일찍 진설하지 말게 하다</p>	<p>“제물을 오시(午時)에 이미 진설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겠는가? 반주야(半晝夜)에 제찬(祭饌)을 진설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고 그 일이 편함을 취하는 것에 가깝다. 더구나 한 더위를 당하여 더욱 정결함을 다하는 데 흠이 된다. 신칙하여 이 뒤로는 전처럼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曰：“此豈厥明夙興之義乎？陳饌半晝夜，於禮有違，事近取便。況當盛暑，尤欠鑄潔，其令申飭，後勿如前。</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8월 5일 (기유) 1번째기사 내수사에서 행하던 경강 염선에 대한 수세권을 의빈부에 이속시키다</p>	<p>의빈부(儀賓府)에서 경강(京江)의 염선(鹽船)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본부에 속하게 해서 공용(公用)에 충당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이보다 앞서 염선은 내사(內司)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대신이 혁파할 것을 아뢰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의빈부에 속하게 하였다.</p>	<p>己酉/儀賓府請以京江鹽船收稅，屬之本府，以補公用，上允之。先是鹽船自內司收稅，大臣陳白革罷。至是復屬於儀賓府。</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8월 9일 (계축) 1번째기사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토색질한 자의 처벌을 청하는 유건의 상소문</p>	<p>장령 유건(柳謩)이 상소하기를, “어제 제사에 배종할 때에 봉상시(奉常寺) 부봉사(副奉事) 이중빈(李重彬)은 제사의 반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막(依幕)에 거만하게 앉아서 하례(下隸)를 구타하고 술과 음식을 토색질하였으니, 마땅히 도대시켜 버려야 합니다. 인의(引儀) 가운데 대신들을 인접(引接)할 때에 즉시 대령하지 아니한 자도 또한 마땅히 그 성명을 조사해서 잡아다가 심문하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p>	<p>癸丑/掌令柳謩上疏言： 昨日陪祭時，奉常副奉事李重彬，不入祭班，偃坐依幕，毆打下隸，討索酒食，宜汰去。引儀之不卽待令於引接大臣之時者，亦宜查出姓名，拿問嚴處。并允之。</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8월 11일</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총용청(摠戎廳)의 순조(巡操)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소속된 고을에서 능침의 역사에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교하기를,</p>	<p>引見大臣、備堂，命停摠戎廳巡操，以所屬邑多赴陵役故也。又教曰：“今番改修之役，莊陵後初也。因追慕躬審</p>

(을묘)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총융청·변방·  
밀교역·표문 등에 관  
해 토의하다

“금년에 개수(改修)하는 역사는 장릉(莊陵)의 역사 후에 처음이다. 추모의 정으로 인하여 내가 몸소 도감(都監)의 역사를 봉심(奉審)하고 감독한 것이다. 행행(幸行)의 공급을 한꺼번에 거행하였으니, 경기의 궁핍한 백성들이 어찌 곤란하지 않았겠는가? 직접 그 곤란한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만일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치가 없다면 이것이 어찌 옛날 성왕(聖王)들의 뜻을 우러러 본받는 것이겠는가? 이미 경기 관찰사에게 하문하여 12고을의 사정을 뽑아서 아뢰도록 하였다. 금년에 환상미(還上米)의 군량미 가운데 새로이 모손(耗損)된 것은 일절 아울러 탕감하게 하라. 양주(楊州)·고양(高陽)의 백성들이 여러 능침을 받드니, 더욱 마땅히 구휼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산성(山城)의 군량미는 특별히 절반을 보류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전 동래 부사 정이검(鄭履儉)을 잡아와서 심문하게 하였는데, 정이검의 비장(裨將)이 공목 감관(公木監官) 전우장(田雨章)·김윤하(金潤河)·박태석(朴泰碩) 등과 함께 몰래 각 고을의 하납미(下納米) 1천 5백 곡(斛)을 팔아서 전(錢) 6천 민(緡)과 교환하여 사사로이 스스로 나누어 썼다가, 그 반분(半分)을 취하여 전우장 등으로 하여금 요량하여 일을 미봉(彌縫)하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미곡 태반을 전우장 등이 혹은 함부로 낭비하고, 혹은 훔쳐다가 먹었는데, 전후에 들여다가 왜인들에게 지급하여 준 것은 겨우 1백 70여 석(石)뿐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건이 발각되자. 새로 부임한 부사 김한철(金漢喆)이 장계(狀啓)를 올려 전우장 등의 죄를 청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전우장 등 세 사람은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서로 구원하려 하였으니, 모두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마땅히 국경 상에서 효시하여 변방 사람들을 권려하여야 합니다. 정이검의 비장은 그 주수(主帥)를 속이고 공적인 재화를 마음대로 썼으니, 또한 죄를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경옥(京獄)으로 붙잡아와서 형신(刑訊)하여 추국한 다음에 정배(定配)하도록 하

童事都監之役。 幸行供給，一時并舉，畿甸窮民，豈不困也？ 目覩其困，若無恤民之政，此豈仰體昔年之意？ 既問畿伯，抄奏十二邑。 今年還上軍餉新耗，一并蕩滅。 楊、高之民奉諸陵寢，尤宜示恤。 山城軍餉，特爲折半捧留。”

命拿問前東萊府使鄭履儉，履儉裨將，與公木監官田雨章、金潤河、朴泰碩等，潛賣各邑下納米一千五百斛，換錢六千緡，私自分用，取其半，使雨章等料理彌縫。 而其餘米太，雨章等或濫費或偷食，前後入給於倭者，只一百七十餘石。 至是事發，新府使金漢喆狀請雨章等罪，領議政金在魯曰：“雨章等三人，同惡相濟，皆犯極罪。 并宜梟示境上，以勵邊人。 履儉裨將，欺瞞主帥，擅用公貨，亦不可無罪。 亦宜拿致京獄，刑推定配。” 右議政趙顯命曰：“事係交隣，亦關邊情，不可不嚴懲。 宜一并梟示。 而履儉亦難免不察之罪。” 上曰：“裨將，卽府使之耳目爪牙，豈可身犯此等事乎？ 今并與其裨將而梟示之，然後邊人知懼矣。” 顯命曰：“請令道臣，更查以聞，履儉亦宜先罷後拿。” 上從之。 後因本道

	<p>소서.”</p> <p>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p> <p>“사건이 교린(交隣)과 관계되고 또한 변방의 사정(事情)과도 관계되니,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같이 모두 효시(效示)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이검도 또한 그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가 어렵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비장은 곧 부사의 이목(耳目)이요, 조아(爪牙)인데, 어찌 당사자가 이런 따위의 일을 범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과 그 비장을 아울러 효시(效示)한 다음이라야 변방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알게 될 것이다.”</p> <p>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p> <p>“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고, 정이검도 또한 마땅히 먼저 파직시킨 다음에 붙잡아 오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뒤에 본도의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아뢰는 것으로 인하여 전우장 등을 효시(效示)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절도(絶島)에 보내어 종으로 삼았으며, 정이검은 금천(衿川)에 유배시켰다. 이어서 전후의 동래 부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10년을 한정하고 적발하여 형률에 따라 처단하라고 명하였다.</p> <p>조현명이 또 말하기를,</p> <p>“지난번에 강계(江界)에서 일어난 마상(馬尙)의 사건 때문에 청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이를 곤란하게 여겼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들으니, 이른바 황표(皇標)라는 것은 곧 강희제(康熙帝) 시절에 변방의 백성들에게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산(禁山)을 출입하면서 삼(蔘)을 캐서 세를 바치게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상은 모두 산동(山東) 지방에서 몰래 와서 삼을 캐는 백성으로 관표(官標)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염장(鹽醬)과 양식을 반드시 우리 나라의 간사한 백성들에게 의존할</p>	<p>道臣查啓， 梟田兩章等， 其餘絕島爲奴， 履儉竄于衿川。 仍命前後府使犯科者， 限十年摘發勘律。 顯命又曰：“向以江界馬尙事， 請移咨而聖上難之矣。 追後詳聞， 所謂皇標， 卽康熙時給邊民， 使之出入禁山， 採蔘納稅者。 而今之馬尙， 皆山東偷採之民， 而無官標者也。 此輩鹽醬糧米， 必資我國奸民， 兩國交界無人之地， 彼此奸民往來交通， 不知早晚生出何樣事變， 豈非可慮者乎？ 丁未辱咨中， 有‘此後倘有非類越境生事， 而朝鮮不能禁戢， 則當爲議處’之語， 此事彼若知覺， 必爲詰責之端， 其將何辭而對之？ 宜先飭道臣、 邊臣， 依昨年例把守四郡境， 俾無彼此奸民踰越交通之弊。 移咨彼中以爲， ‘丁未咨意嚴重， 不敢不用心防守， 而此輩皆稱， 我往我境， 非爾所知， 肆然沿流， 往來如市， 畢竟生事邊門， 獲戾大邦， 勢所必至， 乞加禁斷’云， 則辭理明直， 可無後慮。” 在魯曰：“聖上每慮自我先發， 或致辱國， 而此是彼國亂民， 而彼之所欲禁者也。 因事發覺， 則辱國尤可慮， 莫如先爲移咨， 以報形止。” 從之。 清國新改奏皇太后、 皇</p>
--	--	--

것인데, 양국의 경계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피차의 간사한 백성들이 왕래하고 교통(交通)하여 조만간에 어떠한 양상의 사건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 어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미년(1050) 옥자(辱咨) 가운데, ‘차후에 혹시 비류(非類)의 월경(越境)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조선에서 능히 이것을 금지하여 막지 못한다면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저들이 만약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힐책하는 단서로 삼을 것이니, 그것을 장차 무슨 말로써 이에 답변할 것입니까? 마땅히 먼저 도신(道臣)과 변신(邊臣)을 작년의 예에 의하여 사군(四郡)의 국경을 파수하게 하여 피차의 간사한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교통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피중(彼中)에 자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미년에 있었던 자문의 뜻이 엄중하므로 감히 마음을 다하여 국경을 방어하고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무리들이 모두 일컫기를, 「우리가 우리의 국경을 왕래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왕래하기를 저자 드나들듯하다가 필경에는 변문(邊門)에 사건을 일으켜서 대방(大邦)에 누를 끼칠 형세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바라건대, 금단(禁斷)을 더하라.’고 한다면, 사리(辭理)가 분명하고 바르게 되어서 후일의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재로는 말하기를,

“성상께서 언제나 우리쪽에서 먼저 사건을 일으켜서 혹시라도 나라에 욕될까 염려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피국(彼國)의 난민(亂民)들로서, 저들이 금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인하여 사건이 발각된다면 나라에 욕되는 것이 더욱 염려스러울 것이니, 먼저 자문을 보내어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청나라에서 황태후(皇太后)와 황후(皇后)에게 아뢰는 표문(表文)의 법식을 새

后表文式，送于我，而我國本無表奏皇太后、皇后之例，大臣請以此意回咨，上可之。教曰：“昔漢文詔，以‘因山爲陵，裁令流水’，心常慕之。然欲法堯、舜，當法祖宗，何效於漢？我太宗朝，四方石前一片，特作二片，我聖祖除屏風石，可謂嗣王之準法。逮于我聖考，陵上石物，特命倣厚陵制，至矣儉德，猗歟盛矣。爲人子者，於爲先之道，豈敢欲稍減，而今因改修封陵高圓，亦倣厚陵制而行之，是亦繼述之意也。然其時下教若此，而當初封陵之時，比象設其亦稍間，此亦監董臣子有所不敢者。於懿陵雖倣庚子制度，安知此後歲月寢久，不無漸高漸大之弊？此後嗣王所重之心，先於繼述，亦豈無高大之弊耶？吁！果若此也，是薄於前而厚於後也，中夜興思，不覺瞿然。不可不因此時而永爲定制。噫！人子報本之道，永久爲先，豈在於一時觀美乎？此後園陵制度，象設規模一遵此制無加尺寸，而他日爲子孫者，意過尊崇，不遵此式，是豈孝乎？予又因此而下有教者。昔年厚陵奉審之奏，已有覺悟者，今番諸陵奉審，亦有默量者。

로이 고쳐서 우리 나라에 보내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황태후와 황후에게 표문으로 아뢰던 예가 없었으므로, 대신들이 이러한 뜻을 회자(回咨)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하교하기를,

“옛날에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유조(遺詔)에, ‘산의 원형(原形) 그대로 따라 능을 만들고 재량하여 물이 흐르게 하라.’고 하였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이를 흠모하였다. 그러나 요순(堯舜)을 본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한(漢)나라를 본받겠는가? 우리 태종조(太宗朝) 때에는 사방석(四方石) 앞의 1편(片)을 특별히 2편(片)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성조(聖朝)께서는 병풍석(屏風石)을 없앴는데, 이것이 사왕(嗣王)의 준법(準法)이라고 일컬을 만하다. 우리 성고(聖考) 때에 이르러 능상(陵上)의 석물(石物)들은 후릉(厚陵)10506)의 제도를 모방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는데, 지극히 검소한 덕이 놀랍고도 훌륭하였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선대(先代)를 위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덜하고자 하겠는가마는, 지금 개수(改修)로 인하여 능침을 높고 등글게 봉토(封土)하는 데에도 또한 후릉의 제도를 모방하여 시행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계술(繼述)하려는 뜻이다. 그러나 그때에 하교한 것이 이와 같았으나 당초에 능침을 봉토할 때의 상설(象設)에 비교하여 그것이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도 또한 역사를 감독하는 신자(臣子)가 감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 의릉(懿陵)에 있어서는 비록 경자년10507)의 제도를 모방하였지만, 이 뒤에 세월이 아주 오래 되어 능침을 점차 높이고 크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아니할런지를 어찌 알겠는가? 차후의 사왕(嗣王)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계술하는 데에 먼저 한다 하여도, 또한 능침을 높고 크게 만드는 폐단이 어찌 없겠는가? 아! 과연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은 전대에는 박하게 하고 후대에는 후하게 한 것이니, 한밤중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된다. 이때를 기준하여 영원히 일정한 제도를 만들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 인자(人

遊石及下磚石，猶非厚陵之制也，此後則亦宜從厚陵之制爲之事，定式儀註，以爲永垂來後之道焉。” 在魯曰：“向日宗臣之疏請入耆社，而大抵人君之入耆社，乃降屈也，非榮耀也。群下頌禱之忱，方期千萬年。今聖壽纔踰五十，豈可遽以耆老之號，加之於君父乎？臣等之心，誠有所未忍也。我朝列聖，惟太祖、肅廟入耆社。而至若太宗、世宗、世祖、中宗、宣祖五六聖寶壽，亦踰五旬而皆不入，此所謂吾先君莫之行也。且殿下前後屢下不忍聞之教，爲今日臣子，豈敢以耆老二字，歸之於聖上乎？姑待六七年議之未晚也。” 上曰：“方纂《續大典》，而耆老司條中，將漏當宁二字，予有感焉。雖以卿等言之，外任先生案父子繼書，則豈不貴乎？且己亥以後，則不可謂吾先君莫之行也。欲書名著帖者，只欲追踵故事而已，豈求作物外閑人乎？” 顯命曰：“殿下每下苦心之教，雖臣下賜几杖，則亦爲奉朝請，此臣等所以尤不敢奉承也。” 上大笑曰：“此則卿言過也。”

子)가 근본에 보답하는 도리는 영구적인 것을 먼저 할 것인데, 어찌 일시적으로 보기 아름다운 것에 두겠는가? 이 뒤로는 원묘(園墓)와 능침의 제도에서 상설의 규모는 하나같이 이 제도를 따르고 한자 한치라도 더하지 말게 하되, 후일에 자손되는 자가 지나치게 높이고 숭앙하려고 생각하여 이 법식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효도이겠는가? 나도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교할 것이 있다. 지난해에 후릉(厚陵)을 봉심(奉審)하라는 주문(秦聞)에서 이미 깨달은 바가 있었고, 금번에 여러 능침을 봉심하는 데에도 또한 묵묵히 말없이 헤아리는 바가 있었다. 혼유석(魂遊石)과 하박석(下磚石)은 오히려 후릉의 제도가 아닌데, 이후로는 이것도 또한 마땅히 후릉의 제도를 따라야 할 일로 법식을 정한 의주(儀註)를 길이 후세에 남겨 줄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지난날에 종신(宗臣)의 상소에서 성상을 기사(耆社)에 들도록 청하였는데, 대저 인군(人君)이 기사에 들어가는 것은 곧 몸을 낮추고 굽히는 것이지,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못 신하들이 전하께 송축(頌祝)하는 정성은 바야흐로 천만년을 기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수령(壽齡)이 겨우 쉰 살을 넘겼는데, 어찌 갑자기 기로(耆老)라는 칭호를 군부(君父)에게 더하겠습니까? 신등의 마음은 진실로 이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정의 열성(列聖) 중에서 오로지 태조(太祖)와 숙종[肅廟]만이 기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종(太宗)·세종(世宗)·세조(世祖)·중종(中宗)·선조(宣祖) 같은 5,6분의 성조께서는 보주(寶籌)가 또한 쉰 살을 넘기셨으나 모두 기사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우리 선군(先君)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던 바입니다. 또 전하께서 전후에 여러 차례 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내렸으나, 금일에 신자가 되어서 어찌 감히 기로라는 두 글자를 성상께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우선 6, 7년을 기다렸다가 의논하더라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바야흐로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고 있는데, 기로사(耆老司) 조문 가운데 장차 당저(當宇)라는 두 글자를 빼버리려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여긴다. 비록 경들이 이를 말하지만, 외임 선생안(外任先生案)에 부자(父子)가 잇달아 기록된다면, 어찌 귀한 게 아니겠는가? 또 기해년(10508) 이후라면 우리 선군께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름을 기첩(耆帖)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고사(故事)를 따르고자 하는 것뿐인데, 어찌 물외(物外)의 한인(閑人)을 구하여 만드는 것이겠는가?”</p> <p>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언제나 고심하는 분부를 내리시는데, 비록 신하에게 쟁(杖)을 하사하고 또한 봉조청(奉朝請)을 삼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 등이 더욱 감히 봉승(奉承)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경의 말이 지나치다.”</p> <p>하였다.</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8월 19일 (계해) 5번째기사  대신과 찬집청의 당상관을 소견하고 순장(殉葬), 국휼, 대향 등에 관해 하교하다</p>	<p>임금이 대신과 찬집청(纂輯廳)의 당상관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목노비(木奴婢)는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가?”</p> <p>하니, 여러 대신들 가운데에 아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윤광소(尹光紹)를 불러서 물어보니, 윤광소가 말하기를,  “주(周)나라 말엽에 목노비가 있었는데, 꼭두각시 인형 같은 종류였습니다. 옛날에 꼭두각시 인형을 쓰던 법이 있었기 때문에 후일에 순장(殉葬)의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니, 대개 그 꼭두각시 인형을 쓰는 법을 변화시키고자 하다가 목노비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례(周禮)》와 《의례(儀禮)》를 상고하더라도 모두 이러한 기록이 없고 단지 경전(經傳)의 통해(通解)에 나올 뿐이니, 이것은 후세에서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p>	<p>○上召見大臣、纂輯堂上，教曰：“木奴婢，始於何代？”諸臣無知者。召問尹光紹，光紹曰：“周末有木奴婢，如俑之類也。古有俑法，故後有殉葬之弊，蓋欲變其俑法而爲木奴婢也。考之《周禮》、《儀禮》，俱無所載，而只出於經傳通解，非後世可法也。”上曰：“安知因此而又不爲殉葬也？除之可也。”諸臣或以爲：“事在久遠，宜</p>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으로 인하여 또 순장을 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를 없애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혹은 말하기를,  
 “그러한 일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니, 미땅히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국장(國葬)이나 예장(禮葬)에서 목인(木人)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자(孔子)께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든 자를 비난하여 배척한 것은 꼭두각시 인형의 폐단이 전환하여 순장을 대신하였기 때문이었다. 목인으로써 대신하게 된 것이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경(不敬)스러운 것인데, 지금 그 명칭을 그대로 둔다면 후일에 목인으로 인하여 다시 순장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옛날의 기록을 그대로 두는 뜻은 대개 신중히 하고자 함이고 지금 그 사용을 없애는 것은 곧 후세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 의조(儀曹)로 하여금 국장과 예장에서 특별히 순장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국휼(國恤) 3년 뒤에 《오례의(五禮儀)》에서는 으레 결채(結綵)와 가요(歌謠) 등의 예가 있고, 대향(大享) 뒤에는 음복연(飲福宴)이 있는데, 성조(聖祖)께서 특별히 명하여 이것을 없애게 하였으니, 아! 훌륭하시었도다. 그런데 해당 조에서 오히려 고례(古禮)를 근거로 하여 이것을 품신하였으니, 근래의 전례에 의하여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비록 예사 비답을 내렸다 하지만, 그 혹시라도 떠벌리려고 하는 임금이 있어 옛날의 기록을 잘못 인용하여 범연히 의운(依允)한다면, 아! 우리 성조(聖祖)와 성고(聖考)께서 추모하면서 차마 거행하지 않았던 훌륭한 효도가 장차 억제되고 시행되지 못할 것이니, 이후로는 그것을 의조로 하여금 수교(受敎)한 것으로써 성헌(成憲)을 만들고 예품(例稟)

思窮慎。” 上曰：“存其文而，除其用何妨也？” 仍教曰：“國葬、禮葬用木人，疑是代殉葬者。而孔聖之非斥作俑者，俑之弊轉而為殉葬故也。代以木人，未知創於何時，而用之不敬，今留其名，焉知無他日以木人而更以殉葬乎？存其舊文，意蓋慎重，今除其用，乃祛後弊也。其令儀曹，國葬、禮葬特為除殉。” 又教曰：“國恤三年後，五禮儀例有結綵歌謠等禮，大享後有飲福宴，而聖祖特命除之，猗歎盛矣！而該曹猶憑古禮而稟之，依近例勿為舉行。雖作例批，其或侈大之君，誤引舊文，泛以依允，則噫我聖祖、聖考追慕不忍之盛孝，其將抑而不行，此後其令儀曹，以受敎為成憲，勿為例稟。”

	<p>하지는 말라.” 하였다.</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9월 5일 (기묘) 4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건하고 진연에 쓸 경비를 의논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건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진연청(進宴廳)의 초기(草記)10538) 를 가지고 경인년(10539) 의 전례에 의하여 진흥청(賑恤廳)의 쌀 1천 곡(斛)을 지급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많지 않았는가? 작년의 예에 의하여 8백 곡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지난해 연례(宴禮) 때에 기명(器皿)의 숫자를 감하였던 것에 대하여 신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였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앞에 팔진미(八珍味)를 늘어놓더라도 먹는 것은 입에 맞는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많은 것을 취하겠는가? 내 생각이 단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였다.</p>	<p>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以進宴廳草記，請依庚寅例，劃給賑廳米一千斛，上曰：“不已多乎？依昨年例，以八百斛劃給。” 戶曹判書金若魯曰：“前年宴禮時，器數之減省，臣以爲過也，今年不必如前年也。” 上曰：“古語曰，‘羅八珍於前，所食不過適口’，奚取乎多也？予意不但在於節省而已。”</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9월 10일 (갑신) 1번째기사 숭정전에 나아가서 백관들을 거느린 왕세자의 하례를 받고 교문을 반포하다</p>	<p>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서, 왕세자가 백관들을 거느리고 하례하는 것을 받았다. 드디어 교문(敎文)을 반포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수역(壽域)10541) 에서 교화를 뻗치니 하늘에서 기쁜 경사를 내려 주고, 영수각(靈壽閣)에서 그 아름다움을 짝하매 백성들과 더불어 경사를 함께 하노라. 대개 선무(先武)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감히 미문(彌文)을 일삼지는 아니하겠다. 생각건대, 나의 조그마한 말단의 자질(姿質)이 영장(靈長)의 업(業)을 외람되게 이어받아, 20년 동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갓 정사에만 부지런할 따름이었는데, 어찌 인수(仁壽)가 백성들보다 높음이 있겠는가? 춘추(春秋)가 1백 세의 반을 넘었으니, 그 모양 그대로의 용안(容顏)이 옛날과 같지 않다. 지나간 세월을 더듬어 뒤돌아보면서, 선조(先朝) 때에 남긴 규례를 감회 깊게 생각한다. 옛날 태조(太祖)께서 오래 사시어서 몸을 낮추어 기사(耆社)의 여러 언사(彦士)들과 나란히 하였는데, 영고(寧</p>	<p>甲申/上御崇政殿，受王世子率百官賀。 頒敎文： 王若曰。 壽域覃化，自天降禧，靈閣嬾休，與民同慶。 蓋欲追乎先武，非敢事乎彌文。 念予眇末之姿，叨承靈長之業，宵旰徒勤於二紀，有何仁壽之躋民，春秋強半於百齡，居然容顏之非昔。 撫流年而反顧，感先朝之遺規。 昔太祖維祺，降而比耆社諸彥，而寧考克紹，傳之爲昭代美譚。 寶帖相承，厥或在五六旬以後，縟儀甚曠，僅再見三百年之中。 惟前乘所希有焉，顧小</p>

考)께서 이어받을 수 있어 전하여 소대(昭代)의 아름다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보첩(寶帖)을 서로 받드신 것이 혹은 5, 6순 이후가 되어서 있었고 육례(縟禮)를 치룬 경우가 심히 드물어서 겨우 3백 년 동안에 두번 보았을 뿐이다. 지난 사승(史乘)에서 드물게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소자(小子)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이를 바라겠는가? 서루(西樓)에서 남아 있는 필적의 기록을 읽으면서 즐겁게 흠모하는데, 동궁으로 어첩(御牒)의 제목을 쓰던 때를 생각하니, 감동되는 것이 있다. 종신[宗宰]의 상소에서는 고례(古例)를 끌어다가 말하였고 정신(廷臣)들도 부지런히 청하기를 힘써 선왕조의 일을 따르라고 힘써 권하였다. 기사(耆社)에 드는 나이[耆齡]에는 몇 살이 조금 모자라는데, 비록 예순을 바라보는 선한 살이라고는 하지만, 과인의 덕이 전대 열성(列聖)에 비할 때 실로 부끄러운데, 감히 두 선왕에 짝하여 세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반드시 지나치게 겸손할 것도 없는데, 하물며 첨의(僉議)에서 끝내 굳이 안된다는 주장을 어렵게 여기는 데에야 말할 것도 없다. 목릉(穆陵)께서 만년에 남기신 유지(遺旨)는 오히려 나의 속마음을 감격시켰고, 송(宋)나라 현사(賢士)들 가운데 중년 나이로 기영회(耆英會)에 든 고사가 있다. 경편(瓊編)과 보묵(寶墨)에는 오히려 천일(天日)의 남아있는 빛을 생각하고, 영장(靈杖)과 채의(菜衣)에는 진신(摺紳)들의 옛 음영(吟咏)을 맞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전(眞殿)에 나아가서 먼저 배알(拜謁)하고 이에 수첩(壽牒)에 연달아 쓰노라. 그 중간에 어렵고 험한 일을 곱고루 맛보았는데, 어찌 처음에 원하였던 것이 이와 같은 데에까지 미칠 줄 생각하였겠는가? 전후에 아름다운 경사가 서로 잇달으니, 거의 옛날의 천명(天命)이 지금부터 새롭게 되었다. 축수하는 술잔을 올려 즐거움을 받드니 진실로 날짜를 아끼는 마음을 펴게 되었고, 옷칠한 궤장(几杖)을 어루만지니 비창(悲愴)한 생각이 들어 당황하기가 새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애통하다. 7묘(七廟)에 고유(告由)하여 밝은 제사를 지내고, 이를 《오례의(五禮儀)》에 기록하여 후세에 법칙을

子何敢望也? 讀西樓留筆之記, 欣然慕之, 想東宮題牒之時, 別有感者。宗宰之疏上, 而言則援古, 廷臣之請勤, 而勛以遵先。耆齡差欠於數籌, 雖云望六則一, 寡德實慙於前烈, 敢期配二爲三。然茲事不必過謙, 矧僉議終難強拂。穆陵之晚年遺旨, 尚激予衷, 宋賢之中歲耆英, 厥有故事。瓊編寶墨, 尚想天日之餘輝, 靈杖菜衣, 有味摺紳之舊詠。肆眞殿之先謁, 迺壽牒之繼書。中間艱險之備嘗, 豈始願之及此? 前後休慶之相襲, 庶舊命之維新。稱壽觴而奉歡, 誠展愛日, 撫髯几而興愴, 恍如隔晨。告七廟而修明禮, 載《五禮》而垂後則。殷三宗歷年最久, 蓋由寅畏而嚴恭, 箕五福歛時用數, 宜勉平蕩而正直。雖衛公及耄之日, 尚勤交儆之功, 況孔聖知命之年, 敢有吾衰之歎? 庶幾一心圖理, 嘉與四方同歡。既渙號於大庭, 仍解澤於匝域。自本月初十日昧爽以前雜犯以下, 咸宥除之。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於戲! 眷貳極之在側, 庸申與齡之休, 暨群老而式敖, 深望乞言之義。故茲教示, 想宜知悉。【藝

	<p>남긴다. 은(殷)나라의 삼종(三宗)10542) 이 왕위(王位)에 있는 햇수가 가장 장구하였던 것은 대개 삼가고 두려워하며 근엄하고 공손한 데에 연유되었고, 기주(箕疇)10543) 에 있는 오복(五福)을 때로 모아서 펴 주었으니, 마땅히 왕도(王道)가 탕평(蕩平)하고 정직(正直)한 데에 힘쓸 것이다. 위(衛)나라 무공(武公)은 나이 90세가 넘었을 때에도 오히려 못 신하들에게 교대로 깨우쳐 줄 것을 바라며 학문의 공부에 부지런하였는데, 하물며 공자(孔子)같은 성인 은 지천명(知天命)10544) 의 나이에 감히 내가 쇠약해졌다는 탄식을 하지 않았던가? 거의 한마음으로 사리를 도모하여 즐거움을 사방의 신민들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기를 바라노라. 이미 대정(大庭)에서 크게 부르짖고 이어서 은택을 온 세상에 내리노라. 이달 초10일 새벽 이전의 잡범(雜犯)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이를 면죄한다.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게 하되, 자급이 다한 자는 대신 가자(加資)하게 하라. 아! 이극(貳極)10545) 이 곁에 있는 것을 돌아보니, 이에 수령(壽齡)과 같이한 아름다움을 펴게 되었고, 여러 늙은이들과 함께 하게 되어 이에 오만하게 되었으니 걸언(乞言)10546) 의 의리를 매우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자세히 알기를 바란다.”</p> <p>하였다. 【예문관 제학 이종성(李宗城)이 지어서 올렸다.】</p>	<p>文提學李宗城製進。】</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9월 12일 (병술) 1번째기사 진연 준비자가 부족하다는 사용원의 청에 따라 제조 4인과 부제조 2인을 더 뽑다</p>	<p>사용원(司饗院)에서 진연(進宴)할 때의 차비(差備)가 부족하다고 하여, 제조(提調) 4인과 부제조(副提調) 2인을 더하여 차출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것도 또한 구례였다.</p>	<p>丙戌/司饗院，以進宴時差備不足，請加出提調四員、副提調二員，從之。亦舊例也。</p>
<p>영조 60권, 20년</p>	<p>강원도 감사 권혁(權赫)이 본도에서 양전(量田)하는 일을 함부로 감당할 수가</p>	<p>江原監司權赫，以本道量田之不可冒</p>

<p>(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9월 12일 (병술) 4번째기사 강원도에서 양전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강원 감사 권혁의 상소문</p>	<p>없다고 하여 상소하고 사직(辭職)하기를,</p> <p>“대개 본도의 토지는 척박하기가 다른 도에 비할 바가 못되는데, 회양부(淮陽府) 등 열 고을은 돌이 많고 토질이 메말라 곡식이 나지 않음이 또한 전체 도에서 가장 심합니다. 그 중에서 촌락(村落)의 근처로 분양(糞壤)이 미친 데에는 혹시 비옥하여 원전(元田)에 가합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것은 10분의 1, 1백 분의 1 밖에 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척박한 하전(下田)입니다. 이른바 하루같이 하는 땅을 시험삼아 측량하여 산정한다면, 마치 10여 부(負)10549) 가 되는 것과 같지만, 그 곡식의 소출은 1곡(斛)에도 차지 않습니다. 비록 그 땅에 지력(地力)을 다하도록 하더라도 그 조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한번 타량(打量)한 뒤에는 그 형세가 반드시 땅을 내버려서 황폐화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만력(萬曆)10550) 계묘년(10551) 에 타량하여 양전안(量田案)을 만든 이후에도 끝내 법과 같이 부세를 부과할 수가 없었으며, 단지 화전(火田)의 예에 의하여 조세를 내게 하였을 뿐이었는데,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 이미 2백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갑자년(10552) 에 또 개량(改量)하는 정치를 시행하다가 폐지하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축년(10553) 에 관동(關東) 지방의 서쪽 지역을 모두 타량하였을 때에도 이 열</p> <p>고을은 도신(道臣) 고 봉조하(奉朝賀) 이태좌(李台佐)가 장문(狀聞)하여 자세히 아뢰었기 때문에 또 중간 철폐하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자의 일들을 헤아려 보더라도 이미 이와 같이 증명되는 것인데, 그 형세상 끝내 부득이한 점이 있는데도 어찌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지금의 개량(改量)하자고 의논하는 자들은 양단(兩端)이 있습니다. 전 감사 조명겸(趙明謙)의 의논에서는 양전(量田)하는 상법(堂法)을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비록 쉽게 실행할</p>	<p>當, 上疏辭職曰:</p> <p>蓋本道土地之瘠薄, 無比於諸道, 而淮陽等十邑, 則其磽确不毛, 又爲一道之甚。 其中村落近處, 糞壤所及, 或不無膏沃, 可合元田者, 而此則十百之一, 其餘則俱是薄薄下田。 試以所謂一日耕之田, 尺量而算解, 則恰爲十餘負, 而其穀之出, 不滿一斛。 雖使竭其地之力, 而不足以充其稅, 則一量之後, 其勢必至於棄廢。 是以曾在萬曆癸卯, 打量成案之後, 終不得如法責賦, 只依火田例出稅, 因循至今已近二百年。 其後甲子又舉改量之政, 閣而不行, 己丑關東西并量之時, 此十邑則因道臣故奉朝賀李台佐狀聞備陳, 又中撤而不果。 量前事之已驗如此者, 豈不以其勢, 終有所不得已者存焉耶? 今之議改量者有兩端。 前監司趙明謙之議, 以量田常法爲說, 聽其言, 雖若易行, 而事情之妨礙, 如上所陳。 前府使具宅奎之疏, 則就量法中稍加伸縮, 要爲便民之圖, 而事在常法之外, 亦有不可行者。 議者又以爲, ‘今此改量之令, 本無益上之意, 且本道麥役, 又是</p>
---	---	--

것 같으나 사정의 방애가 되는 조건들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으며, 전 부사 구택규(具宅奎)의 상소에서 타량하는 법 가운데 조금 신축성을 더하여 요컨대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였으나, 일이 상법의 바깥에 있어서 또한 실행할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지금 이번에 개량하라는 명령은 본래 위에 이익되는 뜻이 없고 또 본도에서 인삼의 구실 [蓼役]은 또 다른 도에는 없는 것이지만, 모두 백성들의 결수(結數)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개량한 후에 하나같이 양전척(量田尺)에 따라서 전안을 만들어 두어 그 중에서 원전은 부세를 내도록 만든다면 실제 법은 대체(大體)를 지키게 되어 총수(總數)가 금일보다 넘지 않을 것이며, 그 속전(續田)을 행용(行用)한다면 이것을 해당 고을에 소속시키고 지금 각 고을에서 상세히 정한 숫자대로, 타량한 뒤에 남아도는 결수에다 군포(軍布)를 고루 징수하여 인삼 구실의 수요로 삼게 하되, 혹 지출과 수입의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못한 것은 정리하여 바로잡고 헤아려 처리하여 분명하게 하도록 힘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세를 더 내는 일이 없게 하고 공용(公用)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면, 전안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경계(經界)를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며, 부세를 불리는 폐단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공사(公私)에 방해됨이 없을 것이나 또 이것이 상법의 밖에 있으므로 신도 또한 그것이 반드시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설혹 이것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조정에 들어가서 의논하는 자가 있어 그 뒤에 가서 그 명령을 반대로 내리고 다른 고을과 똑같이 보아 일상의 부세를 부과한다면, 이들 열 고을의 전정(田政)은 장차 더욱 크게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소생하지 못하게 되어 후일의 무궁한 걱정이 될 것이니, 이것이 신하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대답하기를,

他道所無，而皆出於民結者。若於改量之後，一從量尺，成置田案，而其中元田則作為應賦，實法使大體，摠數無過於今日，行用其續田，則屬之該邑，以即今各邑詳定之數，均布於量後加剩之結，以為蓼役之需，其或出入多少之不齊者，釐正裁量，務為分明，使民出無加而公用無匱，則田案可成，經界可正，增賦之弊可除。’如此則公私不兩妨，而又是常法之外，臣亦未保其必可行也。朝廷設或許之，如有入議其後，而反其令視同他邑，責以常賦，則此十邑田政，益將大乖，民不聊生，為日後無窮之憂。此臣所大懼也

批曰：“當問于大臣而下教矣。”

	<p>“마땅히 대신에게 물어보고 하교하겠다.”</p> <p>하였다.</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10월 4일 (정미) 1번째기사 대왕 대비전에 진연하 고, 동조를 즐겁게 하 기 위해 신하들에게 노래하게 하다</p>	<p>임금이 대왕 대비전에 진연(進宴)하였는데, 진연이 끝나자 진연청(進宴廳)에 하교하기를,</p> <p>“금번에 진연하는 것은 대개 기사(耆社)를 따르려는 예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췌장(几杖)을 받았으니, 동조(東朝)께서 즐거워 하시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앞에다 췌장을 세워 놓고 이 가사(歌詞)를 노래하여 이에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겠다.”</p> <p>하였다. 그 가사에 이르기를,</p> <p>“보각(寶閣)에 우러러 절함이어 췌장(几杖)을 받아 왔다네. 동조를 받들어 즐겁게 함이어 예연(禮宴)을 크게 열었도다. 강릉(崗陵)처럼 오래 살기를 송축함이어 만수(萬壽)를 비는 잔을 드리도다.”</p>	<p>○丁未/上進宴于大王大妃殿，宴畢，教于進宴廳曰：“今番進宴，蓋由於追踵耆社之禮也。既受几杖，爲供東朝之歡，豎几杖於前，而使歌此詞，茲令諸臣知之。”其詞曰：</p> <p>瞻拜寶閣兮，受几杖來。奉歡東朝兮，禮宴大開。頌祝崗陵兮，獻萬壽盃。</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0월 7일 (경술) 1번째기사</p> <p>송정전에서 신하들의 진연을 받고 신하들의 의견을 듣는데 경계하는 말이 많았다</p>	<p>하였다.</p> <p>임금이 송정전(崇政殿)에서 신하들의 진연(進宴)을 받았는데, 종신(宗臣)의 도정(都正) 이상과 의빈(儀賓),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기구(耆舊)의 여러 신하들, 친공신(親功臣)과 문신 정2품 이상에서는 실직·군함(軍銜)을 논하지 아니하고, 종2품 이상에서부터 당상관 정3품에 이르기까지는 바야흐로 실직에 있는 자가 비록 군함에 있을지라도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들과 양도(兩都)의 유수(留守)·기백(畿伯)·승지·한주(翰注)·옥서(玉署)10566) ·미원(薇垣)10567) ·백부(柏府)10568) ·춘방(春坊)10569) 에서는 바야흐로 시임에 있는 자들과 음관(蔭官)과 무신 2품 이상에서는 시임 장신(將臣)·실직 총관(摠管)인 사람과 비록 군함에 있을지라도 일찍이 장수의 직임을 지낸 자와 일찍이 동반(東班)의 실직 곤수(關帥)를 거친 자 가운데 나이 70세 이상인 자들은 모두 참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금일의 일은 즐거움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다만 그 날만을 점치고, 그 즉시 행하라.’ 하였다.”</p> <p>하였다. 왕세자가 첫번째 술잔을 올렸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관중추 부사 김흥경(興慶)·종신(宗臣) 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영성위(永城尉) 신광수(申光綬)가 차례에 따라 의식대로 술잔을 올렸다. 임금이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p> <p>“연회를 마치면 마땅히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연회를 내려 주던 관례에 의하여 전전악(殿前樂)을 내려 주고, 의당 그 남은 찬(饌)을 가지고 본사(本司)에 회연(回宴)하도록 하라.”</p>	<p>庚戌/上受進宴于崇政殿, 宗臣都正以上、儀賓時·原任大臣、耆舊諸臣、親功臣、文臣正二品以上勿論實職·軍銜, 從二品至堂上正三品, 方在實職者, 雖在軍銜, 年七十以上人、兩都留守·畿伯·承旨·翰注·玉署·薇垣·柏府·春坊方在時任者, 蔭武二品以上時任將臣實職摠管人、雖在軍銜曾經將任者、曾經東班實職關帥者年七十以上咸與焉。 上曰: “今日之事, 非取樂也。 古語曰, ‘只卜其晝, 其即行之。’” 王世子進第一爵, 領議政金在魯、判中樞府事金興慶、宗臣西平君橈、錦平尉朴弼成、月城尉金漢薰、錦城尉朴明源、戶曹判書金若魯、永城尉申光綬, 以次進爵如儀。 上謂耆社諸臣曰: “宴訖, 當依昔年賜宴例, 賜殿前樂, 其宜持餘饌, 回宴本司。” 命送一盤于奉朝賀李宜顯家, 以老病不能與宴也。 撤大卓, 命賜入直軍兵, 命參宴諸臣, 隨量飲酒。 又命賜京外庶民年八十以上米、肉有差。 禮曹判書李宗城進曰: “《小雅》《鹿鳴章》, 卽燕饗群臣之樂, 而有曰, ‘示我周行’,</p>
--	---	---

	<p>하고, 음식 한 쟁반을 봉조하(奉朝賀) 이의현(李宜顯)의 집에 보내라 명하니, 그가 노병으로 연회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탁(大卓)을 거두자, 입직한 군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고,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주량에 따라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또 서울과 외방의 서민(庶民)들 가운데 나이 8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미곡과 고기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예조 판서 이종성(李宗城)이 나아와서 말하기를,</p> <p>“《시경》의 소아편(小雅篇) 녹명장(鹿鳴章)은 곧 못 신하들을 연향(燕饗)하는 악장인데, 거기에 말하기를, ‘내게 주행(周行)을 보여 주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주행이란 것은 큰 도[大道]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왕(聖王)들이 연락(燕樂)할 즈음을 다하여 도움을 구하는 뜻이 이와 같이 간절하였습니다. 금일의 연회는 곧 성상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가시는 초기로 기구(耆舊)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연석에서 주상을 모셨는데, 옛날에도 양로(養老)하고 걸언(乞言)하던 예가 있었으니, 여러 노신들을 불러서 노성(老成)한 신하들의 변론을 물어본다면 더욱 성덕(聖德)에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좋다.”</p> <p>하고, 여러 노신을 선소(宣召)하라 명하자, 기사의 당상관 신사철(申思喆)·이진기(李震箕)·윤양래(尹陽來)·정수기(鄭壽期)·이성룡(李聖龍)·조석명(趙錫命) 등이 차례로 나아와서 부복(俯伏)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周行者，大道也。古聖王當燕樂之際，其求助之意，如此其切。今日之宴，乃聖上入耆社之初也，耆舊諸臣咸侍宴席，古者有養老乞言之禮，召諸老臣，諮訪老成之論，則尤有光於聖德矣。”</p> <p>上曰：“善。”命宣召諸老臣，耆社堂上申思喆、李震箕、尹陽來、鄭壽期、李聖龍、趙錫命等以次進伏。上曰：“今召卿等，欲追古先王乞言之規，卿等其各言之。”思喆曰：“今日國勢、人心，無一可恃。殿下勿以聖算之漸高，而遽生倦勤之意，奮勵有爲，即老臣之望也。”上曰：“善，可不勉諸？”陽來曰：“聖上仁、德、公明兼有之，惟願加勉斯三者。”上曰：“當留意。”聖龍曰：“聖上今日之舉，上體慈聖之意，非出暇豫之心。而《唐風》《蟋蟀章》曰，‘無已太康？’古人於燕樂之際，其憂深慮遠若此。欲以此仰勉也。”上曰：“此言尤好矣。堯、桀之分，只爭絲毫，可不警哉？雖然予已老矣，今知免夫。東宮年紀方少，尤急輔養，以卿所陳者，令春坊書進東宮也。且君臣之際，亦宜交勉，卿須善教卿子，事我元良。”仍顧壽期曰：</p>
--	--	---

	<p>“지금 경들을 부른 것은 옛날 선왕(先王)들이 결언(乞言)한 규범을 따르고자 함이니, 경들은 각기 말하도록 하라.”</p> <p>하므로, 신사철이 말하기를,</p> <p>“금일에 나라의 형세와 인심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성산(聖算)이 점차 높아지셨다고 하여 갑자기 정사에 실증이 나고 고달과 하는 뜻을 내시지 말고 분발하시는 것이 곧 노신의 바람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좋다. 어찌 힘쓰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p> <p>하고, 윤양래가 말하기를,</p> <p>“성상께서는 인(仁)·덕(德)과 공명(公明)을 아울러 가지셨는데, 오로지 이 세 가지에 더 면려(勉勵)하시기를 원할 뿐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마땅히 유의하겠다.”</p> <p>하고, 이성룡이 말하기를,</p> <p>“성상께서 오늘날 거행하신 일은 위로 자성(慈聖)의 뜻을 본받으신 것이고 한</p>	<p>“此老善教兒也。” 聖龍之子衡萬曾爲諫官，言事獲罪，壽期之子羽良、翬良頗主蕩平，故上教及此。 於是時、原任大臣及儒臣，相繼陳戒，復有以‘無已太康’爲言者，上曰：“俄命春坊官書進，而元良方在座，召樂工歌此章，使聞于東宮。” 工人乃進立殿陛，歌蟋蟀章。 司直權翊以侍衛方侍宴，賦詩乘醉前奏，承旨請推，上不許，賞鹿皮。 宴畢，禮房承旨與進宴廳堂上，領御膳在前，耆社諸臣在後，以鄉黨樂前導而行，直至靈壽閣，上命也。 達夜歡飲而罷，宗府亦如之。 錦平卽孝廟駙馬也，時年九十餘，特命扶杖陞殿及進爵。 上舉爵曰，‘特爲卿少飲’，仍賜御饌，使之與子孫同樂。 又教備局曰：“予之一心，仰追于先，俯恤于民。 繼述之道，懷保爲重，凡係保民濟民之政，孜孜講究，亦宜飭諸道、列邑，務盡恤民之策。”</p>
--	---	--

가로히 편안하게 지내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경》의 당풍편(唐風篇) 실솔장(蟋蟀章)에 이르기를, ‘지나치게 편안함이 없는가?’라고 하였으니, 옛날 사람들이 연락(燕樂)할 즈음에 깊이 걱정하고 멀리 염려한 것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신은 이것을 가지고 양면(仰勉)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더욱 좋다. 요(堯)임금과 걸왕(桀王)의 구분은 다만 털끝 만한 작은 차이뿐이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겠는가?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늙었으니, 지금 책임을 면할 줄을 알고 있다. 동궁(東宮)의 나이가 바야흐로 어리므로 더욱 보양(輔養)하는 것이 급하니, 경들의 아뢰는 말들을 춘방(春坊)으로 하여금 글로 적어서 동궁에게 올리게 하겠다. 또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도 또한 마땅히 서로 힘써야 하는데, 경은 모름지기 경의 자식을 잘 가르쳐서 나의 원량(元良)을 섬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정수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 노인은 자식을 잘 가르쳤다.”

하였는데, 이성룡의 아들 이형만(李衡萬)은 일찍이 간관(諫官)이 되었으나 언사(言事)로 죄를 얻었으며, 정수기의 아들 정우량(鄭羽良)과 정휘량(鄭翬良)은 자못 탕평책(蕩平策)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은 데까지 미쳤던 것이다. 이리하여 시임 대신·원인 대신과 유인 대신과 유신들이 서로 잇달아 임금에게 경계하는 말을 올렸는데 다시 ‘지나치게 편안함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춘방관(春坊官)에게 명하여 글로 써서 세자에게 올리라고 하였는데, 원량(元良)이 바야흐로 이 자리에 있으니, 악공(樂工)을 불러서 이 실술장을 노래하게 하여 동궁에게 들려 주도록 하라.”

하니, 공인(工人)들이 곧 궁전의 계단으로 나아가 서서 실술장을 노래하였다. 사직(司直) 권적(權翫)이 시위(侍衛)로서 바야흐로 연회에 임금을 모시다가 시를 지어 가지고 술에 취하여 나아와서 아뢰니, 승지가 그를 추국하자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녹비(鹿皮)를 상으로 주었다. 연회를 끝마치자 예방 승지(禮房承旨)가 진연청(進宴廳)의 당상관과 함께 어선(御膳)을 받아 앞에 있었고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들이 뒤에 있었는데, 향당악(鄉黨樂)을 연주하면서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곧바로 영수각(靈壽閣)에 이르니, 임금이 명한 것이었다. 밤이 새도록 즐겁게 마시다가 과하였고 종부(宗府)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금평위(錦平尉)는 곧 효종[孝廟]의 부마였는데, 이때 나이가 90세였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지팡이를 붙들고 전(殿)을 올라와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술잔을 들고서 말하기를,

“특별히 경(卿)을 위하여 조금 마시겠다.”

하고, 이어 어찬(御饌)을 내려 주어 자손들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게 하였다. 또 비국(備局)에 하교하기를,

“나의 한결같은 마음은 위로 선왕조(先王朝)를 추모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계술(繼述)하는 방도는 따라서 보호하는 것이 중한데, 무릇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에 관계되면 부지런히 강구할 것

	<p>이고, 또한 여러 도(道)와 여러 고을에 마땅히 신칙하여 백성을 공혹히 여기는 정책을 다하기에 힘쓰도록 하라.”</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0월 9일 (임자) 1번째기사 술과 안주를 충훈부에 내려 주고 공적 기록과 당파를 없애라는 수서를 내리다</p>	<p>임금이 술과 안주를 충훈부(忠勳府)에 내려 주고, 또 수서(手書)를 내리기를,</p> <p>“나라에 오늘이 있는 것은 훌륭한 임금을 섬겨서 나라를 구원한 호성 공신(扈聖功臣)들이 충성을 바친 공로이다. 옛날 제(齊)나라 환공(桓公)과 관중(管仲)은 서로 구차(鉤車)를 경계하였고, 진(晉)나라 문공(文公)이 공적을 잊자 개자추(介子推)가 이름을 감추었다. 비록 법전(法殿)에서 잔치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옛날 무신년(10570)의 분무 공신(奮武功臣)만은 기린각(麒麟閣)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이를 후세에 남기고, 단서 철권(丹書鐵券)으로 그 공적을 역사에 기록하는 등 이처럼 항상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다. 특별히 다섯 향아리의 법온(法醞)과 세 쟁반의 어효(御肴)를 내려 주는데, 황류(黃流)10571)가 향아리에 있으니, 잔치를 내려 주는 것을 대신하고, 내 뜻을 종이에 써서 보여 교방(敎坊)을 대신 하노라. 아! 경들은 삼가 내 뜻을 본받아 이를 수령(受領)하고, 자손에게 힘써 신칙하여 당파(黨派)를 없애도록 힘쓰라. 두루 술과 안주를 내려 주니, 먹고 마시어 다 함께 술에 취하고 배를 불리도록 하라. 아! 지금의 이와 같은 뜻이 어찌 알고 고루하겠는가?”</p> <p>하였다.</p>	<p>壬子/下酒肴于忠勳府，又賜手書曰：</p> <p>國有今日，寔攀龍附鳳，扈聖輸忠之功也。昔齊桓、管子，相戒鉤車，晉文遺功，子推藏名，雖謙法殿，惟昔戊申，麟閣記名，垂之於後，丹書鐵券，銘功於史，眷眷于此。特賜五樽法醞，三盤御肴，黃流在樽，代以錫宴示意，寫紙代以敎坊。吁嗟！卿等，欽體領受，勉飭子孫，務以無黨。遍頒酒肴，咸與醉飽，噫！今此意，其豈淺淺乎哉？</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0월 9일 (임자) 2번째기사 진연청의 당상관 이하로서 술잔을 올린 신하들에게 차등 있게</p>	<p>진연청(進宴廳)의 당상관 이하로서 술잔을 올린 여러 신하들에게 차등 있게 상전(賞典)을 베풀었다</p>	<p>施進宴廳堂上以下進爵諸臣賞典有差。</p>

상전을 베풀다	<p>임금이 중서헌(重書軒)에 나아가니, 세자가 임금을 모시고 앉았다. 춘방관(春坊官)을 불러서 입시하게 하고, 세자가 《어제권학문(御製勸學文)》을 강하였는데, 춘방관이 그 글의 뜻을 진술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말하기를,</p> <p>“글을 읽는 것이 좋으나, 싫으나?”</p> <p>하니, 세자가 한참 동안 있다가 대답하기를,</p> <p>“싫을 때가 많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동궁의 이 말은 진실한 말이니, 내 마음이 기쁘다.”</p> <p>하였다. 이어서 임금이 명하여 조변(趙抃)의 흑두(黑豆)와 백두(白豆)를 그릇에 두었던 고사에 의하여, 하루 사이에서 글을 읽는 것이 좋을 때에는 백두를 놓고 싫을 때에는 흑두를 놓아서, 그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강관에게 내보이게 하였다. 또한 궁관(宮官)들에게 신칙하여 뜻을 더해 인도하여 도와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p>	<p>上御重書軒，世子侍坐。 召春坊官入侍， 世子講御製勸學文， 春坊官陳文義。 上謂世子曰：“讀書好乎， 厭乎？” 世子良久對曰：“厭時多矣。” 上曰：“東宮此言， 眞實可喜。” 仍命依趙抃以黑、白豆置器事， 一日之間， 讀書好時置白豆， 厭時置黑豆， 以其多寡， 出示講官。 且勅宮官， 加意誘掖， 使無生厭心。</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1월 9일 (임오) 2번째기사</p> <p>찬수 당상관을 소견하다. 연한을 정하여 절</p>	<p>임금이 찬수 당상관(纂修堂上官)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호전(戶典)을 열람하고 말하기를,</p> <p>“옛날에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이 절수(折受)의 폐단을 염려하여 쌀·콩과 은자(銀子)를 획급(劃給)하자고 의논하였었는데, 대개 쌀과 콩은 돌보아서 도와주려는 것이요, 은자는 땅을 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절수와 획급을</p>	<p>召見纂修堂上。 上覽戶典曰：“昔奉朝賀南九萬慮折受之弊， 有米、太、銀子劃給之議， 蓋米太所以顧助也， 銀子所以買土也。 而折受與劃給並行， 其所救弊反生一弊。 自今限年折受者外， 竝令刪去。”</p>

<p>수하고 획급은 없애게 하다</p>	<p>아울러 행한다면 그 폐단을 구제하려는 것이 도리어 하나의 폐단을 낳는 것이 된다. 이제부터 연한을 정하여 절수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삭제하여 버리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1월 12일(을유) 3번째기사 선혜청의 쌀과 병조의 무명을 공물로 쓰게 하다</p>	<p>호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이 아뢰기를, “공물(貢物)을 더 쓰자는 것을 도로 보고하지 않으니, 청컨대 선혜청(宣惠廳)의 쌀 2만 곡(斛)과 병조의 무명 3백 동(同)을 쓰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명하여 1만석을 취하여 쓰도록 허락하였다.</p>	<p>戶曹判書徐宗玉啓言：“貢物加用者，無以還報，請得惠廳米二萬斛、兵曹木三百同。”上命許一萬石取用。</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1월 12일(을유) 4번째기사 선혜청을 겸직한 서종옥이 중첩해서 관직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교체를 청하다</p>	<p>서종옥이 호조 판서로서 전례대로 선혜청을 겸직하였는데, 중첩해서 관직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상소하여 교체되기를 청한다고 하여 선혜청 당상관 송인명이 임금께 아뢰니, 이를 허락하였다. 정석오(鄭錫五)와 조관빈(趙觀彬)을 선혜청 당상관으로 삼았다.</p>	<p>徐宗玉以戶判例兼惠廳，不可疊帶，上疏請遞，惠堂宋寅明白上，許之。以鄭錫五、趙觀彬爲宣惠廳堂上。</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1월 13일(병술) 2번째기사 주장에 나아가다. 가난한 찬선 박필주, 쾌주</p>	<p>임금이 주장에 나아가셨다. 지경연사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정언(正言)을 듣고 정도(正道)를 행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직간(直諫)하는 말을 나오게 하고 창언(昌言)하는 자에게 질하는 방도는 어린 나이에 반드시 모름지기 익숙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큰 경사(慶事)가 있어서 해마다 연달아 진연(進宴)하였으며, 대신(臺臣)들이 여러</p>	<p>上御書講。知經筵李宗城曰：“聞正言、行正道、敬天畏民、來諫拜昌之道，在沖年必須習聞。而國有大慶，年年進宴，臺臣無狀，屢致設鞫，外而見臺臣之被罪，內而見豫大之事，其在遇物輒誨之道，不宜以此等事，使之見</p>



<p>심육 등에게 두루 진 휼하게 하다</p>	<p>차례 국문(鞫問)을 설치하기에 이르러서 바깥으로는 대신들이 죄를 받는 것을 보고 안으로는 예대(豫大)하는 일을 보니, 그 사물을 만나서 문득 가르치는 도리에 있어 이러한 따위의 일들을 동궁으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대신(臺臣)을 국문하는 것은 끝내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또한 나라를 망치는 전조가 됩니다. 신 등이 감히 동궁께 바로 아뢰지 못하겠으니, 성상께서 마땅히 조용하게 경계하고 신척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좋다.”</p> <p>하였다. 영경연사 송인명이 말하기를,</p> <p>“찬선 박필주(朴弼周)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 70세의 나이에 자주 쌀독이 텅 비는 한탄을 면하지 못하니, 이러한 추운 계절을 당하여 마땅히 그를 진념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음식물과 시탄(薪炭)을 실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를 윤택하였다. 검토관 조운규(趙雲逵)가 췌주(祭酒) 심육(沈鎔)도 일체로 두루 진휼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하교하기를,</p> <p>“지금 바야흐로 《대전(大典)》을 개수(改修)하여 바로잡는데, 《주례》를 강하는 것은 원량(元良)으로 하여금 내가 늙어도 오히려 학문을 강설하는 뜻을 알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p>	<p>聞。鞫問臺臣，終非聖世之美事，亦是亡國之兆。臣等不敢直陳於東宮，自上宜從容戒飭。”上曰：“善。”領經筵宋寅明曰：“贊善朴弼周家甚貧，七十之年不免屢空之歎，當此寒節，宜有軫念。令本道輸送食物柴炭爲宜。”上允之。檢討官趙雲達請祭酒沈鎔，一體周恤，從之。又教曰：“今方修正《大典》，講此《周禮》，欲使元良，知予老猶講學之意也。”因咸鏡監司李壽沆啓言鏡城判官尹心衡，諉以有嫌，不爲舉行邑事，年分文書，亦令兼官替行，宜罷黜，寅明曰：“特補之人，道臣狀罷，有關後弊，事關讎嫌，亦不可論罪。道臣推考，宜還其狀本。”允之。</p>
-------------------------------	--	--

	<p>하였다. 함경 감사 이수항(李壽沆)이 아뢴 말에, ‘경성 관관(鏡城判官) 윤심형(尹心衡)은 혐의가 있다고 핑계하여 고을의 일을 거행하지 아니하며, 농사의 연분(年分)을 매기는 문서도 또한 겸관(兼官)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니, 마땅히 그를 파출(罷黜)시켜야 합니다.’ 한 것으로 인하여 송인명이 말하기를,</p> <p>“특별히 보임한 사람을 도신(道臣)의 장계(狀啓)에 따라 파직시키는 것은 후일의 폐단과 관계되며, 사건이 원수의 혐의와 관련되니, 또한 논죄할 수 없습니다. 도신을 추고(推考)하고, 그 장계한 계본(啓本)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1월 26일(기해) 1번째기사 초상·장사에서 풍악을 울려서 빈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것의 금단을 청하다</p>	<p>임금이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강이 끝나자, 검토관 조운달(趙雲達)이 말하기를,</p> <p>“호남 지방의 민속(民俗)은 초상·장사에서 대상(大祥)·소상(小祥)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을 마련하고 풍악을 울려서 빈객(賓客)에게 오락을 제공하여 다투어 가며 서로 이기기를 힘쓰니, 마땅히 특별히 금단(禁斷)을 더해야 합니다.”</p> <p>하자, 시독관 윤동준(尹東浚)이 말하기를,</p> <p>“초상·장사에 풍악을 마련하는 것은 신은 진실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음식물을 마련하고 빈객을 접대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풍속이 있는데, 비단 호남 지방 뿐만 아니라 영남 지방에서도 또한 그러하다고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우리 나라에서 예의(禮義)가 땅을 쓸어 버리듯이 없어졌도다. 형정(刑政)은 정치를 돕는 기구인데, 도신이 이것을 교화로써 계도(啓導)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마땅히 형벌로써 이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己亥/上行晝、夕講。講訖，檢討官趙雲達曰：“湖南民俗，自喪葬至大、小祥，設饌作樂，供賓客以娛樂，爭相務勝，宜另加禁斷。”侍讀官尹東浚曰：“喪葬設樂，臣固未聞。設饌接賓，儘有此俗，非但湖南而已，嶺南亦然云矣。”上曰：“我國禮義，掃地盡矣。刑政輔治之具，道臣導之以教，其不率者，當以刑治之也。”</p>
<p>영조 60권, 20년</p>	<p>찬선 박필주(朴弼周)가 상소하여 음식물과 시탄(柴炭)을 내려주는 것을 사양</p>	<p>贊善朴弼周上疏，辭食物、柴炭之賜，</p>

<p>(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2월 1일 (갑진) 2번째기사 찬선 박필주가 상소하여 음식물과 시탄을 내려 주는 것을 사양하다</p>	<p>하니, 임금(上)이 수서(手書)로써 비답하기를, “바야흐로 《주례(周禮)》를 강하는데,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이 많다. 나의 원량(元良)을 위하여서 보도(輔導)하는 이때에 오직 현덕(賢德)을 기다리니, 어서 빨리 올라와서 소자(小子)가 아침·저녁으로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上以手書批曰： 方講《周禮》，欲問者多。爲我元良，此時輔導，惟待賢德，幡然上來，用副小子日夕之望。</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2월 2일 (을사) 1번째기사 감제(柑製)를 실행하고 서종급(徐宗汲)에게 명하여 선비를 태학(太學)에서 시취하게 하다</p>	<p>감제(柑製)10626) 를 실행하고 홍문관 제학 서종급(徐宗汲)에게 명하여 선비를 태학(太學)에서 시취하게 하였다. 수석(守)을 차지한 심수(沈鏞)를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그 다음은 차등 있게 급분(給分)하라고 명하였다.</p>	<p>乙巳/設柑製，命弘文提學徐宗汲，試士太學。命居首沈鏞直赴殿試，其次給分有差。”</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2월 15일(무오) 2번째기사 야대를 행하다. 원경하(元景夏)에게 세자의 권학, 호남 지방의 사정, 인심 등을 묻다</p>	<p>야대(夜對)를 행하였다. 임금(上)이 참찬관 원경하(元景夏)에게 말하기를, “하루라도 여러 신하들을 보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스스로 부끄럽다. 또 경을 보고자 하여 야대로써 부른 것이다. 내가 원량(元良)에게 학문을 권장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기운과 마음이 따르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원경하(元景夏)가 말하기를, “신이 호남 지방에서 들으니, 성상(耆社)에 들어가셨으나 오히려 강경(講經)과 윤대(輪對)를 그만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위(衛)나</p>	<p>行夜對。上謂參贊官元景夏曰：“一日不見諸臣，則予心自愧。且欲見卿，以夜對召之也。予有勸學元良之心，而氣與心不侔奈何？景夏曰：“臣於湖南，聞聖上入耆社，而猶不輟講、對，此乃衛武公抑戒之義也。君臣猶父子，或引入臥內，簡其禮貌，何不可之有？引接儒臣，講討經史，乃世宗、文宗盛時之事。今殿下宜以此爲法也。”上詢湖南民事，景夏曰：“嶺南七十州，</p>

라 무공(武公)이 억제(抑戒)10635) 를 지은 뜻입니다. 군신(君臣)은 부자와 같은데, 혹은 와내(臥內)로 인입(引入)하기도 하고, 그 예모를 간략히 하더라도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유신들을 끌어들이어 접촉하고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토론한 것은 바로 세종(世宗)과 문종(文宗)의 성대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마땅히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호남 지방의 백성들의 일에 대하여 물으니, 원경하가 말하기를,

“영남 지방의 70주는 절반이 왜인(倭人)들에게 미곡을 공급하므로, 국용(國用)은 오로지 호남 지방에 달렸는데, 조운(漕運)하는 여러 거자 일들은 모두 아무 대책도 없어 영성하고, 선박의 재목도 또한 장차 산에 나무가 없어져 고갈될 것이니, 지금은 호남 지방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을 비록 그들에게 책임지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60여 건의 옥사(獄事)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불을 지른 것도 있고, 전정(田政)은 백지(白地)에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뒤에 진전(陳田)으로 거듭 묵히는 것도 한 가지 고질스러운 병폐가 되지만, 세목이 비어 있는 가운데 도로 기경(起耕)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각 고을의 하리(下吏)들도 또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손을 쓸 만한 곳이 없으므로, 일족(一族)에게 징수하거나 독촉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속전(續田)에 대해서는 5년을 기한하므로 백성들이 모두 급하여 허둥대는데, 신은 기경(起耕)하는 대로 그 즉시 징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半歸倭供米，國用專在湖南，而漕運百事皆蕩然，船材亦將濯濯，今則湖南無可爲者矣。詩、書、禮、樂，雖難責之，而六十餘度獄事之中，以子而銜火父家者有之，田政則白地徵稅者有之，量後陳爲一痼弊，而空中還起之弊有之。各邑下吏亦倒懸而無着手處，一族之徵督者有之，至於續田，則以五年爲限，民皆遑遑，臣則以爲不可不隨起隨稅矣。”上曰：“人心如何？”景夏曰：“大抵詐僞，而慷慨激發，則緩急亦可用矣。”上命內侍，頒柑一盤，諸臣袖而出。

	<p>“인심은 어떠하던가?”</p> <p>하니, 원경하가 말하기를,</p> <p>“대저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만, 강개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면, 나라가 위급할 때에 또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굴 한 쟁반을 나누어 주자, 여러 신하들이 옷소매에 넣어서 나갔다.</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 (乾隆) 9년) 12월 25 일(무진) 2번째기사 사치 금지, 당론 타파, 강연, 빈대 등에 대한 임순의 상소문</p>	<p>정언 임순(任珣)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옛날 조종조(祖宗朝)에 어떤 귀척(貴戚)이 집을 짓는데 조금 지나치게 하였다가, 그때의 한성 판윤 전림(田霖)이 길을 지나다가 이것을 보고서, 그 집 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만약 헐어서 철거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계달하여 이것을 다스리겠다.’라고 하였더니, 그 집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바로 그 날 이를 허물었던 것입니다. 선왕(先王)들께서 법을 세우신 것이 엄하기가 대개 이와 같았으니, 지금 비록 일일이 헐어서 철거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옛날 법전(法典)을 개수(改修)하는 때를 당하여, 만약 조금이라도 금지하고 방비하여 이를 제한하고 절제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당론(黨論)이 국가의 화근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진하께서 힘써 이것을 타파(打破)하여 소탕하고 융해시키려 하시니, 성덕(盛德)의 일입</p>	<p>○正言任珣上疏, 略曰:</p> <p>侈靡之習, 日滋月盛, 服食、器用, 窮極奢華, 而其中第宅之踰制, 尤爲識者之寒心。 貴家豪族競尚宏侈, 閭巷小民, 亦皆慕效, 費財傷民, 無過此者。 昔在祖宗朝, 有貴戚治第稍過者, 伊時漢城判尹田霖, 過而見之, 招其家人謂之曰, ‘若不毀撤, 則當啓治之’, 其家悚懼, 卽日毀之。 先王立法之嚴蓋如此, 今雖不能一一毀撤, 當此修舉舊典之日, 若不稍存禁防, 爲之限節, 則其可謂國有法乎?</p> <p>又言:</p>

	<p>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이미 깊어서 뿌리를 뽑기가 어려운데, 비유하건대 응 어리진 병을 고치는 자가 병을 치료하는 의술을 너무 급하게 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뱃속의 응어리가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진짜 원기가 먼저 해를 받을까 두렵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자주 강연(講筵)을 열고 자주 빈대(賓對)를 행하시어 성상께서 부지런한 마음을 기울이시어 혹시 한가하게 쉽이 없게 하여 우리 저궁(儲宮)으로 하여금 친히 보고서 본받는 바가 있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우악하게 대답하였다.</p>	<p>黨論之禍人家國，自古而然。 殿下務欲打破而消滅之，盛德事也。 然而源委已深，根株難拔，譬之治塊病者，攻治之術，不可太急，誠恐癰未祛，而眞元先受害也。</p> <p>又言：</p> <p>頻開講筵，數賜賓對，孜孜勤勤，無或暇息，俾我儲宮，有所觀法焉。</p> <p>上優答之。</p>
<p>영조 60권, 20년 (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12월 25일(무진) 3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다. 향군, 공물 금납제, 강속전, 관방 등에 대해 의논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향군(鄉軍)에게 폐단을 줄이는 방법을 물어 보게 하였는데, 호남 지방의 상번군(上番軍)이 진상(進上)하는 산돼지를 능히 잡아서 바칠 수가 없으면, 돈으로써 대신 바치게 하는 폐단을 우러러 대답하니, 비국에 품신하여 처리하라 명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막중한 토공(土貢)을 민간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은 일이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하여, 임금이 돈으로서 대신 받는 습관을 엄하게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호남 지방에서 강속전(降續田)의 5년 동안 기한을 정하는 법을 중지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경자년(10640) 에 양전(量田)한 뒤에 진전(陳田)에서 백징(白徵)하는 폐단이 있어서 도신이 장계하여 청하였으므로, 속전(續田)의 예에 의하여 기경(起耕)하면 세금을 받고, 묵히면 세금을 받지 않게 하였었다. 그 뒤에 백성들 가운데 혹은 기경하거나 개간하여도 조세를 바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니, 도신이 또 장계하여 강속전으로 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간사한 폐단을 염려하여, 연한을</p>	<p>上引見大臣、備堂。 先是命承旨，詢減瘼于鄉軍， 湖南上番軍， 以進上山猪， 不能捉納， 則以錢代捧之弊仰對， 命備局稟處， 至是， 上以莫重土貢， 收斂民間， 事極非矣， 命嚴禁捧錢之習。 命停湖南降續田五年定限之法， 先是， 庚子量田後， 陳田有白徵之患， 道臣狀請， 依續田例， 起則有稅， 陳則無稅。 其後民或有起墾， 而不納稅者， 道臣又狀請降續， 而慮其奸弊， 定爲年限， 嚴示督責。 及其年限將滿， 至有空中還起之弊， 故元景夏爲湖南伯時， 狀請革罷， 至是左議政宋寅明， 稟請隨起隨</p>

정하여서 감독하고 문책하려는 뜻을 엄하게 보였었다. 그 연한이 장차 차게 되면, 세목이 텅 빈 가운데 다시 기경하는 폐단이 있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원경하(元景夏)가 호남 지방의 도백(道伯)이 되었을 때에 장계하여 이것을 혁파하도록 청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품지하여 기경하는 대로 그 즉시 조세를 거두고 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송인명이 이어서 원경하로 하여금 그 바로잡는 일을 관장하게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신 등이 비국의 자리를 외람되게 차지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력은 비록 쇠약하더라도 지력은 점점 커지니, 나이 어린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금일에 보산(寶算)이 비록 높으시지만, 예지(睿智)가 더욱 높아지고 성학(聖學)이 더욱 높아지니, 이것은 바로 군신 상하가 급급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속대전(續大典)》과 《속오례의(續五禮儀)》를 찬집하여 완성한 것도 또한 전하께서 대도(大道)를 후세에 남겨 주고 먼 후일을 경영하시려는 뜻입니다. ‘능히 일을 이미 마쳤다.’고 하교하시지 마시고 더욱 더 권면하소서.”

하니, 임금의 이를 받아들였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재자관(賈咨官)의 말을 들으니, 황제가 심양(瀋陽)에 행차한 뒤에 사냥을 나가서 혹은 3백 리나 혹은 4백 리를 순행(巡行)하는데, 그 반유(盤遊)하는 것이 법도가 없으며, 금산사(金山寺)를 짓는데 그 제도가 보통과 다르며, 또 남부 여대(南負女戴)하여 길을 가는 자가 도로에 서로 잇따랐으므로, 그 까닭을 물었더니, ‘성중의 무뢰한들로 하여금 나가서 백두산(白頭山) 근처를 지키게 한다.’라고 하였다 하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稅，勿定年限，允之。寅明仍請令元景夏句管釐正，從之。寅明又曰：“臣等之忝居備局，殆二十年。筋力雖衰，智慮漸長，截異少年時。今日寶算雖高，而睿智益高，聖學益高，此正君臣上下汲汲可有爲之時也。卽今《續大典》、《續五禮》之纂成，亦殿下垂裕經遠之意也。勿以能事已畢爲教，益加勉勵焉。”上納之。右議政趙顯命曰：“聞齋咨官之言，則皇帝瀋行後，出獵巡行，或三百里，或四百里，盤遊無度，作金山寺，制度異常，且男負女戴而往者相續道路，問之則使城中無賴漢，出戍白頭山近處云，未知其故。而亦未知的戍何處矣。上曰：“今則竝與中州而混沌，予則或不見，而天下事自可知矣。卽今關防無可恃者，將若之何？”顯命曰：“金若魯爲箕伯時，狀聞以爲，‘關西江邊一帶七邑，前當豆滿，背後有一二嶺，皆當賊路，若值緩急，則江邊七邑，當守此嶺，勿令賊踰嶺，而以朔州言之，以其管轄於昌城，故亂時則當委棄後嶺，反往他邑，踈虞如此。’此不可不及今留意也。”

	<p>어떤 곳을 지키는 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금은 모두 중국[中州]과 혼돈되어 있으니, 내가 혹시 보지 못하더라도 천하의 일은 저절로 알 수가 있다. 바로 지금 관방(關防)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는데, 장차 어찌하겠는가?”</p> <p>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p> <p>“김약로(金若魯)가 기백(箕伯)10641 이 되었을 때에 장문(狀聞)하기를, ‘관서 지방의 강변 일대에 있는 일곱 고을은 그 앞이 두만강에 맞닿고 배후에 한두 고개가 있어서 모두 적로(賊路)에 해당하는데, 만약 나라의 위급한 때를 만난다면, 강변의 일곱 고을은 마땅히 이 고개를 수비하여 적들로 하여금 고개를 넘지 말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삭주(朔州)로 말하더라도 그 곳에서 창성(昌城)을 관할 하기 때문에 난시(亂時)에는 마땅히 뒤에 있는 고개를 내버리고 도리어 다른 고을로 갈 것이니, 방어의 허술하기가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유의(留意)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월 1일 (계유) 2번째기사</p>	<p>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식(尹植)의 장청(狀請)을 인하여 연해(沿海)의 곡식 2천 5백 석(石)을 획급(劃給)하라고 명하고 또 각사(各司)의 노비(奴婢) 및 선혜청(宣惠廳)의 응납미(應納米)를 감해 주라고 명하였는데, 본주(本州)에 거듭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p>	<p>因濟州牧使尹植狀請，命劃給沿海穀二千五百石，又命減各司奴婢及宣惠廳應納米，以本州荐凶也。</p>



<p>제주 목사 윤식의 장청으로 곡식의 획급과 응남미의 건감을 명하다</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월 12일(갑신) 3번째기사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재변으로 10일간의 감선을 명하다</p>	<p>10일 동안 감선(減膳)을 명하였는데, 연달아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은 재변(災變) 때문이었다.</p>	<p>命減膳十日，以連有虹貫之異也</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월 18일(경인)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양역의 폐단 등을 논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상선(常膳)을 감하고 부런(副輦)을 없앤 것은 비록 성상의 마음이 경칙(警惕)한 데서 나온 것이나 실정(實政)을 보이는 것만 못하니, 마땅히 자주 경연(經筵)을 열고, 상참(常參)을 연달아 행해 자방(諮訪)하는 도리를 다하고, 궁역(宮掖)사이를 별도로 경칙(警飭)하여 안의 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밖의 말이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게 하여 엄밀히 숙청(肅淸)하여 간사한 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후략)</p>	<p>庚寅/上引見大臣、備堂。左議政宋寅明曰：“減常膳除副輦，雖出於聖心之警惕，而不如見之實政，宜頻開經筵，連行常參，以盡咨訪之道，而宮掖間另加警飭，使內言不出於外，外言不入於內，肅淸嚴密，使便佞不得近則好矣。”上嘉納。(후략)</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월 18일(경인) 2번째기사</p>	<p>증광과(增廣科)를 정시(庭試)로 고치고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경과(慶科)를 증광과로 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천재(天災)가 겹쳐 일어나 좌의정 송인명이 절생(節省)하자는 뜻으로 정시로 고치기를 청해 임금이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p>	<p>命改增廣爲庭試，待秋舉行。初，慶科定以增廣，至是天災荐疊，左議政宋寅明，以節省之意，請改以庭試，上從之。上謂諸臣曰：“昨見仁政門，如人</p>

<p>증광과를 정시로 고쳐 가을에 거행하도록 한다</p>	<p>“어제 인정문(仁政門)을 보건대 사람이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았으니 내 마음 역시 좋았지만, 후일 혹시 이로 인해 토목(土木)의 공역(工役)이 트일까 염려된다.”</p> <p>하고, 드디어 하교하기를,</p> <p>“이번 거동할 때 새로 세워진 전문(殿門)을 보고서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였으며, 늑연(凜然)스럽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 문은 바로 열성조(列聖祖)께서 즉위하시던 정문(正門)인데 지금은 옛 제도가 없어졌으니 이것이 서글픈 것이요, 한겨울에 백성의 힘을 들였으니 이 어찌 성급히 하지 말라는 뜻이겠는가? 이것이 겸연쩍은 것이며, 이번의 공역이 비록 그만둘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만약 토목(土木)의 역사를 일으킬까 싶어 늑연한 것이다. 좋지 않은 무지개와 화재(火災)가 재변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니,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약 스스로 신칙하는 거조가 없다면 어떻게 나의 뜻을 후사왕(後嗣王)에게 보이겠는가? 주원(廚院)10680) 으로 하여금 또 3일 동안 감膳(減膳)하게 하라. 날씨가 이처럼 추우니, 도감(都監)에 신칙하여 공장(工匠)과 역군(役軍)에게 독촉하지 말게 하라.”</p> <p>하였다.</p>	<p>着新服，予心亦好，他日或恐因是而啓土木之役。”遂下教曰：“今番動駕時，覽殿門之新建，而恍然于心，歉然于心，懍然于心。何則，此門卽列祖卽位之正門，而今無舊制，此懍然者也，深冬費民力，此豈勿亟之意乎？此歉然者也。今者之役，雖不可已，因此而若啓土木之役，此懍然者也陰虹、回祿，災則同也，以今恍惕之心，若無自飭之舉，何以示予意於後嗣王？其令廚院，又減膳三日。日寒如此，申飭都監，工匠、役軍，其勿督役。”</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월 22 일(갑오) 3번째기사 주장에서 《주례》를</p>	<p>(전략)송인명이 또 말하기를,</p> <p>“여염에 이몽리(李夢鯉)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한미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효제(孝悌)하고 몸을 단속하여 지조(志操)가 굳다고 합니다. 효자 순손(孝子順孫)에게 해마다 쇠고기와 술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한(漢)나라 때의 아름다운</p>	<p>(전략)寅明又言：“閭閻間有李夢鯉者，生於卑微，而孝悌飭躬，志操堅固云。孝子順孫之歲賜牛酒，卽漢家之美制，宜令該曹，特賜米肉，以爲風勵興起之地。”上允之。</p>

<p>강하고, 이이의 향약을 반포하게 하다</p>	<p>제도이니,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쌀과 고기를 내려 미풍 양속(美風良俗)을 권장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2월 16일(무오) 1번째기사 조현명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다</p>	<p>우의정 조현명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신이 스스로 그만두어야 하는 의리는 어제 장전(帳殿)에서 이미 갖추어 진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술에 취한 후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말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 마음은 알 수가 있는데, 신의 불충(不忠)으로 인연하여 양궁(兩宮)의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엄한 자리로 하여금 함께 그런 흉인(凶人)들의 억측하고 지적하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마음이 아프고 뼈가 저려 차마 어찌 말하겠습니까? 빌건대, 상직(相職)을 면하고 봉조청(奉朝請)10717) 으로 물러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려 위유(慰諭)하였다.</p>	<p>戊午/右議政趙顯命上疏, 略曰:</p> <p>臣之自廢之義, 昨於帳殿, 已備陳之矣。 彼雖醉後狂言, 言者, 心之宣也, 無是心, 則無是言。 噫! 嘻其心可知, 已緣臣不忠, 使兩宮不敢言之地, 俱入於彼此凶人揣摩指擬之中, 痛心酸骨, 慘何忍言? 乞免相職, 退奉朝請。</p> <p>上優批慰諭之</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3월 9일(신사) 2번째기사 대보단에 나아가 망위례를 행하다</p>	<p>임금이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망위례(望位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고 영화당(映花堂)에서 승여(乘輿)를 타고 나왔는데 산선(繖扇)과 시위(侍衛)를 평상시의 의례대로 하였다. 조종문(朝宗門) 밖에 이르러 승여에서 내려 막차(幕次)로 들어 갔다가 얼마 후 다시 나와 승여에서 내려 조종문으로 들어가면서 명하기를,</p> <p>“오위 장(五衛將) 이하 당하(堂下) 시위는 모두 삼문(三門) 밖에서 뒤떨어지도록 하라.”</p> <p>하였다. 중문(中門) 밖에 이르러 임금이 규(圭)를 잡고 동문(東門)을 거쳐 관</p>	<p>○上詣大報壇, 行望位禮。 上具冕服, 自映花堂, 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至朝宗門外降輿, 入幕次, 少頃復出降輿, 入朝宗門, 命五衛將以下堂下侍衛, 皆落後於三門外。 至中門外, 上執圭, 由東門, 入詣版位, 行四拜禮, 入東壇門, 由東陞奉審, 還至版位, 親省犧牲。 上曰: “ 皇壇用騂牛, 取何義耶?” 承旨吳遂采曰: “ 皇朝尚火德, 故用騂牛也。” 上詣香幄次, 命大祝奉</p>

	<p>위(版位)로 들어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동유문(東墻門)으로 들어가 동폐(東陛)를 거쳐 봉심(奉審)하고 다시 관위에 돌아와 희생(犧牲)을 친히 살폈다. 임금이 말하기를,</p> <p>“황단(皇壇)에 성우(騂牛)10748) 를 쓰는 것이 무슨 뜻을 취한 것인가?”</p> <p>하니, 승지 오수채(吳遂采)가 말하기를,</p> <p>“황조(皇朝)에서 화덕(火德)을 숭상했기 때문에 성우를 쓴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향악차(香幄次)에 나아가 대축(大祝)에게 명하여 향축궤(香祝櫃)를 내오게 하고 친히 살폈다. 임금이 말하기를,</p> <p>“향악차가 만약 눈과 비를 맞으면 습기에 젖기가 쉬우니, 지금 이후에는 향축을 신실(神室) 안으로 봉안해야 한다.”</p> <p>하고, 인하여 정식(定式)으로 삼기를 명하였다.</p>	<p>出香祝櫃親審。上曰：“香幄次，若值雨雪，則易致沾濕，自今爲始，香祝宜奉安于神室內。”上詣神室奉審，命獻官奉香祝以來。上祇迎香祝，奉安于神室內，仍命著爲定式。</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7월 2일 (임신) 2번째기사 제향 때의 음식물을 바로잡게 하고 용성대군의 분묘를 수축하게 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제향(祭享)할 때에 등갱(甑羹)은 곧 대갱(大羹)인데, 오미(五味)10784) 를 섞지 않은 것이고, 형갱(脔羹)은 화갱(和羹)이라고도 하는데, 오미를 타고 모골(芣骨)10785) 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 양갱(兩羹)은 각각 세 그릇씩인데, 소와 양(羊)·돼지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례(儀禮)》와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책에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듣건대 태묘(太廟)에서는 신위(神位)마다 등갱 세 그릇과 형갱 세 그릇은 모두 쇠고기만으로 사용</p>	<p>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金在魯曰：“祭享時甑羹，是大羹，不和五味者也，脔羹是和羹，和五味加芣滑者。兩羹各三器，用牛、羊、豕三物者，見於《儀禮》及《文獻通考》等書，不啻分明。而聞太廟每位甑羹三器脔羹三器，竝純用牛肉，大失禮意。此蓋由於牛肉有餘羊肉不足之致，莫重祭式謬誤如</p>

	<p>한다고 하니, 예의 뜻에 크게 어긋납니다. 이는 대개 쇠고기는 넉넉하지마는 양고기가 부족한 소치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막중한 제사 의식을 이와 같이 어긋나게 하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비가 조금 더 나는 데 대하여 의논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양(羊)은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귀하여 계속 공급하기가 어려우므로 넉넉하게 가정(加定)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매년 제사를 올릴 때에 앞뒤의 전(殿)에 각기 양과 돼지를 한 마리씩 가정한다면 혹시 변통하여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예(禮)에 크게 어긋나니, 지금부터 바로잡아서 양생(羊牲) 한 마리와 시생(豕牲) 한 마리를 추가하여 봉진(封進)하게 하라.”</p> <p>하였다. 판돈녕(判敦寧) 이기진(李箕鎭)이 말하기를,</p> <p>“신이 기보(畿輔)10786) 에 부임하여 각릉(各陵)을 봉심(奉審)할 때에 보니 익릉(翼陵)10787) 과 순회묘(順懷墓)10788) 사이에 고총(古塚)의 표석(表石)이 하나 있는데 ‘용성대군지묘(龍城大君之墓)’라고 쓰여 있었으니, 이는 곧 예종조(睿宗朝)의 친왕자(親王子)로서 조요(早夭)한 분입니다. 묘가 숲이 우거진 속에 있는데 사초(沙草)가 모두 벗어지고 총토(塚土)만 남아서 보기에 매우 참연(慘然)하였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此，不可不及今釐正。 經費之稍加，有不暇論，而但羊之一種，我國絕貴難繼，雖不可優數加定，姑以每祭前後殿，各一羊、豕加定，則或可推移分排矣。” 上曰：“此則大違於禮，自今釐正羊牲一口、豕牲一口，增數封進。” 判敦寧李箕鎭曰：“臣待罪畿輔，各陵奉審時見之，則翼陵、順懷墓之間，有一古塚表石，書以龍城大君之墓，此是睿宗朝親王子早夭者。 墓在松樹茂密中，沙草盡剝，只餘塚土，所見慘然。 令該曹修築爲宜。” 上從之。</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3월 27일(기해) 1번째기사 태묘의 하향 대제로 인하여 하교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태묘(太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친행하고자 하였는데, 대신이 옥후(玉候)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써 그만두기를 매우 간절히 청하니, 억지로 따랐다. 인하여 하교하기를,</p> <p>“밤늦게 몸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비록 억지로 중지하기로 했으나 하루 전에 마땅히 향(香)을 전하고, 인하여 그 뒤를 따라가 태묘에 나아가 몸소 참알(參</p>	<p>己亥/上引見大臣、備堂。 上欲親行太廟夏享，大臣以 玉候未復，請寢甚懇，勉從之。 仍教曰：“冒夜躬享，其雖勉寢，前一日當親傳香，仍隨其後，詣廟躬謁伸禮，奉審祭器，躬視犧牲，遲回齋殿，差晚回駕， 其令儀曹舉</p>

	<p>謁)하여 예(禮)를 표하며, 제기(祭器)를 봉심(奉審)하고, 몸소 희생(犧牲)을 살피겠으며, 재실(齋室)에 머물다가 조금 늦게 회가(回駕)할 것이니, 의조(儀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p> <p>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만약 면복(冕服) 차림으로 희생을 살핀다면 전알(展謁)한 후 마땅히 바로 해야 하고, 만약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희생을 살핀다면 마땅히 소차(小次)로 들어가 옷을 바꿔 입은 후에 해야 하니, 고례(古禮)를 널리 상고하여 들어 춘조(春曹)10756) 의 의주(儀註)로 삼도록 하라.”</p> <p>하였다.</p>	<p>行。”又教曰：“若以冕服省牲，則展謁後卽當爲之，若以遠遊冠絳紗袍省牲，則當入小次改服，其博考古禮以入，定爲春曹儀註。”</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3월 27 일(기해) 2번째기사 종묘에 희생으로 쓰는 검은 양을 순흑이 아니더라도 참작해 사용하게 하다</p>	<p>고례(古例)에 종묘(宗廟)에는 검은 희생(犧牲)을 썼었는데, 좌의정 송인명이 우리 나라는 희생으로 양(羊)을 계속 대기가 가장 어렵다고 우러러 아뢰니, 지금부터는 비록 순흑(純黑)이 아니더라도 예(例)에 의해 참작해 쓰도록 하라고 명하였다.</p>	<p>古例，宗廟用黑牲，左議政宋寅明，以我國犧牲羊最難繼仰白，命自今雖非純黑，依例參用。</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3월 28 일(경자) 1번째기사 희생을 살필 때의 의식에 대한 논의를 정</p>	<p>임금이 부제학 원경하(元景夏), 예조 참관 정익하(鄭益夏)를 양정합(養正閣)에서 불러 보았다. 원경하가 《대명집례(大明集禮)》 및 《주례(周禮)》를 상고하여 아뢰기를,</p> <p>“희생을 살필 때에 《주례》에는 ‘태재(太宰)가 씻는 것을 살피고, 소종백(小宗伯)은 희생을 살피고 대중백(大宗伯)은 가마솔을 살핀다.’라고 하였고, 《당</p>	<p>庚子/上召見副提學元景夏、禮曹參判鄭益河于養正閣。景夏考奏《大明集禮》及《周禮》曰：“省牲之時，《周禮》‘太宰眡滌濯，小宗伯省牲，大宗伯省鑊’《唐典》‘廩犧令牽牲，光祿卿省鼎鑊’，《大明集禮》‘太常博</p>

<p>하고, 만동묘의 증수를 논하다</p>	<p>전(唐典)》에는, ‘늬희령(廩犧令)이 희생을 이끌어 오고 광록경(光祿卿)이 가마솔을 살핀다.’라고 하였으며, 《대명집례》에는 ‘태상 박사(太常博士)와 태상경(太常卿)이 이끌고 희생을 살피는 자리에 이르면 집사관(執事官)이 희생을 이끌고 주방(廚房)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묻기를,</p> <p>“소종백과 태상경은 지금의 어떤 직책인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소종백은 지금의 예조 참판에 해당되고, 태상경은 지금의 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에 해당됩니다.”</p> <p>하고, 원경하가 또 말하기를,</p> <p>“희생을 살피는 복색(服色)을 황조(皇朝)에서는 흑 피변(皮弁)으로 혹은 통천관(通天冠)에 강사포(絳紗袍)로 하였고, 《주례》에는 선왕(先王)을 향사(享祀)하는 데에 곤룡포(袞龍袍)와 면류관(冕旒冠) 차림이었는데 신들은 어느 예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문(儀文)은 황조의 예를 많이 썼으니, 제 소견으로는 《대명집례》를 따라야 마땅할 듯 싶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묻기를,</p> <p>“늬희령은 오늘날 어떤 벼슬인가?”</p>	<p>士、太常卿引至省牲位，執事官牽牲省訖，牽牲詣廚。”上問：“小宗伯、太常卿，今之何職？”對曰：“小宗伯，如今之禮曹參判，太常卿，如今之奉常提調。”景夏又曰：“省牲服色，皇朝則或以皮弁，或以通天冠絳紗袍，《周禮》則享先王，服袞、冕，臣等未知當從何禮。而我朝儀文多用皇朝之禮，微見則恐當從《集禮》矣。”上問：“廩犧令，今之何官？”對曰：“似是典牲署官員矣。”上曰：“然則該署提調牽牲乎？”對曰：“既曰令則似是卑官。以卿與令兩字觀之，高下懸殊，以該署長官牽牲，恐好矣。”上然之。教曰：“今番展謁後省牲，則當仍以冕服行之。省牲則依古禮當以遠遊冠、絳紗袍行之，分付儀曹。”景夏又曰：“今番省牲，甚盛禮也，凡諸儀章，自然合禮。且頃日皇壇望位禮，臣亦欽仰。”仍陳：“文正公宋時烈所講春秋大義，日遠日忘，誠甚慨然。時烈嘗奉崇禎御筆，揭于萬東廟，今聞祠院頽圯，不蔽風雨，自朝家宜加顧恤。”上令道臣重修書院，劃給免稅田。景夏又陳：“故副提學李端相、故參判宋光淵子孫</p>
-------------------------	--	--

	<p>하니, 대답하기를,</p> <p>“아마 전생서(典牲署)의 관원인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해당 관서의 제조(提調)가 희생을 이끌어야 하는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이미 영(令)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낮은 관원인 듯싶습니다. 경(卿)과 영(令) 두 글자로 보건대 고하가 아주 다르니, 해당 관서의 장관(長官)으로 하여금 희생을 끌게 해야 좋을 듯싶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하교하기를,</p> <p>“이번 전알(展謁)한 후에 희생을 살피는 것은 마땅히 그대로 면복 차림으로 행하겠다. 희생을 살피는 것은 고례(古禮)에 의하여 마땅히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행할 것이니, 의조(儀曹)에 분부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원경하가 또 말하기를,</p> <p>“이번 희생을 살피는 것은 매우 성대한 예절이니, 모든 의장(儀章)이 자연스레 예에 합치되었습니다. 또 지난날 황단(皇壇) 망위례(望位禮)는 신 역시 흠</p>	<p>錄用，俾奉香火。”上從之，端相曾與文正同講大義，光淵甲戌更化初，斥禧嬪別宮之議，故景夏言及之。二人卽左議政宋寅明、祖若外祖也。校理洪益三繼請印給書籍于道峰書院，以資院儒講習，上命兩南印給。</p>
--	---	---



	<p>양(欽仰)하였습니다.”</p> <p>하고, 인하여 진달하기를,</p> <p>“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강구한 춘추 대의(春秋大義)가 날이 멀어 질수록 날로 잊혀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송시열이 일찍이 송정(崇禎)10757) 의 어필(御筆)을 만동묘(萬東廟)에 걸었는데 지금 듣건대 사원(祠院)이 퇴락해 풍우를 가리지 못한다고 하니, 조정에서 마땅히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서원을 중수(重修)하고 면세전(免稅田)을 떼어 주도록 하였다. 원경하가 또 진달하기를,</p> <p>“고 부제학 이단상(李端相)과 고 참판 송광연(宋光淵)의 자손을 녹용(錄用)하여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따랐는데, 이단상은 문정공과 함께 대의(大義)를 강명(講明)하였고, 송광연은 갑술년(10758) 경화(更化)의 초기에 희빈(禧嬪)의 별궁(別宮) 의 논을 배척했기 때문에 원경하가 언급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바로 송인명의 할아버지와 외조(外祖)였다. 교리 홍익삼(洪益三)이 이어 도봉 서원(道峰書院)에 인쇄한 서적을 주어 서원 유생(儒生)들의 강습에 도움이 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양남(兩南)으로 하여금 인쇄해 주도록 명하였다.</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3월 29</p>	<p>장령 최규태(崔逵泰)가 상소하기를,</p> <p>“수령(守令)들이 탐묵(貪墨)한 자는 진급할 매개(媒介)가 되고, 청개(淸介)한</p>	<p>掌令崔逵泰上疏言： 守令貪墨而媒進，淸介而見棄，苛酷之</p>

<p>일(신축) 2번째기사 장령 최규태가 상소하여 관리의 신칙과 관동의 공삼, 황장목의 남벌을 논하다</p>	<p>자는 버림을 당하며, 가혹한 관리가 음형(淫刑)을 하여 함부로 사람을 죽이니, 마땅히 양리(良吏)를 뽑아 쓰고 탐학한 관리를 내쳐야 합니다. 관동(關東)의 공삼(貢蔘)은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도신에게 분부하여 양전(量田)을 독촉하고 삼공(蔘貢)의 분정(分定)을 한결같이 결수(結數)에 따르게 해야 합니다. 황장목(黃腸木)의 금산(禁山)에 귀후서(歸厚署) 및 각영(各營)의 차인(差人)이 공문(公文)을 가지고 열읍(列邑)에 줄달아 많이 왕래하면서 함부로 베고 있으니, 마땅히 유사(攸司)에 신칙해 후일의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가납(嘉納)하였다.</p>	<p>吏，淫刑而濫殺，宜選用良吏，黜退貪虐。關東蔘貢，有不均之弊，宜分付道臣，催促量田，蔘貢分定，一從結數。黃腸禁山，歸厚署及各營差人，挾持公文，旁午列邑，斧斤相尋，宜申飭攸司，以杜後弊。</p> <p>上嘉納之。</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4월 2일 (갑진) 2번째기사 예조 당상에게 희생(犧牲)을 살피는 의주(儀註)를 읽게 하고 하교하여 표시를 하게 하다</p>	<p>임금이 예조 당상(禮曹堂上)을 불러 보고 희생(犧牲)을 살피는 의주(儀註)를 읽으라 명하고, 하교하기를,</p> <p>“지난해 대사례(大射禮) 후 사단(射壇)을 헐지 않은 것은 대개 뜻이 있어서였다. 이번 희생(犧牲)을 살핀 곳에도 작은 벽돌을 깔아 표시해 후일에 친히 임해 희생(犧牲)을 살피던 자리임을 알게 하라.”</p> <p>하였다.</p>	<p>上召見禮堂，命讀省牲儀註，教曰：“頃年大射禮後，不毀射壇，蓋有意矣。今者省牲處，鋪小甎以表之，使日後知親臨省牲位也。”</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4월 7일 (기유) 1번째기사 태묘에서 처음으로 희생(犧牲)을 살피다</p>	<p>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폈는데, 친히 임하여 희생(犧牲)을 살피는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의 관직을 특별히 과하였다. 임금이 친압(親押)을 마치고 향축(香祝)을 받들어 친히 헌관(獻官)에게 전하고, 인하여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태묘에 나아가 면복(冕服)으로 갈아입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봉심(奉審)과 그릇 살피는 것을 의례(儀禮)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서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갈아입고 희생(犧牲)을 살피는 자리에 나아가 남향(南向)하고 서니, 장생령(掌牲令)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희생(犧牲)을 이끌고 동쪽으로 조금 나와 손을 들어 살졌다고 고하고 다시 자리로</p>	<p>己酉/上詣太廟省牲，親臨省牲始此。特罷左議政宋寅明職。上親押訖，奉香祝親傳獻官，仍以翼善冠、袞龍袍，詣太廟改具冕服，行四拜禮。奉審、省器如儀，次詣永寧殿亦如之。改具遠遊冠、絳紗袍，詣省牲位南向立，掌牲令率其屬，牽牲自東行過少進，舉手告臚，還復位。諸大祝各巡省一匝西向，舉手告充，俱復位。上曰：“牛不</p>

	<p>돌아왔다.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순행하여 살펴보면서 서쪽을 향해 한 바퀴 돌면서 손을 들어 충실하다고 고하고 모두 자리로 돌아왔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소가 살지지 못하였다.”</p> <p>하니, 예조 판서 조상경(趙尙綱)이 말하기를,</p> <p>“살지지 않았으면 물리케 하리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임금의 직책은 희생을 살피는 데 있지 희생을 받는 데 있지 않다.”</p> <p>하였다. 헌관 송인명이 말하기를,</p> <p>“우리 나라의 검은 소는 원래 몸집이 큰 것이 없으니, 몸집은 비록 살지지 않았으나 깨끗하면 쓸 수 있습니다.”</p> <p>하니, 하교하기를,</p> <p>“이번의 이 예(禮)는 관참(觀瞻)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친히 살피는 것이 이러하니, 섭행(攝行)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대관(大官)이라 하여 용서해서는 안 되니, 해당 헌관을 파직하고, 해당 예조의 당상과, 해당 관서의 제조(提調)는 삭직(削職)하고, 소를 이끌고 와 살졌다고 고하여 면전에서 임금을 속인 장생</p>	<p>膺矣。”禮曹判書趙尙綱曰：“不肥則當點退乎？”上曰：“人君之職，在於視牲，非可受牲矣。”獻官宋寅明曰：“我國黑牛，元無體大者，體雖不肥，潔則可用也。”教曰：“今番此禮，非爲觀瞻，而親省如此，攝行可知。不可以大官而容貸，當該獻官罷職，當該禮堂、該署提調削職，牽牛告膺，面謾其君之掌牲令，亟施烏配之典。”都承旨李益炆言：“處分太過矣。”上不從，責之以不諒大體，命預差獻官催促入齋。教曰：“預差獻官，聞不爲齋宿云，予當親行矣。”諸儒臣皆言：“禮儀多窘迫，又以預差獻官雖不齋宿，而家有私祭，已爲致齋。”仰奏，上曰：“然則與齋宿何異也。”遂寢親行，仍命今後祭官，勿論預、實差，皆令齋宿。又命攝行時大祝，毋論大享、朔望，非曾經侍從人，勿爲填差。先是，有司以經費不足，裁減典牲署犧牲米豆，至是上教曰：“祭享犧牲其飼養者減，不可使聞於隣國，其令復舊。”又教曰：“鑿刀見於《五禮儀》，而廢不用，自今如禮造用。”上將回鑿，親製一首詩，揭于望廟樓，詩中道不預祭心</p>
--	---	---

	<p>령(掌牲令)은 빨리 도배(鳥配)의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도승지 이익정(李益炆)이 말하기를,</p> <p>“처분이 너무 지나칩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으면서 대체(大體)를 모른다고 꾸짖고 예차(預差) 헌관(獻官)을 독촉해 입재(入齋)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p> <p>“듣건대, 예차 헌관이 재숙(齋宿)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친행(親行)하겠다.”</p> <p>하니, 여러 유신(儒臣)들이 모두 말하기를,</p> <p>“예의가 많이 궁박(窘迫)하며, 또 예차 헌관이 비록 재숙하지는 않았으나 집에 사제(私祭)가 있어 이미 치재(致齋)하였습니다.”</p> <p>하며,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재숙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p> <p>하고, 드디어 친행을 정지하고 인하여 지금 이후부터 제관(祭官)은 예차·실차(實差)를 물론하고 모두 재숙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섭행할 때의 대축(大祝)은 대향(大亨)이나 삭망(朔望)을 물론하고,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이 아니면 차임해 채우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사(有司)가 경비가</p>	<p>耿耿之意，其篤於孝思如此。</p>
--	---	----------------------

	<p>부족하니, 전생서(典牲署)의 희생에 대한 미두(米豆)를 줄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하교하기를,</p> <p>“제향에 쓸 희생의 사료를 줄였다는 말을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는 없으니 복구하게 하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난도(鑾刀)가 《오례의(五禮儀)》에 보이는데 폐지하고 쓰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예(禮)대로 만들어 쓰도록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장차 환궁하면서 친히 시(詩) 한 수(首)를 지어 망묘루(望廟樓)에 걸었는데 시 가운데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애타는 심정(心情)을 말하였으니, 효사(孝思)의 돈독함이 이와 같았다.</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5월 12일(계미) 1번째기사 민정과 연경에서 들어온 과학 기계를 논한 공홍도 심리사 한익모의 아뢰</p>	<p>(전략)또 말하기를,</p> <p>“본도에 흉년이 들어 관수(官需)가 부족하니, 연해(沿海) 고을에 저장해 둔 쌀 2백 석(石)을 또한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모두 윤택하였다(후략)</p>	<p>(전략)又曰: “本島凶荒, 官需不足, 沿海邑儲置米二百石, 亦依狀請許施好矣。” 并允之(후략)</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5월 28일(기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관서 심리사(關西審理使) 이일제(李日躋)가 복명하니, 임금이 대신과 형조 당상을 함께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己亥/上行晝講。 關西審理使李日躋復命, 上命大臣、秋堂同入。 上曰: “西民逋債, 果爲蕩滌乎?” 日躋對曰: “計大數摠可爲十萬兩錢, 而既承焚券</p>

<p>관서 심리사 이일제가 복명하여 관서의 민정을 진달하다</p>	<p>“관서 백성들의 포채(逋債)를 과연 탕척해 주었는가?”</p> <p>하니, 이일제가 대답하기를,</p> <p>“총계(摠計)의 대략 숫자가 전(錢) 10만 냥이나 되었는데, 이미 문권(文券)을 불태워 버리라는 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탕감하는 뜻을 각 고을에 선포하였고, 한편으로는 대동문(大同門)에 글을 게시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도록 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옥안(獄案)을 올리라고 명하면서 말하기를,</p> <p>“살려준 자가 몇이나 되는가?”</p> <p>하니, 이일제가 말하기를,</p> <p>“합해서 13명인데 경연의 하교에 의해 즉시 결방(決放)하고, 별도로 책자(冊子) 하나를 만들어 어람(御覽)에 대비했습니다.”</p> <p>하였다.</p> <p>임금이 승지 조영국(趙榮國)에게 명하여 호남의 심리 별단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p> <p>“이번 이 별단 가운데 있는 각 영읍(營邑)의 어염(魚鹽)을 요판(料辦)하고, 세미(稅米)를 방환(防換)하며, 복호(復戶)를 예매(預買)하는 폐단을 청컨대 정식</p>	<p>之命，故一邊以蕩減之意，宣布各邑，一邊書揭於大同門，俾往來人皆見之矣。？ 上命上獄案曰：“傳生者爲幾度？”日躋曰：“合爲十三度，而依筵教直爲決放，另具一冊子，以備御覽矣。”上命承旨趙榮國，持入湖南審理別單。左議政宋寅明曰：“今此別單中，各營邑魚鹽料辦，稅米防換，復戶預買之弊，請定式嚴禁”上曰：“此三事嚴飭，犯者從重勘處。”寅明又曰：“內外洋漁箭漁場，各衙門、各宮房迭送差人，侵虐浦民，宜明定界限，俾杜後弊”上曰：“非但湖南，諸道折受，一切嚴禁，監、兵、水使及地方官私占者，隨現重繩。”寅明又曰：“諸宮家民結免稅，濫捧無節，自今每結米則二十四斗，錢則六百文爲定式，若當災年，則該邑一從時起，照管捧稅爲宜矣”上曰：“必有從前定式，自備局申飭。”寅明又言：“南、北漢義僧空名帖，殆同勒賣，宜嚴禁”知事金若魯曰：“非但僧帖，大抵空名帖之弊，在朝家有賣爵之嫌，在民間有勒授之怨，御寶僞造亦未必不由於此，自今爲始大歎外，宜一切禁斷。”上從之。</p>
--------------------------------------	--	---

	<p>(定式)을 만들어 엄금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말이,</p> <p>“이 세 가지 일을 엄히 신칙하여 범한 자는 중률(重律)에 따라 감처(勘處)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p> <p>“내외양(內外洋)의 어전(漁箭)과 어장(漁場)에 각 아문(衙門)과 각 궁방(宮房)에서 번갈아 차인(差人)을 보내서 포민(浦民)을 침해하고 있으니, 마땅히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p> <p>“비단 호남뿐만 아니라 제도(諸道)의 절수(折受)를 일체 엄금하고,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 및 지방관(地方官)이 사사로이 차지한 자는 드러나는 대로 중히 다스리도록 하라.”</p> <p>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p> <p>“여러 궁가에서 면세(免稅)한 민결(民結)에서 함부로 받아들임이 한정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매 결(結)마다 쌀로는 24두(斗), 돈으로는 6백 문(文)을 정식으로 삼고, 만약 재해가 있는 해를 만나면 해당 고을에서 한결같이 현재의 경작 면적(面積)에 따라 조관(照管)하여 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p>	
--	--	--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반드시 종전의 정식이 있을 터이니, 비국에서 신칙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p> <p>“남한 산성(南漢山城)·북한 산성(北漢山城)의 의승(義僧) 공명첩(空名帖)은 억지로 파는 것과 같으니 엄금해야 마땅합니다.”</p> <p>하고, 지사(知事)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p> <p>“비단 승첩(僧帖)뿐만 아니라 대저 공명첩의 폐단은 조가(朝家)에서 벼슬을 판다는 혐의가 있고, 민간에서는 억지로 떠맡긴다는 원망이 있으며, 어보(御寶)를 위조(僞造)하는 것도 또한 모두 이에서 말미암게 되니, 지금부터 큰 흉년 이외에는 일체 금단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영조 61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6월 5일 (병오) 3번째기사</p> <p>관동·해서·영남·호서 심리사 들이 각 지역의 폐단을 진달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 및 형조 당상과 제도의 심리사를 인견하여 각기 폐단을 진달하게 하였다. 관동 심리사 구택규(具宅奎)가 삼공(蔘貢)의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유약(有若)10775) 이 말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부족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관동의 삼공(蔘貢)은 바로 한 도의 큰 폐단이어서 선조(先朝)에서 세공(歲貢)을 특별히 감하였고, 내가 즉위한 후에도 그 성</p>	<p>上引見大臣、備堂、秋堂、諸道審理使、令各陳弊瘼。關東審理使具宅奎陳蔘弊，上曰：“有若曰，‘百姓足，君誰與不足?’關東蔘貢，乃一道之巨弊也，先朝特減歲貢，予嗣服後，體盛意而又減。然莫重藥餌，不可過減。所請續田稅米豆，特令劃給，少補民</p>



	<p>대한 뜻을 본받아 또 감해 주었다. 그러나 막중한 약이(藥餌)를 너무 지나치게 감해서는 안 된다. 청한 바 속전세(續田稅) 쌀과 콩을 특별히 획급하여 조금이라도 민역(民役)에 보태도록 하라.”</p> <p>하였다. 해서 심리사 남태량(南泰良)이 다시 상정미(詳定米)의 값이 높은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쌀을 청하여 얻어서 돈으로 추심(推尋)하는 것은 비단 민폐일 뿐만 아니라 일이 부당하다. 경외(京外)를 물론하고 상정미(詳定米)로 이전한 곡식을 돈으로 대신 징수하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고, 만일 명을 어기면 중률(重律)로 다스리도록 하라.”</p> <p>하였다. 영남 심리사 김상적(金尙迪)이 시노비(寺奴婢)의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제 심리사가 아뢴 바를 듣건대 왕정(王政)에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니, 비총(比摠)을 핵실하자는 것 역시 의견이 있는 것이다. 비국에서 절목(節目)을 정해 들이게 하라.”</p> <p>하였다. 호서 심리사(湖西審理使) 한익모(韓翼謨)가 양역(良役)의 폐단을 아뢰기를,</p> <p>“노약자를 첨정(簽丁)하는 것은 오로지 군액은 많고 백성은 적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음성(陰城) 등 세 고을이 더욱 심하니,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정원 수를 작정해 도내의 백성이 많은 고을로 이송(移送)하여 조금의 민폐라</p>	<p>役。” 海西審理使南泰良更陳詳定米價高之弊，上曰：“以米請得，以錢推尋，非徒民弊，事涉不當。勿論京外，詳定米移轉穀，以錢代徵之弊，一切嚴禁，若有違令，繩以重律。” 嶺南審理使金尙迪陳寺奴婢弊，上曰：“今聞審理使所奏，可謂王政之所不忍，覈實比摠亦有意見。自備局定節目以入。” 湖西審理使韓翼謨陳良役之弊：“老弱簽丁，專由於軍多民少，而至於陰城等三邑爲尤甚，宜令廟堂，酌定數額，移送於道內民多之邑，以紓一分民弊”，上曰：“自備局參酌，卽爲舉行。” 關西審理使李日疏陳西路田無常賦，軍無定額，財不節用，民不安分四條弊，上曰：“此是大事，不可草草了當，後日登對稟處。”</p>
--	--	---

	<p>도 늦추어 주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비국에서 참작하여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관서 심리사 이일제가 서로(西路)에는 전답에 일정한 부세(賦稅)가 없고, 군(軍)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으며, 재물을 절용(節用)하지 않고, 백성들은 분수(分數)를 지켜 편안할 줄을 알지 못하는 네 가지 폐단으로써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큰 일이어서 바쁘게 간단히 결정할 수 없으니 후일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7월 4일 (갑술) 6번째기사</p> <p>비총제의 문제를 논의하고, 제주도의 흥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양 대장(大將)과 전직 영남 도신(嶺南道臣)을 소견(召見)하고 영남의 시노비 절목초(寺奴婢節目草)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비총(比總)10794 은 일찍이 이름이 부정하다는 의논이 있었다.”</p> <p>하자, 어영 대장(御營大將)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p> <p>“이름이 비록 부정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변통하는 것은 진실로 폐단을 제거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저 법이란 좋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그것을 봉</p>	<p>上召見大臣、禁・御兩大將曾經嶺南道臣，命持入嶺南寺奴婢節目草。上曰：“比總曾有名不正之議矣。”御營大將朴文秀曰：“名雖不正，今者變通，誠出於掄弊之意。大抵法非不義，奉行惟在擇人。如得守令，庶可爲一分掄弊之道矣。”上曰：“古詩云，‘磨礪當如百鍊金’，節目既成之後，更問諸臣者，意蓋此也。”領議政金在魯曰：“左相之意，每十年欲送推刷御史，而</p>

	<p>행하는 데는 오로지 인재를 선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마땅한 수령(守令)을 얻는다면 거의 조금이라도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고시(古詩)에 이르기를, ‘갈고 닦기를 금(金)을 백 번 단련시키듯 하라.[磨礪當如百鍊金]’ 하였는데, 절목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다시 여러 신하에게 묻는 것은 그 의도가 대개 여기에 있다.”</p> <p>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p> <p>“좌상(左相)의 뜻은 10년마다 추쇄 어사(推刷御史)를 보내자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도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도내의 수령을 뽑아 차원(差員)으로 정하고 연도를 한정하여 추쇄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p> <p>하매, 승지 김상적(金尙迪)이 말하기를,</p> <p>“비록 어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폐단이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로지 도신에게 책임을 지워 오직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 형편에 따라 추쇄하게 한다면 거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각읍에 영을 내려 해마다 추쇄하게 하였으니, 다시 무엇 때문에 연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臣意則使道臣，別擇道內守令定差員，限年推刷爲愈矣。” 承旨金尙迪曰：“雖送御史，亦安知無弊乎？專責道臣，惟以得人爲主，闕挾推刷，則庶可杜弊。既令各邑年年推刷，則更何事於限年乎？” 上曰：“此言是矣。” 在魯曰：“濟州麥農大歉，牟還無以準捧。前頭民人所食、秋耕種子，及今變通然後庶可以救濟，沿海邑牟麥二千石，劃送宜矣。” 上曰：“靜思昔年爲島民之聖意，倍切興感。準數許施。”</p>
--	--	---

	<p>“이 말이 옳다.”</p> <p>하였다.</p> <p>김재로가 말하기를,</p> <p>“제주(濟州)에 보리 농사가 큰 흉년이 들어 보리의 환상(還上)을 수량에 준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먹을 식량과 가을에 경작할 종자를 지금 변통해 주어야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연해읍(沿海邑)에 있는 모맥(牟麥) 2천 석(石)을 획송(劃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옛날 도민(島民)을 위하던 성의(聖意)를 조용히 생각하여 보니,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수량에 준하여 시행하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7월 11일(신사) 4번째기사 원경하를 호남 진전 개량사를 겸하게 하고, 서얼 소통과 동래의 차왜를 논하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p> <p>“지난번에 호남 심리사(湖南審理使)의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진전(陳田)을 개량(改量)하는 일은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으니 지금 거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도신(道臣)은 공무(公務)가 많아서 일일이 꼭 직접 살피지 못할 것이요, 설혹 묘당(廟堂)에 품보(稟報)하더라도 신 등은 모두 두서를 모르니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 원경하(元景夏)는 호남의 일을 익히 알고 또 양전(量田)하는</p>	<p>上引見大臣、備堂。左議政宋寅明曰：“頃因湖南審理使別單，陳田改量事，已有成命，今當舉行，而道臣自多公務，未必一一親審，設或稟報廟堂，而臣等皆不知頭緒，何以指揮？元景夏熟諳湖南事，且於量田之方，夙宵講究，至誠籌度，今若委任下送，則必有效矣。”上可之，仍以景夏兼湖南陳田改</p>

	<p>방법에 대해 밤낮으로 강구(講究)하여 지성으로 획책(劃策)하고 있으니, 지금 만일 임무를 맡겨 내려 보내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인하여 원경하에게 호남 진전 개량사(湖南陳田改量使)를 겸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이조 판서 이주진(李周鎭)이 며칠 전에 상소한 글의 말미에 서류(庶流)를 소통(疏通)시키자고 말하였는데, 고려조(高麗朝)로부터 서얼(庶孽)을 소통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현(前賢)들이 말한 바는 다만 미관 말직만을 허락하자는 것뿐이요, 청선(淸選)의 직에 소통시키자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요즈음같이 명분이 점차 해이해지는 날을 당하여 어찌 이런 길을 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이주진이 말하기를,</p> <p>“신이 한 말도 역시 인재(人才)가 옹체(壅滯)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데 불과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김재로가 말하기를,</p> <p>“동래(東萊)의 차왜(差倭)가 관소(館所)에 머뭇거리며 본국(本國)에 돌아갈 의향이 없습니다. 변신(邊臣)이 비록 음식 제공을 거두기를 청하려고 하나, 역시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합니다. 다시 통역[舌人]을 보내어 이해(利害)로써 설득시키는 것만 못할 듯합니다.”</p>	<p>量使。領議政金在魯曰：“吏判李周鎭頃日疏末，以疏通庶流爲言，而自麗朝不通庶孽久矣。前賢所言，只欲許其微官而已，未聞通淸。當此名分漸弛之日，何可開此路乎？”周鎭曰：“臣言亦不過惜其人才之壅滯也。”上然之。在魯言：“東萊差倭，逗留館所，無意歸國。邊臣雖請輟供，亦恐有責。莫若更遣舌人，誘以利害。”從之。先是，館倭支供監官輩，從中料利，如米雜沙木易炭之類，奸僞日滋，運米監官，事覺梟示故，上又以交隣當信之意，下教嚴飭。</p>
--	--	---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관왜 지공 감관(館倭支供監官)의 무리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도모하여 쌀에 모래를 섞는다든지 나무를 솥과 바꾸는 등 간교한 일이 날로 심해졌는데, 쌀을 운반하는 감관(監官)은 일이 발각되자 효시(梟示)하였으므로 임금이 또 교린(交隣)을 하는 데는 마땅히 신의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교하여 엄중히 신칙하였다.</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7월 12일(임오) 2번째기사 서얼 허통, 정몽주의 치제, 이존오·정추의 자손 녹용, 무신란의 공신 녹용 등을 논하다</p>	<p>(진략)또 하교하기를,  “국가에서 쓰는 것은 향온(香醞)과 법온(法醞)뿐이고, 백화주(百花酒)나 비방문주(比方文酒)는 더욱 쓸 수 없다. 하우(夏禹)가 단지 의적(儀狄)10798)은 멀리했지만 술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마음에 일찍이 개탄하였다. 국가의 흥망(興亡)이 오로지 여기에 관계되는데, 지금 만일 이러한 명목(名目)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후세에 이 명목을 상고하여 이 술을 찾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내자시(內資寺)의 문서(文書) 중에 이 두 가지 술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이덕중(李德重)이 청하기를,  “무신년의 변란(變亂)10799) 때에 청주(淸州)의 효로 장사(效勞將士) 2등 공신(二等功臣) 가운데 제직(除職)할 만한 사람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명단을 적어 장문(狀聞)하게 하여 바로 녹용(錄用)하소서.”  하니, 옳게 여겼다.</p>	<p>(진략)又教曰: “國家所用, 曰香醞曰法醞而已, 百花酒、比方文酒尤不可矣。夏禹之只疏儀狄, 而不能去酒, 心嘗慨然。國家興亡, 專係於此, 今若不祛此名目, 則安知後來不按此名而索此酒乎? 內資文書中, 此二酒去之。” 承旨李德重請: “戊申亂時, 淸州效勞將士二等功臣中, 可合除職者, 令道臣指名狀聞, 卽爲錄用。” 可之。</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8월 16일(을묘) 1번째기사 왕세자가 시좌한 선정전에서 박필주와 유소, 《상훈》 등에 대하여 논하다</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니 왕세자가 시좌(侍坐)하였는데, 찬선 박필주(朴弼周)를 불러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경(卿)의 얼굴을 보았는데, 경도 나의 얼굴을 보고 싶을 터이니 일어나 앉아서 바라보아라.”  하자, 박필주가 아뢰기를,</p>	<p>乙卯/上御宣政殿, 王世子侍坐, 召見贊善朴弼周。上曰: “予亦見卿面, 卿亦必欲見予之面, 宜起坐瞻望。” 弼周曰: “仰瞻天顏, 衰白亦異於往年, 甚爲愴然。” 上曰: “予固衰白, 而卿之衰謝, 亦異於往年也。” 弼周曰: “近以疏儒事, 聖心激惱, 多下不忍聞之教。 臣以首發之人, 豈可罪同而罰異</p>

	<p>“천안(天顔)을 우러러 뵈오니, 쇠백(衰白)한 것이 왕년(往年)과 달라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는 본디 쇠백하지만 경의 쇠약함도 왕년과 다르다.”</p> <p>하였다. 박필주가 말하기를,</p> <p>“근래에 소유(疏儒)의 일로 성심(聖心)이 격동하고 번뇌하셔서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많이 내리셨습니다. 신은 그 일을 수발(首發)한 사람으로서 어찌 죄는 같은데 벌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선왕의 업적을 계술하고 후손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의도로 이 문자(文字)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p> <p>하였다. 박필주가 말하기를,</p> <p>“《상훈(常訓)》에 남기신 뜻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워서 전수(傳授)하려는 심법(心法)을 매우 자세하게 발휘하였습니다. 성학(聖學)의 조예(造詣)가 이와 같이 고명(高明)하신데 어찌하여 가끔 비상한 지나친 거조가 있으십니까?”</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乎?” 上曰：“予以述先裕後之意，爲此文字，而今則悔之。” 弼周曰：“《常訓》命意，至善至美，傳授心法，發揮甚詳。夫以聖學之造詣如是高明，而奈何有往往非常之過舉也?” 上曰：“予則自以爲非過舉，乃苦心也。” 弼周曰：“我朝遺法，專在於培養士氣，《常訓》中既以法祖爲目。今於此等事，若法先朝，則尤豈不有光於聖德乎?” 教曰：“頃者學儒處分，可謂寬典之寬典。而渠雖無狀，贊善批旨中，既曰面諭，登對之後，若不開許，是豈誠也? 此等世道，亦不可開無前之律名於青衿。抹去免爲庶人四字，特放其竄。” 仍命該曹，贊善留京時，輸送米饌柴炭。</p> <p><b>【태백산사고본】</b></p>
--	--	--

	<p>“나는 그것은 지나친 거조가 아니고 고심(苦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p> <p>하였다. 박필주가 말하기를,</p> <p>“아조(我朝)의 유법(遺法)은 오로지 사기(士氣)를 배양하는 데 있고, 《상훈》에서도 이미 조종(祖宗)을 본받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으니, 지금 이러한 일에도 선조(先朝)를 본받는다면 어찌 성덕(聖德)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p> <p>하니, 하교하기를,</p> <p>“얼마 전에 학유(學儒)에 대한 처분은 너그러운 은전(恩典) 중에도 너그러운 은전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무상(無狀)할망정 내가 찬선에 내린 비지(批旨) 가운데에 면유(面諭)하겠다고 이미 말해 놓고 등대(登對)한 뒤에 개허(開許)하지 않으면 이 어찌 성의라고 하겠는가? 이러한 세도(世道)에 있어서 역시 전에 없던 율명(律名)을 청금(靑衿)10836)에게 개시할 수는 없다. ‘면위서인(免爲庶人)’이라는 네 글자를 지워 버리고 그들을 찬배에서 석방하도록 하라.”</p> <p>하고, 이어서 해조(該曹)에 명하여 찬선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쌀과 반찬·멸감을 보내주라고 하였다.</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8월 21일(경신) 3번째기사</p>	<p>어가(牙)를 따라갔던 군병(軍兵)들에게 해영(該營)에서 시사(試射)·시방(試放)하게 하고, 전례(前例)에 따라 호궤(犒饋)10847) 하도록 명하였다</p>	<p>命隨駕軍兵，自該營試射、試放，依例犒饋。</p>



<p>어가를 따라갔던 군병들에게 시사·시방하고 전례에 따라 호궤하다</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9월 3일 (임신) 2번째기사 비변사에서 만동사에 면세전을 회급하라는 명에 대하여 처결 내용을 진달하다</p>	<p>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만동사(萬東祠)에 면세전(免稅田)을 회급(劃給)하라는 명은 성상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사체(事體)가 매우 중하니, 매위(每位)마다 10결(結)씩 모두 20결을 참작하여 회급하라는 뜻을 지부(地部)와 본도(本道)에 분부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p>	<p>備邊司啓言：“萬東祠免稅田劃給之命，聖意有在。事體甚重，每位各十結合二十結參酌劃給之意，分付地部及本道。”上允之。</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0월 5일(계묘) 2번째기사 희생에 쓰는 검은 소가 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다</p>	<p>예조 판서 조관빈(趙觀彬)과 전생서 제조(典牲署提調) 유엄(柳儼)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검은 소는 체구가 작아서 법식에 맞지 않고 다른 희생(犧牲)은 대신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도회관(都會官)은 엄중히 추고(推考)하고, 봉진관(封進官)인 제주 목사(濟州牧使) 및 분양관(分養官)인 거제 부사(巨濟府使)는 나문(拿問)하여 처치하며, 전후(前後)의 제조(提調)는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서경(書經)》에 성우(騂牛)라고 특별히 칭한 것은 대개 제향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희생의 체구가 본래 작은 것을 보낸 것은 해당 읍(邑)의 과실이고, 그것을 살피우지 못한 것은 본서(本署)의 책임이다. 이 뒤로는 예조 당상이 제조와 함께 간품(看品)하여 받을 것이며, 전생서의 낭청을 즉시 택차(擇差)하도록 하라.”</p>	<p>禮曹判書趙觀彬、典牲提調柳儼請對言：“黑牛體小不中式，他犧無可代者。”命都會官重推，封進官濟州牧使及分養官巨濟府使拿處，前後提調推考。仍教曰：“《書》特稱騂牛，蓋所以重其享也。牲體本小，當邑之過，而不能肥腠，責在本署。今後則禮堂與提調看品以捧，署郎卽令擇差。”</p>

	하였다.	
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 (乾隆) 10년) 10월 6 일(갑진) 1번째기사 태묘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고 향례 에 불참한 신하들을 처벌하다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서 예(禮)에 따라 희생과 제기(祭器)들을 살펴보았는데, 찬작(瓚爵)10867) 한 벌(具)에 땀질할 곳이 있으므로 새로 만들도록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날씨가 춥다 하여 향례(享禮)를 섭행(攝行)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제관(祭官)의 방자(榜子)10868) 를 가져다가 보았는데, 서계(誓戒)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있고, 또 국자감(國子監)의 미관(微官)으로 메워진 자도 있자, 임금이 전조(銓曹)의 낭관을 엄중히 책망하기를, “공축(工祝)10869) 이 낮으면 그 예가 엄숙하지 못하다. 며칠 전에 이미 칙교(飭敎)를 내려 비록 섭행(攝行)하더라도 대축(大祝)은 시종신(侍從臣)을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구차스럽게 이와 같이 메웠으니, 전조의 낭관과 외방에 있는 시종신은 나처(拿處)하고 불참한 자는 멀리 유배하도록 하라.”	○甲辰/上詣 太廟，省牲省器如禮，以瓚爵一具有鎔補處，命新造。諸臣以日寒，請攝行享禮，上不許，取覽祭官榜子，有未參誓戒者，亦有以國子微官填差者。上切責銓郎曰：“工祝卑，其禮不嚴。頃既飭敎，雖攝行，大祝當差侍從，而苟填若此，銓郎及在外侍從拿處，不參人遠配。”
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 (乾隆) 10년) 11월 21 일(무자) 1번째기사 봉상시에서 삼남의 울 목 분정을 폐하고 구 례현 연곡사로 주재 봉산하기를 청하다	하였다. 봉상시(奉常寺)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삼남(三南)의 읍(邑)에 울목(栗木)10902) 을 분정(分定)하던 예를 혁파하고 구례현(求禮縣) 연곡사(燕谷寺)로 주재 봉산(主材封山)10903) 을 만들어 울목을 장양(長養)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戊子/奉常寺啓請：“革罷三南邑分定栗木之例，以求禮縣燕谷寺爲主材封山，長養栗木。”允之。
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서종급(徐宗伋)에게 명하여 반궁(泮宮)에 가서 황감(黃柑)을 나누어 주고 시사(試士)하게 한 다음 대궐에 나아가 과차(科次)를 정	朔戊戌/ 命弘文提學徐宗伋，往泮宮頒柑試士，詣闕科次，居首進士尹鳳五賜

<p>(乾隆) 10년) 12월 1일(무술) 1번째기사 홍문관 제학 서종급에게 반궁에 가서 황감을 나누어 주고 시사하게 하다</p>	<p>하여 수석을 차지한 진사(進士) 윤봉오(尹鳳五)에게 급제를 내리고, 그 나머지는 각각 급분(給分)10904 하였다.</p>	<p>第, 餘各給分。</p>
<p>영조 62권,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12월 17일(갑인) 4번째기사 탐라의 진이한 물품을 권문에 들이는 소문을 듣고 진상물과 수령 선발을 신칙하다</p>	<p>하교하기를, “멀리 있는 해도(海島)에는 왕화(王化)가 미치지 어려운데, 하물며 나와 같이 모자라는 덕으로 교화(教化)가 여러 섬에 미치지 못함이겠는가? 옛날 내가 시탕(侍湯)할 때에 본주(本州)를 돌보시던 성대한 뜻을 나는 우러러보았는데, 근래 이과(異果)를 봉진(封進)함에 있어서 목사(牧使)를 추고(推考)하고 그 과일을 물리친 것은 대개 해도(海島)에 폐가 될까 두려워함이었다. 아! 이는 수령(守令)들이 억지로 거두어 온 데서 연유된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아는 자가 비록 적지마는 모르는 자를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그 근본은 곧 섬 백성들의 고혈(膏血)이고, 그 전하여 온 것은 섬 백성들의 노고(勞苦)이다. 진상(進上)하는 것이 혹 시기가 지날 경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가 민망히 여겨 오면 반드시 물어보았는데, 하물며 명목도 없는 봉진(封進)이겠는가? 그 근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수령을 잘 가려 뽑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본주(本州)의 목사는 청근(淸勤)하고 강직(剛直)한 사람으로 문관과 무관을 교대하여 차임하게 하라. 대정현(大靜縣)이나 정의현(旌義縣)에 대하여는 바다를 건너는 것을 싫어하여 늘 먼 지방의 한미(寒微)한 사람을 차송(差送)하였다. 아! 우로(雨露)는 땅을 가려 내리는 것이 아닌데 백성을 위한 관리의 선택은 어찌 지벌(地閥)을 가려 보낼 수가 있겠는가? 진조로 하여금 잘 선택하여 차임하게 하라. 이 하교가 내린 뒤에도 만일 전과 같이</p>	<p>教曰：“遐遠海島，王化難沾，其況涼德，教化不能沾於諸島乎？昔年侍湯，顧恤本州之盛意，予自仰觀，頃年異果之封進也，推考牧使而却其果，此蓋恐爲弊於海島也。噫！此由守令之求索也。以此推之，知者雖小，不知者何能計之？其本也，卽海民之膏血也，其傳也，卽海民之勞苦也。進上之其或過時，愍其漂海，來必問也，況無名進封乎？其若澄本，莫若擇守令。申飭銓曹，本州牧使，以淸勤剛直之人，文武交差。至於大靜、旌義，則厭其越海，每以遐方殘微之人差送。噫！雨露不擇而下，爲民擇官豈可擇地？其令銓曹，亦爲擇差。而有此下教後，其若依前，備局察推。”時，有以耽羅珍異，輦致權門者，上聞之，有是命。</p>

	<p>한다면 비국(備局)에서 잘 살피 추고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이때에 탐라(耽羅)의 진이(珍異)한 물품을 권문(權門)에 실어들이는 일이 있었는데, 임금(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이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 (乾隆) 10년) 12월 20 일(정사) 2번째기사 인정문에 나아가 한망 득·안복수를 친국하다</p>	<p>(전략)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장오죄(贓汚罪)와 다른데 어찌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p> <p>하였다. 호조 판서 정석오(鄭錫五)가 청하기를, “경신년(10907) 이후 6년 조(條)의 관서(關西) 지방에 비축한 쌀과 좁쌀을 합하여 30만 곡(斛)을 지부(地部) 10908) 에 획급(劃給)하여 경용(經用)에 보충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전략)上曰: “此異贓汚, 何必改也?” 戶曹判書鄭錫五請以: “庚申後六年條 關西所儲大、小米合三十萬斛, 劃給地 部, 以補經用。” 上允之。</p>
<p>영조 62권, 21년 (1745 을축 / 청 건륭 (乾隆) 10년) 12월 28 일(을축) 2번째기사 철원의 옥사와 관동의 삼공, 양전의 고통에 대한 강원도 어사 조 운규의 아뢰</p>	<p>강원도 어사 조운규(趙雲逵)가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철원(鐵原)의 옥사(獄事)를 물으니, 조운규가 언성(彦成)과 김시형(金時亨)에 대한 옥사의 정상을 캐어 물은 일로써 대답하자,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조운규가 또 말하기를, “관동 지방 백성의 고통은 삼공(蔘貢)보다 지나친 것이 없고, 양전(量田)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든 흉작은 다른 여러 도(道)에 비하여 가장 심하니, 곧 진구(賑救)하여 안집(安集)할 수 있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p>	<p>江原道御史趙雲逵復命。 上問鐵原獄事, 雲逵以彦成、時亨獄情鈎審事仰對, 上命該曹稟處。 雲逵又言: “關東民隱, 莫過於蔘貢, 莫急於量田。 今歲凶荒, 比諸道最甚, 宜卽賑救, 俾得安集。” 上令備局稟處。</p>
<p>영조 63권, 22년</p>	<p>종신(宗臣)과 조신(朝臣)의 아내로서 나이 70세 이상, 사서인(士庶人)의 부녀</p>	<p>命賜宗臣及朝臣妻年七十以上, 士庶人</p>

<p>(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1월 6일 (계유) 3번째기사 종신과 조신의 아내로 70세 이상, 사서인의 부녀로 80세 이상 된 이에게 식물을 내리다</p>	<p>(婦女)로서 나이 8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식물(食物)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청한 것으로 인하여 병술년(10924)의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p>	<p>婦女年八十以上食物，因領議政金在魯所請，而依丙戌年例也。</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1월 18일(을유) 5번째기사 경상좌도의 흉년으로 저치미 7천 석과 군작미 3천 석의 대여를 허락하다</p>	<p>경상좌도에 흉년(凶年)이 들었으므로 저치미(儲置米) 7천 석(石), 군작미(軍作米) 3천 석을 대여해 주도록 허락했는데, 좌의정 송인명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p>	<p>以慶尙左道飢荒，許貸儲置米七千石、軍作米三千石，從左議政宋寅明請也。</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1월 25일(임진) 2번째기사 제주의 흉년으로 본도의 공마와 진상하는 삭선을 가을까지 반감하도록 명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제주(濟州)의 공마(貢馬)와 진상하는 삭선(朔膳)을 아울러 가을까지 반감하도록 명했는데, 본주(本州)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p>	<p>上引見大臣、備堂，命停濟州貢馬、進上朔膳，并限秋減半，因本州凶荒也</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2월 3일</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정석오(鄭錫五)가 본조(本曹)에 쌀이 고갈되었다는 것으로 혜청(惠廳)의 쌀 1만 석을 청하니,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p>	<p>己亥/上引見大臣，備堂。戶曹判書鄭錫五，以本曹米罄，請得惠廳米一萬石，左議政宋寅明曰：“戶曹一年應用，</p>

<p>(기해) 1번째기사 호조 판서 정석오가 본조의 쌀이 고갈되어 혜청에 쌀을 청하자 송인명이 그를 탄핵하다</p>	<p>“호조의 1년 동안 응용(應用)이 9만 석에 불과한데 세입(稅入)은 10만 석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족한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호조 판서를 중추(重推)해야 합니다.”</p> <p>하자, 임금이 옳게 여겼지만 청한 쌀은 주게 하였다. 이때 용도(用度)가 외람된 것이 많았던 탓으로 경비(經費)가 점점 궁핍하여졌으므로 식자(識者)들이 걱정하였다.</p>	<p>不過九萬石，而稅入爲十萬石，則何至乏絕耶？戶判宜重推”上可之，而所請米則許施。時用度多濫，經費漸窘，識者憂之。</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3월 6일 (임신) 1번째기사 황단의 희생을 살피는 의례를 의논하다</p>	<p>임금이 황단(皇壇)의 희생(犧牲)을 살필 적에 먼저 봉실(奉室)에 배알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부(當否)를 여러 대신들에게 문의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의논하기를,</p> <p>“평상시 신위(神位)가 봉안(奉安)되어 있는 곳에 대해 제사를 지내기 전에 혹 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 전연 배례(拜禮)가 없을 수 없으니, 먼저 배알하는 것도 옳기는 하겠습니다. 또 평상시 신위를 봉안하지 않고 제사지낼 때에 임하여 지방(紙榜)을 설치하고 지낼 경우에는 지방을 봉안하기 전에는 먼저 절하는 의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가(私家)의 제례(祭禮)에 지방을 쓸 경우 먼저 강신(降神)한 뒤 참신(參神)하는 뜻으로 살펴보면 먼저 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직접 희생을 살펴보는 처소가 원래 단문(壇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설혹 신실(神室)이 있는 사직(社稷)이라도 먼저 배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더구나 평상시 신위를 봉안한 일이 없는데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전하께서는 단지 공성(孔聖)께서 임금의 좌위(座位)를 지날 적에는 경건한 얼굴빛을 지니고 조심스럽게 걸으셨다는 예(禮)에 의거하여 중중걸음으로 경의를 표할 뿐이니, 아마도 배례(拜禮)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하께서</p>	<p>壬申/上以皇壇省牲時，先拜奉室當否，問議于諸大臣。領議政金在魯議曰：“凡常時奉安神位之所，未行祭前，或有不得不出入之事，則謂不可昧然無拜禮，而先拜之猶或可也。常時不奉神位，而臨祭設紙榜以行，則不奉紙榜之前，似無先拜之義。以私家禮紙榜則先降神後參神之意觀之，其不當先拜，豈不較然乎？今此親省牲處所，元非壇門之內，則設或如社稷之有神室，似不必先拜，況無常時奉神位之事者乎？臣意則殿下，只當以孔聖過位色勃足躐之禮，趨而致敬而已，恐無拜禮之可言矣。昨年殿下特行望位之禮，出於一時義起，有似仁廟朝後苑中望京伸禮，則又與今日所議不同矣。”上從其議。</p>

	<p>특별히 망위례(望位禮)를 거행하신 것은 한때 의리의 분기에서 나온 것으로 인묘조(仁廟朝)에 후원(後苑)에서 중국의 경사(京師)를 바라보고 예(禮)를 행한 것과 같은 것이니, 또 오늘날 의논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의 그 의논을 따랐다.</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3월 7일 (계유) 1번째기사 대보단의 재전에 사용하는 희생을 대우로 썼지만 뒤에는 송아지를 쓰도록 정하다</p>	<p>임금이 원유관(遠遊官)에 강사포(降紗袍)를 갖추고 보련(步輦)을 타고 영화당(映花堂)에서 출발하여 대보단(大報壇)의 재전(齋殿)에 이르러 직접 희생(犧牲)을 살폈다. 예조 판서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p> <p>“신이 황단 진식도(皇壇陳式圖)를 살펴보니 대체로 명(明)나라의 집례 진설도(集禮陳說圖)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조(皇朝)에서는 독성(犢腥)을 썼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우(大牛)를 썼는데, 예(禮)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송아지는 빈모(牝牡)의 정이 없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귀하게 여겨 하늘에 지내는 제사와 천자에게 지내는 제사에 모두 독성을 쓰는 것입니다. 이번 황단의 제례(祭禮)에도 모두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禮)를 썼으니, 의당 독성을 써야 하는데, 도리어 대우(大牛)를 쓴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이 임시하여 구차스럽게 충당시키는 것은 불결할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기르는 소는 바꾸지 않았다. 뒤에 대신들에게 순문(詢問)하여 독성을 쓰기로 정하였다.</p>	<p>癸酉/上具遠遊冠絳紗袍，乘步輦，出自映花堂，至大報壇齋殿，親省牲。禮曹判書鄭羽良曰：“臣考見皇壇陳式圖，蓋依《大明集禮》陳設圖。而皇朝則用犢腥，我國則用大牛，禮以小爲貴。犢未有牝牡之情，故貴其誠慤而祀天及祭天子，皆用犢腥。今此皇壇祭禮，皆用祭天之禮，則當用犢腥，而反用大牛，恐不可矣。”上以臨時苟充，有不潔之慮，遂不改滌牛。後詢問大臣，定用犢腥。</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3월 15일(신사) 1번째기사 진홍청에서 진보의 습</p>	<p>진홍청(賑恤廳)에서 아뢰기를,</p> <p>“삼남(三南)과 해서(海西) 각 고을의 연환(鉛丸)·화약(火藥)은 전에는 해읍(該邑)에서 값을 지급하고 사서 쓰면서 매달 두 번씩 습방(習放)하는 자료를 지탱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서로 매매함에 있어 폐단이 없지 않았으므로</p>	<p>辛巳/賑恤廳啓言：“三南及海西各邑鉛丸、火藥，在前自該邑給價買用，以支月再習放之資。而私相買賣不無弊端，故曾自本廳作貢物造送，一則取剩補賑，一則以備陰雨。而其餘各鎮堡丸</p>

<p>방을 위한 환약의 수급을 아뢰다</p>	<p>로 일찍이 본청(本廳)에서 공물(貢物)을 받아서 만들어 보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남는 것을 취하여 진자(賑資)에 보태고, 또 한편으로는 뜻밖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각 진보(鎭堡)에서는 환약(丸藥)을 미처 변통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륙(水陸)의 조련(操鍊)을 만나 대대적인 시사(試射)가 있을 경우에는 진장(鎭將)이 간신히 구하여 사와서 임시하여 취관(取辦)하게 되므로 일이 매우 구간(苟簡)합니다. 청컨대, 본청에서 진보의 환약가(丸藥價)로 방군포(防軍布)10957) 를 매달 3필(疋)씩 가져다 쓰고 그 대신 경공(京貢)으로 만들어 보내는 것을 한결같이 삼남(三南)과 해서(海西)의 예와 같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택(允)하였다.</p>	<p>藥未及變通，若值水陸操大試射，則鎭將艱辛求質，臨時取辦，事甚苟簡。請自本廳，取用鎭堡藥丸價，防軍布每朔三疋，而其代自京貢造送，一如三南海西之例。”上允之。</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윤3월 11일(정미) 3번째기사 봉상시 첨정 윤동하의 아뢰므로 제기의 보수와 지급을 명하다</p>	<p>봉상시 첨정 윤동하(尹東夏)가 아뢰기를,</p> <p>“제기(祭器)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이 많은데 피통(皮筒)은 단지 38대(駄)뿐이기 때문에 제향(祭享)이 자주 겹칠 적에는 혹 유룡(柎籠)을 빌려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신칙하여 보수(補修)하여 지급해 주게 하였다.</p>	<p>奉常僉正尹東夏奏言：“祭器多破傷，而皮筒只三十八駄，故祭享稠疊時，或借柎籠用之矣。”上命申飭該曹，修補以給</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윤3월 13일(기유) 2번째기사 양남의 군작미를 재상으로 감면시킨 금위·어영의 군포 대신 획급하게 하다</p>	<p>양남(兩南)의 군작미(軍作米) 각 2천 석(石)을 재상(災傷)으로 감면시킨 금위(禁衛)·어영(御營)의 군포(軍布) 대신 획급(劃給)하게 했는데, 묘당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p>	<p>以兩南軍作米各二千石劃給禁衛、御營軍布災減之代，從廟堂之請也。</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윤3월 27일(계해) 3번째기사 전 목사 유징귀의 장청으로 호남 바닷가 고을의 저치미 2백 석을 제주에 획급하다</p>	<p>호남(湖南) 바닷가 고을의 저치미(儲置米) 2백 석(石)을 제주(濟州)에 획급하였는데, 전 목사(牧使) 유징귀(柳徵龜)의 장청(狀請)을 따른 것이었다.</p>	<p>以湖南沿海邑儲置米二百石，劃給濟州，因前牧使柳徵龜狀請也</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4월 11일(병자) 3번째기사 주장을 행하고, 검토관 조명정이 각 고을의 사단과 여단의 정비와 이이의 향약을 아뢰다</p>	<p>임금이 주장을 행하였다. 검토관 조명정(趙明鼎)이 말하기를,  “사직(社稷)은 국가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므로, 각 고을에 사단(社壇)과 여단(厲壇)을 설치한 뜻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걸치레가 되어 단(壇)의 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신 술과 불품없는 제물로 지내고 있으니, 자못 정성을 다하여 신을 강립하게 한다는 본의가 아닙니다. 마땅히 각별하게 신칙해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선정신 이이(李珣)의 문집(文集) 가운데에서 향약(鄉約)의 조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효(忠孝)와 예의(禮義)의 법에 이르러서는 가르침을 설행하여 계도함으로써 임금을 친애하고 어른을 섬겨야 하는 의리를 알게 해야 합니다. 향천(鄉薦)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본디 구례(舊例)에 있는 것입니다만, 또한 문구(文具)에 관계되니, 청컨대 제도(諸道)의 도신과 수령들에게 신칙하여 훌륭한 재능과 뛰어난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어 아뢰게 하여 실효가 있게 해야 합니다.”</p>	<p>上行畫講。檢討官趙明鼎曰：“社稷，國之所重，各邑之設置社，厲兩壇，其意不偶。而今成文具，壇墁荒蕪，牲酒瘠酸，殊非致格之本意。宜各別申飭。”又曰：“臣見先正臣李珣文集中，有鄉約條，今難猝行。而至於忠孝禮義之方，則設教而導之，俾知親上事長之義可也。鄉薦一事，固有舊例，而亦涉文具，請申飭諸道臣與守令，其有茂才卓行者，則使之採訪以聞，俾有實效。”上嘉納，特賜表裏一襲以獎之。</p>

	<p>하니, 임금의 가상이 여겨 받아들이고 특별히 표리(表裏)10980) 1습(襲)을 하사하여 권장하였다.</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4월 13일(무인) 2번째기사 석강에서 사치의 폐단에 대하여 논하다</p>	<p>임금이 석강에 나아갔다. 사치(奢侈)의 폐단에 대해 논하였는데,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전하께서 복어(服御)하는 물품이 혹 검소에 지나친 것이 있었습디만, 궁중의 용도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습디다. 이제는 이미 제도(制度)를 엄히 세웠으니 거의 효험이 있을 것입디다. 그러나 전후 혼례(婚禮) 때의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보면 대체로 분의에 지나친 일이 많은 데다가 음식(飲食)에 이르러서도 한 번 허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걸핏하면 수만 냥에 이른다고 하니, 이 또한 절약하지 않을 수 없습디다.”</p> <p>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p>	<p>上御夕講。論奢侈之弊，領議政金在魯曰：“殿下服御之物，或有過於儉者，而宮中用度則不然。今既嚴立制度，則庶可有效。而第以前後婚禮時言之，率多過濫之節，至於飲食一番所費，動至數萬兩云，此亦不可不撙節矣。”上嘉納。</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4월 16일(신사) 2번째기사 헌부에서 전계를 아뢰고, 주택 규모의 제한, 조적곡의 검칙, 관동의 기근을 아뢰다</p>	<p>헌부【장령 김계백(金啓白)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p> <p>“주택(住宅)의 대소(大小)에 대해서는 선왕 때부터 정해 놓은 법제가 있는데 법망이 점점 해이해져 사치스러운 것이 법제를 넘고 있으니, 청컨대 경조(京兆)10983) 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금단시키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한결같이 정해진 법을 따르게 되면 분란이 이는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이 뒤로 신척하게 하라.”</p>	<p>○憲府【掌令金啓白。】申前啓，不允。又啓言：“第宅大小，自有先王定制，而法網漸弛，侈濫踰制，請令京兆查出禁斷。”答曰：“一從定制，不無紛紜之弊，其令此後申飭。”又啓言：“各邑糶糴，平時救民飢，臨亂作軍餉而守令瞞報上司，傾庫盡分者多，請令道臣，反庫論罪”答曰：“間或抽牲點視，違法者狀聞。”又啓言：“關東飢饉，爲八路最，飢民流入都下，只望就哺，令賑廳抄出救濟。”答曰：“頃已申飭，隨給糧資，俾還故土。”</p>

	<p>하였다. 또 아뢰기를,</p> <p>“각 고을의 조적곡(糶糶穀)은 평시에는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하고, 전란에 임하여서는 군향(軍餉)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수령들이 상사(上司)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창고를 모두 털어서 나누어 준 경우가 많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반고(反庫)10984) 하여 논죄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간혹 추생(抽姓)해서 점검하여 본 다음 법을 어긴 경우에는 장문(狀聞)하게 하겠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p> <p>“관동(關東)의 기근이 팔도에서 가장 심하여 굶주린 백성들이 도성(都城)으로 흘러 들어와서 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진청(賑聽)으로 하여금 초출(抄出)하여 구제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지난번 이미 신칙하여 들어오는 대로 양식을 주어 고향으로 양식을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p> <p>하였다.</p>	
영조 63권, 22년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대신에게 일기청(日記廳)을 구관	乙卯/上引見大臣、備堂, 命以大臣句

<p>(1746 병인 / 청 건륭 (乾隆) 11년) 5월 20 일(을묘) 1번째기사 갑자년 일기가 모두 불에 타 일기청을 구 관하게 하고, 봉당의 폐단에 대하여 논하다</p>	<p>(句管)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갑자년(11003) 일기(日記)가 모두 불탔으므로, 이 때에 이르러 청(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하여 찬집(纂輯)하게 했는데, 사국(史局)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이어 대내(大內)의 일기(日記)를 반포하였는데, 일기청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아뢰기를,</p> <p>“선묘(宣廟) 임진년(11004) 부터 경묘(景廟) 신축년(11005) 까지의 일기가 모두 1천 7백 96권인데, 경인년(11006) 일기 1권, 기해년(11007) 일기 2권은 진연(進宴)에 관한 일을 고열(考閱)하느라 미처 옮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디만, 이미 불탄 것이 1천 7백 93권입니다. 인묘(仁廟) 계해년(11008) 이전의 일은 오래되어서 증험하기가 어려우니, 계해년 반정(反正)부터 시작하여 찬집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가(私家)에서 저보(邸報)(11009) 를 등서(謄書)해 둔 것이 있으면 듣는 대로 가져오게 하고 시골에 있고 권질(卷秩)이 많은 경우에는 또한 역참(驛站)을 통하여 실어 오게 하여 참고할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하략)</p>	<p>管日記廳。先是，甲子日記盡燬，至是設廳，差出堂、郎纂輯，以重史局之意，有是命。仍大內日記頒，日記廳堂上洪啓禧奏曰：“自 宣廟壬辰至景廟辛丑日記，凡一千七百九十六卷，而庚寅日記一卷，己亥日記二卷，因進宴事考閱，未及移來，故不入灰燼，其已燼者，爲一千七百九十三卷。而仁廟癸亥以前，事遠難徵，始自癸亥反正纂輯。而私家之謄置邸報者，隨聞取來，在鄉而卷秩多者，亦令驛遞輸致，以爲參考之地宜矣。”上許之。(하략)</p>
<p>영조 63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 (乾隆) 11년) 6월 2일 (병인) 2번째기사 선정전에 나아가니 안질 때문에 약방에서 입진하고, 시의 위충지 두 편을 지어 보이다</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했는데, 임금에게 안질(眼疾)이 있기 때문이었다. (후략)</p>	<p>上御宣政殿。藥房入診，以上有眼患也。</p>
<p>영조 63권, 22년</p>	<p>제주(濟州)에 보리 씨 2천 석(石)을 지급하고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반을 감</p>	<p>命給濟州種牟二千石，減奴婢身貢之</p>

<p>(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6월 23일(정해) 2번째기사 감진 어사 한억증의 청으로 제주에 보리 씨 2천 석의 지급과 노비 신공의 반을 감하다</p>	<p>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감진 어사(監賑御史) 한억증(韓億增)의 청을 따른 것이다.</p>	<p>半, 從監賑御史韓億增請也。</p>
<p>영조 64권, 22년(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7월 11일(을사) 1번째기사 하교하기를 서계문 중의 ‘불종중’을 ‘불음주’로 고치게 하다</p>	<p>하교하기를, “서계문(誓戒文) 가운데 ‘불종주(不縱酒)’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즐겨 마시는 자야 술을 마시고서 방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뒤에는 ‘종’ 자를 ‘음(飲)’자로 고치게 하라.”</p> <p>하였다.</p>	<p>乙巳/教曰: “誓戒文中有不縱酒之文, 而嗜飲者能飲而不縱乎? 此後縱字, 改以飲字。”</p>
<p>영조 64권, 22년(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11월 4일(을미) 4번째기사 선혜청 당상은 병조에 무명을 꾸기를 청하고, 병조 판서는 선혜청에 콩을 꾸기를 청하다</p>	<p>선혜청 당상 정우량(鄭羽良)이 비축된 무명이 바닥이 나서 공가(貢價)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조의 무명 1백 동(同)을 꾸어 줄 것을 청하였고, 병조 판서 원경하(元景夏)가 금위영의 말먹이 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혜청의 콩 5백 석을 꾸어 줄것을 청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p>	<p>惠廳堂上鄭羽良, 以木儲乏盡, 貢價難給, 請貸兵曹木百同, 兵曹判書元景夏, 以禁營馬太不足, 請貸惠廳太五百石, 上許之。</p>
<p>영조 64권, 22년(1746 병인 / 청 건륭(乾隆) 11년) 11월 10</p>	<p>병조 판서 원경하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며칠 전에 군마의 먹이 콩을 선혜청에서 빌려 쓸 것을 진달하여 윤허를 받</p>	<p>兵曹判書元景夏白上曰: “頃以軍兵馬太貸用惠廳事, 陳達蒙允矣, 考前例曾無是事。 不可自臣創開。 戶曹之貸</p>

<p>일(신축) 5번째기사 병조 판서 원경하가 아뢰어 콩을 선혜청 대신에 호조에서 빌릴 것을 청하다</p>	<p>왔습니다만, 전례를 상고하여 보니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이러 한 일을 창시할 수는 없습니다. 호조가 금위영에서 꾸어간 것이 그 수량이 매 우 많으니, 이번에는 호조의 세태(稅太) 5백 석을 빌려 쓰도록 하는 것이 좋 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p>	<p>去於禁營者，其數夥然，今以戶曹稅太 五百石貸用似好。”上允之。</p>
<p>영조 64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 (乾隆) 11년) 12월 2 일(계해) 1번째기사 봉상시에서, 동고의 얼 음을 빙고의 주관에서 당초의 정식대로 봉상 시로 옮기기를 청하다</p>	<p>봉상시에서 아뢰기를, “동고(東庫)에 저장한 얼음은 오로지 제사에만 쓰는 것이므로 두께와 길이, 그리고 너비에 모두 규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시의 낭청이 이 일을 전관 하여 빙고관(氷庫官)과 함께 직접 검사를 하며, 한강 가운데에서 얼음을 규격 에 맞게 떠다가 빙고에 들여 놓았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고 또 아주 정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갑자기 본 빙고에서 주관하면서 하리들의 농간으로 인하여 규격에도 맞지 않는 얼음으로 구차히 빙고만 채우고 있습니 다. 청컨대 당초의 정식대로 본시에서 전관하여 거행토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癸亥/奉常寺啓言：“東庫藏冰，專爲祭 用，厚薄、長、廣，皆有尺量。在前 本寺郎廳，專營其事，與水庫官，眼同 看檢，伐取於大江之中，依其尺量納 庫，故水不消澌，且甚淨潔。近年忽 自本庫主管，下吏弄奸，不準尺量，苟 充入庫。請更依當初定式，使本寺專 管舉行。”上可之。</p>
<p>영조 64권, 22년 (1746 병인 / 청 건륭 (乾隆) 11년) 12월 21 일(임오) 5번째기사 호조 판서 김시형이 본조의 미곡이 탕갈되 어 선혜청의 미곡을 얻어 쓰기를 청하다</p>	<p>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아뢰기를, “본조의 미곡이 탕갈되어 반록(頒祿)·방료(放料) 및 추가로 쓴 공가(貢價)를 이어달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선혜청의 미곡 3만 석을 얻어 쓰도록 하소서.”</p> <p>하니, 2만 석을 주라고 명하였다.</p>	<p>○戶曹判書金始炯奏曰：“本曹米穀告 罄，頒祿、放料及加用貢價，無以繼 下。請得惠廳米三萬石。”命給二萬 石。</p>
<p>영조 65권, 23년</p>	<p>(전략)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말하기를,</p>	<p>(전략)。戶曹判書金始炯曰：“信使當</p>

<p>(1747 정묘 / 청 건륭 (乾隆) 12년) 1월 11일(신축) 1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 《주례 (周禮)》를 강하다</p>	<p>“신사(信使)가 앞으로 닥칠 터인데 둘러보내야 할 인삼(人蔘)이 2백 60근(斤)이나 되도록 많은 데 이르렀습니다. 작년에 본조에서 엄출한 은(銀)을 제외하면 다방면으로 환무(換貿)해야 하는데, 지금 갖추지 못한 것도 1백 40여 근이나 됩니다. 지금 만약 이 숫자에 준하여 바꾸어 취하게 한다면, 마땅히 3만(萬)의 은자(銀子)를 준비해야 하니, 형세가 참으로 몹시 민망스럽습니다. 강계(江界)에서 인삼을 캘 때에 가서 또 사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듣건대 강변(江邊)에 흉년을 당한 백성들이 곡식을 원하고 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서(關西)의 구세미(舊稅米) 1만 석(石)을 한정하여 가져다 활용할 것을 청하였었는데, 대신이 1만 석은 너무 많다고 하여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p> <p>하니, 7천 석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p>	<p>前，而所入人蔘至二百六十斤之多。昨年除出曹銀，多般換貿，而卽今未備亦爲一百四十餘斤矣。今若準此數貿取，則當備數三萬銀子，形勢誠渴悶。欲趁江界採蔘之時又貿來，而聞江邊被歉民，願穀不願銀。關西舊稅米限萬石請取用，大臣以萬石太多難之。”命劃給七千石。</p>
<p>영조 65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 (乾隆) 12년) 2월 5일 (을축) 2번째기사 영풍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의 편부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p>	<p>영풍(永豐)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의 편부(便否)에 대해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영풍은 바로 안변(安邊)의 서쪽 경계로 강원·함경·평안·황해 네 도가 서로 모이는 곳인데, 지세가 또 매우 험하여 해마다 기근이 들었다. 골짜기 속에는 도적이 많아서 적단(賊團)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이곳 저곳에서 출몰(出沒)하였다. 김한철(金漢喆)은 흙곡읍(歙谷邑)의 소재지를 영풍으로 옮겨 제어[控御]하는 곳으로 삼도록 건의하였고, 진 함경 감사 이수항(李壽沆)은 덕원읍(德源邑)의 소재지를 이곳에다 옮기려고 하였으며, 이종성(李宗城)은 첨사(僉使)를 두고자 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하문하자, 우의정 민응수(閔應洙)가 말하기를,</p> <p>“서북(西北) 지방에 옛날에는 도적이 드물었지만, 근래에는 도적의 무리가 서북 지방으로 많이 넘어 오니, 영풍은 실제로 요충(要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鎭)을 설치하고 읍(邑)을 두자는 의논이 있는데, 이것은 굶주린 백성들이 한때에 서로 불러모아 무슨 단(團)이라고 불리워진 데 불과하며, 양산박</p>	<p>○命議永豐置鎭便否。永豐，乃安邊西界，江原、咸鏡、平安、黃海四道之交會，而地又深險，連歲饑饉。峽中多盜，號稱賊團，所在出沒。金漢喆建議欲移歙谷邑治于永豐，以爲控御之所，前咸鏡監司李壽沆欲移德源邑治於此，李宗城欲置僉使。上問于大臣，右議政閔應洙曰：“西北古則賊稀，近則賊徒多踰西北，永豐實爲要衝。故有設鎭置邑之議，而此不過飢民一時嘯聚，號稱某團，而非如梁山泊之類。長吏撫之則爲赤子，否則爲龍蛇，不必紛紛爲此也。”議竟不行。</p>

	<p>(梁山泊)의 유(類)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리(長吏)가 그들을 무휼(撫恤)하면 적자(赤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사(龍蛇)가 될 것이니, 시끄럽게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니, 의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p>	
<p>영조 65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2월 6일 (병인) 1번째기사 황해 감사 이천보가 인근 고을의 상정미로 성역(城役)을 돕게 할 것을 청하다</p>	<p>황해 감사 이천보(李天輔)가 치계(馳啓)하여 가까운 고을의 상정미(詳定米)11183) 3천 석을 얻어다 성역(城役)을 돕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비국에서 1천 석을 지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丙寅/黃海監司李天輔馳啓，請得近邑詳定米三千石，以助城役，備局請給一千石，上許之。</p>
<p>영조 65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2월 27일(정해) 1번째기사 영희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충훈부에 임하여 여러 공신을 선소하다</p>	<p>임금이 친히 영희전(永禧殿)에서 제사를 지내고 두루 충훈부(忠勳府)에 임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광묘(光廟)와 원종(元宗)11211) 이 일찍이 정사(靖社)·호성(扈聖)의 훈록(勳錄)에 참여하였고, &lt;초상화가&gt; 충훈부에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감회가 일어나 이런 거조가 있었다. 기공각(紀功閣)에 나아가 여러 공신(功臣)을 선소(宣召)하였는데, 분무 공신(奮武功臣)으로 들어와서 참석한 이로는 단지 조현명(趙顯命)·박찬신(朴纘新)·김중만(金重萬) 세 사람뿐이었다. 임금이 선온(宣醞)11212) 하자, 조현명이 말하기를,</p> <p>“성종(成宗)과 중종(中宗) 때에 본부(本府)에 친히 들르셨는데, 오늘까지 합하면 세 차례가 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丁亥/上親祀永禧殿，歷臨忠勳府，蓋光廟、元宗曾參靖社、扈聖勳藏在勳府，故上興感而有是舉。御紀功閣，宣名諸功臣，奮武功臣入參者，只有趙顯命、朴纘新、金重萬三人。上宣醞，顯命曰：“成宗、中宗時親臨本府，而合今日爲三矣。”上曰：“偶然相合，愴懷一倍。”顯命曰：“太祖以後，二十一勳盟，列祖以此功臣，開創於前，流施至今，殿下宜思列祖艱大之業，夙夜奮勵，以修中興之業。”上曰：“予雖欲中興，誰可與佐理者？”顯命曰：“殿下終未有捫足之壯氣？”上曰：“時</p>



	<p>“우연히 서로 합치되었는데 서글픈 회포가 갑절이나 더하다.”</p> <p>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p> <p>“태조(太祖) 이후로 21차례의 훈맹(勳盟)이 있었는데, 열조(列祖)에서는 이런 공신 때문에 &lt;왕조를&gt; 처음으로 열어 지금까지 전해지며 시행하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열조의 어렵고 큰 기업(基業)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분발하고 힘쓰셔서 중흥(中興)의 업을 정비하심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비록 중흥시키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도와 다스리겠는가?”</p> <p>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p> <p>“전하께서는 끝내 발을 더듬는 썩썩한 기상(11213) 이 없으십니까?”</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시상(時象)으로 말할 만한 것이 없는가?”</p> <p>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p> <p>“어제 전관(銓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신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철보(李喆輔)는 이미 삼사(三司)의 배척이 있었으므로, 의리상 공무를 집행할 수</p>	<p>象無可言者?” 顯命曰：“昨日銓官處分，臣以爲過矣。李喆輔既有三司之斥，義不可行公。至若金若魯雖有所執，殿下不過例飭，實無督出之事，遽命外補。如若魯者恐殿下難得，臣實爲朝廷惜之。”</p>
--	---	---

	<p>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약로(金若魯)에 이르러서는 비록 고집한 바가 있었다 하나, 전하께서 으레 경계하는 데 불과하였고, 실제로 나가기를 독촉한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김약로 같은 자는 아마도 전하께서 얻기 어려울 듯하므로 신은 실로 조정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p> <p>하였다.</p>	
<p>영조 65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 (乾隆) 12년) 3월 10 일(경자)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니 참찬 관 홍상한이 관서 지 방의 기근 진휼에 관 해 아뢰다</p>	<p>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참찬관 홍상한(洪象漢)이 말하기를,</p> <p>“대신이 송언(送言)하여 관서 어사(關西御史)가 상소한 일을 신으로 하여금 등대(登對)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조정에서 양서(兩西)11219) 를 대우함이 다른 도와 달라서 어사를 보내어 진휼 상황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가 곡식을 청한 것은 몇몇하다. 그런데 대신이 지난(持難)하고 있으니, 그것이 가한지 모르겠다.”</p> <p>하였다. 홍상한이 말하기를,</p> <p>“앞서 이미 7만 곡(斛)을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 만약 더 나누어 준다면 일곱 고을 백성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p>	<p>上御晝講。 講訖， 參贊官洪象漢曰：“大臣送言， 以關西御史疏事， 使臣登對奏達矣。” 上曰：“朝家待兩西異他， 送御史監賑， 則其請穀固也。 大臣之持難， 不知其可也。” 象漢曰：“前既劃給七萬斛， 今若加劃， 則可活七邑民命。” 上允之。</p> <p>【史臣曰：太宗朝嶺南飢， 上命給三十萬石卒賑， 而道臣不爲請益， 太宗教曰，“去時湖西荐飢， 給穀三十萬石， 僅能卒賑， 而民猶有飢者。 嶺南大於湖西， 而道臣不爲加請， 是必民隱之不達也’， 遂罪道臣。 王者愛民， 本如是也， 大臣獨不聞耶?】</p>

	<p>사신은 말한다. “태종조(太宗朝)에 영남에 기근(饑饉)이 들었으므로 임금의 30만 석(石)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진휼을 마치도록 하였었는데, 도신(道臣)이 더 보태어 주기를 청하지 않으니 태종이 하교하기를, ‘지난번 호서(湖西)에 거둬 기근이 들어 곡식 30만 석을 지급해서 겨우 진휼을 마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굶주리는 자가 있었다. 영남은 호서보다 지역이 큰데도 도신이 더 보태어 주기를 청하지 않으니, 이는 백성들의 고통을 두루 알지 못한 것이다.’ 하고, 도신을 죄주었다. 제왕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본래 이와 같이 하였는데, 대신만 오로지 그것을 듣지 못해서인가?”</p>	
<p>영조 65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4월 5일 (갑자) 1번째기사 제향에 난도로 희생을 자르고 축사가 모혈을 취하기를 거행할 것을 하교하다</p>	<p>임금이 예조 판서 권적(權績)과 예조 참판 김상로(金尙魯)를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p> <p>“모든 제향(祭享)에 난도(鑿刀)로 희생(犧牲)을 자르고 축사(祝史)가 모혈(毛血)을 취(取)하는데, 이 예(禮)가 정말 《오례의(五禮儀)》에 기재되어 있는가?”</p> <p>하자, 김상로가 말하기를,</p> <p>“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난도는 우리 조정에서 당초에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폐지하였었다. 제향에는 희생이 중대하니 술에다 채우고 찬만(饌幔)에 나아가 갑(匣)에다 채운다. 이미 옛날의 예를 회복시켰으니 사관(祀官)이 재인(宰人)11233)</p>	<p>甲子/上召見禮曹判書權績、參判金尙魯，教曰：“凡祭享，以鑿刀割牲，祝史取毛血，此禮果載《五禮儀》否？”尙魯曰：“有之矣。”上曰：“鑿刀，我朝初非不用，而中間廢之矣。祭享犧牲爲重，而實于鼎，詣饌幔，實于匣矣。既復舊禮，祀官率宰人，以鑿刀割牲，祝史各以盤取毛血，自今番大享，依禮文以行。”</p>

	<p>을 거느리고 난도로 희생을 베게 하며, 축사는 각기 반(盤)으로 모혈을 취하기를 이번 대향(大亨) 때부터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조 65권, 23년(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4월 25일(갑신) 1번째기사 주강을 행하다. 병이 난 좌참찬 박필주에게 어의와 식물을 보내다</p>	<p>주강을 행하였다. 어의(御醫)를 보내어 좌참찬 박필주(朴弼周)의 병을 간호하게 하고, 호조로 하여금 식물(食物)로 돌보아 돕도록 하였다.</p>	<p>甲申/行晝講。遣御醫，看左參贊朴弼周病，亦令戶曹，食物顧助。</p>
<p>영조 65권, 23년(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6월 5일(갑자)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구 관백의 예단과 희생에 쓸 소의 사육에 관해 말하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구 관백(關白)은 바로 지나간 해에 위문한 관백이다. 경자년(11271) 을 돌이켜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된다. 물품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빙문(聘問)하여 나의 뜻을 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바다를 건너간 역관(譯官)이 오기를 기다리는가? 비국으로 하여금 즉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전생서 제조(典牲署提調) 권적(權績)이 말하기를, “희생(犧牲)으로 쓸 소가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이 요즈음에 더욱 심하여 30여 두(頭)에서 남은 것이 단지 한 마리뿐인데, 그것도 한창 앓고 있으며 죽으려 한다고 합니다. 추향(秋享)이 수십 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호서(湖西)의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도록 한 소 10여 두를 올려 보내게 하고, 공인(貢人)들에게 나누어 주어 잘 기르도록 해서 전염되는 데 이르는 근심이 없게 하는</p>	<p>○甲子/藥房入診。上曰：“舊關白，卽昔年致問之關白也。追惟庚子，感動于心。勿論物之多少，當聘問以表予意，何待渡海譯官之來？令備局，卽爲稟處？”典牲提調權績曰：“犧牛疫斃，近益特甚，三十頭餘，所餘只一，而亦方痛欲死云。秋享只隔數旬，湖西各邑分養牛十餘頭，使之上送，分給貢人，俾善畜養，無至傳染之患宜矣。”上曰：“犧牛之畜，養於典牲署，卽《周禮》繫于門之義也，不可散處。分給貢人，使之救療，雖斃，勿爲代徵于貢人。”</p>

	<p>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희생에 쓸 소를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는 것은 바로 《주례(周禮)》의 〈희생에 쓸 소를〉 국문(國門)에다 매어 두고 기른다는 뜻이니, 흠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 공인(貢人)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구료(救療)하게 하되, 비록 죽더라도 공인에게 대신 징수하지 말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65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6월 15일(갑술) 1번째기사 영남 어사 한광조를 인건하여 지방관의 비위와 영덕 옥사에 관해 묻다</p>	<p>임금이 영남 어사 한광조(韓光肇)를 불러 보았는데, 한광조가 말하기를,</p> <p>“방군포(防軍布)11289) 는 바로 대가를 지급하는 물건이며 곤수(關帥)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수사(左水使) 신만(申漫)이 약간만 대가로 지급하게 하고, 전부를 가져다 썼습니다. 쌀 50석(石)과 판재(板材) 5구(具)를 배에 실어 올려 보냈는데, 기타 왜국(倭國)의 물화(物貨)로 선물[善事]할 만한 것이 이루 셀 수가 없었습니다. 전 경주 부윤(慶州府尹) 정홍제(鄭弘濟)는 진정(賑政)을 아주 잘하였으나, 9천여 석을 요리(料理)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많으며, 또 범수(犯手)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좌병사 유동무(柳東茂)의 불법(不法)은 문서에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 군수(興海郡守) 김덕후(金德厚)는 그의 모든 짐바리를 모두 소[牛]를 사서 보냈는데, 그 수효가 94두(頭)나 되었으나, 또 서로 결탁한 영비(營裨)11290) 가 거짓으로 칭찬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甲戌/上召見嶺南御史韓光肇，光肇曰：“防軍布卽給代之物，而非關帥所可擅用者。左水使申漫，略干給代，盡數取用。米五十石、板材五具，船載上送，其他倭國物貨可以善事者，不可勝計。慶州前府尹鄭弘濟，賑政頗善，而料理九千餘石，民多怨之，又有犯手。前左兵使柳東茂之不法，具在文書。興海郡守金德厚，凡其馱載，皆買牛以送，其數爲九十四頭，且以符同營裨，虛譽頗多矣。”上曰：“眞阿大夫也。善治者誰也？”光肇曰：“泗川縣監李思順，地處雖微，頗善治矣。”上曰：“盈德獄事，出鄉戰耶？”光肇曰：“盈德故家、大族，皆南人，所謂</p>

	<p>“참으로 아 대부(阿大夫)11291) 이다. 잘 다스린 사람은 누구인가?”</p> <p>하자, 한광조가 말하기를,</p> <p>“사천 현감(泗川縣監) 이사순(李思順)은 지처(地處)가 비록 한미하기는 하나,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영덕(盈德)의 옥사(獄事)는 향전(鄉戰)에서 나왔는가?”</p> <p>하자, 한광조가 말하기를,</p> <p>“영덕의 고가(故家)와 대족(大族)은 모두 남인(南人)인데, 이른바 신향(新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서인(西人)이 되었다고 일컫는 자입니다. 요즘에는 서인이 학궁(學宮)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구향(舊鄉)과 서로 경알(傾軋)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자(朱子)의 화상(畫像)이 비가 스며든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에, 신향의 무리가 간혹 그 죄를 성토했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화(禍)를 전가(轉嫁)시킬 계획을 꾸며 그 화상을 감추고, 아울러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의 화상도 감추어 버리고는 남인이 훔쳐 갔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인하여 모모(某某) 7인의 성명을 지적하여 본현(本縣)에 정소(呈訴)하였는데, 본현에서는 진영(鎭營)에 통보하여 여러 해 동안 추핵(推覈)하면서 형장(刑杖)이 혹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원통하다고 일컬었습니다. 신이 내려간 뒤에 그 사실을 추핵하여 알아내었으나, 화상이 간 곳은 끝까지 바로 공</p>	<p>新鄉，則自稱爲西人者也。近來則西人用事於學宮，與舊鄉，自相傾軋矣。朱子畫像，因雨漫漶，故新鄉輩，或慮聲罪，遂生嫁禍之計，匿其畫像，竝匿先正臣宋時烈畫像倡言以南人偷竊。因指摘某某七人姓名，呈訴本縣，本縣通于鎭營，累年推覈，刑杖酷毒，人稱其冤。臣下去之後，推得其實，然畫像去處，終不直供，以爲埋置案山，因以沙汰云，安知不投諸水火也?” 上曰：“頃年館學儒生不知如此，陳疏矣。”</p>
--	--	---

	<p>초하지 않고, 안산(案山)에 묻어 두었는데 사태(沙汰)가 났다고 하니, 물과 불에 던져 버리지 않았음 어떻게 알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몇 해 전에 관학 유생(館學儒生)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소하였었다.”</p> <p>하였다.</p>	
<p>영조 65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6월 23일(임오) 1번째기사 헌부에서 전계를 아뢰다. 명릉의 기신에 방탕한 짓을 한 관리를 추책하게 하다</p>	<p>헌부 【지평 홍서(洪曙)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p> <p>“이달 초7일은 바로 명릉(明陵)11295)의 기신(忌辰)으로 재계(齋戒)해야 하는 날입니다. 성상께서 친히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셨으니 신민(臣民)들의 슬퍼하고 사모함이 응당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혜민서의 훈도(訓導)와 호조의 산원(算員)의 무리 6, 7인이 대궐 아래 아주 가까운 곳에 모여서 많은 창녀(娼女)를 끼고 종일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술과 고기가 낭자하였습니다. 신이 대각(臺閣)에 들어간 뒤에 그 중의 한두 사람을 잡아다 추문(推問)하였더니, 변명함이 없이 지만(遲晚)하였는데, 모였던 여러 사람들을 일일이 지명(指名)하여 현고(現告)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사모와 각대를 착용하는 낮은 벼슬아치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과 다르니, 그 죄범(罪犯)을 논하면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청컨대 그날 모였던 여러 사람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중히 처벌하여 정배(定配)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壬午/憲府【持平洪曙。】申前啓，不允。又啓：“今月初七日，乃明陵忌辰齋戒也。聖上親傳香祝，臣民愴慕當如何？而伊日惠民署訓導、戶曹算員輩六七人，聚會闕下至近之地，多挾娼女，終日琴歌酒肉狼藉。臣入臺後，其中一二人，捉來推問，無辭遲晚，而聚會諸人，一一指名現告。渠等俱是帽帶之人，則與無知愚氓異，論其罪犯，萬萬絕痛。請伊日聚會諸人，令該曹，嚴刑定配。”答曰：“末端事，于今臺閣寥寥之日，其得臺體。渠輩雖無識，若誦蒼梧山色之句，豈忍爲此？令該曹，其中首倡人邊遠定配，其餘遠地定配。”</p>

	<p>“말단의 일은 요사이 대각에서 적막한 때에 대간의 체모를 얻었다고 하겠다. 그 무리가 비록 식견이 없다 하나, 만약 창오(蒼梧)11296 산색(山色)의 글귀를 암송한다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 가운데 앞장선 사람은 먼 변방으로 정배하고 그 나머지는 먼 곳에다 정배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66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9월 20일(정미) 3번째기사 좌의정 조현명이 흉작 해일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진휼에 관한 차자를 올리다</p>	<p>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p> <p>“금년에 국내의 농사 형편은 대개 흉년이 들었고, 연해(沿海)의 고을은 해일이 몹시 참혹하게 일어서 바닷물이 넘쳐서 적지(赤地)가 되었습니다. 만약 홍수·가뭄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남은 이삭이라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한 톨의 낱알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는데 그들로 하여금 속미(粟米)·마사(麻絲)를 내게 한다면 장차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아! 고흥(膏血)은 오히려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흥도 또한 다하였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p> <p>신은 생각하건대, 금년 비총(比摠)11367) 이외에 따로 해일에 의한 재앙의 명목으로 지급하되, 그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은 고을의 정공(正供) 및 신미포(身米布)를 백성에게 내게 하는 것을 특별히 건감시켜 주어 약간이라도 안보(安保)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상평법(常平法)은 곡가(穀價)를 공평하게 하여 백성이 먹는 것을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진청(京賑廳)의 곡물을 보건대, 거의 7, 8만 석에 이르는데,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나가는 것이 없어서 대체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3만</p>	<p>左議政趙顯命上筭, 略曰:</p> <p>今年國內農形, 大抵失稔, 沿海邑海溢孔慘, 鹹水所及, 一色皆赭。非若水、旱, 猶有餘莖滯穗, 可以得食, 民無一粒之收, 而使之出粟米、麻絲, 則將安所取辦哉? 嗚呼! 膏血猶可浚, 今膏血且盡矣, 寧不哀哉? 臣謂今年比摠外別給海溢災名, 其被災特甚里面正供及身米布出於民者, 特許蠲減, 爲一半分安保之地。常平之法, 所以平穀價而裕民食也。見今京賑廳穀物, 幾至七八萬石, 有入無出, 率歸陳腐。臣謂限三萬石劃出, 二萬石給忠淸道, 一萬石給京畿道, 使之趁未凍, 具舟楫載運分送沿邑, 限春賑減價發賣, 以救民急, 其本錢待秋作米, 還積本廳, 以爲</p>



석을 한도로 획출(劃出)하여 2만 석은 충청도에 지급하고, 1만 석은 경기도에 지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추위에 얼지 않게 해야 하며, 배를 마련해 실어 날라 연읍(沿邑)에 나누어 보내어 봄에 진휼(賑恤)할 때까지 한정해서 값을 감하여 발매하게 해서 백성의 위급함을 구제하고, 그 본전(本錢)은 가을 쌀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본청에 다시 쌓아 두어 훗날 불시에 쓸 것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유사(有司)가 진휼하는 비용에 대해 그 힘을 논하나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하는 혜택이 두루 미치지 못하고, 묘당(廟堂)에서 진정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을 논하나 불에 타는 듯한 위급을 구제하는 일은 항상 느슨하니, 선왕께서 백성을 다친 사람을 보듯이 하는 인정(仁政)에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항상 대명(大明)의 인종 황제(仁宗皇帝)가 탁지(度支)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말게 하라는 가르침에 유의하소서.

진휼은 백급(白給)하는 것이 진실로 좋습니다. 그러나 주자(朱子)가 절동(浙東)을 진휼하고, 부필(富弼)이 청주(靑州)를 진휼하였을 때 모두 죽을 마련했었습니다. 두 현인이 어찌 백급하는 것이 죽보다 나음을 알지 못했겠습니까마는, 백급은 잇대어 주기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죽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래에 각도에서 진휼을 베풀 때 오로지 백급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간위(奸僞)가 날로 늘어나고 비용은 절제가 없습니다. 만약 거둬 흉년을 만나게 되면 국력이 장차 고갈되고 말 것이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급이 부족하면 설식(設食)·설찬(設饌)하고, 심한 경우 간혹 소를 잡아 먹이는 것은 명예를 구하고 상(賞)을 기대하는 습관이니, 마땅히 선조(先朝) 병진년(丙辰年)11368)의 예에 의거해서 엄중하게 금지시키고, 2월 30일 이전에는 죽을 마련하고 3월 초하루 이후부터는 급량(給糧)하는 것을 기록하여 법령을 삼아

他日不時之費宜矣。有司恤費之論力，而若保之澤未普，廟堂鎮定之論勝，而救焚之舉常緩，恐有歉於先王視如傷之仁。伏願聖明，常以大明仁宗皇帝勿令度支知之之教，存心焉。賑恤白給固善矣。而朱子浙東之賑，富弼靑州之賑，皆設粥。兩賢豈不知白給之優於粥，而白給則難繼，故不得已以粥也。近來各道設賑，專以白給爲主，故奸僞日滋，而費用無節。若值荐饑，則國力將竭矣，寧不可憂哉？白給之不足，設食、設饌，甚或屠牛而饗之，其沽名要賞之習，謂宜痛禁依先朝丙辰例，二月三十日以前設粥，三月初一日以後給糧，著爲令。

批曰：“所陳者，當下教矣。”先是，忠清監司李昌誼，以海溢啓聞，時畿內通津、南陽等沿海諸處，被海溢尤甚，故顯命筭及之。

	<p>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하니, 비답하기를,</p> <p>“진달한 바에 마땅히 하교하겠다.”</p> <p>하였다. 이보다 앞서 충청 감사 이창의(李昌誼)가 해일로 계문(啓聞)하였는데, 이때 기내(畿內)의 통진(通津)·남양(南陽) 등 연해의 여러 곳에 해일로 입은 피해가 더욱 심했으므로, 조현명이 차자에서 언급한 것이었다.</p>	
<p>영조 66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9월 25일(임자) 3번째기사 화의군에게 연시할 때 연수를 도와주도록 하다</p>	<p>해조에 명하여 화의군(和義君)11369)에게 연시(延諡)11370) 할 때 연수(宴需)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왕자(王子)의 연시에 가까운 종실은 선은(宣醞)하고 먼 종실은 연수를 도와주게 하였으니, 대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p>	<p>命該曹，助給和義君延諡時宴需。王子延諡，近宗則宣醞，遠宗則助宴，蓋有例故也。</p>
<p>영조 66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9월 26일(계축) 3번째기사 호조 판서 김약로가 공신을 배향하는 제물을 더 정해 줄 것을 말하다</p>	<p>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p> <p>“태상시(太常寺)에서 아뢴 바로 인하여 영녕전(永寧殿)에 1실(室)을 새로 올리고, 또 공신 6원을 배향하는 제물(祭物)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 하교가 있었 습니다. 청컨대 원공(元貢) 가운데에서는 다만 1년 제향(祭享)에 쓸 것도 부족하니, 각종을 더 정하여 마련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戶曹判書金若魯曰：“因太常所奏，永寧殿新陞一室，及配享功臣六員祭物磨鍊事有教矣。請就元貢中，只以一年祭享所用不足，各種加定磨鍊焉。”上允之。</p>
<p>영조 66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p>	<p>호서 암행 어사(湖西暗行御史) 민백상(閔百祥)이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불러서 연로(沿路) 수령(守令)의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은 것을 묻고, 이어서</p>	<p>壬申/湖西暗行御史閔百祥復命。上召問沿路守令治否，仍下諭道臣曰：</p>

<p>(乾隆) 12년) 10월 15일(임신) 1번째기사 호서 암행 어사 민백상이 복명하니 수령의 목민 여부를 묻고 도신에 하유하다</p>	<p>도신(道臣)에게 하유하기를,  “지금 어사를 불러 아뢰는 것을 듣고 계사(啓辭)를 봄에 깊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든다. 옥식(玉食)이 어찌 달갑겠는가? 이때 이미 유민(流民)이 생겼으니 내년 봄의 일을 알 만하다. 이 하전(廈氈)에서 소의간식(宵衣旰食)하는 뜻을 체득하여 열읍(列邑)에 신칙(申飭)하되, 주의하여 무마(撫摩)·안집(安集)하라. 그리고 지난번에 해일(海溢)이 있었던 곳에 고희(顧恤)·견감의 정사를 어사가 듣지 못하고 왔으니 이는 민심을 위로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유산(流散)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수령이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은 마땅히 안렴(按廉)의 방도에 달려 있으니 경들은 모름지기 잘 알도록 하라.”</p> <p>하였다.</p>	<p>“今召御史，聞奏覽啓，深用矜惻。玉食奚甘？此時已有流民，來春可知。體此廈氈宵旰之意，申飭列邑，着意撫摩安集。而頃有海溢處，顧恤蠲減之政，御史不及聞而來，此可以少慰民心。不至流散，而守令之勤慢，當有按廉之道，卿須知悉。”</p>
<p>영조 66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11월 20일(병오) 2번째기사 재이로 인해 동지 물선과 자전에 봉진하는 것 이외에는 봉납하지 않게 하다</p>	<p>임금이 재이 때문에 동지 물선(冬至物膳)과 자전(慈殿)에 봉진(封進)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봉납(捧納)하지 말도록 하였다</p>	<p>上以災異，冬至物膳，慈殿封進外，竝令勿捧。</p>
<p>영조 66권, 23년 (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11월 23일(기유) 1번째기사 민생의 폐해인 양역·공물 등 시무에 관한</p>	<p>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 민생의 고질적인 폐해는 양역(良役)에 있으나 바로잡는 계책은 진실로 역시 어렵습니다. 아! 백골(白骨)에 징수하고 황구(黃口)로 채우는 것은 질통(疾痛)이 도신(道臣)에게 있는 것이 아니나 죄가 발생하면 유독 수령(守令)만이 이를 감당할 뿐입니다. 귀옥(龜玉)11406)의 허물어짐을 좌시(坐視)하고</p>	<p>己酉/左議政趙顯命上筭，略曰：  今日生民痼弊，在於良役，而矯揉之策誠亦難矣。噫！白骨之徵，黃口之充，非有疾痛於道臣而罪發，則獨守令當之耳。坐視龜玉之毀，而後無譴責之懼，</p>

좌의정 조현명의 상소

뒤로 견책(譴責)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일의 마땅함을 일삼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사륜(絲綸)을 내려 각도(各道)에 엄히 신칙하고 암행 어사를 보내어 조사하게 하여 백골·황구에 대해 현발(現發)함이 5명 이상인 곳의 해당 도신을 찬배(竄配)의 법률로 감죄(勘罪)하신다면 이에 도신들이 두려워 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도민(都民)에게 있으며, 도민의 생업(生業)은 공물(貢物)과 시전(市廛)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물의 역(役)이 이미 오래 되어 물가(物價)의 귀천(貴賤)이 예전과 현재에 큰 차이가 나므로 공인(貢人)이 이익을 잃어 원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선공(外繕工)·귀후서(歸厚署)의 공물이 가장 억울해 하여 장차 흩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문단(紋緞)이 금지되어 입전(立廛)이 업을 잃고 난전(亂廛)이 융성하여 각전(各廛)은 역시 모두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유(類)는 합하여 변통의 도(道)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선공·귀후 두 공물은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삼공(蔘貢)의 예(例)에 의거하여 참작해 가하(加下)11407)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난전은 각 군문(軍門)의 군졸(軍卒)과 세가(勢家)의 호노(豪奴)가 세력을 끼고 함부로 어지럽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호위(扈衛) 삼청(三廳)이 가장 심합니다. 이 무리들은 척포(尺布)·승미(升米)도 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투입(投入)을 원하는 자로 거듭 관청의 칭호에 존엄(尊嚴)함을 빙자하여 방자한 뜻으로 난전을 계획하려고 하니, 이것을 만약 금하지 않으면 전민(廛民)이 지탱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일체 엄히 금하면 이 무리들 역시 자생(資生)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호위 군졸(扈衛軍卒)의 창설이 오래 되지 않아 심히 긴요할 것

其恬嬉不事事宜矣。今殿下特下絲綸，嚴飭各道，遣繡衣廉問，白骨、黃口現發至五名以上者，當該道臣勘以竄配之律，則於是乎道臣知所懼矣。國之根本在都民，而都民生業不過貢物與市廛。而貢物之役已久，而物價貴賤今古懸殊，故貢人失利呼冤。其中外繕工、歸厚署貢物最冤，將有渙散之形。紋緞禁而立廛失業，亂廛盛而各廛亦皆難支，如此之類，合有變通之道。繕工、歸厚兩貢物，令惠廳依蔘貢例，參酌加下爲宜。亂廛則各軍門軍卒、勢家豪奴，挾勢橫挈無所不至，扈衛三廳最甚。此輩無尺布升米之出，而自願投入者，欲藉重廳號之尊嚴，爲恣意亂廛之計，此若不禁，則廛民無以支堪，若一切嚴禁，則此輩亦無以資生。臣意扈衛軍卒之創設未久，而無甚緊要，不可不革罷，亂廛者各別嚴禁，如有犯者，并令主將而論以不檢之罪爲宜。然市民之憑藉亂廛之禁，操切物價之弊，亦不可不禁，許令物主陳訴法司，從重科治，以爲平價和賣之地，立廛則令平市探訪物情，從長變通，不然，減等出役，亦不可已也。人才之生，漸

이 없으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난전하는 자는 각별히 엄금하되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검속하지 못한 죄를 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민(市民)이 난전을 금하는 것을 빙자하여 물가를 조절하는 폐단 역시 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물주(物主)로 하여금 법사(法司)에 진소(陳訴)할 것을 허락하고 종종 과치(從重科治)하여 공평한 가격에 평화롭게 팔 수 있는 바탕을 삼게 하며, 입전은 평시관(平市官)으로 하여금 물정(物情)을 채방(採訪)하여 장점을 따라 변통(變通)하게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등(減等)하여 출역(出役)하는 것을 또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인재(人才)가 생기는 것이 점점 옛과 같지 않으니 또한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올 이치가 없습니다. 구하는 술법은 과거 이외에 다만 천섬(薦劄)11408) 하는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종전처럼 별천(別薦)하는 것이 반드시 모두 사람을 얻는 것은 아니나, 그중에 역시 일결을 만한 사람이 많았으니, 국가에서 수용(需用)하는 데는 혹시 전관(銓官)이 남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사로움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곧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천목(薦目)을 강정(講定)하여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들어서 분등(分等)하여 조용(調用)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찍이 인조조(仁祖朝)에 별천(別薦)하라는 명령이 있어 고(故) 판서 정세규(鄭世規)를 음군수(蔭郡守)로서 덕행(德行)으로 천거했는데, 곧장 충청 감사(忠淸監司)에 제배했습니다. 병자년(11409)의 난리 때 정세규가 앞장서 왕사(王事)에 힘써 충신(忠藎)으로써 이름이 드러나서 이조 판서에 제배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은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별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쓰여지고 혹 쓰여지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不古若，而亦無不求而自至之理。求之之術，科擧外，但有薦劄一路耳。從前別薦，未必皆得人，而其中亦多有可稱者，國家需用，似或勝於銓官酬應干托之私。卽令廟堂講定薦目，各舉所知，以爲分等調用之地可也。曾在仁祖朝有別薦之令，故判書鄭世規以蔭郡守，入德行薦，直拜忠淸監司。丙子之亂，世規首先勤王，以忠藎著名，至拜吏曹判書。用人如此，國何患不治？今則雖別薦之人，或用或不用，莫知其故也。先朝癸亥因天災警動，雖草野隱逸之臣，莫不敦召，況原任大臣乎？判府事俞拓基處荒野已久。亦願殿下，盡其誠禮，召致輦下，以廣諮諏焉。金聖應之一時譴罷，本非大事。第追聞物議，武藝別監之毆打書字的者，非他人也，中日試才時，發怒於看勢將校之抑置下等，至欲毆打將校，走而得免，則移怒於書字的，有此舉措云。此輩之豪橫不戢，漸不可長也。臣以爲卽下秋曹處之宜矣。

批曰：“條陳民弊，可謂輔相之體。輔相若此，爲國何難？申飭道臣事，頻遣

선조(先朝) 계해년(11410)에 천재(天災)가 경동(警動)함으로 인하여 비록 초야의 은일(隱逸)한 신하라도 도탑게 부르지 않음이 없었는데 더구나 원임 대신(原任大臣)에 있어서겠습니까? 판부사(判府事) 유척기(兪拓基)를 황야(荒野)에 있게 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진실된 예(禮)를 다하여 연하(輦下)로 불러 오게 하여 자추(諮諏)를 넓히소서. 김성응(金聖應)이 일시 견과(譴罷)되어 있으나 본래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간의 의논을 추후에 들어보건대, 무예 별감(武藝別監)이 서자지(書字的)를 구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과(武科) 시재(試才) 때 형편을 보던 장교(將校)가 하등(下等)에 억치(抑置)한 것에 화를 내어 장교를 구타하려고 하였으나 달아나 모면하니, 그 화가 서자지에게 옮겨져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의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으면 점점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즉시 추조(秋曹)에 내려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백성의 폐해를 조진(條陳)한 것은 가히 재상의 체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상이 이와 같은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도신에게 신칙한 일은 자주 어사를 파견하여 탐문하게 하고 드러난 대로 엄히 처리하라. 귀후서(歸厚署)·외선공감(外繕工監)의 일은 차자에 청한 것에 의거해 시행하라. 입전의 일은 그 문단(紋緞)을 금지시키기를 정정堂堂(正正堂堂)하게 모자 부전(茅茨不剪)한 집에 대포(大布) 11411)·대백(大帛) 11412) 을 입을 것 같으면 와서(瓦署)가 무슨 소용이며 주전(紬塵)이 또한 무슨 소용이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시민(市民) 역시 백성이니 고흘 감등(顧恤減等)의 청이 마땅하다. 비국(備局)에서 소상(消詳)히 강정(講定)하라. 난전의 일은 전인(塵人)은 곧 왕민

御史廉問，隨現嚴處。厚署、外監事，依筭請施行。立塵事，禁其紋緞，堂堂正正，若茅茨不剪，大布、大帛，瓦署何用，紬塵亦何用乎？雖然市民，亦民也，其宜顧恤減等之請。自備局消詳講定。亂塵事，塵人即王民也，亂塵人，亦王民也，此等之處，當一循其公而處置。扈衛廳事，宜先自大臣所管軍門始，宜定其數，勿爲雜亂可也。薦人事、敦召大臣事，當依施。訓將事，本事果若此，而爲大將者，不爲筭達懲戢，則此大將之巽軟，若聞其事而模糊草記，則此大將之不職。於此於彼，俱涉寒心。當該將校，令秋曹查問稟處焉。”

	<p>(王民)이요, 난전인 역시 왕민이니, 이들의 처리는 마땅히 한결같이 그 공변됨을 좇아서 처치하라. 호위청의 일은 마땅히 먼저 대신(大臣)의 소관인 군문에서 비롯되어야 하니, 마땅히 그 숫자를 정하여 잡란(雜亂)하게 하지 말도록 함이 옳겠다. 사람을 천거하는 일과 대신을 도탑게 부르는 일은 마땅히 아된 대로 시행하라. 훈련 대장의 일은 본래 일이 과연 이와 같으나 대장된 자가 연달(筵達)하여 징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장이 유약한 것이요, 만약 그 일을 듣고도 초기(草記)를 모호하게 하였다면 이는 대장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가 한심한 데 관계된다. 마땅히 해당 장교를 추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1월 3일 (무자) 4번째기사 종실 집정의 증원을 허락하지 말고 왜인의 동정을 살피도록 명하다</p>	<p>내국(內局)11446) 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도 함께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진상한 가죽신 때문에 발가락을 다쳤으므로 약방(藥房)에서 문후(問候)하고 괴화(槐花) 기름을 쓰기로 의정(議定)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경묘(景廟)의 주갑(周甲)이 되는 해이고, 나도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었다. 옛날 악정자(樂正子)가 마루에서 내려서다가 발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가죽신을 신다가 발을 다쳤다.” 하였다. 김 재로가 ‘권세(權勢)’라는 두 글자로 스스로 인협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통신사(通信使)의 장계(狀啓)를 읽으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집정(執政)의 숫자를 5인의 숫자만 허락하면 되겠는가?” 하니, 도제조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전부터 왜인(倭人)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먼저 따르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강청(強請)하면서 반응을 살피 왔습니다. 지금 만일</p>	<p>內局入侍，命領議政金在魯同入。先是，上因進靴傷足指，藥房問候，議定槐花膏，上曰：“今年是景廟周甲，予又添一齡矣。昔樂正子下堂而傷足，今予因着靴而傷足矣。”在魯以權勢二字自引，上慰諭。命讀通信使狀啓，上曰：“執政數，將只許五人之數乎？”都提調趙顯命曰：“自前倭人有求於我，必先以難從之事強請，以觀俯仰。今若許之，適中其計。今此六執政云者，未必非其計，若許之，適中其計，宜並與五執政而勿許矣。彼既以朝鮮員役，勿爲增減爲言，而執政宗室之增數，甚怪駭矣。”在魯曰：“己亥年則宗室二</p>

이를 허락한다면 바로 그들의 계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인의 집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들의 계교가 아니라고 기필할 수 없는데 이를 허락한다면 바로 그들의 계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집정을 5인으로 하자는 것까지도 아울러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들이 이미 조선(朝鮮)의 원역(員役)은 증감(增減)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집정(執政)인 종실(宗室)의 숫자를 증가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하고, 김 재로는 말하기를,  
 “기해년(11447)에는 종실이 2인이었는데, 이제 또 1인을 증가시켰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4원(員) 이외에 1원도 더 증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서 저들의 동정을 살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덕중(李德重)의 소장을 읽으라고 명하고서 임금이 말하기를,  
 “‘매와 개가 응모했다.’ 한 것은 누구의 말인가?”

하니, 김 재로가 말하기를,  
 “홍우한(洪羽漢)의 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홍우한의 말을 옳게 여긴다.”

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성교(聖教)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다. 엄우의 소장을 읽으라고 명하고 나서 임금이 말하기를,  
 “괴이하다.”

하였다. 또 정언섭(鄭彦燮)의 소장을 읽으라고 명하고 나서 임금이 말하기를,  
 “노성(老成)한 사람이 아니다. 옛날 어떤 무변(武弁)이 최첨지(崔僉知)의 집에서 말을 빌려 오게 했는데, 그의 종이 잘못하여 병판(兵判) 최석정(崔錫鼎)의

人，而今又增一人矣。” 上曰：“四員外，勿許一員之增，以觀俯仰也。” 命讀李德重疏，上曰：“鷹、犬應募云者，何人之言耶？” 在魯曰：“洪羽漢之言矣。” 上曰：“雖未知出於公心，而予以洪羽漢爲是矣。” 顯命曰：“聖教不當如是矣。” 命讀嚴瑀疏，上曰：“怪矣。” 又命讀鄭彦燮疏，上曰：“不老成矣。昔一武弁，借馬於崔僉知家，而其奴誤借於兵判崔錫鼎，錫鼎借之。其後武人知而往謝，錫鼎曰，‘無傷也。’ 時人稱其大量，此事正相類矣。今番任命周所犯之重，業已酌處，則位在宰列，鬢亦白矣，而又斷斷僚席間耶？其中尤駭者，以李益普事，於筵中斥以無狀。噫！往日則稱道於渠，今日則盛斥於君。噫！彼黨心，因夢覺而竝醒乎？不然，其習亦不美，囑人斥人，其心不公。乾道昭昭，誤示其人，私書措語，胡可上聞？雖有輕重之別，舉措俱不美。鄭彦燮、嚴瑀，竝罷職。”



	<p>집에 가서 말을 빌려 달라고 하니 최석정이 빌려 주었다. 그 후에 그 무변이 사실을 알고서 가서 사과하니, 최석정이 ‘마음쓸 것 없다.’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그의 도량이 큰 것을 칭송하였는데 이 일과 바로 비슷하다. 이번에 임명주가 범한 것은 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작처(酌處)하였는데,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있고 귀밑머리 또한 허연 사람이 또 요석(僚席) 사이에서 계속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익보(李益普)의 일을 연석(筵席)에서 무상(無狀)하다고 공척한 것이다. 아! 지난날에는 그에 대해 칭찬하더니 오늘날에는 임금 앞에서 성대히 공척하였다. 아! 저 당심(黨心)을 꿈에서 깨듯이 아울러 깰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습성이 또한 아름답지 못한 것이요, 사람을 축탁했다가 또 사람을 공척하는 것은 그 마음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건도(乾道)가 환히 밝은데, 남에게 잘못 보인 사서(私書)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위에 아될 수 있겠는가? 비록 경중의 구별은 있으나 거조가 모두 아름답지 못하다. 정언섭과 엄우는 아울러 파직시키라.” 하였다.</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1월 10일(을미) 5번째기사 동부승지 한억증에게 제주의 민속과 토산에 관해 하문하다</p>	<p>동부승지 한억증(韓億增)을 입시하게 하고, 제주(濟州)의 민속(民俗)과 토산(土産)에 대해 하문하였는데, 한억증이 방금 제주에서 체직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祖)의 국휼(國恤) 때 산릉(山陵)의 흙을 나르는 역사(役事)에 달려갈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동조(東朝)께서 쌀·장을 내렸었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연전에 제주에서 지실(枳實)을 진공(進貢)하였는데, 내가 한 번 맛보고 그 맛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진공하게 되는 전례를 이룰까 염려하여 애당초 맛을 보지 않고 되돌려보냈다. 듣건대 감귤(柑橘)의 진공 또한 폐단이 있어 여항(閭巷) 사이에 이 나무가 나면 반드시 끓는 물을 부어 죽인다고 하니, 사실이 그런가?”</p>	<p>命同副承旨韓億增入侍， 下詢濟州民俗、土産，以億增纔遞濟州也。 上曰：“先朝國恤時， 請赴山陵負土之役， 故東朝有米、醬之賜矣。” 又教曰：“年前濟州貢枳實， 予若一嘗而其味佳， 則恐仍成進貢之例， 初不嘗之而還送矣。 聞柑橘之貢亦有弊， 閭巷間若生此樹， 則必以湯水澆殺云， 然乎？” 億增對曰：“果有此弊矣。 民家有此樹， 則自官以家主定果主， 且令摘納矣。 枳實之還送， 實出於不貴異物之意， 非但有光於</p>

	<p>하니, 한역증이 대답하기를,  “과연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민가(民家)에 이 나무가 나면 관(官)에서 집주인을 과주(果主)로 정하고 나서 열매를 따서 바치게 합니다. 지실을 도로 돌려 보낸 것은 실로 이물(異物)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다만 성덕(聖德)에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島民)을 위한 혜택이 큰 것입니다.” 하였다. 또 전복을 캐는 폐단에 대해 하문하고 전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소반의 밥이 낱알 하나하나가 모두 신고(辛苦)의 결집인줄 누가 알라?’ 하였는데, 소반의 전복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p>	<p>聖德，其爲島民之惠大矣。”又下詢採鰾之弊，教曰：“古人云，‘誰知盤中粟，粒粒皆辛苦？’盤中鰾，亦然矣。”</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3월 1일  (을유) 2번째기사  불에 탄 통신사의 예물인 인삼 70근을 수문하도록 명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승지에게 명하여 통신사의 장계(狀啓)를 읽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삼은 남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가을에 캐기 전에는 판출하여 보낼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통신사의 사행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보냈으므로 지금 본조(本曹)에 저축되어 있는 것은 단지 10근뿐입니다. 성중(城中)의 제국(諸局)에 널리 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 숫자를 채울 도리가 없습니다. 인삼을 실은 배가 불에 탄 것은 저들도 눈으로 본 것이니, 이제 다른 물건으로 대신 주어야 합니다.”</p>	<p>上引見大臣、備堂。命承旨讀通信使狀啓。上曰：“人蔘有餘存乎？”領議政金在魯曰：“秋採前，無辦送之路矣。”戶曹判書金若魯曰：“信使之行，我國竭力齎送，卽今曹儲只有十斤。雖廣求於城中諸局，決無充得此數之理。載蔘船失火，乃彼人之所目見，今可代贈他物矣。”左議政趙顯命曰：“代送而不受，則辱國大矣。”靈城君朴文秀曰：“贈新舊關白禮物，不可闕也。只當期於覓充而已。其餘待秋送之好矣。”兵曹參判洪象漢曰：“交隣異於事大，贈賄之物，設有未準，本非大失，何必限約迫送，如酬債負哉？且一行中不患無蔘，就其舟中，似足取辦。”禮曹參判尹得和曰：“潛挾旣爲</p>

	<p>하고,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p> <p>“대신 보냈다가 받지 않는다면 나라가 욕을 당하는 것이 큼니다.”</p> <p>하고,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는 말하기를,</p> <p>“신구(新舊) 관백(關白)에게 증여하는 예물은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어 이 찾아내어 충당시켜야 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가을을 기다려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병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은 말하기를,</p> <p>“교린(交隣)은 사대(事大)와 달라서 증회(贈賄)하는 물건이 설사 기준에 미달 된다고 하더라도 본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어찌 반드시 약정한 한도를 마치 빚을 갚는 것처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행 가운데 인삼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으니, 배를 조사해 보면 가져다 관비(辦備)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p> <p>하고, 예조 참판 윤득화(尹得和)는 말하기를,</p> <p>“몰래 가져가는 것은 이미 사법(死法)에 저촉되는 것이니, 배를 조사하여 가져다 관비한다는 이야기는 번거롭게 성상에게 아뢴 것이 못됩니다.”</p> <p>하고, 예조 판서 이주진(李周鎭), 한성 판윤 유엄(柳儼), 공조 참판 서명구(徐</p>	<p>死法， 則舟中取辦之說， 不足煩上聽。” 禮曹判書李周鎭、漢城判尹柳儼、工曹參判徐命九、承旨金相福皆從文秀議。 吏曹判書申晚曰：“人蔘雖難得， 以一國之力， 不能辦七十斤人蔘， 使使臣徒手而往， 非所以示隣國也。 第須遍括於平壤、江界等處， 爲必得計最善。” 上以晚言爲是， 曰：倭人之愛蔘無比， 不與， 且將有重辱。 懸賞購求， 則可得矣。” 文秀曰：“臣請出外廣問。 須終不得， 然後爲待秋計未晚。” 上然其言， 令極力訪求。 顯命曰：“今番雖大霑， 法則有節限。 島配出陸， 異於量移， 則島配罪人出陸者， 或定於內地不遠之處， 事極未安。 當該禁堂推考， 而改定配所似宜矣。” 上曰：“誰某而定於何邑耶？” 對曰：“尹光天扶安， 趙徵泰仁矣。” 允之。 顯命又曰：“濟州雖曰候風， 而昨年十二月， 罪人押去都事， 尙無還來之事， 極涉稽緩。 罪人任命周押去都事， 請拿問定罪。” 允之。</p>
--	--	--

命九), 승지 김상복(金相福)은 모두 박문수의 의논을 따랐다. 이조 판서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인삼을 구득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힘으로 70근의 인삼을 관비할 수 없어 사신을 맨손으로 가게 하는 것은 이웃 나라에 보일 것이 못됩니다. 모름지기 평양(平壤)과 강계(江界) 등처에 두루 수괄(搜括)하여 기필코 구득하는 것이 최선의 계책입니다.”

하니, 임금이 신만의 말을 옳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왜인이 인삼을 아끼는 것이 견줄 데가 없을 정도이니 주지 않으면 장차 무거운 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상금을 걸고 구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신이 청컨대 외방에 나아가 널리 수문(搜問)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결국 구득할 수 없는 연후에 가을을 기다릴 계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극력 구하여 보게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번에 큰 사면(赦免)이 있었습시다만, 법에는 절제와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도배(島配)된 사람을 출륙(出陸)시키는 것은 양이(量移)와는 다른 것인데, 도배 죄인 가운데 출륙한 사람을 혹 멀지 않은 내지(內地)에 배정한 것은 일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해당 의금부 당상관은 추고하고 다시 배소(配所)를

	<p>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누구를 어느 고을에다 정해야 하겠는가?”</p> <p>하였다. 대답하기를,</p> <p>“윤광천(尹光天)은 부안(扶安)에, 조징(趙徵)은 태인(泰仁)에다 정배해야 합니다.”</p> <p>하니, 윤희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p> <p>“제주(濟州)에서 배가 떠날 순풍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작년 12월에 죄인을 압송하여 데리고 간 도사(都事)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일이 매우 지체되는 데 관계가 됩니다. 죄인 임명주(任命周)를 압송하여 데리고 간 도사를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p> <p>하니, 윤희하였다.</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3월 2일 (병술) 2번째기사 불에 탄 통신사의 예물인 인삼 70근을 구</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통신사의 배에 불이 나서 예단(禮單)이 많이 불에 났습니다. 이것이 뜻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사행의 일은 지극히 중한 것이니 삼가서 검칙(檢飭)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나처(拿處)하소서.”</p>	<p>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金在魯曰：“通信使船中失火，禮單多燒。雖是無妄，使事至重，其不謹檢飭之失，在所難免。竣事回還後，請拿處。”允之。左議政趙顯命曰：“拿處似過矣。故判書南龍翼爲信使也，以禮單沈水</p>

<p>득해서 보내도록 명하다</p>	<p>하니, 윤희하였다. 좌의정 조현명이 말하기를,</p> <p>“나치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고 판서 남용익(南龍翼)이 통신사가 되었을 때 예단을 물에 적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압령(押領)한 역관만 추고 했을 뿐입니다. 전례가 이러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진달한 말이 좋다.”</p> <p>하고, 나치하라고 한 명을 도로 거두었다. 김재로가 말하기를,</p> <p>“인삼에 대한 일은 나가서 널리 수소문해 보니 모두들 약간 근도 전혀 구득할 형세가 없다고 합니다.”</p> <p>하고, 조현명은 말하기를,</p> <p>“불에 탄 70근은 이에 사신의 사사로운 예단이고, 국서(國書)의 예단은 불에 탄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니, 이는 모쪼록 충당시켜 보내야 합니다. 사사로운 예단은 가을에 캐서 추후 보내도 좋겠습니다. 만부득이하다면 한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내국(內局)의 어약(御藥)에 소용되는 것 이외에 강삼(江蔘) 약간 근이 있습니다만, 이는 아래에서 감히 양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事，其時押領譯官只推考。前例如此矣。”上曰：“所達好矣。”還收拿處之命。在魯曰：“人蔘事，出去廣問，則皆以爲雖若干斤，萬無可得之勢云矣。”顯命曰：“燒火七十斤，乃是使臣私禮單，國書禮單則見燒數不多云，此則某條充送。私禮單則待秋採迫送好矣。萬不得已則抑有一道。內局御藥所用外，有江蔘若干斤，此非自下所敢仰達者矣。”上曰：“交隣之道，卽一誠字而已。昔唐宗征遼，於馬上，親舉土俗，以聳三軍，內局蔘特爲顧助，則爲道臣、帥臣、府使者，焉敢恕視？令備局急責諸道，使於今月內聚送。使行所燒他物，亦令該曹備給。”右承旨李宗迪曰：“以堂堂千乘之國，而不得人蔘七十斤，寧有是理？如其不得，不如勿送。若陸續送之，則恐適以取侮於隣國也。大臣之請內局蔘，亦慨然。人蔘雖貴，何至減出御供耶？”上曰：“承宣言固善矣，而勢無奈何矣。”</p>
---------------------	--	--

	<p>“교린(交隣)의 도리는 곧 하나의 ‘성(誠)’ 자일 뿐이다. 옛날 당(唐)나라 태종이 요(遼)를 정벌할 적에 친히 흙을 담은 부대를 짊어짐으로써 삼군(三軍)을 용동시켰었으니, 내국의 인삼을 특별히 돌보아 보조한다면 도신(道臣)·수신(帥臣)·부사(府使)가 된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남의 일을 보듯이 할 수 있겠는가? 비국으로 하여금 급히 제도에 독책하여 이달 안으로 모아서 보내게 하라. 사행이 불태운 다른 물건도 해조로 하여금 갖추어 주게 하라.”</p> <p>하였다. 우승지 이종적(李宗迪)이 말하기를,</p> <p>“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로서 인삼 70근을 구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구득하지 못한다면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만일 계속하여 보낸다면 그저 이웃 나라에게 수모만 받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대신이 내국의 인삼을 청한 것은 또한 개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삼이 귀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어공(御供)을 덜어내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승선(承宣)의 말이 진실로 좋다. 그러나 사세가 어찌할 수 없다.”</p> <p>하였다.</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3월 3일 (정해) 3번째기사</p>	<p>명하여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군향(軍餉)을 10만 석을 한도로 하여 매년 2만 석씩 돌려 가면서 나누어주고 기타의 첨향(添餉)과 모미(耗米)도 편의에 따라 은으로 만들어 뜻밖의 수요에 대비하게 했는데, 수어사(守禦使) 조관빈(趙觀彬)이 청한 것이었다.</p>	<p>命南漢軍餉，限以十萬石，每年以二萬石輪回分給，其他添餉及耗米，從便作銀，以備不虞之需，從守禦使趙觀彬所請也。</p>

<p>남한 산성의 군량을 10만 석 내에서 매년 2만 석씩 분급하라고 명하다</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3월 10일(갑오) 2번째기사 좌의정 조현명이 차자를 올려 예단 인삼을 준매하여 보낼 것을 청하다</p>	<p>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예단(禮單)의 인삼을 가을을 기다려 나중에 보내기로 한 것은 만부득이 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당당한 천승의 나라로서 이런 구차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이웃 나라에 졸렬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국가에 수모를 끼치는 것은 어떠한하겠습니까? 근래 비로소 상세히 들었는데 도하(都下)에도 삼을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공가(公家)의 매매는 오래 값을 깎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감히 내어 놓지 않고 있는 것인데, 만일 한결같이 시가대로 준급(準給)한다면 소문을 듣고 마구 모여들게 되어 있어 70근이라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호조에 분부하여 시가에 따라 값을 정하게 해야 합니다. 일이 궁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상례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추후에 내려 보내는 것은 끝내 구차스러운 데 관계되는 것인데, 어떻게 상례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 차자에서 청한 바에 따라 즉시 준매(準買)하여 내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p>	<p>左議政趙顯命上筭，略曰：  禮單蔘之待秋追送，雖出於萬不獲已，以堂堂千乘之國，有此苟簡之事，其露拙於隣邦，貽羞於國家爲如何哉？近始詳聞，都下亦多有藏蔘者，而公家賣買，例多剋減，故恐懼不敢出，若一從時價準給，則聞風湊集，雖七十斤之蔘，庶幾可充云。臣謂分付戶曹，從時價折定。事到窮處，常例有不足拘也。”  批曰：“追後下送，竟涉苟簡，何拘常例？依筭，請卽令準買下送。”</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함경 감사 이정보(李鼎輔)도 함께 입시하였다. 어천(魚川)의 역촌(驛村)에 불이 나서 40호가 잇따라 불에 탔는</p>	<p>上引見大臣、備堂，咸鏡監司李鼎輔同爲入侍。命魚川、驛村失火，連燒四</p>



<p>(乾隆) 13년 4월 9일 (임술) 2번째기사 불이 난 어천의 역촌 에 좁쌀 1석씩 지급하 도록 명하다</p>	<p>데, 남당(南塘)의 예에 따라 각각 좁쌀 1석씩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니, 도신(道臣)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양서(兩西)의 궐원(闕員)된 수령을 오늘의 정사(政事)에서 차출하여 말을 주어 내려 보내게 하라고 명하였는데, 칙사의 사행이 나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p>	<p>十戶，依南塘例，各給小米一石，從道臣之請也。 命兩西有闕守令，今日政差出，給馬下送，以勅行之將出來故也。</p>
<p>영조 67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 (乾隆) 13년) 4월 21 일(갑술) 1번째기사 영접 도감 당상 등과 칙사의 접견에 관해 의논하다</p>	<p>임금이 영접 도감 당상을 경현당(景賢堂)에서 불러서 접견하였다. 예조 판서 이주진(李周鎭)이 말하기를,  “칙사(勅使)가 26일에 당도하여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모두 화복(華服)을 입고 홍영자(紅纓子)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니, 천담복(淺淡服)으로 접견하는 것은 끝내 곤란한 데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이미 화복을 입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면 천담복으로 접견하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않는다.”  하였다.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칙사를 맞이하는 날 천담복을 입는 것은 예입니다. 칙사를 보내는 날 상복(常服)을 입는 것은 예에 있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 번 칙사를 맞이한 뒤에는 상복으로 접견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 것이다.</p>	<p>甲戌/上召見迎接都監堂上于景賢堂。禮曹判書李周鎭曰：“勅使二十六日當入，而皆着華服，不去紅纓子云，淺淡服接見，終涉難便。” 上曰：“彼既華服，飲酒食肉，則以淺淡服接見，不成事體。” 戶曹判書朴文秀曰：“迎勅日淺淡服，禮也。送勅日常服，於禮亦宜矣。” 上曰：“一番迎勅後，以常服見之，事理當然矣。宴享時茶禮太埋沒，比宴享減品去樂，則亦中禮矣。”</p>

	<p>연향(宴享)할 때 다례(茶禮)를 행하는 것은 매우 매몰스러우니, 연향에 견주어 품수(品數)를 줄이고 음악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예에 맞는 것이다.”</p> <p>하였다.</p>	
<p>영조 68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7월 1일 (계미) 2번째기사 도제조 조현명이 귀주의 상사 때문에 슬퍼함이 지나침을 간하다</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미음(米飮) 같은 음식도 잘 넘기지 못하여 매양 답답한 때가 많다. 태묘(太廟)에 진알(展謁)한 연후에야 마음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p> <p>하였다. 도제조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p> <p>“전하께서 한 귀주(貴主)의 상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내용을 사책(史冊)에 기록한다면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고 여기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이번만이 아니라 효장(孝章)11520)의 묘우(廟宇)를 지날 적마다 마음이 항상 답답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모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식이 있는 것이니, 자부(子婦)의 경우에는 현빈(賢嬪)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딸의 경우에는 화평옹주(和平翁主)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사랑됨을 애석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다.”</p> <p>하였다.</p>	<p>內局入侍， 上曰：“米飮之屬不順下， 而每多沓沓時矣。 展謁太廟然後， 可得少安矣。” 都提調趙顯命曰：“殿下以一貴主之喪， 悲哀至此， 以此書諸史冊， 則殿下當爲何如主耶？” 上曰：“不但今番， 每過孝章廟， 心常沓沓矣。 父母之於子女有知己焉， 於子婦則賢嬪爲知己， 於女則以和平翁主爲知己， 而今遽至此。 予非慈愛而然， 但惜其爲人矣。”</p>
<p>영조 68권, 24년</p>	<p>임금이 도감 당상(都監堂上) 박문수(朴文秀) 등을 인견하였다. 박문수가 말하</p>	<p>庚戌/上引見都監堂上朴文秀等。 文</p>

<p>(1748 무진 / 청 건륭 (乾隆) 13년) 7월 28일(경술) 1번째기사 도감 당상 박문수를 인견하니 날씨가 무더워 내일의 관소의 동가가 어려움을 아뢰다</p>	<p>기를, “날씨가 매우 무더워 늘 정섭(靜攝) 중에 계시니, 내일에 있을 관소(館所)의 동가(動駕)는 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오늘 거동하려 하였으나 늘 병상(病床)에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으니,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를 어긴 것이 심하게 되었다.” 하고, 대신을 보내어 접위(接慰)한 다음 머물기를 청하게 하였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하문하기를,</p>	<p>秀曰：“日氣甚熱，常在靜攝中，明日館所動駕，似難行矣。”上曰：“今日欲爲舉動，而常在床褥故未果，甚失主人接賓之道矣。”遣大臣，接慰請留。</p>
<p>영조 68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 (乾隆) 13년) 윤7월 23일(을해) 4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통신사의 길에 대해 하문하다</p>	<p>“통신사(通信使)에 대해 길을 나누도록 허락했는가?” 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연로(沿路)에서 공궤하는 폐단을 우려하여 길을 나누게 하도록 주청(奏請)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부절(符節)을 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사체가 가볍지 않고 뜻밖의 병고(病故)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하여 이 뒤로는 길을 나누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p>	<p>上引見大臣、備堂。下問：“通信使，許其分路否乎？”領議政金在魯曰：“慮其沿路供億之弊，奏請其分路矣。”上以持節往來，事體不輕，意外病故，有未可知，命嗣後則勿爲分路。</p>
<p>영조 68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 (乾隆) 13년) 윤7월 30일(임오) 1번째기사 통신사 일행이 돌아왔는데 일행이 지나간 고을마다 민폐가 극심</p>	<p>통신사(通信使) 홍계희(洪啓禧)·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서장관(書狀官) 조명채(曹命采)가 돌아왔다. 홍계희 등이 지난해 겨울 11월에 사궤(辭陛)하고 3월에 배를 타고 출발하였으며 5월에 왜도(倭都)에 도착하여 예폐(禮幣)를 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복명(復命)하였다. 통신사의 일행이 모두 5백여 인이었고 대동한 편비(編裨)들은 모두 문벌이 있는 이름난 무관(武官)들을 선발하였으며 기예(技藝)를 지닌 백공(百工)들이 다 따라갔는데, 홍계희가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고 또 만리(萬里) 먼 길을 수행한다 하여 차마 법으로 다스</p>	<p>壬午/通信使洪啓禧、副使南泰耆、書狀官曹命采還。啓禧等以去年冬十一月辭陛，三月開船，五月至倭都傳幣，至是復命。信使一行凡五百餘人，所帶編裨，皆選名武，而百工技藝皆從，啓禧不能剛制，且以爲萬里從行，不忍以繩之，名武輩驕恣放縱，且恃主將之</p>

<p>하였다</p>	<p>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들이 교만 방자하여 멋대로 행동하였고 또 주장(主將)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믿고서 도착하는 곳마다 횡포를 부림에 있어 돌아보아 꺼리는 것이 없었다. 홍계희 등이 부산(釜山)에서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70고을에서 돌려가며 이들을 지공(支供)하느라 온 도내(道內)가 말할 수 없이 피폐되었고 열읍(列邑)이 거의 몇 해 동안 소복(蘇復)되지 못하였다.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 세 사신이 육지에 올랐으나 예폐와 반전(盤纏)11548)은 모두 배에 있었는데, 부선(副船)에서 실화(失火)하여 모두 다 타버렸고 죽은 사람도 3인이나 되었다. 이런 사실이 보고되자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건의하여 삼폐(蔘幣)와 회자(餼資)를 다시 준비하여 보냈는데, 이때문에 국가의 저축이 탕진되었으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인데 조정을 속인 것이다.’ 했다.</p> <p>사신은 말한다. 나라에 기강이 없어지고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다. 이때를 당하여 왕명을 받고 국경을 나감에 있어 수백 인을 대동하고서 교활한 나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으니, 비록 군법(軍法)으로 한결같이 제재하여도 오히려 난잡하게 될까 두려워했어야 할 것인데, 홍계희 등은 태연히 느긋한 마음으로 길에 올라 스스로 ‘대체로 벌써 조치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여겼으므로, 유폐(流弊)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어떻게 함이 없었으니 개탄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p>	<p>寬假，所至暴橫，無所顧忌。啓禧等至釜山留四朔，七十州輪遞支供，一道糜爛，列邑殆數歲不復。及至馬島，三使登陸，禮幣、盤纏皆在船中，副船失火盡爲燒燼，死者三人焉。事聞，左議政趙顯命建議，蔘幣、餼資更爲備送，國儲爲之蕩然，或曰，‘舟中之火，乃故縱而欺瞞朝廷’云。</p> <p>【史臣曰：國無紀綱，人心不古。當是時也，受命出疆，所帶者累數百人，深入狡獪之邦，雖一裁之以軍法，猶懼雜亂，啓禧等雍容登途，自以爲夫既或治之，奈何言，流弊至此，而莫之誰何，可勝歎哉!】</p>
<p>영조 68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8월 5일 (정해) 4번째기사 통신사 홍계희 등을 소견하고 왜국의 사정</p>	<p>임금이 통신사 홍계희(洪啓禧) 등을 소견(召見)하고 왜국(倭國)의 사정에 대해 상세히 하문하였다. 이때 왜인이 우리 배가 실화(失火)하여 삼폐(蔘幣)가 거의 다 타버렸다는 것으로 특별히 해삼(海蔘) 10궤(櫃)와 왜포(倭布) 3백 필(疋)을 보내 왔는데, 임금이 사양하기도 곤란하고 받기도 곤란하여 대신(大臣)에게 하문하니, 대신이 동래부에 주어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후략)</p>	<p>上召見通信使洪啓禧等，詳問倭國事情。時，倭人以我船失火，蔘幣焚燒殆盡，別賂海蔘十櫃，倭布三百匹，上以辭受兩難，問大臣，大臣請以授之萊府，以備不時之需，從之。(후략)</p>

<p>에 대해 상세히 하문하다</p>		
<p>영조 68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10월 17일(무술) 1번째기사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재이 때문에 연방한 것이다</p>	<p>임금이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재이(災異) 때문에 연방(延訪)한 것이었다. 자신을 책하는 하교를 내리고 3일 동안 감선(減膳)하게 하였으며, 비국과 각사(各司)의 문부(文簿) 가운데 아직 회계(回啓)하지 않은 것은 즉시 회계하라고 명하였다. 장령 남태혁(南泰赫)이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교리 조운규(趙雲逵)가, 장령 남태혁이 전계를 거둬 아뢰던 뒤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논박하여 파직시켰다. 또 말하기를, “재변을 만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때에 묘당(廟堂)의 모유(謨猷)에 하나도 실사(實事)가 없으니, 한심하다고 할 만합니다.” 하니, 김재로(金在魯)가 한심이라는 두 글자는 보통으로 규책(規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으로 즉시 인협하여 사직(辭職)하고 물러가서 또, 차자를 올려 스스로를 다스리니, 임금이 위로하여 이해시켰다.</p>	<p>戊戌/上引見備堂，以災異延訪也。下教責躬，減膳三日，備局、各司文簿未回啓者，命卽回啓。掌令南泰赫申前啓，不允。校理趙雲逵，以掌令南泰赫，申前啓後無一言，駁罷之。且曰：“遇災警懼之時，廟堂訏謨，無一實事，可謂寒心矣。”在魯以寒心二字，非尋常規責語，卽引嫌辭職退，又上筓自理，上慰解之。</p>
<p>영조 68권, 24년 (1748 무진 / 청 건륭(乾隆) 13년) 12월 18일(무술) 1번째기사 옥당과 춘방을 소견하였는데 왕세자가 시좌하였다</p>	<p>옥당(玉堂)과 춘방(春坊)을 소견하였는데,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坐)하였다. 임금이 하문하기를, “한(漢)나라의 임금 가운데 경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왕세자가 대답하기를, “환제(桓帝)·영제(靈帝)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戊戌/召見玉堂、春坊，王世子侍坐。上問：“漢君可戒者誰也？”王世子對曰：“桓、靈是已。上曰：“桓、靈固不足道。最可戒者，成帝也。成帝雖臨朝，穆穆望之如神，及其與飛燕淫泆，豈復有穆穆之容乎？”上又問：“賓僚中有陳戒剴切之語否？”世子對曰：“賓客鄭羽良，陳九容、九思矣。”上曰：“汝知足容之當重乎？”對曰：“唯。”上曰：“雖知足容之當重，食色之大，尤不可不戒。玉食珍羞列於前，</p>

“환제·영제는 진실로 말할 가치도 없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성제(成帝)이다. 성제는 조정에 임어할 때는 묵묵(穆穆)한 기상이 마치 신(神) 같았으나 비연(飛燕)과 음란한 짓을 할 때 이르러서는 어찌 다시 묵묵한 자용(姿容)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또 하문하기를,

“빈료(賓僚)들 가운데 간절하게 진계(陳戒)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빈객(賓客) 정우량(鄭羽良)이 구용(九容)11643) 과 구사(九思)11644) 에 대해 진달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족용(足容)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하니, ‘예’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족용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식색(食色)에 대해 더욱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쌀밥과 진수 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고 화려하고 사치스런 물건들이 눈을 현란시키는데, 이런 때를 당하여 네가 신료(臣僚)들을 대하여 ‘나는 여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더구나 색욕(色慾)은 식욕(食慾)보다 더한 것이니 말해 뭐하겠는

紛華侈靡眩於眼，而當此之時，汝若對臣僚，以爲‘吾不留心於此’云爾，則是欺心也。況色慾則浮於食慾？俄者戒以漢成，意蓋深矣。予則以此戒汝，而臣僚則必不爲此等語也。”

	<p>가? 좀전에 한나라 성제를 경계하라고 한 뜻은 의미가 깊은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너를 경계시켰다면 신료들은 반드시 이런 등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p> <p>하였다.</p>	
<p>영조 69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월 4일 (계축) 1번째기사</p> <p>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영양과 맛이 있는 반찬을 드시기를 제조 이주진이 청하다</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맥하였다. 제조(提調) 이주진(李周鎭)이 영양과 맛이 있는 반찬을 드시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평상시에도 내가 먹는 것에 영양과 맛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가난한 백성의 굶주림을 생각하면 지금 먹는 것만으로도 역시 과하다 할 것이다.”</p> <p>하였다. 또 말하기를,</p> <p>“새해의 해일(亥日)·자일(子日)의 공물을 으레 관술을 바치면 궁중에서 돼지와 쥐의 신(神)을 태우고 삶는데, 대개 민간에서 들쥐와 멧돼지가 곡식을 해치는 것을 증오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장강(張綱)이 말하기를, ‘큰 도둑이 요로를 차지하여 권세를 떨치는데, 좀도둑을 물어 무엇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 백성을 굶아먹는 탐관 오리는 하나도 삶아 죽이지 못하고 한갓 죄없는 돼지와 쥐의 신만 태운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올해의 관술 공물을 없애라고 명하였으니 이 역시 장강의 매륜(埋輪)하는 뜻(11652)이다. 그러나 탐관 오리는 어사(御史)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만, 오늘날 인간 호랑이가 조정에서 날뛰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 어사가 없앨 수 있는 것이겠는가?”</p> <p>하였다. 부제조 유복명(柳復明)이 아뢰기를,</p> <p>“서명빈(徐命彬)이 바야흐로 외직으로 경주(慶州)에 보임되었는데, 서명빈은 일찍이 도백(道伯)을 역임하였으니 부임할 수 없고, 또 경주 영장(慶州營將) 이윤성(李潤成)은 곧 서명빈의 옛 비장(裨將)이었는데 지금은 상관(上管)이 되었으</p>	<p>癸丑/藥房入診。 提調李周鎭請進滋味之饌， 上曰：“常時自奉， 不貴滋味， 況念窮民飢餓， 所奉亦云過矣。” 又曰：“新年亥、子日貢物， 例進炬子， 則宮中熏煮亥、子之神， 蓋俗惡田鼠、野豕之害稼而防之也。 張綱言， ‘豺狼當道， 安問狐狸?’ 今日貪官汚吏之剝吾民者， 一不得烹， 只煮無罪亥、子之神， 豈不可愧? 今年命除貢炬， 此亦張綱埋輪之意也。 然貪官汚吏， 一御史足矣， 而今日人虎狼， 縱橫於朝廷之上， 此則豈御史所可除乎?” 副提調柳復明奏曰：“徐命彬方外補慶州， 而命彬曾經道伯， 不可赴， 且慶州營將李潤成即命彬舊裨， 而今作上官， 體貌亦有所掣肘。 宜命移補他道。” 上曰：“此豈一承旨可達者耶? 復明推考， 命彬移除廣州府尹。”</p>

	<p>니, 체모상 역시 견제받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도로 옮겨 보임하심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한낱 승지가 아될 말이겠는가? 유복명을 추고(推考)하고, 서명빈은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옮겨 제수하라.”</p> <p>하였다.</p>	
<p>영조 69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월 4일  (계축) 4번째기사  종묘와 영녕전에 나아가  전알하기를 예법대로 하다</p>	<p>임금이 종묘(宗廟) 및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기를 예법대로 하였다. 종묘에서부터 영녕전에 이르기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돌아왔는데,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보련(步輦)을 타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성고(聖考)께서는 임진년(11653) 이후부터는 편찮으셔서 전알하지 못하셨다. 나도 늙었으니 비록 걸어서 태묘(太廟)를 알현하고자 하여도 어떻게 매양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실로 중유(仲由)가 쌀을 진 것(11654) 을 생각하는 뜻이다.”</p> <p>하였다. 이날 밤은 곧 춘향(春享)이니 임금이 판위(版位)로 나아가 몸소 희생(犧牲)을 살폈는데, 대축(大祝)이 희생의 살짐을 고함이 성실치 않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후 멀리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p> <p>“연초의 전알에 대신이 한 사람도 어가(御駕)를 따르지 않았다. 영의정이 이미 늙었는데, 그가 세상에 살 날이 얼마이기에 과거의 습관대로 하려 하는가?”</p> <p>하였는데, 임금의 음성이 매우 평온하지 않았다. 종묘의 문을 나와 연(輦)을 멈추고 어제시(御製詩)를 내렸으니, 이르기를,</p>	<p>上詣宗廟、永寧殿，展謁如禮。自廟詣殿，步往步還，藥院諸臣，請御步輦，上曰：“聖考自壬辰後違豫，不得行展謁。予老矣，雖欲步謁太廟，何可每得乎？此實仲由思負米之意也。”是夜卽春享，上詣版位，親省牲，以大祝告犧牲肥腠不誠，命事過後遠配。教曰：“歲初展謁，大臣無一人陪駕。領相已老矣，其生世幾何，而猶欲爲舊習耶？”玉音甚不平。出廟門，駐輦下御製詩曰：</p> <p>欲知世道其能靜，須問東班有大臣。</p> <p>仍詣永禧殿，奉閱世祖御容新幀，因跪泣肅廟御容前，至日暮不忍起，從臣莫不感愴。</p>



	<p>“세도(世道)의 진정됨을 알고자 하면 동반에 대신다운 자가 있는가를 물어보라.”</p> <p>하였다. 이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새로 그린 세조(世祖)의 어용(御容)을 뵈고 이어 숙종(肅宗)의 어용 앞에 꿇어앉아 울었는데, 날이 저물도록 차마 일어나지 않으니 배종하던 신하들이 감동하여 비감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p>	
<p>영조 69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 (乾隆) 14년) 3월 29 일(정축) 1번째기사 왕세자가 시좌하여 차 대를 행하고 혼취와 매장할 시기를 놓친 자를 구휼토록 하다</p>	<p>왕세자가 시좌(侍坐)하여 차대(次對)를 행하고, 하령하기를, “혼취(婚娶)의 때를 놓친 자와 매장할 시기를 놓친 자를 돌보아 주고 구휼하 라는 일은 대조(大朝)께서 일찍이 하교가 계셨으니, 비록 정해진 기한 안이라 하더라도 새로 대리를 맡게 되었으니 경외(京外)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도 록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리를 한 뒤에 무릇 입계(入啓)와 입달(入達)을 승지의 뜻대로 더러는 입계 를 하고 더러는 입달을 하니 도무지 반박(斑駁)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대리하 는 뜻이 아니다. 이 뒤로는 용정(戎政)의 경우 관계가 대단하여 경장(更張)할 것과 변방에 일이 있는 것 및 형벌이 일률(一律)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일률 로서 품의하여 재결(裁決)·감률(減律)할 것은 모두 입계하고 그 나머지는 모 두 입달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라.”</p>	<p>丁丑/王世子行侍坐次對，令曰：“婚娶 過時、埋葬過期者顧恤事，大朝曾有下 教，雖定限之內，新當代理，令京外 依例舉行。”上曰：“代理之後，凡入 啓入達者，以承旨意，或啓或達，非徒 斑駁，亦非代理之意。此後戎政則關 係大段，更張者有事邊方者及刑政關係 一律者及一律之稟裁減律者竝入啓，其 餘竝入達事，定式施行。”領議政金在 魯曰：“清人禮部咨文以爲，‘海參之入 山海關，多剩於鳳城印文之數，今年雖 免稅，後當定式收稅。’其意不但在於 收稅，必欲憑藉此事，竝行搜檢，一如 鳳城之例，前頭之慮不少。又況呈表 有期，遷延多日，必有未及生事之弊。 另飭使臣，入柵時卜物數目斤兩，無遺</p>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청나라 사람 예부의 자문에 이르기를, ‘산해관(山海關)에 들어오는 해삼(海蔘)이 봉성(鳳城)에서 검사 도장을 찍은 숫자보다 많이 불어나는데, 금년에는 비록 면세를 하지마는 뒤로는 규식을 정하여 세금을 거둬서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단지 세금을 거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빙자하여 아울러 수색과 검사를 행하기를 한결같이 봉성의 예와 같이 하고자 함이니, 앞으로의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표문(表文)을 올리는 것은 기일이 있는데, 오래 끌어 많은 날자를 허비하면 반드시 기일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말썽을 부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신(使臣)을 신칙하여 책문(柵門)에 들어갈 때 짐바리의 물건 숫자의 목록과 근량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혹시라도 서로 틀림이 없도록 하고, 역관(譯官)의 무리로 하여금 관관(關官)에게 글을 올려서 방물과 표문이 기일내에 미치지 못할 뜻을 갖추어 진술하면, 저들도 그 소중함을 생각하여 반드시 여러 날을 허비하면서 까다롭게 검사하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좌의정 조현명은 말하기를, “사신 역시 스스로 예부에 정문(呈文)하더라도 분의에 불가함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임금이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들에게 비국 당상의 겸대(兼帶)를 푸는 것을 허락하라고 명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비국 당상은 곧 밤낮으로 일하는 소임인데, 기사의 신하로서 대리 때에 분주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은, 원량(元良)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여 혜양(惠養)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겸대를 풀어주어 그 혜양에 편리하도록

開錄，毋或相左，令譯官輩呈書關官，備陳方物與表文將不及期之意，則渠亦念其所重，必不至曠日苛檢矣。”左議政趙顯命曰：“使臣亦無不可自呈於禮部之義耳。”上從之。上命耆社諸臣許解備堂兼帶，仍教曰：“備局卽夙夜之任，以耆社之臣，責其奔走於代理之時，非元良老老惠養之意，故特解兼帶以便其養。而《書》曰，‘詢茲黃髮’，代理之初，此乃先務，次對時勿拘常例，使元良，時召耆老之臣，共問國事。”

	<p>하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이 황발(黃髮)에게 물으라.’ 하였는데, 대리를 할 초두에 이것을 곧 먼저 힘써야 할 바이니, 차대(次對)를 할 때에 평상적인 전례에 구애되지 말고 원량으로 하여금 때때로 기사의 신하를 불러서 함께 국사(國事)를 물어 보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69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 (乾隆) 14년) 4월 5일 (임오) 3번째기사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다</p>	<p>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는데,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p> <p>“매사를 반드시 대조(大朝)께 품의하여 아뢴 뒤에 재결하시어 사람의 자식이 되어 감히 스스로 하지 않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p> <p>하니, 하령하기를,</p> <p>“마땅히 명심하겠다.”</p> <p>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p> <p>“간교한 백성들 가운데 전토와 노비를 다투는 자가 이치에 풀리면 갑자기 가짜 문권을 만들어 험값으로 궁방(宮房)에 팔고, 궁방에서는 내수사(內需司)에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행관(行關)하며, 곧바로 추쇄하여 타량(打量)하고, 그렇지 않으면 잡아 가두어 엄하게 처벌하여 반드시 빼앗고야 마니, 지방의 잔약한 백성들은 원통함이 뼈에 사무쳐 위로 천화(天和)를 범하기에 충분합니다. 대조(大朝)께서 깊이 이 폐단을 알고 진고(陳告)한 자는 형배(刑配)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폐단이 전과 같습</p>	<p>王世子引接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左議政趙顯命曰：“每事必稟大朝然後裁決， 以盡爲人子不敢自專之道焉。” 令曰：“當銘心矣。” 在魯曰：“奸民之爭田土、臧獲者， 理屈輒僞券， 廉賣於宮房， 宮房報內司， 啓下行關， 直令推刷打量， 否則捉囚嚴刑， 必奪乃已， 遐遠殘民， 刻骨冤痛， 足以上干天和。 大朝深知此弊， 有陳告者刑配之教， 而人不畏法， 此弊猶前。 今後未決訟而先買者， 該宮所任、內司官員從重勘處。” 從之。 諸臣略陳所懷， 卽請退出， 令曰：“大朝有日入前勿罷之教， 毋退也。” 顯命曰：“若有發問之事， 臣等當仰對矣。” 令曰：“民間疾苦， 余雖略知， 未得其詳， 卿等爲余言之。” 在魯首陳耕作之苦、良役之弊， 顯命曰：“君之有民， 猶山之有土， 土積爲山， 而掘其底則山自崩， 民聚爲</p>

	<p>니다. 지금부터는 송사(訟事)가 판결되지 않았는데, 먼저 사들이는 자는 해당 궁방의 직임을 맡은 자와 내수사의 관원을 종종 감처(從重勘處)하도록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러 신하들이 생각한 바를 간략하게 진달하고 곧 물러가기를 청하니, 하령하기를,</p> <p>“대조께서 해가 저물기 전에는 파하지 말라는 하교가 계셨으니, 물러가지 말도록 하라.”</p> <p>하자, 조현명이 말하기를,</p> <p>“만약에 물으실 일이 있으면 신 등이 마땅히 우러러 대답하겠습니다.”</p> <p>하니, 하령하기를,</p> <p>“민간의 질고를 내가 비록 대략은 알지만 그 상세한 것은 모르니, 경 등은 나를 위하여 말해 주시오.”</p> <p>하니, 김재로가 먼저 경작의 괴로움과 양역의 폐단을 진달하였고, 조현명은 말하기를,</p> <p>“임금에게 백성이 있는 것은 산에 흙이 있는 것과 같아서 흙이 쌓여 산이 되는데 그 밑을 파면 산은 저절로 무너지고, 백성이 모여 나라가 되는데 그 백성을 확대하면 나라는 곧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사랑할 자가 어찌 백성이 아</p>	<p>國，而虐其民，則國乃亡。然則可愛者非民，而可畏者亦非民乎？” 令曰：“唯。” 大臣又請出，王世子良久乃許之。</p>
--	---	---

	<p>니며, 두려워할 자가 역시 어찌 백성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하령하기를,</p> <p>“옳다.”</p> <p>하였다. 대신이 또 물러나기를 청하자, 왕세자가 한참 있다가 이에 허락하였다.</p>	
<p>영조 69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 (乾隆) 14년) 4월 11일(무자) 1번째기사 축시 정 5각에 대보단에서 친히 명나라 세 황제에게 제향을 올린다</p>	<p>축시(丑時) 정 5각(刻)에 대보단(大報壇)에서 친히 명나라 세 황제에게 제향을 올렸다.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輿)를 타고 영화당에서 나오니 승지와 사관이 제복을 입고 배종하였다. 중문 밖에 이르러 【지금의 열천문(洌泉門)이다.】 임금이 여에서 내려 동쪽 협문(夾門)을 거쳐 소차(小次)에 들어가 장차 제향을 행할 즈음에 전악(典樂)이 공인(工人) 이무(二舞)11738) 와 육일(六佾)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니,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 그리고 여러 집사(執事)들이 모두 먼저 네 번 절하였다.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이 들어와 남쪽 유문(壝門) 밖으로 나아가고 대축(大祝)은 단(壇)에 올라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장막을 걷고 통례(通禮)가 외판(外辦)을 아뢰자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소차에 나아간다. 예의사(禮儀使)가 임금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와 판위(版位)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고 인하여 행사(行事)하도록 청하자 털과 피[毛血]를 땅에 묻게 하고 헌가(軒架)는 경안지악(景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연주하였으며, 음악이 8장(章)에서 끝이 나자 임금이 네 번 절하고 위차에 있는 자도 또한 절을 하였는데 승지와 사관은 예에 따라 절하지 않았으며, 절이 끝나자 음악이 그쳤다.</p> <p>임금이 관세(盥洗)를 행하고 제 1위(位)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쪽을 향하</p>	<p>戊子/丑正五刻，親享大明三皇帝於大報壇。上具冕服，乘輿出映花堂，承、史服祭服陪從。到中門外，【今洌泉門。】上降輿，由東夾門，入小次，將行祭，典樂帥工人二舞、【文舞、武舞。】六佾，入就位，監察、典祀官、諸執事皆先四拜。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入就南壝門外，大祝陞壇，詣神位前，撤帕，通禮啓外辦，上具冕服，出小次。禮儀使導上入自東門，詣版位北向立，因請行事，瘞毛血，軒架作景安之樂、烈文之舞，樂八成，上四拜，在位者亦拜，而承、史例不拜，拜訖，樂止。上行盥洗，詣第一位尊所，西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上陞自南陞，詣太祖高皇帝神位前，北向跪，行晨裸禮，俯伏興。</p>

여 서니 등가(登歌)가 숙안지악(肅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연주하였다. 임금이 남쪽 섬돌로부터 올라와서 태조 고황제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신관례(晨禘禮)를 행하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리고 남쪽 섬돌로부터 내려와 제 2위의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서 처음의 예와 같이 하였고, 제 3위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 임금이 위차로 돌아오자 찬(饌)을 올리고 헌가는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하였다. 음악이 그치자 임금이 제 1위의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니 등가가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연주하였다. 임금이 섬돌에 올라와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근시(近侍)가 술잔을 드리니 임금이 세 번 모래 땅에 지우고 술잔을 올리니 악사(樂師)가 음악을 그쳤다. 대축이 제문을 읽으니 임금은 엎드려 있다가 제문 읽기를 마치자 임금이 내려가 위차로 돌아갔다. 그리고 예의사가 인하여 임금을 인도하여 제 2의 신위에 나아가 초헌례를 처음과 같이 거행하고 대축이 제문을 읽었으며, 제 3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

대축이 제문을 읽고 읽기를 마치자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아갔으며 헌가는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였다. 음악이 그치자 임금이 아헌례를 행하기를 처음의 예와 같이 하였고 춤은 소무(昭武)를 췌으며, 임금이 종헌례를 역시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임금이 남쪽 섬돌로부터 올라와서 의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음복을 하고 위차에 돌아와 네 번 절하였다. 대축은 변두(籩豆)를 거두고 등가는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하였으며 음악이 그치자, 헌가가 경안지악(景安之樂)을 연주하고 임금이 네 번 절을 하였으며 절을 마치자 음악이 그쳤다. 임금이 망요위(望燎位)에 나아가니 승지는 지방(紙幣)을 받들고 대축은 축폐(祝幣)를 받들어 불살랐으며, 예의사는 임금을 인도하여 소차에 돌아왔다. 이날 밤에 임금이 신관례를 행하고 내려와서 위차에 돌아오자 한 떼의 검은 구름이 북쪽으로부터 일어나 신령스러

降自南陛，詣第二位尊所，西向立，如初禮，第三位，亦如之。上降復位，進饌，軒架作雍安之樂。樂既止，上詣第一位尊所，西向立，登歌作壽安之樂、烈文之舞。上陞陛，詣太祖神位前，北向跪，近侍宿爵，上三祭沙地而吃，樂師止樂。大祝讀祭文，上俯伏，讀訖，上降復位。禮儀使因導上詣第二位，行初獻禮如初，大祝讀祭文，第三位亦如之。大祝讀祭文，讀訖，退文舞進武舞，軒架作舒安之樂。樂止，上行亞獻如初禮，而舞用昭武，上行終獻亦如之。上陞自南陛，詣毅宗神位前，北向跪，飲福降復位，四拜。大祝撤籩豆，登歌作雍安之樂，樂止，軒架作景安之樂，上四拜，拜訖，樂止。上詣望燎位，承旨奉紙幣，大祝奉祝幣焚之，禮儀使導上，還小次。是夜，上行晨禘禮，降復位，一陣黑雲，自北而起，靈雨乍零，悲風颯至，苑樹有聲，黃帳飄揚，既行四拜返，風收雲，星斗森燦，從官在庭下者無不異之。

	<p>운 비가 잠시 내렸고 슬픈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동산의 나무에서 소리가 나고 황색 장막이 휘날렸는데, 이미 네 번 절하고 돌아오자 바람에 구름이 걷혔고 북두 칠성이 찬란하게 빛났으니, 종사관(從事官)과 뜰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p>	
<p>영조 69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6월 5일 (신사) 1번째기사 송지 박선(朴銑)을 입시하라고 명하다</p>	<p>송지 박선(朴銑)을 입시하라고 명하고, 임금(임금)이 말하기를,</p> <p>“한(漢)나라 고조(高祖)를 본받겠다는 하교는 내가 어찌 침환(枕宦)11760)을 본받아 못 신하를 거절함이겠는가? 다만 복약(服藥)을 하지 않겠다고 일렀을 뿐이다. 대신이 잘못 인식하고 고치기를 청하여 임금의 허물을 가리고자 하다가 도리어 드러냈으니, 속담에 이른바 ‘남의 눈물을 닦으려 하다가 도리어 코를 상한다.’는 격이다. 한나라 고조를 본받겠다는 하교는 대신은 이미 들어서 알지만 궁밖에 사람들이야 어찌 능히 모두 알겠는가? 세도(世道)가 경박[澆薄]하여 내가 한 마디 말을 하면 문득 잘못 인식하여 전과하고, 세상에서는 역시 말을 만드는 자가 있으니, 모름지기 소정묘(少正卯)11761)에게 쓴 형률을 적용하여야 곧 나라꼴이 될 것이다.”</p> <p>사신은 말한다. 임금은 모든 백성의 표본[極]이다. 한번 말을 내면 사방이 전승(傳誦)하니 다만 나에게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말하고 침묵(沈默)함에 있어 그 마땅함을 얻으려고 할 뿐이다. 비록 전해 들은 것이 사실과 어긋나더라도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더 힘써야 할 뿐인데, 어찌 잔뜩 스스로 변명하듯 할 필요가 있겠으며, 중률(重律)을 써서 남을 제어하려 하는가? 더구나 일이 대신들의 잘못 들은 데서 일어나 격노하게 되었는데도 또한 한 마디도 그 본래의 일을 개진(開陳)함이 없으니, 그것이 과연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용납함을 취해서 그런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다.</p>	<p>辛巳/命承旨朴銑入侍，上曰：“漢高之教，予豈效枕宦而拒群臣乎？但謂不服藥耳。大臣誤認請改，欲掩君過而反彰之，諺所謂拭人涕而反傷鼻也。漢高之教，大臣已聞而知之，外人豈能盡知？世道澆薄，予有一言，便錯認而傳播之，世亦有造言者，須用少正卯之律，乃爲國也。</p> <p>【史臣曰：君人者，萬民之極。一出言而四方傳誦，只當盡在我之道，語默得其當而已。雖有傳聞失實者，有則改之，無則加勉而已，何必屑屑若自明，用重律而御人也哉？況事起於大臣之錯聽，而激之亦無一言開陳其本事，其果愚而不識而然耶？抑默而取容而然歟？是未可知也。】</p>
<p>영조 69권, 25년</p>	<p>임금이 진연(診筵)에 나아가 약원 제조 김상로(金尙魯)에게 말하기를,</p>	<p>乙酉/上御診筵，謂藥院提調金尙魯曰：</p>

<p>(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6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진연에 나아가 약원 제조 김상로에게 심기의 불편함을 말하다</p>	<p>“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만방(萬方)의 보양(補養)이 모두 거짓이니, 단지 마음을 맑게 함에 있으며 이것이 긴요한 법칙이다.’ 하였는데 지금 조정의 형상이 화평하여 다툼이 없다면 이것은 나의 몸을 보호하는 큰 요결(要訣)이다. 내가 세도(世道)에 상하여 거의 발광(發狂)할 지경인데 꼭 참고서 일으키지 않을 뿐이다.”</p> <p>하니,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p> <p>“원컨대, 임금께서는 세도를 진압(鎮壓)하소서.”</p> <p>하였고, 김상로는 말하기를,</p> <p>“오직 임금께서 진압을 하기 때문에 세도가 오히려 이만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박문수에게 말하기를,</p> <p>“동궁이 유한소(兪漢蕭)에게 하답한 글은 잘하였다.”</p> <p>하니, 대답하기를,</p> <p>“동궁은 나이 아직 어리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강령(綱領)을 총람(總攬)하시고 나이 장성하기를 기다려서 완전히 맡기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古人云, ‘萬方補養皆虛偽, 只有清心, 是要規’, 如今朝象和平無爭鬪, 則是保護予身之大者。 予傷於世道, 殆於發狂, 特忍而不發耳。” 戶曹判書朴文秀曰: “願上鎮壓世道。” 尙魯曰: “惟上鎮之, 故世道尙能如是耳。” 上謂文秀曰: “東宮答兪漢蕭之書善矣。” 對曰: “東宮年尙少, 願殿下, 總攬其綱, 待其年壯而專委之。” 上曰: “卽今黨習如膿方潰, 調護之道, 予有望於提調也。” 尙魯曰: “不潰而使之自安則善矣。”</p>
---	--	--



	<p>“지금 당습이 굵아서 금방 터질 것 같으니 조리하여 보호하는 도리를 내가 제조에게 바란다.</p> <p>하자, 김상로는 말하기를,</p> <p>“터지지 않고서 스스로 편안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p> <p>하였다.</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 (乾隆) 14년) 7월 20 일(병인) 1번째기사 좌의정 조현명이 철산의 서림성에 정한 2백 명에게 징포치 못하도록 아뢰다</p>	<p>왕세자가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p> <p>“철산(鐵山)의 서림성(西林城)에 새로 첨사(僉使)를 설치하여 바야흐로 성 안에 기계(機械)를 비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천수진(天水鎭)의 군졸로 바꾸어 정한 2백 명에게 매년 징포(徵布)토록 한다면 아마도 뒷날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이 조항은 마땅히 절목(節目) 가운데서 뽑아 버려야 할 것이다. 해진(該鎭)의 용도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니, 감영(監營)의 어전(漁箭)·염부(鹽釜) 다섯 곳을 옮겨 떼어 주어서 그 진(鎭)의 용도에 보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조 판서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p> <p>“임피(臨陂)의 나리포(羅里鋪)는 제주(濟州)의 백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입죽(笠竹)과 어곽(魚藿)으로 미곡(米穀)과 교역하여 구황(救荒)을 대비토록 한 것인데, 별장(別將)들의 간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군산 첨사(古群山僉使)로 하여금 구관(句管)토록 하였습니다마는, 폐단은 다시 전과 같다고 함</p>	<p>丙寅/王世子行次對。 左議政趙顯命言。” 鐵山西林城，新設僉使，方備置城內器械，而其中天水鎭卒之換定二百名，每年徵布，恐有後弊，此條當拔節目中。 而該鎭用度，不可不顧，以監營漁箭、鹽釜五處移劃，以補鎭用宜矣。” 從之。 吏曹判書鄭羽良言：“臨陂羅里鋪，爲濟州民設置，使之以笠竹、魚藿，交易米穀，以爲救荒者，而別將有奸弊，故使古群山僉使句管，而弊復如前。 請令本官及隣近官，眼同照檢焉。” 許之。</p>

	<p>니다. 청컨대 본관(本官) 및 인근의 관원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조검(照檢)케 하소서.”</p> <p>하니, 임금(王)이 허락하였다.</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8월 15일(신묘) 1번째기사 홍화문의 누각에 나아가 왕세자를 거느리고 사민에게 진휼을 시행하다</p>	<p>임금이 홍화문(弘化門)의 누(樓)에 나아가 왕세자를 거느리고 사민(四民)에게 진휼을 시행하였다. 파리한 늙은이를 보면 부지(扶持)하여 오가게 하고 전대가 없는 것을 보면 빈 섬을 나누어 주게 하였으며, 떠돌이로 걸식하는 자를 보고 말하기를,</p> <p>“비록 사민(四民) 밖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나의 백성이다.”</p> <p>하고, 창관(倉官)으로 하여금 쌀을 주게 하였다. 이어 하교(下敎)하기를,</p> <p>“나의 부덕(否德)으로 열조(列祖)의 부탁을 받고 임어(臨御)한 지 2기(二紀)가 되었는데, 한 가지 정사도 백성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여 부탁을 저버리고 백성을 등졌으니, 먹는 것이 어찌 달며 잠을 잔들 어찌 편하겠느냐? 이에 석년(昔年)의 명에 따르고 문왕(文王)의 시인(施仁)을 몸소 본받아 행하고자 문루(門樓)에 나아가 진휼을 시행하고 원량(元良)으로 하여금 시좌(侍坐)케 하였다. 아! 창창(蒼蒼)한 하늘이 나에게 부탁한 것도 백성이요 척강(陟降)하시는 조종(祖宗)께서 나에게 의탁한 것도 또한 백성이다. 지금 초기(抄記)한 바를 보니 그 수효가 아주 많고, 문루에 나아가서 보니 마음에 더욱 긍측(矜惻)하다. 옛적에 이윤(伊尹)11791)은 한 사람도 안정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같이 여겼다. 다섯 걸음 밖에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 역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백성이 이와 같이 많은데도 백성의 부모(父母)가 되어 오늘날 처음 보게 되니, 어찌 백성의 부모된 도리라고 하겠느냐? 저 창창한</p>	<p>辛卯/上御弘化門樓， 率王世子施恤四民。 見其癯老， 令扶持來去， 見其無囊， 令頒給空石， 見流丐者曰：“雖四民之外， 同我民也。” 令倉官給米。 遂敎曰：“以予否德， 受列祖之付托， 臨御二紀， 無一政之惠民， 孤付托而負元元， 食豈甘而寢豈便？ 茲遵昔年之命， 圖體文王之施仁， 御門施恤， 使元良侍坐。 噫！ 蒼蒼付我者民也， 陟降托我者亦民也。 今覽抄記其數夥然， 御門以見， 心尤矜惻。 昔伊尹， 一夫不獲， 若已納之溝中。 五步之內無訴之民， 若是之多， 而爲民父母， 初見於今日， 豈爲民父母之道哉？ 蒼蒼之命我爲君， 非爲君也， 乃爲民也。 天命去就民心向背， 專由於斯民之濟不濟， 不愛民不濟民， 民心怨而天命去， 雖在君位， 卽獨夫也。 思之及此， 可不凜然？ 特令元良侍坐之意， 欲念茲在茲莫效我否德， 追文王先四民之恩， 使中外困窮之民， 咸囿春臺之中， 大小臣工， 亦不</p>

	<p>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임금이 되게 한 것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백성을 위한 것이다. 천명(天命)의 거취(去就)와 민심(民心)의 향배(向背)는 오로지 이 백성을 구제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데에 연유될 것인데,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구제하지 아니하면 민심은 원망할 것이요 천명도 떠날 것이니, 비록 임금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 독부(獨夫)일 뿐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어찌 능연(凜然)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원량으로 하여금 시좌(侍) 한 뜻은 항상 생각을 여기에 두어 나의 부덕함을 본뜨지 말고 문왕이 사민에게 은혜를 먼저 한 것을 좇아서 중외(中外)의 곤궁한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성세(盛世)의 가운데로 모이게 하려는 것이니, 대소(大小) 신료들도 또한 한때의 의문(儀文)으로 나의 원량을 인도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협찬하여 나의 백성을 구제하면, 척강(척강)하시는 선왕의 혼령도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며 나 또한 자식이 있고 신하가 있다고 조종(奏) 배주(拜奏)할 것이니, 모름지기 공경히 본받기 바란다. 왕자(王者)의 시정(施政)이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미치게 하는 법이니, 양도(兩都)와 팔도(八道)의 수신(守臣)은 각각 사민을 초기하여 진휼을 시행한 뒤에 계문(啓聞)할 것이며 수령(守令)들에게 신칙하여 보민(保民)을 제일 먼저 할 일로 삼도록 하라.”</p> <p>하였다.</p>	<p>以一時儀文，導我元良，精白寅協，濟我元元，陟降必悅豫，予亦以有子有臣，拜奏陟降，其須欽體。王者施政，自近及遠，兩都、八道守臣，各抄四民，施恤後啓聞，申飭守令，以保民爲先務。”</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8월 21일(정유) 5번째기사 동궁에게 조현명을 불러오도록 하여 그를 위유하다</p>	<p>이때 조현명(趙顯命)이 도성 밖에 있었는데, 임금이 동궁(東宮)에게 이르기를, “네가 만약 좌상(左相)을 불러 이르게 하지 못하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p> <p>하니, 동궁이 황공하고 민망하여 손수 조현명에게 글을 써서 명령에 따르기를 힘쓰라고 하고는, 그대로 덕성합(德成閣)에 앉아 저녁밥을 들지 않고 승지를</p>	<p>時趙顯命在城外，上謂東宮曰：“爾若不能致左相，不可見於予。”東宮惶悶，手書顯命勉以膺命，仍坐德成閣，不御夕飯，遣承旨促入。顯命不得已入，免冠庭下，使之冠而上。世子執手勞之曰：“是余不肖也。余雖年幼，寧信譖言乎?”顯命涕泣曰：“邸下春秋</p>

	<p>보내어 들어오기를 재촉하였다. 조현명이 부득이하여 들어와 뜰 아래에서 관(冠)을 벗으니, 관을 쓰고 올라오게 하였다. 세자가 손을 잡고 위로하기를,</p> <p>“이는 내가 불초(不肖)하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나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어찌 참조하는 말을 믿겠는가?”</p> <p>하니, 조현명이 체읍(涕泣)하여 말하기를,</p> <p>“저하(邸下)께서는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성장(盛壯)하신지라 쉽게 생명을 손상케 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이 일찍이 숙묘(肅廟)께서 홀로 계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이 또 대조(大朝)께 들으니, 일찍이 저하를 칭찬하시기를, ‘태산(泰山)을 끼고 북해(北海)를 뛰어넘는 기운을 가졌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발월 횡일(發越橫逸)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말로써 차자(笱子) 가운데에 진달했던 것입니다. 횡일이라는 글은 본래 주서(朱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이 이끌어 쓴 것이었는데, 이게 송형중(宋瑩中)에게 무함당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인신(人臣)으로서 만약 저군(儲君)의 과실을 가지고 가만히 군부(君父)의 앞에서 진달하였다고 하면 이는 곧 참적(讒賊)이요 난신(亂臣)인 것입니다. 그 소장의 지향한 뜻이 또한 음험(陰險)한 것이 아니겠습니까?”</p> <p>하였다. 세자가 더불어 함께 들어가 임금을 알현하니, 조현명이 또 울면서 말하기를,</p> <p>“신은 다만 이로써 저하의 기질을 찬송(贊頌)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 직책이 사부(師傅)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진실로 저하의 기질에 병통이 있음을</p>	<p>方盛，易有傷生之慮，故臣嘗進肅廟獨處之說。 臣又聞大朝，嘗稱邸下曰，‘有挾泰山超北海之氣。’ 故敢以發越橫逸，若不可御等語，陳於笱中。 而橫逸之文，本出朱書，故臣所以引而用之，而乃爲瑩中所陷。 人臣若以儲君過失，密陳於君父之前，卽讒賊亂臣也。 其疏指意不亦陰險乎？” 世子與俱入見上，顯命又泣而言曰：“臣但欲以是贊頌睿質。 且職在師傅，苟知邸下氣質有病，仍以陳戒，義無不可。 今曰‘人臣不可論儲君於上前’，臣所未曉，而難制二字，又臣笱所無也。” 上曰：“橫逸二字，出於何書？” 顯命曰：“此出於《朱子大全》。 乃朱子誇詡其孫之文也。 若以朱子之用於手下者，用諸東宮，爲臣之罪，臣當無辭受之，而其爲贊美之語，則朱書可按。” 上曰：“世道誠難。 此輩於卿，何爲而若此？” 顯命曰：“此不難知。 丁未以後，故相李光佐一隊當國，而論議與臣等不無緩急淺深之別。 故其時一邊人，專力攻彼，不暇及於臣等。 今光佐一隊衰弱，故臣等獨爲衆矢之的也。” 上曰：“然矣。” 慰諭久之乃罷。</p>
--	--	--

안다면 즉시 진계(陳戒)한다 해도 의리에 옳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르기를, ‘인신이 저군을 성상 앞에서 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이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며, 또 ‘난제(難制)’란 두 글자는 신이 올린 차자에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횡일’이란 두 글자는 무슨 책에서 나온 것인가?”

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는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주자(朱子)가 그의 손자를 과장해 허여(許與)한 글입니다. 만약 주자가 그 수하(手下) 사람에게 쓴 것을 동궁(東宮)에게 썼다고 하여 신의 죄로 삼는다면 신은 당연히 말없이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찬미(贊美)한 말이란 것은 주서를 상고하여 보면 알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도(世道)가 진실로 어렵구나. 이 무리들이 경에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미년(1186) 이후로 고 상신 이광좌(李光

	<p>佐)의 일대(一隊)가 나랏일을 담당하였는데 그들의 논의(論議)가 신 등과는 완급(緩急)과 심천(深淺)의 분별이 없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일변(一邊)의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힘을 쏟느라고 신 등에게 미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광좌 일대가 쇠약해졌기 때문에 신 등이 홀로 못 화살의 표적(標的)이 되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러할 것이다.”</p> <p>하고는, 위유(慰諭)하기를 오래도록 하고 과하였다.</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9월 18일(계해) 1번째기사 선목단에 제사하는 의식을 수거하도록 명하다</p>	<p>선목단(先牧壇)에 제사하는 의식을 수거(修擧)하도록 명하였다. 《오례의(五禮儀)》에, ‘중하(仲夏)11823)의 두번째 절후 다음 강일(剛日)11824)에 선목에게 제사하되 마사(馬社)와 마보(馬步)로써 배향하며, 단은 동교(東郊)에 있다. 축판(祝版)에는 조선왕(朝鮮王)이라 일컬으며, 생뢰(牲牢)는 돼지 한 마리로 하고 사관(祀官)은 3품으로 하며 4배(四拜)에 3헌(三獻)으로 한다. 음복(飮福)하고 수조(受胙)11825)하며 축문과 폐백을 묻는다. 그 나머지는 영성(靈星)에 제사하는 의절과 같다.’ 하였다. 오사(五祀)에서는 소사(小祀)에 속하는데, 중간에 폐지하고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이에 이르러 임금이 원경하(元景夏)의 말을 받아들여 장차 우역(牛疫)을 빌려고 이 제도를 다듬고 대신에게 물으니, 다른 말이 없었다. 예조에서 길한 날을 가리어 단을 살곳이[箭串] 마장(馬場) 안에 쌓고 봉상시(奉常寺)에서는 위판(位版)을 만들었는데, 오방(五方)의 신위(神位)는 동방(東方)에 6위(六位)와 서쪽·남쪽·북쪽·중앙에 모두 7위(七位)로 선목위(先牧位)는 동방에 있고 천사위(天駟位)는 아래이다.</p>	<p>癸亥/命修擧祭先牧儀。 《五禮儀》, ‘仲夏中氣後剛日祭先牧, 以馬社、馬步配之, 壇在東郊。 祝版稱朝鮮國王, 牲牢豕一, 祀官三品, 四拜三獻。 飮福受胙瘞祝幣。 其餘同祭靈星儀。’ 於五祀, 屬小祀也, 中間廢不行, 至是上用元景夏言, 將禳牛疫, 而修是制, 問于大臣, 無異辭。 儀曹擇吉, 築壇于箭串馬場內, 奉常寺造位版, 五方神位, 東六位, 西·南·北·中央皆七位, 先牧位在東方, 天駟位下。</p> <p>臣按, 馬社、先牧、馬步等壇, 創於麗朝毅宗時, 壇廣九步, 高三尺, 四出陛,</p>

	<p>신이 살펴보건대, 마사·선목·마보 등의 단은 고려조의 의종(毅宗) 때에 시작되었는데, 단의 너비는 9보(步)요 높이는 3척이며, 사방(四方) 섬돌[陞]이 나오게 하고 제단의 토담[壇]은 아울러 15보이다. 축문과 폐백을 묻는 구덩이는 모두 신단(神壇)의 임방(壬方) 남쪽에 있으며 나온 섬돌은 모가 나고 깊어서 물건을 용납하기에 족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그 대략이다. 비록 소사이기는 하나 또한 불 만한 것이 있었으며, 이때 비록 우역으로 인하여 수복(修復)하였으나 그 뒤에는 마침내 아뢰는 것이 없었으니, 아! 예(禮)를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 수복하여 밝힐 것이 어찌 다만 이 한 가지 사전(祀典)뿐이겠는가?</p>	<p>壇并十五步。瘞坎皆在神壇之壬地南，出陞方深取足容物，此其大略也。雖小祀，亦有可觀，是時雖因牛疫修復古規，後竟無聞，噫！如有好禮者，其所修明，奚特此一祀典哉？</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9월 21일(병인) 1번째기사 대신과 호조 판서를 인견하고 혼인의 절차를 간략히 하도록 말하다</p>	<p>임금이 대신과 호조 판서를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대부(士大夫)들이 혼인하는 날에 납폐(納幣)하고 또 친영(親迎)을 하지 아니하며 관례(冠禮)도 또한 혼히 폐지하고 거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우의정 김약로(金若魯)와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가난하고 군색하여 예(禮)를 갖추 수 없고 또 부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행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함이니, 이 또한 사치하는 폐단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친영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일 전에 납폐하는 것을 왜 꺼려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냐?”</p>	<p>丙寅/上引見大臣、戶判。上曰：“今士大夫婚日納幣，又不親迎，冠禮亦多廢而不行，何也？”右議政金若魯、戶曹判書朴文秀曰：“爲其貧窶，無以備禮，且恥不及於富者，故不肯行，亦奢之弊也。”上曰：“雖不能親迎，前期納幣，何憚而不行乎？”乃下教申飭。又命國婚同牢宴，但用茶果數器，悉除油蜜果宴床。文秀曰：“度支定制雖成，此外或有自宮中取用，則是爲別例矣。但一取用，則因爲規例，恐有從中作奸之弊，請別爲定制。”上乃下教：“凡自內取用，中官必聽傳教啓下單子，然後始許取用，不然則度支之臣執奏。”</p>

하고, 이에 신칙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였다. 또 국혼(國婚)의 동뢰연(同牢宴)11827) 에는 다만 다과(茶菓) 두어 그릇만을 쓰고 유밀과(油蜜果)의 잔치상은 모두 제거토록 하라고 명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탁지(度支)의 정제(定制)가 비록 이루어졌지만, 이 밖에 혹 궁중(宮中)으로부터 취용(取用)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이것은 별례(別例)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번 취용하면 이로 인하여 규례가 되어 혹시 그 안에 작간(作奸)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따로 정제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에 하교하기를,

“무릇 대내(大內)로부터 취용할 경우에는 중관(中官)이 반드시 전교(傳敎)의 계하 단자(啓下單子)를 들은 연후에 비로소 취용을 허락토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탁지의 신하가 집행하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국초(國初)에 대사헌 남재(南在)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대내(大內)에 쓸 재화(財貨)가 있으면 임금이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승지에게 전하고 승지가 복계(覆啓)하여 임금 앞에서 왕패(王牌)를 써서 내린 다음에 시행했는데, 고려 말에 와서는 내시가 직접 왕패를 내리고 승지에게 관여시키지 아니하여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폐단이 있었습시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대내에 쓸 것이 있으면 승지가 친히 계품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지금의 의정부이다.】 에 내리어 그 폐단을 고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

【史臣曰：國初大司憲南在言曰，‘古者凡有內用財貨，上命內侍，傳於承旨，承旨覆啓上前，署下王牌，然後施行，麗季，內侍直下王牌，而不關於承旨，有許冒之弊。請自今凡有內用，承旨親稟，下都評議使司，【今議政府。】以革其弊’，從之。近世以來此法廢弛，凡有取用於各司，中人以片紙書物名，招曹吏示之責納。故奸弊日滋，至有假稱苑閣修改，中人與吏隸，相結盜取二千緡以上。此類非一，文秀之請爲定制，誠得其職。然既有定例，又存別例而不罷，則是自內費用濫取之法，依舊不除，而定例特一虛文耳，烏在乎剋省之意哉？】



	<p>로 따랐었다. 근세(近世)에 오면서 이 법이 폐지되고 해이해져서 무릇 각사(各司)에 취용할 것이 있으면 중관이 조각 종이에 물명(物名)을 써서 그 조(曹)의 하리(下吏)를 불러서 보이고 상납할 것을 책임지웠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속이는 폐단이 날로 불어나서 거짓으로 원각(苑閣)을 개수한다고 일컫고 중관이 이례(吏隸)와 더불어 서로 짜고 2천 민(緡) 이상을 도취(盜取)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종류가 한 가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문수가 청하여 정제를 만들었던 것이니, 진실로 그 직책을 잘 수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 정례(定例)가 있는데도 또 별례(別例)를 두고 혁파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대내로부터의 비용을 함부로 취하던 법을 옛 그대로 두고 제거치 않는 것이어서 정례는 특히 하나의 헛된 문서일 뿐이니, 어디에 그 삭감한 뜻이 있다고 하겠는가?</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0월 1일(병자) 1번째기사 임금이 소양(搔癢)의 증후가 있어 이날부터 약원(藥院)에서 문후(問候)하다</p>	<p>임금이 소양(搔癢)의 증후가 있어 이날부터 약원(藥院)에서 문후(問候)하였다.</p>	<p>朔丙子/上有搔癢候， 自是日藥院問候。</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0월 6일(신사) 2번째기사 내의원(內醫院)에서 전례(前例)에 따라 우락(牛酪)을 올리다</p>	<p>내의원(內醫院)에서 전례(前例)에 따라 우락(牛酪)을 올렸다. 하루는 임금이 암소의 뒤에 작은 송아지가 따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매우 측은(惻然)히 여기며 어공(御供)에 낙죽(酪粥)을 정지토록 명하였다.</p>	<p>內醫院例進牛酪。 一日， 上見牝牛之後， 小犢隨之， 心甚惻然， 命停御供酪粥。</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0월 6일(신사) 2번째기사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妃國) 당상을 인접하였다. 우의정 김약로(金若魯)가 초선(抄選)한 선비를 불러서 오게 하여 서연(書筵)에 출입케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p>	<p>왕세자가 대신과 비국(妃國) 당상을 인접하였다. 우의정 김약로(金若魯)가 초선(抄選)한 선비를 불러서 오게 하여 서연(書筵)에 출입케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p>	<p>壬寅/王世子引接大臣、備堂。 右議政金若魯請招致抄選之士， 出入書筵，</p>

<p>(乾隆) 14년) 10월 27일(임인) 1번째기사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다</p>	<p>따랐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전라 감사 한익모(韓翼謨)가 장계(狀啓)를 올려 말하기를, ‘병사(兵使) 조동제(趙東濟)는 군무(軍務)가 아닌데도 담양 부사(潭陽府使) 김시영(金始煥)을 장계를 올려 파직케 하였습니다.’ 했으니, 조동제를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혼인과 장사의 시기를 넘긴 자는 도와주라는 명이 있었는데, 지금 북도(北道)의 성책(成冊)을 보매 흑 소미(小米) 한 말과 당미(糖米) 세 말을 주었으니, 감사 정익하(鄭益河)는 마땅히 중추(重推)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집의 윤지태(尹志泰)가 전달을 거듭 상달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상달하기를, “병비(兵裨)를 추론(推論)하는 것은 체례(體例)에 지나지 아니하는 일인데 방백(方伯)의 절제(節制)를 어기고 거부했으니, 청컨대 조동제를 삭직(削職)하고, 영해 부사(寧海府使) 민우(閔隅)는 쇠잔하여 폐단을 제거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從之。 若魯曰：“全羅監司韓翼謨狀言，‘兵使趙東濟，非軍務而狀罷潭陽府使金始煥。’宜罷東濟。”從之。 若魯曰：“頃有婚葬過時者，助給之令，而今見北道成冊，則或給小米一斗、糖米三斗，監司鄭益河宜重推。”從之。 執義尹志泰申前達，不從。 又達：“推論兵裨，不過體例，而違拒方伯之節制，請趙東濟削職，寧海府使閔隅，衰難祛瘼，請罷職。”從之。</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 (乾隆) 14년) 11월 5</p>	<p>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다. 우의정 김약로가 말하기를, “전주(全州)의 대동미(大同米)를 태안(泰安) 땅에서 취재(臭載)11835) 하였으</p>	<p>王世子引接大臣、備堂。 右議政金若魯言：“全州大同，臭載於泰安地，請申明事目，使不得晚時發船。 船漕之</p>

<p>일(경술) 4번째기사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다</p>	<p>니, 청컨대 사목(事目)을 분명히 밝혀 때늦게 배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소서. 선조(船漕)로 6백 석(石)을 초과하게 신고 세선(稅船)으로 천 석을 초과하게 실은 자는 일일이 조사하고 점검하여 죄주게 할 것이며, 3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는 차원(差員)을 포구(浦口) 가에 앉혀 두어 만약 8월을 지나면 발선(發船)을 허락하지 말게 해서 늦게 출발하여 곡식이 썩게 되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p> <p>하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p>	<p>過六百石，稅船之過千石者，一一查點抵罪，自三月至八月，差員坐浦邊，若過八月，不許發船，俾無晚發致敗之患。” 竝依施。</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 (乾隆) 14년) 12월 21 일(을미) 2번째기사 훈련 대장 김성응 등 이 사대부의 출회와 약물을 구하는 폐단을 고하다</p>	<p>임금이 대신과 장신(將臣)을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p> <p>“조령(鳥嶺) 밑의 7읍(邑)에서 세미(稅米)를 신고 조령을 넘어 충주(忠州)의 강창(江倉)에 납입하는 것은 그 폐단이 매우 큼니다. 청컨대 돈으로 대신하여 강창에 납입하게 하소서. 그리고 노비(奴婢)의 윤삭포(閏朔布)도 또한 감제(減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임금의 말이 군문(軍門)의 모재(耗財)에 미치자, 훈련 대장 김성응(金聖應) 등의 다투어 사대부(士大夫)의 출회(糶灰)11868) 와 약물(藥物)을 구하는 폐단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사람이 부형(父兄)의 병이 있어서 약이(藥餌)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는가? 이는 윤이(倫彝)에 관계되는 일이니, 차라리 군문의 재물을 잃더라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옛적에 선조(先朝)께서 하교하시기를, ‘만약 푸른 큰 대나무를 주지 않으면 사대부가 어디서 죽력(竹瀝)11869) 을 얻겠는가?’ 하셨다.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도 당재(唐材)를 내국(內局)에서 구했는데, 하물</p>	<p>上引見大臣、將臣。 戶曹判書朴文秀言：“嶺底七邑載稅米，踰鳥嶺納于忠州江倉，其弊甚巨。 請代以錢納于倉。 其奴婢閏朔布，亦宜減除。” 上許之。 上語及軍門耗財，訓練大將金聖應等爭言士大夫之求糶灰、藥物之弊，上曰：“人有父兄之病求藥餌，豈可防之耶？此則關於倫彝，寧失軍門之財，不可不予也。 昔先朝有教曰，‘若非予青大竹，士大夫從何得竹瀝也？’予在潛邸，亦求唐材於內局，況他人乎？軍門可無也，此則不可已也。”</p> <p>【史臣曰：一國財賦，半入軍門，所以備器械而養軍兵也。 掌臣不擇耗蠹多端，而曾不自反，迺以糶灰藥物等小費，妄奏天聽，要以掩己過而薄時風，</p>

	<p>며 다른 사람이겠느냐? 군문(軍門)에는 없어도 되지만 이것은 그만두게 할 수가 없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은 말한다. 일국(一國)의 재부(財賦) 절반이 군문으로 들어가서 기계(器械)를 갖추고 군병(軍兵)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관장(管掌)하는 신하를 선택하지 않아서 소모(消耗)되는 사단(事端)이 많은데도 일찍이 스스로 돌이켜 살피지 않고는 이에 출회와 약물 등의 작은 소비만을 가지고 망령되게 천청(天聽)에 아뢰어 자신의 허물은 가리고 당시의 풍속만 박(薄)하게 만들려고 하였는데, ‘군문에는 없어도 되지만 이것은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하교는 참으로 대성인(大聖人)의 규모(規模)라 하겠다.</p>	<p>‘軍門可無，而此則不可已’之教，眞大聖人規模也已。】</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2월 30일(갑진) 1번째기사 목사 정언유의 요청에 따라 진곡 3천 석을 바다에 띄워 제주 백성을 구제토록 하다</p>	<p>진곡(賑穀) 3천 석을 바다에 띄워 제주(濟州)의 백성을 구제하도록 명하였는데, 목사(牧使) 정언유(鄭彦儒)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p>	<p>甲辰/命以賑穀三千石浮海，救濟州民，從牧使鄭彦儒之請也。</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2월 21일(을미) 3번째기사 구윤명이 성조의 어린 시절의 미담을 상문하</p>	<p>약방(藥房)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병조 판서 김상로(金尙魯)에게 이르기를, “최진해(崔鎭海)와 최수강(崔壽岡)에게 어찌하여 관직을 제수하지 않느냐?” 하니, 김상로가 사죄하기를, “우미(愚迷)하여 깨닫지 못했다가 지금 하교를 듣고는 비로소 크게 깨달아서 감읍(感泣)합니다.” 하고, 드디어 무직(武職)을 제수하였다. 최(崔)는 곧 육상궁(毓祥宮)의 본가(本</p>	<p>藥房入診。上謂兵曹判書金尙魯曰：“崔鎭海、崔壽岡，何不除職？”尙魯謝曰：“愚迷不覺，今聞下教，始大覺而感泣也。”遂除武職。崔卽毓祥宮本家也。上問龍潛池長廣於具允明曰：“聖祖幼時沐浴於池乎？墜潛於池乎？”</p>

<p>다</p>	<p>家)이다. 임금이 용잠지(龍潛池)의 깊이와 너비를 구윤명(具允明)에게 묻기를, “성조(聖祖)께서 어린 시절에 못에서 목욕을 하신 것이냐? 못에 떨어져서 잠기신 것이냐?”</p> <p>하니, 대답하기를,</p> <p>“어린 시절 유희(遊戲)하실 때에 실족(失足)하여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성조께서 어린 시절 신의 7대조 대사성 신 구성(具晟)에게 수학(受學)을 하셨는데 신의 할아버지는 집이 가난하여 밥 짓는 계집 한 사람만 있었고 국을 만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도(門徒) 들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조께서 친히 국을 만드시고 그릇에 담아서 나누려고 할 즈음에 손님이 와서 문으로 들어오다가 잘못하여 한 발을 국 속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으나 성조께서는 애써 만든 국을 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또 버선 신은 발로 잠깐 적신 것이 무엇이 더러울게 있느냐 하시고 이연(怡然)히 국을 진어(進御)하시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했다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담(美談)으로 전해 오기 때문에 감히 상문(上聞)합니다.”</p> <p>하였다.</p>	<p>對曰：“沖年游戲時，跌墜云耳。聖祖沖年，受學於臣七代祖大司成臣晟，臣祖家貧，只有炊飯一婢，而作羹無人，故門徒輪回爲之。一日，聖祖親爲作羹，盛器將分之際，客來入門，誤墜一足於羹中。諸人皆以爲汚，聖祖以爲勤勞作羹，不當棄之，且着襪之足暫漬何汚，怡然進羹，人皆歎服，至今傳爲美談，故敢上聞矣。”</p>
<p>영조 70권, 25년 (1749 기사 / 청 건륭(乾隆) 14년) 12월 23일(정유) 4번째기사 제조 김상로가 다시 온천 물을 길어 오게 할 것을 청하나 정지토록 분부하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제조(提調) 김상로가 다시 온천(溫泉) 물을 길어 오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지토록 하라. 내가 온양(溫陽)의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히 세시(歲時)를 지내게 하련다.”</p> <p>하였다.</p>	<p>藥房入診。提調金尙魯請令更汲溫水，上曰：“止之。予欲使溫陽之民，安過歲時矣。”</p>
<p>영조 71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p>	<p>선혜청의 정례(定例)를 수정(修正)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아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였다. 지금 탁지(度支)</p>	<p>命修正宣惠廳定例。教曰：“孔聖云，‘節用而愛人。’今者度支定例，杜滲</p>

<p>(乾隆) 15년) 1월 6일 (경술) 3번째기사 선혜청의 정례를 수정하라고 명하다</p>	<p>는 조례를 정하여 삼루(滲漏)하는 염려를 막고 나오고 들어가는 곳을 알도록 하였다. 진배(進排)하는 모든 물건은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에는 오로지 공물(貢物)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물의 근본은 선혜청에 있으니 선혜청과 탁지는 서로 표리(表裏)의 관계가 있다 하겠다. 탁지에는 정례가 있는데 선혜청에 유독 정례가 없을 수 없으니, 탁지의 예에 의거하여 정례를 수정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漏之患，知出入之門。凡進排之物，自大同以後，專由貢物，貢物之本，在於惠廳，惠廳、度支可相表裏也。度支有定例，惠廳不可獨無定例，依度支例，修正定例。</p>
<p>영조 71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1월 8일 (임자) 1번째기사 굴 한 쟁반을 정원에 내리고, 야대를 행하다</p>	<p>임금이 굴 한 쟁반을 정원(政院)에 내렸다. 굴을 다 먹자, 어제시(御製詩) 한 수를 내려 대궐 안에 입직한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게 하였다. 이어서 야대를 행하고 주찬(酒饌)을 내려 마음껏 즐기고 파하였다.</p>	<p>壬子/上下盤橋于政院。橋盡，有御製詩一絕，使闕中入直諸臣賡進。仍行夜對，賜酒饌，盡歡而罷。</p>
<p>영조 71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1월 9일 (계축) 1번째기사 이조 판서 원경하 등이 인재의 양성에 대하여 아뢰다</p>	<p>이조 판서 원경하(元景夏)가 아뢰기를, “굴을 내리시며 시를 짓게 하신 일은 국조(國朝) 3백 년 만에 다시 있게 된 훌륭한 일입니다. 조종조에는 이러한 훌륭한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 문사(文士)들이 모두 몹시 장려되어 인재가 성하게 배출되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배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란(危亂)이 있을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육신(死六臣)처럼 절의를 세운 선비들은 대체로 영묘(英廟)11883) 께서 모아두고 배양하신 사람들입니다. 임진 왜란 때에도 이순신(李舜臣) 한 사람만 난리 중에 발탁된 사람이고 여타 충신 석보(碩輔)로서 끝내 중흥의 위공을 세운 사람은 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이원익(李元翼) 같은 사람으로 모두가 선조 초년에 배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조의 인재가 그렇게 성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매양 영묘조(英廟朝)보다</p>	<p>癸丑/吏曹判書元景夏奏曰：“頒橋詩，是國朝三百年再有之盛事。祖宗朝頻有如許盛事，故一時文學之士無不激勸，人才蔚興。爲人君者，若不預爲培植，則何以得人於危亂之際乎？如六臣等立節之士，蓋英廟儲養中人也。壬辰之亂，只一李舜臣卽臨亂拔擢之人，而其餘忠臣、碩輔，卒建中興之烈者，如李恒福、李德馨、尹斗壽、尹根壽、柳成龍、李元翼，莫非宣廟初年培植之材也。”上曰：“宣廟朝人材如彼其盛，而今人每謂不及於英廟朝何也？”景夏曰：“英廟朝，乃我朝一元文明之</p>

	<p>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원경하가 말하기를,      “영묘조는 우리 나라의 제일 으뜸가는 문명(文明)의 기회였기 때문에 도덕과 문장의 선비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예악(禮樂)을 만들고 정비하는 시대라서 백공(百工)의 비상한 기능을 가진 자로 박연(朴堧) 같은 이들도 시대에 응하여 태어났으며 경쇠[磬]를 만드는 옥이나 율(律)을 만드는 기장[黍]이 역시 시대에 응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양(南陽)의 옥과 해주(海州)의 기장도 그때에 나온 것들이다.”      하였다. 원경하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박연은 가슴과 배를 두드리며 음률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들었다.”      하였다. 홍중효(洪重孝)가 말하기를,      “신이 몇 해 전에 명을 받들고 차왜(差倭)를 접대하느라 오랫동안 동래(東萊)에 머물면서 임진란 때에 송상현(宋象賢)이 사절(死節)한 일을 자세히 들었는데, 순·원(巡遠)11884) 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고, 원경하가 말하기를,      “송상현은 개성부 사람입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장상(將相)과 귀척(貴戚)은 적의 궐정(闕庭)에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군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여 목숨을 바치고 멸족지환(滅族之患)을 당하는 자는 바로 먼 지방 변두리 고을의 임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송서(宋書)를 보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개연한 생각이 들지 않은</p>	<p>會，故不但道德、文章之士輩出，制作禮樂之時，技藝百工之超常者如朴堧之徒，應時而出，造磬之玉、造律之黍，亦應時而生矣。” 上曰：“南陽之玉、海州之黍，亦其時所生也。” 景夏曰：“然矣。至於朴堧，則叩胸腹以叶樂律云矣。” 上曰：“予亦聞之。” 洪重孝曰：“臣年前奉命僱倭，久留東萊，詳聞壬辰亂時宋象賢死節事，與巡、遠無異。” 景夏曰：“宋象賢卽開城府人也。朱子曰，‘將相、貴戚，頓顙賊庭，起兵討賊，殺身湛宗者，卽遠方下邑人主不識面目之人。’此言誠是矣。” 上曰：“予亦見《宋書》，至此未嘗不慨然也。”</p>
--	---	---

	<p>때가 없었다.” 하였다.</p>	
<p>영조 71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2월 10 일(계미) 1번째기사 영희전에 작헌례를 행 하다. 사대부의 사치를 개탄하다</p>	<p>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작헌례를 행하였는데, 제2실에 영정의 신본(新本)을 봉안했기 때문이었다. 왕세자가 어가를 따랐고 저녁에야 환궁하였다. 임금이 재전(齋殿)에 나아가 승지 홍익삼(洪益三)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늘 염려를 하셨고, 영빈(寧嬪)도 매양 경계하기를, ‘자봉(自奉)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모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듣자니,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貂皮)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하니, 홍익삼이 말하기를, “사치하는 풍조는 과연 성상의 말씀과 같으나, 초피는 전연 없고 더러 양피(羊皮)의 이불은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 어린 사자(士子)가 말을 타는 것도 해괴하다.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길에서 보니 사자의 걸음걸이는 딴 사람과 달랐고, 하인들은 부복하여 지나치고는 눈여겨 보면서 말하기를, ‘양반’이라고 하였다. 국법에는 말을 타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도 지금은 걸어다니는 사자가 없다. 옛사람은 온돌에서도 자지 않으면서 ‘인생이 풀밭 사이에서 자지 않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은 근력을 튼튼히 하여 편안하고 한가할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무변(武弁)11917) 으로서 수척했던 차도 병사나 수사만 지내면 비대해져서 옛날의 모습이 없어지니,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p>	<p>癸未/上行酌獻禮于永禧殿，以第二室影幀新本奉安故也。王世子隨駕，夕還宮。上御齋殿，謂承旨洪益三曰：“予一生薄衣惡食，故慈殿每以爲慮，寧嬪每戒云，‘自奉甚薄，老必生病’，而吾今無病，衣食不厚之效也。凡人筋力，全消於厚衣厚食。似聞士夫家，多有貂皮裘不知名之饌。奢侈何至此之甚耶？”益三曰：“侈風果如聖教，而貂則絕無，或有羊衾矣。”上曰：“年少士子之騎馬，亦可駭矣。予於潛邸時，路上見之，則士子行步，與他有異，下人輩俯伏過之，目之曰兩班。國典亦禁其騎馬，今則無步行士子。古人不宿烟埃曰，‘人生安知不草樹間寄宿耶?’此言出於固筋力而安不忘危之意也。武弁瘦瘠者過兵、水使，則肥大無舊容，豈不可慨乎?”</p>
<p>영조 72권, 26년</p>	<p>임금이 의릉(懿陵)에 거동하였는데, 돌곶이 고개[石串峙]를 지나갈 때 한 어</p>	<p>庚寅/上幸懿陵，過石串峙，有一小兒</p>



<p>(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8월 20 일(경인) 1번째기사 의릉에 거동할 때 길 가에서 호소한 어린이의 처리에 관한 일</p>	<p>린아이가 길가에서 호소하여 금오(金吾)가 붙잡았다. 임금이 승지 조명채(曹命采)에게 유시하기를,  “그의 근파(根派)를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어가(御駕)가 능 아래에 이르자, 조명채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태종 대왕(太宗大王)의 7대손으로 본디 금천(金川)에 살았는데 걸식을 하며 양천(陽川) 땅에 이르러 부모가 모두 죽어 초빈(草殯)만 하고 장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길가의 한 어린아이가 금지(金枝)의 후예라 하는데, 이는 바로 사민(四民) 가운데서 고(告)할 곳이 없는 사람이다. 양천 현감(陽川縣監)은 지난번 신칙한 후에 잘 받들어 거행하지 못해 현 안의 고할 곳이 없는 아이로 하여금 관(官)에 호소하지 못하게 하여 길가에서 슬피 울부짖게 했으니, 단속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해당 도신(道臣)은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며, 그 고아는 해청에서 식물(食物)을 넉넉히 제급(題給)할 것이며, 그 부모 역시 본현으로 하여금 돌보아 묻게 하라.”  하였다.</p>	<p>路傍呼訴，金吾捕之。上諭承旨曹命采曰：“其根派問啓。”駕至陵下，命采曰：“詳問其兒，則以爲，‘太宗大王七代孫，本居金川，而流丐至陽川地，父母俱死，而草殯未葬’云矣。”教曰：“道傍一孤兒，金枝後裔，此正四民中無告之人。陽川縣監，頃者申飭之下，不能善爲奉承，使縣中無告之兒，莫訴於官，哀籲道傍，不可無飭。令該府處之，當該道臣，從重推考，其孤兒，令該廳食物從厚題給，其父母，亦令本縣，顧助理瘞。”</p>
<p>영조 72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9월 2일 (신축) 2번째기사 비가 개이지 않아, 경외의 용도를 절약할 것을 전교하다</p>	<p>이때에 항상 비가 내려 별이 뜬 날이 적어 열흘 동안이나 개이지 않았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나라의 경사가 이와 같이 나의 추모하는 마음과 슬픈 뜻을 이미 하유(下諭)하였다. 그러나 벼를 베기 전에 가을비가 이와 같으니, 이는 오늘날 여러 사람의 마음이 기쁜 나머지 해이하고 나태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무신년(12062)에도 가을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하여 감선(減膳)을 했었다. 아! 이제 비록 힘이 약해져 없어졌더라도 백성을 위하려는 마음은 가슴속에 들떠 있다. 오늘의 마음은 곧 무신년 가을의 마음과 같은데, 슬픈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겠는가? 오늘부터 5일 동안 감선하고 균역청(均役廳)의 여러 당상은</p>	<p>時恒雨少暘，浹旬不霽。上教曰：“邦慶若此，予則追慕之心、懷惕之意已諭。而刈禾之前，秋雨若此，無乃今日群心因喜懈怠而然乎？往者戊申，因秋雨之過而減膳。嘻！今雖衰耗，爲民之心，憧憧于中。今日之心，卽戊申秋之心，懷惕之意，何以表乎？自今日減膳五日，均役諸堂，申飭諸道，使我濟民之意，有終條理焉，大小臣工，</p>

	<p>제도(諸道)에 신칙하여 나의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이 결실이 있게 하고, 대소 신료들은 나의 이런 뜻을 본받아 부지런히 직무를 보도록 하라. 아! 한유(漢儒)의 설(說)12063) 을 내가 비록 본받지는 못하지만 음양의 징조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궐 안의 긴요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 내보내 왕년의 성덕(聖德)을 본받을 것이며, 이번 탄일(誕日)에는 표리(表裏)12064) 이외의 정부(政府) 물선(物膳) 역시 그만두고, 경외의 용도를 절약하기를 힘써 저축을 늘려 뜻밖의 변에 대비하라.”</p> <p>하고, 이어서 비국에 명하기를,  “중외에 신칙하여 모든 영선(營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역시 우선 정지하게 하라.”</p> <p>하였다.</p>	<p>體我此意，恪勤供職。噫！漢儒之說，予雖不效，陰陽之徵，亦不可不顧，闕中不緊之人，其將抄放，體昔年之盛德，而今番誕日，表裏外政府物膳，亦爲置之，京外用度，務從節省，以廣儲蓄，以備不虞。” 仍命備局，申飭中外，九營繕不可已者外，亦令姑停。</p>
<p>영조 72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년) 9월 17일(병진) 2번째기사  온궁에 나아가다. 사옹 제조 원경하가 어공에 대해 아뢰다</p>	<p>임금이 온궁(溫宮)에 나아갔다. 사옹 제조 원경하(元景夏)가 아뢰기를,  “어공(御供)이 3일 간격으로 서울에서 내려오니 실로 썩을 염려가 있어 사체(事體)가 미안하고, 신들의 마음 역시 어떻겠습니까? 날마다의 감선(監膳) 물자는 비록 감제(減除)하였더라도 본도 백성들의 마음 역시 모른체해서는 안 되니, 그들의 도리를 펴도록 해야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한번의 거동에 폐를 끼침이 많다.”</p> <p>하니, 도제조(都提調)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행행(幸行)’의 ‘행(幸)’ 자는 윗사람이 행차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다행스럽게 여긴다는 뜻인데, 어찌 폐단이 된다고 말할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은혜를 베푼 덕이 없는데, 백성들이 어찌 다행으로 여기겠는가?”</p> <p>하니, 원경하가 말하기를,  “신민(臣民)의 도리를 전부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영보정(永保亭)의 생복(生</p>	<p>上御溫宮。司饗提調元景夏啓曰：“御供間三日自京下來，實有腐傷之慮，事體未安，而臣等之情理亦何如？逐日監膳物種，雖爲減除，本道民情亦不可孤，伸其道理宜矣。” 上曰：“予志已定。一次動駕，貽弊多矣。” 都提調金若魯曰：“幸行之幸字，上行而下以爲幸也，豈以貽弊爲言乎？” 上曰：“予無德惠，民何幸之有？” 景夏曰：“臣民之道理，不可全廢。永保亭生鰓之屬，則支供少無所妨。” 上曰：“只飲溫水而已，決不進御土產矣。” 右議政鄭羽良曰：“下教至此，德音必遠被，而上下情理無以伸矣。” 若魯曰：“聖德至</p>

	<p>鰓) 등속은 지공(支供)하더라도 조금도 방해됨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온수(溫水)만 먹을 뿐 결코 토산품(土產品)을 먹지 않겠다.”  하니,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  “하교가 이에 이르니, 덕음(德音)이 반드시 멀리 입혀질 것이나, 상하의 정리(情理)를 펴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김약로는 말하기를,  “성덕은 지극하나, 도리에 있어서는 서운합니다.”  하였다.</p>	<p>矣，而道理則缺然矣。”</p>
<p>영조 72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9월 30  일(기사) 2번째기사  기호 두 도에 쌀 7백  석을 내려 거둥 때 역  을 한 백성에게 줄 비  용에 보태게 하다</p>	<p>기호(畿湖) 두 도에 쌀 7백 석을 내려 온천 거둥 때 역(役)을 한 백성에게 줄  비용에 보태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거둥 때 두 도의 민폐를 생각하여  특별히 쌀 1천 석을 주었는데, 기백(畿伯) 유복명(柳復明)이 아뢰기를,  “이번의 역사는 모두 전부(田夫)로 하여금 길을 닦게 하였으니, 쌀을 줄 필요  가 없으며, 비용을 아끼는 도리에서 환납(還納)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전부들이 길을 닦았다고 하지만 교량(橋梁)의 재목은 백성들에게서 나  오지 않았느냐?”  하고, 7백 석을 본도에 신칙하여 도로와 교량을 닦은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  어 주도록 명하였다.</p>	<p>賜米七百石于畿、湖兩道，以補溫幸時  役民之費。 先是上軫念幸行時兩道民  弊，特給米一千石，畿伯柳復明奏曰：  “今番之役，皆令田夫治道，不必給米，  其在惜費之道，當還納矣。” 上曰：  “雖以田夫治道，橋梁材木，不出於民  耶?” 命給七百石，飭本道，令均給道  路、橋梁修治之民。</p>
<p>영조 72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11월 4  일(계묘) 1번째기사  천둥의 이변으로 감선  10일을 명하다</p>	<p>천둥의 이변으로 인해 감선(減膳) 10일을 명하였다.</p>	<p>癸卯/因雷異，命減膳十日。</p>
<p>영조 72권, 26년</p>	<p>지평 박기채(朴起采)가 상서하여 말하기를,</p>	<p>戊戌/持平朴起采上書言：</p>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12월 29  
일(무술) 1번째기사  
지평 박기체가 신임  
옥사와 관련하여 상서  
하다

“심약(沈翥)이 동생을 변명하는 글에서 ‘억지로 무협(誣脅)하였다.’라고 하는 등의 말은 매우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심필(沈泌)의 일에 대한 전후의 전말은 이미 대조(大朝)께서도 환히 알고 계시는 바요, 심필을 처단한 것이 이미 분명하고 또 엄하였는데 심약이 진술한 글에서는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고 이에 감히 말하기를, ‘그 수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모두 성교(聖敎)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말을 만들어 낸 뜻이 모두 매우 분노한 데서 나와 아주 심히 무엄하지 않음이 없으니, 대간의 말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어디엔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조동하(趙東夏)의 일은 그때의 전교에서 신의 논한 바를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돌렸으니 바로 하나의 변서(變書)의 말이 되었고, 대신(大臣)이 아뢰는 데 이르러서는 연석(筵席)에서 말한 비밀을 비록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신이 조동하를 변명해 주기에 급급하여 대간의 글을 급서(急書)의 과(科)로 몰아넣었으니, 과연 대신의 체면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무부(武夫)를 위한 처지에서는 본디 충후(忠厚)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대각(臺閣)을 가볍게 보고, 언로(言路)에 재갈을 물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대개 신이 조동하를 논한 바는 다만 그 밖으로 나타난 대략의 자취였을 뿐이며, 그의 아버지 조엄(趙儼) 역시 최마(衰麻)를 걸친 몸으로 신축년(12156)·임인년(12157) 때에 발통(發通)을 주장해 상소하는데 참여하였으니, 그들이 당목(黨目)을 표방하고 나선 습성은 본디 그들 집에서 대대로 이루어 온 악습인데도 그가 공사(供辭)에서 말하기를, ‘부자(父子)가 상대해 당습의 마음이 싹트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로 속인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는데도 대신이 씻어주고 장려해서 서용하려는 것을 신은 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약의 말이 이처럼 심각 긴절하게 다시 조동하의 일을 거론했다가 또 변서(變書)했다는 대신의 배척을 받았으니, 신이 감히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핑계하여 다시 말을 트집잡아 꾸짖겠습니까?”  
하니, 왕세자가 예사 비답을 내렸다.

沈翥訟弟之書，勒稱誣脅等語，不覺駭痛。 泌事之前後顛末，已爲大朝之所洞知，其所以處泌者，既明且嚴，而翥之陳書，張皇費辭，乃敢曰，‘其許其收，皆出聖敎。’ 其遣辭造意，皆出憤懣之極，罔非無嚴之甚，則其於臺言之仇怨，將何所不至耶？ 趙東夏事，伊時傳敎，以臣所論，都歸於涉異之科，而卽一變書之言，至有大臣所達，筵席言秘，雖不得其詳，大僚之汲汲於洗拂東夏，而直驅臺章於急書之科者，果謂大臣之得其體乎？ 爲武夫地，固可謂忠且厚矣，其於輕臺閣而鉗言路何哉？ 蓋臣所論東夏，特其皮外粗跡而已，且渠父儼，亦以衰麻之身，當辛、壬之際，主張發通，參涉陳疏，則其標榜黨目之習，本是渠家世濟之惡，而渠之供辭以爲，‘父子相對，不萌黨習之心’云者，其爲誣罔欺隱，莫此爲甚，大僚之必欲洗拂獎用者，臣實未曉也。 然而翥之言既如是深緊，復於東夏事，又遭大臣變書之斥，臣敢諉以事在既往，復玷言責也哉？

王世子賜例答。

<p>영조 72권, 26년 (1750 경오 / 청 건륭 (乾隆) 15년) 12월 18 일(정해) 1번째기사 감귤을 반궁에 내리고, 취사하여 홍상직을 직 부 전시하다</p>	<p>감귤(柑橘)을 반궁(泮宮)12147) 에 내리고 홍문 제학(弘文提學) 원경하에게 취사(取士)하게 하여 홍상직(洪相直)을 뽑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p>	<p>丁亥/頒柑于泮宮， 命弘文提學元景夏試士， 取洪相直直赴殿試。</p>
<p>영조 73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 (乾隆) 16년) 2월 29 일(정유) 1번째기사 북평사 이이장이 종자 와 사료 등을 청하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좌의정 김약로(金若魯)가 아뢰기를, “북평사(北評事) 이이장(李彝章)이 상서(上書)하여, 또 종자(種子)와 농우(農牛)를 먹일 콩 2만 석을 얻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남(嶺南)의 곡물도 역시 바닥이 드러난 상태이니 포항(浦項) 창고의 벼[租]와 콩[太] 각각 5천 석을 획급(劃給)하도록 하였는데, 콩은 포항에 있는 것도 역시 매우 부족하다고 하니, 다른 것으로 회부(會付)하여 변통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p>	<p>丁酉/藥房入診。 左議政金若魯奏曰：“北評事李彝章上書， 又請得種子及農牛喂太二萬石。 而嶺南穀物亦垂盡， 浦項倉租太各五千石劃給， 而太則浦項所在亦甚不足云， 以他會付， 推移送之爲宜。” 上允之。</p>
<p>영조 73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 (乾隆) 16년) 4월 28 일(을미) 4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익보 가 상서하여 어염선 세·선무 군관의 폐단 을 아뢰다</p>	<p>충청도 관찰사 이익보(李益輔)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염(魚鹽)의 일은 포구(浦口)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배 한 척에 토지(土地)·어장(漁場) 등의 세(稅)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소소(小小)한 선세(船稅)가 있으니, 이는 배는 1척인데도 세금은 모두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전(漁箭)은 그 이로움과 이롭지 않음을 따지지 않고 단지 결전(結箭)의 길고 짧음과 넓고 좁음을 가지고 배와 아울러 분등(分等)하여 9등으로 하니, 종전에 1, 2냥으로 세금을 내던 것이 지금은 8, 9냥이 되었고 전에 5, 6냥을 내던 세금이 지금은 3, 40냥이 되었습니다. 고기잡이는 본래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간혹 금년에 이곳에서 이익을 보다가도明年에는 이익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부(漁夫)가 이익을 좇음은 단지 연파(煙波)12247) 를 오르내리면서 거의 공중(空中)의 생애(生涯)와도 같습니다. 전일의 각처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진실로 많았으나, 얻는 대로 납부하여 그것이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p>	<p>忠淸道觀察使李益輔上書， 略曰：漁監事， 浦民以爲 ‘一船隻而有地土、漁場等稅焉， 又有其隨從小小船之稅， 是一船而凡有三稅。 漁箭則不問其利不利， 只以結箭長短闊狹， 并與船而分爲九等， 前之一二兩應稅者， 今爲八九兩， 前之五六兩應稅者， 今爲三四十兩。 漁採之業， 本無恒所， 或今年利於此， 而明年則不利， 故漁夫之逐利， 只是上下烟波， 殆同空中生涯。 前日之各處徵稅固爲浩多， 而隨得隨納不知其爲多。 今也則三四十兩或八九兩，</p>

지금은 3, 40냥 혹은 8, 90냥을 일시에 징수해 가니, 설사 어리(漁利)를 얻음이 있더라도 진실로 그 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만약 완전히 그 이익을 잃을 때를 당하면 실로 그 원래의 수량을 채워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염분(鹽盆)의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염전(鹽田)의 기름지고 척박함에 달려 있으니, 기름지면 이익이 많고 척박하면 이익이 적어 마치 전답(田畝)의 등품(等品)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박(厚薄)을 따지 않고 한결같이 결막(結幕)의 넓고 좁음과 구철(鉤鐵)12248)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개 지난 겨울 균세사(均稅使)가 내려왔을 적에 때마침 한겨울 눈 쌓인 철이라서 어전(漁箭)은 매어놓은 것이 없고 염부(鹽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배는 혹시 다른 곳에 나가기도 해서 각 고을에서 어전(漁箭)의 넓고 좁음과 염분의 기름지고 척박함과 배의 크고 적음을 제대로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다만 감색(監色)과 호수(戶首)가 진고(陳告)하는 데 따라 뒤섞어 기록하여 보고하였으니, 간혹 선척과 어전의 작은 것이 중간 것으로, 중간 것이 큰 것으로 된 것이 있기도 하며, 염분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이 드디어 감영(監營)의 각 고을에 있는 안책(案冊)을 가져다가 조준(照準)해 보았더니, 과연 작은 것이 중간 것이 되고 중간 것이 큰 것이 되고 좁은 것이 넓은 것이 되고 척박한 것이 기름진 것이 된 것이 없지 않았으니, 이것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단서가 된 것입니다. 어전·선척과 염분을 막론하고 각 아문(衙門)이나 혹은 부민(富民)이 모두 그 본주(本主)가 되어, 어전의 기계(機械)와 배의 노楫(櫓楫)과 염분의 구철(鉤鐵) 등의 물품을 담당하여 준비하는 것이 거의 4, 5백 금(金)을 사용하며 이를 결전(結箭)·조선(造船)·설염(設鹽)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본주로 하여금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른바 본주는 모두 팔짱을 끼고서 뒤로 물러나 서 있고, 오직 저 선인(船人)·어한(漁漢)·염부(鹽夫)들은 모두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의탁할 데 없는 유개(流丐)의 무리들로서, 그 가운데서

一時徵捧，設使漁利有得，固不知其有餘若值全失其利之時，則實無以充納其元數矣。且鹽盆之好否，全係於鹽田之膏瘠，膏則利多，瘠則利少，如田畝之等品。而今乃不問厚薄，一從結幕廣狹，鉤鐵多寡，分作九等而徵稅。蓋前冬均稅使之下來也，時值深冬雪積，箭無所結，釜亦不設，船或出他，而各邑不能詳審箭之闊狹盆之膏瘠船之大小，只從監色、戶首之陳告，而混錄修報，或有船箭之小者爲中，中者爲大，鹽盆亦然'云。故臣遂取營各邑所在案冊照準，則果不無小爲中中爲大狹爲廣瘠爲膏者，此爲稱冤之端也。勿論箭船與鹽盆，各衙門或富民，皆爲其本主，箭之機械，船之櫓楫，鹽盆之鉤鐵等物，擔當辦備者，幾費四五百金，以爲結箭造船設鹽之地矣。今則使本主不得主張，故所謂本主皆斂手却立，惟彼船人、漁漢、鹽夫，俱是朝聚暮散無依流丐之類，而不過使役其中以糊其口者也。既無物主，則許多所費渠何由辦出乎？實狀如此，故已有離散而逃避者，船與箭不期破而自破，鹽盆亦當陳廢不設，其不肯力業可知。民

사역(使役)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미 물주(物主)가 없으니 허다한 비용을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판출(辦出)하겠습니까? 실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미 흠어져서 도피하는 자가 있어, 선척과 어전은 파괴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파괴되고 염분도 역시 묵혀 두고 설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힘써 작업하기를 즐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힘써 일하지 않는데 다만 대장에 기록된 어기(漁基)·어장(漁場)·염분·선척만을 가지고 창고마다 세금을 거둔다면, 그 폐해는 인족(隣族)의 침징(侵徵)보다 심할 것입니다. 포구 백성의 실업(失業)은 피해가 온 나라에 미쳐 작년 겨울부터 어염의 가격이 매우 뛰어들어서, 1석(石)의 소금 값이 예전에는 1냥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6, 7냥이 되었고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금년의 고기 한 마리 값이 전년(前年)의 고기 열 마리 값이 되어 민정(民情)의 흥흥함이 곡식 흉년이 들었을 때보다 갑절이나 더하니, 참으로 수륙(水陸)이 함께 고통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내(道內)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배도 모두 부수고 어전·염분도 모두 걷어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백성이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어염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어염이 끊긴다면 백성이 장차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을 지금 경솔히 의논하기가 어렵다면 특별히 그 세금을 줄여서 보전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니, 그런 후에야 흠어지고 일자리를 잃은 백성들이 거의 터전에 안정하고 생업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무 군관(選武軍官)의 일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조령(朝令)에 따라 충분히 정밀하게 뽑아서 군보(軍保)의 자손 및 향품(鄉品)의 천열(賤孽)로서 모두 다 정원을 채웠는데, 조정(朝廷)에서 특별히 도시(都試)를 허락하여 발신(發身)의 계제(階梯)를 삼았으니, 그들에게는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앞다투어 참여해서 원한을 호소하고 면제를 도모하려는 뜻이 없을 것 같은데, 오직 그 충원이 된 자들은 크게 놀라고 조금은 괴이쩍게 여겨 지금까지 소요(騷擾)하고 있으니, 이는 다른 연유가 아니라 이 무리는 문관(文官)도

不力業而徒以案付漁基、漁場、鹽盆、船隻，逐庫徵稅，則其爲弊有甚於隣族之侵徵。浦民失業，害及一國。自昨冬魚鹽之價，極其踴貴，一石之鹽，昔之價不滿一兩，今爲六七兩，而猶不得買。今之一魚之價，爲前十魚之價，民情洶洶，有倍於穀荒之時，誠可謂水陸俱病者也。道內之民，皆曰‘船皆毀矣，箭盆亦盡撤’矣。民之爲資而生者，無出魚鹽，而魚鹽絕，則民將盡劉。此法今難輕議，則特減其稅，使無難保之患，然後渙散失業之民，庶可以安其土而樂其業矣。至若選武軍官事，一依朝令，十分精抄，以軍保子枝及鄉品賤孽，盡皆充定，而朝家特許都試，以作發身階梯，則於渠可謂幸矣。固宜爭先投入，似無呼冤圖免之意，而惟其見充者，大驚小怪，尙今騷擾，此無他此輩不文不武，非班非常，或有自務其農業者，或有出入於場市者，文武之間，斷然無成就之望。外面觀之，直合軍保，而猶爲此稱冤呼訴之學者，蓋其平日儒衣儒冠模倣士夫，要免軍保之資，今以軍官爲號，俾令業武發身，渠亦自顧其身手才藝，決知其

무관(武官)도 아니고 양반(兩班)도 아니며 상민(常民)도 아니므로, 혹은 농업(農業)에 힘쓰는 자도 있고 혹은 시장(市場)에 출입하는 자도 있어 문무(文武) 양자 간에 단연코 성취할 희망이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바로 군보(軍保)에 적합한데, 오히려 이렇게 원망하고 호소하는 짓을 하는 것은 대체로 그들이 평소에 유의(儒衣)·유관(儒冠)을 하고 사대부(士大夫)를 모방하여 군보를 모면하려는 자료로 삼았는데, 지금 군관(軍官)으로 호칭하여 무예(武藝)를 익혀 발신(發身)하게 하니, 그들도 자신의 신수(身手)와 재능을 돌아보아 결단코 가망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부[案]에 기록된 뒤에는 현관(縣官)이 으레 적혀진 이름마다 군포(軍布)를 거두어 양정(良丁)과 다름이 없으니, 자신이 죽거나 도망하거나 탈이 나서 대신하기 이전에는 역시 군보들과 같을 뿐입니다. 명색(名色)은 비록 다르지만 그 실상은 동일(同一)하니, 반드시 모면하기를 도모한 뒤에 그만두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조정의 위열(慰悅)하는 하교(下敎)와 영읍(營邑)의 개유(開諭)하는 방도가 은근하였는데도 무지 몽매한 무리들이 조금도 감동하여 이해하는 뜻이 없고, 더욱 의심하고 겁내는 마음을 품어 가산(家産)을 경파(傾破)하고 동서(東西)로 도피하여 흩어지니, 몇 달 안에 죽거나 도망한 그 수요가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 장차 어떻게 그들 대신으로 충원하여 그 군포를 거두겠습니까? 원성은 길에 가득하고 모습은 수심이 대단합니다. 백성의 습성은 비록 매우 밍지마는 그 정상은 또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또 본도(本道)는 본디 사대부의 고을로 일컬어져서 양반(兩班)은 많고 양민(良民)은 적으니, 평소에 첨정(簽丁)을 얻기가 어려워 마치 거북이 등에서 터럭을 긁어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큰 돌림병이 돈 뒤인데 또 전에 없던 명목을 만들었으니, 생산은 한정이 있고 양액(良額)은 갑절이 더해진 셈입니다. 수령(守令)이 된 자가 한정이 있는 민생(民生)으로써 끝없이 도망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채운다면, 그 대신을 채우는 어려움과 소요(騷擾)의 폐단이 반드시 지금보다 배나 더할 것이고,

無望。一錄其案之後，縣官例當逐名收布，與良丁無異，身死逃亡未及代頃之前，則亦軍保等耳。名色雖別，其實則同，必欲圖免而後已者，良以此也。朝家慰悅之教，營邑開諭之方，非不勸懇，而蚩蚩愚蠢之徒，少無感釋之意，益懷疑恟之心，傾家破産，東避西散，數朔之內，身死逃亡其數亦夥然。前頭將何以充其代而收其布乎？怨聲載路，景色愁痛。民習雖甚可惡，其情亦可哀也。且本道素稱士夫鄉，班多良少，常時簽丁之難得，有若龜背之括毛。矧今大札之餘，又創無前之名目，生産有限，良額倍加。爲守令者，以有限之民生，充無限之逃故，則其充代之難，騷擾之弊，必倍於今，而微骨之慘，侵隣之害，勢所必至。是之謂欲掄一弊而反生一弊，將至於莫可收拾之境，可不凜然而寒心哉？今雖欲彌縫鎮安，補苴罅漏，實無其策，亟速善處，使騷擾之群情，得以鎮安，失業之浦民，得以還集焉。

答曰：“令廟堂稟處。”



	<p>백골 징포의 참혹함과 인족 침징의 폐해가 형편상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폐해 한 가지를 구하려다가 도리어 폐해 한 가지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으로 장차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등골이 오싹할 만큼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미봉하여 진정시키고 벌어진 틈을 메꾸어 보려 하나 실로 그 계책이 없으니, 빨리 선처(善處)하시어 소요하는 군정(群情)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하시고, 실업(失業)한 포구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편안히 살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74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6월 9일 (갑진) 2번째기사 호서 암행 어사 한광조를 소견하여 균역의 폐단 여부를 묻다</p>	<p>호서(湖西)의 암행 어사(暗行御史) 한광조(韓光肇)가 복명(復命)하니, 임금(上)이 소견(召見)하여 묻기를, “3건(件)의 일이 과연 폐단이 있는가, 없는가?”</p> <p>하니, 한광조가 말하기를, “어염(魚鹽)의 세(稅)는 많은 곳은 도리어 적고 가벼운 곳은 도리어 무겁습니다. 대개 균역세(均役稅)가 깊고 궁벽한 곳을 두루 보지 못한 데 연유하여 그런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염의 귀(貴)한 것이 과연 균역(均役)의 폐단인가?”</p> <p>하니, 한광조가 말하기를, “신이 처음에 가서 들어보니 과연 이런 말이 있었으나, 포구(浦口)에 들어가 봄에 미쳐서는 들은 바와 크게 달랐습니다. 대개 작년에 자주 비가 내려서 소금을 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어(靑魚)가 귀한 것은 풍기(風氣)가 좋지 않은 데서 온 결과이며 다른 물고기는 아주 많았습니다. 선세(船稅)는 혹 많기도 하고 혹 적기도 하니, 실로 균등하지 않다는 원망이 있습니다. 군관(軍</p>	<p>湖西暗行御史韓光肇復命， 上召見問曰：“三件事， 果有弊否？” 光肇曰：“魚鹽之稅， 多處反少， 輕處反重。 蓋緣均稅使不能遍看於深僻之處而然也。” 上曰：“魚鹽之貴， 果是均役之弊耶？” 光肇曰：“臣初往聞之， 果有是言， 及入浦口， 大異所聞。 蓋昨年頻雨， 不能煮鹽。 靑魚之貴， 以風氣不好之致， 而他魚則至賤矣。 船稅則或多或少， 實有不均之怨。 軍官則今以軍保子弟把定， 故無怨言矣。” 上曰：“民皆知減布之意耶？” 光肇曰：“民皆鼓舞稱頌曰， ‘昨年大札之餘， 非減布之政， 吾屬盡劉’， 云矣。</p>

	<p>官)은 지금 군보(軍保)의 자제(子弟)로써 파정(把定)하였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두 포(布)를 감면한 뜻을 알고 있는가?”</p> <p>하니, 한광조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두 고무(鼓舞) 칭송(稱頌)하며 말하기를, ‘작년과 같은 큰 여역(癘疫)의 나머지에 감포(減布)의 정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무리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영조 74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9월 17일(경진) 2번째기사</p> <p>함경 감사 황정이 청대하여 북관의 흉황한 상황을 진달하고 진자의 이급을 청하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함경 감사 황정(黃暎)이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여 북관(北關)의 흉황(凶荒)한 상황을 남김없이 진달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영남과 관동의 곡식을 구획(區劃)하여 진자(賑資)에 이급(移給)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교제창(交濟倉)이 있는데, 요즈음 해마다 다급함을 고(告)하여 영남의 곡식을 운반해 가려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p> <p>하였다. 하교하기를,  “금년에 또 이와 같으니, 겨우 살아난 우리 백성을 어찌 구제할 수 있겠는가? 마치 아픔이 내 몸에 있는것 같도다. 삼명일(三名日)12375)의 방물(方物)·물선(物膳)을 정봉(停封)하고 가미(價米) 및 주창(州倉)의 비국(備局)에서 구관(勾管)하는 옛 봉미(捧米) 가운데 남은 것들을 가지고 모조리 진자(賑資)에 보태도록 하며, 금년의 납육(臘肉)도 또한 정봉(停封)하라.”</p> <p>하였다.</p>	<p>○藥房入診。咸鏡監司黃暎，請對入侍，極陳北關凶荒之狀，請令廟堂，區畫嶺南、關東穀移給賑資，上曰：“既有交濟倉，而近來年年告急，運去嶺穀，此則非矣。”教曰：“今年又若此，僅活之吾民，何以濟之？若恫在己。三名日方物、物膳停封，價米及州倉備局勾管舊捧米所餘者，一并以補賑資，今年臘肉，亦爲停封。”</p>
<p>영조 74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12월 29일(신유)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조석(朝夕)의 제전(祭奠)에는 배례(拜禮)가 없다. 그러므로 선정신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상례이동(喪禮異同)》에 고례(古禮)를 회복할 것을 의청(議淸)하였다고 한다. 이제 상제(喪制)가 고례를 회복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p>	<p>辛酉/禮曹啓言：‘朝夕祭奠，無拜禮。故先正文敬公金集《喪禮異同》同，議請復古禮云。于今喪制復古之時，其宜詢問。況今於守、侍墓官，宜先講</p>

<p>예조에서 아뢴 장례 절차에 대하여 하교하다</p>	<p>순문(詢問)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수묘관(守墓官)·시묘관(侍墓官)에 대해서는 마땅히 먼저 강정(講定)해야 할 것이다. 그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곧바로 대신(大臣)에게 문의하도록 하라.’는 일로 명이 내려졌습니다. 대신에게 문의 하였더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3년 안에는 평상시처럼 모시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석전(朝夕奠)의 상식(上食)에 배례(拜禮)가 없고 단지 헌작(獻酌)한 뒤에 배례가 있는 것이니 또한 살아계실 때 섬기는 도리를 본뜬 의리인 것입니다. 이제 성상의 하교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선정신의 상례(喪禮) 의논을 따라서 조석전의 상식에 헌작을 끝마치고 나서 배례를 행하고자 하니, 뜻이 몹시 거룩합니다. 어찌 이의(異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주상의 재결을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부터는 무릇 대·소상(大小喪)에 있어 장례(葬禮) 전에 비록 그것이 대전(代奠)이라 하더라도 헌작한 뒤에는 곡(哭)하고 사배(四拜)하고, 곡하고 재배(再拜)하는 일을 《상례수교(喪禮受教)》에 기재하라.”</p> <p>하였다. 김재로가 또 아뢰기를, “나례(讎禮)12412) 는 예전부터 피인(彼人)들에게 미리 그림을 청하여 임시로 감(減)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만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상고(喪故)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임시로 감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定。其令禮官，即問于大臣’事命下矣。問議于大臣，則領議政金在魯以爲，‘三年內，有常侍之義。故朝夕奠上食無拜禮，而只於獻酌後有拜，亦象生之義也。今者聖教，欲自今爲始，一從先正喪禮議，朝夕奠上食酌獻訖行拜，則意甚盛也。豈有異議？伏惟上裁’云矣。”上曰：“此後凡大、小喪，葬前，其雖代奠，酌獻後哭四拜，哭再拜事，載於《喪禮受教》。”在魯又奏曰：“讎禮自前有預爲圖請於彼人，而權減之事。今番則不但糜費甚多，且有喪，故亦當權減矣。”上可之。</p>
<p>영조 74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10월 16일(기유) 2번째기사 서평군 등 종신의 정청과 약방·정원 등의</p>	<p>서평군(西平君) 이요(李橈)가 여러 종신(宗臣)을 인솔하고 정청(庭請)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약방(藥房)·정원(政院)·옥당(玉堂)·간원(諫院)에서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날 임금의 하교가 수라[膳]를 물리치시는 데까지 미쳤다. 이에 대신(大臣)이 아뢰기를, “하교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신 등이 비록 정반(庭班)을 철폐(撤罷)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특별히 인접(引接)을 허락하시어 신들로 하여금 충정(衷情)</p>	<p>○西平君橈率諸宗臣庭請，不許。藥房、政院、玉堂、諫院請對，不許。是日上教及於却膳。於是大臣啓曰：“下教至此，臣等雖不得不撤罷庭班，特許引接，俾臣等悉陳衷情焉。”不許。</p>

<p>청대를 허락하지 않다</p>	<p>을 다 진달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p>	
<p>영조 74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 (乾隆) 16년) 8월 13 일(병오) 1번째기사 영조가 편치 않아 약 원에서 윤직하다</p>	<p>임금이 편치 않아 약원(藥院)에서 윤직(輪直)하였다.</p>	<p>丙午/上候愆和，藥院輪直。</p>
<p>영조 74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 (乾隆) 16년) 11월 16 일(무인) 2번째기사 영의정 김재로와 현빈 의 시호 등을 논의하 다</p>	<p>임금이 요화당(瑤華堂)에 나아가 영의정 김재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삶은 밤을 좋아하였는데, 예전에 밤중에 내가 갑자기 삶은 밤을 먹고 싶어하면 현빈(賢嬪)이 곧바로 진상하였다. 그뒤에 동조(東朝)의 하교(下 敎)를 들으니, 현빈이 미처 신[履]을 신을 사이도 없이 즉시 부엌에 들어가 친히 스스로 삶아 왔다고 하니, 이것이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사친(私親)이 고관(高官)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현빈 은 그렇지 않았다. 만일 영둔녕(領敦寧)12392) 이 시임(時任)이 되었다는 것 을 들으면 그는 매양 말하기를, ‘우리 숙부(叔父)는 어찌하여 물러가서 쉬지 않는가?’ 하였으니, 여기서 그의 염담(恬澹)한 성품을 알 수가 있다. 효장 세 자(孝章世子)의 지문(誌文)을 인간(印刊)한 것을 현빈이 벽(壁) 위에 보관하였 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보게 되었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성복(成服)을 한 뒤에는 마땅히 시호(諡號)를 의논하여야 하는데, 효(孝) 자 로써 정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현빈의 시호에 어찌 효(孝)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시민(市民)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소용없는 물건을 또한 진배</p>	<p>上御瑤華堂，謂領議政金在魯曰：“予 嘗嗜熟栗，而曾於夜中，予忽思食，則 賢嬪卽爲進之矣。 其後聞東朝下敎， 則賢嬪不及着履，卽入廚下，親自烹來 云，此非孝而何也？ 人情必以私親之爲 高官爲喜，而賢嬪則不然。 若聞領敦 寧爲時任，則渠每言 ‘吾叔何不退休 乎’ 云，此可見其恬澹之性也。 孝章 誌文所印者，賢嬪藏于壁上，故今日見 之矣。” 在魯曰：“成服後當議諡，而 欲以孝字爲定矣。” 上曰：“卿言得 之。 賢嬪之諡，何可無孝字乎？” 上 曰：“予不欲貽弊於市民，而無用之物， 亦多進排，宜申飭都廳。”</p>

	(進排)하는 경우가 많으니, 마땅히 도청(都廳)에 신칙(申飭)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조 74권, 27년 (1751 신미 / 청 건륭 (乾隆) 16년) 11월 23 일(을유) 1번째기사 모든 제사에 있어 한 과 등속을 일체 감제 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교하다	임금이 《진향초기(進香草記)》를 가져다가 보고 하교하기를, “한과(漢果)가 쓸데없는 비용으로 많이 드는데 몹시 정(精)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그것을 감(減)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자교(慈教)를 받으니, ‘용문(龍紋)·귀문(龜紋)의 과(果)를 항상 모두 감하고 싶었다.’고 하교하시었다. 훌륭한 것도 자교시여! 내가 그것을 감하려고 하였는데, 더구나 이런 하교를 받았음에랴. 이 뒤에는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한과라고 이름한 것은 한결같이 모조리 없애 인삼 정과(人蔘正果)와 같은 등속들도 또한 감제(減除)하여 이를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乙酉/上取覽《進香草記》，教曰：“漢果浮費則多，而甚爲不精。故意欲減之，今承慈教，‘龍紋、龜紋之果，常欲竝減’爲教。大哉慈教！予欲減之，況承此教乎？此後凡祭名以漢果者，一竝蠲減，人蔘正果之屬，亦爲減除，永爲定式。”
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월 20 일(임오) 5번째기사 빈궁의 조전을 행하다	빈궁(殯宮)의 조전(祖奠)을 행하였는데, 여집사(女執事)가 찬물을 받들고 들어와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였다.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향(香)을 올리고 술을 따른 다음 물러나니, 수칙(守則)이 축문을 읽었다. 읽고나자 궁인(宮人)들이 슬피 곡(哭)하였으며, 여집사가 축문을 받들어 향로에다 태웠다.	行殯宮祖奠，女執事奉饌，入設於靈座前。陞自東階，詣香案前，上香酌酒退，守則讀祝文訖。宮人哭盡哀，女執事奉祝文，焚於爐。
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월 21 일(계미) 2번째기사 빈궁의 견전을 행하다	출발하여 주정소(晝停所)의 유문(帷門) 안에 이르자 섭상례(攝相禮)가 나아가 거(車)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거에서 내려 영좌(靈座)로 오를 것을 찬청(贊請)하니, 내시(內侍)가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장궁(帳宮) 안에 있는 영좌에 안치시키고 신주궤(神主櫃)는 그 뒤에 가져다 놓았다. 영여(靈輦) 앞에 꿇어앉아 조금 머물 것을 찬청하니, 궁인(宮人)들이 말에서 내려 위차(位次)로 들어갔고 배종(陪從)하는 관원들은 말에서 내려 위차로 나아갔다. 여집사(女執事)가 예찬(禮饌)을 전해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진설하기를 조석전(朝夕奠)과 같이 하였다. 이 일이 끝나자 섭상례가 꿇어앉아 영좌에서 내려 거로 오를 것을 찬청하니, 내시가 함(函)을 받들어 거에 안치시켰다. 섭상례가 꿇어앉아 출발할 것을 찬청하고 또 영여 앞에 꿇어앉아 출발할 것을 찬청하니, 영여가 움직였	○行到晝停所帷門內，攝相禮進當車前跪，贊請降車陞座，內侍奉魂帛函，安於帳宮中靈座，神主櫃置其後。靈輦前跪，贊請少駐，宮人下馬入次，陪從群官下馬就次。女執事傳奉禮饌入設，如朝夕奠。畢，攝相禮跪，贊請降座陞車，內侍奉函，安於車。攝相禮跪，贊請進發，又於靈輦前跪，贊請進發，靈輦動。儀衛、導從、宮人、群官陪從如初。至墓所丁字閣，靈帳宮帷門

	<p>다. 의위(儀衛)와 도종(導從), 궁인(宮人)과 군관(群官)의 배종은 처음과 같았다. 묘소(墓所)의 정자각(丁字閣)에 이르러 영장궁(靈帳宮)의 유문 밖에 도착하자, 섭상례가 나아가 영여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영여에서 내려 상여로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참찬(參贊)이 여재실관(昇梓室官) 등을 데리고 영여에서 내려 상여에 올려놓았다. 섭상례가 앞에서 인도하고 내시가 삼(嚮)과 행장(行障)·좌장(坐障)으로 재실(梓室)을 가려 막았다. 여사(輿士)들이 상여를 받들고 유문 안에 이르자 섭상례가 꿇어앉아 상여에서 내릴 것을 찬청하였다. 참찬이 여재실관 등을 데리고 재실을 받들어 탑(榻) 위에 안치했는데, 머리가 남쪽을 향하게 하였다. 내시가 영좌를 재실의 남쪽에다 남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혼백거(魂帛車)가 유문 안에 이르니, 섭상례가 꿇어앉아 영좌에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고 신주궤(神主櫃)는 그 뒤에 가져다 놓았다. 내시가 명정(銘旌)을 진설하고 또 시책인(諡冊印)·애책(哀冊)과 평시(平時)의 교명(敎命)·책인(冊印)을 진설하였다. 또 영침(靈寢)·거여(車輦)·의장(儀仗)·명기(明器)를 장궁(帳宮)의 유문 밖에다 나누어 좌우로 진설하였다. 궁인이 들어가 장위(帳位)에 나아가 처음처럼 곡하였으며 배종한 군관(群官)들은 잠시 물러갔다. 여집사가 찬물(饌物)을 내어오고 나서 향을 올리고 술을 따랐다. 또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을 아울러 처음처럼 하였다.</p>	<p>外，攝相禮進，當靈輦前跪，贊請降輦陞輦。參贊率昇梓室官等，降輦陞輦。攝相禮前導，內侍以嚮及行障、坐障，障梓室。輦士奉輦，至帷門內，攝相禮跪，贊請降輦。參贊率昇梓室官等，奉梓室，安於榻上南首。內侍設靈座於梓室之南，南向。魂帛車至帷門內，攝相禮跪，贊請陞座。內侍奉魂帛函，安於靈座，神主櫃置其後。內侍設銘旌，又設諡冊印、哀冊、平時敎命·冊印。又設靈寢、車輦、儀仗、明器，分列於帳宮帷門外左右。宮人入就帳位，哭如初，陪從群官權退。女執事進饌，上香酌酒。又設朝夕奠及上食，竝如初。</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4일 (병인) 3번째기사 역질과 함경도 지역의 구휼, 탕평에 대해 의논하다</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도제조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두역(痘疫)이 점점 치성하니, 궤문(闕門)의 금표(禁標) 안에는 각별히 수색해서 내어 보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궤내에 출입하는 사방의 사람들은 곧 한집안 사람이거나 같은 것인데 금표의</p>	<p>藥房入診。都提調金若魯曰：“痘疫漸熾，闕門禁標內，各別搜出宜矣。”上曰：“闕內出入四方之人，便同一家之內，何必禁標內獨爲搜逐乎？且聞使女巫，入而搜之，其弊甚多云。民亦子也，姑置之，使安居焉。”領議政金在魯曰：“北伯以移粟補賑事狀請，當劃於東南兩道矣。嶺南穀一萬七千斛內，</p>

	<p>안만을 유독 수색해서 축출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또 듣건대, 여무(女巫)로 하여금 들어가서 수색하게 하는데 그 폐단이 매우 많다고 한다. 백성도 또한 자식인 것이니, 우선 버려두어 편안히 살게 하라.”</p> <p>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p> <p>“북백(北伯)12421) 이 곡식을 옮겨다가 진구(賑救)를 보조하게 해 줄 것으로 장청(狀請)했으니, 의당 동남(東南)의 두 도(道)의 것을 획송(劃送)해야 합니다. 영남(嶺南)의 곡식 1만 7천 곡(斛) 안에 1만 곡은 본도(本道) 연해 고을의 대동미(大同米)와 저치(儲置)한 군작미(軍作米) 등의 쌀을 획송하게 하고 7천 곡은 포항창(浦項倉)과 연해의 상진곡(常賑穀)을 획송하게 하며, 관동(關東)의 8천 곡은 연해변의 아홉 고을에서 무슨 곡식이든지 막론하고 숫자에 충당시켜 획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선척(船隻)은 북도(北道)와 각 해도(該道)의 선척을 반반씩 사용하여 운송하게 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게 하였다.</p> <p>(하략)</p>	<p>一萬斛則本道沿海邑大同米及儲置軍作等米劃送，七千斛則浦項倉及沿海常賑穀劃送，關東八千斛則海邊九郡，勿論某穀，充數劃送。而般隻以北道及各該道船，參半載運宜矣。” 上可之。</p> <p>(하략)</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10일(임신) 1번째기사 내농포의 말을 연수를 한정하여 환급하는 예를 정하다</p>	<p>내농포(內農圃)의 말을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환급(換給)하라고 명하였다. 사복 도제조(司僕都提調)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p> <p>“내농포에서 마필(馬匹)은 받아간 뒤에는 전혀 보호하고 아끼지 않는 탓으로 1,2년을 넘기지 못하고 번번이 병이 들어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4년으로 기한을 정하여 봉수(逢授)12438) 해 간 사람으로 하여금 기한 안에 병이 들어버릴 경우에는 스스로 개립(改立)하게 하는 것을 청건대 군병들에게 말을 지급하는 예와 같게 하소서.”</p>	<p>壬申/命內農圃馬，限年換給。司僕都提調金若魯以爲：“內農圃馬匹受去後，全不護惜，未過一二年，輒以病還。今後則以四歲爲限，使逢授者限內病傷者，自當改立，請如軍兵給馬之例。” 從之。</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16일(무인) 2번째기사 혼궁의 축대와 더 설치한 2건의 상을 감소시키라고 명하다</p>	<p>혼궁(魂宮)의 축대(燭臺)와 상(床)을 더 설치한 2건(件)을 감소시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홀기(笏記)를 보고 말하기를, “혼궁의 축대와 상은 곧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더 설치한 2건은 잘못이다. 이 뒤로 혼전(魂殿)·혼궁에는 2건은 그대로 두고 2건은 감손시킬 것이며 함(函) 네 개, 목기(木器) 네 개를 일례(一例)로 제거할 것으로 상례 수교에 기재하라.” 하였다.</p>	<p>命減魂宮燭臺及床加設二件。 上見笏記曰：“魂宮燭臺及床， 卽二件， 而加設二件誤也。 此後魂殿、魂宮減二存二， 函四、木器四， 一例除之事， 載於《喪禮受教》。</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20일(임오) 4번째기사 효순 현빈의 계찬례를 행하다</p>	<p>효순 현빈(孝純賢嬪)의 계찬례(啓攢禮)를 행하였다. 여집사(女執事)가 손을 씻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찬물(饌物)을 진설하고 나서 향을 올리고 술을 따랐다. 수칙(守則)이 영좌(靈座)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고 물러갔다. 궁인(宮人) 이하가 슬프게 곡(哭)하고 나서 집사가 축문을 받들어 향로에다 태웠다. 영좌와 전(奠)을 당내(堂內)의 서남쪽으로 옮겨놓고 고계빈관(告啓殯官)이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들어와 중문(中門) 밖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니, 상전(尙傳)이 고계빈관 앞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꿇어앉았다. 고계빈관이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상달(上達)하기를, “의정부 좌참찬 권적(權翬)은 삼가 길신(吉辰)에 찬도(攢塗)를 엽니다.” 하였다. 상전이 합문(閤門) 밖으로 나아가 여관(女官)에게 전고(傳告)하니, 여관이 찬실(攢室) 남쪽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았다. 상달(上達)이 끝나자 본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고계빈관이 나아가니 상전이 여러 내시(內侍)</p>	<p>行孝純賢嬪啓攢禮。 女執事盥手， 陞自東階詣香案前， 設饌上香酌酒。 守則進靈座之左西向跪， 讀祝文退。 宮人以下哭盡哀， 執事奉祝文， 焚於爐。 遷靈座及奠於堂內西南， 告啓殯官以淺淡服， 入就中門外跪， 尙傳詣告啓殯官前， 南向跪。 告啓殯官俯伏跪達曰：“議政府左參贊權翬， 謹以吉辰啓攢塗。” 尙傳詣閤外， 傳告女官， 女官就攢室之南北向跪。 達訖， 還本位。 告啓殯官出， 尙傳帥諸內侍， 陞撤攢塗訖， 尙傳捧巾拂拭梓室， 覆以棺衣， 降出。 內侍撤饌設幄及靈座。 女官設靈寢， 竝如初， 女執事奉饌， 設於靈座前， 宮人哭盡哀。 女執事上香、奠、</p>



	<p>들을 인솔하고 올라가서 찬도를 거두고 나서는 상전이 수건을 받들고 가서 재실(梓室)을 닦아내고 관의(棺衣)를 덮은 다음 내려와 나아갔다. 내시가 찬물을 거두고 장막과 영좌를 설치하였다. 여관이 영침(靈寢)을 진설하는 것을 모두 처음처럼 하였으며, 여집사가 찬물을 받들어 영좌 앞에다 진설하니, 궁인들이 슬프게 곡하였다. 여집사가 향(香)·전(奠)·주(酒)를 올리는 것을 위의 의식(儀式)처럼 하고 물러갔다. 이뒤로부터 발인(發引) 때까지는 대곡(代哭)하였다.</p>	<p>酒如上儀，退。 自後至發引代哭。</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20일(임오) 5번째기사 빈궁의 조전을 행하다</p>	<p>빈궁(殯宮)의 조전(祖奠)을 행하였는데, 여집사(女執事)가 찬물을 받들고 들어와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였다.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향(香)을 올리고 술을 따른 다음 물러나니, 수칙(守則)이 축문을 읽었다. 읽고나자 궁인(宮人)들이 슬피 곡(哭)하였으며, 여집사가 축문을 받들어 향로에다 태웠다.</p>	<p>行殯宮祖奠，女執事奉饌，入設於靈座前。 陞自東階，詣香案前，上香酌酒退，守則讀祝文訖。 宮人哭盡哀，女執事奉祝文，焚於爐。</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21일(계미) 1번째기사 빈궁의 견전을 행하다</p>	<p>빈궁(殯宮)의 견전(遣奠)을 행하였다. 예장 도감(禮葬都監)에서 상여와 혼백거(魂帛車)·요여(腰輦)·향정(香亭) 등을 중문(中門) 밖에 대기시켜 놓고 영여(靈輦)는 외문(外門) 밖에 대기시켜 놓았으며, 길의장(吉儀仗)은 혼백거 앞에 진설하여 놓고 흉의장(凶儀仗)과 명기(明器)는 영여 앞에 진설하여 놓았다. 여집사가 찬물을 영좌 앞에 진설하였다. 여관(女官)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술을 따르니, 궁인들이 곡을 그쳤다. 수칙(守則)이 축문을 읽고나니 여관이 애책안(哀冊案) 앞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았다. 이어 책함(冊函)을 받들고 중계(中階)를 거쳐 올라가 향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안상(案上)에 놓았다. 여관이 책함을 열고 애책을 펴서 읽기를,  “유세차(維歲次) 신미(辛未) 11월 갑자삭(甲子朔) 14일 정미(丁未)에 효순 현빈(孝純賢嬪) 조씨(趙氏)가 창덕궁(昌德宮)의 건극당(建極堂)에서 졸(卒)하였</p>	<p>癸未/行殯宮遣奠。 禮葬都監進輜及魂帛車、腰輦、香亭等於中門外，進靈輦於外門外，陳吉儀仗於魂帛車前，陳凶儀仗、明器於靈輦前。 女執事設饌於靈座前。 女官陞自東階，詣香案前，上香酌酒，宮人止哭。 守則讀祝文訖，女官詣哀冊案前西向跪。 奉冊函，由中階陞詣香案前跪，置案上。 女官開函，展冊讀曰：“維歲次辛未十一月甲子朔十四日丁未，孝純賢嬪趙氏，卒于昌德宮之建極堂。 越明年壬申正月癸亥朔二十二日甲申，將祔于坡州孝章世子墓，禮也。 素衛戒途，玄堂捲帷。</p>

다. 다음해 임신(壬申) 정월(正月) 계해삭(癸亥朔) 22일 갑신(甲申)에 장차 파주(坡州)의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묘(墓)에 합부(合祔)하게 되었으니, 예(禮)이다. 소위(素衛)가 길떠날 준비를 하니 현당(玄堂)의 장막을 걷어내었다. 누각(漏刻)이 새벽을 알리면서 처연(淒然)히 오열하고 명정(銘旌)이 바람을 안고 펄럭이고 있다. 오직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아름다운 덕행을 지니고 일찍 운명하였음을 슬퍼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영원히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에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그 아름다운 자취를 선양(宣揚)한다.”

하였고, 그 애사(哀詞)에 이르기를,

“꿈에 동관(彤管)을 받으니, 화려한 문벌(門閥)에 숙기(淑氣)가 뭉쳐 태어났다. 이름난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적분(戚分)이 왕실(王室)과 연결되었고, 복숭아 꽃처럼 아름다운 자태 널리 소문이 나니 이극(貳極)12467)의 빈(嬪)이 되었다. 단아하고 깨끗한 지조에 정일(貞一)한 덕을 지녔으므로 아침 일찍 문안할 때 차고 있는 고리가 울리어 온다. 어려서부터 위의(威儀)를 어기지 않았으므로 잘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하였으며, 사전(四殿)에 기쁨이 넘쳐흘렀으므로 육궁(六宮)의 축하가 비등하였다. 오래도록 복을 누리면서 온갖 상서로움을 다 맞게 되기를 축원하였는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젊은 나이에 짝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최복(衰服)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례(笄禮)를 올렸는데, 주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돌아가기를 마음으로 맹세하여 오직 시기가 속히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요컨대, 성의(聖意)를 너그럽게 헤드리기 위해 정을 억제하면서 기쁜 안색을 지었으며, 하루 세번 문안드리는 예절을 행함에 있어 병들었으면서도 피로함을 말하지 않았다. 시선(視膳)을 함에 있어서는 배가 부르고 고품을 잘 조정하여 맞추었고 몸소 어석(御席)을 살피 온도를 알맞게 조정하였다. 반걸음 사이의 잠깐이라도 우러러 명을 받들

仙漏報曉而淒咽，雲旌引風而逶迤。惟我主上殿下，悼懿行之早隕，哀婉容之永隔，爰稽古典，俾揚芳躅。”其詞曰：

夢叶彤管，鍾淑華閥。名父受知，威連王室，夭桃播詠，嬪于貳極。端潔其操，貞一其德，候鷄問寢，環佩鏘鳴。幼不愆儀，克敬而誠，四殿溢歡，六宮騰賀。祝以遐福，百祥咸迓，不弔于天，沖年降割。服衰而笄，晝哭淚血，矢心同歸，惟願其速。要寬聖意，抑情愉色，三朝之禮，病不言疲。視膳善寡，以飽以飢，躬省御席，適其溫清。造次跬步，仰以爲命，宸情興歎，曰予孝婦。乃許知心，賴而忘疚，允矣純範，百行之源。履貴愈謙，戒存私門，盛滿之懼，屢形於眉，杜絕外逕，有肅重闈。既溫且莊，衆美皆具。長侍膝下，庶娛晚暮，何賦命之太巖，竝與年而終嗇？朝怡怡而夕違，倏眞遊之寥廓，嗚呼哀哉！追念涓澌，汔有餘哀。冰雪崢嶸，諱辰重回，香未傳於孤原，魂奄復於深宮。惇抱影而感時，遂隔日而相從。嗚呼哀哉！

어 하였으므로 신정(宸情)이 감탄하여 나의 효부(孝婦)라고 하였다. 이에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허여하고 의지하여 마음의 상처를 잊을 수 있었으니, 진실로 순일한 의범(儀範)은 백행(百行)의 근원인 것이다. 귀하게 될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여 사문(私門)에 대한 경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성만(盛滿)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차 얼굴에도 드러나 있었으므로 외경(外逕)을 끊고 중위(重闕)를 엄숙히 하였다. 이미 온화하면서도 장엄한 위의를 지녔으므로 모든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었다. 오랫동안 슬하(膝下)에 두고서 만년(晩年)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타고난 운명도 그리 기구한데다가 아울러 수명까지도 끝내 인색하게 받았더란 말인가? 아침에는 기쁜 얼굴이었는데 저녁에는 볼 수 없게 되어 갑자기 영혼되어 떠난 적막한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 아! 슬프다. 군탄(涓灘)12468) 을 추념(追念)하니, 아직도 남은 슬픔이 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휘신(諱辰)이 다시 돌아왔는데도 외로이 그림자 안고 시절따라 흐느끼더니, 드디어 내일이면 서로 따르게 되었구나. 아! 슬프다. 옛집에 봄이 돌아오고 비어 있는 상랑(廂廊)에 달이 비추니, 그 모습 완연하여 마치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 것만 같다. 남은 정을 말음(末音)에 기탁하니 그래도 옥식(玉食)을 돌아보게 되고, 우뚝 솟은 운궐(雲闕)을 등지고 아득한 천로(天路)를 행하누나. 아! 슬프다. 저 가성(佳城)12469) 을 바라보니 같은 산등성이에 함께 하는 것이 길(吉)하다는 점괘가 나왔고, 상석(象石)의 설치는 전의 것을 그대로 두니 소나무 잣나무도 애상(哀傷)에 잠겼구나. 그대의 숙원(宿願)이 여기에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에 머물 곳을 얻게 되었다. 오직 이별은 짧고 만남은 장구하게 되었으니, 어찌 신리(神理)를 어길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어진데도 복을 받지 못한 경우 예로부터 슬프게 여겨 왔는데, 그러나 영명(令名)은 영원히 실추되지 않을 것이다. 뚜렷한 운한(雲漢)의 상덕(狀德)은 영원히 즐서(卒逝)한 효성스러움에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성필(聖筆)로 징거하여 슬픈 마음 술회하노니, 백세(百世)에까지 찬란히 전하여

春回兮故堂，月照兮虛廂，依依宛宛，若有徊徨。寄餘情於末音，尚眷顧於玉食，背雲闕之峩峩，指天路之曼曼。嗚呼哀哉！瞻彼佳城，筮吉同岡，象設仍舊，松柏增傷。諒宿願之在斯，今乃獲其攸止。帷別短而會長，詎有違於神理？嗚呼哀哉！仁而無福，終古所悲，祇有令名，永言不隳。倬雲漢之狀德，慰孝思於長逝。徵聖筆而述哀，期垂耀於百世。嗚呼哀哉！

讀訖，以冊還置於函，奉置靈座前稍東案上，還本位。宮人哭盡哀。女執事撤饌，奉祝文，焚於爐。遂發引。先一日，奉常寺造神主，盛以箱，覆以帕，安於腰輦，詣殯宮門外，內侍傳奉以入。女官奉安于魂帛之後，俟遣奠畢。昇梓室官進輻於殯宮門外南向，魂帛輦陳於輻南。攝相禮進當靈座前跪，贊請降座陞輦。內侍以教命、謚冊印、哀冊、平時冊印，授執事，各置於腰輦。執事者奉香爐、香盒，置於香亭。挾侍內侍奉魂帛函，安於腰輦，神主櫃置其後。內侍奉腰輦，由中門出，攝相禮進當梓室前跪，贊請詣輻。

	<p>지기 바란다. 아! 슬프다.”</p> <p>하였다. 읽고 나자 애책을 도로 함(函)에 넣어 영좌 앞에서 조금 동쪽에 있는 안상에 받들어 놓은 다음 본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궁인(宮人)들이 슬프게 곡(哭)하였다. 여집사(女執事)가 찬물(饌物)을 치우고 나서 축문을 받들어 향로에다 태웠다.</p> <p>드디어 발인(發引)하였다. 하루 전에 봉상시(奉常時)에서 신주를 만들어 상자에 담고 파(帕)로 덮어 요여에 안치하고서 빈궁의 문밖으로 나아가니, 내시(內侍)가 전하여 받들고 들어갔다. 여관(女官)이 이를 혼백(魂帛) 뒤에다 봉안하고 견전(遣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여재실관(昇梓室官)이 상여를 빈궁 문밖에다 남쪽을 향하게 대기시키고 혼백여(魂帛輿)는 상여 남쪽에 진설하였다. 섭상례(攝相禮)가 나아와 영좌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서 영좌에서 내려와 요여에 오를 것을 찬청(贊請)하였다. 내시가 교명(敎命)·시책인(諡冊印)·애책(哀冊)과 평시(平時)의 책인(冊印)을 집사(執事)에게 주니, 집사가 이를 각기 요여에 안치하였다. 집사자(執事者)가 향로(香爐)·향합(香盒)을 받들어 향정(香亭)에 놓아 두었다. 협시 내시(挾侍內侍)가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요여에 봉안하고 신주궤(神主櫃)는 그 뒤에다 가져다 놓았다. 내시가 요여를 받들고 중문을 거쳐 나아가니, 섭상례(攝相禮)가 나아가 재실(梓室)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서 상여로 나아가라고 찬청하였다. 내시가 명정(銘旌)을 받들고 계단을 내려오니 봉재실관(奉梓室官)이 【참찬(參贊)이다.】 여재실관과 내시를 데리고 윤여(輪輿)로 계단에서 내려와 출발하였는데, 소금저(素錦褚)로 덮였다. 내외(內外)가 모두 곡하였다.</p> <p>섭상례가 앞에서 인도하고 내시가 삽(髮)과 행장(行障)·좌장(坐障)으로 재실을</p>	<p>內侍奉銘旌降階，奉梓室官【參贊。】帥昇梓室官及內侍，以輪輿降階行，覆以素錦褚。內外皆哭。攝相禮前引，內侍以髮及行障、坐障，障梓室，銘旌先行。魂帛輿至中門外，攝相禮進當魂帛輿前跪，贊請降輿陞車。內侍奉魂帛函，安於車，神主櫃置其後。梓室出中門外，攝相禮進當梓室前跪，贊請陞輦。奉梓室官帥昇梓室官及內侍，奉梓室，陞輦。攝相禮前引，至明政門外，進當魂帛車前跪，贊請少駐，輿士弛擔少頃。攝相禮跪，贊請進發。輦至，攝相禮進當輦前跪，贊請少駐，輿士弛擔少頃。攝相禮跪，贊請進發。攝相禮前引至外門外。攝相禮進當輦前跪，贊請降輦，陞靈輿。奉梓室官帥昇梓室官及內侍，奉梓室，陞靈輿南首。魂帛車·敎命·諡冊印腰輿、哀冊腰輿、羽葆、銘旌及髮，以次陳列。相禮進當魂帛車前跪，贊請進發，又當靈輿前跪，贊請進發。儀衛導從如式。執鐸者振鐸，靈輿動，宮人乘馬哭從不絕聲。【障以行帷。】內侍哭步從，承旨及分侍講院、翊衛司隨行。靈輿至板塵屏門前路，宗親及</p>
--	--	---

가려 막고 명정을 들고 앞서 출발하였다. 혼백여가 중문 밖에 이르니 섭상례가 나아와 혼백여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서 여(輿)에서 내려 거(車)로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거에 안치하고 신주께는 그 뒤에 가져다 놓았다. 재실이 중문 밖으로 나오니, 섭상례가 나아가 재실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서 상여로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봉재실관이 여재실관과 내시를 데리고 재실을 받들어 상여에 올려놓았다. 섭상례가 앞에서 인도하고 명정문(明政門) 밖에 이르러서 혼백거(魂帛車)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조금 머물라고 찬청하니, 여사(輿士)들이 멘 끈을 잠시 동안 늦추었다. 섭상례가 꿇어앉아 출발할 것을 찬청하였다. 상여가 이르니 섭상례가 나아가 상여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머물 것을 찬청하자, 여사들이 멘 끈을 잠시 동안 늦추었다. 섭상례가 꿇어앉아 출발할 것을 찬청하였다.

섭상례가 앞에서 인도하고 외문(外門) 밖으로 나왔다. 섭상례가 나아가 상여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상여에서 내려 영여(靈輿)에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봉재실관이 여재실관과 내시를 데리고 재실을 받들어 영여에 올려놓았는데,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혼백거와 교명·시책인을 실은 요여와 애책을 실은 요여, 우보(羽葆)·명정(銘旌)과 삼(鬃)을 차례대로 진열하여 놓았다. 섭상례가 나아가 혼백거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서 출발할 것을 찬청하였으며, 또 영여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출발할 것을 찬청하였다. 의위(儀衛)와 도종(導從)은 의식대로 하였다. 방울을 잡은 사람이 방울을 흔드니 영여가 움직였으며, 말을 타고 뒤따르는 궁인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행유(行帷)로 가려 막았다.】 내시들은 곡하면서 걸어서 따랐고 승지가 분시강원(分侍講院)·익위사(翊衛司)에서 수행(隨行)하였다. 영여가 판전(板廡)의 병문(屏門) 앞길에 이르자, 종친(宗親)과 배종관(陪從官)은 천담복(淺淡服)으로 길 왼쪽에 순서대로 서 있다가 혼백거와 영여가 이르자 몸을 굽혔으며 지나간 다음 몸을 펴고 차

陪從官，以淺淡服道左序立，魂帛車、靈輿至，鞠躬，過則平身，以次乘馬陪從。【宗廟前路、昌德宮前路，攝相禮贊請少駐，弛擔進發，竝如上儀。】至崇禮門內，攝相禮進當靈輿前跪，贊請少駐。改杠畢跪，贊請進發。至崇禮門外，又跪贊請少駐。內侍奉魂帛函，安於靈帳中靈座，政府以下應參官，入就位。女官奉出魂帛，班首以下俯伏哭，哭止，再拜。班首以下跪，女執事進香案前，上香酌酒，奠于靈座前。守則進靈座之左跪，讀祝文訖，班首以下還本位，俯伏哭，盡哀哭止，再拜。女官奉魂帛，安於函，東、西班奉辭如儀。攝相禮跪，贊請降座陞車。內侍奉魂帛函，安於車，攝相禮跪，贊請進發。又進當靈輿前跪，贊請進發，靈輿動。儀衛、導從如儀。

	<p>례대로 말을 타고 배종(陪從)하였다. 【종묘(宗廟)의 앞길과 창덕궁(昌德宮) 앞길에서 섭상례가 조금 머물 것을 찬청하여 &lt;여사들이&gt; 멘 끈을 늦추었다가 출발하는 것은 모두 위의 의식과 같았다.】 승례문(崇禮門) 안에 이르러서 섭상례가 나아가 영여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머물 것을 찬청하였다. 강(杠)을 고치는 것을 끝내도록 꿇어앉아 있다가 출발할 것을 찬청하였다. 승례문 밖에 이르러서는 또 꿇어앉아 조금 머물 것을 찬청하였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영장(靈帳) 안에 있는 영좌에 안치하니, 정부(政府) 이하 응당 참여할 관원들이 들어와 위차로 나아갔다. 여관(女官)이 혼백을 받들어 내어오니, 반수(班首) 이하가 부복(俯伏)하고 곡하였으며 곡이 끝나자 두 번 절하였다. 반수 이하가 꿇어앉자 여집사가 향(香)을 안상 앞으로 내어 왔으며 향을 올리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올렸다. 수칙(守則)이 영좌 왼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축문을 읽었는데, 끝내고 나자 반수 이하가 본래의 위차로 돌아가 부복하고 슬피 곡하였으며 곡이 끝나자 두 번 절하였다. 여관이 혼백을 받들어 함에 안치하니, 동·서반(東西班)이 의식대로 봉사(奉辭)하였다. 섭상례가 꿇어앉아 영좌에서 내려 거(車)로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거에 안치하니, 섭상례가 꿇어앉아 출발할 것을 찬청하였다. 또 영여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출발할 것을 찬청하니, 영여가 움직였다. 의위와 도종은 의식과 같이하였다.</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22일(갑신) 1번째기사 효순 현빈을 효장의 묘소에 부장하다</p>	<p>효순 현빈(孝純賢嬪)을 효장(孝章)의 묘소(墓所)에 부장(祔葬)하였다. 도감 제조(都監提調)와 장생전 제조(長生殿提調)가 작공(作工)을 데리고 먼저 퇴광(退曠)으로 나아가 외재실(外梓室)을 개탁(開塚)하고 임시로 우판(隅板)에 내려놓고서 정제(整齊)하고 기다렸다. 방상시(方相氏)12470)가 먼저 와서 현실(玄室)로 들어가 창으로 네 모퉁이를 친 다음 명기(明器)·복완(服玩)·증백(繒帛) 등의 물건을 현실의 문밖에 진열하여 놓았다. 여집사가 찬물(饌物)을 진설하고 향을 올리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올렸다. 수칙(守則)이 축문을 읽고 나자</p>	<p>甲申/祔葬孝純賢嬪於孝章墓。 都監提調及長生殿提調率作工， 先詣退曠， 塚開外梓室， 假下隅板， 整齊以待。 方相氏先至， 入玄室， 以戈擊四隅， 明器、服玩、繒帛等， 陳於玄室門外。 女執事設饌， 上香酌酒， 奠于靈座前。 守則讀祝文訖， 女執事撤饌， 內侍奉祝</p>

여집사가 찬물을 치웠고 내시가 축문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었다. 참찬(參贊)이 꿇어앉아 찬도(欝塗)를 열 것을 고하니, 내시가 찬도(欝塗)를 치우는 것을 처음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섭상례가 꿇어앉아 영좌에서 내려 요여(腰輦)로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내시가 교명·책인·시책인·향로·향합을 받들어 집사자(執事者)에게 주니, 각각 요여와 향정(香亭) 안에 안치시켰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요여에 안치하고 신주례는 그 뒤에 가져다 놓았다. 이를 받들고 길유(吉帷) 안으로 나아가니, 섭상례가 꿇어앉아 영좌에 오르기를 찬청하였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고 신주례는 그 뒤에 가져다 놓았는데, 교명·책인·향로·향합은 앞서의 의식대로 하였다. 길의장(吉儀仗)은 길유궁(吉帷宮) 밖에다 좌우로 진설하였다. 섭상례가 나아가 재실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상여에 올라 현실(玄室)로 나갈 것을 찬청(贊請)하였다. 내시가 애책함(哀冊函)을 받들어 집사자에게 주니, 집사자가 요여에 안치시킨 다음 상여 앞에 서자 내시가 수건을 올렸다. 참찬이 수건을 받들고 나아가 재실(梓室)을 닦고 아울러 관의(棺衣)를 털었다. 내시가 명정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 전도(前導)에게 주니, 참찬이 여재실관과 내시를 데리고서 재실을 받들어 상여에 올린 다음 섭상례가 앞에서 인도하였다. 내시가 삼(鬘)과 행장·좌장으로 재실을 가려 막았다. 여사(輦士)가 상여를 받들어 왼쪽으로 돌려 머리를 북쪽으로 한 다음 현실로 나가려 하니, 궁인들이 모두 곡하였고 배종하는 관원들도 곡하면서 걸어서 뒤따랐다. 연도(羨道)12471) 남쪽에 이르러 사위(辭位)에 봉안하였다. 상여가 현실의 방목(方木) 위에 이르러서는 녹로(輓轡)를 사용하여 재실(梓室)을 봉하(奉下)하니, 내시가 관의(棺衣)를 덮고 강(杠)을 버리고 명정(銘旌)을 취하여 그 위에 놓았다. 참찬이 옥백위(玉帛位)에 나아가니 애책(哀冊)을 받든 관원과 옥백(玉帛)을 받든 관원이 그 뒤를 따랐다. 참찬이 여재실관(昇梓室官)과 내시(內侍)를 데리고 윤여(輪輿)로 재실을 받들고 연도로 들어가 현실의 대관(大棺) 안에다 머리를 북쪽으로 가게 하여 안치하였다. 참찬이 내

文，瘞於坎。參贊跪告啓欝塗，內侍陞撤欝塗如初儀。攝相禮跪，贊請降座陞輦。內侍奉敎命、冊印、諡冊印、香爐、香盒，授執事者，各置於腰輦、香亭內。內侍奉魂帛函，安於輦，神主櫃置其後。奉詣吉帷內，攝相禮跪，贊請陞座。內侍奉魂帛函，安於靈座，神主櫃置其後，敎命、冊印、爐·盒置前如儀。吉儀仗陳於吉帷宮外左右。攝相禮進，當梓室前跪，贊請陞輦，卽玄室。內侍奉哀冊函，授執事者，安於腰輦，立於輦前，內侍以巾進。參贊奉巾進拭梓室，并拂棺衣。內侍奉銘旌，授忠義衛前導，參贊率昇梓室官及內侍，奉梓室陞輦，攝相禮前引。內侍以鬘及行障、坐障，障梓室。輦士奉輦，左回北首，將卽玄室，宮人皆哭，陪從群官哭步從。至羨道南奉辭位，輦至玄室方木上用輓轡，奉下梓室，內侍覆以棺衣，取銘旌去杠，置於其上。參贊就進玉帛位，奉哀冊官、奉玉帛官隨之。參贊率昇梓室官及內侍，以輪輿奉梓室，入自羨道，安於玄室大棺內北首。參贊帥內侍，再整棺衣、銘旌，令平正。都監提調帥

시를 데리고 다시 관의와 명정을 정돈하여 평정(平正)하게 하였다. 도감 제조(都監提調)가 속관(屬官)을 거느리고 보삽(黼髮)·불삽(黻髮)·화삽(畫髮)을 재실의 양쪽 곁에다 세웠으며, 묘소 제조(墓所提調)가 그 속관을 거느리고 현실을 단고 자물쇠를 채웠다. 참찬과 장령(掌令)이 함께 문을 단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감독하고 나서 통훈 대부 사헌부 장령 박평(朴珩)은 근봉(謹封)한다고 썼다. 참찬이 흙을 아홉 삽을 떠서 덮었고 이어 회(灰)를 이겨 쌓아서 막았다. 또 애책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꿰어앉아 퇴광(退壙)의 서쪽 위치(位次)에 올랐고 증옥(贈玉)·증백(贈帛)은 꿰어앉아 애책의 남쪽에 올랐다. 예장 제조가 그 속관을 거느리고 명기·복완 등 제구(諸具)를 받들어 편리한 대로 진열하여 향렬이 있게 하였다. 묘소 제조가 작공(作工)을 데리고 뒤이어 일을 끝맺고 지석(誌石)을 내렸다. 현실 왼쪽에 땅을 닦아 놓고 관상감(觀象監)이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의식대로 하였다. 영여와 상여 등숙은 백성(栢城) 안 경지(庚地)에다 불태웠다. 어제(御製)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효순 현빈(孝純賢嬪) 조씨(趙氏)는 관향이 풍양(豐壤)이다. 시조(始祖)는 고려(高麗)의 개국 공신(開國功臣) 상주국(上柱國) 삼중 대광(三重大匡) 문하 시중 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조맹(趙孟)이고, 11대조(代祖)는 부사(府使) 증(贈) 사복시 정(司僕寺正) 조신(趙愼)인데 우리 태종(太宗)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적의 감반(甘盤)의 옛일(12472) 로써 수총군(守塚軍)을 주라고 명하였었다. 고조는 증 판서 조민(趙珉)이고 증조는 증 좌찬성 조상정(趙相鼎)인데 판서 조형(趙珩)의 아들로 조민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조(祖)는 도사(都事)를 지낸 증 영의정 풍흥 부원군(豐興府院君) 조인수(趙仁壽)인데 선정(先正)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문인(門人)이다. 고(考)는 분무 공신(奮武功臣) 좌의정 풍릉 부원군(豐陵府院君) 문충공(文忠公) 조문명(趙文命)이고, 비(妣)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李氏)인데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후손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증 참관 이상백(李相伯)의 딸이다.

其屬，以黼髮、黻髮、畫髮，樹梓室兩傍，墓所提調帥其屬，鎖閉玄室。參贊及掌令，竝監鎖閉，書通訓大夫司憲府掌令朴珩謹封。參贊覆土九鍤，仍築灰以塞。又以哀冊入跪，奠於退壙之西次，以贈玉、贈帛，跪奠於哀冊之南。禮葬提調帥其屬，奉明器、服玩等諸具，逐便陳之，使有行列。墓所提調帥作工，續以終事，下誌石。除地於玄室之左，觀象監祀后土如儀。靈輦及輜之屬，於栢城內庚地，焚之。御製誌文曰：孝純賢嬪趙氏，系出豐壤。始祖高麗開國功臣上柱國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孟，十一代祖府使贈司僕寺正愼，我太宗以龍潛甘盤之舊，命給守塚軍。高祖贈判書珉，曾祖贈左贊成相鼎，以判書珩子，爲珉後。祖都事贈領議政豐興府院君仁壽，先正文純公朴世采門人。考奮武功臣左議政豐陵府院君文忠公文命，妣貞敬夫人李氏，讓寧大君後同知中樞府事贈參判相伯之女。李夫人夢，有人授彤筆，遂生嬪於東部崇教坊，寔我聖考乙未十二月十四日也。容貌端雅粹潔，性度溫良貞一，自幼遊



이부인(李夫人)의 꿈에 어떤 사람이 동필(彤筆)을 건네주는 것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드디어 동부(東部)의 숭교방(崇教坊)에서 빈(嬪)을 낳았으니, 진실로 우리 성고(聖考) 을미년(12473) 12월 14일이었다. 용모는 단아하고 깨끗하였고 성품은 부드럽고 정일(貞一)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장난하며 노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내가 즉조(卽祚)한 3년 정미년(1277)에 간선(揀選)하여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빈(嬪)으로 삼았는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문안(問安)하고 시봉(侍奉)하는 예절에 있어 반드시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하였으므로 나의 두 분 자성(慈聖)께서도 아름답게 여겨 사랑하였다.

아! 슬프다. 가례(嘉禮)를 행한 다음해 중동(仲冬) 16일에 효장(孝章)이 요절(夭折)하였으니, 예로부터 어찌 청상 과부가 없었겠는가마는, 빈(嬪)과 같은 경우가 있었겠는가? 상여가 나가던 날 자리에 몸져누워 곡읍(哭泣)하면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으므로 내가 온갖 방법으로 개유(開諭)하였더니, 빈이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기를, ‘이미 후사가 없으니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눈물을 부리면서 대답한 말이 있었고 자성께서도 지성으로 권면하니, 빈이 억지로 마지못해 음식을 들기도 하였다. 거상(居喪)하면서 예(禮)를 행함에 있어서는 성인(成人)과 다름이 없어 오시(五時)의 제전(祭奠)을 몸소 스스로 살폈으며 기상이 항상 늙연(凜然)한 상태로 3년을 지냈으니, 처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 가운데 더더욱 애통한 것은 최복(衰服)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례(筵禮)를 올린 것이었다. 무신년(1274) 이후로 구부(舅婦)가 서로 의지하여 회포를 위안해 왔었는데, 이제 빈은 돌아가 의지할 데가 있게 되었지만 나는 장차 어떻게 위안받을 수 있겠는가? 아! 빈은 비록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위를 섬기는 예절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항상 치료하기 어려운 기질(奇疾)을 앓고 있었지만 제전(諸殿)에 문후(問候)하는 예절은 한결같이 전일과 똑같이 하였다. 선의(宣懿)12475)의 국홀(國恤)이 복(服)을 끝내는 해에

戲，異於凡兒。予卽祚三年丁未，選爲孝章世子嬪，雖在沖年，其於問安侍奉之節，必誠必敬，我兩慈聖，嘉之愛之。嗚呼痛矣！嘉禮翌年仲冬十六日，孝章夭逝，自古豈無青孀，而其有如嬪者乎？喪出之日，委席哭泣，勺水不入口，予萬般開諭，則嬪飲泣而對曰，‘旣無其後，生何爲乎？’予揮涕有答語，慈聖至誠勸勉，嬪雖勉強而或啜。居喪執禮，無異成人，五時祭奠，躬自看視，氣常凜綴，挨過三載，初豈料哉？其尤痛者，加笄于衰服中也。自戊申以後，舅婦相依而慰懷，今則嬪雖有歸依，予則其將何慰？嗚呼！嬪雖無世念，而事上之節，一心匪懈。恒抱難醫之奇疾，而諸殿起居之禮，一如前日。宣懿國恤，在於闋服之年，嬪尤悲痛，究其心彌切感焉。嬪性本澹泊，不喜華美，居常恬然。怡然以其執心之貞確，處事之周詳，無愧於有識君子。其叔爲相，心常憫焉，聞解則喜，聞拜則蹙。眉造標識，分與私兄弟之妻，凡問安書札，憑此爲驗，而必使示其家長，然後乃入，其謹嚴可見。豐陵與夫人之喪，荐出數年之內，以嬪孝

있었는데, 빈이 더더욱 비통해 하였으니, 그의 마음을 추구하여 보면 절실한 슬픔이 그지없었을 것이다.

빈은 성품이 본디 담박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며, 평상 시에는 태연하게 기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가 지닌 마음의 정확(眞確)함과 일을 처리함이 주밀하고 상세하였으니, 식견이 있는 군자(君子)에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의 숙부(叔父)가 정승에 제배되었을 적에는 마음으로 항상 민망하게 여겼으며 해직(解職)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였고 제배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위축되었다. 눈썹으로 표지(標識)를 만들어 사형제(私兄弟)의 아내들에게 나누어주고 모든 문안하는 서찰(書札)을 이를 빙자하여 고험(考驗)하였는데 반드시 가장(家長)에게 보여준 연후에야 들여오게 하였으니, 그 근엄함을 가히 알 수 있다. 풍릉(豐陵)과 부인(夫人)의 상사(喪事)가 수년 사이에 잇따라 났었으니, 빈의 효성스런 마음에 더더욱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지탱하여 왔으니, 그것만도 또한 다행인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려 한 것은 곧 빈의 지극한 소원인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 같은 달에 돌아갔으니, 빈이야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내가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는 것은 세상에 누군들 구부(舅婦) 사이가 없겠는가마는, 나와 빈의 사이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부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면서 지낸 지가 이제 25년이나 되었는데 또 마음을 알아주는 효부(孝婦)를 영결(永訣)하였으니, 이 뒤로는 추모(追慕)하는 회포와 슬퍼하는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 말하면서 회포를 풀 수 있겠는가?

평소의 성효(誠孝)에 관해서는 이루 다 붓으로 기록하기 어렵고 그 대략만을 기록하면, 평상시 자신이 먹는 데 쓰는 것은 두어 그릇의 음식에 불과한데다 그 또한 먹지 않는 때가 태반이었고 그런 가운데도 내가 즐기는 음식은 차마 먹지를 못하였다. 근래 내가 식사를 적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만일 그의

心, 尤何堪焉? 猶能支撐于今, 其亦幸矣。 而其欲先歸, 卽嬪至願, 于今遂願, 同月以歸, 嬪何憾也? 而予所慟者, 世孰無舅婦而未有若予與嬪者矣。 舅婦相爲知心, 今至二十有五年, 又訣知心之孝婦, 從今以往, 追慕之懷悲疚之心, 復將語誰而瀉懷? 恒日誠孝, 難以筆記, 若其大略, 則常時自奉, 不過數器, 亦甚齷齪, 而予所嗜者, 不忍食焉。 近者悶予少食, 若臨其宮, 諸饌必極滋味。 誠孝所致, 能感侍御, 纔坐而膳隨至, 先期烹飪, 其若豫知。 雖房內坐榻, 恐其褥之或冷, 鋪榻下而取溫, 雖以身溫被之孝, 何以加此? 一日飯不過一次, 匙不過數舉, 所食者唯予餘膳。 而予多食則喜而多食, 只下筋則悶而不食。 以予所食, 親自熟粟, 長逝之日, 有所熟尚在于盤, 蓋欲進而疾篤不能。 吁亦痛矣! 嬪於今年, 爲予用心尤過, 予往見而回, 則必隨至門, 或恐予知, 不履而隨者多, 豈其心動而然歟? 嗚呼痛哉? 動駕經宿之日, 則不解衣而坐, 沿路傳語, 恐人踐踏, 聚而裹封, 書以年月, 此亦敬謹之一端也。 昨年溫幸時, 膳續于道, 偶得小

궁(宮)으로 임어할 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찬물(饌物)을 반드시 극진히 맛있게 장만하여 주었다. 이런 지극한 성효(誠孝)가 시어(侍御)들을 감동시켰으므로 앉자마자 찬물이 뒤따라 도착하니, 시기에 앞서 음식을 준비하여 놓은 것이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같이 하였다. 방안의 좌탁(坐榻)도 그 요가 흑시라도 찰까 염려하여 탁(榻) 아래에다 깔아놓아 따스하게 만들었으니, 비록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효성인들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 밥을 먹는 것이 한번에 불과하고 숟가락을 드는 것도 몇 번 드는 것에 불과한데, 먹는 것이라고는 오직 내가 남기는 찬선(饌膳)뿐이었다. 내가 많이 먹으면 기뻐하여 많이 먹다가도 내가 수저만 대고 말면 걱정하면서 먹지 않았다. 나를 먹이려고 직접 스스로 밥을 삶았는데 영원히 졸서(卒逝)하던 날에도 삶아 놓은 것이 오히려 소반에 남아 있었으니, 이는 진상(進上)하려 하다가 병이 위독하여 하지 못한 것이다. 아! 또한 슬프기 그지없다. 빈이 금년에 나를 위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너무 지나쳐 내가 가서 만나고 돌아올 적이면 반드시 문까지 따라 나왔는데, 혹 내가 알까 저어하여 신발도 신지 않고서 따라 나온 경우가 많았었으니, 어찌 그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아! 슬프다. 동가(動駕)하여 하룻밤을 묵는 날이면 옷을 벗지 않고 앉아 있었으며 연로(沿路)에서 적어서 전한 말은 사람들이 밟을까 염려하여 모아서 봉지에 싸서 넣고는 연월(年月)을 기록하여 두었으니, 이 또한 경근(敬謹)히 하는 것의 한 단서인 것이다. 작년 온천(溫泉)에 거동할 적에도 찬선(饌膳)을 도중에 계속 보내어 왔었는데, 우연히 상자에서 소지(小紙)를 취득하여 보니, 날짜를 안배해서 기록하고 또 보낸 사람의 이름을 써 두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소 채실(梓室)에 넣어주었다. 아! 효장(孝章)의 기일(忌日)이 곧 빈의 사고(私姑)의 기일이다. 그래서 매양 그달이 되면 기일(期日)에 앞서 소식(素食)을 했으므로 토황증(吐黃證)이 여러 해 누적되어 빌미가 되었는데, 같은 날 무덤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그리하여 병

紙于篋筒中，排日以記，又書所送之人，予見痛泣，親納梓室。噫！孝章之忌日，卽嬪私姑忌日也。每逢其月，前期行素，吐黃之證，積年所崇，而欲歸於同日，乃其志也。疾篤之夜，初昏以前，勸予水刺，報漏以後，只聞今將逝矣之一聲，不復聞勸進矣，嗚呼痛哉！戊申和淚，作孝章之行錄，今此孝婦行錄，又復和淚而記。遙望蒼蒼，只自摧腸。辛未十一月十四日，隔孝章忌一日，薨逝於昌德宮之宜春軒，卽建極堂之東室，而予故居也。嬪得年三十七，命號賢嬪，在於乙卯，而壬申正月十一日，賜諡孝純。哀我孝婦！得其諡矣。其月二十二日，祔于孝章墓左乙坐，而外封亦向西。依戊申例，以行錄作誌文，亦令集摹。予所寫孝章誌文字，補其闕字以鐫。予今衰暮，前後作子與婦行錄，心雖無憾愴，舊悲今慟懷曷喻？泣涕呼寫，夜如何其深？刻以藏永垂于後。時，皇明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予卽阼二十七年仲冬識。

	<p>이 위독한 날 밤에도 초혼(初昏) 이전에는 나에게 수라(水刺)를 권하였는데 보루(報漏) 이후에는 단지 지금 졸서하려 한다는 소리 한마디만 들렸을 뿐 권진(勸進)하는 소리는 다시 듣지 못하였으니, 아! 슬프다.</p> <p>무신년에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 효장의 행록(行錄)을 지었었는데, 이제 이 효부의 행록을 또다시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가면서 기록하는구나.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다만 스스로 역장만 무너질 뿐이다. 신미년(12476) 11월 14일 효장의 기일(忌日)을 하루 사이에 두고 창덕궁(昌德宮)의 의춘헌(宜春軒)에서 흥서(薨逝)하니, 곧 건극당(建極堂)의 동실(東室)이요 내가 예전에 거처하던 곳이다. 빈은 향년(享年)이 37세이고, 현빈(賢嬪)이라 호칭하도록 명한 것은 을묘년(12477)에 있었으며, 임신년(12478) 정월 11일에 시호(諡號)를 효순(孝純)으로 내렸다. 불쌍한 나의 효부여! 걸맞는 시호를 얻었도다. 같은 달 22일 효장의 묘(墓) 왼쪽 을좌(乙坐)에 부장(祔葬)했는데, 외봉(外封)도 또한 유방(西方)을 향하게 하였다. 무신년의 전례에 따라 행록(行錄)에 의거 지문(誌文)을 지었으니, 또한 집모(集摹)하게 하라. 내가 쓴 효장의 지문의 글자 가운데 빠뜨려 놓았던 것도 보충하여 새기게 하라. 내가 이제 노쇠한 나이에 전후 아들과 며느리의 행록을 지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고 하겠으나, 옛 슬픔과 지금의 슬픔으로 아픈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눈물 흘리고 오열하면서 쓰노라니, 밤은 어찌 그다지도 깊단 말인가? 이를 돌에 새겨 영구히 보관하여 먼 후세에까지 전하게 하노라. 황명(皇明)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1백 24년 내가 즉조(卽阼)한 지 27년 되는 중동(仲冬)에 기록한다.”</p> <p>하였다.</p>	
<p>영조 75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월 22</p>	<p>제주관(題主官) 심성진(沈星鎭)이 들어와 길유궁(吉帷宮)의 위차로 나아갔다. 도제조(都提調)와 도감 당상(都監堂上), 예조 당상(禮曹堂上) 각각 1인씩과 승지 조돈(趙墩)이 흑단령(黑團領)으로 들어와 위차로 나아갔다. 내시(內侍)가</p>	<p>題主官沈星鎭入就吉帷宮位。 都提調及都監堂上・禮曹堂上各一人、承旨趙墩，以黑團領入就位。 內侍詣靈座</p>

<p>일(갑신) 2번째기사 효순 현빈의 신주를 봉안하고 초우제를 행하다</p>	<p>영좌(靈座) 앞으로 나아가 신주궤(神主櫃)를 들어다가 탁상(卓上)에 올려놓고 나서 궤를 열고 신주를 꺼내어 향탕(香湯)에다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탁상 위에 넣어놓았다. 제주관이 탁상 앞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서 먼저 함중(陷中)12479) 에다 ‘조선국 효장 세자빈 조씨 신주(朝鮮國孝章世子嬪趙氏神主)’라고 쓰고, 그 다음 전면(前面)에다 ‘효순 현빈 신주(孝純賢嬪神主)’라고 썼다. 묵서(墨書)를 끝마치자 내시가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고 덮개를 덮어서 영좌 위에 안치하였으며, 혼백함(魂帛函)은 그 뒤에 두었다. 도제조 이하가 물러 나아가니, 헌관(獻官)이 들어와 위차로 나아갔다. 내시가 예찬(禮饌)을 받들어 영좌에 진설하고 나서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제자리에 안치하고 저건(苧巾)으로 덮었다. 궤(几)는 그 뒤에 설치하였다. 헌관이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올리고 술을 따라서 집사(執事)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게 하였는데, 잇따라 석 잔을 올렸다.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고 나서 본래의 위차로 돌아가니, 헌관 이하가 부복하고 슬프게 곡을 한 다음 두 번 절하였다. 내시가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으니 헌관 이하가 물러 나아갔으며, 내시가 찬물(饌物)을 치웠다. 내시가 축문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고나서 이어 초우제(初虞祭)를 의식대로 행하였다.</p>	<p>前, 奉神主櫃, 置於卓, 開櫃出神主, 浴以香湯, 拭以巾, 臥置於卓。 題主官詣卓前西向立, 先題陷中曰朝鮮國孝章世子嬪趙氏神主, 次題前面曰孝純賢嬪神主。 墨書訖, 內侍奉神主納于櫃, 加蓋安於靈座上, 魂帛函置其後。 都提調以下出, 獻官入就位。 內侍奉禮饌設於靈座, 開櫃奉出神主, 安於座, 覆以苧巾。 設几於後。 獻官詣香案前跪, 三上香, 酌酒授執事, 奠靈座前, 連奠三盞。 大祝讀祝文訖, 還本位, 獻官以下俯伏哭盡哀止, 再拜。 內侍奉神主, 納于櫃, 獻官以下出, 內侍撤饌。 內侍奉祝文, 瘞于坎, 仍行初虞祭如儀。</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3월 4일 (을축) 2번째기사 왕세손이 통명전에서 흥서하다</p>	<p>왕세손이 통명전(通明殿)에서 흥서(薨逝)하였다. 하교하기를, “몇 달 사이에 며느리를 잃고 손자를 잃었으니, 이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라? 세손이 지금 3월 초4일 묘시(卯時)에 흥서하였다. 예조에서는 자세히 알아 두라.” 하였다.</p>	<p>王世孫薨于通明殿。 教曰：“數朔之內, 哭婦哭孫, 此懷何喻? 世孫以今三月初四日卯時薨逝。 儀曹知悉。”</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3월 4일 (을축) 6번째기사</p>	<p>예조에서 말하기를, “상식(上食)할 때나 제(祭)를 올릴 때에는 종친과 공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윤번으로 직숙(直宿)하는 규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해부(該府)</p>	<p>禮曹言：“上食, 獻祭時, 有宗親及功臣子孫一人輪次直宿之規, 今亦依例, 令該府差出何如?” 允之。</p>

<p>상식할 때와 제를 올릴 때에 직속하는 규례에 대해 아뢰다</p>	<p>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3월 4일 (을축) 7번째기사 종부사에서 혼궁에 입직할 사람을 차출하는 일을 아뢰다</p>	<p>종부시(宗簿寺)에서 말하기를, “이번에 혼궁(魂宮)에 입직할 종실 4인과 상식할 때와 제를 올릴 때에 집행할 충의(忠義) 한 사람을 전례대로 차출하라고 하셨는데, 해당된 품계가 모자라니 종2품 이하를 통틀어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p>	<p>宗簿寺言：“今此魂宮入直宗室四員及上食、獻祭時進止忠義一員， 依例差出， 而當品乏少， 以從二品以下通融備擬何如？” 允之。</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3월 11일(임신) 1번째기사 영의정 김재로가 동북면의 유민을 구제할 것을 청하다</p>	<p>관상감의 당상(堂上)이 산을 살펴보고 돌아와 입시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신이 연희궁(衍禧宮)을 봉심하고 돌아올 때에 거지를 만나 물어보니, 동북면(東北面)의 유민(流民)이었습니다. 마땅히 진휼청에서 구제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북의 굶주린 백성이 많이 도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린이도 있다 하니, 듣기에 매우 측은하다. 진휼청으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식량을 주어 내려 보내고 어린 무리는 식량을 주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직접 맡겨 잘 구제하게 하며, 동북의 도신(道臣)은 중추(重推)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壬申/觀象監堂上看山後入侍。 領議政金在魯曰：“臣奉審衍禧宮歸路， 見流丐問之， 則東北流民也。 宜自賑廳救活矣。” 上曰：“東北飢民， 多入城中， 亦有幼穉云， 聞甚惻然。 令賑廳濟活， 願歸者給糧下送， 幼穉之屬， 給糧逢授於可信人處， 善爲接濟， 東北道臣重推。” 又教曰：“國役稠疊， 此心奚弛。 畿甸祭需貢價， 頃已特減， 既爲民弊。 奚徒畿邑。 諸道祭需貢價， 一例特減， 其代以昨年耗穀劃給焉。”</p>

	<p>“나라에 역사가 겹치니, 이 마음이 어떻게 놓이겠느냐? 경기의 제수 공가(祭需貢價)는 접때 이미 감해주라고 하였으나, 이미 민폐가 되어왔다. 어찌 경기 고을 뿐이겠는가? 여러 도의 제수 공가를 일률적으로 특감하고 그 대응은 작년의 모곡(耗穀)에서 갈라 나누어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3월 24일(을유) 1번째기사 약방에서 어영 대장 홍봉한이 빈궁을 위해 금궤당귀산을 더 지어 올렸음을 아뢰다</p>	<p>약방에서 말하기를,</p> <p>“어영 대장 홍봉한(洪鳳漢)이 의녀(醫女)를 데리고 빈궁(嬪宮)에 입진하였는데, 물러나온 뒤에 여러 의원과 상의하여 금궤당귀산(金櫃當歸散) 다섯 첩을 더 지어 올렸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옵니다.”</p> <p>하였다.</p>	<p>乙酉/藥房言：“御將洪鳳漢，率醫女入診嬪宮，退出後，與諸醫詳議，金櫃當歸散加入五貼製入之意，敢啓。”</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3월 26일(정해) 1번째기사 관윤 박문수가 묘소 근처의 보리를 베고 길을 닦자고 하니 곡식을 짓밟지 말게 하다</p>	<p>관윤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p> <p>“얼마 전에 묘소 근처의 보리를 익은 뒤에 베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는 백성을 돌보시는 성스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외재실(外棗室)은 다음 달 초 9일에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신이 자세히 살펴보고 추산해 보니 대가(代價)는 피곡 20여 석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이 피곡은 호조에서 나누어 주게 하고 그대로 길을 닦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백성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곡식을 짓밟지 말고 잘 베어다가 말을 먹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丁亥/判尹朴文秀奏曰：“頃者墓所近處牟麥，待熟刈取爲教。此出於恤民之聖意，而外棗室以來月初九發行，故臣詳審磨鍊，則價不過皮穀二十餘石。自戶曹分給，仍爲治道似宜。”上曰：“非特爲民也。方長之穀，勿爲蹂傷，善爲刈取，以喂馬可也。”</p>

	<p>하였다.</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3월 29 일(경인) 1번째기사 도제도 김약로가 백성 의 일에 유념할 것을 아뢰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도제조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근일에 단지 상장(喪葬)의 일에만 마음을 쓰시고 백성의 일에는 유념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하였다.</p>	<p>庚寅/藥房入診。 都提調金若魯曰： “近日只以喪葬事用聖慮， 民事則不爲 留念， 誠悶矣。”</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4월 2일 (계사) 1번째기사 제상에 덮을 상보의 크기와 묘소의 와무와 와조에 관해 의논하다</p>	<p>묘소 도감의 도청(都廳)과 호조 판서가 입시하였다. 도감의 낭청 홍낙성(洪樂性)이 말하기를, “감조관(監造官)이 제상(祭床)에 덮을 상보[床巾]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김상성(金尙星)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상보는 으레 4면(面)을 둘렀는데 이제 생초(生綃)의 큰 보(袱)로 덮는다면 낭비일 뿐더러 제도도 잘못된 것 같으니, 덮지는 말고 누르기만 하라.”  하고, 이어 각 능묘의 상보를 일례로 법식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김상성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묘소에 와무(瓦甌)와 와조(瓦竈)를 더 줄이라는 하교가 계셨으나, 와무는 술과 젓갈을 담는 그릇이니 예(禮)로 보아서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癸巳/墓所都監都廳、戶判入侍。 都 監郎廳洪樂性曰：“監造官問祭床所覆 巾大小矣。” 上顧謂金尙星曰：“床巾， 例繞四面， 而今以生綃大袱覆之， 非特 浮費， 制度似誤， 其令不覆而繞之。” 仍命各陵墓床巾， 一例著式。 尙星曰： “頃有墓所瓦甌、瓦竈增減之教， 而甌 所以盛酒醢， 禮不可廢。” 上曰：“五 穀易生蟲， 似不潔矣。 瓦甌除去也。”</p>



	<p>“오곡(五穀)은 벌레가 생기기 쉬우니, 정결하지 못한 것 같다. 와무는 없애라.”</p> <p>하였다.</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4월 2일 (계사) 2번째기사 삼상이 호조의 황첩도 없이 사사로이 매매하 면 해당 부사를 처벌 하라고 명하다</p>	<p>하교하기를, “삼상(蔘商)이 만일 호조의 황첩(黃帖)도 없이 사사로이 매매하면 해당 부사(府使)는 금고(禁錮)의 율로 시행하라.”</p> <p>하였다. 호조 판서 김상성(金尙星)이 일본(日本)의 예단(禮單)에 쓰일 삼을 채울 수 없다고 진달하였는데, 대체로 삼상이 삼을 가지고 왜관(倭館)에 가서 매매하면 이익도 많고 황첩이 없으면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몰래 잠입한 자가 많았으므로, 동래 부사가 이들을 금칙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p>	<p>○敎曰：“蔘商若無戶曹黃帖，而私自賣買，則當該府使，施以禁錮之律。” 戶曹判書金尙星以日本禮單蔘之無以充數陳達，而蓋蔘商持蔘賣於倭館則利多，無黃帖則不納稅而潛入者，萊伯當禁飭，故有是命。</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4월 18 일(기유) 9번째기사 초정을 신문하다</p>	<p>초정을 신문하였는데, 초정은 이소(李炤)의 비첩(婢妾)으로 이인명(李仁明)과 이경명(李經明)의 어머니되는 사람이다. 초정이 공초하기를,</p> <p>“신은 본래 승선군(崇善君)의 방자 나인으로서 소의 첩이 되었는데, 이양제는 소의 6촌이기 때문에 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미년(12554) 에 소가 죽으니, 그의 처 박씨(朴氏)가 20년이나 소박받은 몸으로 상차(喪次)에 와서 신의 모자의 의복과 짐물(什物), 전지(田地) 등을 모조리 빼앗고 신의 모자를 쫓아냈습니다. 신의 지아비가 살아 있을 때 어린 것들을 이양제에게 부탁하여 이양제가 항상 신의 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이 과연 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加平)의 이양제 집에 가서 거접하였습니다. 신의 자식 하나가 죽은 뒤에 처음으로 이양제 집의 노복 한 사람을 박씨에게 보내서 장례 비용을 청하였더니, 주지도 않고 쫓아보냈습니다. 박씨가 들여세운 양자</p>	<p>問草貞，草貞卽炤婢妾，爲仁明、景明母者也。草貞供：“臣本以崇善君房子內人，爲炤之妾，李亮濟，炤之六寸故臣知之。己未炤死，其妻朴氏以二十年踈逐之身，來到喪次，臣之母子衣服、什物、田地，盡奪而逐出。而臣夫生時，托孤於亮濟，而亮濟間常率往臣三子教以文字，故臣果率臣子，往接於加平亮濟家矣。臣一子死後，始送亮濟家一奴，請得葬需於朴氏，則不給而逐送之。朴氏所得養子，不知其爲幾許寸，而果川李弘緒之子也。弘緒</p>

	<p>는 몇 촌간이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과천(果川)에 사는 이홍서(李弘緒)의 아들입니다. 이홍서는 박씨와는 인척이 되는 사이인데 이경제(李經濟)가 사이에 들어 지시하여 양자로 삼았습니다. 향옥은 처음에는 나인(內人)의 방자이였으나 나인이 죽은 뒤에는 궁에서 나와 시전(匙塵)에 살면서 궁인에게 술을 팔아 생계(生計)를 삼았는데, 그저께에도 소의 집에 왔었습니다. 신의 지아비에게는 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곧 막례(莫禮)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소가 죽은 뒤에 막례와 신은 한꺼번에 쫓겨났는데, 소의 처가 죽은 뒤에는 막례의 소생과 신의 아들이 함께 양자의 집에 있습니다. 병인년(1255)에 땅에 엎드려 호소했을 때에는 신의 아들에게 부직(付職)을 바라고 신이 과연 지휘하여 한 것이나 여선군(驪善君)이 아뢴 말은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이양제에게 언찰(諺札)을 보낸 것은 다만 전토(田土)를 추심하는 일로 서찰을 왕래한 바가 있었으나, 공모하였다는 일에 있어서는 천만 애매합니다. 나라를 원망하는 말은 입에서 나온 일도 없는데 이양제가 지만(遲晚)하였다고 납공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그는 과연 흉악합니다.”</p> <p>하였다.</p>	<p>與朴氏爲姻家，而李經濟居間指示定養矣。香玉初爲內人之房子，內人死後出來，居於匙塵，宮賣酒資生，而再昨亦來炤家矣。臣夫又有一妾，卽莫禮，生二子。炤死後，莫禮與臣一併見逐，炤妻死後，莫禮所生與臣子，同在養子家矣。丙寅伏地時，臣果指揮臣子希望付職而爲之，驪善所達之語，不得詳知。亮濟許諺札，只以田土推尋事，有所書通，至於同謀事，千萬曖昧矣。怨國之言，無所發口，而聞亮濟遲晚納供之辭，果爲凶惡矣。”</p>
<p>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4월 19일(경술) 3번째기사 점남을 신문하다</p>	<p>점남(占男)을 신문하니, 점남이 공초하기를,</p> <p>“신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떡을 팔아서 살아가는데, 이씨(李氏) 성을 가진 양반 한 분이 금년 정월부터 번번이 와서 떡을 사 먹었습니다. 혹은 하루 걸러 오기도 하고 혹은 며칠만에 오기도 하는데 오면 반드시 아침 일찍 왔습니다. 또 반드시 글씨가 쓰여진 종이가 있어 크기는 손바닥 만하였으며 언문으로 썼었고 따라다니는 두 아이로 하여금 번갈아 전하게 하였는데 정동궁(貞洞宮)에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한 양반이 걸어 와서 조용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곧 데리고 나갔는데, 이씨 양반을 따라온 아이가 ‘과천(果川) 아저씨’라</p>	<p>問占男， 占男供：“臣貧甚賣餅資生，有一李姓兩班，自今正月，每來買喫。或間一日或三數日一來，來必早。又必有書紙樣，僅如掌，寫以諺文，使所隨兩兒，遞相傳去，稱以送于貞洞宮。一日有一兩班步來，相語以不從容，卽爲相率而出去，而李姓兩班所隨小兒，呼之以果川叔云矣。”</p>

	고 불렀습니다.”  하였다.	
영조 76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5월 4일 (갑자) 2번째기사 사복시 도제조 감약로가 사복시에서 관리하는 전관리의 밭에 관해 아뢰다	사복시(司僕寺) 도제조 김약로(金若魯)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사복시에서 관리하는 전관리(箭串里)의 밭은 사복시에서 세를 받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임진 왜란 때에 말을 끌을 사람이 없었음을 징계하여 경기의 백성 1백 20명을 뽑아 올려 전관리에 살게 하고 밭을 나누어 주어 생활의 터전으로 삼게 하였으며 또 남은 세곡(稅穀)으로는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어 진휼하는 저축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내농포(內農圃)가 관리하는 신천(新川)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내농포의 밭이 흑포락(浦落)12568) 이 되면 사복시의 밭을 빌려 채소를 심어 공상(供上)하여 왔는데, 저지난 무자년(12569)에 처음 대응으로 받기를 청하여 결국 전관리의 밭을 떼어가 버렸으니, 말을 끌 인부들은 농토를 잃고 점차 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내농포의 밭 이생처(泥生處)12570)에 다시 개간할 것이 이미 원 평수가 족히 되고 또 잠실(蠶室)의 밭을 더 떼어 받은 것도 있다 합니다. 전에 떼어간 <전관리의 밭을> 사복시에 되돌려 줄 것이며, 여러 궁가(宮家)에서 자기들 채전을 사복시의 밭과 바꾸어 달라고 늘 요청하고 있으니 또한 윤허하시지 마시고 현저하게 법으로 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司僕都提調金若魯白于上曰：“太僕所管箭串之田，非爲本寺收稅也。蓋懲壬辰之亂牽馬無人，抄上畿民一百二十名，分居箭串里，給田以資其生，又以所餘稅穀，備分糶賑(齊) [濟] 之儲矣。其地與內農圃所管新川相接，故農圃之田或爲浦損，則借地種菜，以當供上，自二去戊子，創請代受，割箭串田以去，牽夫失土，漸至難保。今聞農圃田泥生還墾者，已復元數，且有蠶室田加劃得者。前所劃去者，還屬太僕，諸宮家菜田，每以換牽夫田爲請，亦勿許施請，著爲式。”上可之。
영조 77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6월 11일(경자) 2번째기사 예단의 삼은 동래부의	접위관(接慰官) 이성경(李星慶)의 장계로 인해 예단(禮單)의 삼(蔘)으로 돈삼계(獫蔘契)나 조삼(造蔘)을 쓰지 말고, 동래부의 세삼(稅蔘) 및 상역(商譯)들에게 있는 삼으로 수를 채워 주도록 명하였다.	因接慰官李星慶狀啓，命禮單蔘，勿用獫蔘契造蔘，以萊府稅蔘及商譯處所在蔘，充數給之。

<p>세삼 및 상역의 삼으로 수를 채워주라고 명하다</p>		
<p>영조 77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6월 13일(임인) 2번째기사 균역청 낭청과 균역청의 설치에 관해 의논하다</p>	<p>임금이 균역청 낭청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균역청의 설치는 양민과 해민을 위한 선정인 것이다. 은결(隱結)의 경우 이미 현록(現錄)한 뒤라 그 잡비와 세(稅)가 대동(大同)과 같다. 하지만 선무포(選武布)의 결전(結錢)과 어염세(魚鹽稅)의 경우 만약 남징(濫徵)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한 가지 민폐를 덜고 한 가지 민폐를 더하는 격이니, 어찌 내가 백성을 위하는 뜻이 되겠는가? 경외(京外)에 만약 이런 폐단이 있다면, 감관(監官)·호수(戶首)·색리(色吏)는 엄하게 형신하여 정배하고, 수령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적용시키도록 하라. 만약 봉납(捧納)한 돈과 무명을 제마음대로 환색(換色)하되 범죄한 것이 수령에 있을 경우는 10년 동안 금고(禁錮)하고, 범죄한 것이 색리에 있을 경우는 엄하게 형신하여 먼 곳으로 정배하라. 이것을 사목(事目)의 끝 부분에 신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번에 조삼(造蔘)을 보았는데, 족두리풀 부리[細辛]로 가짜 형체를 만들어 삼(蔘) 껍질을 풀로 붙여 봉했으니, 납(鉛)을 바친 것과 어찌 다르랴? 옛날 양호(羊祐)12633)는 일개 장수였지만, 정성이 적국(敵國)을 감동시켜, ‘어찌 사람을 해칠 양숙자(羊叔子)이겠는가?’란 말이 있었다. 당당한 나라로서 보잘것 없는 공인(貢人)이 이처럼 가짜를 만들어 교린(交隣)에 미더움이 없게 하였으니, 이런 모양의 삼은 실로 꼴을 묶어 높은 값을 받고자 한 것이다. 계인(契人)은 일률(一律)을 적용하여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함이 마땅하나, 십분</p>	<p>上召見均役郎廳，教曰：“均廳爲良民爲海民之善政也。隱結則既現錄之後，其所雜費與稅大同同。而至於選武布結錢、魚鹽稅，若有濫徵之事，則此除一民弊而增一民弊，豈予爲民之意也？京外若有此弊，則監官、戶首、色吏嚴刑定配，守令施以制書有違之律。若所捧米錢木，任意換色，而犯在守令，則十年禁錮，犯在色吏則嚴訊遠配。以此載錄事目末編。”又教曰：“今覽造蔘，以細辛作塑，以蔘皮糊封，何異納鉛乎？昔之羊祐，卽一將也，而誠孚敵國，有豈有鳩人羊叔子之語。以堂堂之國，么鷹貢人，若是作俑，使不信於交隣，此樣之蔘，實是束芻而欲徵高價。契人當施一律，使民懲創，而十分參酌，行首貢人及首倡造蔘者，嚴刑島配。”</p>

	<p>참작하여 행수 공인(行首貢人)과 조삼을 맨 먼저 주창한 자를 엄하게 형신하여 절도에 정비하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77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6월 17일(병오) 5번째기사 제주목에서 죄인 이증(李增)이 물고(物故)되었음을 알리니 죄인을 풀어주라고 명하다</p>	<p>제주목(濟州牧)에서 장계(狀啓)하기를,  “죄인 이증(李增)12634 이 물고(物故)되었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하교하기를,  “가까운 종친으로는 단지 여선군(驪善君) 형제가 있을 뿐인데, 교활하고 음흉한 권혜(權嵒)·권집(權縑) 때문에 또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졌던 것이다. 공의를 거스르기 어려워 처치하기는 했지만, 측은한 마음이 항상 풀리지 않았는데, 몇 년간을 해도(海島)에서 지냈으니, 왕법(王法)도 이미 충분히 베푼 셈이다. 아! 이미 죽은 가까운 종친을 만약 풀어주어 물고(物故)로 나오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옥식(玉食)을 대해도 맛이 없고 상훈(常訓)을 어루만져도 절로 슬프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은혜와 법을 모두 베푼는 바이니, 특별히 풀어주도록 하되, 운구(運柩) 때 해도(該道)로 하여금 담군(擔軍)을 보조해 주고 또한 해조(該曹)로 하여금 면포(綿布)·마포(麻布)·쌀·콩·구재(柩材)를 후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의 뜻을 표하게 하라. 그 직첩(職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喪葬) 등의 소용 물품’이라 하지 않고, 물명(物名)을 제급(題給)이라 일컫는 것이니, 곧 흘전(恤典)인 것이다. 유사(有司)의 신하가 어찌 감히 다룰 수 있으랴?”</p> <p>하였다. 승지 임집(任臬)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종친을 도타이 대우하시는 거룩한 덕이 이처럼 측은(惻怛)하나, 대론(臺論)이 바야흐로 한창 일어나고 있는 때에 죄인을 풀어주도록 하심은 3</p>	<p>濟州牧啓言：“罪人增物故。”上教曰：“近宗只有驪善兄弟，而因巧黠陰譎之嵒、縑，又陷叵測。難拂公議而處之，惻然之心常不弛，幾年海島，王法已伸。噫！已故近宗，若不放而出島，其將對玉食而靡甘，撫《常訓》而自悲。此亦恩法之俱伸也，特爲放送，運柩時，令該道，助其擔軍，亦令該曹，綿布、麻布、米、太、柩材厚給，以表予意。其不給牒，故不曰喪葬等需，而稱物名題給，便是恤典。有司之臣，焉敢爲爭？”承旨任臬曰：“聖上敦宗之盛德如是惻怛，而臺論方張之時，罪人放釋，三百年所無之事，政院不當捧入徽旨矣。”上曰：“已已故之人，將何爲哉？卽爲頒布。”仍教曰：“士族婦人，雖名編徒流案，物故後勿爲檢驗事，載之受教。”</p>

	<p>백 년 이래 없던 일이니 정원에서는 휘지(徽旨)를 봉입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이미 죽은 사람이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즉시 반포(頒布)하라.”</p> <p>하고, 이어 하교하기를,</p> <p>“사족(士族)의 부인은 비록 이름이 도류안(徒流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물고된 뒤에는 검험(檢驗)하지 말게 하는 일을 수교(受敎)에 신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77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7월 15일(계유) 3번째기사 대사간 송창명이 동래 공삼 값이 등귀한 데 따른 폐단과 대책을 아뢰다</p>	<p>대사간 송창명(宋昌明)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동래(東萊)의 공삼(貢蔘)은 값이 본래 등귀한데다가 공용(公用)이 넉넉하지 아니하니, 병폐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청컨대 저축해 둔 모곡(耗穀)을 적당히 헤아려 획급하게 하소서. 각도(各道)의 병영(兵營)·수영(水營)에서 거두는 군포(軍布)는 실제로 군교(軍校)의 상격(賞格)이 되는 것인데 반절 이상을 남겨 제마음대로 사사로이 쓰고 있습니다. 청컨대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곤수(閹帥)에게 엄하게 금지시키되, 상(賞)에 준용(準用)하지 않고 사사로운 주머니에 돌리는 자가 있으면 장오율(贓汚律)을 베풀게 하소서.”</p> <p>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p> <p>“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p>	<p>大司諫宋昌明上書，略曰：</p> <p>東邑貢蔘，價本騰踊，而公用不贍，疵弊不一。請以所儲耗穀，量宜劃給。各道兵、水營所收軍布，實爲軍校賞格而強半餘剩，恣意私用。請令道伯嚴戢閹帥，有不準賞而歸私橐者，施贓汚之律。”</p> <p>王世子答曰：“令廟堂稟處。”</p>

	<p>하였다.</p>	
<p>영조 77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7월 26일(갑신) 1번째기사 태조가 개국하고 등극한 해를 맞아 영희전에서 작헌례를 거행하다</p>	<p>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행행(幸行)하니, 왕세자가 어가(御駕)를 따랐다. 영희전에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하교하기를,</p> <p>“이달은 곧 태조께서 개창(開創)·어극(御極)하신 달로 진전(眞殿)에 술잔을 올리니, 이 마음이 갑절이나 더하다. 아! 몸소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고생 끝에 창업하시어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과궁(寡躬)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부덕하고 무능한지라 마치 깊은 연못과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다. 국초에 궁사로 개창한 것을 이제 당필(黨筆)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신진(新進) 소관(小官)들은 한권(翰圈)으로 장난을 치고, 후원(喉院)에 있는 사람은 반은 검고 반은 희니, 이것이 무슨 꼴인가? 열조(列祖)를 저버림이 부끄러워 참으로 얼굴을 들고 문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아! 나의 신공(臣工)들은 끝내 그 마음을 씻지 못한다면 진전의 뜰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다시 당습을 일삼는다면 진신(摺紳)에 낄 수 없을 것이니, 여러 신하들은 스스로 헤아려 거취를 결정하라. 이것은 대훈(大訓)과 다를 것이 없으니, 속히 반포하라.”</p> <p>하고, 상부(相府)에 명하여 써서 들이라고 하였다. 뜰에 들어온 문음(文蔭)이 각실(各室)에 술잔을 올리자, 임금이 부복(俯伏)하여 아뢰기를,</p> <p>“오늘날의 사태에 강개한 나머지 대중에게 맹세하고 뜰에 들어왔나이다. 뜰에 들어온 여러 신하들이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반드시 그 말을 지켜 척강(陟降)하시는 영혼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p>	<p>甲申/上幸永禧殿，王世子隨駕。行酌獻禮于永禧殿，教曰：“今月，乃太祖開創御極之月，酌獻眞殿，一倍此心。噫！躬冒矢石，艱難創業，垂裕後昆，逮于寡躬，不德無能，若隕淵谷。國初以弓矢開創，今以黨筆將墜。新進小官，以翰圈作戲，喉院之中，半黑半白，此何景像？愧負列祖，誠無舉顏入門之心。嗟！我臣工終不洗滌其心，勿入眞殿之庭。復事黨習，不齒摺紳，諸臣自量而去就。此與大訓無異，速爲頒布。”命相府書入。入庭文蔭，酌獻于各室，俯伏奏曰：“慷慨今日，誓衆入庭。入庭諸臣，其若背誓，必守其言，不負陟降。”仍謂</p> <p>【史臣曰：“明聽而書之。”至第四室，悲泣不自勝。歷臨松峴宮，御本宮後苑幕次，承、史入侍。上立苑上，周覽國都地形，下教曰：“我國山勢，與松都有異。松都則處處自作局，面面各異，故廷臣各自樹立，而致多權臣</p>

	<p>하고, 이어 사신에게 말하기를,</p> <p>“밝게 듣고 쓰도록 하라.”</p> <p>하였다. 제4실(第四室)에 이르러 슬피 흐느끼며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송현궁(松峴宮)에 들러 본궁(本宮)의 후원(後苑) 막차(幕次)에 나가니 송지와 사관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후원에 서서 국도(國都)의 지형을 돌아보고 하교하기를,</p> <p>“우리 나라의 산세(山勢)는 송도(松都)와 차이가 있다. 송도는 곳곳마다 스스로 국면(局面)을 만들고 국면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신(廷臣)들이 각자 수립(樹立)하여 권신(權臣)이 많았던 것이다. 아조(我朝) 3백 년 이래 이제 여섯번째의 임신년이 되었다. 옛날 인묘(仁廟)께서 반정(反正) 후에 하교하시기를, ‘오늘날 조정 신하들이 다시 동인(東人)이니 서인(西人)이니 하겠느냐?’고 하셨으니, 당을 타파하시려는 하교가 정녕할 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이곳에서 이처럼 하교하는 것도 또한 선조(先朝)의 유의(遺意)를 준행하는 것이다.”</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송현(松峴)의 옛 궁은 성조(聖祖)의 잠저(潛邸)인데,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오늘 제3실을 참배(瞻拜)한 뒤 이곳으로 들어와 살펴보니, 감회가 일어나는 가운데 또한 심히 송구스럽다. 선혜청의 쌀 2백 석과 병조의 무명 60동(同)을 재목과 기와와 함께 수송하여 보수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也。 我朝三百年來， 今爲六壬申矣。 在昔仁廟反正後教曰， ‘今日廷臣， 能復東、西耶?’ 破黨之教， 不啻丁寧。 予於此處若是下教者， 亦遵先朝遺意也。” 又教曰：“松峴舊宮， 聖祖潛邸， 幾盡頽圯。 今日第三室瞻拜後， 入審于此， 興感之中， 亦甚悚然。 惠廳米二百石、兵曹木六十同與材瓦輸送， 使之修補。”】</p>
--	--	--



영조 77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8월 23  
일(신해) 1번째기사  
영남의 세를 고르게  
하는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지중추부사 홍계희(洪啓禧)를 소견하였다. 홍계희가 아뢰기를,

“영남의 세(稅)를 균정(均定)할 때 어조(漁條)·방렴(防簾)은 5분의 1로 세를 정했는데, 이제 들으니 큰 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다른 도의 예에 의거해 참작해서 세를 정한 뒤 장문(狀聞)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사목(事目)이 이미 반포된 이후 연해(沿海)의 수령들이 반드시 어염(魚鹽)을 사서 쓰는데, 들건대 염부(鹽夫)·어부(漁夫)는 값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니,

辛亥/上召見知中樞府事洪啓禧。 啓禧奏曰：“嶺南均稅時，漁條、防簾定以五一稅，今聞已有大弊云。不可不釐正矣。” 上曰：“分付道臣，依他道例參酌定稅後狀聞。” 又教曰：“事目既頒之後，沿海守令，必貿用魚鹽，而聞鹽夫、漁夫無受價事云，必中間消瀆之致。 吁嗟！吾民雖抱冤海村，何能徹乎？此後守令，或勒買徵求，或不能檢下，貽弊下民，則當以臧法繩之。 令均廳嚴飭諸道。”

	<p>반드시 중간에서 녹여 없앤 소치일 것이다. 아! 나의 백성들이 해촌(海村)에서 아무리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능히 전달되겠는가? 이후로 수령이 혹 억지로 사거나 징구(徵求)하거나, 혹 능히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하여 하민(下民)에게 폐를 끼친다면 마땅히 장법(贓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균청(均廳)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엄하게 신칙하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77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8월 29일(정사) 1번째기사 북평사 남태회를 불러 북도의 흉황에 대해 묻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上)이 북평사(北評事) 남태회(南泰會)를 소견하여 북로(北路)의 흉황(凶荒)에 대해 물었다. 남태회가 말하기를,</p> <p>“신이 환진(還賑)12687) 의 식례(式例) 외에 죽을 쑤어 나누어 먹였는데, 우마(牛馬)의 똥이 섞인 흙 가운데 떨어진 콩을 다투어 주워서 먹었으니, 이로 미루어 매우 참혹함을 알 만합니다. 대저 북관(北關)의 고질적인 폐단은 청차(淸差)가 올 때의 요역(徭役)입니다. 이른바 북정(卜定)12688) 한 소[牛]와 보습[犁]과 염석(鹽石) 등의 물건을 모두 백성들에게 책임지워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유산(流散)하고 있으니, 조정에서 영동·영남의 모곡(耗穀)을 덜어내어 몇 해를 한정해서 요역을 방급(防給)한 뒤에라야 다시 생업에 복귀하여 안집(安集)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북관의 해민(海民)을 균청(均廳)에 소속시킨 뒤 순포(純布)로 세금을 바치게 했는데, 해척(海尺)들은 물고기나 미역을 채취하여 덕원(德源)이나 원산(元山)에서 판매(販賣)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얻기 쉬우나 포(布)는 얻기 어려워서 백성들이 모두 돈으로 바치기를 원하여 신이 떠날 때 일제히 호소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丁巳/藥房入診。 上召見北評事南泰會，問以北路凶荒。 泰會曰：“臣設粥分饋於還賑式例之外，而牛馬糞壤中遺菽，爭拾而食之，推此可知其孔慘矣。 大抵北關痼弊，卽淸差時徭役也。 所謂卜定牛、犁口、鹽石等物，皆責徵於民，故民皆流散，自朝家除出嶺東、南耗穀，限數年防給徭役，然後可復業安集矣。 且北關海民付之均廳後，令以純布納稅，而海尺採魚、藿，轉貨於德源、元山。 故得錢易而得布難，民皆願以錢納，而齊訴於臣行矣。” 上曰：“令均廳，從民願收捧也。” 都提調金若魯曰：“舊北伯黃晟，淸簡善治，賑政亦善。 而新道臣李宗白，其母老且病，雖爲強赴，實難久居云矣。” 上曰：“北關雖已畢賑，而三、甲又歉，</p>

	<p>“균청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게 하라.”</p> <p>하였다. 도제조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p> <p>“옛 북백(北伯) 황정(黃暵)은 청간(淸簡)하여 잘 다스렸고 진정(賑政)도 또한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도신(道臣) 이종백(李宗白)은 그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비록 억지로 부임은 하지만, 실로 오래 있기 어렵다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 말하기를,</p> <p>“북관은 비록 이미 진정을 끝냈다지만, 삼수(三水)·갑산(甲山)에 또 흉년이 들었으니, 이제 겨우 일어난 백성을 서툰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전 감사 황정을 영임(仍任)시키도록 하라.”</p> <p>하였다.</p>	<p>甫起之民，不可付諸生手。 前監司黃暵仍任。”</p>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0월 16일(계묘) 1번째기사 호조에서 납부하는 삼의 수량과 황해도·경상의 재해, 신하의 발탁에 대해 의논하다</p>	<p>-----</p> <p>-----</p>	<p>癸卯/上以手書敦諭左議政李宗城，宗城始肅命。 上引見時、原任大臣。 右議政金尙魯曰：</p> <p>“兵曹判書金尙星，爲戶判時，以戶曹納江界蓼十斤，復舊加定事稟定矣。 蓋戶曹所納元數三十斤。 而中間朝家爲軫採蓼漸艱之狀，江民難堪之弊，量減十斤，亦多年所。 今蓼路愈貴，民</p>

임금이 손수 쓴 글로 좌의정 이종성에게 돈유(敦諭)하자, 이종성이 비로소 사은 숙배하였다. 임금이 시임 대신·원임 대신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병조 판서 김상성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호조에서 납부하는 강계(江界)의 삼(蔘) 10근을 예전과 같이 더 늘려 정하는 일에 대해 여쭙어서 정하였습니다. 대체로 호조에서 납부하는 원래 삼의 수량은 30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정에서 삼을 캐는 일이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과 강계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을 염려하여 참작해 10근으로 감해 준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삼이 더욱 귀해서 민폐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10근을 더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변방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10근을 더 늘려 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도로 거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김상로가 말하기를,

“황해 감사 조명채와 경상 감사 윤동도(尹東度)가 함께 재결(災結)을 더해 줄 것을 장청(狀請)하였습니다. 두 도의 농사가 모두 늦게 재해를 입었는데, 올해 연분 사목(年分事目)은 늦 재해를 입기 전에 반포하였기 때문에 비총(比摠)12711) 이 너무 높아서 재해를 봐주기에는 사세상 부족합니다. 때문에 호조에서 획급한 재결 이외에 해서는 1천 4백 결을, 영남은 2천 5백 결을 더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이(推移)해서 나누어 봐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弊愈甚，而加徵十斤，實非恤邊民之道。十斤加定一款，還寢何如？”上可之。尚魯曰：“黃海監司曹命采、慶尙監司尹東度，俱狀請加得災結矣。兩道穡事，皆被晚災，而今年年分事目，頒於晚災之前，故比摠未免太高，俵災勢固不足。戶曹所劃外，海西則一千四百結，嶺南則二千五百結加給，使之推移分俵何如？”上許之，(하략)

	하니, 임금의 윤택하였다. (하락)	
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0월 29 일(병진) 6번째기사 왕세자가 성상의 노하 심을 걱정하다	동궁에 승지가 입대하였을 때에 왕세자가 말하기를, “내가 대리한 지가 4년이 되었으나 성상의 마음을 우러러 본받지 못하여 약 을 물리치시기에 이르렀으니 모두 나의 잘못이다. 나 역시 무슨 마음으로 약 을 복용하겠는가? 하였다.	東宮承旨入對時，王世子曰：“余代理 四年，不能仰體聖心，至於却藥，皆余 罪也。余亦何心服藥乎？”
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0월 29 일(병진) 7번째기사 당파를 경계하면서 홍 준해와 이양천을 귀양 보내게 하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제조 원경하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동궁이 스스로 인죄(引罪)하면서 성상께서 탕제를 드시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역시 환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모양이란 말입 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홍준해와 이양천의 편을 들면서 임금은 돌아보지 않으며 징계와 토 벌을 청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당을 비호하고 역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가? 아! 원량은 바로 저군(儲君)으로서 지금 대리하고 있으니 사체가 중대하 다. 그런데 조용히 조섭(調攝)해야 한다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처럼 날뛰고 있으니, 그의 눈에 저군은 보이지 않고 다만 그의 당인들만 보이는 것 이다. 지금 내가 비록 혼미하여 누워 있으나 태아(太阿)12721)가 손에 있다. 홍준해는 추자도로, 이양천은 흑산도로 귀양보내되, 모두 엄하게 위리 안치하 라.” 하였다.	藥房入診。提調元景夏白于上曰：“伏 聞東宮躬自引罪，以聖上不許湯劑，亦 不進服丸製云，此何光景？”上曰：“卿 等右袒洪準海、李亮天，而不顧其君， 不請懲討，此非護黨護逆乎？噫！元良 卽儲君，而今方代理，事體重矣。不 顧靜攝，跳踉若此，此眼無儲君，而只 有黨人也。今雖昏臥，太阿在手。準 海楸子島，亮天黑山島投畀，並嚴加圍 籬。”
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1월 2 일(기미) 5번째기사	약방 도제조 김약로 등이 죽을 죄를 지은 신하라고 일컬으면서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대조께서 탕약을 도로 내주면서 당(黨)을 하는 사람들을 갈아 마시겠다고 하	藥房都提調金若魯等，稱死罪臣，上 書，略曰： 大朝湯劑還給，而有飲黨人之教，臣等

<p>대조께서 탕약을 거부하므로 약방 도제조 김약로 등이 죄를 청하다</p>	<p>교하셨으므로 신 등이 정신을 잃고 넘어 빠져 서명한 지 4일이나 되었습니 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처분이 없으시니, 엄한 벌을 내려 주소서.”  하였는데, 왕세자가 애타는 마음을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p>	<p>魂喪魄失胥命四日。 尚無處分，願加嚴誅焉。  王世子以焦違何諭爲答。</p>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1월 2 일(기미) 7번째기사 이광좌와 조태구 등 신하들의 행적에 대해 유시하다</p>	<p>----- -----</p> <p>임금이 대신과 경재들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김상로 등이 탕약을 들 것을 청하니, 임금이 잇따라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하면서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승지 이지억이 울면서 청하니, 비로소 탕약을 들었다. 김상로가 충청도 도신(道臣)이 올린 장계에 따라 비총(比摠) 이외에 재해를 입은 1천 결을 더 지급해 줌으로써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또 해서의 산간 고을이 흉년을 가장 혹독하게 입었으니 곡산(谷山) 전 부사 박상덕(朴相德)을 그대로 위임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지억에게 명하여 유시를 써서 내려 안팎에 반포해 보이도록 하였다. 그 내용에 이르기를,  “아! 30년 동안 마음 속에 뻗쳐 있던 것을 대소 여러 신하들에게 환하게 유</p>	<p>上引見大臣、卿宰。 右議政金尙魯等請進湯劑， 上連下不忍聞之教， 終不許。 承旨李之億泣請， 上始進服。 尙魯請依忠淸道臣狀， 比總外災結一千結加給， 使之均俵， 上允之。 又請海西峽邑， 歉荒最酷， 谷山前府使朴相德仍任， 上允之。 命之億， 書下大諭， 頒示中外， 曰：  噫！ 三十年亘于中者， 洞諭大小諸臣， 咸聽知悉。 噫！ 以予涼德臨御， 今幾卅載， 而恒日苦心， 調劑二字。 噫！ 非予則今日諸臣餘者鮮矣。 丙申以前奚至于此？ 而輾轉益深至于辛、壬而極矣。 甲辰嗣服後， 若不竭心調劑， 彼此報復相殺乃已。 噫！ 國之三尺， 非爲黨人報復而設也。 一時報復， 黨人雖快， 吁嗟！ 報復， 自古輪回， 焉知無立法而反受乎？ 故相李光佐， 古人云， ‘寧得盡善？ 中人以下， 豈無不善之事乎？’ 辛、壬以後事， 予亦曰不是</p>

시하겠으니 모두 듣고 잘 알기 바란다. 아! 부덕한 내가 임어한 지 지금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날마다 고심한 것은 조제(調劑) 두 글자였다. 아! 내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여러 신하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드물 것이다. 병신년(12723) 이전에야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갈수록 되풀이 되고 깊어져 신축년·임인년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갑진년(12724)에 대통을 계승한 뒤로 마음을 다하여 조제하지 않았더라면 피차간에 보복하느라 서로 들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아! 나라의 삼척(三尺)(12725)은 당인들간에 보복하는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일시에 보복하면 당인은 비록 통쾌하겠으나 아! 보복이란 예로부터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니, 법을 만든 자가 도리어 그 법에 걸리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고 상신 이광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찌 다 잘 할 수 있겠는가? 중인(中人) 이하야 어찌 잘못된 일이 없겠는가?’ 하였다. 신축년·임인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나 역시 그에게 옳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갑진년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이 없었을 것이니, 공과 잘못이 서로 엇비슷할 정도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 닫혀진 함문을 누가 열었는가? 이 사람이 열었으며 지난해 수라상을 물리쳤을 때에 누가 권하였는가? 이 사람이 권하였다. 그때 영상과 좌상은 모두 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그를 굳세게 억누르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고 상신 조태억(趙泰億)은, ‘술편(述編)에 이미 이르기를, 「문자를 적발하는 것도 이미 경계하였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언어나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 가운데 구절은 또한 무함을 씻지 못한 하나의 단서이다. 비록 윤봉오(尹鳳五)와 같이 심각한 자도 지난해 장전(帳殿)에서 오히려 뽑아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난해에 조태구(趙泰耆)가 올린 두 차자는 놀라서 몸둘 바를 몰랐는데, 그중 한 차자는 곧 유봉휘(柳鳳輝)가 남

也多。而甲辰無此人無今日，戊申無此人無今日，非徒功過相準。頃年閉閣，孰能開之？此人開之，頃年却膳，孰能勸之？此人勸之。其時領相、左相俱不能辦也。今日斷斷抑，何意也？故相趙泰億《述編》既云，‘文字摘抉，已乎戒之’，況語言乎？其中句語，亦誣未雪之一端。雖以鳳五之深刻者，頃者帳殿之下猶有欲拔之語，今何諭乎？趙泰耆頃年二筭，手脚慌亂，而其中一筭，卽鳳輝之根柢也。而辭位之時，故左相以說書，言于泰耆，其時以師入侍故也。非徒不爲感動，以狼狽之心，欲售睚眦必報之意，終峻其事，其心不美。而然其斬允者，非爲泰耆也，迫惟庚子除藥院提舉之聖意。其年其月，診筵涕泣勸進，予所目覩，故感動而然。雖然泰耆不思追先帝報陛下之道，予何惜之？而至於崔錫恒同時處分，意亦在焉，拜相後處義，非予初料故也。而辛、壬事，當其末稍，與泰耆大有間焉，黨人之與泰耆同構，蓋其時爲相者，意欲無一遺焉，此乃報復之義也。頃年同侍診筵，已知其心，春塘帳殿亦有見者。于今此人，與泰

	<p>긴 부리였다. 그런데 자리를 사양할 때에 좌상이 설서로 하여금 조태구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때 사부로 입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감동하기는 커녕 강박한 마음으로 조그만 원한도 반드시 갚겠다는 뜻을 부리어 마침내 그 일을 심각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였다. 그러나 윤희를 미루었던 것은 조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자년(12726)에 그를 약원의 제조로 제수한 성상의 뜻을 생각해서였다. 그해 그달에 진찰하는 자리에서 그가 울면서 약을 드시라고 권하였으니, 내가 직접 보았는데, 감동하여 그랬던 것이다. 그렇지만 조태구가 선왕을 생각하고 폐하에게 보답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를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최석항(崔錫恒)에 이르러서도 동시에 처분을 하였던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니, 정승에 제수된 뒤에 그가 한 행동은 내가 애초에 예상한 바가 아닌 때문이었다. 신축년·임인년의 일은 끝 부분에 가서 조태구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당인들이 조태구와 싸잡아서 엮어넣은 것은, 대체로 그 당시 정승이 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려는 뜻이었으니, 이는 보복의 의리이다. 지난해 그들이 진찰하는 자리에 같이 입시하였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을 알았으며 춘당대(春塘臺)의 장전에서도 본 자가 있었다. 지금 이 사람이 조태구와 같이 복직된다면 한편에서는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조태구 때문에 이 사람 역시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한편에서도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니, 어느 쪽에 엮매일 것이 있겠는가? 다만 나의 현위(弦韋)로 알맞게 처리할 뿐이니, 고 상신 최석항을 특별히 복직시키라.”</p> <p>하였다.</p>	<p>耇同爲復職，此一邊必不服，以泰耇之故，此人亦不復職，一邊亦必不服，然彼此不服，其何拘乎？但以予之弦韋處之，故相崔錫恒特復其職。</p>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p>	<p>약방에서 동궁을 입진하였다. 도제조 김약로가 철을 따라 몸조리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다. 김약로가 또 말하기를,</p>	<p>○乙亥/東宮藥房入診。 都提調金若魯以節宣慎攝之道陳達，答曰：“唯。”</p>



<p>(乾隆) 17년) 11월 18일(을해) 1번째기사 도제조 김약로가 철따라 몸조리하는 방법과 중궁전의 회갑에 하례 드릴 일을 아뢰다</p>	<p>“지금 중궁전 회갑의 해를 맞아 하례를 드릴 절목의 초기(草記)에 대해 윤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조께서 도로 회수하였으므로 신들이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왕세자가 말하기를,</p> <p>“나의 마음도 또한 그러하다.”</p> <p>하였다.</p>	<p>若魯又曰：“今當中宮殿周甲之歲，陳賀草記允下。而昨日自大朝收還，臣等不勝抑鬱矣。”王世子曰：“余心亦然矣。”</p>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1월 22일(기묘) 1번째기사 전 사과 윤봉구가 올린 왕세자의 환후가 회복된 것을 경하하는 상서</p>	<p>전 사과 윤봉구(尹鳳九)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저하의 환후가 회복되셨으니 나라의 경사입니다. ‘큰 병을 치르고 난 끝에는 선한 마음이 싹튼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선묘(宣廟)에게 고하였던 말입니다. 대체로 흥금이 편안하여 정신이 맑고 기운이 순조로우면 온 몸이 저절로 건강해져 모든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큰 병이 막 몸에서 떠났을 때에는 마음에 영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사로운 뜻은 물러가고 천리(天理)만 순수하게 남아 착한 마음의 싹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막 솟아오르듯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대로 확충해 나가면 미약한 것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특히 마음을 기르는 요법이며, 본원에 힘쓰는 극도의 공력인 것입니다. 만약 저하께서 이때에 더욱 유의하신다면 지금 병이 나은 경사가 또 하늘에 나라의 영구한 운명을 비는 근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이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왕세자가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하였다.</p>	<p>己卯/前司果尹鳳九上書，略曰：</p> <p>睿候平復，邦國之慶。‘大病之餘，善端萌發’者，先正臣李珥告於宣廟之言也。蓋胸中安泰，神清氣爽，則百體自康，諸疾皆祛矣。況大病新祛，則心無營爲，故私意退聽，天理純然，善端之萌，藹如燃達。將此擴去，微者益著，此尤養心之要法，本源之極功也。倘邸下於此時益加留意，則今者翌瘳之慶，又將爲祈天永命之本，此臣所以眷眷者也。”</p> <p>王世子答曰：“當體念。”</p>
<p>영조 78권, 28년</p>	<p>내국에서 입시하였다. 제조 박문수가 말하기를,</p>	<p>丙戌/內局入侍。提調朴文秀曰：“昨</p>

<p>(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1월 29 일(병술) 1번째기사          제조 박문수가 치성을 축조할 필요가 있다고 아뢰다</p>	<p>“어제 어영 대장이 치성(雉城)의 일에 대해 우러러 말씀드렸는데, 신 역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흥인문(興仁門)으로부터 광희문(光熙門)까지는 지세가 낮아서 갑자기 도적이 밀어닥칠 경우 필시 수비하지 못할 것이니, 치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영 대장에게 그 일을 위임하여 더 쌓은 다음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어영 대장과 영상이 상의하지 않고도 의견이 같으니, 내 단연코 그 일을 하겠다.”</p> <p>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p> <p>“강가의 잠전(蠶田)에 당초 뽕나무를 심었던 것은 누에를 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잠전이 죄다 백성의 소유가 되어 오래도록 뽕나무를 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뽕나무를 심게 하고 간간이 조사한다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마땅히 내전에서 신칙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日御將以雉城事仰達，臣亦有料量者。自興仁門至光熙門地勢低陷，卒有寇至，則必不可守，雉城加築斷不可已。委之御將，使之設築，而多植樹木，則豈不好哉？”上曰：“御將及靈城，不謀而同，子當斷然爲之矣。”文秀曰：“江上蠶田，當初種桑，非但爲養蠶。卽今皆爲民田，而久無種桑之事。使之復種，間間摘奸似好矣。”上曰：“當自內申飭。”</p>
--	---	---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2월 17 일(계묘) 1번째기사 어공을 진상하지 말라 는 하교를 어겼다고 감선 제조를 중추하게 하다</p>	<p>하교하기를, “엇그제 어공(御供)을 진상하지 말라고 이미 하교하였는데, 오늘 왜 받아들였는가? 감선 제조(監膳提調)를 중추하라.” 하였다.</p>	<p>癸卯/教曰: “日昨以御供勿爲進排, 已爲下教, 而今日何爲捧入? 監膳提調重推。”</p>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2월 17 일(계묘) 7번째기사 동궁과 빈궁에게 날마다 내리는 공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다</p>	<p>하령하기를, “동궁과 빈궁에게 날마다 내리는 공상(供上)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p>	<p>令曰: “東宮嬪宮日下供上, 勿爲捧入</p>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2월 19 일(을사) 3번째기사 공인과 시민을 불러 그들의 폐막을 묻다</p>	<p>임금이 선화문에 나아가 공인과 시민을 불러 그들의 폐막을 물으니 공인과 시민들이 각각 그들이 종사하는 업종을 들어 대답하였다. 다시 회정당으로 나아가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입시하였다. 속미음(粟米飲)을 들었다.</p>	<p>上御宣化門, 召問貢、市人弊瘼, 貢人、市人等各舉所業以對。復御熙政堂, 諸臣更爲入侍。進粟米飲。</p>
<p>영조 78권, 28년 (1752 임신 / 청 건륭 (乾隆) 17년) 12월 20 일(병오) 2번째기사</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견하였다. 우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금주(禁酒)를 내린 뒤로 술집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추조(秋曹)와 한성부의 이속(吏屬)들이 별도로 금란방(禁亂房)을 설치하여 날마다 돈을 징수하</p>	<p>○上召見大臣、備堂。右議政金尙魯曰: “酒禁以後, 名爲酒家, 秋曹、京兆之吏屬, 別設禁亂房, 日日徵錢, 視若古常。其他徵贖之弊, 有難毛舉。</p>

<p>금주령을 내린 이후 일어나는 폐단에 대해 아뢰다</p>	<p>며 기존의 법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속전(贖錢)을 남징(濫徵)하는 폐단은 이루 다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두 아문에 신칙하여 이 폐단을 통렬히 개혁하도록 하되, 발각되는 대로 죄를 논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이창의가 말하기를,</p> <p>“본조의 문낭청(文郎廳)은 시종신(侍從臣)에 구애하지 말고 특별히 가려 차출하되, 6개월 전에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자, 호조 판서 조영국도 지부(地部)의 문낭청 역시 추조(秋曹)의 예(例)처럼 하도록 신칙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另飭兩衙門，痛革此弊，隨現論罪宜矣。” 上從之。 刑曹判書李昌諠曰：“本曹文郎，無拘侍從，另加擇差，六朔前切勿遷移爲宜。” 戶曹判書趙榮國請地部文郎，亦如秋曹例申飭，上竝從之。</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월 1일 (정사) 1번째기사 공물 아문의 폐단과 군병들의 시재에 관해 하교하다</p>	<p>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고나서 화평 옹주(和平翁主)·화완 옹주(和緩翁主) 두 옹주의 집을 두루 들렀다. 태묘의 문을 나올 때 이정 당상(釐正堂上) 박문수(朴文秀)를 입시하도록 명하여, 공물 아문(貢物衙門)에서 차제(差祭)를 공인(貢人)으로 하여금 대가를 지급하고 면하게 하기를 도모하는 폐단에 대해 계칙하였다. 그리고 2월 초8일에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춘당대(春塘臺)에서 시사(試士)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p> <p>“작년 초3일에 구저(舊邸)의 군병들이 추운 곳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초에도 또한 수가(隨駕)하였으니, 마땅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기 위해 시재(試才)해야 한다.”</p>	<p>朔丁巳/上詣太廟，行展拜禮，歷臨和平、和緩兩主第。出廟門時，命釐正堂上朴文秀入侍，飭貢物衙門差祭，使貢人給價圖免之弊。命以二月初八日，行文廟酌獻禮，試士於春塘臺。教曰：“昨年三日，舊邸軍兵冷處，今番歲首，亦爲隨駕，當慰悅試才矣。” 又教曰：“歲首勸農傳教，景廟代理後，此等事，東宮皆爲之矣。”</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연초에 권농(勸農)하는 전교는 경묘(景廟)께서 대리(代理)한 뒤로 이런 등의 일은 동궁이 모두 했었다.”</p> <p>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월 5일 (신유) 3번째기사 도제조 김약로가 성수가 육순에 왔는데도 예를 거행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아뢰다</p>	<p>왕세자가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召見)하였다. 도제조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p> <p>“성수(聖壽)가 육순에 왔으므로 신민(臣民)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대조께서 지나치게 겸손하시므로 실로 답답할 뿐입니다.”</p> <p>하니, 왕세자가 말하기를,</p> <p>“정례(情禮)를 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천청(天聽)을 감동시켜 돌릴 수 있겠는가?”</p> <p>하자, 김약로가 말하기를,</p> <p>“저하께서 문침(問寢)하고 시선(視膳)하시는 여가에 조용히 진백(陳白)하시면 마음을 감동시켜 돌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갑자기 격너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p> <p>하였다.</p>	<p>○王世子召見藥院諸臣。 都提調金若魯曰：“聖壽滿六旬， 臣民忭欣， 而大朝過爲謙抑， 實抑鬱耳。” 王世子曰：“情禮未展， 何以則感回天聽？” 若魯曰：“邸下於問寢、視膳之暇， 從容陳白， 或可以感回， 而亦不可遽貽激惱也。”</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p>	<p>편집 당상(編輯堂上)과 공시 이정 당상(貢市釐正堂上)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공인(貢人)의 폐단에 대해 하순(下詢)하니, 관돈녕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p>	<p>命編輯堂上、貢市釐正堂上入侍。 下詢貢人之弊， 判敦寧朴文秀曰：“應辦</p>

<p>(乾隆) 18년) 1월 14일(경오) 4번째기사 응관관과 월령의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p>	<p>를, “응관관(應辦官)과 월령(月令)이 가장 공인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은 말하기를, “응관법(應辦法)은 대공(大貢)은 대과(大科)에 응하게 하고 소공(小貢)은 소과(小科)에 응하게 한 것으로 처음에는 시관(試官)의 상(床)에 세 그릇을 진배(進排)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신유년(12758)에 변통시킨 뒤로는 대과·소과를 막론하고 그 수량이 혹 4, 5백 냥(兩)에 이르러서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신은 이를 균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박문수는 ‘차공(此貢)과 피공(彼貢)을 물론하고 합계하여 6, 7천 냥을 만들어 10년에 증광시(增廣試)를 설행하고 수년(數年)에 정시(庭試)를 설행할 때 가령 매년에 아무냥을 지급한다고 만들어 놓은 다음 매 1석(石)에 1승(升)씩을 거두면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전부터 응관(應辦)은 으레 주장(主掌)하는 관원이 보태어서 정하여 왔으므로 비록 균일하게 정하려 해도 사세가 끝내 균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상의한 결과 선혜청(宣惠廳)과 호조에서 공가(貢價)를 백성에게 지불[上下]할 때 매 1석마다 1승씩을 제하여 상진청(常賑廳)에 유부(留付)하여 놓았다가 응관하는 물력(物力)에 따라 절가(折價)하여 백성에게 지불하면 비로소 충분히 균평(均平)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쌀로 감찰의 공고(公故)에 대한 책응(責應)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월령법(月令法)을 영구히 혁파시켜 버린다면 실로 공인들에게 막대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 단지 공가에서 한 되씩 제한 쌀로는 각궁(各宮)에 연례(年例)로 획송(劃送)하는 것과 각처의 제수(祭需)에 대한 값을 지급</p>	<p>官及月令，最爲貢人難支之弊矣。”禮曹判書洪鳳漢曰：“應辦之法，大貢應大科，小貢應小科，初不過進排試官床三器。自辛酉變通之後，無論大、小科，其數或至四五百兩，實爲難堪。臣則欲均之，而文秀則曰，‘勿論此貢、彼貢，合計爲六七千兩，而十年爲增廣，數年爲庭試，作爲假令每年給某兩，而每於一石收一升則好’云矣。自前應辦，例定主掌添助，而雖欲均定，其勢終不可均。臣等反覆相議，惠廳、戶曹貢價上下時，每一石除一升，留付常賑廳，應辦物力，折價上下，則始可十分均平。又以其米，計給監察公故責應之費。所謂月令之規，永爲革罷，則實是貢人莫大之惠。而但貢價一升所除之米，似不足各宮年例劃送及各處祭需價。事體有別，此則置之。此外則勿論各司、各營，貸去、永下，皆除一升，以補其不足之數，事甚便好矣。”上曰：“然則必有貢人，然後可矣。”鳳漢曰：“盡屬之賑廳，而應辦使館主人當之，月令使墨子當之，作爲定例，名曰辦令定例，似好矣。”命洪鳳漢，差惠廳堂上。其後</p>
--	--	--

	<p>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사체(事體)에 특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버려두었습니다. 이밖에는 각사(各司)·각영(各營)을 물론하고 대거(貸去)하든 영하(永下)하든 모두 1승씩 제하여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일에 있어 매우 온편하고 좋겠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반드시 공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p> <p>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p> <p>“모두 진휼청(賑恤廳)에 예속시켜 놓고 응관은 관주인(館主人)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월령(月令)은 묵자(墨子)12759) 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정례(定例)를 만들어 관령 정례(辦令定例)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였다. 홍봉한을 선혜청 당상에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그뒤 사직(司直) 이후(李暻)가 임금에게 아뢰기를,</p> <p>“1석(石)에 1승(升)씩 거두는 것은 끝내 구차스러운 데 관계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균역(均役)의 결전(結錢)·결미(結米)는 대략 조용조(租庸調)12760) 를 모방한 것인데 이는 그렇지 않다. 응관은 진실로 좋은 것이지만 월령은 어찌 또 하나의 공물(貢物)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p>	<p>司直李暻白上曰：“一石收一升，終涉苟簡矣。”上曰：“均役之結錢、結米，略倣租庸調，而此則不然矣。應辦則固好矣，月令則豈不又爲一貢物耶？”暻曰：“戶曹有加升，而惠廳無加升，自官取之，似如何矣？”上曰：“監察何責於貢人乎？”戶曹判書趙榮國曰：“國初有十三司庫，臺監日日往審，各司之待監察，一如本司。依幕等事，貢人莫不擔當故也。”文秀曰：“古有漆門之法，其器具，今猶索之於貢人矣。”鳳漢又言：“均廳所儲置者，錢木頗多，而守直甚疎，不成錢穀衙門模樣。或恐惜小費而貽大害矣。”左議政李天輔曰：“設置一衙門於山下無人之地，積置財貨，而官員卽借來之官員，書吏、庫直亦借來之下人，所見極爲可悶。而如欲創設官員與員役，則便一惠廳，一年應下，將過萬兩，亦豈不可悶乎？此事極難處矣。”右議政金尙魯曰：“臣於再昨年西下時，以此事下詢，故臣已陳其別設一廳，則匪久轉致張大，事多可悶之狀。而卽今事勢，如欲仍前分差，以他司之郎廳，使之兼察，以他司之員役，借來使喚者，果有</p>
--	---	---

	<p>하였다. 이후가 말하기를,</p> <p>“호조에서는 1승씩 더 받게 하되 선혜청에서는 1승씩 더 받지 못하게 하여 관에서 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감찰(監察)이 어떻게 공인을 독책하겠는가?”</p> <p>하였다. 호조 판서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p> <p>“국초에는 13사고(司庫)를 두었는데 대감(臺監)이 날마다 가서 살피면 각사(各司)에서 감찰을 대우하기를 한결같이 본사(本司)처럼 했습니다. 이는 의막(依幕) 등의 일을 모두 공인이 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p> <p>하고, 박문수는 말하기를,</p> <p>“옛날에 칠문법(漆門法)12761) 이 있었는데 그에 소요되는 기구(器具)를 지금도 공인에게 징색(徵索)하고 있습니다.”</p> <p>하였다. 홍봉한이 또 말하기를,</p> <p>“균역청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가운데 전목(錢木)이 상당히 많은데 수직(守直)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여 전곡 아문(錢穀衙門)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p>	<p>虛踈窒礙之端。 且以守直一事言之，本廳處在無人之地，累鉅萬財貨，積置其中，而所謂守直，極其零少，不無意外之慮，是誠難處。 如欲創出實郎廳、實員役，則許多窠額，一時多出，規模、制置，便作一惠廳，一年之公然耗費，將至萬餘金，此亦難處矣。 臣意則均廳節目已頒，頭緒已成，今則與初有異，不必別設，使之罷付惠廳惠堂兼管，如賑廳之例。 而一年捧上、用下及遺在之數，不可不嚴存界限，俾無與惠廳混雜之弊也。” 鳳漢曰：“殿下以爲民之至意，有此設廳之舉，必思永久無弊之道，然後始可垂惠於生民。 差出若干實員役，嚴其典守，間差蔭郎，俾爲着實句管之地，斷不可已也。 如其不然，依大臣所奏，雖合設於惠廳，亦似無妨矣。” 上曰：“御將之差下均堂，亦有意矣。 合屬於惠廳，成節目以稟。” 又命編輯堂上使前曰：“几杖、明器中，應有者若有恒日常御者，勿爲新造，以此納退墳。 殤喪則勿用殯宮，內喪在先，則公除前進見服色，已載編輯中。 而殯殿內喪在先，則公除前若有壓尊之事，服色亦當若</p>
--	--	---



니다. 혹 작은 경비를 아끼다가 큰 해를 당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좌의정 이천보(李天輔)는 말하기를,

“사람이 없는 산밑에다 하나의 아문을 설치하여 재화(財貨)를 저장하여 놓았는데 관원은 곧 빌려온 관원이고 서리(書吏)와 고직(庫直)도 또한 빌려온 하인이어서 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관원과 원역(員役)을 창설하려 한다면 곧 하나의 선혜청이 생기는 것으로 1년 동안 응하(應下)할 경비가 장차 1만 냥이 넘게 될 것이니, 또한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매우 난처합니다.”

하고, 우의정 김상로(金尙魯)는 말하기를,

“신이 재작년 서쪽 지방으로 내려갈 적에 이 일을 가지고 하순(下詢)했기 때문에 신이 이미 한 개의 청(廳)을 따로 설치하도록 진달했었습니다만, 오래지 않아 점점 장대(張大)해짐에 따라 일에 안타까운 상황이 많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사세로는 전대로 분차(分差)하기 위해 타사(他司)의 낭청(郎廳)에게 겸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타사의 원역(員役)을 빌려다가 부리는 것은 과연 허술하고 구애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수직(守直)하는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본청(本廳)이 사람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수만 냥의 재화를 그 가운데다 저장하여 두었는데 이른바 수직이라는 것이 너무 수효가 적으니 뜻밖의 걱정이 없지 않으므로 참으로 난처합니다. 그러나 실낭청(實郎廳)과 실원역(實員役)을 창출하려 한다면 그 허다한 과액(窠額)을 일시에 많이 차출하게 되어 그 규모와 제치(制置)가 곧 하나의 선혜청이 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의 공공연히 소모되는 비용이 장차 1만여 금(金)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도

此。而勿論殞殿、殞宮，所尊處服盡後，若有隨駕或迎送之節，以常服爲之事，載於受教，而分付儀曹。”

또한 난처한 일입니다. 신의 의견은 균역청의 절목을 이미 반포하여 두서(頭緒)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지금의 경우는 처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따로 청을 설치할 필요없이 파기시켜 선혜청의 혜당(惠堂)이 겸하여 관리하는 것을 진흥청의 예처럼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1년의 봉상(捧上)·용하(用下)와 남아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한계를 두어 선혜청의 것과 혼잡(混雜)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백성을 위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이 청(廳)을 설치하는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만, 반드시 영구히 폐단이 없는 방도를 생각한 연후에야 비로소 혜택이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실원역(實員役)을 차출하여 그 진수(典守)를 엄중히 하고 간혹 음랑(蔭郎)을 차출하여 착실히 구관(句管)하게 하는 방도를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대신이 아뢴 대로 선혜청에 합쳐 설치하게 하자는 방안도 또한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영 대장을 균역청 당상으로 차하(差下)한 것은 또한 뜻이 있는 것이었다. 선혜청에 합속(合屬)시키는 데 대한 절목을 만들어 계품(啓稟)하라.”

하였다. 또 편집 당상(編輯堂上)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하기를,

“궤장(几杖)·명기(明器) 가운데 응당 있어야 할 것은 평상시 늘 쓰던 것이 있

	<p>으면 새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퇴광(退曠)에 넣게 하라. 상상(殤喪)에는 빈궁(殯宮)을 쓰지 말 것이며, 내상(內喪)이 먼저 있을 경우에는 공제(公除)12762) 전에 진현(進見)하는 복색에 대해서는 이미 편집에 기재되어 있다. 빈전(殯殿)에 내상이 먼저 있을 경우 공제 전에 만일 압존(壓尊)되는 일이 있을 때의 복색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빈전·빈궁을 물론하고 압존되는 곳일지라도 복(服)이 끝난 뒤에 수가(隨駕)나 영송(迎送)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복(常服)으로 할 것으로 수교(受敎)에 기재하고나서 의조(儀曹)에 분부하라.”</p> <p>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월 27일(계미) 2번째기사 능창군 이숙이 사옹원의 어부가 균역청에 예속되어 봉진에 곤란함이 있음을 아뢰다</p>	<p>춘당대에 입시하였을 적에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櫛)이 말하기를, “신이 주원(廚院)12771) 에 대죄(待罪)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本院)의 일을 양달하겠습니다. 본원에 예속되어 종묘의 천신(薦新)과 어공(御供)에 소요되는 백어(白魚)·생해(生蟹)를 봉진(封進)하던 어부가 1백 50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 모두 균역청에 예속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세금을 징수하여 본원으로 보내어 본원에서 준비하여 봉진(封進)하게 한다고 하니, 참으로 난처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논어》의 향당편(鄉黨篇)에 의하면 ‘시장에서 산 술과 산 포(脯)를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막중한 천신과 어공을 대가(代價)로 지급하는 것은 사체에 있어 부당하다. 균역청으로 하여금 묘당에서 상의하여 품의한 다음 구처(區處)하게 하라.” 하였다. 고 충신 홍임(洪霖)의 손자를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조용하도록 명하였고,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이술원(李述原)의 아들 이우방(李遇芳)도 또한 진조(銓曹)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였다.</p>	<p>春塘臺入侍，綾昌君櫛曰：“臣待罪廚院，以本院事仰達矣。本院有漁夫一百十名，封進宗廟薦新及御供白魚生蟹者，今既盡屬均役廳。自今年徵稅，輸送於本院，以爲自本院措備封進云，誠難處矣。”上曰：“鄉黨篇云，‘沽酒市脯不食’，莫重薦新御供，以價代給，事體不當。令均廳稟議廟堂，商量區處。”命故忠臣洪霖孫，令軍門調用，死節人李述原子遇芳，亦令銓曹調用。</p>
<p>영조 79권, 29년</p>	<p>이때 노루가 임금 앞으로 뛰어 달아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p>	<p>時，有獐逸於前，上笑曰：“此獐即嶺</p>

<p>(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1월 27 일(계미) 3번째기사 영남에서 봉진한 노루에 대해 말하다</p>	<p>“이 노루는 곧 영남(嶺南)에서 봉진한 것인데 원량(元良)이 살아 있는 동물은 차마 해쳐 죽일 수 없다고 하여 후원에 놓아준 것이다.” 하였다. 시신(侍臣)들이 완물 상지(翫物喪志)12772) 한다는 경계를 진달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그 말이 옳다. 승지는 이 말을 춘 방(春坊)에 전하여 동궁으로 하여금 듣게 하라.” 하였다.</p>	<p>南封進者，而元良以其生物，不忍傷害，放之後苑矣。”侍臣進翫物之戒，上曰：“其言是矣。承旨傳于春坊，使東宮聞之也。”</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2월 13 일(기해) 3번째기사 친경한 뒤의 노주의</p>	<p>친경한 뒤 노주의(勞酒儀)는 이러하다. 그날 친경을 끝마치고 나서 액정서(掖庭署)에서 이어 어좌(御座)를 친경대(親耕臺) 위에다 남쪽을 향하도록 설치하며, 전설사(典設司)에서 기민(耆民)·서인(庶人)의 위치를 친경대 아래에다 설치하고 동쪽과 서쪽에 두 줄로 서로 마주 대하게 하였다. 【기민은 동쪽이고 서인은 서쪽에 설치하였다.】 또 배위(拜位)를 친경대 아래에서 조금 남쪽에다 설치하였다. 내자시(內資寺)에서 기민·서인의 주탁(酒卓)을 계단 아래 동쪽과 서쪽에다다진설하고 기민·서인은 각기 그 복색의 옷을 입고 【친경할 때의 복색이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정제(整齊)하고 기다린다. 【경조(京兆)의 낭청(郎廳)이 간검(看檢)한다.】 좌통례가 대차(大次)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외관(外辦)되었음을 아뢰면 전하가 이어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나온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輿)에 타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여에 타는데 산선(繖扇)과 시위(侍衛)는 상의(常儀)와 같다. 헌가악(軒架樂)이 연주되는데 좌우에서 부축하고 관경대 남쪽 계단 아래 이르러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에서 내릴 것을 계청하여 전하가 여에서 내리면 헌가악이 그친다. 그리고 등가악(登歌樂)이 연주된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규(圭)를 잡을 것을 계청하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규를 올리고 전하가 규를 잡는다. 좌우 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관경대 위로 나아가 전하가 어좌(御座)에 나아가서 남쪽을 향하여 앉는다. 산선·시위는 상의(常儀)와 같고 음악이 그친</p>	<p>親耕後勞酒儀： 其日親耕訖，掖庭署仍設御座於親耕臺上南向，典設司設耆民、庶人位於臺下，東西重行相向。【耆民東，庶人西。】又設拜位於臺下稍南。內資寺設耆民、庶人酒卓於階下東西，耆民、庶人各服其服，【親耕時服色。】分東西整齊以待。【京兆郎看檢。】左通禮詣大次前，跪啓外辦，殿下仍具遠遊冠、絳紗袍以出。左通禮跪啓請乘輿，殿下乘輿，繖扇、侍衛如常儀。軒架樂作，左右挾引至觀耕臺南階下，左通禮跪啓請降輿，殿下降輿，軒架樂止，登歌樂作。左通禮跪啓請執圭，近侍跪進圭，殿下降圭。左右通禮導殿下，陞自南階詣臺上，殿下即座南向。繖扇、侍衛如常儀，樂止。耆民、庶人</p>

	<p>다. 기민·서인이 차례대로 각기 배위(拜位)에 나아가 【통례원(通禮院)에서 검칙(檢飭)한다.】 네 번 절하고 【외치는 것은 없다.】 이를 마치면 각기 좌석으로 나아간다. 동위·서위의 집사자(執事者)들 【위군(衛軍)이다.】 각기 찬기(饌器)를 기민·서인의 앞에다 진설하는데 내자시의 관원이 술을 따라서 【온주(醞酒)이다.】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잔을 돌린다. 기민·서인은 모두 위차를 떠나 부복(俯伏)하고서 꿇어앉아 잔을 받아 마시고나서 다시 위차로 돌아간다. 잔을 돌리는 것은 두 잔에서 석 잔까지 이르는데 위의 의식과 같다. 조금 있다가 집사자가 찬기를 철거하면 기민·서인이 다시 배위(拜位)로 나아가 네 번 절한다. 【외치는 것은 없다.】 좌통례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어좌 앞에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면 【찬의(贊儀)도 외친다.】 전하가 여에서 내리면 등가악이 그친다. 좌우 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관경대 아래에 이르면 음악이 그친다. 좌우 통례가 꿇어앉아 규를 놓을 것을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놓는데 근시가 꿇어앉아 여에 오를 것을 계청하면 전하가 여에 오른다. 산선(繖扇)·시위(侍衛)는 상의(常儀)와 같다. 좌우 통례가 좌우에서 인도하여 대차(大次) 앞에 이르면 음악이 그친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수레에서 내릴 것을 계청하면 전하가 여에서 내려 대차로 들어가고 기민·서인은 차례대로 나간다.</p>	<p>以次各入就拜位, 【通禮院檢飭。】四拜, 【無唱。】訖, 各就坐。東、西位執事者, 【衛軍。】各排饌器於耆民、庶人之前, 內資寺官酌酒, 【醞酒。】以授執事者, 執事者行爵。耆民、庶人皆離位俯伏, 跪受爵訖, 還復位。行二爵至三爵, 如上儀。少頃執事者撤饌器, 耆民、庶人還就拜位, 四拜。【無唱。】訖, 左通禮陞自東階進當座前, 俯伏跪啓禮畢, 【贊儀亦昌。】殿下降輿, 登架樂止。左右通禮導殿下, 降自南階, 至臺下樂止。左通禮跪啓請釋圭, 殿下釋圭, 近侍跪受圭, 左通禮跪啓請乘輿, 殿下乘輿。繖扇、侍衛如儀。左右通禮夾引至大次前, 樂止。左通禮跪啓請降輿, 殿下降輿, 入大次, 耆民、庶人以次出。</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2월 13일(기해) 4번째기사 친경 때 종경하는 신하 중에 악장이 끝나기 전에 물러간 자를 추고하게 하다</p>	<p>친경 때 임금이 말하기를, “정위(正位)는 신농씨(神農氏)이고 배위(配位)는 후직(后稷)인가?” 하니, 승지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p>	<p>親耕時, 上曰: “正位神農氏, 配位后稷耶?” 承旨金致仁曰: “然矣。” 上行五推訖, 教曰: “今番則土脈深起。己未年則只起土皮矣。從耕亦有樂章乎?” 禮曹判書洪鳳漢曰: “有之矣。” 命從耕諸臣推考, 以不待樂章之畢而先退也。命禮儀使, 親往田畔, 監播種。命時、原任大臣入侍。教曰:</p>

	<p>하였다. 임금이 다섯 번 미는 예를 행하고 나서 하교하기를,</p> <p>“이번에는 토맥(土脉)이 깊이 일어났다. 기미년(12781)에는 단지 곁흙만 일어났었다. 종경(從耕)에도 악장(樂章)이 있는가?”</p> <p>하니, 예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있습니다.”</p> <p>하였다. 종경한 여러 신하들을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는데 악장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물러갔기 때문이었다. 예의사(禮儀使)에게 명하여 직접 전지(田地)에 가서 파종(播種)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p> <p>“동조(東朝)께서 온주(醞酒)를 하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사(宣賜)한다.”</p> <p>하였다. 좌의정 이천보(李天輔)를 돌아보고 말하기를,</p> <p>“경이 경근차(耕根車)의 곁에 올라 오늘의 친경에 참여하였으니 귀한 일이다.”</p> <p>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어제시(御製詩)를 쓰게 하였다. 또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p>	<p>“東朝有賜醞，故宣賜矣。” 顧謂左議政李天輔曰：“卿登耕根車榜，參於今日親耕貴矣。” 命承旨書御製詩。又命書傳教曰：“今聞大臣所奏，我聖祖入耆社之年，卽明年也。明年展謁其豈晚也，而以予日復一日之意，何待明秋？今秋當展謁健元陵，以此分付。”</p>
--	--	--

	<p>“지금 대신이 아된 내용을 들으니 우리 성조(聖祖)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간 해가 곧 내년이었다고 한다. 내년에 전알(展謁)하여도 어찌 늦겠는가마는 나의 날마다 간절해지는 마음에 있어 어찌 내년 가을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금년 가을에 마땅히 건원릉(健元陵)을 전알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라.”</p> <p>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2월 18일(갑진) 1번째기사 신궁의 은자·미태·원결은 숙원방의 예에 의거해 거행함을 아뢰다</p>	<p>호조에서 아뢰기를,</p> <p>“곧 내수사(內需司)의 첩정(牒呈)을 받아보건대 신궁(新宮)의 은자(銀子)·미태(米太)·원결(元結)을 한결같이 숙원방(淑媛房)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할 것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례에 의거 전토(田土) 구입에 관한 가은(價銀) 2천냥을 수송(輸送)하였고, 전장(田庄)을 준비하기 전의 수용(需用)은 본조(本曹)의 콩 1백 석, 선혜청의 쌀 1백 석씩을 5년을 기한으로 백성에게 지불하였으며, 원결(元結) 2백 결은 본방(本房)의 망정(望呈)을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p>	<p>○甲辰/戶曹啓: “卽接內需司牒呈, 則新宮銀子、米太、元結, 一依淑媛房例舉行事, 命下矣。 依前例田土價銀二千兩輸送, 田庄未備前需用次, 本曹太一百石、惠廳米一百石, 限五年上下, 元結二百結, 待本房望呈後舉行。” 允之。</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2월 21일(정미) 1번째기사 영건청에서 능침의 사역에서 부족한 역가를 선혜청과 병조에서 수송할 것을 청하다</p>	<p>영건청(營建廳)에서 아뢰기를,</p> <p>“정묘년(12784)에 영건할 때의 《등록(騰錄)》을 가져다 조사하여 보니, 한능침(陵寢)에서 사역(使役)한 공장(工匠)·모군(募軍) 등에 대한 역가(役價)가, 벼가 6동(同) 21필(疋), 쌀이 75석(石)이었기 때문에 그 수량에 의거 먼저 가져다 쓰게 했습니다. 지금 이 5능(陵)의 비역(碑役)에 소요되는 각항(各項)의 공장·모군 등의 공역(工役)이 매우 호변하여 쌀과 벼를 이미 다 썼으니, 쌀 1백 50석, 포목 12동(同)을 선혜청·병조에서 수송(輸送)하게 하여 주소서.”</p>	<p>丁未/營建廳啓: “取考丁卯年營建時騰錄, 則一陵寢使役工匠、募軍等價, 布爲六同二十一疋、米爲七十五石, 故依其數先爲取用矣。 今此五陵碑役各項工匠及募軍等工役, 極其浩多, 米、布已盡用下, 請米一百五十石、木十二同, 自惠廳、兵曹輸送。” 允之。</p>

	<p>하니, 윤택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2월 21일(정미) 3번째기사 금천군의 읍내를 옮기는 문제와 성의 보수, 균역청의 업무에 관해 의논하다</p>	<p>(전략)홍봉한이 또 말하기를,  “균역청의 전조(錢條)는 그래도 지탱해 갈 수가 있습니다만 미조(米條)에 이르러서는 각도(各道)의 결역(結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돈으로 바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문(軍門)의 허다한 향미(餉米)를 실로 추이(推移)하여 급대(給代)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돈을 곧바로 군문에 획급한다면 또 끝없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를 변통시키는 데는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혜청의 공가(貢價)를 종전에 마련한 것은 영남은 5분(分) 안에 3분은 쌀, 1분은 포목, 1분은 돈으로 내게 되어 있고, 호남은 6분 안에 4분은 쌀, 1분은 포목, 1분은 돈으로 내게 되어 있고, 호서는 5분 안에 4분은 쌀, 1분은 또 이를 3분하여 2분은 포목, 1분은 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청(廳)에도 모두 항정(恒定)된 법규가 있는데 포목과 돈은 공인(貢人)에게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만 쌀에 이르러서는 참혹한 흉년이 아닌 때를 제외하고는 그 값이 2, 3냥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이로움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선혜청에서는 한결같이 원래 정한 분수(分數)에 따라서 마련한 뒤에 쌀은 균역청에서 공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전(結錢)으로 환급(換給)하되 해청(該廳)의 쌀 1석(石)의 본가(本價)에서 태가(駄價)와 잡비(雜費)를 제하고 3냥 7전으로 할 것을 영구히 항규(恒規)로 삼게 하며, 비록 미곡(米穀)이 지극히 친할 때라도 혹시 감할 수 없게 하소서. 만약 쌀이 귀할 때를 당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반드시 원치 않을 것입니다만 또한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항식(恒式)을 정한다면 공인(貢人)이 혜택을 입는 것이 이미 그다지 적지 않고 균역청의 미조도 또한 구간스러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p>	<p>(전략)鳳漢又曰: “均廳錢條, 猶可支過, 而至於米條, 則各道結役之民, 皆願納錢, 故軍門許多餉米, 實難推移給代。 若以錢直劃於軍門, 則又有無限弊端。 卽今變通, 只有一策。 惠廳貢價, 從前磨鍊者, 嶺南則五分內三分米一分木一分錢, 湖南則六分內四分米一分木一分錢, 湖西則五分內四分米一分則又爲三分, 二分木一分錢。 其他諸廳, 亦皆有恒定之規, 木、錢則貢人有所利, 至於米則除非慘凶, 價不過二三兩之故, 民皆失利。 自今爲始, 惠廳一從元定分數而磨鍊之後, 米則自均廳依貢人所願, 換給結錢, 而該廳米一石本價, 除駄價、雜費, 以三兩七錢永作恒規, 雖米穀至賤之時, 不得或減。 若當米貴之時, 則民必不願, 亦不强之, 以此定式, 則貢人之蒙惠, 既甚不少, 均廳之米條, 亦免苟簡矣。” 允之。 鳳漢曰: “同律度量衡, 王政之大者, 而近來各衙門斗斛, 各自不同。 自備局申飭, 與惠廳斛子相準, 嚴立科條則好矣。” 尙魯曰: “戶曹造置銅斛,</p>



	<p>하니, 윤희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p> <p>“율도량형(律度量衡)을 같게 하는 것은 왕정(王政)에 있어 가장 중대한 것인데 근래 각 아문(衙門)의 두곡(斗斛)이 각기 같지 않습니다. 비국(備局)에서 신칙하여 선혜청의 곡자(斛子)와 서로 비준(比準)하도록 엄중히 과조(科條)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김상로는 말하기를,</p> <p>“호조에 만들어 둔 동곡(銅斛)을 경외(京外)로 하여금 교준(較準)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 특별히 신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한결같이 동곡을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윤희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p> <p>“해서(海西) 은여결(隱餘結)의 대미(大米)·소미(小米)·콩을 배로 운송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호조에서 작전(作錢)하게 하는 예에 따라 작전하게 함으로써 민폐를 제거하게 하소서.”</p> <p>하니, 윤희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p> <p>“사옹원(司饗院)에 어부(漁夫)를 출급(出給)할 것으로 하명하였지만, 듣건대 천신(薦新)에 드는 백어(白魚)가 5백 개(箇)이고 공상(供上)에 드는 생해(生蟹)가 수천 개라고 하니, 청컨대 선혜청에서 마련하여 진공(進貢)하게 하소</p>	<p>使京外較準，不必別爲申飭。只令一從銅斛宜矣。”允之。鳳漢曰：“海西隱餘結大、小米、太，難以船運，請依戶曹作錢例作錢，俾除民弊。”允之。鳳漢曰：“司饗院漁夫出給事，命下矣，聞薦新白魚爲五百箇，供上生蟹爲數千箇，請自惠廳，磨鍊作貢。”上曰：“如此則事面正矣。”天輔、尙魯等曰：“臣等有抑鬱，而不敢力請者，此是天理、人情之不容已。殿下豈可牢拒乎？”上曰：“予頃日欲召卿等而有嫌故未果召矣。如是則往松峴宮之外，無他道矣。”</p>
--	---	--

	<p>서.”</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그렇게 하면 일이 올바르게 된다.”</p> <p>하였다. 이천보·김상로 등이 말하기를,</p> <p>“신 등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도 감히 극력 청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천리와 인정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어떻게 굳게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지난번 경 등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혐의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부르지 않았었다. 이렇게 한다면 송현궁(松峴宮) 밖으로 가는 수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p> <p>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2월 29일(을묘) 1번째기사</p> <p>문과 전시를 설행하고 노성중 등 11인을 뽑</p>	<p>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문과 전시(文科殿試)를 설행하고, 노성중(盧聖中) 등 11인을 뽑았다. 시관(試官)들에게 시식(侍食)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임금과 함께 시식할 적에 임금이 곡신(穀神)에게 제(祭)하면 먼저 밥을 먹는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p>	<p>○乙卯/上御明政殿, 設文科殿試, 取盧聖中等十一人。 命諸試官侍食。 上曰: “侍食於君, 君祭先飯, 其義何也?” 都承旨趙明履曰: “有若爲君嘗食者然矣。” 上曰: “故判書李眞望, 以恩賜爲壯元矣, 今則以恩賜付末, 何</p>

<p>다</p>	<p>하니, 도승지 조명리(趙明履)가 말하기를,</p> <p>“마치 임금을 위하여 음식을 맛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고 판서 이진망(李眞望)은 은사(恩賜)로 장원(壯元)을 삼았었는데 지금은 은사를 말단에 붙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p> <p>하니, 조명리가 말하기를,</p> <p>“증별 전시(增別殿試)는 모두 사제(賜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사(恩賜)도 모두 뒤섞여 앉아서 제정(製呈)합니다만, 이의 경우는 뜰에 있는 사람은 사제한 사람이 아니고 은사는 이미 사제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臺上)에 앉히며 반드시 말단에다 붙이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면(李勉)은 【이여매(李如梅)의 손자이다.】 지금 생존해 있는가?”</p> <p>하니, 대독관(對讀官) 성천주(成天柱)가 말하기를,</p> <p>“작년에 이미 작고했습니다.”</p>	<p>也?” 明履曰：“增別殿試，皆賜第者，故恩賜皆混坐製呈，而此則在庭者未第，恩賜則已第者，故坐於臺上，必付末端矣。” 上曰：“李勉【李如梅孫也。】至今生存乎?” 對讀官成天柱曰：“昨年已作故矣。” 上曰：“李勉之言甚悲，以其族姪爲康熙之壻，涕泣而言之。其人頗善，而官止同知，可憐矣。其孫尙幼乎?” 天柱曰：“年纔十餘歲云矣。” 上曰：“其家有畫像乎?” 天柱曰：“如梅之父寧遠伯李成樑，有畫像矣。” 命李如梅奉祀孫，待闋服付司勇祿，待年滿調用。 上曰：“李如松於神宗皇帝爲戚里，卿等知之乎?” 讀券官李天輔曰：“出於何文?” 上曰：“小說有之。如松之妻，鄭貴妃之弟也。” 天輔曰：“拯劣米事，御史之言是矣。洪象漢爲惠堂時，以腐傷之米，勒給百姓，又爲守令解由拘礙之法矣。” 上曰：“豈忍以無於法之事，貽吾民無限之弊乎? 解由一事置之。” 命東宮召對講規，一遵舊規，因世子傅李天輔所奏也。 上曰：“具允明事，誰爲之耶?” 對讀官嚴瑀曰：“非允明，乃其父宅奎事，而正言朴道源論之也。”</p>
----------	---	---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편의 말이 매우 슬펐었는데 그의 족질(族姪)이 청(淸)나라 강희제(康熙帝)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 인품이 매우 착한데 벼슬이 동지중추부사에 그쳤으니, 가련한 일이다. 그의 손자는 아직 어린가?”</p> <p>하니, 성천주가 말하기를,</p> <p>“나이 겨우 10여 세라고 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그의 집에 화상(畵像)이 있는가?”</p> <p>하니, 성천주가 말하기를,</p> <p>“이여매의 아버지인 영원 백(寧遠伯) 이성량(李成樑)의 화상은 있습니다.”</p> <p>하였다. 이여매의 봉사손(奉祀孫)은 복(服)이 끝나기를 기다려 사용(司勇)의 녹직(祿職)에 붙였다가 나이가 차면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여송(李如松)이 신종 황제(神宗皇帝)에게 척리(戚里)가 되는데 경 등은 알고 있는가?”</p>	<p>上曰：“其書云何？” 瑀曰：“賊鏡血黨云矣。” 上曰：“血黨之說猶緩矣。允明爲人頗可，而其父則少時過爲黨習。然何可追提於今日乎？”</p>
--	---	--

하니, 독권관(讀券官)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어느 글에 나오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소설(小說)에 있다. 이여송의 아내가 정 귀비(鄭貴妃)의 아우이다.”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증렬미(拯劣米)12788) 에 대한 일은 어사(御史)의 말이 옳습니다. 홍상한(洪象漢)이 선혜 당상(宣惠堂上)으로 있을 때 부상미(腐傷米)를 강제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수령의 해유(解由)12789) 에 대한 구애법(拘碍法)을 만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차마 법에 없는 일로 우리 백성에게 무한한 폐단을 끼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해유에 대한 일은 버려두라.”

하였다. 동궁의 소대(召對) 때 강규(講規)는 한결같이 구규(舊規)를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세자 부(世子傅)인 이천보(李天輔)가 아된 것을 따른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p>“구윤명(具允明)의 일은 누가 논했는가?”</p> <p>하니, 대독관(對讀官) 엄우(嚴瑀)가 말하기를,</p> <p>“구윤명이 아니고 이에 그의 아버지 구택규(具宅奎)의 일인데, 정언 박도원(朴道源)이 논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그의 글에 무엇이라고 했는가?”</p> <p>하니, 엄우가 말하기를,</p> <p>“역적 김일경(金一鏡)의 혈당(血黨)이라고 했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혈당이란 말은 오히려 완론(緩論)이다. 구윤명은 인품이 상당히 올바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지나치게 당수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추론(追論)하는 것인가?”</p> <p>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3월 5일</p>	<p>봉상시(奉常寺)에서 아뢰기를,</p>	<p>辛酉/奉常寺達：“秋、冬享親祭時，功臣四十五位、七祀五位祭需價，請令惠廳，依夏享例磨鍊。”從之。</p>

<p>(신유) 1번째기사 추향·동향을 친제할 때의 제수가를 선혜청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할 것을 청하다</p>	<p>“추향(秋享)·동향(冬享)을 친제(親祭)할 때 공신(功臣) 45위(位)와 7사(祀) 5위(位)의 제수가(祭需價)를 선혜청으로 하여금 하향(夏享)의 예에 의거 마련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3월 19일(을해) 1번째기사 이명식에 대한 처분과 동래부의 예단삼에 관해 의논하다</p>	<p>임금이 영화당(映花堂) 뜰에서 황단(皇壇) 망배례(望拜禮)를 거행하고나서 승지에게 명하여 슬픈 회포가 있어 그 회포를 기록한 시(詩)를 쓰게 하였다. 검열 이명식(李命植)을 보안찰방(保安察訪)으로 출보(黜補)시키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도승지이철보(李喆輔)가 오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문하였더니 이명식이 상서해서 옥신각신한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 내가 비록 노쇠하였으나 여러해 동안 고심하여 왔으니, 이명식이 비록 지난 겨울 눈물을 흘린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히 다시 오늘날 그런 습관을 부릴 수 있겠는가? 그의 소장을 되돌려 주고 보안찰방에 제수하되 당일 사조(辭朝)하게 하라. 이런 등등의 소장을 어떻게 감히 준례에 따라 봉입(捧入)할 수 있단 말인가? 해당 승지는 체차시키라.”  하였다. 호조 판서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  “동래부(東萊府)의 예단삼(禮單蓼)에 관한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초 다시 체삼(體蓼)으로 지급한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였습니다만 1년에 지급하는 것이 2백여 근(斤)에 이르고 있으니, 실로 계속 잇대기 어려운 걱정</p>	<p>乙亥/上行皇壇望拜禮於映花堂庭，命承旨，書愴懷記懷詩。命黜補檢閱李命植保安察訪。教曰：“都承旨李喆輔今日不參故問之，因命植書撕捱云。噫！予雖衰矣，幾年苦心，使命植追思昨冬垂涕之事，則焉敢復售於今日乎？其章給之，保安察訪除授，當日辭朝。此等之章，焉敢循例捧入？當該承旨遞差。”戶曹判書趙榮國曰：“萊府禮單蓼事，誠悶矣。當初改給禮蓼，出於不得已，而一年所給至於二百餘斤，則實有難繼之患矣。”上曰：“此等事，何不稟於東宮耶？”榮國曰：“此是邊境大事矣。今番所給單蓼，不爲坼封而還送，此訓導輩不善周旋之致也。萊伯亦不可無罰矣。”上曰：“然矣。”</p>

	<p>이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이런 등등의 일을 어찌하여 동궁에게 품하지 않았는가?”</p> <p>하였다. 조영국이 말하기를,</p> <p>“이는 변경에 관계된 중대한 일입니다. 이번에 단삼(單蔘)을 개봉(開封)도 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으니, 이는 훈도(訓導)들이 잘 주선하지 못한 소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처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3월 27 일(계미) 1번째기사 관무재의 시재를 설행 하고 광재우의 자손을 권무 군관에 넣다</p>	<p>(진략)임금이 말하기를,</p> <p>“듣건대 호조에서 삼(蔘) 1근(斤), 미삼(尾蔘) 5냥을 지급하여 조삼(造蔘)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호조에서 조삼하게 한 것이니 계인(契人)들의 죄가 아닌 것이다. 왜역(倭譯)에게 곤장을 치는 것을 통제사(統制使)에게 거행하게 했는데 이제 유신(儒臣)이 상서하여 진달한 내용을 들어보니, 좌수사(左水使)로 하여금 거행케 해야겠다.”</p>	<p>(진략)上曰: “聞戶曹給蔘一斤尾蔘五兩, 使之造蔘, 此則戶曹教之造蔘, 非契人之罪也。 倭(驛) [譯] 決棍, 令統制使舉行矣, 今聞儒臣陳書, 令左水使舉行。”</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4월 23 일(무신) 1번째기사 좌의정 이천보가 이조 망의 죄와 고 영돈녕 조현명의 효성 등에 관해 아뢰다</p>	<p>하였다. 대신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우상이 비록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나 이조망(李朝望)이, 조숙(趙聿)이 차자를 올려 도제조를 영구한 것을 아첨하여 빌붙는 것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에 이 일로써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지평 이조망을 해남현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이어 정통(正通)을 지니라고 신칙시켰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고 영돈녕(領敦寧) 조현명(趙顯命)은 어머니를 섬김에 있어 지극한 효행이 있었으며, 추후 거상(居喪)한 한 가지 일은 그것이 예경(禮經)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이 60세가 넘은 대신이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여묘살이 하다가 병이 생겨 서거(逝去)하였으니, 김유경(金有慶)의 예에 의거하여 특별히 정려(旌閭)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후략)</p>	<p>○戊申/命大臣入侍。 左議政李天輔曰：“右相雖以病不來，而李朝望以趙聿之劄救都提調，目以諂附，故以此不安矣。” 命持平李朝望海南縣投界，仍命申飭持正通。 天輔曰：“故領敦寧趙顯命，事母有至行，其追喪一節，雖非出於禮經，年過六十之大臣，草食守墓，成疾以逝，請依金有慶例，特爲旌閭。” 允之。 (후략)</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5월 2일 (정사) 2번째기사 대사헌 유복명이 예단 삼의 문제에 관해 상 서하다</p>	<p>대사헌 유복명(柳復明)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예단삼(禮單蔘)의 일에 대해 삼가 개탄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신의의 명성이 온 천하에 널리 드러났는데 이제 이에 하찮은 의약물(醫藥物)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결과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크게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속히 지부(地部)로 하여금 즉시 변통하게 하소서.”  하고, 또 호삼(胡蔘)을 무역할 것을 청하고, 또 청하기를,</p>	<p>大司憲柳復明上書，略曰：  臣於禮單蔘事，竊有所慨。 我國信義之名，著于天下，而今乃以刀圭小物，未免欺人之歸者，寧不大可羞哉？ 亟令地部，劃卽變通。  又請質胡蔘，又請：“稟于大朝，還寢崔錫恒復官之命。” 答曰：“禮單蔘事，</p>

	<p>“대조께 여쭙어 최석항(崔錫恒)을 복관시키라고 한 명을 도로 중지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예단삼의 일에 대해서는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대조께 여쭙라는 일은, 지난 겨울의 처분이 지당한 것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러는 것인가?”</p> <p>하였다.</p>	<p>令廟堂稟處。稟大朝事，昨冬處分至當，其何如是?”</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5월 9일 (갑자) 2번째기사 가뭄이 극심하니 직접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내겠다고 명하다</p>	<p>하교하기를,</p> <p>“몇 번 기우제를 지냈어도 비가 내릴 기미는 더욱 멀어지기만 하니 백성들의 농사를 생각하면 밥맛이 어찌 달겠는가? 저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타는 것만 같다. 오는 11일에는 마땅히 몸으로 희생(犧牲)을 대신하여 북교(北郊)에서 직접 기우제를 지내겠으니, 의조(儀曹)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p> <p>하였다.</p>	<p>教曰：“幾次祈雨，霏然愈邈，興惟民農，食奚甘乎? 瞻彼雲漢，渴悶于心。來十一日當代犧，親行於北郊，令儀曹卽爲舉行。”</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5월 9일 (갑자) 3번째기사 기우제를 몸소 지내는 일과 무승지로 발탁할 인물에 대해 논의하다</p>	<p>좌의정 이천보(李天輔), 우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청대(請對)하니, 내국(內局)이 입시할 대신과 함께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이천보 등이 한더위에 직접 비를 비는 것도 정섭(靜攝)에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도로 정지할 것을 애타게 청하였으나, 임금의 말하기를,</p> <p>“옛날 선조(先朝) 때 어찌 몸을 아끼라는 하교가 있었는가? 내가 어찌 내 한 몸을 아껴 백성을 위해 비오기를 빌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左議政李天輔、右議政金尙魯請對，命內局入侍大臣同入。天輔等以盛熱親禱，妨於靜攝，苦請還寢，上曰：“昔年有何惜肌膚之教。予何惜一身，不爲民請命乎?” 命申旻加資，差禁衛營中軍。上曰：“申旻陞資，何人可合武承旨乎?” 尙魯曰：“李潤成、尹泰淵皆可矣。” 上曰：“靈城曾經兵判，必知之</p>

	<p>하였다. 신민(申旻)에게 가자(加資)하고, 금위영(禁衛營)의 중군(中軍)에 차임 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신민의 자급을 올려 주었는데 누가 무승지(武承旨)에 적합한가?”</p> <p>하니,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p> <p>“이윤성(李潤成)과 윤태연(尹泰淵)이 모두 적합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영성(靈城)은 병조 판서를 역임했으니 반드시 알 것이다.”</p> <p>하니,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p> <p>“윤태연에 대해서 신은 그가 적합한 사람인 줄 모르겠습니다.”</p> <p>하였다. 김상로가 말하기를,</p> <p>“신이 외람되이 대료(大僚)로 있으면서 한 사람의 무승지를 천거하였는데 중신(重臣)이 갑자기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니, 신은 참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중신이 이윤성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고 윤태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니, 중신이 무변(武弁)들에 대해 애오(愛惡)의 마음이 없지 않은 것이므로 개연(慨然)스럽습니다.”</p>	<p>矣。” 朴文秀曰：“尹泰淵則臣未知其可合矣。” 尙魯曰：“臣忝居大僚，薦一武承旨，重臣遽謂不合，臣誠自愧。而重臣於李潤成則不可否，於尹泰淵則若是，重臣於武弁輩，不能無愛惡，慨然矣。” 文秀曰：“大臣以臣爲有若偏論者然，臣亦慨然矣。雖是大臣所薦，聖上既有問，豈不敢可否乎？此則大臣失言矣。若大臣所薦，則人莫敢言乎？” 天輔以文秀之盛氣，分疏請推考，上特命重推。文秀曰：“尹泰淵則決不可用之矣。” 尙魯曰：“靈城以尹泰淵爲臣之所薦，至欲永塞，豈不切迫乎？” 命戶曹判書李昌誼入侍。昌誼曰：“禮單蓼事，大關國計，且係邊情。接慰官所齎去數十斤外，鱗次當送者又爲八十餘斤。壬申、癸酉兩年條又爲七十餘斤，通計則今年內應給者爲一百五六十斤。江蓼必經紀預買，然後可以支用，請關西稅收米中，除出五六千石，換買江蓼。” 命限四千石劃給。</p>
--	--	---

	<p>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p> <p>“대신은 신이 마치 치우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니, 신도 또한 개연스럽습니다. 이들은 비록 대신이 천거하였지만 성상께서 이미 하문이 었었으니, 어떻게 감히 가부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신이 실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신이 천거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p> <p>하였다. 이천보(李天輔)는, 박문수가 성낸 기색으로 변명했다는 이유로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특별히 중추(重推)하라고 명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p> <p>“윤태연은 결단코 써서는 안됩니다.”</p> <p>하니, 김상로가 말하기를,</p> <p>“영성이 윤태연을 신이 천거했다는 이유로 영구히 저지시키려 하고 있으니, 어찌 절박한 일이 아닙니까?”</p> <p>하였다. 호조 판서 이창의(李昌諲)를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창의가 말하기를,</p> <p>“예단삼(禮單蔘)에 대한 일은 크게 국제(國計)에 관계되고 또 변정(邊情)에도 관계가 됩니다. 접위관(接慰官)이 가지고 간 수십 근(斤) 이외에 계속해서 잇따라 보내야 할 것이 또 80여 근이나 됩니다. 임신년(12823)·계유년(12824)</p>	
--	--	--

	<p>두 해의 조목에 또 70여 근이나 되어 이를 모두 계산하면 금년에 응당 지급해야 할 것이 1백 5, 60근이 됩니다. 반드시 강삼(江蔘)을 중개인을 통하여 미리 구매한 뒤에야 지탱하여 쓸 수가 있겠으니, 청컨대 관서(關西)의 세수미(稅收米) 가운데 5, 6천 석을 덜어내어 강삼을 사오게 하여 주소서.”</p> <p>하니, 4천 석을 한정으로 하여 획급(劃給)하게 하였다.</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5월 29일(갑신) 1번째기사 친히 기우제를 지내고, 가뭄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다</p>	<p>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환궁할 적에 내국 제조(內局提調) 박문수(朴文秀)가 탕제(湯劑)를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끝내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약을 먹겠는가?”</p> <p>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누누이 극력 청하자, 비로소 진어(進御)할 것을 허락하였다. 대가(大駕)가 성문 밖에 이르렀을 적에 영부사 김재로(金在魯)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하고 말하기를,</p> <p>“어제 내린 비도 또한 먼지를 적시는 것에 불과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억울해 하는 기운이 뭉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문(東門)에 성을 쌓을 때 해골(骸骨)이 낭자하게 드러났었다고 하는데, 썩은 해골을 묻어주는 것은 삼대(三代)12832) 때의 아름다운 정사였습니다. 지금 닥친 재이(災異)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그 탓을 여기에다 돌리고 있으니, 여제(厲祭)를 급급하게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lt;큰일을 소홀히 하고&gt; 잔단 일은 잘 살펴서 한다는 것에 가깝지</p>	<p>○甲申/上親行祈雨祭。還宮時，內局提調朴文秀請進湯劑，上曰：“終未得雨，何心服藥乎？”諸臣縷縷力請，始許進御。駕至城門外，領府事金在魯請對，入侍曰：“昨日之雨，亦不過沍塵，此必有鬱結之氣而然矣。東門築城時，骸骨狼藉云，掩骼埋骸，三代之美政也。卽今召災，人皆歸咎於此，厲祭不可不急急爲之矣。”上曰：“此不幾於總小功之察乎？”命召左、右相問之，左議政李天輔曰：“臣家近東城，故詳知此事，與領府事所聞絕異。豈有千乘之國，爲生靈築城，因數十兒塚而致旱之理乎？”在魯曰：“疏決，固是國之大政，且啓覆之不行，亦已久矣。此亦致鬱結之一段。今則雖不可舉行，而冬間則必爲之好矣。”上可之。駕至桃洞前路，命承旨進往囹圄，輕囚放釋。又遣校理韓光肇，使之廉察畿邑</p>

	<p>않겠는가?”</p> <p>하였다. 좌상과 우상을 불러서 하문하니, 좌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p> <p>“신의 집이 동성(東城)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영부사의 들은 소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찌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생령(生靈)을 위하여 성을 쌓는데 수십 개의 아총(兒塚) 때문에 가뭄이 들 이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p> <p>“소결(疎決)은 진실로 나라의 대정(大政)인 것인데 또 계복(啓覆)12833)을 행하지 않은 지가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원기(冤氣)가 몽치게 되는 일단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행할 수 없더라도 겨울에는 반드시 거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대가가 도동(桃洞) 앞길에 이르자 승지에게 명하여 영어(圜圖)로 가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시키라고 하였다. 또 교리 한광조(韓光肇)를 보내어 기읍(畿邑)의 원옥(冤獄)을 엄찰(廉察)하게 하였으며, 또 총융사(摠戎使) 구성임(具聖任)에게 명하여 수문(水門)의 성역(城役)을 우선 정지하라고 명하였다.</p>	<p>冤獄，又命摠戎使具聖任，水門城役，姑爲停止。</p>
<p>영조 79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6월 1일 (을유) 2번째기사</p>	<p>집의 임순(任珣)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지금의 가뭄이 또한 너무 극심하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의 잘못된 점에 대해 자방(諮訪)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강론(講論)함으로써 재변을 해</p>	<p>執義任珣上書，略曰： 今茲之旱，亦太甚矣，伏願諮訪闕遺，講論治道，以爲消弭之策。至於事係</p>

집의 임순이 올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강론할 것을 청한 상서

소시키는 방책으로 삼으소서. 황정(荒政)에 관계된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조급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양맥(兩麥)12834) 은 아주 흉년이 들어버렸고 가을 농사도 또한 흉년이 될 판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기근이 닥치기를 기다려 주진책(賑賑策)에 대해 의논한다면 이는 참으로 이른바 읍양(揖讓)하면서 불을 끄고, 말라죽은 물고기의 가게에 물을 터뜨려 놓는 격입니다. 눈앞에 백성들을 급한 데서 벗어나게 하는 방도는 맥적(麥糶)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제도(諸道)로 하여금 민력(民力)의 완급(緩急)을 살펴서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감면시키소서. 또 관시(關市)의 세금을 감면하고 산택(山澤)의 법금을 늦추는 것은 곧 예로부터 황정(荒政)에서 먼저 해온 일입니다. 한번 균역(均役)을 실행한 뒤로부터 주량(舟梁)·어염(魚鹽)의 세(稅)가 거의 한(漢)·송(宋)의 세대와 같아서 관(官)에서 1분의 세금을 감면하면 백성이 1분의 은사(恩賜)를 받게 되고 관에서 하루의 독책을 늦추면 백성이 하루 동안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당 구관(句管)하는 신하로 하여금 상세히 잘 헤아리게 하여 백성과 더불어 재손(裁損)하게 한다면 그 혜택이 또한 어찌 작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장령 민우(閔塢)도 또한 상서하여 영선(營繕)을 중지하고 저축을 넓히고 고장(庫臧)을 검열하고 술빚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고 또 청하기를,

“식년(式年)의 대과(大科)·소과(小科)를 내년 가을로 물려서 거행하소서.”

荒政，尤不容少緩。顧今兩麥大無，秋稼亦判告歉。若待抄飢，始議賑賑，則此真所謂揖讓而救火，決河於枯魚之肆也。目前寬民之道，莫先於麥糶。請令諸道，觀民力緩急，減三分一四分一。且減關市之征，弛山澤之禁，即自古荒政之所先也。一自均役設行之後，舟梁、魚鹽之稅，殆無異於漢、宋之世，官減一分之稅，則民受一分之賜，官緩一日之督，則民被一日之惠。宜使句管之臣細加斟量，與民裁損，則其爲惠，亦豈淺淺哉？

答曰：“令廟堂稟處。”掌令閔塢亦上書，請停營繕廣儲蓄閱庫藏禁釀酒，且請：“式年大、小科，待明秋退行。”  
答曰：“令廟堂稟處。”

	<p>하니, 답하기를,</p> <p>“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p> <p>하였다.</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7월 2일 (을묘) 1번째기사 봉원 도감 당상이 정 자각·전사청 등의 공 역을 아뢰다</p>	<p>봉원 도감 당상(封園都監堂上)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해서, 정자각(丁字閣), 전사청(典祀廳)과 비석(碑石), 양마석(羊馬石)의 공역(工役)을 우러러 아뢰니, 진청(賑廳)의 쌀 1천 2백 석(石)을 획급(劃給)하라고 명하였다.</p>	<p>乙卯/封園都監堂上請對入侍，以丁字閣、典祀廳及碑石、羊馬石工役仰奏，命劃給賑廳米一千二百石。</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7월 19 일(임신) 1번째기사 난전을 받아들인 경조 의 해당 당상을 모두 파직하다</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이정 당상에게 명하여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전부터 동궁(東宮)이 시좌(侍坐)할 때에는 대신(大臣)과 약원(藥院)12867)의 신하가 먼저 나에게 문후(問候)하고 다음에 동궁에게 문후하는데, 이것은 압존(壓尊)의 혐의가 없지 않으니, 이 뒤로 시좌할 때에는 함께 나에게 문후를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p> <p>하고, 하교하기를,</p> <p>“공시인 폐막 이정 책자(貢市人弊瘼瘼蠶正冊子)는 이미 보고 고쳐서 내렸으나, 강계 책자(江契冊子)로 말하면 한 조목에 대하여 중재(重宰)의 의견이 같지 않으므로 버려두게 하였다. 오늘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먼저 중신(重臣)의 뜻을 따라 시행한 뒤에 전인(塵人)이 옛 버릇을 계속하여 강민(江民)에</p>	<p>壬申/內局入侍，命蠶正堂上同入。上曰：“自前東宮侍坐時，大臣及藥院之臣，先問候於予，次問候於東宮，此不無壓尊之嫌，此後侍坐時，則竝爲陳問於予宜矣。”教曰：“《貢市人弊瘼蠶正冊子》，既已覽刪以下，而至於《江契冊子》，於一條，重宰之見不同，故其令置之。今日大臣入侍，既下教先從重臣之意施行後，塵人若踵前習，貽弊江民，當該塵人，嚴訊徒配，以宰臣之初冊子議，更爲施行，而大抵甲子節目其若遵行，豈有今番冊子乎？此專由於國無紀綱，備局京兆凡事，置之度外之致，此後江民復有弊，而備局不問京</p>



게 폐해를 끼치거든 해당 전인을 엄히 형신(刑訊)하여 도배(徒配)하고 재신(宰臣)이 당초에 책자에 대하여 의논한 것을 다시 시행하라고 이미 하교하였다는, 대저 갑자년(12868)의 절목(節目)을 준행(遵行)하였다면 어찌 이번 책자가 있게 되었겠는가? 이것은 오로지 나라에 기강이 없어서 비국(備局)에서 경조(京兆)(12869)의 모든 일을 도외(度外)에 버려둔 탓에서 말미암았으니, 이 뒤에 강민에게 다시 폐해가 있어도 비국에서 경조를 문책하지 않고 또 돕는다면 나라의 기강은 이로부터 아주 없어질 것이다. 또 이제 법을 세우면 당초에 절목을 신칙(申飭)하지 않은 것도 신칙해야 할 것인데, 이제 듣건대, 갑자년의 절목이 정해진 뒤에도 경조에서는 난전(亂塵)을 받아들여 시행한 일이 있다 하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이것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을 세우겠는가? 범한 경조의 해당 당상(堂上)을 모두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천보(李天輔)가 강을 막아 촘촘한 그물을 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것을 듣건대, 이른바 촘촘한 그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탕(成湯)이 삼면(三面)의 그물을 해제하였고(12870), 추성(鄒聖)(12871)도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에 넣지 않는다.’ 한 것이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이 강을 막아서 설치되면 물고기가 어찌 씨가 남아 있겠는가? 《예기(禮記)》의 둥지를 잃지 않는다는 뜻에 어그러지고, 또한 못[池]에 방생(放生)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예전에 《예기》 월령편(月令篇)에 따라 내국으로 하여금 청두압(靑頭鴨)을 들이지 말게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아! 이 그물을 만든 자는 작용(作俑)(12872) 한 자와 다를 것이 없고, 이 그물을 쓰는 자도 사면에 그물을 두른 자와 다를 것이 없다.

兆，又助之，則國之紀綱從此而掃盡矣。且今若立法，當初不飭節目者宜飭，而今聞甲子節目後，京兆其有亂塵聽施之事云，事之寒心，莫此爲甚。此不嚴懲，何以立法？所犯京兆當該堂上，并罷職不敍。”都提調李天輔請禁截江密網，教曰：“聞大臣所奏，所謂密網，昔之成湯，解其三網，鄒聖亦云‘數罟不入。’此等密網截江而設，魚豈有種子？非《禮記》無覆巢之意，亦無放生池之心。奚獨於此？昔年因《禮記》月令篇，令內局勿捧靑頭鴨，此政當法祖宗也。噫！作此網者，無異於作俑者，而用此網者，亦無異於環四網者也。噫！魚鼈雖江海中畜物，亦朝鮮水土中所產也，若是已甚而盡取，抑何意乎？其本雖微，不忍則大，若不嚴飭，是行不忍之政也。申飭此後造網者徒配。”天輔曰：“卽此一事，可謂王政之大者。欲爲民釐正，而澤及於魚鼈，殿下一用心之效，所及遠矣。”提調朴文秀，以夏月饌味極艱，請生鰓封進事，知委各道，上曰：“予曾見摘鰓圖，可謂至難矣。豈忍爲口腹而若是勞民乎？只令封進于慈殿。”

아! 어별(魚鱉)은 비록 강이나 바다 가운데에서 사는 짐승일지라도 또한 조선의 수도(水土) 가운데에서 난 것인데, 이처럼 매우 심하게 죄다 잡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그 근본은 작더라도 차마 못할 것은 크니, 엄히 신척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마 못할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신척하여 이 뒤로 그물을 만드는 자는 도배하게 하라.”

하매, 이천보가 말하기를,

“이 한가지 일은 왕정(王政)의 큰 것이라 하겠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바로잡으려 하였는데 은택이 어별에 미치니, 전하게서 한 번 마음을 쓰신 보람은 미치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제조(提調) 박문수(朴文秀)가 여름철의 찬미(饌味)가 매우 어렵다 하여 산 전복을 봉진(封進)하라고 각도(各道)에 알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전복을 따는 그림을 보았는데, 지극히 어렵다고 할 만하였다. 어찌 차마 구복(口腹)을 위하여 이처럼 백성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자전(慈殿)에만 봉진하게 하라.”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유척기(兪拓基)는 모든 조정의 의논에 관계되는 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전에 시호(諡號)를 의논할 때에도 나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도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일을 어떻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文秀曰：“兪拓基凡干朝議，一不參涉，曾前議諡時，亦不進參。故其日亦不進，非以本事爲如何而然矣。”上曰：“未白其心之前，不宜離都門一步地矣。何敢自便於鄉居乎？”天輔曰：“菜蓼一年條，無事順給云幸矣。聞其措畫，片片精神，既不苟乞，又不勒脅，只以禮單之禮字，從容爭之，以爲既曰‘禮單，則是我國以禮給之之物，汝等雖無識，安敢無禮點退乎？’蓋其所執既正大，故彼人不敢作梗，無辭順受，觀其弛張，眞方面之才矣。”上曰：“李舜章爲人剛而分數明矣。”天輔曰：“備堂之任，比使事尤爲較重，冬至副使李成中請改差使之專意備局。”允之，命以李命坤代之。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마음을 밝히기 전에는 도문(都門) 밖으로 한걸음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시골 사는 것에 스스로 편히 여긴단 말인가?”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채삼(菜參) 1년조(一年條)를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주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 조치한 것을 듣건대, 일일이 온 정신을 쏟아 구차하게 청하지도 않았거니와 억지로 협박하지도 않았고 다만 예단(禮單)의 ‘예’ 자 때문에 조용히 다투기를 ‘이미 예단이라 하였으면 이는 우리 나라에서 예로 주는 물건인데, 너희들이 무식하더라도 어찌 감히 무례하게 점퇴(點退)할 수 있는가?’ 하였다 합니다. 대개 그가 주장하는 것이 이미 정대(正大)하므로 저들이 감히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고 말없이 순조롭게 받은 것이니, 그가 늦췄다 당겼다 한 것을 보면 참으로 한 방면을 말을 만한 재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이장(李彝章)은 사람됨이 굳세고 분수(分數)가 명백하다.”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비국 당상(備局堂上)의 직임은 사사(使事)보다 더욱이 중하니, 동지 부사(冬至副使) 이성중(李成中)을 청컨대 개차(改差)하여 비국에 전념하게 하소서.”

	<p>하니, 윤희하고 이명곤(李命坤)으로 대신하라고 명하였다.</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7월 9일 (임술) 1번째기사 은여결·타락죽·통영의 일을 하문하다</p>	<p>내국(內局)12846) 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이정 당상(釐正堂上)에게 명하여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상성(金尙星)에게 명하여 해면(解免)을 허락하였으니, 김상성이 시애(撕捩)12847) 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데, 은여결(隱餘結)12848) 을 균역청(均役廳)에 붙이는 뜻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나, 이름은 바르지 않다. 이제부터 균청(均廳)에 붙여진 은여결은 그 결수(結數)대로 면세(免稅)로 삼고 전대동(田大同) 및 각세(各稅)와 함께 균청에 붙인다면, 전안(田案)은 절로 탁지(度支)12849) 에 있게 되고 그 세(稅)는 균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야 그 이름을 바르게 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절목(節目)의 본조(本條)에 실으면 이 뒤로는 물론이고 경오년(12850) 전 후에 은결(隱結)이 더 나타난 것도 절로 탁지와 균청으로 돌아가서 감히 그 사이에서 손댈 수 없고 면세된 균청의 전토(田土)도 감히 다른 곳에서 절수(折受)12851)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전(陳田)12852) 도 탁지에서 구관(句管)하게 하되, 탁지나 균청에서 만약 혹 영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본청(本廳)은 이미 삼공(三公)이 구관하는 것이거니와 해조(該曹)·해청(該廳)의 당상(堂上)을 초기(草記)12853) 하여 엄중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는 일을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라.”  하고, 또 하고하기를,  “예전에는 자전(慈殿)과 대전(大殿)·세자궁(世子宮) 밖에 모두 낙죽(酪粥)12854) 이 없었는데, 중궁전(中宮殿)에 을해년(12855) 이후 명하여 바치게 하였고, 그 뒤에 현빈(賢嬪)12856) 이 옛일을 슬피하므로 무신년(12857) 에 동궁(東宮)에 들이던 것을 계속하여 진배(進排)하였다. 세손궁(世孫宮)으로 말</p>	<p>壬戌/內局入侍, 命釐正堂上同入。 命兵曹判書金尙星許解, 以尙星撕捩也。 上曰: “凡事必也正名, 隱餘結屬之均役廳, 意實爲民, 名則不正。 自今均廳所屬隱餘結, 從其結數, 作爲免稅, 并與田大同及各稅而屬之均廳, 則田案自在度支, 其稅歸於均廳。 如此然後可以正其名而實其事矣。 以此載於節目本條, 此後勿論, 庚午前後隱結加現者, 自歸度支、均廳, 無敢下手於其間, 免稅均廳之田, 無敢折受於他處。 而陳田亦令度支句管, 度支、均廳若或有違令之事, 則本廳既是三公所句管, 該曹、該廳堂上草記重飭事, 定式施行。” 又教曰: “昔年則慈殿及大殿、世子宮外, 皆無酪粥, 於中宮殿乙亥後命設, 其後賢嬪愴古, 戊申年以入于東宮者, 仍令進排。 至於世孫宮, 既封之後, 事體無異於世子宮, 故其令進排, 而至於元孫宮, 則定例中既與王子同, 而內醫院酪粥誤爲進排矣。 酪牛雖曰畜物, 自昔年爲春耕而停封, 酪牛之多, 不至於此, 今覽冊子, 至於十八</p>

하면 이미 책봉된 뒤에는 사체(事體)가 세자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진배하게 하였으나, 원손궁(元孫宮)으로 말하면 정례(定例) 가운데에서 이미 왕자(王子)와 같게 되어 있는데 내의원(內醫院)의 낙죽을 잘못 알고 진배하였다. 낙우(酪牛)가 비록 짐승이기는 하나 예전부터 봄갈이를 위하여 봉진(封進)을 멈추었으므로 낙우가 이토록 많지 않았는데, 이제 책자(冊子)를 보니 열여덟 마리나 되어 그 송아지를 아울러 서른여섯 마리이다. 《예기(禮記)》에 말하지 않았는가? 봄에 왕자(王者)가 알[卵]과 동지를 아끼어 주었는데, 이제 다섯 주발의 타락죽을 위하여 열여덟 마리의 송아지가 젖을 굶게 하는 것은 인정(仁政)이 아니다. 원손궁에는 책봉(冊封) 뒤에 거행하고 그 소는 내의원으로 하여금 수를 줄이게 하여, 한편으로는 《예기》를 따르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시민(市民)의 폐단을 덜라.”

하고, 어제(御製) 균역청 윤음(均役廳綸音)과 소지(小誌)를 써서 절목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통영(統營)의 일은 어떠한가?”

하매,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어장(御將)12858 은 수를 줄여서 주려 하고, 영상(領相)은 1만 냥(兩)을 죄다 주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영성(靈城)12859 의 말을 옳게 여긴다. 지금 균청에 남은 돈[錢]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 절목에도 넓히거나 좁히는 일이 없지 않을 듯하니, 삼가서 쓰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이후(李暻)에게 명하여 강계 책자(江契冊子)를 읽게 하였다. 이후가 말하기를,

“강진(江塵)은 단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隻之多，而并其犢爲三十六也。《禮記》不云乎？於春，王者惜其卵、巢，爲五椀之粥，使十八犢飢乳，非仁政也。元孫宮待冊封後舉行，其牛令內醫院減數，一以示遵《禮記》之意，一以除市民之弊。” 命書御製均役廳綸音及小誌，載于節目。仍教曰：“統營事如何？”申晩曰：“御將則欲減數給之，領相則欲盡給萬兩矣。”上曰：“予則以靈城言爲是矣。卽今均廳雖有餘錢，將來此節目亦似不無闊狹，慎不可用之。”命李暻，讀江契冊子。暻曰：“江塵斷然罷之宜矣。”朴文秀曰：“此是正論，而三江五塵，皆是三百年流來之塵矣。”

	<p>“이는 바른 논의입니다마는, 삼강(三江)12860) 의 다섯 시전(市塵)은 다 3백년 동안 내려온 시전입니다.” 하였다.</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7월 19일(임신) 1번째기사 난전을 받아들인 경조의 해당 당상을 모두 파직하다</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이정 당상에게 명하여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부터 동궁(東宮)이 시좌(侍坐)할 때에는 대신(大臣)과 약원(藥院)12867)의 신하가 먼저 나에게 문후(問候)하고 다음에 동궁에게 문후하는데, 이것은 압존(壓尊)의 혐의가 없지 않으니, 이 뒤로 시좌할 때에는 함께 나에게 문후를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교하기를,  “공시인 폐막 이정 책자(貢市人弊癘癘釐正冊子)는 이미 보고 고쳐서 내렸으나, 강계 책자(江契冊子)로 말하면 한 조목에 대하여 중재(重宰)의 의견이 같지 않으므로 버려두게 하였다. 오늘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먼저 중신(重臣)의 뜻을 따라 시행한 뒤에 전인(塵人)이 옛 버릇을 계속하여 강민(江民)에게 폐해를 끼치거든 해당 전인을 엄히 형신(刑訊)하여 도배(徒配)하고 재신(宰臣)이 당초에 책자에 대하여 의논한 것을 다시 시행하라고 이미 하교하였다는, 대저 갑자년(12868)의 절목(節目)을 준행(遵行)하였다면 어찌 이번 책자가 있게 되었겠는가? 이것은 오로지 나라에 기강이 없어서 비국(備局)에서 경조(京兆)12869)의 모든 일을 도외(度外)에 버려둔 탓에서 말미암았으니, 이 뒤에 강민에게 다시 폐해가 있어도 비국에서 경조를 문책하지 않고 또 돕는다면 나라의 기강은 이로부터 아주 없어질 것이다. 또 이제 법을 세우면 당초에 절목을 신칙(申飭)하지 않은 것도 신칙해야 할 것인데, 이제 듣건대,</p>	<p>壬申/內局入侍, 命釐正堂上同入。 上曰: “自前東宮侍坐時, 大臣及藥院之臣, 先問候於予, 次問候於東宮, 此不無壓尊之嫌, 此後侍坐時, 則竝爲陳問於予宜矣。” 教曰: “《貢市人弊癘釐正冊子》, 既已覽刪以下, 而至於《江契冊子》, 於一條, 重宰之見不同, 故其令置之。 今日大臣入侍, 既下教先從重臣之意施行後, 塵人若踵前習, 貽弊江民, 當該塵人, 嚴訊徒配, 以宰臣之初冊子議, 更爲施行, 而大抵甲子節目其若遵行, 豈有今番冊子乎? 此專由於國無紀綱, 備局京兆凡事, 置之度外之致, 此後江民復有弊, 而備局不問京兆, 又助之, 則國之紀綱從此而掃盡矣。 且今若立法, 當初不飭節目者宜飭, 而今聞甲子節目後, 京兆其有亂塵聽施之事云, 事之寒心, 莫此爲甚。 此不嚴懲, 何以立法? 所犯京兆當該堂上, 并罷職不敘。” 都提調李天輔請禁截江密網, 教曰: “聞大臣所奏, 所謂密網, 昔之成湯, 解其三網, 鄒聖亦</p>

갑자년의 절목이 정해진 뒤에도 경조에서는 난전(亂塵)을 받아들여 시행한 일이 있다 하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이것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을 세우겠는가? 범한 경조의 해당 당상(堂上)을 모두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천보(李天輔)가 강을 막아 촘촘한 그물을 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이 아뢰는 것을 듣건대, 이른바 촘촘한 그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탕(成湯)이 삼면(三面)의 그물을 해제하였고(12870), 추성(鄒聖)(12871)도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에 넣지 않는다.’ 한 것이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이 강을 막아서 설치되면 물고기가 어찌 씨가 남아 있겠는가? 《예기(禮記)》의 등지를 얻지 않는다는 뜻에 어그러지고, 또한 못[池]에 방생(放生)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예전에 《예기》 월령편(月令篇)에 따라 내국으로 하여금 청두압(靑頭鴨)을 들이지 말게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아! 이 그물을 만든 자는 작용(作俑)(12872) 한 자와 다를 것이 없고, 이 그물을 쓰는 자도 사면에 그물을 두른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아! 어별(魚鼈)은 비록 강이나 바다 가운데에서 사는 짐승일지라도 또한 조선의 수도(水土) 가운데에서 난 것인데, 이처럼 매우 심하게 죄다 잡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그 근본은 작더라도 차마 못할 것은 크니, 엄히 신칙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마 못할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신칙하여 이 뒤로 그물을 만드는 자는 도배하게 하라.”

하매, 이천보가 말하기를,

云 ‘數罟不入。’ 此等密網截江而設，魚豈有種子？ 非《禮記》無覆巢之意，亦無放生池之心。 奚獨於此？ 昔年因《禮記》月令篇， 令內局勿捧靑頭鴨， 此政當法祖宗也。 噫！ 作此網者， 無異於作俑者， 而用此網者， 亦無異於環四網者也。 噫！ 魚鼈雖江海中畜物， 亦朝鮮水土中所產也， 若是已甚而盡取， 抑何意乎？ 其本雖微， 不忍則大， 若不嚴飭， 是行不忍之政也。 申飭此後造網者徒配。” 天輔曰：“卽此一事， 可謂王政之大者。 欲爲民釐正， 而澤及於魚鼈， 殿下一用心之效， 所及遠矣。” 提調朴文秀， 以夏月饌味極艱， 請生鰻封進事， 知委各道， 上曰：“予曾見摘鰻圖， 可謂至難矣。 豈忍爲口腹而若是勞民乎？ 只令封進于慈殿。” 文秀曰：“兪拓基凡干朝議， 一不參涉， 曾前議諡時， 亦不進參。 故其日亦不進， 非以本事爲如何而然矣。” 上曰：“未白其心之前， 不宜離都門一步地矣。 何敢自便於鄉居乎？” 天輔曰：“菜蓼一年條， 無事順給云幸矣。 聞其措畫， 片片精神， 既不苟乞， 又不勒脅， 只以禮單之禮字， 從容爭之， 以爲既曰

	<p>“이 한가지 일은 왕정(王政)의 큰 것이라 하겠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바로잡으려 하였는데 은택이 어별에 미치니, 전하께서 한 번 마음을 쓰신 보람은 미치는 바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제조(提調) 박문수(朴文秀)가 여름철의 찬미(饑味)가 매우 어렵다 하여 산 전복을 봉진(封進)하라고 각도(各道)에 알릴 것을 청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내가 일찍이 전복을 따는 그림을 보았는데, 지극히 어렵다고 할 만하였다. 어찌 차마 구복(口腹)을 위하여 이처럼 백성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자진(慈殿)에만 봉진하게 하라.”</p> <p>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p> <p>“유척기(兪拓基)는 모든 조정의 의논에 관계되는 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전에 시호(諡號)를 의논할 때에도 나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도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일을 어떻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그 마음을 밝히기 전에는 도문(都門) 밖으로 한걸음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시골 사는 것에 스스로 편히 여긴단 말인가?”</p> <p>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p>	<p>‘禮單， 則是我國以禮給之之物， 汝等雖無識， 安敢無禮點退乎?’ 蓋其所執既正大， 故彼人不敢作梗， 無辭順受， 觀其弛張， 眞方面之才矣。” 上曰：“李彝章爲人剛而分數明矣。” 天輔曰：“備堂之任， 比使事尤爲較重， 冬至副使李成中請改差使之專意備局。” 允之， 命以李命坤代之。</p>
--	---	---



	<p>“채삼(菜參) 1년조(一年條)를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주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 조치한 것을 듣건대, 일일이 온 정신을 쏟아 구차하게 청하지도 않았거니와 억지로 협박하지도 않았고 다만 예단(禮單)의 ‘예’ 자 때문에 조용히 다투기를 ‘이미 예단이라 하였으면 이는 우리 나라에서 예로 주는 물건인데, 너희들이 무식하더라도 어찌 감히 무례하게 점퇴(點退)할 수 있는가?’ 하였다 합니다. 대개 그가 주장하는 것이 이미 정대(正大)하므로 저들이 감히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고 말없이 순조롭게 받은 것이니, 그가 늦췄다 당겼다 한 것을 보면 참으로 한 방면을 맡을 만한 재주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이장(李彝章)은 사람됨이 굳세고 분수(分數)가 명백하다.”</p> <p>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p> <p>“비국 당상(備局堂上)의 직임은 사사(使事)보다 더욱이 중하니, 동지 부사(冬至副使) 이성중(李成中)을 청컨대 개차(改差)하여 비국에 전념하게 하소서.”</p> <p>하니, 윤희하고 이명곤(李命坤)으로 대신하라고 명하였다.</p> <p><b>【태백산사고본】</b></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7월 23일(병자) 1번째기사</p>	<p>열흘 동안 감선(減膳)12880) 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p> <p>“점때 무신년12881) 가을 새벽에 빗소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듣고 특별히 감선하라고 명하였다. 아! 큰물이 지거나 가뭄이 드는 것은 참으로 덕이 없는</p>	<p>丙子/命減膳十日。 教曰：“頃於戊申秋曉，聞雨聲之過多，特命減膳。 噫! 於水於旱，良由不德。 今者之衰，豈可比於戊申， 而爲元元之心、自勉之</p>

<p>열흘 동안 감선하다</p>	<p>데에서 말미암는다. 이제 노쇠한 것을 어찌 무신년에 견주랴마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스스로 힘쓰는 뜻이 어찌 쇠퇴하였다 하겠는가? 한밤 이후로 아직까지 비가 내리니, 무신년과 다를 것이 없다. 주원(廚院)12882) 으로 하여금 열흘 동안 감선하게 하여 내가 자신을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라. 자전(慈殿)에 대하여는 일찍이 이미 거행하는 가운데에 들어 있지 않는다고 분부하였거니와, 원량(元良)에 대해서는 바야흐로 청정(聽政)하니 같은 예(例)로 하고, 그 밖의 각전(各殿)도 줄이지 말라.”</p> <p>하였다.</p>	<p>意，豈曰衰乎？自半夜以後尚今雨下，無異戊申。令廚院減膳十日，以表予飭躬之意。於慈殿，曾已教不在舉行之中，於元良則今方聽政，一例爲之，其他各殿，亦勿減。”</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8월 6일 (무자) 1번째기사 육상궁에서 친제를 행하다</p>	<p>어독새벽에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서 친제(親祭)를 행하였다. 시책(諡冊)을 올리기를 의식대로 하고, 또 인(印)을 올리기를 의식대로 하였으며, 아헌(亞獻)·종헌(終獻)하기를 의식대로 하고는 음복(飲福)하였다. 예(禮)가 끝나고서 재실(齋室)에 돌아가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이제는 한이 없다. 영빈(寧嬪)12893) 은 어느 해에 궁에 들어왔는가? 사친과 사이가 가까웠다.”</p> <p>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p> <p>“내 아버지를 생각하였으면 마땅히 옛적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민백상(閔百祥)을 막힘 없이 조용(調用)하고 영빈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벼슬이 없는 자는 곧 조용하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戊子/質明上行親祭于毓祥宮。上諡冊如儀，又上印如儀，亞、終獻如儀，飲福。禮訖，還御齋室，上曰：“予今則無恨矣。寧嬪何年入宮？於私親無間矣。”命承旨書傳教曰：“既思吾親，當思昔年。閔百祥無礙調用，寧嬪近族無職者，卽爲調用。”又教曰：“明年聖母復位之日，隨以復爵誰嬪乎？兒無常母，曾已下教，噫！若思吾親，宜思寧嬪，今日伸禮，使寧嬪子子歸於壽進宮，則是忘私親也。特將和柔以繼寧嬪之後，令儀曹知悉。”又教曰：“今日此懷，何以伸焉？追惟甲戌，一倍愴焉。聖母復位，卽於明年，尤況今日何以堪抑？閔百祥給牒絃用。”命上冊印官左參贊朴文秀，熟馬一匹面</p>

“내년은 성모(聖母)12894) 께서 복위(復位)하신 지 <일주갑(一周甲)이 되는> 해인데, 그때에 따라서 복작(復爵)된 것이 어느 빈(嬪)인가? 아이에게 상모(常母)가 없었음을 일찍이 하교하였거니와, 아! 내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영빈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오늘 예(禮)를 펴고서 영빈으로 하여금 외로이 수진궁(壽進宮)에 돌아가게 한다면, 이는 사친을 잇는 것이다. 특별히 화유(和柔)12895) 로 영빈의 뒤를 잇게 할 것이니, 의조(儀曹)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펼 것인가? 갑술년(12896) 을 추상하니, 한층 더 슬프다. 성모께서 복위하신 <일주갑이> 바로 내년인데, 더구나 오늘 어떻게 견디겠는가? 민 백상에게 직첩(職牒)을 주고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상책인관(上冊印官) 좌참찬 박문수(朴文秀)에게 숙마(熟馬) 한 필을 면급(面給)하고, 죽책문 제술관(竹冊文製述官) 좌의정 이천보(李天輔)에게 숙마 한 필을 면급하고, 죽책문 서사관(竹冊文書寫官)·독죽책관(讀竹冊官)·은인전문 서사관(銀印篆文書寫官)과 제사지낼 때의 집례(執禮)·대축(大祝)에게 각각 숙마 한 필을 내려 주고, 봉책관(捧冊官)·봉인관(捧印官)에게 각각 한 자금(資級)을 더하고 공장(工匠) 등에게 해조(該曹)로 하여금 쌀과 베를 제급(題給)하게 하고, 궁위령(宮闈令) 이유신(李維新)에게 가자(加資)하고, 수직 중관(守直中官)과 찬의(贊儀) 이하 주시관(奏時官)에게 각각 상현궁(上弦弓)을 내려 주고, 수복(守僕) 등에게 쌀과 베를 제급하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오늘 예를 행하니, 한층 더 슬프다. 증(贈) 영상(領相)12897) 의 집에 예관

給, 竹冊文製述官左議政李天輔, 熟馬一匹面給, 竹冊文書寫官、讀竹冊官、銀印篆文書寫官、行祭時執禮·大祝, 各熟馬一匹賜給, 捧冊、印官各加一資, 工匠等, 令該曹米、布題給, 宮闈令李維新加資, 守直中官、贊儀以下奏時官, 各上弦弓賜給, 守僕等米、布題給。 又教曰: “今日行禮, 一倍愴然。 贈領相家, 遣禮官致祭, 其奉祀孫, 右職調用。” 命趙觀彬撤籬, 移配端川府, 金吾、秋曹雜犯并放, 歲抄點下於居中、居下者一并蕩滌, 徒年以下特放, 輕囚亦放。

	<p>(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그 봉사손(奉祀孫)을 우직(右職)에 조용하라.”</p> <p>하였다. 조관빈(趙觀彬)은 위리(圍籬)를 철거하여 단천부(端川府)로 이배(移配)하고 금오(金吾)12898)·추조(秋曹)12899) 의 잡범(雜犯)을 모두 석방하고, 세초(歲抄)12900) 에서 거중(居中)·거하(居下)로 점하(點下)된 자를 한결같이 모두 탕척(蕩滌)하고 도형(徒刑) 이하를 특별히 석방하고 가벼운 죄수도 또한 석방하라고 명하였다.</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9월 4일 (병진) 3번째기사 화경 숙빈에게 시호를 올리고 태묘에 봉원을 고하다</p>	<p>(전략)선전관(宣箋官) 정홍순(鄭弘淳)이 하전(賀箋)을 읽었다. 끝나니, 임금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기를,</p> <p>“몇 해 동안 경영한 일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으니, 슬프고 기쁜 마음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p> <p>하고, 군병(軍兵)들에게 선은(宣醢)12916) 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p> <p>“육순인 만년에 사친(私親)을 위하여 예(禮)를 다하였다. 일진이 좋은 때에 대례(大禮)가 순조로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무엇이 섭섭하겠는가? 고묘(告廟)하고 반사(頒赦)한 뒤에 응당 행해야 할 은전으로 대과(大科)가 있어야 할 것이니, 정시(庭試)로 설행하라.”</p> <p>하고, (후략)</p>	<p>(전략)宣箋官鄭弘淳讀賀箋。訖，上含涕曰：“幾年營爲之事，今日乃成，愴喜之心，當如何哉？”命宣醢軍兵。教曰：“六旬暮年，爲私親完禮。日吉辰良，大禮順成，予何憾焉？告廟頒赦之後，應行之典，宜有大科，以庭試設行。”(후략)</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9월 10</p>	<p>임금이 육상궁(毓祥宮)의 제상(祭床)을 만들라고 명하고, 인하여 시신(侍臣)에게 말하기를,</p>	<p>上命造毓祥宮祭床，因謂侍臣曰：“今造床卓，特令狹小。不欲侈大矣。”禮曹判書洪鳳漢曰：“近來侈靡成風，</p>

<p>일(임술) 3번째기사 육상공의 제상을 좁고 작게 만들라고 명하다</p>	<p>“이제 상탁(床卓)을 만들되 특히 좁고 작게 하라. 넓고 크게 하고 싶지 않다.”</p> <p>하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근래 지나친 사치가 풍속을 이루어 여염의 필부(匹夫)일지라도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다투어 숭상하는데, 이번의 모든 의절(儀節)은 간략하게 하도록 힘 쓰시니, 신들은 못 견디게 흠탄(欽歎)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한림(翰林) 이세택(李世澤)에게 묻기를,</p> <p>“선정(先正)의 묘(墓)의 석물(石物)은 어떠한가?”</p> <p>하매, 이세택이 말하기를,</p> <p>“신의 선조인 문순공(文純公) 신(臣) 이황(李滉)이 유언하여 예장(禮葬)을 사양하도록 경계하였으므로, 신의 육대조인 신 이준(李雋)이 두 번 상소하였으나 윤택받지 못하고 드디어 예장하였습니다마는, 석물은 다 간략하게 하여 그리 높고 크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선정이 예장을 사양한 뜻은 후세에서 본받을 만하다.”</p> <p>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p>	<p>雖閭巷匹夫，競尙奢麗，而今番凡節，務令省簡，臣等不勝欽歎。”上問翰林李世澤曰：“先正墓石物何如？”世澤曰：“臣先祖文純公臣滉，遺誠辭禮葬，故臣六代祖臣雋，再上疏不得請，遂用禮葬，而石物皆從簡約，不甚高大矣。”上曰：“先正辭禮葬之意，可以爲後世法也。”鳳漢曰：“貢人月令之弊，自朝家變通之後，猶聞有紛紜之弊，立法之初，不可置之。掌務監察，請拿問。”上允之。</p>
--	---	--

	<p>“공인(貢人)의 월령(月令)의 폐단을 조가(朝家)에서 변통한 뒤에도 오히려 분운(紛紜)의 폐단이 있다 하니, 법을 세운 처음에 버려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장무 감찰(掌務監察)을 나문(拿問)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휴하였다.</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9월 23일(을해) 1번째기사 영의정 김재로가 거행 조건 네 건을 아뢰다</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명하여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도 같이 들어오고 왕세자(王世子)도 시좌(侍坐)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증보만병회춘(增補萬病回春)》을 영영(嶺營)으로 하여금 간판(刊板)하게 하기를 청하니, 윤휴하였다. 또 각릉(各陵)·각전(各殿)의 조과(造果)에 쓸 기름과 꿀을 더 마련하기를 청하니, 윤휴하였다. 동의금(同義禁) 이성중(李成中)이 말하기를,</p> <p>“전 곡산 부사(谷山府使) 유언국(兪彦國)이 중고(中考)에 들어서 파직(罷職)된 뒤에 그 아버의 병 때문에 유장(由狀)12927) 을 내고 곧 떠났는데, 도신(道臣)이 장계(狀啓)하여 그 마음대로 떠난 것을 죄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금오(金吾)에서 나문(拿問)을 청합니다마는, 그 아버의 병은 마침내 구료(救療)하지 못하였다 하니, 효리(孝理)의 정사(政事)로서는 불쌍히 생각할 방도가 있을 듯합니다.”</p> <p>하고, 김재로가 말하기를,</p> <p>“영장(營將)을 겸한 수령(守令)은 비록 면간 교대(面看交代)12928) 하는 규례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문법(文法)의 죄에 지나지 않는데, 이미 친상(親喪)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분간해야 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분간하라.”</p> <p>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p>	<p>乙亥/內局入侍， 命大臣、備堂同入，王世子侍坐。 領議政金在魯請《東醫寶鑑》及《增補萬病回春》，令嶺營刊板，允之。 又請各陵、殿造果油清加磨鍊，允之。 同義禁李成中曰：“谷山前府使兪彥國，居中罷職後，以其父病呈由狀仍發行， 則道臣狀請其擅離之罪，今方自金吾請拿，而聞其父病終不救，孝理之政，似有矜念之道矣。” 在魯曰：“兼營將守令，雖有面看交代之規，此不過文法之罪，而既遭其親喪，似當分揀矣。” 上曰：“分揀。” 在魯曰：“舉條之下備局者，左相以草記回啓，而未及書入者四件。 其一，曾因京畿御史鄭弘淳所啓， 津船體大行遲，令廟堂區劃事，有變通之命矣。 近來造船，異於前制云，請置之。” 上曰：“唯。” 在魯曰：“其二，曾因兵判金尙星所啓，武弁中雖未經守令，若虞候則</p>

“비국(備局)에 내린 거행 조건(舉行條件)에 대하여 좌상(左相)이 초기(草記)로 회계(回啓)하였습니디마는, 미처 써 들이지 못한 것이 네 건입니다. 그 첫째는 일찍이 경기 어사(京畿御史) 정홍순(鄭弘淳)의 아된 바로 인하여 나룻배의 몸집이 커서 가는 것이 더디므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구획(區劃)하게 하는 일인데, 변통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근래는 배를 만드는 것이 전의 제도와 다르다 하니, 청컨대 버려두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그 둘째는 일찍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상성(金尙星)의 아된 바로 인하여 무변(武弁) 가운데에서 비록 수령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만약 우후(虞候)를 지냈으면 마땅히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해야 한다는 일인데, 의논하여 처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근래 무변이 적체된 것은 비록 매우 민망스럽기는 하나, 한 번 우후를 지낸 것을 곧 이력으로 삼는다면 관제(官制)의 변통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우후 가운데에서 수령 한두 자리를 조용(調用)하라는 일로 이제 막 특별히 하교하여 신칙(申飭)하셨으니, 청컨대 버려두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이 일은 과연 어떠한가?”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무변은 본디 수령을 지내고 당상(堂上)에 오르는 법이 없었으므로 명무(名武)라고 칭하는 자는 수년이 못되어 당상에 올랐으니 그 갑자기 승진하는 것이 제한이 없었거니와, 중간에 변통하여 반드시 수령을 지내야 승자(陞資)하게 한 것은 대개 조금씩 벼슬을 닦는 것을 누르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령과 우후는 같은 외임(外任)이므로 전에 아된 바에 의하여 정식(定式)하여도 안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當令依例施行事，有議處之命矣。近來武弁積滯，雖甚可悶，而一經虞候，仍作履歷，則係是官制變通，且虞候中守令一二窠調用事，纔有特教申飭，請置之。”上曰：“此事果何如？”在魯曰：“在昔武弁元無經守令陞堂上之法，故稱以名武者，未數年陞堂上，其驟進無限節矣。中間變通，必經守令，乃得陞資，蓋出於抑躁競之意也。臣意則守令、虞候同是外任，依前所達定式，未爲不可矣。”上曰：“唯。”在魯曰：“其三，曾因司直金聖應所啓，軍器寺別破陣所減之數，變通爲請，而以自京募入加定事命下矣。本寺別破陣既減額，而又不給代，則元軍之難支，勢所固然，請以守禦廳標下軍之革罷者，抄擇定給。”上曰：“諸臣之意何如？”禮曹判書洪鳳漢曰：“軍器寺別破陣，庚午減額之後，不免苟簡，至有此自京加定之請，而都下小民，除軍兵、吏隸，無無身役者，今若充定收布，民弊必多矣。臣意則軍兵加充之事，恐不可輕許矣。”上曰：“置之。”在魯曰：“其四，曾因均稅使李訥所啓，湖南松田所在之地，松陰所被及松子所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p> <p>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그 셋째는 일찍이 사직(司直) 김성응(金聖應)이 아뢰어 바로 인하여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을 줄인 수를 변통하기를 청한 것인데, 서울에서 모아 들여 더 배정하라는 일로 명하(命下)하셨습니다. 본시(本寺)의 별파진은 이미 액수를 줄였는데 또 급대(給代)하지 않으면 원군(元軍)이 지탱하기 어려운 것은 형세가 본디 그러할 것이니, 청컨대 혁파된 수어청(守禦廳)의 표하군(標下軍) 중에서 가려서 배정하여 주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의 뜻은 어떠한가?”</p> <p>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군기시의 별파진은 경오년(12929)에 액수를 줄인 뒤로 구차함을 면하지 못하므로 서울에서 더 배정하기를 청하는 일까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도하(都下)의 소민(小民)은 군병(軍兵)·이례(吏隸)를 제외하고는 신역(身役)이 없는 자가 없으니, 이제 만약 충정(充定)하여 베[布]를 걷는다면 민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병을 더 충정하는 일은 쉽사리 허락할 수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버려두라.”</p> <p>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그 넷째는 일찍이 균역사(均役使) 이후(李耆)가 아뢰어 바로 인하여 호남의 송전(松田)이 있는 곳의 소나무 그늘에 덮이거나 솔방울이 떨어지는 곳은 장적(帳籍)에 등록된 논밭이 묵는 것이 아까우므로 다시 경계를 정하는 일인데, 변통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각도(各道)의 송전의 정해진 경계 밖의 장적에</p>	<p>落之處，帳付田畝，陳荒可惜，更爲定界事，有變通之命矣。 各道松田定界外帳付良田，混入陳荒之弊，前後申飭，不啻嚴明，而丁卯年間，亦自本司別遣郎廳，湖南松田逐處摘奸後，禁標外量付田之陳荒者，一竝還起事，覆啓分付矣。 朝令之下，不能着實舉行，弊復如前，事極駭然，請令本道道臣，往復左右帥臣查報。” 上曰：“唯。”</p>
--	---	--



	<p>등록된 양전(良田)이 섞여 들어가 목은 폐단은 전후에 신칙한 것이 엄명할 뿐 아니라 정묘년(1293) 사이에도 또한 본사(本司)에서 낭청(郎廳)을 따로 보내어 호남의 송전을 곳곳마다 적간(摘奸)한 뒤에 금표(禁標) 밖의 양안(量案)에 등록된 논밭으로서 목은 것을 한결같이 모두 도로 일구라는 일로 복계(覆啓)하여 분부하였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내려져도 착실히 거행하지 못하여 폐단이 다시 전과 같아진 것은 일이 매우 놀라우니, 청컨대 본도(本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좌도(左道)·우도(右道)의 수신(帥臣)에게 왕래하여 살펴서 신보(申報)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p> <p>하였다.</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2월 3일(계미) 1번째기사 반궁에서 선비를 시험하다</p>	<p>반궁(泮宮)12984) 에서 황감(黃柑)을 나누어 주고 선비를 시험하였다. 으뜸을 차지한 진사(進士) 이명운(李溟運)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를 명하였다.</p>	<p>癸未/頒柑試士于泮宮， 居首進士李溟運， 命直赴殿試。</p>
<p>영조 80권, 29년 (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2월 8일(무자) 1번째기사 좌의정 이천보가 감선하라는 하교를 거두기를 청하다</p>	<p>도감 당상(都監堂上)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지사(知事) 원경하(元景夏)도 같이 입시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찬선(饌膳)을 줄이라는 하교를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신년(1298) 에는 비 때문에 찬선을 줄였거니와, 올해에는 날씨가 따듯하기 때문에 찬선을 줄이니, 조금도 못 신하에게 분개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p> <p>하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상성(金尙星)이 말하기를,</p>	<p>○戊子/命都監堂上入侍， 知事元景夏同入。 左議政李天輔請還收減膳之教， 上曰：“戊申以雨減膳， 今年以日暖減膳， 非毫分有慨於群下矣。” 禮曹判書金尙星曰：“聖意所在， 臣固知之， 而亦豈敢空過明年也？” 上曰：“卿等聞紅犀帶事乎？ 太祖賜戶長於癸酉年， 而今年癸酉奇矣。” 景夏曰：“臣未之聞矣。 安東權太師廟， 亦有犀帶， 戶長</p>

	<p>“성 의(聖意)가 있는 바를 신이 진실로 압니다마는, 또한 어찌 감히 내년을 헛되이 넘길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경들은 홍서대(紅犀帶)의 일을 들었는가? 태조(太祖)께서 계유년(1299)에 호장(戶長)에게 내리셨는데, 올해가 계유년이니 기이하다.”</p> <p>하매, 원경하가 말하기를,</p> <p>“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안동(安東)의 권태사(權太師)의 사당에도 또한 서대(犀帶)가 있는데, 호장이 이것을 띠고 제사지낸다 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러한가?”</p> <p>하매, 원경하가 말하기를,</p> <p>“경주(慶州)의 옥적(玉簏)도 또한 기이합니다. 조령(鳥嶺)을 넘으면 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합니다.”</p> <p>하였다.</p>	<p>帶此而行祭云矣。” 上曰：“然乎。” 景夏曰：“慶州玉簏，亦奇矣。踰鳥嶺則簏聲不出云矣。”</p>
영조 80권, 29년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도제조(都提調) 이천보(李天輔)에게	○內局入侍。 上謂都提調李天輔曰：

<p>(1753 계유 / 청 건륭 (乾隆) 18년) 12월 17 일(정유) 3번째기사 삼상과 왜역의 사체를 살펴 아뢰게 하다</p>	<p>말하기를, “이이장(李彝章)에게 영백(嶺伯)을 제수할 때에 경이 아뢴 것이 있거니와, 삼상(蔘商)에게는 일률(一律)을 쓰고서야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이장이 관직을 옮긴 뒤에 동래(東萊)의 삼 값이 도로 올랐다 한다.”</p> <p>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이이장이 내백(萊伯)에서 갈린 뒤에 삼 값이 곧 올랐다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있을 폐단을 알 만하다. 삼상이 이러하니, 왜역(倭譯)도 알 만하다. 하치않은 삼상이 기강을 업신여기고 한 내백이 갈림으로 인하여 제 마음대로 조종하니, 징려(懲勵)하는 도리로서는 마땅히 엄히 살펴서 정상을 알아내어 내부(萊府)로 압송하여 경상(境上)에서 처형하여 저들로 하여금 나라에 기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할 것인데, 대사(大事)가 앞으로 있을 것이므로 지금은 비록 심분 참작할지라도, 이 뒤에 다시 예전 버릇대로 하면 삼상과 왜역에게 빨리 일률을 시행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미리 분부하여 법을 범하지 말게 하고 또한 도신(道臣)과 내백으로 하여금 엄히 살펴서 아뢰게 하라.”</p> <p>하였다.</p>	<p>“李彝章除嶺伯時，卿有所陳矣，蔘商用一律，然後國可爲國矣。彝章移職之後，東萊蔘價還高云矣。”仍教曰：“李彝章遞萊伯後，蔘價旋高云。以此推之，來頭之弊可知。蔘商若此，倭譯可知。么磨蔘商，不有紀綱，因一萊伯之遞，任自操縱，其在懲勵之道，當嚴查求得，押送萊府，正法境上，使彼人曉然知國有紀綱，而大事當前，故今雖十分參酌，此後若復踵前習，蔘商、倭譯亟施一律，斷不饒貸。以此預爲分付，罔令犯法，亦令道臣、萊伯，嚴察以聞。”</p>
<p>영조 81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1월 2일 (임자) 1번째기사 경조에 명하여 우금을</p>	<p>경조(京兆)에 명하여 우금(牛禁)을 늦추게 하였다.</p>	<p>壬子/命京兆，弛牛禁</p>

늦추다	<p>영남 이정사(嶺南釐正使) 민백상(閔百祥)이 복명(復命)하니, 임금(上)이 소견(召見)하였다. 민백상이 폐단을 조목조목 아뢰었는데, 광전조(藿田條)에 이르러 아뢰기를,</p> <p>“균역청에 광전세(藿田稅)가 있는데, 근래 수령이 균역청에 광전(藿錢)을 미리 바치고 백성을 시켜 미역[藿]을 베어 자기를 이롭게 하므로, 백성이 그 폐단을 견디지 못하여 다들 값을 늘려 균역청에 바치고 이 폐단을 고치기를 바랍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미역에도 세가 있는가? 그 정상이 불쌍한데, 더구나 값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위를 덜고 아래를 보태는 정사(政事)로서는 예전대로 두어야 하겠다.”</p> <p>하자, 균역청 당상 홍봉한(洪鳳漢)이 자못 고집하였다. 민백상이 말하기를,</p> <p>“고성(固城)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균역청의 세는 90냥에 지나지 않는데, 수령이 미역을 사서 생기는 이익은 많아서 2백 냥이나 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다시 값을 늘리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 민백상이 또 사노비(寺奴婢)의 폐단을 말하니, 비국(備局)에 명하여</p>	<p>○甲戌/嶺南釐正使閔百祥復命， 上召見之。 百祥條陳弊瘼， 至藿田條， 奏曰：“均廳有藿田稅， 近來守令預納藿錢於均廳， 使民刈藿以利己， 民不堪其弊， 皆願增價納均廳而革此弊矣。” 上曰：“藿亦有稅乎？ 其情可矜， 況可增價乎？ 其在損上益下之政， 可仍其舊。” 均堂洪鳳漢頗持之。 百祥曰：“雖以固城一邑言之， 均廳之稅不過九十兩， 而守令買藿之利， 多至二百兩。” 上曰：“勿復增價可也。” 百祥又言寺奴婢之弊， 命備局稟處。 吏曹判書申晚， 以北道甲山、富寧爲文武交差之窠， 而武臣淹滯， 請勿拘格例， 差送武臣， 上許之。 又教曰：“嶺南既釐正， 湖南、湖西當及時差遣， 卿等試薦之。” 鳳漢曰：“李成中可送湖南， 李益輔可送湖西。” 上許之。 先以李成中爲湖南釐正使。</p>
-----	---	---

	<p>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조 판서 신만(申晩)이, 북도(北道)의 갑산(甲山)·부령(富寧)은 문관과 무관을 번갈아 차출하는 자리이나 무신이 엄체(淹滯)되었다 하여 격례(格例)에 얽매이지 말고 무신을 차출하여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휴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영남은 이미 이정하였으나,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에도 마땅히 제때에 차출하여 보내야 하겠으니, 경들이 천거해 보라.”</p> <p>하자, 홍봉한이 말하기를,</p> <p>“이성중(李成中)은 호남에 보낼 만하고 이익보(李益輔)는 호서에 보낼 만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휴하였다. 먼저 이성중을 호남 이정사로 삼았다.</p>	
<p>영조 81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1월 28일(무인) 1번째기사 태학의 거재 유생이 권당하다</p>	<p>태학(太學)의 거재 유생(居齋儒生)이 반례(泮隸)가 야금(夜禁)을 범하였다가 금영(禁營)에서 곤장을 맞기에까지 이르렀다 하여 권당(捲堂)하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임금이 대사성에게 명하여 들어가도록 권하니, 반유(泮儒)가 곧 도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효종(孝宗) 때에 태학에 은배(銀杯)를 내렸는데 사태학(賜太學)이라는 석자를 새겼다. 혹 석전제(釋奠祭)를 당하거나 상소할 때에는 깊은 밤일지라도 반례가 이 잔[杯]을 가지고 나가면 나졸(邏卒)이 감히 묻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금영의 순졸(巡卒)이 잔을 가지고 나온 반례를 잡아 그 사람을 곤장으로 때리고 그 잔을 돌려보냈으므로, 유생들이 능모(凌侮)를 받았다 하여 권당하기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그 대장(大將)을 중추(重推)하라고 명하였다.</p>	<p>戊寅/太學居齋儒生，以泮隸犯夜，於禁營至於被棍，捲堂不入，上命大司成勸入，泮儒卽還入。先是孝廟朝賜銀杯於太學中，刻以賜太學三字。或值釋菜及陳疏之時，則雖深夜泮隸持杯而出，邏卒莫敢何問。至是禁營巡卒捉泮隸之持杯出者，棍其人而還其杯，諸生謂受其凌侮，至於捲堂，上命該大將重推。</p>
<p>영조 81권, 30년</p>	<p>진청(賑廳)의 쌀 2만 곡(斛)을 팔아서 경기 백성의 진자(賑資)에 보태는 것을</p>	<p>朔辛巳/命許賣賑廳米二萬斛，以補畿</p>

<p>(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2월 1일 (신사) 1번째기사 김포 군수 심영·영평 현령 이시건 등을 체차하다</p>	<p>허락하고, 파주 목사 신종하(申宗夏)에게 새서 표리(璽書表裏)를 내리고, 고양 군수 이석희(李錫禧)·교하 군수 유언탁(兪彦鐸)을 모두 승서(陞敍)하며, 김포 군수 심영(沈垓)·영평 현령(永平縣令) 이시건(李蕃建)·적성 현감(積城縣監) 이현경(李顯慶)·포천 현감 조명옥(趙明勛)·양천 현감(陽川縣監) 정찬교(鄭纘僑)·개성 경력(開城經歷) 이인호(李仁好)를 모두 체개(遞改)하라고 명하였다. 심홀사(審恤使) 한광조(韓光肇)가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p>	<p>民賑資， 賜坡州牧使申宗夏璽書表裏， 高陽郡守李錫禧、河郡守兪彦鐸並陞敍， 金浦郡守沈垓、永平縣令李蕃建、積城縣監李顯慶、抱川縣監趙明勛、陽川縣監鄭纘僑、開城經歷李仁好並遞改。 因審恤使韓光肇啓也。</p>
<p>영조 81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2월 5일 (을유) 2번째기사 호남 이정사 이성중·영남 이정사 민백상을 소견하다</p>	<p>임금이 호남 이정사 이성중(李成中)·영남 이정사 민백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이성중에게 말하기를, “호남의 일을 모두 경에게 맡겼으니, 나는 근심할 것이 없다.” 하고, 민백상에게 말하기를, “경의 서계(書啓) 가운데에 있는 법을 범한 수령은 이미 엄히 처치하였으니, 어찌 징계만 있고 권장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경은 다시 착한 자를 아뢰라.” 하매, 민백상이 말하기를, “창원 부사 정익제(鄭翼濟)는 해세(海稅)에 대하여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조금도 손댄 것이 없고, 거창 부사 남학우(南鶴羽)는 치적(治績)이 한 도(道)의 으뜸입니다.” 하니, 임금이 정익제에게 숙마(熟馬)를 내리라고 명하였다. 민백상이 전복을 따는 어려움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上召見湖南釐正使李成中、嶺南釐正使閔百祥。 上謂成中曰：“湖南事全屬於卿， 予無憂矣。” 謂百祥曰：“卿之書啓中犯法守令既嚴處， 則豈可有懲無勸？ 卿其更陳其善者。” 百祥曰：“昌原府使鄭翼濟， 於海稅畏之如虎， 無一毫犯手， 居昌府使南鶴羽， 治績爲一道最。” 上命賜翼濟熟馬。 百祥陳採鮓之難， 上曰：“聶夷中詩曰， ‘誰知盤中食， 粒粒皆辛苦。’ 一箇生鮓， 亦浦民之辛苦也， 亦覽崔岳取鮓事， 又聞釐正使所奏， 此時豈忍食鮓？” 仍令內局停封。 岳以嶺邑守令， 廉價取鮓而被罪者也。</p>

	<p>섭이중(聶夷中)13011) 의 시(詩)에 ‘소반의 음식 알알이 다 고생한 것인 줄 누가 아랴.[誰知盤中食粒粒皆辛苦]’ 하였다. 한 개의 날전복도 포민(浦民)이 고생한 것인데, 최암(崔岳)이 전복을 가져간 일도 보았고 또 이정사가 아된 것을 들었으니, 이때에 어찌 차마 전복을 먹겠는가?”</p> <p>하고, 이어서 내국(內局)으로 하여금 봉진(封進)을 멈추게 하였다. 최암은 영남 고을의 수령으로서 짝값으로 전복을 가져가서 죄받은 자이다.</p>	
<p>영조 81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2월 8일 (무자) 1번째기사 경기 감사 김상익과 승지 조명정이 진구에 관해 아뢰다</p>	<p>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상익(金尙翼)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신이 삼가 듣건대, 경기좌도 심휙사가 도내(道內)의 분진(分賑)하는 일 때문에 논주(論奏)한 것이 많이 있는데, 경기 백성을 구제하지 못할세라 매우 염려하여 신을 위해 대신 괴로워하였다 합니다. 가령 신이 면대하여 아뢰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마는, 그 한두 가지 논열한 것은 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졸(迂拙)한 소견에는 전혀 살릴 방법이 없어서 늘 생각하기를 흉년에 진구(賑救)를 의논하는 것은 폐기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근래 백급(白給)이라는 명색이 거의 제한이 없으니, 해마다 이어 가기 어려울 걱정이 있을 뿐더러 은혜가 다하면 업신여기게 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재해를 입은 상황을 깊이 헤아리고 굶주린 사람을 정밀히 뽑아 덜 급한 자는 조곡(糶穀)을 주고 급한 자는 진곡(賑穀)을 주어 분배하고 살릴 방법을 세워 쇠약하고 수척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신이 수령을 엄히 경계하여 정밀히 뽑는 데에 힘쓰게 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소견이 마침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듣건대, 진청(賑廳)의 쌀 3만 석을 받아 낸 뒤에 받은 각 고을에 나누어 주고 받은 아직 구획(區劃)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합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진미(賑米)를 획급(劃給)한 것은 1만 석에 지나지 않는데, 가장 심한 곳과 그 다음으로 심한 곳을 물론하고 여섯 역(驛)과 다섯 진(鎭)에</p>	<p>戊子/京畿監司金尙翼上書, 略曰:</p> <p>臣伏聞左道審恤使, 以道內分賑事, 多有論奏, 而深慮畿民之不能活濟, 爲臣代悶云。 假使臣面陳, 亦何加此, 第其一二論列者, 與臣意有異。 迂拙之見, 全無活法, 常以爲荒歲議賑, 雖是不可廢者, 而近來白給名色, 殆無限節, 不但有嗣歲難繼之患, 亦恐歸恩竭易慢之弊。 故深量災形, 精抄飢口, 緩者付糶, 急者付賑, 分排接濟, 使不捐瘠則足矣。 臣之嚴飭守宰, 務主精簡者, 迷見適然耳。 又聞以賑廳米三萬石受出之後, 一半則分俵各邑, 一半則尙無區劃爲言云。 當初朝家之劃給賑米者, 不過一萬石, 無論尤甚之次, 六驛、五鎭, 隨其大小參酌分俵, 所餘者只有一千餘石, 當待春巡欲爲親審加</p>

그 크고 작음에 따라 참작하여 나누었고, 남은 것은 1천여 석이 있을 뿐인데 봄 순행(巡行) 때가 되거든 친히 살펴서 더 나누어 주려 합니다. 대개 입본(立本)하고 전매(轉賣)하는 사이에도 허다히 견제하는 꼬투리가 없지 않으므로 각 고을에서 이것을 어렵게 여겨 아직 받아 낸 것이 없는 것이고, 진곡을 한꺼번에 나누어 주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신이 비록 쓰기를 아까워할지라도 어찌 차마 굶주린 백성의 입 안의 물건을 계교하여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오직 그 피재(被災)에는 천심(淺深)이 있고 설진(設賑)에는 완급(緩急)이 있으므로 경중(輕重)과 활협(闊狹)에도 절로 한 권형(權衡)이 있으니, 이것으로 신을 흠잡는 것은 그 본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절미(租折米)가 거의 무실(無實)하다.’ 한 것으로 말하면 이것은 실로 지난 가을 새로 받아들인 것이 정실(精實)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고, 6두(斗)의 절미(折米)는 불변의 항식(恒式)에 관계되니, 마음대로 가감하는 것은 뒷 폐단에 관계됩니다. 장(壯)·노(老)·약(弱)의 수를 헤아려 진곡을 나누어 주는 데에도 전부터 내려오는 진법(賑法)이 있는데, 더 주는 길을 한번 열면 뒤에 반드시 관례가 될 것입니다. 조금 해가 길어질 때를 기다려서 임시 방편으로 합당한 정사(政事)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신의 본의가 대개 절로 이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조명정(趙明鼎)도 상서하기를,

“지금 김상익의 서본(書本)을 보니 신이 접매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을 끌어 대어 안정하기 어려운 꼬투리로 삼았는데, 신은 참으로 의혹합니다. 신이 봉명(奉命)한 날에 곧 도신(道臣)을 보고 진곡에 관하여 말이 미치자, 도신이 ‘국가에서 획급한 피곡(皮穀)이 3만 석인데 이미 나누어 준 것은 1만 3천 석이니 남은 것이 아직 1만 7천 석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다시는 진곡을 염려하지 않았는데, 여러 고을을 잇달아 다니게 되어서는 도로에서

俵。而蓋立本轉賣之間，亦不無許多掣肘之端，各邑以此爲難，姑無受出者，而至於賑穀之不爲一時分俵，臣雖惜費，豈忍計較於飢民口吻中物而然哉？惟其被災有淺深，設賑有緩急，輕重闊狹，自有一箇權衡，則以此病臣者，恐未詳其本意。而至於‘租折米之近於無實’云者，此實出於昨秋新捧之不能精實，而六斗折米，係是不易之恒式，則擅自加減，有關後弊。壯、老、弱之計口分賑，亦有流來賑法，一開加給之路，後必爲例。稍待日長之時，宜有權宜之政，故臣之本意，蓋自如此。

趙明鼎亦上書曰：

卽見金尙翼書本，則以臣向日筵奏，引作難安之端，臣實訝惑。臣於奉命之日，卽見道臣，語及賑穀，道臣以‘朝家所劃皮穀爲三萬石，而已分俵者一萬三千石，餘者尙可爲一萬七千石’云。故臣不復以賑穀爲慮，及其迤歷列邑，目見飢民之呼號道路者，太半不入於分賑中，朝暮且死，每對守令，詰問其所



	<p>부르짖는 굶주린 백성이 태반은 진곡을 나누어 준 가운데에 들지 않아서 아침저녁 사이에 또한 죽게 된 것을 직접 보고 번번이 수령을 대하여 그 까닭을 힐문하면, ‘순영(巡營)에서 나누어 준 곡식은 수백 석뿐이므로 굶주린 사람을 뽑은 숫자에 이것으로 한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들어가야 할 것인데 빠진 자가 절로 많아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미 굶주린 백성을 돌보는 것을 직책으로 삼았으니 차마 남의 고난처럼 볼 수 없으므로 과연 진곡을 더 획급하라는 뜻으로 논하여 도신에게 글을 보내고 서계(書啓)에 여쭙었는데, 지금 잘못 끌어낸 것이 이릅니다. 대개 도신의 근심은 해마다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데 신은 혹 당장 쇠약하고 수척할 것을 염려한 것이며, 도신의 생각은 깊이 헤아리고 천천히 의논하려는 데에 있는데 신은 망령되게 그 늦어서 미치지 못할 것을 근심한 것이니, 이처럼 사람의 소견이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미에는 절로 정법(定法)이 있다는 것으로 말하면 과연 도신의 말과 같습니다. 신도 어찌 전혀 몰라서 설진(設賑)이라 이름하면서 반이 넘는 빈 껍데기의 피곡(皮穀)으로 수십 만에 가까운 굶주린 백성을 살리려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왕세자가 모두 예사 비답을 내렸다.</p>	<p>以，則以爲‘巡營所依之穀，只是幾百石，抄飢之數，不得不以此爲限，應入而見漏者，自不免夥然’云。臣旣以恤飢爲責，則不忍越視，果以加劃賑給之意，論移於道臣，陳稟於書啓，而今之過引如此。蓋道臣之憂，在於嗣歲難繼，而臣則或慮其目前捐瘠，道臣之意在於深量徐議，而臣則妄憂其緩不及事，若是乎人見之不能同也。至於折米之自有定法，果如道臣之言。臣亦豈全昧，而名以設賑，以過半空穀之皮穀，欲活累十萬近止之飢民？恐無此理。</p> <p>王世子竝賜例批。</p>
<p>영조 81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2월 13일(계사) 1번째기사 좌의정 이천보를 삭출하다</p>	<p>좌의정 이천보(李天輔)를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당초 임금이 의소묘(懿昭墓)에 거동할 때에 승지를 보내어 이천보에게 하유(下諭)하기를,</p> <p>“삼다(蔘茶)를 들다가 몸소 가려는 생각을 하였다. 벼슬이 보상(輔相) 자리에 있고 또 약원(藥院)을 겸하였으면서 오히려 성 밖에 있으니, 이제 몸소 도타이 권면하는 수밖에 무엇을 하겠는가? 내 원량(元良)에게 일러 반드시 경(卿)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이제 닷새가 되어도 이처럼 소식이 없으니, 나라를 위하여 민망스럽다. 억지로 겨우 하유하니, 경은 변연(幡然)히 마음을 돌려 내</p>	<p>癸巳/命左議政李天輔削黜。初上幸懿昭墓，遣承旨諭天輔曰：“蔘茶進御，巨懷躬臨。職在輔相，又兼藥院，而猶在城外，於今躬自敦勉之外，其何道乎？諭我元良，期於致卿，至今五日，尙此寥寥，爲國悶焉。強氣僅諭，卿其幡然，副我暮年僅諭。”天輔上辭疏，略曰：</p>

	<p>가 만년에 겨우 하유하는 것에 따르라.”</p> <p>하니, 이천보가 사직하는 소(疏)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이제 신이 지키는 것은 자신의 염우(廉隅)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거취를 중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접때 엄한 하교를 받은 것은 참으로 윤리와 의리에 관계되니, 신하로서 혹 이렇게까지 크게 어그러져도 자처(自處)할 줄 모른다면 임금과 신하 사이의 큰 의리가 남김없이 죄다 무너질 것인데, 어찌 대성인(大聖人)이 표준을 세워 세상을 격려하는 정치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정원(政院)에 하교하기를,</p> <p>“몸소 행한다는 하교를 하였는데도 상신(相臣)이 예사로 듣고 있다. 이제 거동 준비를 시킨 때를 당하여 내 허물을 알게 하였으니,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몸소 상신에게 가는 고례(古例)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p> <p>하니, 이천보가 크게 두려워하여 성 밖으로부터 들어와 금오문(金吾門) 안에 나아가 앞드려 관(冠)을 벗고 거적을 깔고서 대명(待命)하였다. 임금이 비국당상 홍봉한(洪鳳漢) 등을 불러 말하기를,</p> <p>“대신(大臣)이 나에게 유감을 품었다. 그때 지나친 하교가 있었더라도 대신이 끝내 마음을 풀지 않고, 거동 준비를 시켰다는 하교가 있어도 응연(凝然)히 움직이지 않으니, 청구(靑丘)의 신분(臣分)이 땅을 쓴듯이 없어졌다. 한률(漢律)이 있거니와, 우선 삭출하는 법을 시행하여 못 신하로 하여금 임금은 임금</p>	<p>今臣所守，非爲一身之廉隅也，亦非重一身之去就也。向來所被嚴教，實係倫、義，爲人臣者，如或放倒於此，不知所以自處，則君臣大義壞盡無餘，豈不有累於大聖人立極勵世之治乎?”</p> <p>上教于政院曰：“爲躬行之教，而相臣聽若尋常。于今當命駕，使知予過令儒臣考啓躬臨相臣之古例。”天輔皇恐，自城外進伏金吾門內，免冠席藁胥命。上召謂備局堂上洪鳳漢等曰：“大臣蘊憾於予矣。其時雖有過中之教，大臣終不開釋，至有命駕之教，而凝然不動，靑丘臣分，掃地盡矣。其有漢律，爲先施以削黜之典，使群臣知君君臣臣之義。”</p>
--	--	---

	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의리를 알게 하라.”  하였다.	
영조 81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4월 8일 (정해) 2번째기사 태묘의 하향에 쓸 향 을 전하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서 태묘(太廟)의 하향(夏享)에 쓸 향(香)을 친히 전하고, 이어서 태묘에 나아가 면복(冕服)으로 갈아 입고서 봉심(奉審)하고 희생(犧牲)·제기(祭器)를 살폈다. 또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봉심하고 이어서 옥상궁(毓祥宮)에 나아갔다가 저녁에 환궁(還宮)하였다.	上具翼善冠、袞龍袍， 親傳太廟夏享香， 仍詣太廟， 改具冕服， 奉審省牲、器。 又就永寧殿奉審， 仍詣毓祥宮， 夕還宮。
영조 81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윤4월 19일(무진) 1번째기사 연신에게 진상하는 전 복의 폐해를 이르다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진상(進上)하는 전복[鰻魚]이 날이 더우면 썩어서 입에 가까이 할 수 없다.”  하자, 대답하기를,  “이는 기강이 해이한 탓이니, 엄히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부(海夫)에게 폐해가 됨이 없겠는가? 나는 바다 속의 전복 하나하나가 다 대단히 고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내(大內)에서 자전(慈殿)께 잔치를 베풀 때와 의소(懿昭)의 입묘(入廟) 때에 전복을 쓰려 하였으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하였다.	戊辰/上謂筵臣曰：“進上鰻魚， 日熱則腐， 不堪近口矣。” 對曰：“此是紀綱解弛之致， 不可不嚴飭。” 上曰：“能無有弊於海夫乎？ 予則謂海中鰻， 箇箇皆辛苦。 故自內設酌於慈殿時， 及懿昭入廟時欲用鰻魚， 而以有弊止之也。”
영조 81권, 30년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강계(江界)에서 삼(蔘)을 사는 폐단을	上引見大臣、備堂， 詢江界買蔘之弊，

(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5월 14  
일(임진) 2번째기사  
강계에서 삼을 사는  
폐단을 묻다

물었는데, 의논들이 같지 않았다. 호조 판서 이철보(李喆輔)가 말하기를,  
 “연례(年例)로 사는 50근(斤) 중에서 15근은 감제(減除)하고 10근은 본부(本府)의 호삼(戶蔘) 중에서 대동고(大同庫)에 옮겨 주는 것을 본조(本曹)에 정식(定式)에 따라 값을 주고 가져다 쓰면 줄이는 것이 꼭 25근이 되므로 강계 백성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병조 판서 이창의(李昌誼)가 말하기를,  
 “서산(瑞山)의 관노(官奴) 성진(聖眞)이 본군(本郡)의 화약(火藥) 2백 80괴(塊)를 훔쳐 팔았으므로 본도(本道)의 장계(狀啓)가 있습니다. 《속대전(續大典)》에, ‘군기(軍器)를 훔쳐낸 자는 계품(啓稟)하여 효시(梟示)한다.’ 하고, 소주(小註)에, ‘활 30장(張), 조총(鳥銃) 3병(柄) 이하는 사형(死刑)을 감면하여 정배(定配)한다.’ 하였으나, 화약·연환(鉛丸)은 거론한 것이 없으니, 위에서 재결(裁決)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자, 임금(上)이 말하기를,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는 율(律)을 시행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이 말하기를,  
 “이번 사행(使行) 때에 시민(市民)이 으레 왜장검(倭長劍) 2병(柄)을 사서 바쳐야 하는데 1병은 겨우 4백 냥으로 샀으나 1병은 살 길이 없었고, 또 시민은 말하기를, ‘호조에 이미 통검계(通劍契)가 있는데 어찌하여 시민으로 하여

諸議不一。戶曹判書李喆輔曰：“年例所買五十斤內，十五斤則減除，十斤則以本府戶蔘中，大同庫移下者，自本曹依定式給價取用，則所減恰爲二十五斤，庶爲江民之惠。”上從之。兵曹判書李昌誼曰：“瑞山官奴聖眞，偷賣本郡火藥二百八十塊，至有本道狀啓。《續典》云；‘軍器偷出者，啓稟梟示。’而小註曰；‘弓子三十張、鳥銃三柄以下，減死定配，’火藥、鉛丸則無所舉論，惟在上裁。”上曰：“特施減死之律。”禮曹判書洪象漢曰：“今番使行，市民例買倭長劍二柄以納，而一柄則僅以四百兩買取，一柄無買得之路。且市民則以爲；‘戶曹既有通劍契，何使市民買納乎？’云矣。”上曰：“一劍價至如是多乎？不可以此貽弊市民，特給內藏倭長劍二柄，市民之重價買納者，可還給也。”吏曹判書洪啓禧曰：“守令居下者，必更除守令，經考後始許陞職，故居下而有勢者，藉此得守令，而十考十上，五考五上者，反不得更除，此甚乖當。臣謂嚴守《大典》經二年乃敍之法，雖遇赦不得蕩滌，過周年始許甄復宜矣。”上曰：

	<p>금 사서 바치게 하는가?’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하나의 검 값이 그렇게 많은가? 이 때문에 시민에게 폐해를 끼칠 수 없으니, 특별히 내장(內藏)의 왜장검 2병을 주고 시민이 비싼 값으로 사서 바친 것으로 주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p> <p>“수령(守令)으로서 하고(下考)를 받은 자는 반드시 다시 수령을 제수(除授)하여 고과(考課)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승직(陞職)을 허락하므로 하고를 받았어도 세력이 있는 자는 이것을 빙자하여 수령이 될 수 있으나, 열 번의 고과에 열 번 상고를 받거나 다섯 번의 고과에 다섯 번 상고를 받은 자는 도리어 다시 제수되지 못하니, 이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전(大典)》의 2년을 지내야 서용(敍用)한다는 법을 엄수(嚴守)하여 사유(赦宥)를 당하더라도 탕척(蕩滌)할 수 없고 주년(周年)을 지내야 비로소 다시 수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그리하라. 열 번의 고과에 열 번 상고를 받으면 내직(內職)으로 옮기는 법은 음관(蔭官)에게만 시행하고 무관(武官)에게는 시행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엄히 신칙(申飭)하라.”</p>	<p>“可。十考十上內遷之法，只行於蔭，不行於武乎？一體嚴飭。”行司直趙榮國曰：“湖南進上魚種，有營主人防納之規，故初不侵及於浦民，而今若禁斷，則不但有闕封之弊，亦恐貽濫徵之患，進上保名色四保，不宜革罷，依前仍存好矣。”上命均廳稟處。左議政李天輔曰：“前判書李箕鎮方遭母喪，而向時處分過矣。請與前大提學趙觀彬、前留守洪鳳祚并敍用。”上許之，仍問曰：“李箕鎮事親至孝云，然否？”天輔曰：“果如聖教。其母病時，至於斷指，年過七旬，而猶啜粥三年矣。”</p>
--	---	--

<p>영조 82권, 30년</p>	<p>하였다. 행 사직(行司直)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p> <p>“호남(湖南)에서 진상하는 어종(魚種)은 영주인(營主人)이 방납(防納)하는 규례가 있으므로 당초에 포민(浦民)에게 침탈(侵奪)이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 금단(禁斷)하면 봉진(封進)을 빠뜨리는 폐단이 있을 뿐이 아니라 함부로 거두는 걱정도 끼칠 듯하니, 진상보(進上保)라는 명색의 4보(保)는 혁파하지 말고 전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균역청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좌의정이 천보가 말하기를,</p> <p>“전 판서 이기진(李箕鎭)은 바야흐로 모상(母喪)을 당하였는데, 접때의 처분은 지나쳤습니다. 전 대제학 조관빈(趙觀彬)·전 유수 홍봉조(洪鳳祚)와 함께 모두 서용하소서.”</p> <p>하자, 임금이 윤희하고, 이어서 묻기를,</p> <p>“이기진은 아버이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하는데, 그러한가?”</p> <p>하니, 이천보가 말하기를,</p> <p>“과연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그 어미가 앓을 때에 손가락을 끊기까지 하였고, 나이가 칠순(七旬)을 지냈어도 3년 동안 죽을 먹었습니다.”</p> <p>하였다.</p>	<p>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월대(月臺)에서 태묘(太廟)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壬午/上親傳太廟秋享大祭香于明政殿</p>
--------------------	---	--

<p>(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7월 5일 (임오) 1번째기사 태묘의 추향 대제에 쓸 향을 전하다</p>	<p>쓸 향(香)을 친히 전하고, 이어서 태묘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았다. 임금이 처음에 친향(親享)을 명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날이 덥다 하여 도로 거두기를 힘써 청하니 윤허하고, 친히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고 드디어 환궁(還宮)하였다.</p>	<p>月臺，仍詣太廟，展謁省牲、器。上初命親享，諸臣以日熱，力請還寢，許之，親省牲器，遂還宮。</p>
<p>영조 82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 (乾隆) 19년) 7월 26일(계묘) 2번째기사 대신들이 호랑이의 포획과 환곡의 정지에 관해 아뢰다</p>	<p>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다. 이때 호환(虎患)이 더욱 심해지므로,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각 고을의 상진미(常賑米)로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 큰 호랑이는 쌀 4석(石)을, 중간 호랑이는 3석을, 작은 호랑이는 2석을 상주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상로가 또 말하기를,</p> <p>“관서(關西)에 홍수가 저서 4백여 호(戶)가 표몰(漂沒)되고 사람이 많이 빠져 죽었으니, 청컨대 경오년(13145)의 전례에 의거하여 집이 떠내려간 가호는 환곡(還穀)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탕감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참찬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p> <p>“관서에서 특별히 갖추어 창고 안에 쌓아 두었던 각등(各等)의 포목(布木)이 모두 썩어서 상하였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시가로 팔아서 은(銀)으로 바꾸어 두어 쓸데없는 것으로 쓸모있는 것을 만들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 관서 이정보(李鼎輔)가 말하기를, “살옥(殺獄)의 검시(檢屍)는 사체가 매우 중요한데, 시척(屍尺)의 길이가 같지 않아서 준거(準據)하여 믿을 수 없으니, 청컨대 시척을 고쳐서 제도(諸道)에 반포하게 하소서.”</p>	<p>王世子引接大臣、備堂。時虎患滋甚，左議政金尙魯請以各邑常賑米，賞捕虎者，大虎米四石，中虎三石，小虎二石，從之。尙魯又言：“關西大水，漂四百餘戶，人多渰死，請依庚午例漂戶還穀竝停捧，渰死者則蕩滅。”從之。左參贊趙榮國曰：“關西各等別備布木，積置庫中，舉皆腐傷，請令道臣，從市直發賣，換銀留儲，以無用而作有用。”從之。刑曹判書李鼎輔曰：“殺獄檢屍，事體至重，而屍尺長短不齊，無以準信，請改屍尺，以頒布諸道。”從之。</p>

<p>영조 82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8월 8일 (을묘) 1번째기사 도목정에 친림하여 선운하고 신중히 의망하도록 하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관풍각(觀豐閣)에 나아가 도목정(都目政)에 친림하였다. 이조 판서 홍계희(洪啓禧)·병조 판서 이창의(李昌誼) 등에게 말하기를,  “무신년(13148) 친정(親政) 때에 어수당(魚水堂)에 앉았었는데, 이는 곧 인묘(仁廟) 때에 지은 것으로, 명군(明君)과 현신(賢臣)이 만나고 임금과 백성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뜻을 딴 것이다. 오늘 이 당에 앉으려 하였으나 조금 멀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하니, 홍계희 등이 말하기를,  “감히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인재를 얻는 날이다. 문무(文武)는 물론이고 홍패(紅牌)를 안고서 집안에서 늙어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당(唐)나라 현종(玄宗)은 안고경(顏杲卿)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능히 대절(大節)을 세웠고, 무신년에 남연년(南延年)을 조정에서는 한낱 늙은 무인으로 여겼으나 능히 국난에 목숨을 바쳤다. 먼 지방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특별히 등용하라. 이술원(李述原)은 예전 장순(張巡)과 같은 사람인데, 그 아들 이우방(李遇芳)은 접때 수령이 되었다가 곧 하고(下考)에 놓였다. 충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벼슬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선운(宣醞)13149) 하도록 명하고 말하기를,</p>	<p>乙卯/上御觀豐閣，親臨都目政。謂吏曹判書洪啓禧、兵曹判書李昌誼等曰：“戊申親政時坐魚水堂，即仁廟朝所建，取風雲際會魚水同歡之意也。今日欲坐此堂，而以其稍遠故止之耳。”啓禧等曰：“敢不仰體聖意乎？”上曰：“今日即得人才之日也。毋論文武，抱紅牌而老死闕下者，不知爲幾人。昔唐宗不識杲卿之何狀，而能立大節，戊申南延年，朝廷視以一老武，而能殉國難。沈滯遐方之人，特爲調用。李述原即古之張巡也，其子遇芳頃爲守令，旋置下考。忠臣之子，不可不恤，更爲除職。”仍命宣醞曰：“今日宣醞，意有所在。雖徹夜到明，詳慎檢擬，以副予暮年親政之意。”</p>
--	--	--



	<p>“오늘의 선운하는 것은 뜻한 바가 있다. 비록 밤을 새워 날이 밝더라도 신중히 살펴서 의망(擬望)하여 내가 만년에 친정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82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8월 12일(기미) 4번째기사 햇불을 세우는 일도 저치미로 셈하도록 하다</p>	<p>경기 감사 이후(李聃)를 불러 묻기를, “길가에 있는 무덤과 밭곡식이 길을 닦는 가운데에 든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햇불[炬]을 세우는 일에도 저치미로 셈하여 주라고 명하였다.</p>	<p>召京畿監司李聃問曰：“人塚田穀之在路傍者，得無入於治道中乎？”仍命植炬等役，亦以儲置米計給。</p>
<p>영조 82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9월 2일(무인) 3번째기사 영동에서 바치는 약재를 감면하라고 명하다</p>	<p>임금이 긴요하지 않은 약재(藥材)로서 영동에서 바치는 것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바야흐로 본도의 상정(詳定)을 바로잡는데, 균역 당상 홍봉한(洪鳳漢)이 그 폐단을 말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p>	<p>上命減不緊藥材之自嶺東進獻者。時方釐正本道詳定，均役堂上洪鳳漢爲言其弊，有是命。</p>
<p>영조 82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9월 23일(기해) 1번째기사 부덕을 경계하기 위해 10일 동안의 감선을 행하다</p>	<p>윤음(綸音)을 내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또 더욱 쇠약해져서 기운이 갈수록 피곤해지고 마음이 갈수록 차가워지므로, 수거(修舉)해야 할 것을 수거하지 못하고 신칙해야 할 것을 신칙하지 못하니, 어찌 성탕(成湯)의 육책(六責)13164) 만할 뿐이겠는가? 한 번 대리(代理)한 뒤로 나의 책임은 오직 제사(祭祀)·용사(戎事)와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었을 따름인데, 세 계절이 이미 다 가도 막중한 사전(祀典)을 모두 몸소 행하지 못하여 희생(犧牲)이 살찌지 못하고 자성(棗盛)不潔, 其曰能飭乎? 昇平已久, 邊</p>	<p>己亥/下綸音。略曰： “噫! 予以否德，又益衰耗，氣愈憊心愈冷，可舉者不舉，可飭者不飭，奚徒成湯六責而已? 一自代理之後，在予之責，惟祀戎與用人而已，然三節已盡，莫重祀典，皆不躬將，犧牲不暉，棗盛不潔，其曰能飭乎? 昇平已久，邊</p>

	<p>盛)13165) 이 깨닫지 못하니, 신칙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 되어 변보(邊報)가 이르지 않으므로 장수는 교만하고 군졸은 게을러져서 용정(戎政)이 날로 무너지고 변방이 허술하고 군기(軍器)가 썩고 무디니, 신칙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제(經濟)의 방략(方略)을 가진 자가 한갓 집안에서 늙어가고 간성(干城)의 재주를 가진 자도 능히 알 수 없으니, 신칙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이 세 가지도 모두 능히 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나한 사람의 허물이니, 어찌 신하들을 책망하겠는가? 아! 당습(黨習)을 몇 해 동안 조제(調劑)하여 겉으로는 당이 없는 듯하나 속으로는 실로 예전 그대로이니, 한밤에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진다. 사치한 버릇이 날로 치성해져서 백성의 재물이 날로 없어지고, 온갖 일은 세월만 보내어 모든 공적이 좀스럽고, 이목(耳目)13166)은 주저하며 패초(牌招)를 어기는 것을 일삼고, 탐관 오리(貪官汚吏)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사복을 채우고, 뇌물을 쓰며 조금하듯 권세를 다투는 일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공자(孔子)가 ‘상주더라도 흠치지 않는다.’ 하지 않았는가? 전(傳)에도 ‘오순(堯舜)·결주(桀紂)를 백성이 다 따랐다.’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다 덕이 없어서 그렇게 되게 한 것이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감선(減膳)하여 스스로 삼가는 뜻을 보이겠다.”</p> <p>하였다.</p>	<p>報不至，將驕卒惰，戎政日墜，邊圉踈虞，軍器朽鈍，其曰能飭乎？蘊經濟之略者，徒老牖下，抱干城之才者，亦莫能知，其曰能飭乎？惟此三者舉皆不能，寔予一人之過，豈責諸臣乎？吁嗟！黨習幾年調劑，而外似無黨，內實依舊，中夜思之，不覺慄然。侈風日熾，民財日竭，百事玩愒，庶績養隍，耳目媵媵，惟事違牌，貪官汚吏，剝割自肥，苞苴躁競，日以益甚。子不云乎‘賞之不竊？’《傳》亦不云‘堯、舜、桀、紂，民皆從之’乎？此皆否德使之然也。自今日減膳十日，以示飭躬之意。”</p>
<p>영조 82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10월 2일(정미) 5번째기사 풍악을 벌인 무예 별감들을 형배시키다</p>	<p>무예 별감(武藝別監)들이 성밖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창기를 끼고 풍악을 벌였는데, 대신이 감선(減膳)하는 때에 행락하였다 하여 수창(首唱)한 자를 형배(刑配)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武藝別監輩，挾娼張樂於城外咫尺地，大臣以減膳時行樂，請刑配首倡者，從之。</p>
<p>영조 82권, 30년 (1754 갑술 / 청 건륭</p>	<p>이보다 앞서 임금이 관동(關東)의 상정(詳定)에 관한 일을 묻고자 하여 수령을 올려보내라는 명이 있었는데, 횡성 현감(橫城縣監) 정존겸(鄭存謙)이 차원</p>	<p>○前是，上欲問關東詳定事，有守令上送之命，而橫城縣監鄭存謙以差員上</p>

<p>(乾隆) 19년) 12월 28일(임신) 2번째기사      황성 현감 정존겸에게 관동의 상정을 하문하다</p>	<p>(差員)으로서 올라왔다. 임금의 불려서 묻기를,      “관동에 상정법을 반포하여 시행한 뒤에 백성이 과연 편리하게 여기는가?”      하자, 정존겸이 말하기를,      “근래에 삼 값은 날로 올라 가고 부럼(賦斂)은 절제가 없으므로, 백성이 지탱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거의 다 유망(流亡)하였었는데, 이번에 새로 상정한 뒤에는 각 고을의 출부(出賦)를 그 고을의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공용(公用)은 낱알이 수효를 정하여 재절(裁節)하니, 푼돈이나 뒤틀도 수령이 마음대로 그 사이에서 가감할 수 없으며, 부족한 수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돈 1만 7천 8백 50여 냥을 획급(劃給)하여 민폐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다 편리하게 여겨서 오로지 오래 시행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돌아가거든 관동 백성에게, ‘우리 임금이 영구히 준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라.”      하였다. 정존겸이 상정의 홀기(笏記)를 읽어 아뢰었는데, 제3조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인삼 1냥 값을 이제 60냥으로 규례를 정하였으나, 이 뒤로 인삼이 혹 비싸지면 1백 냥에 이르도록 많아질 것이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來。 上召問曰：“關東詳定法頒行後，民果便之否乎？”存謙曰：“近來蔘價日增，賦斂無節，民不支堪，流亡殆盡，今番新詳定後，各邑出賦，隨其邑規而均之，各樣公用，一一定數而裁節之，雖分錢升米，守令不得擅自加減於其間，不足之數則朝家劃給各樣錢一萬七千八百五十餘兩，以防民瘼。 故民皆便之，惟恐行之不久也。”上曰：“汝歸語東民曰，‘吾王將永久遵行，汝等勿慮也。’”存謙讀奏詳定笏記，至第三條，上曰：“人蔘一兩價，今以六十兩爲定規，而此後人蔘若或騰貴，則將至於百兩之多，豈不可念耶？”均堂洪鳳漢曰：“今此詳定加減不得，此所以爲民除弊也。 蔘價若或騰貴，則惠廳當從長區劃。 豈可加徵於民乎？”存謙又言還穀多人民少之弊，上命廟堂稟處。      臣謹按關東蔘貢，爲一道之巨弊。 蓋地之產蔘有限，世之用蔘無節，則其勢不得不日踊而歲貴。 是故朝家劃給之價，自六十而至於八十。 然朝家所劃止於八十，而民間所斂，則轉加而爲百</p>
--	--	---

	<p>하니, 균역 당상(均役堂上)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이번 상정에 가감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없애려는 까닭입니다. 삼 값이 비싸지면 혜청에서 마땅히 좋은 데 따라 구획할 것입니다. 어찌 백성에게서 더 거둘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정존겸이 또 환곡(還穀)은 많은데 백성은 적은 폐단을 말하니, 임금이 묘당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관동의 삼공(蔘貢)은 한 도의 큰 폐단이였다. 대개 땅에서 생산되는 삼은 한정이 있는데, 세상에서 삼을 쓰는 것은 절제가 없어서 그 형세가 날로 비싸지고 해마다 비싸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획급하는 값이 60냥에서 80냥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획급하는 것은 80냥에서 그쳤는데, 민간에서 거두는 것은 점점 더하여 1백 20냥이 되고, 또 점점 더하여 1백 5, 60냥이 되었다. 성상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관동 백성이 대부분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날마다 묘당에 호소하였으나, 묘당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버려둘 뿐이었다. 그렇다면 성상께서 뒷날 비싸질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은 대성인(大聖人)의 장구한 계모(計謀)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일을 맡은 신하는 오직 그 재능을 자랑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니, 아! 변변치 못한 사람이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p>	<p>二十，又轉加而爲百五六十。至于上之末年，關東之民舉皆倒懸，日訴廟堂，而廟堂亦末之何袖手而已。然則上之爲日後騰貴之慮者，有以見大聖人長遠之謨，而乃任事之臣，惟恐其能之不銜，謂可以永保無弊，嗚呼！斗筭之人，可與爲國也哉？</p>
<p>영조 83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2월 6일</p>	<p>예조에서 아뢰기를,</p> <p>“이번 광릉(光陵)에 거동할 때에 공상(供上)하는 다담(茶啖) 등의 일은 청컨대</p>	<p>禮曹啓言：“今此光陵幸行時供上茶啖等事，請依丙辰年例，自京司舉行。”上允之。</p>

<p>(경술) 2번째기사 예조의 건의로 광릉 거동시의 다담은 경사 에서 거행토록 하다</p>	<p>병진년13261) 의 예에 의거 경사(京司)에서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영조 83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2월 24 일(무진) 2번째기사 김항·개봉·임천대 등의 공초 내용</p>	<p>김항(金沆)을 신문하니, 김항이 공초하기를,  “경오년13283) 에 신이 임국훈·윤광철·이효식·임천대 5인과 계(稷)를 만들었는데, 사인(士人)은 전곡(錢穀)을 길거(拮据)13284)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 두 사람을 그 계중(稷中)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하므로, 김항과 개봉(介奉)을 면질(面質)하게 하였는데 개봉은 바로 윤지(尹志)의 종이다. 개봉이 말하기를,  “네가 이효식·임천대와 계회(稷會)를 핑계대고 밤마다 와서 모였으며 금년 정월의 어느날 밤에도 와서 모였고 밤중이 되어서야 돌아갔는데, 나주의 온 성중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하였다. 김항과 임천대를 면질하게 하니, 임천대가 말하기를,  “지난 12월 소를 잡았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시려고 나간 뒤에 네가 내게 말하기를, ‘너와 내가 윤지평(尹持平)의 집안과 모두 친하다고 하여 윤지가 자주 긴요하지 않은 말로 내게 말을 하였는데, 그 일 또한 해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야흐로 모집하는데 너도 몇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을 얻는 방법은 실제로 다른 데에 있지 않으니 계를 만든다고 핑계대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하기에, 내가 ‘구하기는 진실로 어렵지만 시험삼</p>	<p>問金沆，沆供：“庚午年，臣與林國薰、尹光哲、李孝植、林天大五人作稷，士人則不能拮据錢穀，故以官吏二人，入其中矣。”沆與介奉面質，介奉卽志奴子也。介奉曰：“汝與李孝植、林天大，稱以稷會，連夜來會，今年正月夜，亦來會，夜分而歸，羅州一城中人，皆以爲其相親殊常矣。”沆與天大面質，天大曰：“去十二月屠牛時，諸人欲飲酒出去後，汝謂我‘以汝與我，皆親於尹持平家，而志頻頻以不緊語語我，其事亦不妨，故我方募人，而汝亦能得幾人耶？得人之道，實不在他，稱結稷，聚多人好矣。’我云‘求之固難，而試當求募矣。’”沆曰：“屠牛事果有之，而其日大風雪，何可爲此言乎？”天大曰：“其時汝豈不謂我‘以尹持平，以無端事久謫，他人皆解謫，而彼獨未解可矜。其所言頗無妨，而舉事不可獨爲，吾方求得人，汝亦求得爲可’云乎？”沆曰：“設有是事，酒會中豈爲此</p>

	<p>아 모집해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였다.”</p> <p>하니, 김향이 말하기를,</p> <p>“소를 잡은 일은 정말로 있었지만 그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내렸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p> <p>하였다. 임천대가 말하기를,</p> <p>“그때에 네가 나에게 ‘윤지평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 일로 오래도록 귀양살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귀양에서 풀렸지만 그만 유독 풀려나지 않으니 가엾게 여길 만하다. 그가 말하는 바는 자못 방해되지 않지만 거사(學事)는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내가 바야흐로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너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p> <p>하니, 김향이 말하기를,</p> <p>“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려고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을 하겠는가?”</p> <p>하였다. 임천대가 말하기를,</p> <p>“윤지가 항상 나에게 말하기를, ‘너도 모름지기 사람을 모아 김 생원계(金生員契)처럼 하라.’고 하였는데, 경오년에 계(稷)를 만든 것은 처음에는 돈을 늘리는 데 불과했을 뿐이며, 작년 뒤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의논이 있었는데 네</p>	<p>言乎?” 天大曰: “志常爲我言, ‘汝亦須得人, 如金生員契’, 而庚午結稷, 始不過殖錢而已, 自昨年後, 始有此議, 汝豈可謂不知乎?” 刑推沆與天大, 又面質, 天大曰: “汝之夜不來志家云者, 千萬無據, 正月喫牛肉之日, 獨非夜會耶?” 又曰: “去臘月, 汝與孝植夜會志家, 仍與同歸, 非但夜往, 晝亦無日不往, 志常處於內舍廊, 汝往則必引入。從容一日吾欲尋汝, 則汝在於志之內舍廊, 夜或逢汝問之, 則以爲自尹持平家來矣。” 沆曰: “稷會不過一年二次, 以此謂我常往乎?” 天大曰: “稷會二次, 是常往之事, 而其外又不知其幾次往來矣。” 沆語屈。加刑肆惡, 不着名, 書刑殺二字, 語極獯悖, 尋物故。兩司啓請拏籍, 上命依亂言律, 只籍產。</p>
--	---	---

가 어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였다. 김항과 임천대를 형추(刑推)하고 또 면질하게 하니, 임천대가 말하기를,

“네가 밤에 윤지의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으며, 정월에 쇠고기를 먹던 날 혼자 밤에 모이지 않았던가?”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 선달에 네가 이효식과 밤에 윤지의 집에 모였다가 인해서 함께 돌아갔으며, 밤에 갔을 뿐만 아니고 낮에도 가지 않은 날이 없었고, 윤지는 늘 내사랑(內舍廊)에 거쳐하였는데, 네가 가면 반드시 조용히 끌어들였었다. 어느날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하니, 네가 윤지의 내사랑에 있기에 밤에 더러 만나 물으면 윤지평의 집에서 왔다고 하였었다.”

하였다. 김항이 말하기를,

“계회(稷會)는 1년에 두차례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늘 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자, 임천대가 말하기를,

“두 차례의 계회에는 늘 가는 일이고, 그 밖에 또 몇 차례나 왕래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p>하였는데, 김항이 말을 못하였다. 형신을 가하자 악한 성질을 마구 부려 이름을 붙일 수 없어 ‘형살(刑殺)’ 두 글자를 썼는데 말이 매우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더니 얼마 있다가 물고(物故)되었다. 양사(兩司)에서 노적(孥籍)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난언율(亂言律)에 의거하여 단지 재산만 적몰(籍沒)하도록 명하였다.</p>	
<p>영조 83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3월 18 일(신묘) 3번째기사 이봉령을 강진현으로 손자 이금성을 진도군으로 귀양보내다</p>	<p>이봉령(李鳳齡)을 강진현으로 귀양을 보내고 이봉령의 손자 이금성(李金聲)을 진도군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봉령이 당시 장릉 참봉(章陵參奉)에 임명되어 꿩과 노루를 잡으려고 포수(砲手)를 시켜 능소(陵所) 근처에서 사냥을 하게 하였었는데, 그의 손자 이금성은 열세 살 난 동자(童子)로, 포수에게서 화승(火繩)을 얻어 능상(陵上)에서 장난하다가 이어서 실화(失火)하였다. 사실이 알려지자 임금이 친히 이금성을 신문한 뒤에 일률(一律)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않은가를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였는데, 영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와 판중추부사 유척기(兪拓基)는 말하기를,</p> <p>“나이 10세 가 넘었으니, 국가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차등이 없어야 할 듯 합니다.”</p> <p>하고,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는 말하기를,</p> <p>“만약 나이가 차지 않았다는 것으로 성상께서 특별히 하교하시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겠지만, 아래에서 우리러 청할 일은 아닙니다.”</p> <p>하니, 하교하기를,</p>	<p>○配李鳳齡于康津縣，配鳳齡孫金聲于珍島郡。鳳齡時任章陵參奉，爲求雉獐，使砲手獵於陵所近地，其孫金聲以十三歲童子，求得火繩於砲手，遊戲於陵上，仍致失火。事聞，上親問金聲後，問用一律當否於諸臣，領府事金在魯、判府事兪拓基以爲：“年過十歲，國家用法，似無差等。”左議政金尙魯以爲：“若以年未滿，自上特教，則未爲不可，而非自不仰請者矣。”教曰：“李金聲持火繩，遊戲於莫重之地，有此延燒之舉，渠焉這一律，而觀渠身不滿尺餘，問其年，亦不過十三，此正本律中取上裁者也。特爲減死，珍島郡定配，李鳳齡康津縣勿限年定配，砲手方次奉，令刑曹刑推一次後，三陟府定配，入番守僕、書員及陵軍，并嶺東徒配。”</p>



	<p>“이금성이 화승을 가지고 막중(莫重)한 지역에서 장난을 하다가 잇달아 태운 일이 있었으니 제가 어떻게 일률을 피하겠는가마는, 보건대, 그의 키가 1척(尺) 남짓하고 그의 나이를 물으니 또한 열세 살에 불과한데, 이는 바로 본률(本律) 가운데서 임금의 재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진도군으로 정배(定配)하게 하고, 이봉령은 강진현으로 해를 기한하지 말고 정배하도록 하며, 포수 방차봉(方次奉)은 형조로 하여금 한차례 형추(刑推)한 뒤에 삼척부로 정배하게 하고, 입번(入番)한 수복(守僕)·서원(書員) 및 능군(陵軍)은 아울러 영동(嶺東)으로 도배(徒配)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2일 (을사) 2번째기사 영남에서 봉진하는 생복과 숙복을 올리지 말라하다</p>	<p>영남에서 봉진(封進)하는 생복(生鰯)과 숙복(熟鰯)을 정지하라 명하였다. 이때에 바닷물이 갑자기 붉고 흐려져 해물(海物)을 먹은 자들이 수독(水毒)에 중독되었다고 통제사가 계문했기 때문이었다.</p>	<p>命停嶺南生、熟鰯封進。時，海水忽然赤濁，食海物者，多中水毒，統制使啓聞故也。</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17일(경신) 5번째기사 이보혁·박문수를 소견하자 음주·왕손의 벼슬 제수 등을 아뢰다</p>	<p>임금이 인평군(仁平君) 이보혁(李普赫)과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를 소견하였다. 이 보혁이 윤상백(尹尙白)의 초사에 나왔으나 곧 무고(誣告)라고 자복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소견하여 위로해 유지한 것이다. 박문수가 스스로 일찍이 당론(黨論)을 한 일이 없다고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신은 이번 여러 역적들에 대해 아까운 마음은 없으나 다만 금년에 한 사람을 죽이고 명년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쾌하다면 통쾌한 것이지만 나라의 원기(元氣)가 상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혁심(革心)·혁면(革面)의 의심을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오직 재능에 따라 등용해 털</p>	<p>上召見仁平君李普赫、靈城君朴文秀。普赫出於尙白之招，而旋以誣告自服，至是上召見慰諭。文秀自陳未嘗爲黨論，且曰：“臣於今番諸逆，無顧惜之意，但恐今年殺一人，明年殺一人，快則快矣，國家之元氣病矣。願殿下勿復以革心、革面之疑，置諸淵衷，惟才是用，一毫無偏，則可以無事</p>

	<p>끝만큼도 치우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일시 동인(一視同仁)하여 오직 재능에 따라 임용하는 것은 내가 30년 동안 고심해 온 것이다. 다만 군자와 소인은 마땅히 주객의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경은 혼동하여 구별하려 하지 않으니 불가하다.”</p> <p>하였는데, 박문수가 미소하면서 말하기를,</p> <p>“신이 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나 전하께서 엄교가 계실까 두려워 감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처럼 진달하고자 하는 말이라면 내가 어찌 엄교를 하겠는가?”</p> <p>하므로, 박문수가 말하기를,</p> <p>“노인에게 있어 술은 무익하지는 않으나 지나치게 마시면 해가 되니, 원하던 대, 성상께서는 절제해서 마시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는 본래 술을 마시지 않는데 지난번 친국했을 때에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서 과연 조금 마신 일이 있었으나 어찌 과음하였겠는가? 그러나 경의 말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깊이 반성하겠다.”</p> <p>하였다. 또 말하기를,</p> <p>“삼가 듣건대, 소조(小朝)께서 불안한 일이 있는데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대조께 근심을 끼칠까 염려하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조용히 살피시어 더 중해지지 않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외간의 말이 지나치게 전해진 것뿐이다.”</p> <p>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p> <p>“신이 듣건대, 왕손(王孫)이 두 사람있는데 전하께서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p>	<p>矣。” 上曰：“一視同仁，惟才是用，卽予三十年苦心。但君子、小人，當有主客分數，卿欲混而無別則不可矣。” 文秀微笑曰：“臣有欲陳之言，而恐殿下有嚴教，囁嚅不敢矣。” 上曰：“若是當陳之言，予豈嚴教乎？” 文秀曰：“酒於老人，不爲無益，而過飲則有害，願聖上節飲焉。” 上曰：“予本不飲，而頃日親鞫時，心懷不能定，果有些些進飲之事，而豈過飲乎？然卿言如此，當猛省矣。” 又曰：“伏聞小朝有不安之節，而不曾明言，以其恐貽大朝之憂也，殿下必須從容照管，無至添重焉。” 上曰：“外間之言，傳之過耳。” 文秀曰：“臣聞王孫有二人，而殿下不使之近前，又不用度支定例云。部參奉亦有廩祿，而獨於王孫闕之可乎？且殿下請思在東宮之時。今則靈支繁多，此實國家無疆之慶也。帝王家豈有嫡庶乎？請擇乳母善養。且使該曹，依例進排。” 上曰：“卿言是矣。” 仍命該曹，依定例進排，逐朔進排及四孟朔、節日、流頭、交年，年例進排，掃雪進排，姑待十年，只乳母一人，閣氏一人舉行。 文秀又請，罷不</p>
--	---	--

	<p>하게 하시고, 또 탁지(度支)에서 정례(定例)로 주는 것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참봉(部參奉)에게도 역시 능록(廩祿)이 있는데 왕손에게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청컨대 동궁에 계실 때를 생각하소서. 지금은 자손이 번성하니, 이는 실로 국가의 끝없는 경사입니다. 제왕가(帝王家)에 어찌 적서(嫡庶)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유모(乳母)를 가려 잘 기르소서. 또 해조로 하여금 예에 따라 진배(進排)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p> <p>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해조에서 정례에 의해 진배하되, 매월의 진배 및 사맹삭(四孟朔)·절일(節日)·유두(流頭)·교년(交年)에는 연례(年例)로 진배하고, 소설 진배(掃雪進排)는 우선 10년을 기다리고 유모 1인과 각시 1인만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박문수가 또 청하기를, “급하지 않은 일을 과하여 흉년에 대비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금년의 영선(營繕)하는 역사를 과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急之務，以備年凶，上命罷今年營繕之役。</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24일(정묘) 5번째기사 조동점을 포도 대장에 특제했으나 곧 죽다</p>	<p>조동점(趙東漸)을 포도 대장에 특제(特除)하였다. 조 동점은 조동정(趙東鼎)의 사촌 형제로서 놀라 병이 나 명을 받들지 못하니, 임금이 약물(藥物)을 내렸으나 얼마 안되어 조동점이 졸(卒)하였다.</p>	<p>特除趙東漸爲捕盜大將。東漸以東鼎同堂兄弟，驚憂成疾，不能承命，上賜藥物，未幾東漸卒。</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4월 26</p>	<p>종묘의 서직(黍稷)을 담는 순가락을 개조하도록 명하였다. 종묘에는 예전에 수저가 있었으나 작아서 쓰기에 합당치 않아 유성중(兪性中)이 본서(本署)의 영(筥)으로 있을 때에 밥주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주걱을 버</p>	<p>命改造宗廟盛黍稷匕。宗廟舊有匕而小不合用，兪性中爲本署令時，作飯椀用之。至是命去椀用匕，而厚大其制，</p>

<p>일(기사) 2번째기사 종묘의 서직을 담당 손가락을 개조토록 하 다</p>	<p>리고 수저를 사용하라 명하여 그 제도를 후하게 해 밥을 뜨기에 알맞게 하였 다.</p>	<p>俾宜於舉飯。</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4월 28 일(신미) 2번째기사 약방 도제조 이천보가 동궁에게 가미이진탕 을 조제했음을 말하다</p>	<p>임금이 약방의 입진을 명하였다. 도제조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삼가 의관의 말을 듣건대, 동궁이 근래에 가슴이 막히고 뛰는 증후(症候)가 있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관이 대조(大 朝)께 품하여 고할 것을 청하였더니, 우선은 양달하지 말고 탕제를 먼저 조제 해 들이라고 하교하셨기 때문에 온담탕(溫膽湯) 20첩으로 의논해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세를 대조께 우러러 아뢰지 않고 갑자기 약명(藥名)을 써서 아 뢰면 관계된 바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고쳐 가미이진탕(加味二陳湯) 으로 조제해 드렸다고 합니다. 대개 동궁께서 약을 드시려면 반드시 대조께 진달한 후에 비로소 조제해 올려야 하나 온담탕은 바로 문호(門戶)의 약이기 때문에 심상하게 드시는 이진탕으로 바꾼 것이니, 사세는 비록 부득이하나 끝 내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히 괴이할 것이 무엇인가?”  하였다.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櫛)이, 근래에 대왕 자손(大王子孫)이 혹 천역 (賤役)에 들기도 한다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대왕의 적손은 대수(代數)를 한정하지 말고, 서손(庶孫)은 9대를 한정으로</p>	<p>上命藥房入診。 都提調李天輔曰：“伏 聞醫官之言， 則東宮近有膈間挑動之 候， 聞躑音而此症亦發。 醫官請稟告 于大朝， 則教以姑勿仰達， 而湯劑先爲 製入， 故以溫膽湯二十貼議定。 而既 不仰告症形于大朝， 則遽然書奏藥名， 亦涉如何？ 改名以加味二陳湯製入 云。 蓋東宮進服藥， 必陳達于大朝， 然後始可劑進， 而溫膽湯則是有門戶之 藥， 故改以尋常進服之二陳湯， 事勢雖 不得已， 而終涉未安。” 上曰：“亦 何足深怪也？” 綾昌君櫛， 以近來大王 子孫， 或有入於賤役爲奏， 教曰：“大 王嫡孫勿限代， 庶孫限九代， 外孫限七 代， 勿論公私賤， 限內直爲免賤例也。 而今聞北道四王孫， 名爲公私賤者多 云。 以此推之， 四王以後可知。 噫！ 勝國子孫， 若在賤役而登聞， 則其猶許 免， 況璫派乎？ 此不可使聞於隣國， 爲 道臣守令者， 其若尋常看過， 豈食祿青 丘之義哉？ 申飭諸道， 查報于宗簿寺，</p>

	<p>하고, 외손은 7대를 한정으로 해서 공천이나 사천을 물론하고 한도 내에서 곧바로 면천하는 것이 예이다. 지금 듣건대, 북도의 사왕손(四王孫)으로 공천이나 사천이라 이름한 자가 많다고 한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사왕 이후는 알 수가 있다. 아! 승국(勝國)의 자손도 만약 천역에 들게 되어 등문(登聞)하면 오히려 면천을 허락하는데, 더군다나 선파(璿派)이겠는가? 이는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해서 안되는데, 도신과 수령이 된 자는 예사로 보아 넘기니, 어찌 나라의 녹(祿)을 먹는 뜻이 있겠는가? 제도에 신칙하여 중부시에 조사해 보고하여 법전에 의해 거행 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依法典舉行。”</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5월 20 일(계사) 2번째기사 신치운을 신문하다</p>	<p>신치운(申致雲)을 신문하였다. 처음에 김도성(金道成)이 공초하기를, “심정연(沈鼎衍)의 흉서는 실로 신치운과 함께 의논하여 한 것입니다.”</p> <p>하고, 또 역적 이준(李峻)의 문서 가운데도 신치운을 칭찬하는 말이 많이 있어 이때에 이르러 형신하니, 공초하기를, “윤상백(尹尙白)을 끌어버리지 못한 것이 신의 죄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죄를 씻어줌이 너 역시 지극하였다고 할 것이다. 네가 승지로 있었을 때 내가 늙은 것을 민망히 여겨 여러 해 동안 침체되었다는 하교까지 있었으니, 마땅히 감읍(感泣)했어야 했는데도 너는 얼굴도 꿈쩍하지 않아 내가 그때에 이미 네 마음을 알았었다.”</p>	<p>○問申致雲。初道成招以爲：“鼎衍凶書，實與致雲同議。”又逆竣文書中，多有稱譽致雲之語，至是刑訊，供曰：“不絕尙白，是臣之罪耳。”上曰：“國家之剪拂，汝亦云至矣。汝爲承旨時，予憫其老，至有沈滯多年之教，則宜其感泣，而汝不爲動顏，予於伊時已知汝心耳。”致雲曰：“上旣疑之如是，臣請自服。臣自甲辰後，不喫蟹醬，此乃臣之逆心，鼎衍凶書，亦臣所爲也。”上憤痛流涕，侍衛將士莫不崩心痛骨，直欲手斃其肉。更問同黨，供：“同臣心事者，柳鳳輝、朴師緝、趙載敏、李喆輔也。”上叱之曰：“李喆輔，是汝誣告也。”命嚴刑，致雲乃服誣。</p>

	<p>하니, 신치운이 말하기를,</p> <p>“성상께서 이미 이처럼 의심하시니, 신은 자복을 청합니다. 신은 갑진년 13389) 부터 계장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逆心)이며, 심정연의 흉서 역시 신이 한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분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시위(侍衛)하는 장사(將士)들도 모두 마음이 떨리고 통분해서 곧바로 손으로 그의 살을 짓이기고자 하였다. 다시 같은 당의 사람을 물으니, 공초하기를,</p> <p>“신과 같은 마음으로 일한 자는 유봉휘(柳鳳輝)·박사집(朴師緝)·조재민(趙載敏)·이철보(李喆輔)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꾸짖기를,</p> <p>“이철보는 네가 무고(誣告)한 것이다.”</p> <p>하고, 엄형하기를 명하니, 신치운이 이에 무고로 자복하였다. 대사간 정광충(鄭光忠)이 나아가 말하기를,</p> <p>“조재민은 비록 우상과 가까운 친숙이기는 하나 의논은 아주 다르며, 이철보는 신이 청컨대 백 사람의 말로 보장하겠습니다.”</p> <p>하고, 정광충이 또 소회를 말하기를,</p>	<p>大司諫鄭光忠進曰：“載敏雖與右相屬近，論議則楚越，喆輔則臣請百口保之耳。”光忠又以所懷奏曰：“賊雲凶言，其本卽鏡賊。甲辰處分後覆逆承旨、玉堂生者，姑先絕島圍籬安置，已故者，宜追奪官職。”上允之。仍教曰：“光忠之言貴矣。予之賜名以忠不虛。”命加光忠一資。是時，少論之峻者，連出鞫招。李宗城、朴文秀、李喆輔等前後被引尤多，上終不問，嚴刑告者，取其誣服曰：“積年任使之臣，若以一人之言，遽疑以逆，則誰肯信而事予乎？”</p> <p><b>【태백산사고본】</b></p>
--	--	---

	<p>“역적 신치운의 흉언의 근본은 바로 역적 김일경입니다. 갑진년 처분 후에 복역(覆逆)한 승지와 옥당으로 살아 있는 자는 우선 절도(絶島)로 위리 안치하고, 이미 죽은 자는 마땅히 관직을 추탈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인하여 하교하기를,</p> <p>“정광충의 말이 훌륭하다. 내가 ‘충(忠)’으로 사명(賜名)한 것이 헛일이 아니었다.”</p> <p>하고, 정광충에게 한 자급을 더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소론(少論)의 준론을 하는 자가 국문 초사에 연달아 나왔다. 이종성(李宗城)·박문수(朴文秀)·이철보(李喆輔) 등이 전후하여 더욱 많이 원인(援引)되었는데, 임금이 끝내 불문에 부치고 매양 고한 자를 엄형하여 무복(誣服)을 받아내고는 말하기를,</p> <p>“여러 해 동안 벼슬한 신하를 만약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역적으로 의심한다면 그 누가 기꺼이 믿고 나를 섬기겠는가?”</p> <p>하였다.</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5월 21일(갑오) 1번째기사 신치운에게 형을 가하고 복주하다</p>	<p>(전략)사신(史臣)은 말한다.“세도가 불행하여 난역(亂逆)이 거듭 일어나 아주 흉악하고 절패(絶悖)하였는데, 신치운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갑진년(13391) 8월에 경묘(景廟)께서 병환이 다 낫지를 앓고, 수라(水刺)를 듣기 싫어하는 징후가 점차 더했기 때문에 궁중에서 근심한 나머지 20일에 어주(御廚)에서 수라에 계장을 올렸었다. 이는 가을철 신미(新味)인데, 경묘께서 이 계장으로 수라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였었다. 그후에 지나치게 많</p>	<p>(전략)史臣曰：世道不幸，亂逆層生，而窮凶絕悖，至致雲而極矣。甲辰八月，景廟違豫彌留，水刺厭進之候漸加，故宮中憂遑，二十日御廚於水刺，供蟹醬。乃秋節新味，故景廟以此多進水刺，宮中皆歡喜。其後過進之說，</p>

	<p>이 들었다는 말이 밖으로 전해지자 이유익(李有翼)과 박필현(朴弼顯)의 무리가 이를 가탁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만들어 내고, 몰래 심유현(沈維賢)을 사주하여 전파시켰다. 또 이천해(李天海)를 꺾어 어가(御駕) 앞에서 난언(亂言)을 하게 하여 감히 말하지 못할 자리를 꺾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역적 신치운의 흉언의 근본인데, 계장에 대한 말에 이르러서는 비록 이천해 같은 흉역도 말하지 못한 바였다. 아! 통분스럽다. 그 역시 사람인데 차마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때 동조(東朝)께서 설사 계장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예사 일이요, 더군다나 올린 바가 또 어주(御廚)에서 올린 것이겠는가? 오직 우리 동조의 인자한 덕은 우리 경묘와 전하를 돌보아 사랑하는 깊은 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후략)</p>	<p>流傳於外間，有翼、弼顯輩假此而做出叵測之說，陰嗾維賢而傳播之。又誘天海，使之駕前亂言，敢逼不敢言之地，此即逆雲凶言之所本，而至於蟹醬之說，雖以天海之凶逆亦所不言。噫嘻痛矣！渠亦人也，忍爲此言耶？伊時東朝設有所送，此乃當然之常事，而況所進又是御廚所供者乎？惟我東朝止慈之德，眷愛我景廟與殿下發於深誠。惟我景廟天性篤孝，友愛純至，粵自沖年，事我仁顯聖母，夙夜不離側。(후략)</p>
<p>영조 84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5월 28일(신축) 1번째기사 진휼청의 건의로 오부의 건량 지급을 철폐하다</p>	<p>진휼청에서 아뢰기를, “보리가 익는 때가 이미 지났으니, 오부(五部)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던 건량(乾糧)을 지금부터 철폐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p>	<p>辛丑/賑恤廳啓言：“麥秋已過，五部饑民之分給乾糧，自今撤罷。”允之。</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7월 2일(갑술) 2번째기사 중관 선우신을 국문하고 복주하다</p>	<p>또 중관(中官) 선우신(鮮于愼)을 국문하였다. 처음에 선우신이 거짓으로 내국(內局)에 표지(標紙)를 내려 삼료(蔘料)를 구했는데, 즉시 표지를 찾아들이고 제조 이철보(李喆輔)가 그 상황을 아뢰었다. 임금의 노하여 친국하여 실정을 알아낸 후에 마침내 복주(伏誅)되었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친히 역옥(逆獄)을 신문하는 것이 근래에 이루어진 예이기는 하나 역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더군다나 저 선우신이란 자는</p>	<p>又鞫中官鮮于愼。初，愼僞下標紙于內局，覓蔘料，即索入標紙，提調李喆輔白其狀。上怒，親鞫得情後，竟伏誅。  【史臣曰：親訊逆獄，雖成近例，而亦出於不得已者。況彼愼者，其罪即偷</p>



	<p>그 죄가 바로 절도이니, 그 실정을 알아내어 정법(正法)하는 것은 유사(有司) 하나만으로도 족한 것이다. 어찌하여 천승(千乘)의 존귀함으로 친히 신문까지 해야 하겠는가?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당연한 것처럼 보고 묵묵히 한 마디도 없었으니, 아! 개탄스럽다.”</p>	<p>竊也，其得情正法，一有司足耳。 何至於屈千乘之尊而親訊之？ 在廷諸臣視若當然，默無一言，吁可慨也!】</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7월 29일(신축) 1번째기사 저경궁에서 봉안제·고유제를 지내고 육상궁에 들르다</p>	<p>임금이 예(禮)대로 제사를 행하고 봉안한 후에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에는 돌아가 절을 할 면목이 있게 되었다.” 하고, 이어서 도감 당상과 낭청에게 아울러 입시를 명하여 선은(宣醮)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환궁하면서 육상궁(毓祥宮)에 들러 절하였다.</p>	<p>辛丑/上行祭如禮，奉安後，教曰：“今後有歸拜之顏矣。” 仍命都監堂、郎，竝入侍宣醮，日暮還宮，歷拜毓祥宮。</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8월 20일(신유) 1번째기사 관소에 거둥하여 사신과 연례를 행하다</p>	<p>임금이 관소(館所)에 거둥하여 청나라 사신과 함께 연례를 행하고, 여러 차례 머물기를 청하고 해시(亥時)에 환궁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아! 우리 임금이 견양(犬羊) 같은 무리에게 절을 한 것도 이미 극도의 수치인데, 또 어찌 스스로 체모를 손상해 가면서 저들의 모욕을 받아야 하겠는가? 사관(舍館)은 가야 할 장소가 아닌데 밤중에 주필(駐蹕)하여 지척(咫尺)의 어가 앞에서 주리(侏離)13509) 로 시끄럽게 떠드는데 술을 먹이고 은(銀)을 내리는 등 크게 존엄을 잃었으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호가(扈駕)하는 여러 신하들이 단지 성상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해서 임금의 잘못을 그대로 보아 먼 곳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맡겨 두었으니, 나라를 엿보는 자가 우리 나라에 신하가 있다고 하겠는가? 아!”</p>	<p>辛酉/上幸館所，與清使行宴禮，屢次請留，亥時還宮。 【史臣曰：嗚呼！吾君之拜犬羊，羞已極矣，又何可自損體貌，取彼之侮乎？舍館匪所，而駐蹕侵夜，咫尺駕前，侏離雜沓，而饋酒賜銀，大失尊嚴，此何爲哉？扈駕諸臣，只恐上心之激惱，愒視君違，任他遠人之觀聽，覘國者其可曰海東有臣乎？吁!】</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9월 8일(기묘) 4번째기사</p>	<p>명년 정월부터 경외(京外)에서 술빚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하우(夏禹)가 비록 의적(儀狄)13516) 을 소원하게 대하였으나 그가 만든 술은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술을 달게 먹고 즐겨 마시는 경계가 있</p>	<p>命自明年正月，禁京外釀酒。 教曰：“昔夏禹雖疏儀狄，不去其酒，故雖有甘酒嗜飲之戒，夏末有桀。 噫！伐性之斧，戕身之物，非但前轍昭昭，京外</p>

명년 정월부터 경외에서 술을 빚지 말라는 전교

었지만 하(夏)나라 말기에는 걸(桀)이 있게 되었다. 아! 성품(性品)을 해치고 몸을 상하게 하는 물건임은 단지 전철(前轍)이 밝을 뿐만 아니라 경외에서 곡식을 소모하고 싸우다 살인(殺人)을 하는 것도 모두 이 술에 말미암은 것이다. 전후로 금주(禁酒)하자는 청을 매양 오활하다 하여 듣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본말(本末)이 있게 마련인데, 나라에서는 쓰고 민간에만 금하다면 어찌 근본이 먼저하고 말단이 나중에 하는 뜻이겠는가? 봄·여름에 영(令)을 하지 않다가 가을·겨울의 영(令)을 갑자기 행한다면 가난한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술동이와 술항아리를 반드시 개울에 쏟아버리고 말 것이다. 술이 비록 좋지 않은 것이나 이 역시 하늘이 낸 물건이 아니겠으며, 우리 백성들이 고생해서 생산한 곡식이 아니겠는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세력이 있는 자는 요행히 면하고 세력이 없는 자만 붙잡히게 되니 어찌 내 뜻이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술의 폐단을 익히 알면서 어찌 금하고자 하지 않으랴만 태상(太常)13517)에서 현주(玄酒)를 쓰기 전에는 참으로 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단(紋緞)은 비록 금했으나 술은 금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에 금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금하라. 시험삼아 내주방(內酒房)의 술독을 보니, 색이 칠흑(漆黑)과 같아 까마귀나 까치 역시 앉지 않고 있었다. 아! 질그릇이 오히려 이러한데 연한 피부와 창자이겠는가? 갑자기 좋은 계책이 생각났으니 바로 예주(醴酒)가 그것인데, 아! 예주가 어찌 현주보다 낫지 않겠는가? 먼저 이런 뜻을 태묘(太廟)에 고하고, 세초(歲初)부터는 위에서는 왕공(王公)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연례(宴禮)에는 예주만 쓰고 홍로(紅露)·백로(白露)와 기타 술이라 이름한 것도 모두 엄히 금하고 범한 자는 중히 다스리겠다. 내주방(內酒房)과 내자시(內資寺)·종묘(宗廟)에 봉진(封進)하는 것은 예주로 진헌하고, 대전(大殿) 이하는 날짜나 명일(名日)을 물론하고 고묘(告廟)한 후부터는 일체 아울러서 봉진하지 말라. 호군(犒軍)과 농민(農民)은 다름이 있어 공자(孔子)가 향인(鄉人)의 사제(蜡祭)13518)에 대해

耗穀，鬪鬪殺人，皆由於此。前後禁酒之請，每謂迂闊而不聽。何則凡事有本有末，用於國而禁於民，豈先本後末之意乎？春夏不令，而秋冬之令忽行，則小民懼法，甕酒罌醕，必將灌於川渠。酒雖無狀，此非天物乎，其非我元元粒粒辛苦之穀乎？非徒此也。有勢者倖免，無勢者被執，豈予意哉？雖然酒弊知之熟矣，豈不欲禁也，而太常用玄酒之前，誠難禁也。故紋緞雖禁，酒則勿問，及今不禁，更待何時？試看內酒房瓦子，色若漆黑，烏鵲亦不坐。噫！土瓦猶然，況軟膚軟腸乎？忽得良策，乃醴酒也。吁嗟！醴酒豈不勝於玄酒乎？先將此意告于太廟，其自歲初，上自王公，下至匹庶，祭祀宴禮只用醴酒，紅露、白露、其他以酒爲名者竝嚴禁，犯者重繩。內酒房、內資寺、宗廟所封者，以醴進獻，大殿以下，勿論日次名日，自告廟後，一竝勿封。犒軍、農民有異焉，孔子謂鄉人蜡曰，‘一弛一張，文武之道。’軍門犒饋，則只用濁酒，農人麥酒、濁酒亦勿禁。以此綸音，頒布中外。”又教曰：“命用醴酒，重其祭宴，取其味淡，而

	<p>〈《예기(禮記)》에서〉 말하기를, ‘한 번 당기고 한 번 늦추는 것이 문무의 도이다. [一張一弛 文武之道]’라고 하였다. 군문(軍門)의 호궤(饋饋)에는 단지 탁주(濁酒)만을 쓰고, 농민들의 보리술과 탁주 역시 금하지 말아야 한다. 이 윤음(綸音)을 중외(中外)에 반포하라.”</p> <p>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예주(醴酒)를 쓰도록 명한 것은 제사와 연례(宴禮)를 중히 여기고 그 맛이 담백한 것을 취한 것이나 후일에 맵고 독하게 하는 폐단으로 유행함이 없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찌 금주하는 뜻이 있겠는가? 일체로 엄히 신칙하라.”</p> <p>하였다. 이때에 형조 판서 이후(李耆)가 흉년인 것으로써 동궁(東宮)에게 외방에서 술 빚는 것을 금할 것을 아뢰었는데, 임금(英祖)이 듣고서 말하기를,</p> <p>“나라의 정령(正令)이 경외(京外)를 어찌 다르게 하겠는가?”</p> <p>하고, 드디어 이런 하교가 있게 된 것이었다.</p>	<p>後不無流於辛烈之弊，若此豈禁酒之意哉？一體嚴飭。”時刑曹判書李耆，以歲荒，奏東宮禁外方釀酒，上聞之曰：“國之政令，京外何異？”遂有是教。</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9월 10일(신사) 1번째기사 승지 춘방에게 힘써 정사를 도우라고 하고, 세자에게 강연 등에</p>	<p>밤에 우레와 번개가 쳤다. 임금이 승지와 춘방(春坊)을 불러 전교하기를, “인심과 세도(世道)가 어찌 금년과 같은 적이 있었겠는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으나 이 마음은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근일 날씨가 상도에 어긋나는 가운데 우렛소리와 번개빛이 갑자기 소리를 그쳐야 하는 달에 들리니, 이는 바로 상하가 경계하고 단속해야 할 날이다. 오로지 덕이 없는 내가 늙어 쇠약해진 소치인가 싶어 바야흐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원량(元良)은 대리(代理)하면서 혹 정사에 부지런하지 못한 것이나 아닌지, 대소 신료들이 혹 정백</p>	<p>辛巳/夜，雷電。上召承旨、春坊，教曰：“人心、世道豈有若今年者乎？今雖少息，此心靡懈。近日日氣乖常之中，轟聲燁光，忽聞於止聲之月，政上下警飭之日。專由乎否德衰暮之致，其方懷惕，而元良代理，或欠勤政否，大小臣工，或欠精白否，不憚其憊，先</p>

대해 전교하다

(精白)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피곤함을 꺼리지 말고 먼저 스스로 부지런한 뜻을 보여야 한다. 너희 원량과 대소 신료들은 각기 힘써서 내 만년의 정사를 돕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세자를 불러 유시하기를,

“내가 동궁으로 있을 때에는 거의 휴식할 겨를이 없었고, 또 두 연강(筵講)을 폐한 적이 없었다. 옛날 황형(皇兄)13519) 께서 하루 안에 공사(公事)를 가지고 소대(召對)하는 것이 두세 차례에 이르렀고, 그렇지 않은 날이 없었음은 네가 어찌 들어서 알지 못하겠는가? 오늘날의 조정 신하들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나와 네가 국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선(朝鮮)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바로 당나라 태종(太宗)이 고종(高宗)을 가르친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써 읽어야 한다. 오늘 이후에는 매월 초1일에 쓰기 시작하여 그믐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날에는 소대(召對)하였고, 어느 날에는 차대(次對)하였으며, 어느 날에는 서연(書筵)하고 어느 날에는 공사(公事)를 보았으며, 어느 날에는 무슨 책 무슨 편(篇)을 읽었으며, 어느 날은 하지 않았는지와 강관(講官) 및 강생(講生)을 열서(列書)하여 내가 볼 수 있도록 대비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가 술마시기를 즐기지 않음은 너 역시 알 것이다. 종묘(宗廟)에 고하고 술을 금한 것은 그 뜻이 있는 바이어서 후일을 위한 계책인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나중에 주방(酒房)을 다시 설치하려고 할 것인데, 무릇 우리 조정의 신하들이 그때 간쟁(諫爭)하지 않는다면 이는 너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림(翰林)·주서(注書)·춘방(春坊)의 여러 연소한 신하들은 내 말을 자세히 기억해 두라.”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정신(廷臣)으로 일찍이 술을 경계한 자인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에게

示自勉之意。 咨爾元良、大小臣工、其各勉焉， 助我暮政。” 仍召世子諭曰：“予在東宮時， 殆無休息之暇， 而亦不廢兩筵。 昔皇兄一日之內， 持公事召對， 至于二三次， 無日不然， 汝豈不聞知乎？ 今日朝臣， 無一可恃， 非予與汝爲國事， 則其於朝鮮何？ 《貞觀政要》卽太宗教高宗者， 汝須諦覽。 自今以後每月初一日始書， (徒) [從] 至晦日， 列書以某日召對， 某日次對， 某日書筵， 某日持公事， 某日某冊某篇， 某日不爲， 及講官、講生， 以備予覽也。” 又教曰：“予之未嘗嗜飲， 汝亦知之矣。 告廟禁酒， 有意存焉， 爲日後計也。 汝須銘心也。 日後若復設酒房， 而凡我廷臣其時不爭， 則非負汝而實負我也。 翰、注、春坊諸年少之臣， 詳記予言。” 仍命：“賞廷臣之嘗以酒爲戒者， 靈城君朴文秀熟馬一匹， 前修撰趙嘏表裏一襲賜給。” 仍命飭三司， 今年內毋得以禁酒侵民。 違者罪之。

	<p>숙마(孰馬) 1필을, 전 수찬 조엄(趙曺)에게 표리(表裏) 한 벌을 하사하라.”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삼사(三司)에 신칙하여 금년 안에는 금주(禁酒)로 백성들을 침해하지 말게 하라. 어긴 자는 죄를 주겠다.” 하였다.</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9월 10 일(신사) 2번째기사 동궁에게 수서로 영상 을 부른 일을 묻다</p>	<p>임금이 또 동궁에게 묻기를, “듣건대 네가 영상에게 수서(手書)로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유 시하였다는데, 참으로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참으로 밥을 먹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니, 내시(內侍)가 승지의 말로써 아뢰기를, “영상은 병이 있어서 내일 아침을 기다려서 숙명(肅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동궁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네가 반성할 점이다. 영상이 만약 네가 밥을 먹지 않고 있다는 말을 믿었다면 어찌 내일 아침을 기다리겠는가?” 하고, 이에 승지를 보내 도타이 유시하였는데, 밤이 이미 5고(鼓)였다.</p>	<p>上又問 東宮曰：“聞汝手書領相，諭以 廢食待之，信然乎？”對曰：“果不食以 待矣。”內侍以承旨言啓：“以領相有 疾，待明朝當肅命云。”上顧東宮曰： “此汝自反處。領相若信汝不食，則何 待明朝耶？”上乃遣承旨敦諭，夜既五 鼓矣。</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9월 11 일(임오) 1번째기사 영의정 이천보가 숙명 하자 소견하고 유시하 다</p>	<p>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숙명하니, 임금이 소견하고 유시하기를, “금주는 내 평소의 마음이었는데, 어제 세자에게 유시한 것은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다. 세자가 국사에 생소하니, 경은 매양 나에게 분발하기를 권려하 여 비록 애써 따르고자 하나 어려웠다.” 하니, 이천보가 아뢰기를, “금주는 본디 왕정(王政)의 큰 것이니, 이로써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금년 봄 역변(逆變) 이후 국가의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의 기미가 털끝만큼 의 사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분려하신다면 신은 마땅히 아래 에서 보좌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壬午/領議政李天輔肅命， 上召見之， 諭曰：“禁酒，予素心，昨有諭元良者， 可以有辭於天下後世也。元良於國事 姑生疎，卿每勸予以奮勵，而雖欲勉從 難矣。”天輔曰：“酒禁，固王政之大 者，不當以此自足。今春逆變以後， 國家安危存亡之機，間不容髮。殿下 若奮勵，則臣當承佐下風矣。”上曰： “可爲者何事？”天輔曰：“惟殿下摠攬 權綱焉。”</p>

	<p>“할 만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니, 이천보가 아뢰기를, “오직 전하께서 권강(權綱)을 총람(總攬)하는 것입니다.” 하였다.</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9월 14 일(을유) 3번째기사 제사·연례·호궤·농주 외에는 일체 술을 금 하게 하다</p>	<p>하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향촌(鄉村)의 탁주(濁酒)는 바로 경중(京中)의 지주(旨酒) 이니, 위로 고묘(告廟)하고 아래로 반포한 후에는 한결같이 해야 마땅하다. 경외의 군문(軍門)을 논하지 말고 제사(祭祀)·연례(謙禮)·호궤(犒饋)와 농주(農 酒)는 모두 예주(醴酒)로 허락하되 탁주와 보리술은 일체로 엄금하라.”  하였다. 이때에 여러 신하들이 진현(進見)하여 모두 금주령을 칭송하였는데, 전 사간 이민곤(李敏坤)만이 유독 글을 올려 말하기를,  “태묘(太廟)의 제향에는 술을 없애서는 안됩니다.”  하였는데, 정원(政院)에서 막아 들이지 못하였다.</p>	<p>教曰：“更以思之， 鄉村濁酒， 卽京中 旨酒也， 上告下布後， 令宜一也。 勿 論京外軍門， 祭、謙、犒饋、農酒并許 醴酒， 而濁酒、麥酒， 一體嚴禁。” 時 諸臣進見皆稱頌禁酒之令， 而前司諫李 敏坤獨陳章以爲：“太廟祀享， 不可廢 酒。” 格于政院， 不果入。</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9월 14 일(을유) 4번째기사 흉년으로 외금에 명년 가을까지 사객의 다담 을 정지시키다</p>	<p>외읍(外邑)은 명년 가을을 한하여 사객(使客)이 다담(茶啖)을 정지하고, 아울 러 유밀과(油蜜果)도 함께 금하라고 명하였는데, 흉년 때문이었다.</p>	<p>命外邑， 限明秋停使客茶啖， 竝禁油蜜 果， 以歲荒也。</p>
<p>영조 85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p>	<p>장령 안복준(安復駿)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乾隆) 20년) 9월 14일(을유) 6번째기사 장령 안복준이 올린 흉년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라는 상서</p>	<p>“아! 금년은 농사가 아주 잘되지 않았으니 어찌 말을 하겠습니까? 음산한 장마에 상하여 백가지 곡식이 모두 병들고, 언덕이 무너져 모래가 뒤덮어 영원히 전답의 모양을 잃은 것이 절반 이상이 되며, 여름부터 가을이 오도록 맑은 날이 보이는 것이 아주 적어서 남아 있는 곡식 역시 익기를 바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미 낫 이삭도 절반은 곳곳하게 서 있습니다. 목화(木花)에 이르러는 이름만 한전(旱田)일 뿐 석 달 동안의 장맛비에 단지 빈 열매만 남아 있어서 1백 세 먹은 노인이 그의 생애에 처음 본 일이라고 탄식하고 있어 백성들의 의식(衣食)의 근본이 이에서 삭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쌀 한 말의 값이 거의 1백 전(錢)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이러하니, 봄일은 알 만한데 위를 섬기고 아랫사람을 기를 가망이 없게 되어 노인과 장정이 다 죽게 되는 것을 서서 기다려도 됩니다. 앞으로 구제해 살릴 계책을 미리 강구하기를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자를 구하듯 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비록 탁지(度支)의 연분(年分) 조(條) 사목(事木)으로 보건대, 그 비총(比摠)13530) 한 바가 경기·호서의 경신년(13531) 과 호남의 임술년(13532), 해서의 기미년(13533), 관동·관서의 계유년(13534), 관북의 무오년(13535) 과 과연 금년 농사와 서로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영남의 비총으로 추측하건대 영남의 신유년(13536) 농사는 흉년을 면한 것보다 나아서 금년에 비교해 논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함께 비교했으니, 다른 도의 비총도 또 영남의 비총이 아주 넘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단지 영남이 원총(元摠)만으로 계산하면 원총 이외에 마땅히 급재(給災)해야 할 것이 22분의 1에 불과한데, 우선 대동(大同)의 재결(災結) 예(例)를 빌려 계산하면 22결(結)의 땅에서 바야흐로 1결만의 급재를 얻을 수 있고, 22부(負)의 땅에서 바야흐로 1부의 급재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저 예전대로 익은 것도 1백의 1, 2에 불과하며 각은 듯이 재해를 입은 것이 10중 7, 8은 되어 비록 10분의 3, 4의 급재를 얻더라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p>	<p>----- ----- ----- --</p> <p>○掌令安復駿上書, 略曰:</p> <p>嗚呼! 今年穡事之大無, 可勝述哉? 淫潦所傷, 百穀俱病, 崩岸覆沙, 永失田形者強半, 自夏徂秋, 得見晴日者絕少, 餘存之穀, 無望成就, 而既秀之禾, 半是直立。 至於木花, 名爲旱田, 而三朔潦雨, 只餘空房, 百歲老人, 歎其生來初見, 生民衣食之原, 於是乎索然矣。 目今京師之斗米, 幾直百錢。 方秋若此, 來春可知, 仰事俯育, 已矣無望, 而老顛壯死, 可立而待。 前頭濟活之策, 政宜預講, 如救焚拯溺之不暇, 而雖以度支所條上年分事目觀之, 其所比摠, 京畿湖西之庚申、湖南之壬</p>
--	--	---

운데, 더군다나 22분의 1로 한 도(道)의 재황(災荒)을 마감해야 하겠습니까? 또 한전(旱田)은 1년에 두 번씩 수확하기 때문에 원래 급재하는 예가 없지만 금년에는 봄에 보리가 전혀 없었고 가을 곡시 역시 또 흉작이어서 전재(全災)에 들게 되었고, 목화(木花)가 재해를 입음이 또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농사가 아주 안되었는데 평년의 세(稅)를 책임 지운다면 불쌍하게 겨우 살아 남은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장차 술과 집을 팔아서 눈앞에 닥친 역(役)에 응해야 하고, 결국에는 골짜기로 떨어져 흩어져 도적이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먼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농사 형편을 자세히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총(比摠)을 비교해 장문(狀聞)하게 한 후, 묘당에서 다시 더 참작해 크게 매달리듯 부족함이 없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진달한 바가 매우 절실하니 경성(警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결(災結)에 대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조(賦租)의 법을 주현(州縣)에서 민전(民田)의 재실(災實)을 구별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그 총수(總數)를 탁지에 보고하였었다. 근년 이래로 나라의 쓰임이 많아져 탁지가 고갈되었고, 묘당에서 또 수령들이 재상(災傷)을 지나치게 보고할까 염려해서 아뢰어 호조로 하여금 매년 가을에 멀리서 제도의 풍흉(豐凶)을 헤아려 풍년이면 전의 어느 해 총수(總數)에 비교되고, 흉년이면 또 전의 어느 해 총수에 비교된다고 미리 제도에 반포하여 비총(比摠)이라 이름하였다. 주현에서는 감히 이것을 여기거나 넘지 못하여 재황(災荒)의 전결(轉結)에서 비로소 억지로 징수하는 근심이 많아졌다.

戊、海西之己未、關東關西之癸酉、關北之戊午，未知果與今年年事相似，第以嶺南比總推之，嶺南辛酉之農，優於免凶，非可比論於今年。而乃比而同之，安知他道之比總，又不似嶺南比總之爲遼越耶？只以嶺南元總計之，總外當給之災，不過爲二十二之一分，姑借大同災結之例而律之，則二十二結之地，方可得一結之災，二十二負之地，方可得一負之災。夫依舊成熟者，百不一二，剗地被災者，十居七八，雖得十分三四之災，猶懼不贍，況以二十二之一分，可以勘一道之災荒乎？且旱田則以一年再穫之故，元無給災之例，而今年則春牟大無，秋穀又歉，便是全災之中，木花之受災又如所陳。以此大無之農，責平歲之稅，則哀我子遺之民，必將賣釜鼎鬻家舍，以應目前之役，而畢竟轉于溝壑，散爲盜賊。臣意則先令道臣詳覈農形，較量相當之比總，而狀聞後自廟堂更加參酌，毋至大爲懸絕宜矣。

王世子答曰：“方切懍惕，所陳切至，可不警省？災結事，令廟堂稟處。”先



		<p>是，賦租之法，自州縣區別民田災實，報于監司，監司以其總數，報于度支。比年以來國用寢廣，度支匱竭，廟堂又慮守令濫報災傷奏，令度支，每年秋遙度諸道豐歉，豐則比前某年總數，歉則又比前某年總數，預頒諸道，名曰比總。州縣毋敢違越，而災荒之田，始多勒徵之患矣。</p>
<p>영조 86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10월 2 일(임인) 2번째기사 금번 대제 때부터 예주를 사용토록 하교하다</p>	<p>하교(下敎)하기를, “이미 친제(親製)로써 하늘에 계신 &lt;조종(祖宗)의 영령께&gt; 아뢰었으니, 금번의 대제(大祭)부터 예주(醴酒)를 사용하라. 동조(東朝)에 올리는 것도 예주로 할 것이며, 남은 술은 내의원(內醫院)에서 술로 법제(法製)하는 데에 사용하라.” 하였다.</p>	<p>敎曰：“既親製以奏陟降，自今番大祭用醴。東朝所進，亦以醴，餘酒用于內醫院酒劑。”</p>
<p>영조 86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10월 13 일(계축) 2번째기사 찬집 당상이 입시하자 《천의소감》의 내용에 대해 말하다</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찬집 당상(纂輯堂上)도 같이 입시하였다. 제조(提調) 이철보(李喆輔)가 내자시(內資寺)의 정조(正朝) 조반주(早飯酒)와 단오(端午)에 새로 달인 향온(香醞)과 명일(名日)의 물선주(物膳酒)와 제석(除夕)의 방포주(放砲酒)의 존폐를 품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동조(東朝)에 올리는 것 외에는 모두 혁파하라.” 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p>	<p>藥房入診，纂輯堂上同爲入侍。提調李喆輔以內資寺正朝早飯酒、端午新煮香醞、名日物膳酒、除夕放砲酒存罷爲稟，上曰：“東朝所進外，一併革罷。”上曰：“纂輯冊中若入供辭，無異《勘亂錄 [戡亂錄]》。纂修之意，蓋欲使註誤者漸少也。予於戊申，太持寬緩，今因一賊蔓延至此，是豈樂爲哉？予幼時好用蠅拂子，今則不忍更</p>

“찬집하는 책 가운데에 공사(供辭)를 넣는다면 감란록(戡亂錄)과 다름이 없다. 찬수하는 뜻은 대개 그릇된 것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무신년(1359)의 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함을 주장하였는데, 지금 한 역적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만연(蔓延)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즐거워 하는 일이겠는가? 내가 어렸을 때에 파리채[蠅拂子]를 쓰기 좋아하였는데, 지금은 차마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비록 하나의 미물(微物)이라도 차마 죽일 수 없는데, 더구나 사람을 죽여서 법을 바르게 함을 어찌 즐거워 하는 것이겠는가? 책자의 법의(法意)는 신중하여 떳떳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보면 모두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되는데, 한번 이 가운데에 들어가면 실로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렵다. 근년에 이위보(李渭輔)는 박상검(朴尙儉)의 일로써 이태좌(李台佐)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어찌 괴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굳게 지키는 것이 많아 김용택(金龍澤)과 이천기(李天紀)에게도 지켰는데, 경 등이 알고 있는가? 내가 진정 시키지 않았으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를지 모를 일이다.”

하였다. 임금이 책자를 열람하다가 석렬(石烈)과 필정(必貞)의 일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쓴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찬수 당사 조명리(趙明履)가 말하기를,

“밤을 새워서 체포되었으니, 어찌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用。雖一微物不忍殺之，況殺人正法，豈樂爲也哉？冊子法意慎重，有秉彝之心者見之，皆當髮豎，而一入此中，誠難爲人。頃年李渭輔以尙儉事，至及李台佐，豈不怪異乎？予多固守處，於龍、紀守之，卿等知之乎？予不鎮之，不知當至何境乎？”上覽至石烈、必貞事，上曰：“書此何意。”纂修堂上趙明履曰：“經夜就捕，豈不可疑乎？”上曰：“其時判金吾誰也？”明履曰：“姜覲矣。”上曰：“姜覲、李台佐，豈可同爲乎？”纂修堂上元景夏曰：“李正臣亦按獄，而故相臣閔鎮遠、李宜顯知其冤請放，鄭壽期亦參鞫，而臣皆拔之於冊中矣。”上曰：“墨世甚殘忍。以白望之四寸，必欲構織，至於杖斃矣。李義淵事，何以錄之？”景夏曰：“洪啓禧錄之矣。”上曰：“義淵無爲景廟之心，啓禧此等處極非矣。李鳳鳴雖人微，乃是首發之疏，似不可不錄之。而如柳應煥之疏，若皆載入，則方萬規之疏，亦將入之耶？此蓋欲引入李光佐之意，而光佐之同歸考、輝等，其可乎？”領議政李天輔曰：“光佐雖異於考、輝，豈無可錄之事乎？”上歷覽冊

	<p>“그 당시 판금오(判金吾)는 누구인가?”</p> <p>하니, 조명리가 말하기를,</p> <p>“강현(姜覲)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강현과 이태좌가 어찌 같이하였겠는가?”</p> <p>하매, 찬수 당상 원경하(元景夏)가 말하기를,</p> <p>“이정신(李正臣)도 옥사(獄事)를 다루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과 이의현(李宜顯)이 그 억울함을 알고 석방을 청하였으며, 정수기(鄭壽期)도 또한 국문(鞫問)에 참여하였는데, 신이 모두 책 가운데서 뽑아버렸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묵세(墨世)에게는 매우 잔인하였다. 백망(白望)의 4촌이라 하여 반드시 엮어 넣으려 하여 장폐(杖斃)하기에 이르렀다. 이의연(李義淵)의 일을 어찌 기록하였는가?”</p> <p>하니, 원경하가 말하기를,</p>	<p>子, 以御筆刪抹曰: “秋殺之後, 必有春舒, 宜用活法也。” 景夏曰: “朴弼周之手筭, 不可不錄之矣。” 上曰: “山野之書, 何必載之於此等文字耶?” 明履曰: “光佐以爲, ‘聯筭, 迹似非逆, 心 則爲逆’ 云, 而又比之於伊尹故事曰: ‘有是心則可也, 無是心則逆也’, 光佐焉可拔也?” 景夏曰: “光佐於代理事, 終有未愜之意, 不可不載矣。” 上曰: “予欲爲闡義理, 而因此若又永塞許多人, 則是豈初心乎?” 天輔曰: “聖意及此, 敢不奉承? 而至於光佐, 不可全沒也。” 上曰: “追削其職, 亦是一律, 何必與鏡、夢同罪, 然後快於心耶?” 天輔及景夏、明履曰: “臣等亦非欲加其罪律, 不可不劈破其根腦故也。” 上曰: “予豈愛惜光佐? 而嘗以貫日之忠言之, 今乃加以劇賊之罪, 則前後事豈不大異乎? 必爲我元良與元孫, 勿爲深論也。” 天輔曰: “光佐實有風動人心之罪矣。” 上曰: “然則以光佐爲窩主, 立論似好耶?” 天輔曰: “聖教中窩主二字好矣。” 上曰: “門生天子之說, 又何入錄耶?” 玉音仍嗚咽曰: “卿等強載此等文字, 貽辱於予,</p>
--	---	--

	<p>“홍계희(洪啓禧)가 기록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의연은 경묘(景廟)를 위할 마음이 없었는데, 홍계희의 이러한 곳들은 매우 잘못이다. 이봉명(李鳳鳴)은 비록 사람은 한미(寒微)하나 곧 소장(疏章)을 처음 발단(發端)한 사람이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유응환(柳應煥)의 소장(疏章)과 같은 것도 모두 실렸다면, 방만규(方萬規)의 소장(疏章)도 또한 넣어야 하겠는가? 이는 대개 이광좌(李光佐)를 끌어들이려는 뜻이지만, 이광좌를 조태구(趙泰耆)·유봉휘(柳鳳輝) 등과 같이 취급함은 옳은 일인가?”</p> <p>하니,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p> <p>“이광좌는 비록 조태구·유봉휘와는 다르나, 어찌 기록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p> <p>하매, 임금이 책자를 두루 열람하고 어필(御筆)로 짚고 지우며 말하기를,</p> <p>“가을의 숙살(肅殺)이 있는 뒤에는 반드시 봄의 따스함이 있는 것이니, 살리는 법을 사용해야 한다.”</p> <p>하였다. 원경하가 말하기를,</p> <p>“박필주(朴弼周)의 수차(手劄)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何哉?” 天輔曰：“聖教如此，臣等痛心益切矣。”</p>
--	---	---------------------------------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산야(山野)의 글을 어찌 이들 문자에 실을 필요가 있겠는가?”</p> <p>하였다. 조명리가 말하기를,</p> <p>“이광좌의 말에 ‘연명 차자(聯名箚子)는 정상은 반역(反逆)이 아닌 듯하나, 마음은 반역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윤(伊尹)의 고사(故事)13591) 에 비겨서 말하기를,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옳거니와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반역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광좌를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고, 원경하는 말하기를,</p> <p>“이광좌가 대리(代理)의 일에 대하여 끝내 꺼림칙한 뜻이 있었으니, 신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의리를 밝히려 하는데, 이로 인하여 또 허다한 사람을 영구히 막아놓는다면 이것이 어찌 처음의 마음이겠는가?”</p> <p>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p> <p>“성의(聖意)가 이에 미치시니,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광좌에 이르러서는 전혀 뺄 수 없습니다.”</p>	
--	---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관직을 추삭(追削)하는 것만도 또한 일률(一律)인데, 어찌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과 같은 죄벌을 준 뒤에라야 마음에 흡족하겠는가?”

하였다. 이천보 및 원경하와 조명리가 말하기를,

“신 등도 또한 그 죄율(罪律)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파헤치지 않을 수 없는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광좌를 애석히 여기겠는가? 일찍이 관일(貫日)의 충성으로써 말하였는데 지금 와서 극적(劇賊)의 죄를 더한다면, 앞뒤의 일이 어찌 크게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오로지 나의 원량(元良)과 원손(元孫)을 위하여 깊이 논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이광좌에게는 실로 인심을 선동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광좌를 와주(窩主)13592) 로 삼아 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단 말

	<p>인가?”</p> <p>하매, 이천보가 말하기를,</p> <p>“성교(聖敎) 가운데 ‘와주’ 두 자(字)가 좋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문생 천자(門生天子)13593) 의 말을 또 어찌 수록(收錄)하였는가?”</p> <p>하고, 옥음(玉音)이 목이 메어 울먹이며 말하기를,</p> <p>“경 등이 이런 문자를 억지로 실어서 나에게 욕이 되게 함은 무엇 때문인가?”</p> <p>하매, 이천보가 말하기를,</p> <p>“성교가 이러하시니, 신 등의 아픈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p> <p>하였다.</p>	
<p>영조 86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 (乾隆) 20년) 11월 2 일(신미) 3번째기사 유신을 불러 《시전》</p>	<p>임금이 유신(儒臣)을 불러 보고 《시전(詩傳)》의 실솔장(蟋蟀章)을 읽으라 명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p> <p>“나는 당풍(唐風)13597) 에 ‘지나치게 즐거워하여 황잡한 데 이르지 말도록 하라[大康無荒]’는 구절에 대하여 느낌이 있다. 아! 그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p>	<p>上召見儒臣，命讀《詩傳蟋蟀章》，仍 敎曰：“予於《唐風》，卽有感於‘太 康無荒’之句也。噫！其所宴樂，不 過木麥餅瓦器酒，而猶以無荒爲戒，此 唐、虞之遺意也。顧今八路俱歎，嗟</p>

<p>의 실술장을 읽히다</p>	<p>바는 메밀떡과 질그릇에 담은 술에 지나지 않았으나, 오히려 황잡한 일이 없도록 경계하였으니, 이는 당우(唐虞)의 유전해 오는 뜻이다. 돌아보건대, 지금 팔도(八道)가 모두 흉년이 들어 저 가없이 나뉘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미 즐거움이 없으니, 어찌 ‘황잡한 데 이르지 말게 하라’고 경계할 것이 있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매, 옥식(玉食)인들 어찌 달갑겠는가? 아! 삼도 유수(三都留守)와 팔도 도신(八道道臣)은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세전(歲前)에 안집(安集)시키고, 세후(歲後)에는 진휼하는 정사를 성의를 다해 거행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렁에서 벗어나게 하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아! 임어(臨御)한 지 30년에 한 혜택도 백성에게 미치게 하지 못하였다. 풍년든 해는 적고 흉년든 해는 많으니, 과거에 ‘기부(肌膚)도 어찌 아끼겠는가?’라는 하교를 생각건대, 내가 어찌 늙었다고 하여 백성을 위하여 풍년을 기원(祈願)하지 않겠는가? 내년 봄의 기곡제(祈穀祭)를 마땅히 친행(親行)할 것이니, 의조(儀曹)에서는 잘 알라.”</p> <p>하였다.</p>	<p>我顛連之民，既無其樂，何戒無荒？思之及此，玉食何甘？咨！三都留守、八道道臣宜體此意，歲前安集，歲後賑濟之政，竭意舉行，使我元元，免於溝壑也。”又教曰：“噫！臨御卅載，無一惠及民。而稔歲少歉歲多，念昔年肌膚何惜之教，予豈以衰耗而不爲民祈歲乎？明春祈穀祭，當親行，儀曹知悉。”</p>
<p>영조 86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11월 5일(갑술) 2번째기사 내자시에 남은 술을 훈련 도감·금위영·어영청의 수가 군병에게</p>	<p>내자시(內資寺)에 남아 있는 술 4백 병을 훈련 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3영(營)의 수가 군병(隨駕軍兵)에게 나누어 먹이라고 명하였다.</p>	<p>命以內資寺餘酒四百瓶，分饋訓、禁、御三營隨駕軍兵。</p>



떡이다	<p>병조 판서(兵曹判書) 홍봉한(洪鳳漢)이 임금에게 아뢰기를,</p> <p>“나라 안의 크고 작은 선척(船隻)은 납세(納稅)와 면세(免稅)를 막론하고 모두 균역청의 장표(掌標)를 받고 있는데, 조선(漕船)만은 유독 장표가 없어 일이 매우 허술하니, 일체로 장표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아뢰기를,</p> <p>“나라 안의 어장(漁場)과 어전(漁箭)은 면세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균역청에 매여 있습니다. 유독 사옹원(司饗院)의 두 착어소(捉魚所)는 진상(進上)의 체통이 소중함으로 인하여 주원(廚院)13598) 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基址)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라고 균역청의 장부에 기재된 뒤에라야만 균역청을 설치하고 해세(海稅)를 총관(總管)하는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아뢰기를,</p> <p>“호남(湖南)의 진상 첨가(進上添價)13599) 의 일은 전에 이정(釐正)하라는 하교가 계셨습니다. 도신(道臣) 민백상(閔百祥)이 보고한 절목에 의하여 포민(浦民) 1만 명을 진상보(進上保)로 보충하고 돈 2냥씩을 수봉(收捧)하면, 이것도 또한 균역청에서 1필(疋)씩을 보태는 뜻이니, 이로써 정식(定式)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兵曹判書洪鳳漢白上曰：“國內大小船隻，勿論納稅、免稅，皆受均廳掌標，而漕船之獨無標，事極踈虞，一體給標好矣。”上可之。又奏曰：“國內漁場、漁箭，勿論免稅與否，皆關均役廳。而獨司饗院兩捉魚，所以進上體重，屬於廚院。然基址之從某至某，則載於均廳案冊，然後不悖於設置均廳都管海稅之意矣。”上可之。又奏曰：“湖南進上添價事，前有釐正之教矣。依道臣閔百祥所報節目，浦民一萬名，充定進上保，捧錢二兩，則此亦均廳一疋之意，以此定式好矣。”上可之。</p>
영조 86권, 31년	임금이 대신(大臣)과 호조 판서와 선혜청 당상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 이천보	上召見大臣、戶判、惠堂。領議政李

<p>(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11월 10일(기묘) 2번째기사 대신·호조 판서·선혜청 당상과 봉진 물품의 탕감에 대해 의논하다</p>	<p>(李天輔)가 기곡제(祈穀祭)를 친행(親行)한다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의 목이 메어 말하기를,</p> <p>“지금 역내(域內)는 무사하나 오직 백성들에 대한 근심이 마음에 걸리니, 기필코 친행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친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로 하늘에 계신 &lt;조종(祖宗)의 명령을&gt; 저버리고 아래로 백성을 저버리는 일이다. 늘 말이 이에 미치면 눈물이 말에 따라 흐름을 깨닫지 못한다.”</p> <p>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p> <p>“연분 사목(年分事目)13607) 을 정한 뒤에 재해는 더욱 참혹하므로, 비총(比摠)13608) 에 크게 어긋납니다. 당초 2, 3만 결(結)을 일시에 급재(給災)13609) 함은 전에도 드문 일이나, 지금 또한 가결(加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차관(敬差官)이 정밀하게 살폈으면, 비총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비총은 참으로 구간(苟簡)한 일이다. 그 재해를 입은 심천(深淺)에 따라 가결하는 것이 좋다.”</p> <p>하였다. 선혜청 당상 신만(申晩)이 호조(戶曹)에서 별단(別單)으로 기록한 바를 올리며 말하기를,</p> <p>“이는 근년에 어필(御筆)로 생감(省減)하신 것입니다.”</p>	<p>天輔請寢祈穀祭親行之命， 上嗚咽曰：“即今域內無事， 惟是民憂關心， 必欲親行者以此也。 若不親行， 是上負陟降， 下負元元。 每語及此， 不覺淚隨言下也。” 天輔曰：“年分事日後， 被災孔酷， 故與比摠大違。 當初二三萬結之一時給災， 前所罕有， 而今亦不得不加結矣。” 上曰：“敬差官若精審， 則何必比摠？ 比摠誠苟簡矣。 隨其被災之淺深而加結可也。” 惠堂申晩進戶曹別單所錄曰：“此頃年御筆省減者也。” 左議政金尙魯曰：“節損之政， 寔出德意， 而自前所減， 皆因荐凶。 莫重御供， 不可率爾裁減， 貢人事亦不可不念也。” 上曰：“貢人願減物種乎？ 願減分乎？” 晩曰：“減分則諸色均減， 便同大同之役。 且年凶則米價倍騰， 故貢人不以爲病， 而若減物種， 則有偏利偏苦之歎矣。” 上曰：“減分之政， 外面似均， 而非損上益下之政。 先爲酌減， 姑觀來頭， 其令惠廳、戶曹， 一依點下舉行， 其中關係東朝封進者勿減。” 上又曰：“今番所減， 似爲藥石， 而祭享、祿俸， 初不減下， 意有在也。” 尙魯曰：“御供既減， 百官俸祿</p>
---	--	---

	<p>하였고,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는 말하기를,</p> <p>“절손(節損)에 관한 정사는 곧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나, 종전에 생감한 바는 모두 거듭된 흉년으로 인하여 빚어진 것입니다. 막중한 어공(御供)은 가벼이 재감(裁減)할 수 없고, 공인(貢人)의 일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공인들이 물종(物種)을 감하기를 원하는가, 분수(分數)를 감하기를 원하는가?”</p> <p>하매, 신만이 말하기를,</p> <p>“분수를 감하면 여러 물종을 고루 감하게 되니, 곧 대동(大同)의 역(役)과 같습니다. 또 흉년이 들면 쌀값이 갑절 오르므로 공인들이 병통으로 삼지 않는 데, 만약 물종을 감한다면 치우치게 이롭고 치우치게 괴로운 한탄이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분수를 감하는 정사는 겉으로는 고른 듯하나,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는 정사가 아니다. 먼저 참작하여 감하되, 우선 앞일을 보아가며 선혜청과 호조로 하여금 한결같이 점하(點下)13610) 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동조(東朝)의 봉진(封進)에 관계되는 것은 감하지 말라.”</p>	<p>不爲減損，事體不當若是矣。” 上曰：“忠信重祿，自是我國之法，而俸祿元來不多矣。” 又曰：“寺奴婢案，已釐正乎？” 兵曹判書洪鳳漢曰：“三百都數則使之長在，本無盈縮。雖有各宮賞賜之事，自當取用於都數外矣。” 上曰：“數外何可取用也？” 鳳漢曰：“三百外免稅秩尙多，逐年生產，則自可裕餘矣。” 上曰：“凡事不可不慎始，審察各司頭緒後更稟。”</p>
--	---	--

	<p>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p> <p>“금번 감한 바는 약석(藥石)과 같으나, 제향(祭享)과 녹봉(祿俸)에 대하여 애당초에 감하(減下)하지 않음은 뜻하는 바가 있다.”</p> <p>하니, 김상로가 말하기를,</p> <p>“어공은 감하고 백관의 녹봉을 감손(減損)치 않으면, 일의 체통으로 보아 이렇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p> <p>하매, 임금이 말하기를,</p> <p>“충·신(忠信)에게 녹봉을 후하게 함은 곧 우리 나라의 법인데, 녹봉은 본래 많지 않았다.”</p> <p>하였다. 또 말하기를,</p> <p>“시노비안(寺奴婢案)을 이정(釐正)하였는가?”</p> <p>하니, 병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3백의 총수(總數)는 유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본래 가감(加減)은 없습니다. 비록 각궁(各宮)에 상사(賞賜)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수 외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p>	
--	--	--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수 외에서 어떻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가?”</p> <p>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p> <p>“3백 외에 면세질(免稅秩)이 아직도 많고, 해마다 생산(生産)되므로 자연 여유가 생깁니다.”</p> <p>하매, 임금이 말하기를,</p> <p>“무릇 일에 있어 처음을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각사(各司)의 사정을 잘 살펴서 다시 품하라.”</p> <p>하였다.</p>	
<p>영조 86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11월 17일(병술) 2번째기사 집의 이민곤이 제사에 술을 쓰라고 상서했으나 왕세자가 불허하다</p>	<p>집의(執義) 이민곤(李敏坤)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지난번 대조(大朝)께서 주화(酒禍)를 깊이 염려하여 위로 태묘(太廟)에 고하는 데에도 예주(醴酒)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국가의 패망은 모두 주화에서 말미암았으니, 성명(聖明)의 이 거조는 누구라 찬탄(贊歎)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향사(享祀)에 술을 씬 삼대(三代)13615) 때부터 비롯되었음이 시서(詩書)에 나와 있습니다. 신이 삼가 주계(酒戒)의 엄격함을 상고해 보면, 주고(酒誥)13616)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르기를, ‘제사에만 술</p>	<p>○執義李敏坤上書, 略曰:</p> <p>向者大朝深軫酒禍, 上告太廟亦用醴。夫國家之敗亡, 皆由酒禍, 聖明此舉孰不贊歎? 而第酒之用於享祀, 肇自三代, 見於《詩》《書》。 臣謹按酒戒之嚴, 無如《酒誥》。 而猶曰 ‘祀茲酒惟。 天降命, 肇我民, 惟元祀。’</p>

	<p>을 쓰게 하였다. 하늘이 명을 내려 우리 백성에게 비로소 술을 만들게 하였으니, 오직 큰 제사에만 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신도(神道)의 흠향(歆饗)은 기취(氣臭)로 느끼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기취의 방결(芳潔)은 술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쭉[蕭艾]의 향기와 모혈(毛血)13617)의 성기(腥氣)에 비하여 무거우며, 정미(精微)한 뜻은 신명(神明)에 통합니다. 그러하다면 제사를 지내되 술이 없으면 비록 희생과 폐백을 모두 갖추고, 변두(籩豆)13618)를 늘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사전(祀典)을 가벼이 고칠 수 없음을 특별히 생각하시어 대조께 품하고 정신(廷臣)에게 널리 논의하여, 신의 말이 옳다고 여기시면 다시 태묘에 고하고 열조(列朝)의 구례(舊禮)를 회복하소서.”</p> <p>하니, 왕세자가 우악한 답을 내렸으나 허락하지는 않았다.</p>	<p>蓋神道之歆，假以氣臭爲主，氣臭之芳潔，無過於酒。比之蕭艾之煮、毛血之腥爲較重，精微之義，達於神明。然則祭而無酒，雖牲幣俱陳，籩豆交錯，顧何異於不祭也哉？伏願邸下，特念祀典之不可輕改，仰稟大朝，博議廷臣，如以臣言爲可，則更告太廟，以復列朝之舊禮焉。</p> <p>王世子優答，不許。</p>
<p>영조 86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11월 19일(무자) 1번째기사 동조의 칠순 진하와 문묘의 작헌례 시행에 대해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p> <p>“명년은 곧 동조(東朝)의 칠순(七旬)이시니, 세수(歲首)에 마땅히 진하(陳賀)하리라. 자전(慈殿)께서 전(殿)에 임(臨)하여 반사(頒赦)하고, 고묘(告廟)는 정조제(正朝祭)에 겸행하며, 경과(慶科)는 정시(庭試)로 거행하겠다. 전(傳)13619)에, ‘내 집 노인을 노인으로 공경하여 남의 집 노인에게까지 미친다.’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 이 나라의 경사는 국조(國朝)에 없었던 일이요, 옛 사첩(史牒)에도 드문 일이다. 추은(推恩)13620)의 정사를 어찌 그 청함을 기다리겠는가? 조신(朝臣)으로서 나이 70 이상과, 서민(庶民)으로서 나이 80 이상인 경우는 특별히 가자(加資)하라.”</p> <p>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戊子/教曰：“明年卽東朝七旬也，歲首當陳賀。慈殿臨殿頒赦，告廟以正朝祭兼行，慶科以庭試舉行。傳不云乎？‘老吾老以及人之老。’今此邦慶，國朝所無，往牒罕有。推恩之政，何待其請？朝臣年七十以上、庶民年八十以上，特爲加資。”又教曰：“文廟酌獻禮，其行已久，令儀曹以明年仲春擇日。科舉稱疊，今番則以視學爲之。”藥房都提調李天輔請進宴東朝，上曰：“年事如此，慈聖謙抑太過，當觀明年麥事而進退也。”</p>

	<p>“문묘(文廟)의 작헌례(酌獻禮)는 그 시행이 이미 오래이니, 예조로 하여금 명년 중춘(仲春)에 택일하도록 하라. 과거(科擧)가 중첩(重疊)되었으니, 금번에는 시학(視學)으로 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이천보(李天輔)가 동조(東朝)에 진연(進宴)하기를 청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연사(年事)가 이러하여 자성(慈聖)의 겸양이 지나치시므로, 명년 보리 농사를 보아서 진퇴를 결정하겠다.”</p> <p>하였다.</p>	
<p>영조 86권, 31년 (1755 을해 / 청 건륭(乾隆) 20년) 11월 23일(임진) 3번째기사 약방 도제조 이천보가 입진하여 즉위 30년의 하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p>	<p>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이천보(李天輔)가 입진(入診)하여 아뢰기를,</p> <p>“성상의 회갑(回甲) 때에 비록 효성이 무궁하심으로 인하여 칭경(稱慶)은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때 자성(慈聖)의 칠순(七旬)이 있으니 진하(陳賀)를 아울러서 받겠다는 하교가 계셨으며, 더구나 선조(先朝)에서도 즉위[卽阼] 30년의 하례를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성상께서 어찌 홀로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자성께서는 경자년(1362) 이후부터 탄일(誕日)에 하례를 받지 않으셨으며, 나의 탄일에 찬(饌)을 만들어 내리셨다. 나도 자성의 탄일에 역시 찬을 베풀었는데, 먼저 진전(眞殿)에 향사(享祀)하고, 신도 또한 같이 들겠다는 뜻을 품한 뒤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따르셨다. 옛날 노래자(老萊子)가 때때옷을 입고</p>	<p>藥房都提調李天輔入診奏曰：“聖上回甲時，雖緣孝思之無窮，不許稱慶，而其時有慈聖七旬，并受陳賀之教，況先朝亦受卽阼三十年賀矣。聖上豈獨不受乎？”上曰：“慈聖自庚子以後，不受誕日賀，予之誕日，爲饌以賜之。予於慈聖誕日亦，設饌，而以先享眞殿，臣亦同餐之意，仰稟然後始勉從焉。昔老萊子，斑衣娛親，一受拜何難？而予有不忍爲之心。予受爲慈聖之賀，則是亦予受賀也。”終不許。</p>

	<p>아버이를 즐겁게 하였으니(13623) 한번 절을 받는 것이 무어 어렵겠는가? 그러나 나는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내가 자성을 위한 하례를 받으면 이 역시 내가 하례를 받는 것이다.”</p> <p>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1월 9일 (정축) 4번째기사 병조 판서 홍봉한을 이철보로, 형조 판서 정익하를 정형복으로 교체하다</p>	<p>병조 판서 홍봉한(洪鳳漢)·형조 판서 정익하(鄭益河)를 파직하고, 이철보(李喆輔)를 병조 판서로, 정형복(鄭亨復)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임금(典獄)의 수도안(囚徒案)을 취해 보았는데 병조·형조에 간혀 있는 죄수가 있었으므로, 하교하기를,</p> <p>“왕령(王令)은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p> <p>하고,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형조 낭관(郎官)이 몰래 사람을 술집에 보내어 술을 사서 마시게 하고 그 술빚은 것을 적발하여 죄를 주게 하였는데,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p> <p>“이는 형(刑)에 걸리도록 유도한 것이다.”</p> <p>하고, 형조 낭관을 파직시켰다.</p>	<p>罷兵曹判書洪鳳漢、刑曹判書鄭益河職，以李喆輔爲兵曹判書，鄭亨復爲刑曹判書。上取覽典獄囚[徒]案，兵曹、刑曹有囚禁者，教曰：“王令當信。”命施制書有違律。刑曹郎潛令人往酒家買飲，發其釀抵罪，上聞之曰：“此導之以刑也。”罷其郎。</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1월 17일(을유) 1번째기사 유신을 불러 《자성편》을 강하고, 선혜청에 거지에게 죽을 먹</p>	<p>유신을 불러 《자성편》을 강하였다. 굶주림과 추위를 해소하려는 유개(流丐)를 선혜청(宣惠廳)에 맡겨 죽을 먹이고 거적을 나눠 주라고 명하였다.</p>	<p>乙酉/召儒臣，講自省(徧)[編]。命流丐之呼饑呼寒者，領付惠廳，饋粥給藁薦。</p>



이도록 명하다		
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2월 12 일(경술) 4번째기사 흰 무지개가 해를 꿰 뚫은 일로 사흘간 감 선하다	임금이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은 것 때문에 3일간 감선(減膳)하였다.	上以虹貫，減膳三日。
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3월 18 일(병술) 1번째기사 진휼청에서 기민 5천 4백 50명에게 닷새에 한번 건량을 주겠다고 하다	진휼청(賑恤廳)에서, 오부(五部)의 뽑아 보고한 기민(飢民) 남녀 장정 노약자 5천 4백 50명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닷새에 한 차례씩 건량(乾糧)을 나누어 주겠다고 뜻으로 임금께 아뢰었다.	○丙戌/賑恤廳，以五部抄報飢民男女壯老弱五千四百五十口，今日爲始，五日一次乾糧分給之意，聞于上。
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3월 28 일(병신) 1번째기사 관동 이정 어사 이취 중의 서계를 읽고 회 양·김성의 환곡에 대 해 묻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도 유척기(兪拓基)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섭행(攝行)토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기후(氣候)가 어떠한지를 보아, 할 만하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패초(牌招)를 어긴 옥당관(玉堂官)을 금추(禁推)하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근래에 때때로 유신(儒臣)을 소견(召見)하였으나, ‘소대(召對)’나 ‘주강(晝講)’	○丙申/藥房入診。都提調兪拓基請命攝夏享，上曰：“當觀氣候之如何，可爲則爲之，不可爲則不爲矣。”上命禁推違牌玉堂，教曰：“近日時或召見儒臣，而不曰召對、晝講者，蓋以先朝丁酉以後不行故也。先朝所不行之事，予不欲創行，故近日雖不開筵，而儒臣之連爲闕直，極爲非矣。”仍命諸承旨讀上言。上曰：“故相李頤命，聞躬臨之教，即日入城矣，今之大臣，承此下

이니 하지 않은 것은 대개 선조(先朝) 정유년(1375) 이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조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던 일을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사이 비록 경연을 열지는 아니하였지만, 유신이 연달아 꺾직(闕直)하는 것은 지극히 그릇된 일이다.”

하였다. 이어서 여러 승지에게 상언(上言)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 상신(相臣) 이이명(李頤命)은 임금이 몸소 임한다는 하교를 듣고 그날 즉시 도성으로 들어왔지만, 오늘날의 대신은 이런 하교를 받들고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내 비록 몸소 임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과천(果川)의 감옥까지 갈 수 있겠는가? 현옥(縣獄)에서 대명(待命)한 것은 이광좌(李光佐)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광좌의 모든 일에 대해 죄다 그릇되었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 일에 있어서는 본받으니, 내가 그것을 비웃는다.”

하였다. 관동 이정 어사(關東釐正御史) 이최중(李最中)으로 하여금 서계(書啓)를 읽으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회양(淮陽)·김성(金城)의 빈 껍질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최중이 말하기를,

“회양은 5천 석 안에 빈 껍질이 4천 석이고, 김성은 4천 석 안에 빈 껍질이 1천 석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불태워버리고자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았더니, 비록 빈 껍질이라 하더라도 수천 석을 일시에 불태운다면, 거의 하늘이 내려

教而不爲入來。予雖欲躬臨，豈可往果川囹圄乎？縣獄待命，始於李光佐，其前則無之矣。光佐之每事，皆以爲非，而獨於此事效之，予則笑之。”命關東釐正御史李最中讀書啓，上曰：“淮陽、金城空殼幾何？”最中曰：“淮陽則五千石內，空殼爲四千石；金城則四千石內，空殼爲一千石。初則欲盡爲燒火，更思之，雖曰空殼，累千石之一時燒火，殆近於暴殄天物，別爲封置於外庫而來矣。”上命均給民人，以餉農牛，并爲蕩滅。又因最中陳達，關東留庫還穀，分數加分，俾助饑民種糧。賑穀加劃，亦令備局稟處。

	<p>준 물건을 마구잡이로 없애는 데 가까울 것 같아 따로 외고(外庫)에 봉해 두고 왔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 농우(農牛)에게 먹이고, 모두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또 이최중의 진달로 인하여 관동의 창고에 남겨둔 환곡을 수대로 나누어 더 분배하여 굶주린 백성들의 종자와 양식을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곡(賑穀)을 더 획급(劃給)하는 것도 또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b>【태백산사고본】</b></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4월 4일 (신축) 3번째기사 유신·팔도 구관 당상 의 입시를 명해 북도 의 진휼 등을 논의하 다</p>	<p>임금이 유신(儒臣)과 팔도 구관 당상(八道句管堂上)에게 입시를 명하였다. 상번(上番) 원인손(元仁孫)에게는 《시전(詩傳)》의 청묘습(淸廟什)을, 하번(下番) 정상순(鄭尙淳)에게는 민여소자습(閔予小子什)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승지와 사관들이 차례로 읽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술을 빚고 단술을 빚어 조상에게 올린다.’고 하였으니, 옛날에 술과 단술은 각각 그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술이 없다 하여 단술도 또한 따라서 없을 수 없고, 또한 단술이 있다 하여 술도 또한 따라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근래에 술을 금한 이후로 여항(閭巷) 가시(街市)에서 욕을 하며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가?”</p> <p>하니, 병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이 말하기를,</p> <p>“추조(秋曹)와 경조(京兆)에 쟁송(爭訟)이 영원히 그쳐, 곤장을 시행할 곳이 없으며, 거의 형벌을 쓰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은 술의 금지가 불러온 효험입</p>	<p>上命儒臣及八道句管堂上入侍。上番元仁孫，讀《詩》傳《淸廟什》，下番鄭尙淳，讀《閔予小子什》。承、史以次讀訖，上曰：“《詩》云，‘爲酒爲醴，烝畀祖妣，’古者酒、醴各有其名。以此觀之，不可以酒之無，而醴亦隨而無也，亦不可以醴之有，而酒亦隨而有也。近日禁酒之後，閭巷街市之間，無詬辱爭鬪之事云，信乎？”兵判洪象漢曰：“秋曹、京兆爭訟永息，箠答無所施，幾至乎刑措不用，此禁酒之速效也。”上問北道農形，句管堂上李喆輔曰：“所聞實多驚慘。田米一斗價，至百錢而亦不得買，民事違急，實有朝夕難支之慮。借令請後賑穀，如</p>

	<p>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북도(北道)의 농사 형편에 대해 물으니, 구관 당상(句管堂上) 이철보(李喆輔)가 말하기를,</p> <p>“소문에 실로 놀랍고 참혹한 것이 많습니다. 전미(田米) 1두(斗)의 값이 심지어 1백 전(錢)에 이르는데도 또한 살 수가 없을 지경이니, 민사(民事)가 황급하게도 실로 조식간을 지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습니다. 가령 청한 뒤의 진곡(賑穀)을 그 수대로 가져다 먹인다 해도 거의 타는 술에 한움큼 물을 부은 것과 같을 것인데, 북도의 백성은 복이 없어 조선(漕船)도 치패(致敗)하였습니다.”</p> <p>하였고, 홍상한이 말하기를,</p> <p>“북백(北伯)은 진곡(賑穀)을 청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 나머지 일찍이 변통하지 못하였고 장청(狀請)도 조금 늦어 때에 뒤진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 바야흐로 지금 팔도에 흉년이 들어 진휼하지 않을 곳이 없으니, 조정에서 진곡을 넉넉히 지급할 것은 비록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도신(道臣)의 도리로서는 베풀어 주거나 주지 않거나를 계교하지 말고 때에 맞춰 많이 청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하지 아니하였으니, 도신의 일은 진실로 연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數往哺， 殆同焦釜之勺水， 而北民無祿， 船運且敗矣。” 象漢曰：“北伯難於請穀， 不能早自變通， 而狀請稍晚， 不無後時之慮矣。” 上曰：“然矣。 方今八路皆歉， 無處不賑， 朝廷之優給賑穀， 雖未可料， 其在道臣之道， 不計施不施， 及時多請宜矣。 而不此之爲， 道臣事誠弱矣。 然而予豈不念？” 命書傳教曰：</p> <p>頃者北伯所請， 已非濫也， 而本道運穀臭載者， 至於七百石之多。 此則道臣自當竭心區處， 而南穀之臭載， 又至二千七百八十石。 仲夏不遠， 及今不爲區劃， 則何以繼賑？ 思之及此， 不覺寒心。 噫！ 嶺南形勢豈不顧也， 而爲王者亦豈忍北民之填於溝壑乎？ 自備局分付嶺南， 卽爲依數代運後狀聞， 亦令咸鏡都事， 一體督運。</p> <p>上問諸道民事緩急、雨澤多少， 句管堂上以次仰對。 訖， 諸臣皆請夏享， 只爲省牲， 仍卽還宮， 上不聽。</p>
--	---	--

	<p>하고, 전교를 쓰라고 명하였는데, 이르기를,</p> <p>“접때 북백이 청한 바는 이미 외람된 것이 아니었다만, 본도(本道)에서 운반하는 곡식으로서 물에 빠진 것이 자그마치 7백 석에 이르렀다. 이것은 도신이 스스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구처(區處)해야 할 것이나, 남쪽 곡식이 물에 빠진 것이 또 2천 7백 80석에 이르렀다. 한여름이 멀지 아니하니, 지금 구획(區劃)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속 진휼을 할 것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나도 모르게 한심해진다. 아! 영남의 형편을 어찌 돌아보지 않겠는가마는, 왕이 된 사람이 또한 어찌 차마 북도 백성들을 구렁에 뒹굴게 할 수 있겠는가? 비국(備局)에서는 영남에 분부하여 곧바로 수대로 대신 운반해 준 뒤에 장문(狀聞)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함경 도사(咸鏡都事)로 하여금 일체 운반을 감독하게 하라.”</p> <p>하였다. 임금의 여러 도의 민사(民事)의 늦고 빠름과 비의 많고 적음을 묻자, 구관 당상이 차례로 우러러 대답하였다. 대답을 마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하향 대제(夏享大祭)에는 단지 희생만 살펴보고 곧바로 환궁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4월 16일(계축) 1번째기사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각사의 원수 외의 원역을 이정토록 하다</p>	<p>임금이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으니, 대개 16일에 비국에서 입시하기로 새로 정식했기 때문이었다. 병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이 기민(飢民)에게 단지 건량(乾糧)만을 지급하므로 거짓으로 서로 속이고 있으니, 연용대(鍊戎臺)에서 죽을 쑤어 먹이는 것만 못하다고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죽을 쑤는 일은 지나치다.”</p> <p>하였다. 광주 유수(廣州留守) 홍봉한(洪鳳漢)이 남한 산성의 지도를 올리니,</p>	<p>癸丑/上引見備局堂上, 蓋十六日備局入侍, 有新定式故也。 兵曹判書洪象漢, 以饑民之只給乾糧, 虛偽相蒙, 不如設粥於鍊戎臺爲達, 上曰: “設粥則過矣。” 廣州留守洪鳳漢進南漢地圖, 上曰: “觀南漢圖多矣, 此最詳矣。” 鳳漢又以守禦使若依前入京, 自可除弊爲達, 上命應教元仁孫爲廣州查正御</p>

	<p>임금이 말하기를,</p> <p>“남한 산성의 지도를 본 것이 많은데, 이것이 가장 상세하다.”</p> <p>하였다. 홍봉한이 또 수어사(守禦使)가 만약 전처럼 서울에 들어온다면 저질로 폐단을 덜 수 있다고 아뢰자, 임금이 응교 원인손(元仁孫)을 광주 사정어사(廣州查正御史)로 삼아 사례(事例)의 과람(過濫)한 것을 취하여 상고한 뒤에 모두 이정(釐正)토록 하라고 명하였다. 또 이성중(李成中)·신희(申晦)에게 명하여 안으로는 정원(政院)·옥당(玉堂)·춘방(春坊)·계방(桂坊)부터 밖으로는 각사(各司)의 원역(員役)으로서 《속대전(續大典)》의 원래 수 밖의 증가된 것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정하게 하였다.</p>	<p>史，取考事例之過濫者，并爲釐正。又命李成中、申晦，內自政院、玉堂、春·桂坊，外至各司員役之《續典》外增加者，亦爲釐正。</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4월 19일(병진) 3번째기사 어의에게 명하여 영성군 박문수의 병을 간호케 하다</p>	<p>어의(御醫)에게 명하여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의 병을 간호하게 하였다.</p>	<p>命御醫，持藥物看護靈城君朴文秀病。</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5월 1일(무진) 2번째기사 내관 신치하를 대정현에 나인 해정을 거제부에 도배하다</p>	<p>내관(內官) 신치하(申致夏)를 대정현(大靜縣)에 도배(島配)하였으니, 주대(奏對)에 두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인(內人) 해정(海貞)을 거제부(巨濟府)에 도배하였으니, 금주하고 있는 때임에도 궁중에서 술을 빚었기 때문이었다.</p>	<p>內官申致夏大靜縣島配，以奏對無倫也。內人海貞巨濟府島配，以禁酒之時，闕中有釀也。</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2월 9일 (정미) 2번째기사 사단에 기곡제를 지내 다</p>	<p>밤에 사단(社壇)에 제사를 지냈으니, 기곡제(祈穀祭)였다. 이때 봄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임금(英祖)이 바야흐로 제사하려 할 즈음에 문득 병이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부축해 막차(幕次)에 들어가 삼탕(蔘湯)을 드니 약간 나아졌다. 여러 신하들이 당황해 하며 섭행(攝行)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연 3일간 목욕했는데, 조금 전에 정신이 갑자기 혼미(昏迷)했었던 것은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지금 기곡제를 지내어 만약 풍년이 든다면 비록 몸으로써 백성들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하고, 다시 단(壇)으로 나아가 예를 마치고 막차로 돌아왔다. 동조(東朝)께서 놀라 걱정할까 염려하여 경덕궁(慶德宮)으로 나아가 조섭(調攝)하였다.</p>	<p>夜，有事社壇，祈穀也。時春寒甚，上方將事，忽病作不省。扶入幕次，進蔘湯少瘳。諸臣違遽，齊請攝行，上曰：“予連三日沐浴，俄者精神之忽地昏迷，無乃坐是耶？予方祈穀，歲若豐登，雖以身代民，無憾也。”復詣壇所，禮畢還次。慮東朝驚憂，詣慶德宮調攝。</p>
<p>영조 87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2월 18 일(병진) 7번째기사 밤 4경에 진전의 동쪽 뜰에 나가 단석을 펴 고 북향하여 사과하다</p>	<p>밤 4경에 임금(英祖)이 진전(眞殿)의 동쪽 뜰에 나아가 단석(單席)을 펴고 북향하여 엎드리니, 좌승지 김상복(金相福)과 사관(史官)이 허둥지둥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신하들이 다시 봉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진전에 입으로 고했다. 그런데 이제 오르내리시는 선조의 혼령을 속였기에 사과하고자 하니, 통탄스럽고 통탄스럽다. 또 이른바 ‘공화 건극(功化建極)’이란 무슨 뜻인가? 이미 나에게 여덟 글자를 씌우고 또다시 이와 같이 하니, 대신들이 과연 잘못이다. 속담에 ‘비록 성(城) 위에서 떨어져도 손 안의 유자(柚子)를 차마 놓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 사람은 비록 역률(逆律)에 들어도 당슴을 차마 놓지 못하니, 심히 괴이하다.” 하였다. 승지가 대내(大內)로 들어가기를 힘써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듣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 쉼이 이미 열려 약방(藥房)의 여러 신하들이 속미음(粟米飲)을 올렸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예조 판서 이성중(李成中)이 허둥지둥 구대(求對)하여 말하기를,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종이를 펴서 의릉(懿陵)의 능 위에서 전반(奠飯)하다가 수복(守僕)에게 붙잡혔으므로, 구류(拘留)하고 있다고 능관(陵官)이 보고하</p>	<p>夜四更，上御眞殿東庭，布單席，北向伏，左承旨金相福及史官蒼黃入侍。上曰：“予以諸臣，更不爲黨之意，口告眞殿矣。今欺陟降，欲爲謝過矣，痛矣痛矣。且所謂功化建極者，卽何義也？既蒙我以八字，而又復如此，大臣果非矣。諺曰，‘雖墮城上，手中柚子則不忍捨。’今人雖入逆律，黨習則不忍捨，甚怪矣。”承旨力請還內，上終不聽。天向曙，闕門已開，藥房諸臣進粟米飲，上終不許。禮曹判書李成中蒼黃求對曰：“昨夕有人布紙，奠飯于懿陵陵上，見捉於守僕，仍卽拘留，陵官以此報來矣。”上驚甚，始御養志堂，下太僕親鞫之令。</p>

	<p>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매우 놀라 비로소 양지당(養志堂)으로 나아가 태복시(太僕寺)에서 친국(親鞫)한다는 명령을 내렸다.</p>	
<p>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7월 4일 (기사) 1번째기사</p> <p>태묘에 전알하고 육상궁에 거동하다. 연로의 길을 닦는 데 민력을 쓰지 말게 하다</p>	<p>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육상궁(毓祥宮)에 거동하였다. 명릉(明陵)의 전알을 8월 초 길일로 정하였는데, 기영(畿營)에 신칙하여 연로(輦路)는 절대 넓게 닦지 말며 화곡(禾穀)을 범하지 말게 하였다. 그리고 횃불을 쬐고 길을 닦는 등의 역사(役事)는 모두 저치미(儲置米)를 지급하고 민력(民力)을 쓰지 말게 하였다.</p>	<p>○己巳/上詣太廟展謁，仍幸毓祥宮。明陵展謁，定以八月初吉，飭畿營，輦路切勿廣治，毋犯禾穀。植炬、治道等役，皆給儲置米，勿用民力。</p>
<p>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7월 9일 (갑술) 3번째기사</p> <p>수원 부사 김선행이 백성들에게 유고향미를 나눠줄 것을 상서하다</p>	<p>수원 부사 김선행(金善行)이 상서하여 백성들의 거꾸로 매달린 듯한 형편과 양식이 떨어져 농사를 폐하게 된 정상을 갖추어 진달하고, 유고향미(留庫餉米)를 얻어 농사 지을 물자로 더 나누어 줄 것을 청하니, 왕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水原府使金善行上書，備陳民勢倒懸、糧絕廢農之狀，請得留庫餉米，以爲加分作農之資，王世子令廟堂稟處。</p>
<p>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7월 30일(병신) 3번째기사</p> <p>약방 제조와 예방 승지가 청대하여 명릉 행차의 연기를 청하자</p>	<p>약방의 세 제조와 예방 승지가 함문(閤門)에 나아가 청대하니, 임금이 하교하여 책망하기를,</p> <p>“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마땅히 수라를 그만 들겠다.”</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藥房三提調、禮房承旨詣閤請對，上下教責之曰：“若如此，當停水刺矣。”又教曰：“宴禮則強請，而當行之禮則欲挽之，此亦將順其美乎?”</p>



<p>책망하다</p>	<p>“연례(宴禮)는 억지로 청하고, 응당 행해야 할 예(禮)는 만류하고자 하니, 이 또한 그 아름다움에 순종하는 것인가?”</p> <p>하였다.</p>	
<p>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8월 5일 (신축) 1번째기사 왕세자가 영의정 이천보의 건의로 북도 개시 때 문위주를 사용토록 하다</p>	<p>왕세자가 차대를 행하였다.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북도에서 개시(開市)할 때 문위주(問慰酒)는 교린(交隣)하는 일에 관계되는데, 일찍이 동래·의주의 논보(論報)로 인해 대조(大朝)께 폄하되었더니, 실상 대로 회유(回諭)토록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에 의거해 함이 옳겠습니까?”</p> <p>하니, 왕세자가 허락하였다.</p>	<p>辛丑/王世子行次對。 領議政李天輔以爲：“北道開市時問慰酒，事係交隣，而曾因東萊、義州之論報，稟於大朝，俾以實狀回諭。 今亦依此爲之可乎？” 王世子許之</p>
<p>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9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임금이 몸이 불편하여 약방에서 번갈아 입직하고, 조석으로 문안하다</p>	<p>임금이 몸이 불편하여 약원에서 번갈아 입직하였다. 강서원(講書院)과 조정(朝廷)에서 문안(問安)하였는데 이날부터 아침·저녁으로 행하게 되었다. 임금이 간간히 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감히 폐하지 못하였다.</p>	<p>辛未/上違豫，藥院輪直。 講書院、朝廷問安，自是日朝夕行之。 上間命勿爲，而不敢廢。</p>
<p>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9월 14일(기묘) 1번째기사 약방에서 연달아 입진하다. 유신을 불러 《자성편》을 읽으라고 명하다</p>	<p>약방에서 연달아 입진하였다. 유신을 불러 《자성편(自省編)》을 읽으라고 명하였다.</p>	<p>己卯/藥房連爲入診。 召儒臣，命讀《自省編》。</p>

을 읽게 하다		
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9월 21 일(병술) 2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여 육 군자탕을 듣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의 바야흐로 육군자탕(六君子湯)을 들며 웃으면서 말하기를, “비록 약 이름이기는 하지만, 이미 ‘군자(君子)’라 했으니 먹을 때 마음이 어 떠하겠는가?” 하였다. 도제조 유척기(兪拓基)가 말하기를, “기(氣)와 담(痰)은 비유하자면 소인(小人)과 같습니다. 소인을 다스림에 있어 어찌 군자로써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다고 칭찬하였다.	○藥房入診。上方進六君子湯，笑曰： “雖是藥名，既曰六君子，則飲之之時， 心甚如何矣？”都提調兪拓基曰：“氣與 痰，比則猶小人也。治小人，豈不以 君子乎？”上稱善。
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10월 5 일(기사) 1번째기사 오시에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오시(午時)에 천둥하고 번갯불이 번쩍였으며, 우박이 쏟아졌다. 임금이 천둥 의 이변(異變) 때문에 자신을 나무라는 하교를 내리고 7일 동안 감선(減膳)할 것을 명하였다. 삼공(三公)이 차자를 올려 면직을 바라고, 후원(喉院)·옥서(玉 署)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면계(勉戒)하였으니, 이것은 의례적인 것이다. 임금 이 모두에게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己巳/午時，雷動電光雨雹。上以雷 異，下責躬之教，仍命減膳七日。三 公陳筮乞免，喉院、玉署交章勉戒，例 也。上并優批答之。
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10월 20 일(갑신) 3번째기사 금주의 법을 엄히 시 행하여 중벌을 줄 것 을 명하다	임금이 금주(禁酒)한 이후에도 금양(禁釀)을 범하는 일이 계속된다 하여, 지금 부터 이후로는 술을 빚다 잡힌 자는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그 사서 마신자를 캐묻되, 술을 빚은 자는 형(刑)을 면제하여 단지 도배(鳥配)만 시키고, 사서 마신 자는 엄하게 형신하여 영원히 잔읍(殘邑)의 노비로 소속시킬 것이며, 선 비로 이름하는 자는 이름을 청금(靑衿)에서 깎고 엄하게 3차례 형신하여 멀 리 귀양보내고, 중서(中庶)는 엄하게 형신하여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수군(水 軍)에 충정(充定)시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上以禁酒之後，犯釀相續，命自今以後 釀酒被捉者，嚴刑究問其買飲者，釀者 除刑只施鳥配，買飲者嚴刑永屬殘邑奴 婢，以儒爲名者刊名靑衿，嚴刑三次遠 配，中庶嚴刑三次，勿限年充定水軍。
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 (乾隆) 21년) 10월 26 일(경인) 2번째기사	----- -----	召大臣及均役堂上李譽、戶曹判書閔 百祥，教曰：“予意欲使米穀自相流行， 以至漸次有裕，昨聞備局勒定貢價，市 人因此操縱，故貢人反受其弊云。物

<p>대신과 균역청 당상 이후 등을 인견하고 미곡의 공가에 대해 논의하다</p>	<p>대신과 균역청 당상 이후(李耆), 호조 판서 민백상(閔百祥)을 불러 하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미곡(米穀)이 저절로 서로 유통되어 점차 여유가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어제 들으니, 비국(備局)에서 억지로 공가(貢價)를 정했기에 시인(市人)들이 이로 인해 조종을 하므로 공인(貢人)이 도리어 그 폐를 받는다고 한다. 물가가 고르지 아니한 것은 물가의 본래 정세(情勢)가 그런 것인데, 어찌하여 억지로 정할 수 있단 말인가?”</p> <p>하니, 우의정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낭청(郎廳)에게 신칙하여 서로 합의하여 팔고 사게 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찌 억지로 정한 일이 있었겠습니까?”</p> <p>하였고,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공인·시인을 논할 것 없이 조정에서 마땅히 신칙했을 뿐입니다. 어찌 억지로 값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市民)들의 일이 참으로 절통합니다. 어제 현재 있던 곡식들이 오늘 죄다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한번 비가 오</p>	<p>之不齊，物之情也，何可勒定乎?” 右議政申晩曰：“不過申飭郎廳，使之和賣和買而已。寧有勒定之事乎?” 左議政金尙魯曰：“勿論貢人、市人，朝家當申飭而已。何可勒定價本乎? 市民事誠切痛。昨日見在之穀，今日盡歸何處耶? 一雨一暘之間，高下市直，因此射利，此則貨權歸於下故耳。嚴飭該署，使不得操縱可矣。” 上曰：“所可痛者，市人藏穀操縱致有此弊。若行頃年臬示之請，則必不敢乃爾。而《孟子》有‘四境不治’之語，《大學》有‘一人定國’之言，此豈非君上之過乎?”</p>
--	---	--

	<p>고 한번 별이 나는 사이에 시가(市價)를 올리고 내려 이로 인해 이익을 노리는 것이니, 이것은 재화(財貨)를 다루는 권한이 아래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서(該署)에 엄하게 신칙하여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p> <p>“통탄스럽게 여길 바는 시인이 곡식을 감추어 두고 조종하여 이런 폐단을 초래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의 효시(梟示)하자는 청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맹자(孟子)》에 ‘사경(四境)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대학(大學)》에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말이 있으니, 이 어찌 군상(君上)의 허물이 아니겠는가?”</p> <p>하였다.</p>	
<p>영조 88권, 32년 (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11월 23일(병진) 1번째기사 대비전에 환후가 있자 약원의 신하들을 소견하다</p>	<p>대비전(大妃殿)에 환후(患候)가 있었다. 임금(君)이 약원의 여러 신하를 소견하고 말하기를,</p> <p>“옛날 7년 동안 시탕(侍湯)했을 때에 자성(慈聖)께서는 항상 좌우에서 시탕하시며 낮부터 밤까지 의대(衣襟)를 벗지 않으신 채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일찍이 한쪽으로 기대는 일도 누워서 쉬시는 때도 없었다. 나는 아홉 살 때부터 우리 자성을 모셨는데, 언제나 우러러 볼 때면 반드시 기뻐하시었다. 오늘 꿈속에서도 생각지 않게 이처럼 편찮으시어 피부가 작년만 못하고 맥후(脈候)도 또 작년만 못하다. 조금 전에 시좌(侍坐)하여 상세히 우러러 보았더니, 신기(神氣)가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눈을 움직여 보고자 하시지도 않으시고 손을 들어 물건을 잡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셨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정</p>	<p>○丙辰/大妃殿有患候。 上召見藥院諸臣曰：“昔年七年侍湯之時，慈聖常左右侍湯，終晝達夜，而不解衣襟，不離須臾，未嘗有跛倚之事，未嘗有臥息之時矣。予自九歲，侍我慈聖，每時瞻仰，必用悅豫。今日夢寐之外，有此違豫，肌膚不及昨年，脈候又不及昨年。俄者侍坐，詳細仰瞻，則神氣憊眩，眼部不欲舉而視人，手部不欲舉而</p>

	<p>신과 혼백을 잃은 듯 능히 진정할 수가 없어 지난밤에는 옷을 벗지도 않고 지냈고, 아침에 수라를 들지 않았어도 또한 배고픈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p>	<p>取物。予心杳杳神魂如失，不能鎮定，去夜不解衣而經過，朝來不御水刺，而亦不飢矣。”</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월 16 일(무신) 1번째기사 명정문에 나가 조참을 행하고 동·서반으로 하여 폐단을 진달케 하다</p>	<p>임금이 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고 동반·서반으로 하여금 각기 폐단을 진달하게 하였는데, 감찰 장한봉(張翰鳳)이 성의(聖意)를 스스로 힘써 가다듬을 것과 동궁(東宮)은 학문에 힘쓸 것을 우러러 권면하고, 또 수령을 가려 뽑아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니, 임금이 그를 포장(褒獎)하여 우직(右職)에 조용(調用)하도록 명하였다. 호조 판서 민백상(閔百祥)이 말하기를,</p> <p>“관동(關東)과 호서(湖西) 양 도의 도신이 연분(年分)13875) 하는 전지의 총계를 마감하여 보고하는 장계에서 묵은 땅을 조사하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등의 명색(名色)으로 비총(比摠)13876) 내에서 제하고 계산한 것은 사무(事目)에 어긋남이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양 도신을 잡아다 추문(推問)하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p> <p>“흉년이 든 해에는 농사를 짓도록 권면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이렇게 춘경(春耕)이 장차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르러 묵은 전지를 기경(起耕)하도록 하는 일을 별도로 더 신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은 전지는 기꺼이 경작하려 하거나 기꺼이 경작하려 하지 않는 것을 논하지 말고 씨앗과 양식을 헤아려 지급하여 일일이 경작하도록 권면하고, 강등(降等)·강속(降續)은 일일이 직접 살펴 보아 혹시라도 서로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각도에 분부하소서. 그리고 흉년을 당하여 곤궁한 백성들이 반드시 농우(農牛)를 보유할 수 없을 것이니, 도살[屠宰]을 금지하는 일 또한 거듭 엄중히 함이 마땅하겠습니다.”</p>	<p>戊申/上御明政門，行朝參，令東、西班各陳弊瘼，監察張翰鳳，以聖意自強、東宮勸學仰勉，且陳擇守令之意，上獎之，命調右職。戶曹判書閔百祥言：“關東、湖西兩道臣，於年分田摠報勘之狀，以查陳免稅等名色，計除於比摠之內者，有違事目。”上命拿問兩道臣。左議政金尙魯言荒歲勸農爲急務，及此春耕將始之時，陳田起耕事，不可不另加申飭。陳田無論肯耕不肯耕，量給種糧，一一勸耕，降等、降續一一親審，毋或相混事，分付各道。當此飢荒，窮民必不能保有農牛，屠宰之禁，亦宜申嚴。”上可之。綾昌君櫛請東朝進宴，尙魯以爲：“時當春賑，不敢遽請矣。”上曰：“予以望七之年，上奉望八國母，實往牒所罕。大臣宜於歲首仰請，而尙此寂然，乃以春賑爲言，誠慨然矣。”</p>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榘)이 동조(東朝)에 진연(進宴)할 것을 청하자, 김상로가 말하기를,</p> <p>“봄철의 진휼하는 시기가 닳쳤으므로, 감히 갑자기 청하지 못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80세를 바라보는 국모(國母)를 위로 받들고 있는데, 진실로 지난 사책에도 드문 바이다. 대신은 세수(歲首)에 앙청(仰請)했어야 마땅한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바로 봄철의 진휼 때문이었다고 말하니, 참으로 매우 서글프다.”</p> <p>하였다.</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1월 29 일(신유) 1번째기사 관동의 금년 가을 삭 선을 정지토록 하다</p>	<p>관동(關東)의 금년 가을 삭선(朔膳)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p>	<p>辛酉/命停關東今秋朔膳</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1월 29 일(신유) 4번째기사 호조 판서 민백상의 건의로 호남의 저치미</p>	<p>호조 판서 민백상(閔百祥)이 진휼청에 저축된 곡식이 이미 다 떨어져 이 뒤로 발매(發賣)와 분진(分賑)을 분배(分排)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청하기를,</p> <p>“호남청(湖南廳)의 창고에 보관된 묵은 쌀 1만 석(石)과 각청(各廳)의 감분미(減分米)에 한하여 모두 진휼청으로 이송(移送)하게 하고, 양호(兩湖)의 저치미(儲置米) 또한 1만 석에 한하여 나누어 보내게 해서 지금 배로 운송하여</p>	<p>戶曹判書閔百祥，以賑廳穀儲已竭，此後發賣與分賑，難以分排，請：“湖南廳留庫舊米限萬石與各廳減分米，並移送賑廳，兩湖儲置米亦限萬石劃送，俾及今船運繼給焉。”上可之。百祥又言：“饑民迫付者，厥數甚夥，無賴者</p>

<p>를 옮기고, 기민의 감독을 엄정히 하도록 하다</p>	<p>계속 지급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민백상이 또 말하기를,</p> <p>“기민(飢民)으로 추후에 내붙인 자는 그 숫자가 매우 많고, 무뢰(無賴)한 자들이 섞여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각부(各部)로 하여금 부장 한 사람을 가설(加設)하고, 또 군문(軍門)에서 일을 잘 아는 장교(將校)를 가려 뽑아 각부에 나아가 기민을 정밀히 가리게 하고, 성책(成冊)을 수정(修整)해서 5일마다 분진(分賑)할 때 원래의 기민(飢民)과 같이 진휼청에 영부(領付)하게 하소서. 그리고 진휼청의 낭청 두 사람으로는 두루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청컨대 선혜청 낭관 다섯 사람을 오부(五部)에 나누어 소속시켜 관장하여 진휼을 감독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多有混入，實惠不得下究。請令各部加設部將一人，又自軍門擇將校解事者，就各部精抄飢民，修整成冊，每五日分賑時，與元飢民領付賑廳。而賑郎二人有難周察，請以惠郎五人分屬五部，旬管監賑。”上竝從之。”</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2월 2일 (갑자) 1번째기사 선무사에 나가 작헌례를 행하고, 의소묘·남관왕묘에 거둥하다</p>	<p>임금이 선무사(宣武祠)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서 의소묘(懿昭墓)에 거둥하고, 지나는 길에 남관왕묘(南關王廟)에 나아갔다. 임금이 선무사에 이르러 읍례(揖禮)와 작헌례를 행하고, 이를 마치자 수위(首位)의 술잔을 가져다 임금이 먼저 마시고, 이어서 승지와 시위한 여러 신하들에게 내려 주어 차례로 마시도록 하였다. 또 부위(副位)의 술잔을 가져 오게 하여 충신(忠臣)의 후손 및 명(明)나라 사람의 후손에게 내려 주도록 명하고, 임금이 수심에 잠겨 말하기를,</p> <p>“황하(黃河)가 맑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흐리니, 오늘 제주(祭酒)로 그런 마음을 씻으려는 것일 뿐이다.”</p>	<p>甲子/上臨宣武祠，行酌獻禮，仍幸懿昭墓，歷臨南關王廟。上至宣武祠行揖禮酌獻畢，命取首位爵，上先飲，仍賜承旨，侍衛諸臣，以次飲。又命取副位爵，賜忠臣後孫及皇朝人後孫，上愀然曰：“黃河不清世人皆濁，以今日祭酒，欲洗其心耳。”</p>

	<p>하였다.</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2월 19일(신사) 2번째기사 호조에 기민 진휼과, 호서·영남·관동의 재결의 실결 환원을 감하도록 명하다</p>	<p>혜청 당상에게 명하여 기민(飢民)에게 건량(乾糧)을 지급하는 일을 돌아가며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두 사람의 당상관이 모두 도감 당상의 직임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다. 또 호조 판서에게 명하여 진휼청에 가서 죽(粥)을 마련하여 기민에게 먹이게 하였다. 또 기진(畿甸)과 관동(關東)에 국휼(國恤) 때에 전례(前例)로 하던 복정(卜定)13888) 을 면제하도록 명하고, 또 호서(湖西)·영남(嶺南)·관동 세 도의 재결(災結)을 실결(實結)로 환원시킨 것을 감하도록 명하였다.</p>	<p>○命惠廳堂上，輪回監給飢民乾糧，時兩堂竝帶都監堂上，有是命。又命戶判，往賑廳設粥，以饋飢民。又命除畿甸、關東國恤時前例卜定，又命減湖西、嶺南、關東三道災結還實者。</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2월 20일(임오) 25번째기사 양심합에 나가 시임·원임 대신들을 인견하고 소선의 정지 등을 논의하다</p>	<p>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약방의 세 제조, 대신을 인견 하였는데, 모두 소선(素膳)을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동조(東朝)께서는 하루도 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어찌 성복(成服)한 뒤를 기다리겠는가? 나의 경우 방반(傍盤)을 설치하지 않고 밖에 있을 적에는 소선을 하고 대내(大內)에 들어와서는 고기를 먹는다면, 소선을 마련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동궁(東宮)에 이르러서는 오늘 밥을 먹도록 권하고 내일 고기를 먹도록 권하는 것은 너무 급박한 듯하다. 성인(聖人)이 말하기를, ‘예법과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대리하는 원량에게 고기를 먹도록 청하는 일은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할 수 없다.”</p> <p>하였는데,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p> <p>“성상의 하교가 지극히 마땅합니다. 신 등이 날짜를 조금 늦추어 청하는 것이</p>	<p>上御養心閣，引見時原任大臣、藥房三提調、大臣，皆言不當進素膳，上曰：“東朝則一日爲難，豈待成服後乎？予則不設傍盤，素膳在外而肉味入內，有何設素之意？至於東宮，則今日勸飯，明日勸肉，太似急迫。聖人曰，‘能以禮讓爲國乎何有？’今若遽然請肉於代理之元良，不可使聞於隣國矣。領議政李天輔曰：“聖教至當。臣等當稍退日以請矣。”左議政金尙魯曰：“國恤時大、中、小祀，《五禮儀》則卒哭後行之，《喪禮補編》則公除後行之，以手下故也。然公除爲視事限也，今以公除後行祀，似太急矣。以群臣服言之，乃是不杖墓，而公除後百官着白布帽帶，豈不太急乎？”上曰：“予則公除</p>



	<p>적당하겠습니다.”</p> <p>하고,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는 말하기를,</p> <p>“국휼(國恤) 때에 대·중·소의 제사에 대하여 《오례의(五禮儀)》에는 졸곡(卒哭) 뒤에 행한다고 하였고, 《상례보편(喪禮補編)》에는 공제(公除) 뒤에 행한다고 하였으니, 손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제는 정사를 보는 한계가 되는 것인데, 지금 공제 뒤라고 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너무 급박한 듯합니다. 그리고 못 신하들이 상복(喪服)에 대해 말한다면, 이는 바로 부장 기복(不杖碁服)인데, 공제 뒤에 백관이 백포모(白布帽)와 백포대를 착용한다면 어찌 너무 급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는 공제하고 익선관(翼善冠)을 쓰니, 그것은 바로 오모(烏帽)인 것이다.”</p> <p>하였다. 김상로가 말하기를,</p> <p>“어찌 전하께서 공제하셨다고 하여 신 등도 복을 벗겠습니까?”</p> <p>하였는데, 임금이 홍계희(洪啓禧)를 돌아다보며 말하기를,</p> <p>“이 단락(段落)은 《상례보편》의 범례주(凡例註)에 있는데, 내상(內喪)은 졸곡(卒哭) 뒤에 백포를 착용하지만, 만약 내상이 먼저 있으면 공제(公除) 뒤에 백포를 착용한다고 하였으니, 과연 어떤가?”</p>	<p>着翼善冠，卽烏帽也。”尙魯曰：“豈以殿下公除，而臣等亦除之乎？”上顧洪啓禧曰：“此段在於《補編》凡例註，內喪則卒哭後白布，而若內喪在先，則公除後白布云，果何如？”啓禧曰：“以今年比諸庚戌，則在殿下固有異焉，而於群下則今年與庚戌何異也？在先之說，差誤矣。”上命百官白布，依庚戌例舉行。後乃以《補編》中在先二字，卽壓尊之意改，命臣僚，依《補編》於公除後，白帽白帶，以終碁年。</p>
--	--	--

	<p>하자, 홍계희가 말하기를,</p> <p>“금년을 경술년(1389)에 비교하면 전하에게는 진실로 다름이 있겠지만, 못신하들에게 있어서는 금년이나 경술년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내상(內喪)이〉 먼저 있을 경우에 대한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백관들에게 백포의 착용을 경술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상례보편》 중의 먼저 있을 경우[在先]라는 두 글자는 바로 압존(壓尊)의 뜻으로 고치게 하고, 신료(臣僚)에게 《상례보편》에 의거하여 공제 뒤에 백모와 백대를 착용하고 기년(基年)을 마치도록 명하였다.</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2월 29 일(신묘) 1번째기사 선원전 재실에 나가다</p>	<p>임금이 선원전(璿源殿)의 재실(齋室)에 나아갔다. 당시 여러 의관들이 동조의 배꼽에 뜸질을 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스스로 손 위에 쑥뜸을 시험하였다. 도승지 김한철(金漢喆)이 말하기를,</p> <p>“하필이면 직접 시험을 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옛날에 형제(兄弟)가 뜸질하여 고통을 나눈 일(1389)이 있었는데 더구나 아버이를 위해서이겠는가?”</p> <p>하였다.</p>	<p>辛卯/上御璿源殿齋室。時諸醫請東朝煉臍，上自試艾灸於手上。都承旨金漢喆曰：“何必親試乎？”上曰：“古有兄弟分灸，況爲親乎？”</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3월 25 일(병진) 1번째기사 내국에 명하여 세 제조가 함께 직속하도록</p>	<p>내국에 명하여 세 제조가 함께 직속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동조에서 올린 다(茶)를 마시지 못한다 하여 임금도 탕제(湯劑)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p>	<p>丙辰/命內局，三提調並直宿。上以東朝不進茶飲，上亦不進湯劑。</p>

하다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3월 26일(정사) 2번째기사 상사에서 진공과 진향 때의 의물을 절약하라는 대왕 대비전의 유교</p>	<p>당시 동조의 환후가 더욱 위독해지자 임금이 밤을 지새며 초조해 하여 허둥대었으며, 좁쌀 미음을 받들어 올렸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으니,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밤중에 영모당(永慕堂)의 전랑(前廊)에 나가 입직한 유신 홍양한(洪良漢)을 명소(命召)하여 울먹이며 말하기를, “자성(慈聖)의 환후가 지금 이미 위독해졌으니 즉시 종묘와 사직에 기도해야 마땅한데 문임(文任)을 미처 폐초(牌招)하지 못하였다. 그대가 그 제문(祭文)을 지어 올리되 반드시 나를 대신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지극히 간절하게 글을 짓도록 하라.”</p> <p>하므로, 홍양한이 마침내 지어서 올리자, 즉시 대신을 보내어 기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뜰에 내려가 한데에서 기도하여 하늘에 부르짖고 애태우며 울먹였는데, 사시(巳時)에 대비가 홍(薨)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교(遺敎)가 있었으니, 모든 상사(喪事)에서의 진공(進供) 및 진향(進香) 때의 의물(儀物)은 힘써 절약하여 검소하게 해서 줄이는 데 따르도록 하고, 별도로 백금(白金) 1천 5백 냥(兩)과 금단(錦緞)·사초(紗綃) 등의 물품을 저축하여 국휼(國恤) 때의 경비로 쓰게 하였었다. 또 숙종[肅廟] 국휼 때에 사용했던 은기(銀器)를 봉(封)하여 보관하였다가 뒷날 사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유의(遺意)에 따라 해당 관사에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p>	<p>時，東朝患候轉篤，上達夜焦遑，奉進粟米飲，少無效，命設侍藥廳。夜半，上御永慕堂前廊，命召入直儒臣洪良漢，泣謂曰：“慈候今已革矣，當即行禱廟、社，而文任未及牌招。汝其製進祭文，必以予願身代之義，懇到爲辭。”良漢遂製進，即遣大臣行禱。上下庭露禱，呼天煎泣，巳時大妃薨。先是有遺敎，凡喪進供及進香時儀物，務從節儉減省，別貯白金一千五百兩、錦緞·紗綃等物，俾恤經費。又封留肅廟國恤時所用銀器，以備他日之用，至是上遵遺意，命下所司。</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3월 28일(기미) 1번째기사 임금이 곡읍을 그치지 않자 여러 대신들이 죽을 마실 것을 극력 권하다</p>	<p>임금이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므로, 여러 대신들이 죽을 마실 것을 극력 권하였지만, 조금 들 뿐이었다.</p>	<p>己未/上哭泣不絕聲，諸大臣力勸粥飲，少進而已。</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4월 28 일(기축) 4번째기사 홍경해를 단양·회인의 안집 어사로 삼다</p>	<p>홍경해(洪景海)를 단양(丹陽)·회인(懷仁)의 안집 어사(安集御史)로 삼았다. 임금 이 말하기를, “지금 대신이 아뢰 바를 듣건대, 단양과 회인의 민사(民事)가 민망하게 여길 만하다고 한다. 어사(御史)를 즉시 내려 보내어 두 고을의 굶주리는 주민으로 유리하여 흩어진 자들을 형편에 맞도록 안집(安集)시키게 하고, 호서(湖西)의 저치미(儲置米) 3백 석(石)을 획급하게 할 것이니, 길에서 만약 단양과 회인 의 백성들을 만나면, 임금의 뜻을 먼저 유지하고, 데리고 가서 진휼하도록 하 라.”  하였다.</p>	<p>以洪景海爲丹陽、懷仁安集御史。 上 曰：“今聞大臣所奏，丹陽、懷仁民事 可憫。 御史卽爲下往，便宜安集兩邑 飢民之流散者， 劃給湖西儲置米三百 石， 雖路上若逢丹、懷之民， 先諭上 旨， 率去以賑之。”</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5월 7일 (정유) 3번째기사 경종 즉위년부터 부역 한 승군에 음식과 통 정 대부의 첩지를 내 리도록 하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승군(僧軍)으로 부역(赴役)하는 자들 가운데 경자년(13953) 에 와서 부역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본도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후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혜조에서는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첩지를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藥房入診。 上曰：“聞僧軍赴役者， 有 庚子來赴者， 令本道厚給食物， 自該曹 賜通政帖。”</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5월 9일 (기해) 1번째기사 굶주린 백성에게 죽을 끓여 먹이던 일을 그 만 두게 하다</p>	<p>굶주린 백성들에게 죽(粥)을 끓여 먹이던 일을 그만두도록 명하고, 병이 든 백성으로 미처 소복(蘇復)되지 않은 자는 활인서(活人署)로 하여금 구료(救療) 하게 하였으며, 농촌으로 돌아가길 자원(自願)하는 자는 노정(路程)을 헤아려 식 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p>	<p>己亥/命撤罷飢民饋粥， 病民之未及蘇 者， 令活人署救療， 自願歸農者， 計程 給糧。</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5월 11 일(신축) 1번째기사 동적전의 친경전에 보 리가 익었으나 국휼로 베는 것을 설행케 하 다</p>	<p>동적전(東籍田)의 친경전(親耕田)에 보리가 익었는데, 국휼[國哀]을 당한 것 때문에 베는 것을 설행(攝行)하도록 명하였다.</p>	<p>辛丑/東籍親耕田大麥熟, 以當國哀, 命攝刈。</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5월 16 일(병오) 2번째기사 동적전의 친경전에 소 맥이 익자 설행하여 베도록 하다</p>	<p>동적전(東籍田)의 친경전(親耕田)에 소맥(小麥)이 익었으므로, 또 설행(攝行)하 여 베도록 명하였다.동적전(東籍田)의 친경전(親耕田)에 소맥(小麥)이 익었으 므로, 또 설행(攝行)하여 베도록 명하였다.</p>	<p>東籍親耕田小麥熟, 又命攝刈。</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5월 16 일(병오) 3번째기사 광주 유수 한익모를 인견하여 농사의 풍흉 을 묻고 감선하다</p>	<p>임금이 광주 유수 한익모(韓翼謨)를 인견하여 농작물의 형편을 하문하고, 하 교하기를, “보리 농사가 이미 영글었으니 갈고 김매는 일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된다. 비 록 망극(罔極)한 슬픔 가운데 있지만, 밤낮으로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것인데, 요사이 가뭄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주 민망스럽 다. 비록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도록 한 시기이지만, 이미 고례(古例)가 있 으니, 근시(近侍)를 삼각산(三角山)·한강(漢江)·목멱산(木覓山)에 보내어 기우 제(祈雨祭)를 행하도록 하라. 아! 성효(誠孝)가 천박(淺薄)하여 시탕(侍湯)하 는 데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또 부덕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비도 내리게 할 수 없으니, 하늘을 우러러 보거나 땅을 내려다 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이 마음 을 억제하기 어렵다. 비가 내릴 때까지 한정하여 감선(減膳)함으로써 자신을</p>	<p>上引見廣州留守韓翼謨, 問農形, 下教 曰: “麥事已登, 耕耘不愆。雖在罔極 之中, 夙宵一念, 惟望有年, 近因旱氣, 心切悶焉。雖停大小祀之時, 已有古 例, 遣近侍于三角、漢江、木覓, 行祈 雨祭。噫! 誠孝淺薄, 莫能致誠於侍 湯, 又由否德, 亦莫能致方寸之雨, 俯 仰慙慙, 此心難抑。限得雨減膳, 以 示飭躬之意。” 仍命釋輕囚。</p>

	<p>경계하는 뜻을 보이겠다.” 하고, 인하여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를 석방하도록 명하였다.</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6월 14 일(갑술) 2번째기사 우의정 신만 등과 《상례보편》의 속편 편찬 등을 논의하다</p>	<p>우의정 신만(申晩)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속성(續成)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례의(五禮儀)》와 《상례보편》은 각기 조건(條件)이 있어서 참고하여 열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만약 합쳐서 한 책(冊)으로 만들고, 따라서 그 아래에다 주석(註釋)을 달게 한다면 거의 참고하고 증거를 대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매우 훌륭하다.”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상례보편》과 본편(本編)을 참고하여 보면 간섭하여 제지하는 단서가 많이 있다. 그런데 또 속편(續編)을 만든다면 《오례의(五禮儀)》·《속오례의(續五禮儀)》·《상례보편(喪禮補編)》·《속상례보편(續喪禮補編)》 네 책(冊)이 함께 시행할 경우 더욱 현란(眩亂)해질 것이니, 《상례보편》의 체제를 조금 고쳐서 일체 통틀어 기록하되, 당상관으로 신회(申晦)와 김치인(金致仁)을 추가로 임명하고, 교정관(校正官)으로 성천주(成天柱)와 홍낙성(洪樂性)을 추가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만이 또 아뢰기를,</p>	<p>右議政申晩奏：“伏聞《喪禮補編》有續成之命，而《五禮儀》與《補編》，各有條件，難於考閱。今若合成一冊，隨註其下，則庶便參證矣。”上曰：“甚善矣。”仍教曰：“《喪禮補編》，與本編參看，多有掣肘之端。又作續編，則《五禮儀》、《續五禮儀》、《補編》、《續補編》四冊并行，尤當眩亂，《補編》體制稍更，一體通錄，堂上以申晦、金致仁加差，校正官以成天柱、洪樂性加定。”晚又奏：“海西黑頭浦漁採唐船，下陸作亂，毆打監官，水使狀達以聞。不善防禦，以致此舉，追捕別將及浦監官，令本道嚴棍，地方官宜拿問矣。”上從之。戶曹判書李喆輔曰：“民結所納祭需價，既有蠲免之命，而令自廟堂區劃，請使均役堂上講確以奏。”摠戎使洪鳳漢曰：“廟堂宜以儲置米、射軍布等屬，劃充其數，而見今惠廳米儲大縮，嶺、湖軍布，亦難多劃。請以關西稅收米二萬石、海西詳定米一萬石、劃付均廳，每年糶糶以爲外援，而自均廳折價</p>

	<p>“해서(海西)의 흑두포(黑頭浦)에서 고기잡이하며 해물을 채취하던 당선(唐船)에 〈탄 사람들이〉 육지에 올라와 난동을 부리며 감관(監官)을 구타한 사실을 수사가 장달(狀達)하였습니다. 방어를 잘못하여 이런 일을 초래하였으니 추포 별장(追捕別將) 및 포감관(浦監官)은 본도로 하여금 곤장으로 엄중히 다스리게 하고, 지방관(地方官)은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 이철보(李喆輔)가 말하기를,</p> <p>“민결(民結)에서 바치는 제수가(祭需價)를 이미 건면(蠲免)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묘당에서 구획(區劃)하도록 하였으니, 청컨대 균역청(均役廳) 당상으로 하여금 강확(講確)해서 아뢰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총융사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묘당에서는 저치미(儲置米)와 사군포(射軍布) 등속(等屬)을 가지고 그 숫자를 나누어서 채워야 하는데, 지금 선혜청(宣惠廳)에 저축된 쌀이 크게 모자라고, 영남과 호남의 군포(軍布)도 여러 갈래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관서(關西)의 세수미(稅收米) 2만 석(石)과 해서(海西)의 상정미(詳定米) 1만 석을 균역청(均役廳)에 나누어 주게 하고 해마다 조적(糶糶)13986) 하여 외원(外援)하도록 하되 균역청에서 절가(折價)한 3냥(兩)을 호조에 이송(移送)하게 한다면, 양쪽이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대신에게 물어 보고 그것을 허락하였다.</p>	<p>三兩，移送戶曹，則兩得其便矣。” 上詢大臣而許之。</p>
영조 89권, 33년	임금이 옥백(玉帛) 증정(贈呈)을 친행(親行)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대신	戊寅/上以贈玉帛親行當否，議大臣。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6월 18  
일(무인) 1번째기사  
대신들과 인견하여 옥  
백 증정의 친행을 의  
논하다

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관중추부사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인산(因山) 때에 여(輿)를 따르는 예(禮)는 비록 《오례의(五禮儀)》에는 기재되어 있다 하나 여러 공사(公私)의 문헌(文獻)을 상고해 보면 열성조(列聖朝)에서는 일찍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인정과 예의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왕조(王朝)의 전례(典禮)는 필부(匹夫)·서인(庶人)과는 아주 달라서 형세로 보아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옥백(玉帛)의 증정(贈呈)은 저절로 신료(臣僚)로 대신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예를 찬술(撰述)한 신하가 반드시 해야 할 바가 있었을 것이며 고례(古禮)의 뜻에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하께서 이미 몸소 임어(臨御)하셨으니, 《오례의》에 대신 행한다는 글은 준행(遵行)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유척기(兪拓基)는 말하기를,  
 “영의정이 애책문(哀冊文)과 증정할 옥백(玉帛)을 가지고 들어가 꿇어앉아 바친다는 글은 고례(古禮)에 주인(主人)이 증정한다는 것과 조금 다른데, 어찌 친히 올라가서 몸소 행하는 의절(儀節)에 대해 편리하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만약 성상의 하교와 같다면 광상(曠上)의 위치에 나아가 근시(近侍)가 봉헌(奉獻)하여 영의정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받들어 올리도록 한다면, 이미 고례에도 맞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절차에 구애됨에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모든 대제(大祭)에서 성생(省牲)13988)에 대해 《오례의(五禮儀)》에는 아헌관(亞獻官)이 행한다고 하였으며, 상례(喪禮)에 반함(飯含)은 내시가 행한다

判府事李宗城言：“因山隨輿之禮，雖載《五禮儀》，而稽諸公私文獻，列朝未嘗行焉。誠以情禮雖然，而王朝典禮，絕異匹庶，勢有不可行者。是以玉帛之贈，自不得不以臣僚代之，竊想撰禮之臣必有商量，而非昧於古禮意也。今殿下既躬臨矣，《五禮儀》替行之文，似難遵行矣。” 兪拓基言：“領議政以哀冊、贈玉帛入跪奠之文，少異於古禮之主人贈者，豈以難便於親登躬行之節耶？若如聖教，就曠上位，近侍奉獻，傳于領議政，使之奉奠，則既有得於古禮，亦無礙於諸節矣。” 上從之。 仍教曰：“凡大祭省牲，《五禮儀》則亞獻行之，《喪禮》飯含內侍行之者，無他，爲其便於行而然也，贈玉帛之領相替行，亦如此矣。 省牲禮，既因丘濬說，依古禮，親行飯含，亦從古儀，而隨詣山陵，乃今創行也。 莫重玉帛，豈從便宜之例？ 兪議詢同。 今則下玄宮後，於曠右近侍奉玉帛，進于予，予傳于領相，奠于曠中事，令儀曹舉行，載於補編。”



	<p>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데 편해서 그렇게 한 것이며, 옥백(玉帛)의 증정을 영의정이 대신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성생례(省牲禮)는 이미 구준(丘濬)13989)의 학설로 인하여 고례(古禮)에 의거하였으며, 반함을 친히 행하는 것 역시 고의(古儀)를 따랐었는데, 산릉(山陵)에 따라 나가는 것은 바로 지금 처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막중(莫重)한 옥백을 어찌 편의(便宜)한 전례를 따르겠는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었더니 의논이 같았다. 이번에는 현궁(玄宮)에 내린 뒤 광(壙)의 오른쪽에서 근시(近侍)가 옥백을 받들어 나에게 올리면, 내가 그것을 영의정에게 전하여 광중(壙中)에 올리는 일을 예조[儀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상례보편(喪禮補編)》에 기재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6월 20일(경진) 3번째기사 여차에 나가 총호사 등을 인견하고 농사의 형편, 산릉의 보토 등을 하문하다</p>	<p>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가 총호사 및 제도(諸道)의 차원(差員)을 인견하고, 농사의 형편과 민간의 폐단 및 산릉(山陵)의 보토(補土)할 역사에 대하여 하문하자,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p> <p>“선릉(先陵)의 뒤 산맥(山脈)은 바로 사석(沙石)의 땅으로, 수목(樹木)이 적으니, 널리 심고 금양(禁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p> <p>“명릉(明陵)의 능관(陵官) 두 자리는 장릉(長陵)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참봉(參奉)으로 만들되 봉사(奉事)와 직장(直長)은 그대로 그곳에서 오래 승진시키게 하고, 나무를 심어 울창하게 되기를 기다린 후에 승륙(陞六)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시임관(時任官)은 다른 관직으로 옮기게 하라.”</p>	<p>上御廬次，引見摠護使及諸道差員，問農形民弊及山陵補土之役，左議政金尙魯奏：“先陵後脈乃是沙石之地，樹木稀疎，不可不廣植而禁養矣。”上下教曰：“明陵陵官二窠，依長陵例俱作參奉，而奉事、直長仍其處例陞，待植木鬱茂後陞六。時任官移付他職。”尙魯又言：“山陵財力，比庚戌裁減太過，都監支用誠罔措矣。請劃給賑廳錢二千兩、關西別餉錢二千兩。”上從之。諸臣既退，又召禮曹判書李益炆，取覽國恤謄錄，命書因山時明器減定論音曰：</p>

	<p>하였다. 김상로가 또 말하기를,</p> <p>“산릉(山陵)의 재력(財力)을 경술년(13991)에 건주어 너무 지나치게 재감(裁減)하였으므로, 도감의 지용(支用)을 진실로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진흥청(賑恤廳)이 돈 2천 냥(兩)과 관서(關西) 별향고(別餉庫)의 돈 2천 냥을 획급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여기에 신하들이 이미 물러나자, 또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炆)을 불러 국휼등록(國恤謄錄)을 가져다 열람하면서 인산(因山)때의 명기(明器)를 줄여서 정하는 일에 대해 운음(綸音)을 적도록 명하기를,</p> <p>“명기(明器)와 복완(服玩)이 비록 목노비(木奴婢)나 공가인(工歌人)의 형상과는 다름이 있지만, 더러 사치스러운 데 가깝고, 더러 장난에 가깝고, 더러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 더러 쓸데없는 것이 있다. 그 사치스러운 데 가깝다는 것은 나전(螺鈿)으로 된 소함(梳函) 같은 것이고, 그 장난스러운 데 가깝다는 것은 자질구레한 기용(器用)의 물건이고, 그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토등상(土藤箱)·타우(唾盂)·수기(漉器) 같은 것이고, 그 쓸데없다는 것은 주준(酒樽)·주잔(酒盞) 같은 것이다. 더구나 공가인을 이미 없었는데, 악기(樂器)를 그대로 두는 것은 또한 핵심을 보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상례보편(喪禮補編)》을 개정하는 때를 당하여 비록 한결같이 모두 제거한다 하더라도 혹 불가할 것이 없겠지만 공자(孔子)가 예(禮)를 사랑한 뜻(13992)을 따라서 그 번문(繁文)은 제거하고, 그 예기(禮器)·관(冠)·의(依) 등속은 홀[圭]·면류관[冕]상의(上衣)·하상(下裳)·대대(大帶)·중단(中單)·방심패(方心)·패옥(佩玉)·수(綏)·폐슬(蔽膝)·홍말(紅襪)·적석(赤舄)을 보존하고, 자기(磁器)는 반발(飯鉢) 하나, 시</p>	<p>明器、服玩，雖與木奴婢、工歌人之形有異，或近於侈，或近於戲，或有不緊者，或有無用者。其近於侈者，螺鈿梳函之類也；其近於戲者，小小器用之物也，其不緊者，土藤箱、唾盂、漉器之類也，其無用者，酒樽、酒盞之類也。況工歌人既除，則樂器之仍，亦若皮不存也。今當《補編》釐正之時，雖一皆祛之，未或不可，而遵孔子愛禮之意，祛其繁文，存其禮器、冠、衣之屬，則圭、冕、上衣、下裳、大帶、中單、方心、佩玉、綏、蔽膝、紅襪、赤舄，磁器則飯鉢一、匙櫛一、爵一、簠一、簋一、香爐一，瓦器則釜一、鼎一，竹器則黍稷、稻粱、麻子、菽·小荳麥所盛筩八·幕八，而籩減半存六，木器則豆減半存六，樂器八音，即皇朝所賜也，只存銅鐘一、磁磬一，祛機、熏一、唐琴一、笙一、簫一、鼓一，祛機、柷，其餘祛之。圭與佩玉，若以常時用者用之，則勿加造。內喪，《五禮儀》所載衣服制度，既非禮冠、翟衣也，其制異常，既用遺衣，今宜減也。至於梳函，是不可無者，祛螺鈿</p>
--	--	---

	<p>첩(匙櫟) 하나, 잔[爵] 하나, 보(簠) 하나, 궤(簋) 하나, 향로(香爐) 하나를 보존하고, 와기(瓦器)는 부(釜) 하나 정(鼎) 하나를 보존하고, 죽기(竹器)는 서직(黍稷)·도량(稻粱)·마자(麻子)·숙(菽)·소두(小豆)·맥(麥)을 담은 초(筍) 여덟, 먹(纂) 여덟을 보존하되, 변(籩)은 절반을 줄여 여섯 개만 보존하고, 목기(木器)는 두(豆)는 절반을 줄여 여섯 개만 보존하고, 악기(樂器)의 팔음(八音)은 바로 명(明)나라에서 하사(下賜)한 것이니, 단지 동종(銅鐘) 하나, 자경(磁磬) 하나만 보존하고 틀[機]은 없애며, 훈(熏) 하나, 당금(唐琴) 하나, 생(笙) 하나, 소(簫) 하나, 고(鼓) 하나만 보존하고, 틀과 축(祝)은 없애고 그 나머지도 없앤다. 홀[圭]과 패옥(佩玉)을 만약 평상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더 만들지 말도록 한다. 내상(內喪)의 경우는 《오례의》에 실린 의복(衣服)의 제도가 이미 예관(禮冠)과 적의(翟衣)가 아니므로 그 제도가 이상한데, 이미 유의(遺衣)를 썼으니, 지금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 소함(梳函)에 이르러서는 바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니, 나전(螺鈿)과 구갑(具匣)은 없애고 거울 하나만 쓰되, 이 두가지 물건이 만약 평상시에 쓰시던 것이라면 더 만들지 말도록 하라. 이번에 보존한 것이나 줄인 것은 내상(內喪)이나 외상(外喪)을 논하지 말고 거행하는 일을 《상례보편》에 기재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與具匣，鏡一用之，而此兩件若用常御者，則勿加造。今此存滅，毋論內外喪舉行事，載之《補編》。</p>
<p>영조 89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6월 28일(무자) 1번째기사 여차에 나가 대신과 예조 판서를 인견하고 청학 김진하 등을 가</p>	<p>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가 대신과 예조 판서를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청학(淸學)과 한학(漢學) 가운데 청학 김진하(金振夏)·한학 변헌(邊憲)이 청어(淸語)와 한어(漢語)를 잘 해독(解讀)하므로, 지난번 칙사(勅使)를 접대할 적에 그들을 기용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참핵사(參覈使)의 장문(狀聞)을 보건대, 역관 김진하가 봉성(鳳城)에 가서 수작(酬酢)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고, 바</p>	<p>戊子/上御廬次，引見大臣、禮判。上曰：“淸、漢學中，淸學金振夏、漢學邊憲，能解淸、漢語，故頃者勅使接待時用之。今覽參覈使狀聞，譯官金振夏往鳳城，非徒酬酢有據，方當國有事之時，末端酬酢，能諭予意。渠雖微矣，此正不辱君命也，不可無勸獎。</p>

<p>자케 하다</p>	<p>야호로 국가에 일이 있는 시기를 당하여 말단(末端)에서 수작하여 나의 뜻을 잘 깨우쳤다. 그가 비록 미천(微賤)하지만, 이는 바로 임금의 명을 욕(辱)되게 하지 않은 것이니, 권면하고 장려함이 없을 수 없다.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그리고 어전 통사(御前通事)로 적합한 인재가 부족한 때를 당하여 예비로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한학 변헌도 일체로 가자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p> <p>“나라에서 지금 바야호로 술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객사(客使)를 대접하는 예(禮)에 있어서 단술[醴酒]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중(京中)에서 이미 단술을 사용하게 하였으면, 서로(西路)의 여러 고을 또한 당연히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特爲加資。 御前通事乏人之時， 其宜儲陞。 漢學邊憲， 一體加資。” 尙魯曰：“國中今方禁酒， 待客使之禮， 宜用醴酒。 而京中旣用醴， 則西路諸邑， 亦當如之矣。” 上可之。</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7월 5일 (을미) 2번째기사 여차에 나가 입진한 약방의 신하들에게 감회를 말하다</p>	<p>임금이 여차에 나아갔는데,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발인(發靛)하는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약물(藥物)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지 마는, 이미 상여를 따라가기로 정하였으니 소중함이 있다. 마땅히 삼령(蔘苓)14009 이 든 약제를 복용할 것이다. 지금의 이 비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으니, 가히 때를 아는 비라고 하겠다.”</p> <p>하매, 도제조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이는 전하께서 마음속으로 기원하시던 비이니, 실로 지극하신 정성에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上御廬次， 藥房入診。 上曰：“靛日不遠， 宜姑停藥物， 而旣定隨輦， 則所重在焉。 當服蔘苓之劑矣。 今此之雨， 不先不後， 可謂知時雨也。” 都提調申晩曰：“此莫非殿下方寸之雨也， 實由至誠而然矣。” 上曰：“近日心懷， 去益難定矣， 非但氣衰所致。 人子之道， 安得不然?” 仍淚隨言下。</p>

	<p>“근일에 심회(心懷)가 갈수록 진정하기 어려워지는데, 기(氣)가 쇠약한 소치만이 아니다. 인자(人子)의 도리가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p> <p>하고, 이어서 눈물이 말을 따라 흘러내렸다.</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7월 6일 (병신) 1번째기사</p> <p>여차에 나가 효소전 상식 이외에는 각도의 물선 봉진을 정지토록 하다</p>	<p>임금이 여차에 나아가 승지에게 이르기를,</p> <p>“다섯 달을 여차에 있으면서 제전(祭奠)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조금이나마 정례(情禮)를 폼다. 경자년(14011) 국휼(國恤) 때는 자성(慈聖)께서 늘 나에게 음식을 권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서 바라겠는가?”</p> <p>하고, 이어서 여러 도(道)에서 바치는 물선(物膳)은 정지시키고 오직 효소전(孝昭殿) 상식(上食)에 소용되는 것만은 전례대로 바치라고 명하였다.</p>	<p>丙申/上御廬次，謂承旨曰：“五月居廬，祭奠未嘗一闕，少伸情禮。而庚子國恤時，慈聖每勸予飲食，今何可得也？”仍命停諸道物膳，惟孝昭殿上食所用，依例封進。</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7월 11일(신축) 3번째기사</p> <p>도유군 5백 명을 돌려 보내도록 하다</p>	<p>도유군(都游軍) 5백 명을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전례에는 하현궁(下玄宮)14019) 때에 이 군병으로 대여를 받들어 운반하여 능상(陵上)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성들의 노고를 민망히 여겨 저치미(儲置米)로써 역군(役軍)을 모집하여 쓰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노차(路次)에서 여군(輦軍)중에 까무러친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히 어약(御藥)을 하사하였으며,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미리 더위를 다스리는 약물을 구비하여 가도록 지시하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치료를 하였으므로, 상두꾼[輦人]들이 한 사람도 사상(死傷)한 자가 없었다.</p>	<p>命放送都游軍五百名。例於下玄宮時，以此軍奉運大輦至陵上矣，上憫其勞民，命以儲置米募軍用之。上於路次，輦軍有昏窒者，特賜御藥，且以日熱，預飭具治暑藥物，多方救療，以此輦人無一死傷者。</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7월 16일(병오) 2번째기사</p> <p>혼전에 공진하는 채소나 과일 가지수를 줄이도록 명하다</p>	<p>혼전(魂殿)에 공진(供進)하는 채소나 과일을 줄이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채소와 과일의 공물(貢物)은 그 폐단이 가장 크다. 해곽(海藿)14041)만 하여도 종류는 한 가지이지마는 명칭이 다섯 가지나 되어 분곽(粉藿)·조곽(早藿)·곽이(藿耳)·사곽(絲藿)·감곽(甘藿) 등의 구별이 있는데, 그것을 품종대로 다 각각 올리니 민폐가 매우 크다. 사곽·곽이 두 종류는 특별히 감하게 하라. 표고(藜古)와 진자(榛子)14042) 같은 것은 더구나 드문 종류이니, 그 폐단은</p>	<p>命量減魂殿供進蔬果。上曰：“菜果之貢，其弊最多。如海藿者，種則一而名爲五，有粉藿早藿、藿耳、絲藿、甘藿之別。分品各進，民弊甚鉅。特減絲藿、藿耳二種。如藜古榛子，尤其是稀種，熟知其弊，竝命除供代用京貨，使外邑之民，咸知慈聖遺德。”</p>

	<p>익히 안다. 모두 공진하는 것을 면제시키고 경무(京賈)로 대응하게 하여 외읍(外邑)에 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성(慈聖)의 유덕(遺德)을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9월 12일(신축) 3번째기사 칙사가 가지고 온 은단은 제수이므로 호조에 내리고 《보편》에 실도록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 “칙사가 가지고 온 은단(銀緞)은 곧 이것이 제수(祭需)이니, 정원에 도착한 뒤에 바로 호조(戶曹)로 내려 보내고 이어서 《보편(補編)》에 실도록 하라.” 하였다.</p>	<p>○敎曰: “勅使齋來銀緞, 卽是祭需, 到政院後, 直下戶曹, 仍載《補編》。</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9월 21일(경술) 3번째기사 효소전·휘령전의 영조 제칙 의주</p>	<p>영조제칙 의주(迎弔祭勅儀註) 【효소전(孝昭殿)·휘령전(徽寧殿)의 양 혼전(兩魂殿)이 같다.】 는 이러하였다. 하루를 전기(前期)하여 전설사(典設司)에서 칙사(勅使)의 위치(位次)를 혼전(魂殿)의 중문(中門) 밖에 서향(西向)으로 만들고, 액정서(掖庭署)에서는 칙사의 위치를 영좌(靈座)의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하였으며, 제문(祭文)과 폐백(幣帛)을 권치(權置)할 탁자를 호외(戶外)의 서향으로 설치하였다. 전하(殿下)의 입위(立位)는 영좌의 서쪽에 동향으로 설치하고, 또 전하의 입위를 동계(東階) 아래 북향으로 설치하였으며, 소차(小次)는 전정(殿庭)의 동남에 설치하고, 또 지영위(祇迎位)는 소차의 앞에 설치하였다. 전의(典儀)와 제집사(諸執事)의 위치는 동계의 아래 서향으로 하고, 종친(宗親)·문무 백관(文武百官)·감찰(監察)의 위치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였다. 그날 전하는 백포(白袍)·소익선관(素翼善冠)·포(布)로 쓴 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갖추고, 재전(齋殿)에 나아갔다. 좌통례(左通禮)가 중엄(中嚴)14100) 을 계청(啓請)하니, 전하는 쇠복(衰服)을 갈아입고, 왕세자와 종친·문무 백관도 쇠복을 입었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문과 폐안(幣案)을 영좌의 왼쪽 남향으로 설치하고 향로(香爐)·향합(香</p>	<p>迎弔祭勅儀註 【孝昭徽寧兩坭殿同】 : 前期一日, 典設司設勅使次於魂殿中門外西向, 掖庭署設勅使位於靈座東西向, 設權置祭文及幣案於戶外西向。設殿下立位於靈座西東向, 又設殿下立位於東階下北向, 設小次於殿庭東南, 又設祇迎位於小次之前。典儀、諸執事位於東階下西向, 宗親文武百官、監察位於殿庭東西。其日, 殿下具白袍素翼善冠、布裹烏犀帶、白皮靴, 出就齋殿。左通禮啓請中嚴, 殿下改具衰服,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服衰服。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設祭文及幣案於靈座之左南向, 設香爐、香盒牲燭</p>

盒)과 촛불을 영좌의 앞에 설치하였으며, 다음은 뇌찬(牢饌)을 설치하였다. 준(尊)14101) 은 호외(戶外)의 왼편에 놓고, 술잔 3개를 존소(尊所)에 두었다. 인의(引儀)가 종친·문무 백관을 나누어 이끌고 최복을 갖추어 입은 다음 위치에 나아갔다. 대축(大祝)과 제집사는 먼저 전정에 들어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쪽 위치에 서니, 전의가 사배(四拜)하라고 하자, 찬의(贊儀)가 ‘사배’라고 창(唱)하매, 대축과 제집사가 사배하고 관세(盥稅)한 뒤에 각각 취위(就位)하였다. 상례(相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기복(基服)으로 갈아입은 다음 【휘령전에 치제(致祭)할 때에는 본복(本服)인 최복(衰服)으로 갈아 입고 거장(去杖)한 다음 들어와서 취위하였다.】 먼저 효소전(孝昭殿)에 나아갔다가 소차(小次)에 들어갔다. 【효소전에서 치제한 뒤에 명광문(明光門) 밖에서 여(輿)를 타고 휘령전 문 밖에서 여에서 내려 위치에 들어갔다.】 좌통례가 명정전 소차 앞에 나아가 출차(出次)할 것을 청하니, 전하가 곧이어 최복과 장(杖)을 갖추고 나왔다. 상례가 꿇어앉아 왕세자가 출차하여 지영위에 나아가기를 청하였고, 전하가 이르자 상례가 왕세자에게 국궁(鞠躬)하기를 청하였다. 전하가 소차에 들어가자, 왕세자도 도로 소차에 들어갔다. 인례(引禮)가 칙사를 인도하여 혼전(魂殿) 【효소전(孝昭殿)이다.】 중문(中門) 밖에 나아가 위치에 들어갔다. 제사할 때가 이르자 상례가 왕세자에게 청하여 출차하여 취위할 것을 청하고, 좌우 찬례(左右贊禮)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 아래 위치에 이르러 서향으로 서게 하였다. 전의가 곡(哭)하라고 하자, 좌찬례가 전하께 곡하기를 청하였고, 왕세자와 종친·문무 백관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찬의(贊儀)가 역시 창(唱)하였고, 무릇 왕세자가 행례할 때에는 상례(相禮)가 모두 찬청(贊請)하였다.】 좌찬례가 전하에게 장(杖)을 버리고 질(絰)을 벗으라 청하고, 좌우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에 나아갔다. 좌찬례가 전하에게 곡(哭)을 그치기를 청하고, 왕세자와 종친·문무 백관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좌우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 밖의 서쪽에서 동향으로 서서 맞이하게 하고, 인례는 칙사

於靈座之前，次設牢饌。設尊於戶外之左，置爵三於尊所。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具衰服入就位。大祝及諸執事先入殿庭北向西上，典儀曰四拜，贊儀唱四拜，大祝及諸執事四拜，盥稅各就位。相禮引王世子，改具基服，【徽寧殿致祭時，改具本服衰服，去杖入就位。】先就孝昭殿，入小次。【孝昭殿致祭後明光門外乘輿徽寧殿門外降輿入次。】左通禮詣明政殿小次前，請出次，殿下仍具衰服杖出。相禮跪請王世子出次，就祇迎位，殿下至，相禮請王世子鞠躬。殿下入小次，王世子還入小次。引禮引勅使，詣魂殿【孝昭殿。】中門外入次。祭時將至，相禮請王世子出次就位，左右贊禮導殿下，至東階下位西向立。典儀曰哭，左贊禮請殿下哭，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同。【贊儀亦唱，凡王世子行禮時，相禮皆贊請。】左贊禮請殿下去杖免絰，左右贊禮導殿下出中門。左贊禮請殿下止哭，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同。左右贊禮導殿下，迎於中門外之西東向立，引禮引勅使出次西向立。殿下由西門，先就西階下位，引勅使由

	<p>를 인도하여 위차에서 나와 서향으로 서게 하였다. 전하는 서문(西門)을 지나 먼저 서계(西階) 아래 위차에 나아가서, 칙사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을 지나 제문(祭文)이 놓인 탁자 앞으로 들어왔다. 집사가 제문과 폐백을 받들어 칙사의 앞에 꿇어앉아 올리니, 칙사가 제문과 폐백을 받들어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칙사가 영좌 동쪽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니, 전하는 서계를 지나 올라가 동향의 위차에 나아가서 칙사를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다. 찬의가 ‘궤(跪)’라고 창하니, 왕세자 및 종친·문무 백관이 꿇어앉았다. 인례(引禮)가 꿇어앉아서 ‘세 번 향불을 피우시오.’ 하니, 칙사가 서서 세 번 향불을 피웠다. 인례가 또 ‘폐백과 제주(祭酒)를 올리시오.’ 하매 〈칙사가 폐백과 제주를 올리고,〉 인례가 칙사를 인도하여 위차에 돌아갔다. 독제문관(讀祭文官)이 제문안(祭文案)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제문을〉 다 읽은 뒤에 탁자 위에 도로 올려 놓았다. 전의가 곡하라고 하자, 좌찬례가 계청(啓請)하매 전하께서 곡하였고, 인례가 ‘칙사는 곡하시오.’ 하였으며, 왕세자 및 종친·문무 백관은 부복하여 곡하였다. 전의가 곡을 그치라고 하자, 전하가 곡을 그치고 칙사도 곡을 그쳤으며 왕세자 및 종친·문무 백관도 곡을 그친 뒤에 일어나서 사배하였다. 집사자(執事者)가 제문과 폐백을 받들고 요소(燎所)에 나아가 불사른 뒤에 좌우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계상(階上)에 나가서 동향으로 섰으며, 인례는 칙사를 인도하여 계상에 나가서 서향으로 섰다. 전하가 읍(揖)을 하니, 칙사가 답읍(答揖)하였다. 인례가 칙사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오고, 좌우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중문 밖까지 갔다. 인례가 칙사를 인도하여 휘령전(徽寧殿)에 나아가 앞에서 한 의식과 같이 행례(行禮)하였는데, 오직 복색(服色)만은 각각 본복(本服)을 착용하였다.</p>	<p>正門，入詣祭文案前。執事捧祭文及幣，跪進于勅使前，勅使捧祭文及幣，置於案。勅使就靈座東西向立，殿下由西階，陞詣東向位，引勅使詣香案前北向立。贊儀唱跪，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跪。引禮跪，贊三上香，勅使立三上香。引禮又贊奠幣祭酒，引禮引勅使，還就位。讀祭文官就祭文案前，西向立讀訖，還置於案。典儀曰哭，左贊禮啓請殿下哭，引禮贊勅使哭，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俯伏哭，典儀曰止哭，殿下止哭，勅使止哭，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止哭，興四拜。執事者捧祭文及幣，就燎所焚訖，左右贊禮導殿下，出至階上東向立，引禮引勅使，出至階上西向立。殿下揖，勅使答揖。引禮引勅使，降自東階，左右贊禮導殿下，降自西階，送至中門外。引禮引勅使，詣徽寧殿，行禮如上儀，惟服色，各用本服。</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p>	<p>대신(大臣)과 정원(政院)에서 천둥의 이변으로 인하여 모두 차자(筓子)를 올리어 면계(勉戒)하니, 대조(大朝)·소조(小朝)께서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임금이</p>	<p>○大臣、政院，以雷異，竝陳筓勉戒，大、小朝竝嘉納。上以十二事自責曰：</p>



<p>(乾隆) 22년) 9월 24일(계축) 2번째기사 대신과 승정원에서 천 등 등의 이변으로 진 계하자, 3일간 감선토 록 명하다</p>	<p>12가지 일로 자책(自責)하였는데, 말하기를,  “국세(國勢)가 떨어지고, 기강(紀綱)이 날마다 무너지며, 생민(生民)이 고통을 당하고, 대간(臺諫)들은 아첨하며 비위나 맞추며, 정당(政堂)에는 먼지가 쌓였고, 서각(書閣)에는 늘 정품(停稟)이 많았고, 후원(喉院)에서는 공사(公事)를 주달하지 않았으며, 부효(浮囂)는 날마다 심하고, 사치스러운 풍속은 나날이 번성하며, 여항(閭巷)에서는 금주(禁酒)의 명령도 효과가 없고, 조정의 인사(人事)는 날마다 이기려고만 하니, 굳이 그 원인을 따진다면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다.”  하고, 이어서 3일 동안을 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 유신(儒臣)을 불러 《주례(周禮)》를 강하였다. 명(明)나라의 일에 이야기가 미치자, 승지 성천주(成天柱)가 말하기를,  “명나라 말기에 모기령(毛奇齡)이라는 자의 문집(文集)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는데, 오삼계(吳三桂)14104)에 대한 일을 말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오삼계에게는 진원원(陳圓圓)이라는 축희(畜姬)가 있었는데 진원원은 강남(江南)의 명창(名娼)이었습니다. 이자성(李自成)이 모반하여 북경(北京)을 함락하던 날 오삼계는 곧바로 항복하는 글[降表]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이자성이 장차 진원원을 겁탈하려고 영중(營中)에 두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분개하여 항복하는 글을 거두고 청(淸)나라에 구원을 청하며, 임금을 위하여 복수한다고 일컬었습니다. 청나라의 힘으로 이자성을 쫓아낸 뒤 우리 나라에서는 오삼계가 운남(雲南)에서 기병(起兵)하여 청나라에 대항하였으므로 명나라가 흥복(興復)될 것을 기대하였었는데, 오삼계는 마침내 스스로 황제라고 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그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p>	<p>“國勢趨下，紀綱日隳，生民倒懸，耳目媮媮，政堂堆塵，書閣掩卷，賓對每多停稟，喉院不奏公事，浮囂日甚，侈風日盛，閭巷之禁酒無效，朝廷之人事日勝，苟究其由，卽予一人。”乃命減膳三日。召儒臣，講《周禮》。語及皇明事，承旨成天柱曰：“明末有毛奇齡者文集東來，有言吳三桂事。初三桂畜姬陳圓圓，江南名娼也。李自成陷北京之日，三桂卽送降表，聞自成之將劫圓。圓置營中，憤之收降表而乞援於淸人，稱以爲君復讎。其後我國，以三桂之起兵雲南，想望興復，三桂竟自立爲帝，其心於是露矣。”</p>
--	---	---

	<p>하였다.</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9월 24 일(계축) 5번째기사 좌의정 김상로가 제주도의 3읍에 상진곡 6천 석을 획급토록 청하다</p>	<p>왕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 앉아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재이(災異)로써 진계하니,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p> <p>“제주(濟州)의 3읍(邑)에서 굶주림을 고하니, 청컨대 본도(本道)의 연해(沿海)에 있는 상진곡(常賑穀) 6천 석(石)을 획급(劃給)하여 진휼하소서.”</p> <p>하였다.왕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 앉아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재이(災異)로써 진계하니,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p> <p>“제주(濟州)의 3읍(邑)에서 굶주림을 고하니, 청컨대 본도(本道)의 연해(沿海)에 있는 상진곡(常賑穀) 6천 석(石)을 획급(劃給)하여 진휼하소서.”</p> <p>하였다.</p>	<p>○王世子坐時敏堂，行次對。大臣、諸臣，以災異陳戒，特嘉納。左議政金尙魯奏：“濟州三邑告饑，請劃本道沿海常賑穀六千石，以賑之。”</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10월 2 일(신유) 4번째기사 사조하는 수령들을 소견하고, 제주에 진곡 6천 석을 획급케 하다</p>	<p>사조(辭朝)하는 여러 수령을 소견하였다. 제주 목사 조위진(趙威鎭)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하교하기를,</p> <p>“내가 백수 모년(白首暮年)에 어찌 제주 백성들에게 요예(要譽)를 하려 하겠는가? 산릉(山陵)에 부역한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은 가히 지성스럽다고 이를 수 있다. 무릇 사람이 그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여 보답하기를 생각하기 마련이거늘, 하물며 임금이 그 백성에 대하여서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만일 제주 백성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비단 위로 옛날에 도민</p>	<p>召見辭朝諸守令。命濟州牧使趙威鎭進前，教曰：“予於白首暮年，豈欲要譽於濟州民乎？以山陵赴役事觀之，其向國之心，可謂至誠矣。凡人於其親喪，若受惠於人，則感而思報，況君之於民乎？子若於濟民，有一毫泛忽，則非但上負昔年恤島民之盛意，實負孝昭殿也。爾於下去後，若使濟民一人，有一日之飢，則是汝使我有一日之飢</p>

	<p>(鳥民)을 돌보시던 거룩한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실로 효소전(孝昭殿)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네가 내려간 뒤에 만일 제주 백성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하루를 굶게 만든다면 이는 네가 나로 하여금 하루를 굶게 만드는 것이다.”</p> <p>하고, 이어서 제주에서 올리는 삼명일(三名日)14105) 과 추동(秋冬)의 방물(方物)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호남(湖南)은 풍년이 들었으나, 오직 제주만은 흉년이 거듭 들어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진자(賑資) 6천 석을 획급(劃給)하게 하고, 그 뒤에 독운 어사(督運御使)를 뒤따라 보내어 곡식을 독운(督運)하게 하였다.</p>	<p>也。” 仍命停濟州三名日、秋冬方物。 時，湖南登熟，惟島中荐飢，令備局，劃給賑資六千石，其後追遣督運御史，使督運穀。</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0월 13일(임신) 2번째기사 중외의 사서 중에 80세 이상된 자에게 쌀과 고기를 지급토록 하다</p>	<p>중외(中外)의 사서(士庶) 중에 나이 80세 이상 된 자에게 쌀과 고기를 주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p> <p>“지난 봄에 칭상(稱觴)14128) 의 예를 거행하지 못하고 갑자기 망극(罔極)한 애통을 당하였으니, 5삭(五朔) 안에 비록 상에 가득히 음식을 차렸더라도 어찌 그 정성을 펼 수 있겠는가?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위에서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여야 백성이 효를 일으킨다.[上老老而民興孝]’고 하였다. 아! 집은 가난하고 아버이는 늙었는데, 조석(朝夕)의 끼니도 잇기 어려운 자가 비록 고인(古人) 같은 효성을 가졌더라도 어떻게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아픈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p> <p>하고, 드디어 이런 명령이 있었다.</p>	<p>○命賜中外士庶年八十以上米、肉。 教曰：“昨春稱觴之禮，亦不能行，遽遭罔極之痛，五朔之內，雖滿案設饌，何能伸其忱？ 《傳》云，‘上老老而民興孝？’ 噫！家貧親老，朝夕難繼者，雖有古人之孝，其何能親極滋味？ 思之及此，若恫在己。” 遂有是命。</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0월 22일(신사) 2번째기사</p>	<p>제주(濟州)에서 감귤(柑橘)을 진공(進貢)하였다. 임금이 진공한 사람들을 소견하고 묻기를,</p> <p>“너희의 탄환(彈丸)만한 작은 섬이 먼 바다 끝에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접제</p>	<p>濟州貢柑橘。 上召見進貢人等問曰：“念汝彈丸小島，逃在海陬，非朝家接濟，何以濟活耶？ 頃遣御史，督運湖南米六千石，爲汝民明春之糧。 念汝島</p>

<p>제주에서 감귤을 진공하다</p>	<p>(接濟)하지 않으면 어찌 살아 가겠는가? 근자에 어사(御史)를 보내어 호남미(湖南米) 6천 석을 독운(督運)하여 너희 명년 봄 양식을 대게 하였다. 너희 도민(島民)들을 생각함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쓰러지는 자가 있다면, 이는 내가 석년(昔年)의 공을 저버린 것이다.”</p> <p>하고, 이어서 옷과 양식을 주어 보내라고 명하였다.</p>	<p>氓或有一夫之顛連，則此予負昔年也。”仍命賜衣、糧送之。</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0월 24일(계미) 4번째기사 명정전 월대에 나가 5부의 부로를 불러 계주의 윤음을 선유하다</p>	<p>임금이 명정전(明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5부(部)의 부로(父老)를 불러 계주(戒酒)의 윤음(綸音)을 선유하였다. 이날 대신과 형조 판서를 공묵합(恭默閣)에 입시하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p> <p>“오늘은 금주(禁酒)를 한 일초(一初)의 날이다. 전후 금주를 범하여 도배(島配)된 자가 7백여 명이나 되는데,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정률(定律)을 고치어 조사(朝士)는 10년을 금고(禁錮)하고 유생(儒生)은 10년 동안 정거(停擧)하며, 서민과 공사천(公私賤)은 그 본토(本土)에서 10년 동안 종으로 삼되, 술을 빚은 자나 마신 자를 동률(同律)로써 시행하라.”</p> <p>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만일 술을 마시는 자가 없다면 술을 빚는 자가 스스로 그칠 것이라고 여기어 술을 빚다가 붙잡힌 자로 하여금 술을 사서 마신 자를 진고(陳告)케 하여 형을 면제하고 유배하게 하니, 이에 간사한 백성들이 진고를 하고 형을 면하는 자가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특명으로 곧장 석방하게 하였다.</p>	<p>上御明政殿月臺，召五部父老，宣諭戒酒綸音。是日，命大臣、刑判，入侍于恭默閣，教曰：“今日乃酒禁一初之日。前後犯酒島配者七百餘人，一竝放送。改定律，朝士則施以十年禁錮，儒生則十年停擧，庶民及公私賤，即其本土，十年爲奴，釀者、飲者同律。”先是上以若無飲者，則釀者自止，令犯釀被捉者，許陳告買飲人，而除刑發配，於是奸民多陳告免刑，至是又特命直放。</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1월 1일(기축) 2번째기사 대신과 경재를 불러</p>	<p>임금이 대신(大臣)과 경재(卿宰)를 불러 계주(戒酒)하라는 윤음(綸音)을 널리 알리게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p> <p>“내가 가장 신뢰하는 경재들과 저 나의 백료(白僚)들은 모두 나의 유시(諭示)를 들으라. 아! 옛사람이 이르기를, ‘궁중(宮中)에서 상투[髻] 높이기를 좋아</p>	<p>○上召大臣、卿宰，又以戒酒綸音誡告，其文曰：</p> <p>惟我股肱卿宰、越我百僚咸聽予諭。嗚呼！昔人云，‘宮中好高髻，四方高一</p>

내린 계주하라는 운음

하면 사방에서는 한 자[尺]를 높인다.14140) ’고 하였는데, 지금 여러 관원들이 술을 삼가지 않는 것은 진실로 나의 허물인 때문이며, 서민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역시 나의 불성실한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위로는 조상의 영혼에 죄를 짓고 아래로는 대사(大赦)의 은전(恩典)을 막았으니, 이게 나의 허물이고 나의 허물이다. 어찌하여 위로 조상에게 죄를 졌는가 하면, 한번 금주(禁酒)를 시킨 뒤로 늘 자성(慈聖)으로부터 잘하였다는 하교를 받들었는데, 인산(因山)이 겨우 끝나고 올해가 다가지도 않아서 금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음(會飲)까지 하였으니, 영혼이 얇고 있다면 내가 능히 금하였다고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위로 조상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아래로 대사의 은전을 막 았다는 것인가 하면, 아! 금년 봄에 내린 대사의 은전은 과거에 없던 일인데 범주(犯酒)한 자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금령(禁令)이 해이해질까 두려워 모두 사면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처분을 하기 위하여 도류안(徒流案)을 가져다가 보았는데, 그 수가 1천 명에 가까이 되니 이와 같이 하기를 마지 않는다면 장차 몇천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는 곧 내가 가르치지 못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법에 빠져들게 만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봄의 대사에서 석방시키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경사를 함께 맞이하는 의의이겠는가? 지금 비록 모두 석방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사전(赦典)에 참여시켰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아래로 사죄의 은전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장차 무슨 낮으로 효소전에 삭제(朔祭)를 거행하겠으며 또 무슨 낮으로 진전(眞殿)을 배알하겠는가? 아! 술은 바로 요사(妖邪)한 물건이다. 얼마 전에 선유(宣諭)한 것이 소민(小民)들의 감동을 어찌 가히 기필하겠는가마는, 단지 부로(父老)들에게만 하유하고 경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동자(董子)14141) 가 말하는 ‘조정을 바로 잡아야 만민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의의이겠는가? 오늘 새벽에 제사가 끝난 뒤 계속하여 전중(殿中)에서 울며 아뢰기

尺。’ 今之群工之不戒酒，寔由寡躬之咎，庶民之不遵令，亦由寡躬之不誠。因此而上負陟降，下闕霽典，寔予之咎，寔予之咎。何謂上負陟降，一自禁酒後，每承慈聖稱美之教，因山纔訖，今歲不盡，而非徒不止，甚至會飲，陟降有知，其以寡躬謂能禁乎否乎？此所謂上負陟降也。何謂下闕霽典，噫！今春霽典，往牒所無，而至於犯酒者，或恐弛禁，一竝不赦。今因處分，而取覽徒流案，則其數將至十百，若此不已，將不知至於幾十百。此即予不教，而令民陷法也。思之及此，不覺慄然。於春大赦不能放焉，是豈同慶之意？而今雖一竝放釋，何與於赦典哉？此所謂下闕霽典也。其將何顏行朔祭於孝昭殿，亦將何顏拜眞殿乎？噫！酒乃尤物也。頃者宣諭，小民之感動何可必，而只諭父老，不及卿宰，此豈董子‘正朝廷而正萬民’之意乎？今曉祭畢後，仍泣奏殿中曰，‘臣暨後嗣王，或有不戒酒之事，諸臣雖不知，於昭陟降若鑑之照。群臣或知而不諫，或身犯其戒者，亦降(大何)[太阿]，使海東臣庶，無面慢之態。’噫！上自股肱下

	<p>를, ‘신(臣)과 후사왕(後嗣王)이 혹시라고 술을 삼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 신하들이 비록 모르더라도 밝으신 영혼께서는 거울처럼 밝게 비추어 주소서. 못 신하들이 혹시라도 알고 간하지 않거나 혹 자신이 경계할 일을 범하였거든 또한 큰 징벌(懲罰)을 내리시어 해동(海東)의 신하와 백성된 자로 하여금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없도록 하소서.’ 하였다. 아! 위로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경제로부터 아래로 백료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종사(宗社)를 위한 고심을 본받아 깊이 아로새겨 간직하여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게 하고 형벌이 필요 없기를 기약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큰 허물에 빠지지 않게 하라.”</p> <p>하였다</p>	<p>至百僚，體予爲宗社苦心，其銘其佩，莫替予意，必以無刑爲期，使我元元，罔陷於大戾。</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1월 7 일(을미) 3번째기사 유신과 교서관 제조 홍계희를 불러 윤음과 간행에 대해 묻다</p>	<p>임금이 유신(儒臣)과 교서관 제조(校書館提調) 홍계희(洪啓禧)를 불러서 윤음(綸音)의 간행(刊行)에 대하여 물었다. 홍계희가 말하기를,</p> <p>“옛날에는 헌수(獻酬)하는 데에도 오히려 현주(玄酒)14143) 를 썼으니, 태묘(太廟)에 단술을 쓰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신(臺臣) 이민곤(李敏坤)이 글을 올려 간쟁하였으니 신은 일찍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금주(禁酒)가 잘되지 않는 듯하여 마음에 몹시 분완(憤惋)하였는데 선전관(宣傳官)이 적간(摘奸)한 거조를 보고는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일찍이 술로 인하여 사람에게 형을 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으나, 주고(酒誥)14144) 에도 또한 ‘내가 그 범죄한 자를 죽이리라.’ 는 말이 있으니, 그 법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법사(法司)의 기찰(譏察)을 허락하지 않는데 대저 ‘기(譏)’ 자는 《주례(周禮)》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곧 성인(聖人)의 법입니다. 시행함에 있어서 진실로 그 법도를 얻는다면 가히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p>	<p>上召儒臣及校書提調洪啓禧，問綸音刊行事。啓禧言：“古者獻酬，尙用玄酒，則太廟之用醴，不爲過矣。而向者臺臣李敏坤上書爭之，臣嘗以爲非矣。近者酒禁蕩然，心甚憤惋，及見宣傳官摘奸之舉，喜不自勝。殿下嘗以因酒刑人爲難，而《酒誥》，亦有‘予其殺語’，不嚴其法，將何以禁之？且殿下不許法司之譏察，夫譏字出於《周禮》，此乃聖人之法。行之苟得其道，則可無弊矣。”具允明曰：“法司譏察，一任吏胥耳，雖欲無弊，得乎？”啓禧曰：“惟在擇人。”允明曰：“擇吏胥難於擇官長矣。”上曰：“不禁麴，則不可禁也。”啓禧曰：“醴酒亦</p>

	<p>하니, 구윤명(具允明)이 말하기를,</p> <p>“법사의 기찰은 이서(吏胥)에게 일임하는 것이니, 아무런 폐단이 없게 하려고 하지마는 그것이 되겠습니까?”</p> <p>하였다. 홍계희가 말하기를,</p> <p>“오로지 택인(擇人)하는 데 달렸습니다.”</p> <p>하니, 구윤명이 말하기를,</p> <p>“이서를 가리는 일은 관장(官長)을 가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누룩을 금하지 않으면 술을 금할 수가 없다.”</p> <p>하니, 말하기를,</p> <p>“단술도 역시 누룩이 아니면 만들지 못할 것이니, 누룩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p> <p>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종묘(宗廟)에서 술을 쓰는 것을 숭상하여 삼대(三代)</p>	<p>非麴不成，麴不可禁也。”</p> <p>臣謹按宗廟之用酒尚矣，三代以來未之或改，今之用醴，雖出於聖上祛酒之苦心，終恐無益於禁，而大有缺於享祀之禮也。李敏坤之書，備論聲臭畝格之理，其曰‘鬱鬯、五齊，古禮不可廢’者，是誠不易之論。而啓禧急於將順，反加非斥，至引《酒誥》之‘殺’、《周禮》之‘譏’，傳會爲說，導人主於嚴刻之政，可謂以經文奸者矣。”</p>
--	---	---

	<p>이후로 혹시 고친 일이 없었는데, 지금 단술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성상의 술을 없애기 위한 고심에서 나왔지만 마침내 금주에는 무익할 것이고 향사(享祀)의 예에만 큰 결례(缺禮)가 되었다. 이민곤의 상서에 성취(聲臭)로 신명이 흠향한다는 이치를 갖추어 논하였는데, 거기에 말한 ‘울창주(鬱鬯酒)14145) 와 오제(五齊)14146) 는 고례(古禮)에 폐지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다. 그런데 홍계희는 임금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데에 급하여 도리어 그르다고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주고(酒誥)의 ‘죽인다.’는 말과 《주례》의 ‘기(譏)’ 자까지 끌어다 억지로 붙여 설명하여 준엄하고 가혹한 정치를 하도록 임금을 인도하였으니, 가히 경문(經文)으로써 간교함을 꾸미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1월 11일(기해) 4번째기사 밤에 신하들이 입시한 가운데 왕세자를 책망하고 전위하겠다고 하여 왕세자가 기절하다</p>	<p>(전략). 동궁이 물러나와 뜰에 내려가다가 까무러쳐서 일어나지 못하니, 유척기가 급히 의관(醫官)을 불러 진맥(診脈)하도록 청하였다. 그런데 맥도(脈度)가 통하지 않아 약을 넘기지 못하여 청심환(淸心丸)을 복용하게 하였더니, 한참 있다가 비로소 말을 통하였다. 홍봉한이 태복(太僕)14153) 의 가교(駕轎)에 태워 안으로 들게 하자고 주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전략)東宮退出，下階昏室不能起，拓基請急召醫官診脈。脈度不通，藥不能下，進服淸心丸，良久始通言語。鳳漢奏請以太僕駕轎入內，上許之。</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11월 14일(임인) 3번째기사 약원 제조 이후가 의관을 거느리고 관의함에 입대하여 동궁을</p>	<p>약원 제조 이후(李聃)가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관의함(寬毅閣)에 입대(入對)하였다. 이후가 안후(安候)를 물으니, 동궁이 말하기를,  “아픈 곳을 모르겠다.”  하였다. 여러 의관들이 진찰을 끝내자 이후가 의약(議藥)을 청하니, 동궁이 말하기를,</p>	<p>藥院提調李聃，率醫官入對于寬毅閣。聃問候，東宮曰：“不知痛處矣。”諸醫診候訖，聃請議藥，東宮曰：“議藥何爲?” 聃曰：“聖上特命入診議藥矣。” 東宮曰：“既有聖教，則議藥可也。” 遂以當歸鬚散，稟定而退。</p>



<p>입진하다</p>	<p>“의약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p> <p>하매, 이후가 말하기를,</p> <p>“성상께서 특명으로 입진하고 의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p> <p>하였다. 동궁이 말하기를,</p> <p>“이미 성상의 하교가 있었다면 의약하는 것이 가하다.”</p> <p>하니, 드디어 당귀수산(當歸鬚散)으로 품정하고 물러갔다.</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11월 19 일(정미) 1번째기사 범주 죄인 유세교를 효시하려다 석방하고 형관을 파직시키다</p>	<p>임금이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서 범주 죄인(犯酒罪人) 유세교(柳世僑) 등을 잡아들이게 하고, 도성 안 백성들을 많이 모은 다음 장차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효시(梟示)하게 할 즈음 형관(刑官)을 시켜 술이 든 그릇을 가져다가 보라고 명하니 모두들 술이라고 하였고, 모여 있는 부로(父老)들에게 보이게 하니 역시 술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p> <p>“죄인이 초(醋)라고 주장하는데, 여러 신하들은 술이라고 말하니, 경 등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p> <p>하니,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p> <p>“처음 보기에는 술과 같았으나 종이에 적시어 냄새를 맡아 보니, 역시 초 같</p>	<p>丁未/上御弘化門，拿入犯酒罪人柳世僑等，大聚都民，將令將臣梟示，命刑官取視酒器，皆曰酒也，命示父老，亦曰酒也。上謂大臣曰：“罪人稱醋，而諸臣謂酒，卿等其詳視之。”左議政金尙魯曰：“初見似酒，而染紙而嗅之，則亦似醋矣。”上入小次，命中官取入酒椀，良久上復出御，教曰：“人命至重，故予親嘗之，果是醋也。特放世僑，刑官之言酒者，罷其職。”</p>

	<p>왔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의 소차(小次)로 들어가서 중관(中官)에게 술 그릇을 가지고 들어 오라고 명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교하기를,</p> <p>“사람의 목숨이 지중(至重)한 까닭에 내가 친히 그것을 맛보았더니, 과연 초였다. 유세교는 특별히 석방하고 형관 중에 술이라고 말한 자는 파직시키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11월 23 일(신해) 2번째기사 홍경해가 선유를 끝내 고 돌아오자 10월 이 후 금주를 범한 자 3 백여 인을 석방하다</p>	<p>홍경해(洪景海)가 선유(宣諭)를 끝내고 돌아와서 민정(民情)이 감동하지 않음이 없다고 아뢰니, 10월 이후에 금주(禁酒)을 범한 자 3백여 인을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였다.</p>	<p>○洪景海宣諭，歸奏民情莫不感動，命盡放十月以後犯禁者三百餘人。</p>
<p>영조 90권, 33년 (1757 정축 / 청 건륭 (乾隆) 22년) 12월 11 일(기사) 2번째기사 태학에 황감을 내려 시사하고 이지회·홍계 근 등을 급제시키다</p>	<p>태학(太學)에 황감(黃柑)을 내리고 시사(試士)하였는데, 이지회(李之晦)·홍계근(洪啓謹) 등이 높은 등수를 차지 하여 모두 급제(及第)를 내렸다.</p>	<p>○頒柑太學，試士，李之晦、洪啓謹居高等，竝賜第。</p>
<p>영조 91권, 34년</p>	<p>임금이 거려청(居廬廳)에 나아갔다.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이 입시하니, 임</p>	<p>己丑/上御居廬廳。 禮曹判書李益炡</p>

<p>(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월 2일 (기축) 1번째기사          거려청에 나가 예조 판서 이익정에게 쌀값을 묻고, 원조 윤음을 내리다</p>	<p>금이 말하기를,          “요즘 시장 값이 어떠한가?”          하니, 이익정이 말하기를,          “공물미(貢物米) 한 섬 값이 한 냥 서 돈[一兩三錢]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인(貢人)들이 반드시 곤란할 것이다.”          하자, 구윤명(具允明)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술을 금한 보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같은 때에 쌀을 사서 두는 것이 좋다.”          하니, 이익정이 말하기를,          “듣건대, 홍봉한(洪鳳漢)이 균역청(均役廳)에서 쌀을 사서 많이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p>	<p>入侍，上曰：“近日市直何如？”益炆曰：“貢物米一石價，至一兩三錢云矣。”上曰：“貢人必困矣。”具允明曰：“此誠禁酒之效也。”上曰：“如此之時，買米以儲好矣。”益炆曰：“聞洪鳳漢，自均役廳，買米多積矣。”上命書元朝綸音，曰：          眇予否德，三十四年臨御，年又六十有五，而國事無一可恃，生民益困窮，當三陽回泰之日，思漢文之春詔，心竊惡焉。寡躬望七服縗，夙夜追慕，哀懷彌切，雖當陽春，有若隆冬。然一心憧憧，惟在元元。昨下勸農之教，今將餘意，其復申申，大小臣僚，體予眷眷之意，其於民事，勿論細者，一以祛民弊，保元元爲先務，夙夜孜孜，使海東民庶，咸趨於春臺、壽域，他日喜報上奏，陟降必欣豫，豈非吾東之幸歟？聞米直太歇云，貢人必困。其令惠局，從常平之法焉。</p>
---	---	--

	<p>하였다. 임금이 원조 윤음(元朝綸音)을 쓰라고 명하였는데, 이르기를,</p> <p>“내가 부덕(否德)으로 34년을 임어(臨御)하였고 나이가 또 65세가 되었는데, 나라 일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고 민생(民生)은 더욱 곤궁하니, 삼양 회태(三陽回泰)14188)의 날을 당하여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봄에 내린 조서(詔書)를 생각함에 마음이 그욕이 부끄럽다. 과인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최복(衰服)을 입고 밤낮으로 추모(追慕)하니 슬픈 소회가 더욱 간절하며 비록 양춘(陽春)을 당하였을지라도 엄동(嚴冬)과 같음이 있다. 그러나 한 마음에 잊지 못하는 것은 오직 백성이 있을 뿐이다. 어제 농사를 권장하는 교서를 내렸는데 이제 남은 뜻을 가지고 거듭 당부하니,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나의 권권(眷眷)14189)한 뜻을 체득하여 그 민생의 일에 세세(細細)함을 논하지 말고, 한결같이 민폐(民弊)를 없애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급선무를 삼아 밤낮으로 힘써서, 해동(海東)의 서민으로 하여금 함께 춘대(春臺)14190)·수역(壽域)14191)에 나아가게 하여, 다른 날에 기쁜 소식을 위에 아뢰면 선왕(先王)의 영혼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니, 어찌 우리 동방의 행운이 아니겠는가? 듣건대, 쌀 값이 크게 헐하다고 하니, 공인들이 반드시 곤란할 것이다. 혜국(惠局)으로 하여금 상평법(常平法)에 따르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월 3일 (경인) 1번째기사 약원에 명해 돌아가면서 입직하도록 하다</p>	<p>약원(藥院)에 명하여 돌아가면서 입직(入直)하게 하였다.</p>	<p>庚寅/命藥院輪回入直。</p>
<p>영조 91권, 34년</p>	<p>임금이 공묵합(恭默閣)에 나아갔는데,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도제조 김상로(金</p>	<p>上御恭默閣, 藥房入診。 都提調金尙</p>

<p>(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월 3일 (경인) 2번째기사 약방 입진 후 닭찜을 올리려 하자 정지시킨다. 김상로 등이 환후 평복의 고묘를 청하다</p>	<p>尙魯)가 닭찜[雞蒸]을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내가 가축들에 대하여 그 생동(生動)함을 보면 문득 이 물건이 어느 때인가는 사람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측은한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 삶아서 올렸는데 먹지 아니하면 이는 양(梁)나라 무제(武帝)의 일(14192)이다. 어찌 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먹기가 싫은데 어찌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p> <p>삼가 살펴보건대, 성상의 이 하교는 바로 천지가 만물을 생성(生成)하는 마음과 그 인후(仁厚)함을 같이하였으니, 송(宋)나라 황제가 ‘구운 양고기[燒羊]를 먹지 아니하겠다.’는 말(14193)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다.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p> <p>김상로가 임금의 환후가 평복(平復)되었다 하여 종묘(宗廟)에 고하고 경사를 치르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이때에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이 복색(服色)으로 하례를 받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부제조 이성중(李成中)이 말하기를, “일이 있으면 종묘에 고하는 것은 예(禮)입니다. 성상의 환후가 빨리 회복하셨으니 나라의 경사가 더할 수 없이 큰데, 어찌 종묘·사직에 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지난날 자전(慈殿)께 진하(陳賀)할 때에 오모(烏帽)와 백포(白袍)로 행하였으나, 그때는 나의 복제(服制)가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압존(壓尊)되어 길례(吉禮)를 임시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어찌 차마 백포로써 하례를 받겠는가?” 하였다.</p>	<p>魯請進雞蒸，上曰：“予於畜物，見其生動，則輒思此物何時爲人所食，便有惻隱之心，若烹進而不食，是梁武帝之事。何可爲也？既已厭食，何必殺也？”</p> <p>謹按聖上此教，直與天地生物之心，同其仁厚，其視宋帝‘不食燒羊’之語，不翅有間而已。豈不休哉？</p> <p>尙魯以上候平復，請告廟稱慶，上曰：“此時何爲此言？予以此服色，受賀可乎？”副提調李成中曰：“有事則告廟，禮也。聖候遄復，邦慶莫大，何可不告於宗、社乎？”上曰：“往日慈殿陳賀，以烏帽、白袍爲之，其時予之服制雖重，壓尊借吉可也，今予何忍以白袍受賀？”</p>
<p>영조 91권, 34년</p>	<p>화순 옹주가 졸(卒)하였다. 옹주는 바로 임금의 첫째 딸인데 효장 세자(孝章</p>	<p>甲辰/和順翁主卒。主卽上之第一女，</p>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월 17  
일(갑진) 1번째기사  
화순 옹주의 졸기

世子)의 동복 누이동생[同母妹]이다.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에게 시집가서 비로소 권문을 나갔는데, 심히 부도(婦道)를 가졌고 정숙(貞淑)하고 유순함을 겸비(兼備)하였다. 평소에 검약(儉約)을 숭상하여 복식(服飾)에 화려하고 사치함을 쓰지 않았으며, 도위(都尉)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고 힘써서 항상 깨끗하고 삼감으로써 몸을 가지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도위가 졸하자, 옹주가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그 집에 친히 거둥하여 미음을 들라고 권하자, 옹주가 명령을 받들어 한 번 마셨다가 곧 토하니, 임금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는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돌아왔는데, 이에 이르러 음식을 끊은 지 14일이 되어 마침내 자진(自盡)하였다. 정렬(貞烈)하다. 그 절조(節操)여! 이는 천고(千古)의 왕희(王姬) 중에 있지 아니한 바이다. 조정에 받들어 위로하고 정후(庭候)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부인(婦人)의 도(道)는 정(貞) 하나일 뿐이다. 세상에 붕성지통(崩城之痛)14219) 을 당한 자가 누구나 목숨을 끊어 따라가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마는, 죽고 사는 것이 또한 큰지라, 하루아침에 목숨을 결단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는 이는 대개 적다. 그러나 정부(貞婦)·열녀(烈女)가 마음의 상처가 크고 슬픔이 심한 즘음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자인(自引)14220) 하는 것은 혹시 쉽게 할 수 있지만, 어찌 열흘이 지나도록 음식을 끊고 한 번 죽음을 맹세하여 마침내 능히 성취하였으니, 그 절조가 옹주와 같은 이가 있겠는가? 이때를 당하여 비록 군부(君父)의 엄하고 친함으로서도 능히 감동해 돌이킬 수 없었으니, 진실로 순수하고 굳세며, 지극히 바른 기개(氣概)가 분육(賁育)14221) 이라도 그 뜻을 빼앗지 못할 바가 있지 아니하면 능히 이와 같겠는가? 이는 진실로 여항(閭巷)의 필부(匹婦)도 어려운 바인데, 이제 왕실의 귀주(貴主)에게서 보게 되니 더욱 우뚝하지 아니

而孝章世子同母妹也。 下嫁于月城尉金漢薰，始出閭，甚得婦道，貞柔兼備。 雅尚儉約，服飾不用華侈，與都尉交相儆勉，常以清慎自持，人謂賢都尉淑翁主可以儷美云，及都尉卒，主決意下從，勺水不入口。 上聞之，親幸其第，勸進糜餌，主承命一呷，旋即哇之，上知其志不可回，嗟歎而還，至是絕粒積十四日，竟以自盡。 烈哉，其操！此千古王姬之所未有也。 朝廷奉慰庭候，

【史臣曰：婦人之道，貞一而已。 世之遭崩城之痛者，孰不欲殞身下從，以遂其願，而死生亦大矣，其能判一朝之命，視之如歸者蓋尠矣。 然貞婦、烈媛，當其創(臣) [巨] 慟甚之際，即地自引，容或易辦，而豈有經旬絕粒，矢以一死，卒能成就，其節操如翁主者哉？當是時雖以君父之嚴且親，而亦莫能感回焉，苟非純剛至正之氣，有賁育所不能奪者能如是乎？此固閭巷匹婦之所難，而乃見於天家貴主，尤豈不卓然矣乎？嗚呼！至行純德，實我聖后傳授心法，故貴主平日所濡染者，亦移之

	<p>한가? 아! 지극한 행실과 순수한 덕은 진실로 우리 성후(聖后)께서 전수(傳授)하신 심법(心法)이므로, 귀주가 평일에 귀에 젖고 눈에 뻘 것을 또한 남편에게 읊졌던 것이다. 아! 정렬하도다. 아! 아름답도다.”</p>	<p>於所天。 嗚呼，烈哉! 嗚呼，懿哉!】</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월 17일(갑진) 2번째기사 화순 옹주의 상에 왕립하다. 예조 판서 이익정이 정려를 청했으나 불허하다</p>	<p>----- -----</p> <p>임금이 화순 옹주의 상(喪)에 왕립하였는데,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烜)이 청대(請對)하여 옹주의 정려(旌閭)를 청하였다. 임금이 환궁(還宮)한 뒤에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에게 이르기를,</p> <p>“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굶어서 죽었으니, 효(孝)에는 모자람이 있다. 앉아서 자식의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둬 타일러서 약을 먹기를 권하니, 저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어찌 억지로 마시지 아니하겠습니까?’라고 하고, 조금씩 두 차례 마시고는 곧 도로 토하면서 말하기를, ‘비록 성상의 하교를 받들었을지라도 중심이 이미 정해졌으니, 차마 목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기로, 내가 그 고집을 알았으나, 본심이 연약하므로 사람들의 강권을 입어 점차로 마실 것을 바랐는데,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생각하지</p>	<p>上臨和順翁主喪， 禮曹判書李益烜請對， 請旌翁主閭。 上還宮後謂左議政金尙魯曰：“以子而不從父言， 竟至餓死， 於孝有歉矣。 坐而視死， 非父之道， 故予申申諭之， 勸其服藥， 則渠笑而對曰， ‘聖教至此， 豈不强飲乎?’ 小飲二次， 卽爲還吐曰， ‘雖奉聖教， 中心已定， 不忍下咽矣’， 予知其固執， 而然本心軟弱， 庶幾被人强勸， 漸次飲之矣， 終不思順承親志， 竟以此殞命， 貞則有之， 似欠於孝矣。 其日卽死， 則予何恨焉， 而十日不食， 多苦予心矣。 俄者禮判請施旌閭之典， 而其請非矣。 爲父而旌其子之閭， 非貽謨之道， 亦不無爲弊於後也。” 尙魯曰：“聖教至當， 而卓爾之節， 不可使泯滅也。” 上曰：“百世不泯者在節， 而不在旌閭， 予在君師之位， 不欲貽後世之弊也。” 又教曰：“予之往臨也， 渠欲以諡號， 易其夫之名， 予已心許矣， 宣諡之日卽逝， 其若有待於宣諡者。 然而屬續之時， 未能分明知了， 此予所痛者也。”</p>

아니하고 마침내 이로써 운명(殞命)하였으니, 정절(貞節)은 있으나 효에는 모자란 듯하다. 그날 바로 죽었으면 내가 무엇을 한스러워하겠는가마는, 열흘을 먹지 아니하니 내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다. 아까 예조 판서가 정려하는 은전을 실시하라고 청하였는데, 그 청함은 잘못이다. 아버가 되어 자식을 정려하는 것은 자손에게 법을 주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뒤에 폐단됨이 없지 아니하다.”

하니, 김상로가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오나, 우뚝한 정절을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세(百世)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정절에 있고 정려에 있지 아니한데, 내가 군사(軍師)의 지위에 있으면서 후세에 폐단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내가 왕립하였을 적에, 그가 시호(諡號)로써 그 지아버의 명칭을 바꾸고 싶어하여 내가 이미 마음으로 허락하였었는데, 시호를 내리던 날에 죽었으니, 시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임종(臨終) 때를 분명히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마음 아파하는 바이다.”

하였다.

【史臣曰：貴主烈行，既已播在人口，亦將垂諸史牒，顧何待區區(棹) [綽] 楔之表哉？況父不可旌子之教，大哉王言，廓然公正，尤可爲萬世法矣。】  
上臨和順翁主喪，禮曹判書李益炆請對，請旌翁主閭。上還宮後謂左議政金尙魯曰：“以子而不從父言，竟至餓死，於孝有歉矣。坐而視死，非父之道，故予申申諭之，勸其服藥，則渠笑而對曰，‘聖教至此，豈不强飲乎？’小飲二次，卽爲還吐曰，‘雖奉聖教，中心已定，不忍下咽矣’，予知其固執，而然本心軟弱，庶幾被人强勸，漸次飲之矣，終不思順承親志，竟以此殞命，貞則有之，似欠於孝矣。其日卽死，則予何恨焉，而十日不食，多苦予心矣。俄者禮判請施旌閭之典，而其請非矣。爲父而旌其子之閭，非貽謨之道，亦不無爲弊於後也。”尙魯曰：“聖教至當，而卓爾之節，不可使泯滅也。”上曰：“百世不泯者在節，而不在旌閭，予在君師之位，不欲貽後世之弊也。”又教曰：“予之往臨也，渠欲以諡號，易其夫之名，予已心許矣，宣諡之日卽逝，



	<p>사신(史臣)은 말한다. “귀주(貴主)의 열행(烈行)은 이미 사람의 입에 전파되어 있으며, 또한 장차 사첩(史牒)에 전해질 것인데, 어찌 구구한 작설(綽楔)14222)의 표함을 기다리겠는가? 더구나 ‘아버가 자식을 정려할 수 없다’는 하교는, 위대하신 왕의 말씀이 넓고 공정하여 더욱 만세의 법이 될 만하다.”</p>	<p>其若有待於宣諭者。 然而屬續之時，未能分明知了，此予所痛者也。”</p> <p>【史臣曰： 貴主烈行， 既已播在人口，亦將垂諸史牒， 顧何待區區(棹) [綽] 楔之表哉？ 況父不可旌子之教， 大哉王言， 廓然公正， 尤可爲萬世法矣。】</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2월 13일(기사) 2번째기사 일본 대마주 태수 평의번이 사자를 보내어 향을 올리다</p>	<p>일본(日本)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평의번(平義蕃)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향(香)을 올렸다. 대마도는 언제나 국휼(國恤)에 조차(弔差)14232)를 보내어 향을 올리고 해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올리는 침향(沈香)이 대마도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강호(江戶)14233)에서 구하였으나, 또한 품질되어 멀리 중국에까지 가서 산 때문에 지난 가을에 비로소 준비하여 출발하였는데, 차사의 배가 또 풍파에 표류하여 해를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부산에 닿았다고 하였다.</p>	<p>----- ----- ----- --</p> <p>○日本對馬州太守平義蕃，遣使進香。馬島例於國恤，遣弔差進香，而未嘗逾歲，至是以其所進沈香，非島中所產求諸江戶，而亦乏絕以至遠質中國，故前秋始裝發，而差船又爲風濤所漂，經年之後，始泊釜山云。</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2월 26 일(임오) 1번째기사 좌상·우상에게 혈변을 본 일을 동궁에게 말 하게 하다</p>	<p>임금이 승문당(崇文堂)에 나아가자, 좌상(左相)·우상(右相)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아까 혈변(血便)을 보았는데, 이는 대개 마음을 써서 그러한 것이다. 경 등은 모름지기 이 뜻으로써 동궁(東宮)에게 입대(入對)를 청하는 것이 가 하다.” 하였다.</p>	<p>壬午/上御崇文堂，左、右相入侍。上曰：“予俄見血便，此蓋用慮而然。卿等須以此意，求對東宮可也。”</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2월 27 일(계미) 8번째기사 봉조하 김재로·행 관 중추부사 이종성·영중 추 부사 유척기 등이 올린 헌의</p>	<p>대신(大臣)이 헌의(獻議)하였다. 봉조하(奉朝賀)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담제 후 3년 안의 조식 상식(朝夕上食)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단지 권제(權制)이고 고례(古禮)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 개정하는 것이 불가하지 아니합니다만, 다만 생각건대, 국가에서 비록 수하(手下)의 상(喪)이라 하더라도 또한 3년을 상식한 것이 있으니, 효순(孝純)·의소(懿昭)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대로 상식을 하였는데, 수 백년 준행(遵行)한 고례(古例)를 어찌 감히 휘령전(徽寧殿)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정해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전의(前議) 가운데, ‘곡하지 아니하고 행한다.’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상(內喪)이 앞에 있고 담제 후 3년 안에 큰 제사 때, 음악을 쓰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에 이르러서는, 상식을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곡하고 곡하지 아니하는 데 엇매이지 아니합니다. 선왕(先王)의 제정한 예(禮)에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복(服)은 비록 낮출지라도 심제(心制)를 허락한 것은 아들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의미입니다. 27개월을 한(限)하여 음악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단연코 옳습니다. 《오례의(五禮儀)》에,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담제(禫祭) 후에 음악을 쓰고 왕세자의 복색을 무양 적색 흑단령(無揚赤色黑團領)·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로 정한 것은, 오히려 심제(心制)를 온전히 없애지 못하는 뜻입니다. 몸에 순길(純吉)의 복색을 입지 아니</p>	<p>大臣獻議。奉朝賀金在魯以爲：“禫後三年內仍行朝夕上食，只是權制，有違古禮，自今釐正，未爲不可。而但念國家，雖於手下喪，亦有爲之三年者，如孝純、懿昭而猶且仍行上食，則累百年遵行之古例，何敢遽謂始自徽寧殿斷可停止乎？臣之前議中，以不哭行之爲言者此也。至於內喪在先，禫後三年內大祭，用樂當否，不係於上食之行不行哭不哭。先王制禮，父在母喪，服雖降而心制，則許伸所以達子志之義。限二十七月不用樂，斷然爲是矣。《五禮儀》內喪在先，禫後用樂，而王世子服色則無揚赤色黑團領、烏紗帽、黑角帶爲定者，猶不能全沒心制之意也。身不服純吉之服，而乃反用樂將事，於禮於理合乎否乎？服與樂豈不大段矛盾乎？庚申國恤時，諸大臣、儒</p>

하였는데, 이에 도리어 음악을 써서 행사하면, 예(禮)와 이(理)에 합당하겠습니까 아니하겠습니까? 복색과 음악이 크게 모순(矛盾)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경신년 국휼(國恤)14250) 때에 여러 대신(大臣)과 유현(儒賢)이 모두 음악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한 것은, 그때에 국가에는 심제(心制)를 가진 세자[儲位]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담제 후에 모든 일을 길례(吉禮)를 쓰는 상례(常禮)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경신년의 대신과 유현이 역시 신사년 국휼(國恤)14251) 을 당하였으면, 그 헌의한 바가 혹시 다름이 있었을 듯합니다. 담제 후에 여러 신하의 복색은, 관원을 보내어 섭행(攝行)할 때에는 제복(祭服)을 입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왕세자가 섭행할 때는 세자가 이미 면제(冕祭)의 상복(常服)을 아직 회복하지 아니하였는데 제관(祭官)만 감히 홀로 제복을 입을 수 없을 듯하니, 무문 흑단령(無紋黑團領)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천담복(淺淡服)은 상하(上下)와 경중(輕重)의 차례를 잃으니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하였다. 행 관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종성(李宗城)은 말하기를,

“상제(祥祭) 뒤에 상식은, 선정신 송시열의 의논에 이르기를, ‘이미 대상(大祥)이라고 하면 상제 후에 상식하는 것은 예의(禮意)에 어긋난 듯한데, 영소전(永昭殿)에 이 예(禮)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어떠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선정신 박세채(朴世采)의 의논에 이르기를, ‘담제를 지낸 뒤에 산릉(山陵)의 곡위(哭位)와 혼전(魂殿)의 상식은 모두 한때의 권의(權宜)에 따른 방도에서 나온 것이니, 바로 예전에 이른바, 「예(禮)에 없는 예」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면, 상제 후의 상식은 두 선정신의 뜻이 모두 멈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이에 신의 구구한 소견으로는 비록 고례(古禮)가 아니고 또한 국전(國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열조(列祖)의 행하였던 바는 안신

賢皆以用樂爲是者，其時國家無持心制之儲位，故只就禫後凡事用吉之常禮而言也。若使庚申之大臣、儒賢，又當辛巳國恤，則其所獻議似或有異矣。禫後諸臣服色，遣官攝行時，固當服祭服王世子攝行時，世子既未復冕祭之常服，祭官似不敢獨服祭服，服無紋黑團領似宜。淺淡服則上下輕重失倫，恐不可也。” 行判中樞府事李宗城以爲：“祥後上食，先正臣宋時烈之議曰，‘既曰大祥，則祥後上食，似違禮意，永昭殿仍行此禮，未知如何’，先正臣朴世采之議曰，‘經禫之後，山陵之哭泣、魂殿之上食，皆出於一時權宜之道，正古所謂‘無於禮之禮。’以此見之，則祥後上食，兩先正之意，皆以爲當停，若臣區區之見，則雖非古禮亦非國典，而列祖之所行，如安神祭之類是也。上食之仍行，雖云權制，行之已百有餘年矣，今欲一切以古禮停廢，亦有所不敢議者。蓋以有舉莫廢，亦禮故也。至若禫後祭服色，獻官攝行，則自當具祭服行事。或者以‘佩玉後垂之純吉’，爲疑而問，傳曰，‘禫織而無所不佩’，禫祭之主人無所不佩，則禫後攝

제(安神祭)의 유(類)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비록 권제(權制)라 하더라도 행한 지 이미 백여 년이 되었는데, 이제 일체를 고레라 하여 폐지하려는 것은 또한 감히 의논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대저 거행함이 있으면 폐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예(禮)이기 때문입니다. 담제 후에 제사하는 복색에 이르러서는 헌관(獻官)이 섭행(攝行)하면 자연히 제복(祭服)을 갖추고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패옥(佩玉)을 뒤에 늘어뜨리는 것이 순길(純吉)이나를 의심하여 물었는데, 《전(傳)》에 이르기를, ‘담제(禫祭)에는 섬세(纖細)한 것으로 하며 차지[佩]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담제의 제주가 차지 않는 것이 없으면, 담제 후에 섭사(攝事)하는 제관(祭官)이 순길의 복색을 차림은 의심이 없으며, 왕세자가 섭행하면 아헌관(亞獻官) 이하가 마땅히 무양 흑단령으로 행사하라는 성상의 하교가 지극히允當(允當)하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유척기(兪拓基)는 말하기를,

“내상이 먼저 있을 때에, 혼전 상제(魂殿祥祭) 뒤에 그대로 상식을 행하여 3년을 마치는 것은 이미 고레와 국전에 어긋남이 있으니, 지금에 이르러 개정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겠으나, ‘거행함이 있는 것은 감히 폐하지 못한다.’는 의리로써 헤아려 보건대, 혹시 미안할 듯합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내상이 앞에 있으면, 혼전·산릉의 우제(虞祭)로부터 조석 상식(朝夕上食)과 사시 대향(四時大享)까지 왕후(王后)의 신좌(神座)를 아울러 설치하여 각각 예찬(禮饌)을 올리는 것은 역시 《오례의》에 실려 있는데, 어느 조(朝)로부터 정지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인조 대왕(仁祖大王) 대상(大喪) 때에 선정신 김집(金集)의 말한 바로 인하여 그쳤다.’고 합니다. 대개 오래고 가까움을 물론하고, 《오례의》에 실려 있는 바이고, 조종조(祖宗朝)에서 이

事之祭官，純吉無疑，王世子攝行則亞獻官以下當以無揚黑團領行事，聖教至爲允當，無容更議。”領中樞府事兪拓基以爲：“內喪在先時，魂殿祥祭後仍行上食，以終三年，既有違於古禮及國典，則及今釐正，誠爲合宜，而揆以‘有其舉之莫敢廢’也之義，或似未安。第伏念內喪在先，則自魂殿、山陵虞祭，至朝夕上食、四時大享，并設王后神座，各進禮饌，亦載於《五禮儀》，而不知自何朝停止。或言，‘仁祖大王大喪時，因先正臣金集所言而止之’云。蓋勿論久近，《五禮儀》所見載，而祖宗朝所已行者，亦既以違於禮而停止，則今此上食一段，釐正於《補編》，恐無不可矣。吉服與祭服，輕重稍別，五月後徽寧殿大祭，王世子攝行時，獻官以下服色用無揚黑團領，聖教允當，而至於遣官攝行時獻官以下服祭服，亦有意義，恐不宜改易。”

	<p>미 행한 바를 또한 이미 예(禮)에 어긋난다고 하여 정지하였으니, 지금 이 상식의 일단(一段)을 《보편》에 개정하는 것은 불가함이 없을까 합니다. 길복(吉服)과 제복은 경중이 조금 다르니 5개월 후 휘령전 대제에 왕세자가 섭행할 때에 헌관 이하의 복색은 무양 흑단령을 쓰라는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하며, 관원을 보내어 섭행할 때에는 헌관 이하가 제복을 입는 것은 또한 의의(意義)가 있으니, 고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할 듯합니다.”</p> <p>하였다.</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3월 6일 (임진) 3번째기사 송문당에 나가 공물을 바치러 온 제주 백성을 불러 진정의 득실을 묻다</p>	<p>임금이 송문당에 나아가서, 제주(濟州) 백성들을 불러 보았다. 이때 제주 백성이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로 서울에 올라온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특별히 불러들여서 그 곳의 연사(年事)와 작년 진정(賑政)의 득실(得失)을 물었다. 이보다 먼저 섬 백성이 굶주림을 고하였는데, 임금이 근심하기를 마지 아니하여 특별히 독운 어사(督運御史)를 보내어 곡식 만여 석을 옮겨서 구호하니, 일도(一島)의 백성이 힘입어서 온전히 살아났다.</p>	<p>上御崇文堂，召見濟州民人等。時濟民以貢獻有上京者，上特命召入，問其年事及前歲賑政得失。先是島民告饑，上軫念不已，特遣督運御史，移粟萬餘石而賑之，一島之民賴而全活。</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3월 25일(신해) 1번째기사 함인정에서 향을 친견하고, 돈화문에 부복한 평양인 홍소사에게 식물 등을 주도록 하다</p>	<p>임금이 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서 친히 향(香)을 전하는 예식을 행하고, 인하여 진전(眞殿)에 나아갔다가 명정문(明政門)으로 나와서 승지에게 묻기를,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부복(俯伏)한 부인(婦人)이 누구인가?”</p> <p>하였다. 이때 평양(平壤) 권이형(權以亨)의 아내 홍소사(洪召史)가 연상(練祥) 때에 서울에 올라와서 궐문 밖에 부복한 것이다. 이보다 먼저 권이형이 인장(印章)을 위조한 죄로 옥(獄)에 구속된 지 10여 년인데, 홍소사가 그 남편을 위하여 궐문 밖에 와서 엎드린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침부터 어두울 때까지 혹시 폐한 적이 없었다. 임금이 듣고 이상하게 여겨서 특명으로 정려(旌閭)하</p>	<p>辛亥/上御涵仁亭，行觀傳香，仍詣眞殿，出明政門，問承旨曰：“敦化門外俯伏婦人，誰也？”時，平壤權以亨妻洪召史趁練祥上京，俯伏闕門外也。先是以亨以印僞造罪，繫獄十餘年，洪召史爲其夫來伏闕外月餘，自朝至昏，未嘗或廢。上聞而異之，特命旌閭，以亨減死定配，其女自此感恩，因山時上來，躬自負土，今又趁孝昭殿練祥，來伏闕門外，上嘉其志，令該曹，食</p>

	<p>고 권이형에게 사형(死刑)을 감하여 정배(定配)하였는데, 그 여자가 이로부터 은혜에 감사하여 &lt;정성 황후(眞聖王后)의&gt; 인산(因山) 때에는 올라와서 자신이 흙을 저다 날랐고, 이제 또 효소전(孝昭殿) 연상 때에 맞추어 궐문 밖에 와서 엎드렸는데, 임금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해조(該曹)로 하여금 식물(食物)과 의자(衣資)를 후하게 주도록 하였다.</p>	<p>物、衣資從厚題給。</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5월 22일(정미) 2번째기사 선농단에 거동하여 기우제를 친행하다</p>	<p>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거동하여 기우제(祈雨祭)를 친히 행하였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흑원령포(黑圓領袍)를 갖추고 선농단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한 다음, 성기위(省器位)에 나아갔다가 이어서 성생위(省牲位)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펴본 뒤에, 막차(幕次)에 들어가서 좌윤(左尹)에게 명하여 농민(農民)을 거느리고 입시하게 하였다.</p>	<p>上幸先農壇，親行祈雨祭。上具翼善冠、黑圓領袍，詣農壇奉審，詣省器位，仍詣省牲位，省牲後入幕次，命左尹，率農民入侍。</p>
<p>영조 91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6월 25일(기묘) 2번째기사 공묵합에서 대신,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훈련 대장 김성응의 파직 등을 허락하다</p>	<p>임금이 공묵합(恭默閣)에 나아가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고서, 훈련 대장 김성응(金聖應)은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말고, 전 병사(兵使) 윤태연(尹泰淵)은 도 삼년(徒三年)으로 정배(定配)하며, 전 부사(府使) 이유신(李裕身)은 먼저 파직하고 뒤에 나치(拿致)하라 명하였다. 이때 동래 부사 조엄(趙職)의 장계(狀啓)에 잠상 죄인(潛商罪人) 등의 초사(招辭)를 낱낱이 들어서 말하기를,</p> <p>“역관(譯官) 정사흠(鄭思欽)은 변경(邊境) 백성과 결탁하여 관(館)에 들어가서 몰래 팔았는데, 인삼이 이미 사공 담(司空潭)에게서 나왔으니 사공 담은 바로 잠상의 와주(窩主)14374) 이므로 정사흠과 더불어 일체로 논단(論斷)할 것이고, 정세장(鄭世章)은 매매를 주관하였으니 정사흠과 마땅히 다름이 없으며, 백우언(白瑀彦)은 인삼이 이미 잡혔으니 입관(入館)의 율(律)로 논할 것이고, 이업동(李業同)과 이치우(李致雨)는 인삼과 은(銀)을 같이 거래하였는데, 이업동이 멀리 귀양간 이치우에게 추위(推諉)14375) 하니 대질(對質)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조(刑曹)로 하여금 신부(臣府)14376) 에 압송(押送)하게 하소</p>	<p>上御恭默閣，引見大臣、備堂，命訓練大將金聖應罷職不敍，前兵使尹泰淵徒三年定配，前府使李裕身先罷後拿。時，東萊府使趙職狀啓，枚舉潛商罪人等招辭以爲：“譯官鄭思欽締結邊民，入館潛賣，而蔘既出於司空潭，則潭是潛商窩主，與思欽一體論斷，鄭世章主管買賣，與思欽宜無異同，白瑀彦蔘既被捉，以入館律論之，李業同、李致雨蔘、銀同爲去來，而業同推諉於遠謫之致雨，不可不對質，令秋曹押送臣府。(安式善) [安武善] 則致雨持銀、蔘去來，不可不對質勘處。其時訓導、別差，依《續典》拿處，自今無地部公文而下來者，盡令屬公更爲定式，前後潛</p>

서. 안무선(安武善)은 이치우가 은과 인삼을 가지고 거래하였으니, 대질(對質)하고 감안(勘案)하여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의 훈도(訓導)·별차(別差)는 《속전(續典)》에 의하여 나처(拿處)하며, 이제부터 호조(戶曹)의 공문(公文)이 없이 내려오는 것은 모두 속공(屬公)하도록 다시 법을 정하고, 전후(前後) 잠상을 잡은 장교(將校)는 논상(論賞)할 일을 아울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우의정 신만(申晩)이 아울러 시행을 허락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계본(啓本) 가운데 또 논하기를, ‘좌병사 윤태연은 백우언 등을 잡아 가두어서 훈국(訓局)의 삼채(蔘債)를 징출(徵出)하였고, 전 부사 이유신은 속공(屬公)한 삼가(蔘價)를 장문(狀聞)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또한 엄하게 처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은 비록 둘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은 하나이다. 정사흠은 홍우정(洪禹鼎)과 다름이 없으니 홍우정과 일체로 감률(勘律)할 것이며, 사공 담은 인삼이 한 물건이고 연도도 또한 같다. 전번에 이미 처분하였는데 율(律)을 어찌 거둬하겠는가? 정세장은 본토(本土) 사람으로서 잠상의 주인과 다름이 없으니, 동래 부사로 하여금 한 차례 엄하게 형을 가한 뒤에 도배(鳥配)할 것이며, 이업동·안무선·백우언은 또한 이치우와 다름이 없으며 그가 이미 범하였는데, 이치우에게 무슨 경중(輕重)이 있는가를 물어서 이치우와 같이 감률할 것이다. 훈도·별차의 일과, 공문(公文)이 없이 내려온 것은 모두 속공할 일과, 잠상을 잡

商捕捉將校論賞事，并令廟堂稟處。”右議政申晩，并請許施，又曰：“啓本中又論，‘左兵使尹泰淵捉囚白瑀彦等，徵出訓局蔘債，前府使李裕身，屬公蔘價，不爲狀聞’云，亦宜嚴處。”上曰：“事雖二，本則一也。鄭思欽與洪禹鼎無異同，其與禹鼎一體勘律，司空潭則蔘是一物，年亦同焉。頃已處分，律何疊焉？鄭世章以本土之人，無異潛商之主人，令萊府，嚴刑一次後鳥配，李業同、安武善、白瑀彦亦與李致雨無異，渠已犯矣，問於致雨有何輕重，與致雨同爲勘律。訓導、別差事及無公文下來者盡令屬公事，捕捉人論賞事，并依狀請施行。噫！國法宜自近及遠。訓局雖因鑄錢，而物貨多矣，則何許禁蔘？以此之故，許多人命，將陷一律。若無許蔘，豈有是事？不治其本，反治其末，豈不乖於刑政乎？且尹泰淵之纔爲闕任，宜當自飭，而俯循訓局之令，干預蔘商，不飭此人，曰有國法？訓練大將金聖應罷職不敘，以銀爲蔘時，必有從中幻弄之將校，令該曹查問定配，尹泰淵，令該府徒三年定配。前府使李裕身其所做錯，雖是料外，既

	<p>은 사람에게 논상하는 일은 모두 장청(狀請)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아! 국법은 마땅히 가까운 데에서부터 먼 곳에 미쳐야 할 것이다. 훈국(訓局)은 비록 주전(鑄錢)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물화(物貨)가 많은데 어찌하여 금삼(禁蔘)을 허락하겠는가? 이 까닭으로써 허다한 사람의 목숨이 장차 일률(一律)14377)에 빠질 것이다. 만약 인삼 파는 것을 허락함이 없었으면, 어찌 이 일이 있겠는가?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끝을 다스리니, 어찌 형정(刑政)에 어긋나지 아니하겠는가? 또 윤태연이 가까스로 병사[闕任]가 되었으니 스스로 신칙함이 마땅한데, 굽혀서 훈국의 영(營)에 따라 삼상(蔘商)에 간여하였으니, 이 사람을 신칙하지 아니하면 국법이 있다고 하겠는가? 훈련 대장 김성응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이며, 은(銀)으로써 인삼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서 환롱(幻弄)한 장교가 있을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사해 신문하여 정배하고 윤태연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도 삼년으로 정배하게 하라. 전 부사 이유신은 그 주착(做錯)14378)된 바가 비록 생각 밖이라 하더라도, 이미 들은 뒤에는 신칙함이 없을 수 없으니, 먼저 파직된 뒤에 잡아다 국문하라.”</p> <p>하였다. 대사간 유한소(兪漢蕭)를 장기 현감(長鬐縣監)으로, 정언 임성(任城)을 성현 찰방(省峴察訪)으로 보외(補外)하라 명하였다. 패초(牌招)를 어긴 때 문이었다.</p>	<p>聞之後，不可無飭，先罷後拿。”命大司諫兪漢蕭長鬐縣監，正言任城省峴察訪補外，以其違牌也。</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9월 16일(기해) 1번째기사 홍화문에 나가 오부의 기로 백성을 인견하고</p>	<p>임금이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 오부(五部)의 기로(耆老) 백성들을 소견하고, 친히 지은 금주(禁酒)의 윤음(綸音)을 내려 선시(宣示)하였는데, 대략 이르기 를,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禮)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수치를 알고 또 바르게 되지만, 법으로써 백성들을 인도하고 형벌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죄만을 면하려 하고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아! 공</p>	<p>己亥/上御弘化門，招見五部耆老民人，下親製禁酒綸音宣示。略曰：導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導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噫！孔訓豈欺我哉？且一弛一張，文武之道不獲已。特放編配，減其律名，申申</p>



선시한 친제 금주 윤  
음

자의 이러한 가르침이 어찌 우리를 속이는 것이겠는가? 또 한번 늦추고 한번 죄이는 것은 문무(文武)의 도(道)에서는 부득이한 일이다. 편배(編配)14452) 된 자를 특별히 석방하고 죄명(罪名)을 감한 다음에 거듭거듭 가르치고 타일러서 너희들이 감복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다. 작년 겨울에는 조금 그 효과가 있었지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내가 어사(御史)에게 명하여 두루 물어보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눈치를 살폈으므로, 내가 스스로 탄식하기를, ‘내가 비록 덕이 적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전정(殿庭)에 아뢰 뒤엔 먼저 군민(軍民)들에게 유시(諭示)하고 그 다음에 대소 신료들에게 유시하는 까닭이다. 이것이 중국 삼대(三代)14453) 의 백성들을 바르게 하여 도(道)가 굳게 행하여졌던 까닭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습속(習俗)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곤란하므로, 언제나 법통이 헤이하여질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어사에게 명하여 강촌(江村)과 근기(近畿) 지방을 염문(廉問)하게 하였는데, 어사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몰래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달았다.’라고 하였으며, 또 현장에서 체포된 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들은 뒤로 나는 마음으로 매우 부끄럽게 여겨, 전정(殿庭)에 배알(拜謁)할 면목이 없었다. 먼저 백성들에게 신칙하고 권려하는 하교를 내리는데,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능히 참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고달픔을 꺼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시 경조(京兆)14454) 에 명하여 군민(軍民)들을 불러 모으고, 특별히 정문(正門)에 나아가서 순순(諄諄)히 가르치고 타이르는 것이다. 아! 대소 군민(軍民)들은 조용히 이러한 유시(諭示)를 들으라. 먼저 나의 잘못을 타이르고, 다음에 너희들의 잘못을 타이르겠다. 동자(董子)14455) 가 이르기를, ‘임금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조정(朝廷)이 바로잡히고 만민(萬民)들이 바로잡히며, 《대학(大學)》의 혈구지도(絜矩之道)도 그에 따라 또한 저절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능히 만민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능히 마

誨諭, 以冀爾等之感回矣。 昨冬則微有其效, 幾乎無焉。 而命御史遍問, 人皆駭眼, 予自歎曰, ‘予雖涼德至愚, 而神者民也。’ 此奏殿之後, 先諭軍民, 次諭大小臣僚之故也。 此正三代之民直道而行者也。 雖然習俗難以耐久, 每恐法弛, 故命御史廉問江村近畿, 而御史回奏, 暗釀相續, 又有現捉者。 聞此之後, 心切忸焉, 其無拜殿之顏。 先施飭勵之教, 自此以後, 心不能耐, 不憚其憊。 更命京兆, 召集軍民, 特臨正門, 諄諄誨誘。 吁嗟! 大小軍民, 靜聽此諭。 先諭予過, 次諭爾等之過。 董子云, ‘正心正朝廷正萬民’, 《大學絜矩》之道, ‘其亦自近及遠’ 矣。 今不能正萬民, 寔予不能正心之致者, 亦何顏對爾等乎? 此予過也。 大學豈不云乎? 堯、舜之民從令, 桀、紂之民從令, 此由其君之心。 而古人曰, ‘草上之風必偃。’ 今者禁令, 決非反其所好, 則爾等之不從令, 抑何心哉? 此爾等之過也。 噫! 一人編配, 十人望呼。 犯者雖不足恤, 妻孥何辜焉? 此爾等之過也。 人之所以爲人, 其有五倫也。 父呼其子, 子呼其父,

음을 바로잡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니, 또한 무슨 면목으로 그대들을 대하겠는가? 이것은 나의 잘못인데, 《대학》에서 어찌 그러하다고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요(堯)임금·순(舜)임금 시대의 백성들이 법령을 따른 것과 걸왕(桀王)·주왕(紂王) 시대의 백성들이 법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이것이 그 임금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옛사람이 말하기를,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한쪽으로 쓰러지게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금령(禁令)은 결코 그 좋아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들이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또한 무슨 마음인가? 이것이 그대들의 잘못이다. 아! 한 사람의 편배(編配)를 열 사람이 지켜 보는 것이다. 법을 범한 자들은 비록 죽히 불쌍히 여길 것도 없으나, 그 처자식이야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것이 그대들의 잘못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오륜(五倫)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부르고, 지아버지가 그 지어미를 부르고 지어미가 그 지아버지를 부르면서 가르치고 타이를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법을 범하는 것은 또한 무슨 마음인가? 이것이 그대들의 잘못이다. 한때의 욕망으로 인하여 오륜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금수(禽獸)의 지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바다의 절도(絶島)나 변방의 요새(要塞)에서 일생을 마치더라도 스스로 불쌍히 여길 것은 없으나, 늙은 아버지와 늙은 어미와 외톨이 아들과 과부 아내가 대문에 기대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겠는가? 이와 같은 때가 이르면 그 남의 아버지가 되거나, 그 남의 아들이 되거나, 그 남의 지아버지가 되거나 그 남의 아내가 되는 자의 심정을 너희들은 깊이 생각해 보라. 법령을 따르고 술을 경계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 나는 본래 너무 관대하여 비록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조차 차마 발로 밟아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백성들이겠는가? 아! 이러한 마음을 저 하늘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내가 비록 흰 머리에 나이가 많다 하나, 밤낮으로 마음 속에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군민(軍民)들이다. 그들이 비록 능히

夫呼其妻，妻呼其夫，而不知誨誘，自犯其憲，抑何心哉？此爾等之過也。因一時之慾，不顧五倫，自歸於禽獸域，抑何心哉？海島邊塞終身而不自恤，老父老母，孤兒寡妻，倚門望呼？到此之時，其曰爲人父，其曰爲人子，其曰爲人夫，其曰爲人妻，爾等其深思之。遵令而戒酒可乎？犯令而飲酒可乎？噫！予本太寬，雖螻蟻不忍踐也，況元元乎？吁嗟！此心可質彼蒼。雖白首暮年，夙夜眷眷軍民也。其雖不能違法，予心若何？吁嗟！予心爾等其諒之。臨御幾十年，亦無大負於爾等，抑何心負予若此？且若無的則無射者，無逕則無行人，若無釀者，何處求飲？犯禁釀，賣與飲者，俱犯邦憲。市業多岐，亦何故而捨便而取險乎？以此言之，釀者亦無異於飲者。莫重祭奠，用醴酒而禁，則國之興亡，惟在酒禁之行不行，非爲爾等非爲邦憲，此誠興亡攸係。自徽寧殿今日爲始，上食依晝茶禮例，以茶代醴。特臨正門，開心曉諭，爾等咸聽此諭，莫替予暮年臨門申申之諭。

	<p>법을 어기지 아니하더라도 내 마음이야 어떠하겠는가? 아! 내 마음을 그대들은 잘 헤아리도록 하라.</p> <p>내가 임어(臨御)한 지 수십 년이지만, 또한 너희들에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그대들은 또한 무슨 마음으로 이와 같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가? 또 만약 표적이 없으면 활을 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지름길이 없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만약 술을 빚는 자가 없다면 어디에서 술을 구해 마시겠는가?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범하고 술을 팔거나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나라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시업(市業)이 여러 가지인데, 또한 무슨 까닭으로 편한 업종을 버리고 위험한 업종을 택하는가? 이로써 말한다면 술을 빚는 자도 또한 술을 마시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 막중한 제사의 전례(奠禮)에는 예주(醴酒)14456)를 사용하고 술을 금지하니, 나라의 흥망이 오로지 금주(禁酒)가 행하여지고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므로, 그대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되는데, 이것은 진실로 나라의 흥망이 달린 문제이다. 휘령전(徽寧殿)에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상식(上食)은 주다례(晝茶禮)의 예에 의하여 차(茶)로써 예주(醴酒)를 대신하도록 하라. 내가 특별히 정문(正門)에 나아가서 마음을 터놓고 효유(曉諭)하는 바이니, 그대들도 모두 이러한 효유를 듣고, 내가 늙은 나이에 정문에 나아가니 거듭거듭 당부하는 유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p> <p>하였다.</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2월 2일(갑인) 1번째기사 송문당에 나가 감귤을 반사하고 선비들을 시</p>	<p>임금이 송문당(崇文堂)에 나아가 감귤(柑橘)을 반사(頒賜)하고 선비들을 시취(試取)하였다.</p>	<p>甲寅/上御崇文堂，頒柑試士。</p>

취하다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12 일(갑자) 3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중탕을 달 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이중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	藥房煎進理中湯。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13 일(을축) 2번째기사 약방에서 오적산을 달 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오적산(五積散)을 끓여서 올렸다.	藥房煎進五積散。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14 일(병인) 2번째기사 약방에서 인삼양위탕 을 달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인삼양위탕(人蔘養胃湯)을 끓여서 올렸다.	藥房煎進人蔘養胃湯[人蔘養胃湯]。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15 일(정묘) 1번째기사 약방에서 인삼양주탕 을 달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인삼양주탕(人蔘養胃湯)을 끓여서 올렸다.	丁卯/藥房煎進人蔘養胃湯。
영조 92권, 34년	약방(藥房)에서 이중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戊辰/藥房煎進理中湯。 上曰：“今年

<p>(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16일(무진) 1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증탕을 달여 올리자 승지에게 효소전의 어제 제문을 쓰게 하다</p>	<p>“금년 안에 있는 대향(大享)·삭제(朔祭)를 세 번이나 돌아가면서 섭행(攝行)하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인자(人子)의 도리이겠는가?” 하고, 이어서 눈물을 줄줄 흘려서 베개를 적시었다. 임금이 명하여 납향 대제(臘享大祭)도 대신이 섭행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효소전(孝昭殿)의 어제 제문(御製祭文)을 쓰게 하였다. 밤에 왕세자가 입시(入侍)하여 오랫동안 있었다.</p>	<p>內大享朔祭，三巡命攝，此豈爲人子之道乎？”仍涕淚沾枕。命臘享大祭，大臣攝行。上命承旨，書孝昭殿御製祭文。夜，王世子入侍良久。</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17일(기사) 2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증탕을 올리다</p>	<p>약방(藥房)에서 이증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p>	<p>藥房煎進理中湯。</p>
<p>英祖 92卷, 34年 (1758 戊寅 / 청 건륭 (乾隆) 23年) 12月 18日(庚午) 1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증탕을 올리다. 주서에게 효소전 향사 뒤에 와서 아뢰도록 하다</p>	<p>약방(藥房)에서 이증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고, 왕세자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경주(更籌)14512) 를 헤아려서 아뢰게 하였는데, 바로 3경(更) 1점(點)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시각이 기침(起寢)할 때인데도, 오히려 침상에서 이불을 덮고 있으니, 어찌 서글픈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효소전(孝昭殿)에 가서 향사(享事)가 끝난 뒤에 와서 아뢰게 하였다.</p>	<p>庚午/藥房煎進理中湯，王世子入侍。上命中官，數更籌以奏，乃三更一點。上曰：“此是起寢時也，而猶貼床褥，曷勝哀愴？”仍命注書，往孝昭殿享事畢後來奏。</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19</p>	<p>약방(藥房)에서 이증탕(理中湯)을 끓여서 올렸다.</p>	<p>藥房煎進理中湯。</p>

<p>일(신미) 2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중탕을 올리다</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1 일(계유) 2번째기사 환후가 조금 낫자, 이 중탕에 이중건공탕이 라는 이름을 하사하다</p>	<p>임금의 환후(患候)가 조금 나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중탕(理中湯)의 공(功)이다. 이중탕의 이름을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이라고 하사하겠다.” 하였다.</p>	<p>上候少愈。上曰：“此理中湯之功也。賜名理中湯曰，‘理中建功湯。’</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1 일(계유) 3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중건공탕 을 달여 올리다</p>	<p>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p>	<p>藥房煎進理中建功湯。</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2 일(갑술) 1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중건공탕 을 달여 올리다</p>	<p>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p>	<p>甲戌/藥房煎進理中建功湯。</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3 일(을해) 1번째기사</p>	<p>임금의 환후인 기침 기운 때문에 약방(藥房)에서 귤강차(橘薑茶)를 끓여서 올렸다.</p>	<p>乙亥/上候以欬氣，藥房煎進橘薑茶。</p>

약방에서 글강차를 달여 올리다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2월 24일(병자) 2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중건공탕을 달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藥房煎進理中建功湯。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2월 25일(정축) 1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중건공탕을 달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丁丑/藥房煎進理中建功湯。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2월 25일(정축) 2번째기사 효소전 향관을 소견하고 상식 배물에 대해 묻다	임금이 효소전(孝昭殿)의 향관(享官)을 소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상식(上食)의 제물(祭物)은 간맛이 알맞던가?” 하고, 인하여 흐느껴 울면서 하교하기를,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그 곳에 가 있었다. 무릇 부모가 그리우면, 부모의 수복(守僕)도 모두 그리운 것이다. 향관(享官)과 충의부(忠義府)의 수복이 모두 그렇다.” 하였다.	上召見孝昭殿享官，上曰：“上食祭物，鹹淡適宜乎？”因嗚咽，下教曰：“身雖在此，心懸其處。凡懷父母，則父母之僕，皆可懷矣。享官及忠義守僕，皆爲懷也。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2월 26일(무인) 3번째기사 약방에서 정기천향탕	약방(藥房)에서 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을 끓여서 올렸다.	藥房煎進正氣天香湯。

을 달여 올리다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7 일(기묘) 1번째기사 기침이 낫지 않자 내 국 제조 이종백을 파 직하고 이창수로 대신 케 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기침 기운이 있는 것은 오로지 공기 때문인데도, 이중탕(理中湯)을 그대로 쓰고 중지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의관(醫官)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에, 제조(提 調)가 이르기를, ‘성심(聖心)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관들이 감히 갑자기 아뢰지 못하고, 이에 이 약제를 그대로 써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관직이 약제를 맡아보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살펴보지 못하니, 제조 이종백 (李宗白)을 파직하고, 이창수(李昌壽)를 내국 제조(內局提調)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己卯/教曰: “欬氣專由氣, 而理中湯不 肯遽止, 問于醫官之際, 提調云 ‘聖心 所定, 故諸醫不敢遽奏, 乃用此劑’ 云。 職在嘗藥, 不審若此, 提調李宗 白罷職, 以李昌壽爲內局提調。”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7 일(기묘) 3번째기사 약방에서 정기천향탕 을 달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을 끓여서 올렸다.	藥房煎進正氣天香湯。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8 일(경진) 2번째기사 약방에서 정기천향탕 을 달여 올리다	약방(藥房)에서 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을 끓여서 올렸다. 임금이 약방(藥房) 제조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렸을 때 기운이 매우 약하였는데, 늙은 나이에 이르게 되자, 점차 강 건(強健)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자(程子)께서 이른바 ‘수염과 머리털이 옛날보다 좋아졌다.’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자봉(自奉)하기를 박하게 한 까닭이다.” 하였다.	藥房煎進正氣天香湯。 上謂藥房提調 曰: “予少時氣甚弱, 及至暮年, 漸覺 強健, 此正程子所謂鬚髮勝昔者, 非他 道也, 平日自奉薄故也。”
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 (乾隆) 23년) 12월 29 일(신사) 2번째기사	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	藥房煎進理中建功湯。



<p>약방에서 이중건공탕을 달여 올리다</p>		
<p>영조 92권, 34년 (1758 무인 / 청 건륭(乾隆) 23년) 12월 30일(임오) 2번째기사 약방에서 이중건공탕을 달여 올리다</p>	<p>약방(藥房)에서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을 끓여서 올렸다.</p>	<p>藥房煎進理中建功湯。</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1월 1일(계미) 1번째기사 영의정 등의 건의로 상후가 나온 것을 종묘에 고하고 교지를 반포토록 하다</p>	<p>임금이 공묵합(恭默閣)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영의정·좌의정·예조 판서가 입시(入侍)하여 상후(上候)가 평복(平復)된 경사로써 종묘(宗廟)에 고하고 교지를 반포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미 조종(祖宗)의 영혼이 묵묵히 도우심을 알았으니, 역시 고사(叩謝)의 도리가 없을 수 없다. 또 금년은 내가 초봉(初封)14517) 되었던 해에 해당되니, 군호(君號)를 내리신 은전을 뒤쫓아 생각하건대, 어찌 묵묵히 있겠느냐? 고유문(告由文)을 마땅히 지어 내리고 취사(取士)의 거조가 있어야 하겠으며, 막중(莫重)한 고묘(告廟)를 어찌 감히 경사와 합치겠느냐? 마땅히 정시(庭試)를 별시(別試)의 뒤에 선행해야 할 것이니, 의조(儀曹)에서는 상세히 알라.” 하였다.</p>	<p>朔癸未/上御恭默閣，藥房入診。領議政左議政禮曹判書入侍，以上候平復之慶，請告宗廟頒教，上，許之。教曰：“既知陟降之默佑，則亦不可無叩謝之道。且今年，卽予初封之歲也，追惟錫號之恩，亦豈默焉？告由文當製下，而當有取士之舉，莫重祔廟，豈敢合慶？當行庭試於別試之後，儀曹知悉。”</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1월 26일(무신) 1번째기사 공묵합에서 형조 판서·호조 판서를 소견하자 정형복이 결전을</p>	<p>임금이 공묵합에 나아가 대신과 형조 판서·호조 판서를 소견하였다. 혜당(惠堂) 정형복(鄭亨復)이 금년의 결전(結錢)을 감할 것을 청하며, 혜당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반드시 후폐(後弊)가 있을 것입니다.” 하자, 정형복이 말하기를, “금년에 비록 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으는 계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戊申/上御恭默閣，召見大臣刑曹判書。戶曹判書。惠堂，請減今年結錢，惠堂洪鳳漢以爲：“必有後弊。”亨復曰：“今年雖散，必有聚之之術矣。”上曰：“僚堂則請散，僚堂則聚給，此所謂張三食鹽，李四飲水也。”又曰：“此非強爲也。吾雖瘠而民肥，</p>

<p>감할 것을 청하다</p>	<p>“요당(僚堂)은 감해 줄 것을 청하고 요당은 모아서 준다고 하니, 이는 이른바 장삼(張三)은 육젓[醢]을 먹고 이사(李四)는 물을 마신다는 격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여원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살찌게 된다고 하면 어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중신(重臣)들이 아된 바를 들으니 실로 하고 싶은데, 다만 내 몸만 돌아보겠는가? 어장(御將)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백성을 저버리는 것이 깊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백성을 위하는 원려(遠慮)이니 어찌 나의 사사로움을 위하여 그러하는 것이겠는가? 이 뒤로 혹 낭비(浪費)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눈을 감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당나라 덕종(德宗)의 경림(瓊林)14544) 이 가득 채워졌다 하더라도 어찌 아끼겠는가? 주서(注書)는 반드시 이 말을 써 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則豈不好乎? 今聞重臣所奏, 實欲爲之, 而但顧吾身哉? 不可不從御將, 而負吾民則深矣。 然此予爲民遠慮也, 豈爲我私而然乎? 此後或有浪費之事, 則予難瞑目矣。 雖唐德宗瓊林大盈, 豈惜之乎? 注書必詳記此言, 以置可也。</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2월 3일 (갑인) 2번째기사 공묵함에 나가 약원의 신하를 소견하다. 홍계희가 털옷을 입으라고 했으나 불허하다</p>	<p>임금이 공묵함(恭默閣)에 나아가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였다. 홍계희(洪啓禧) 등이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가는 털옷을 만들어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물리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그제 효장묘(孝章廟)에 들렀을 때에는 침구(寢具)를 따르게 하지 않고 다만 목침(木枕) 한 개를 베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훈장(訓將) 김성응(金聖應)이 북영(北營)에 적은 정자를 한 채 지었는데 내가 대보단(大報壇)에서 바라보고 이름을 몽답정(夢踏亭)이라고 내려주었으니 이를 걸게 하라.” 하였다.</p>	<p>上御恭默閣, 召見藥院諸臣。 洪啓禧等請令尙方, 製進小毛衣, 上却之。 上曰: “再昨孝章廟歷臨時, 寢具不隨, 而只枕一木枕矣。” 又曰: “訓將金聖應, 於北營作一小亭, 予於大報壇望見, 賜號夢踏亭, 以揭之矣。</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2월 24일(을해) 4번째기사</p>	<p>임금이 공묵함(恭默閣)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삼(人蔘)이 매우 귀하기는 근일(近日)과 같은 적이 없었다. 또 관동(關東)의 삼공(蔘貢)은 동민(東民)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원공(元貢) 13근(斤) 안</p>	<p>上御恭默閣, 引見大臣備堂。 上曰: “人蔘之絕貴, 莫近日若也。 且關東蔘貢, 實爲東民之巨弊。 元貢十三斤內, 一半則本道封進, 一半則作爲京貢, 以</p>

<p>관동의 삼공을 받은 본도에서 받은 경공으로 만들어 민폐를 제거토록 하다</p>	<p>에서 절반은 본도(本道)에서 봉진(封進)하고 절반은 경공(京貢)으로 만들어서 동로(東路)의 폐단을 제거토록 하라. 이 뒤로는 특별히 호삼(胡蔘)의 연무(燕質)를 허락하여 경외(京外)의 약용(藥用)의 자료로 삼게 하라.” 하였다.</p>	<p>除東路之弊。此後特許胡蔘燕質，以爲京外藥用之資。”</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3월 5일 (을유) 2번째기사 정언 정술조가 올린 왕세자가 자강할 4조 목을 진달한 상서</p>	<p>정언(正言) 정술조(鄭述祚)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저하(邸下)께서 자강(自強)할 길은 그 조목에 넷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덕수신(進德修身)에 힘쓰는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제왕(帝王)의 학문(學問)은 본래 선비와 더불어 같지 않은 것이며 치국 평천하(治國平天下)의 계획은 한가지송(記誦)과 사장(詞章)의 말(末)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아래를 꿰뚫고 시종(始終)을 이루어 천리(天理)가 유행(流行)하고 인욕(人慾)이 말끔히 제거되는 것은 돌아보건대 몸을 닦는 공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중용(從容)하고 침잠(沈潛)하며 우류(優游)하고 충족(充足)하여 이 마음을 재장(齊莊)·정일(靜一)한 데에 두고 이러한 이치를 분규(紛糾)와 변화(繁華)의 즘음에서 살펴 몸소 실행하고 힘써 찾아 참으로 알고 실천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진덕수신의 실(實)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만과 안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안일(安逸)은 인군(人君)이 크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어느 곳에든지 안일함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저하께서는 연안(燕安)의 속에서 성장하셨고 영성(盈成)의 업적을 이어받아 안으로는 내시(內侍)와 궁첩(宮妾)의 안적(安適)함이 있었고 밖로는 우환(憂患)의 비란(沸亂)이 없었으니 생민(生民)의 질고(疾苦)를 혹 다 살피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요, 국계(國計)의 이해(利害)를 다 통촉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드디어 이미 편안하고 이미 다스려졌다고 생각하여 문득 깊은 연못과 얽은 얼음을 임하는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니,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기욕(嗜慾)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기욕이</p>	<p>正言鄭述祚上書，略曰： “邸下自強之道，其目有四。一曰懋進修。臣聞帝王之學，本與韋布不同，治平之謨，不徒在於記誦詞章之末。其所以徹上徹下，成始成終，使天理流行，人欲淨盡者，顧不在於懋修之工耶？必須從容沈潛，優游厭飫，存此心於齋莊靜一之地，察此理於紛糾繁華之際，躬行力探，眞知實踐，然後方可謂進修之實矣。二曰戒怠逸。臣聞逸者，人君之大戒也。是以周公之戒成王曰，‘所其無逸。’邸下生長燕安之中，撫有盈成之業，內有便嬖之安適，外無憂患之沸亂，生民疾苦，或有所未盡察者，國計利害，或有所未盡燭者，遂以爲已安已治，而遽忽淵水之戒，則不幾於不畏而入畏耶？三曰節嗜慾。臣聞欲之寇人，甚於兵革。朱子常曰，‘河北之賊易遂，一己之慾難除’，邸下誠於夜氣清明之時，深味此言，則必有惕然而悟者矣。必若猛將之撕殺，酷</p>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병혁(兵革)보다 심한 것입니다. 주자(朱子)는 항상 말하기를, ‘하북(河北)의 적(賊)은 쫓기가 쉽지만은 한 몸의 욕심은 제(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였는데, 저하께서는 야기(夜氣)가 청명(淸明)한 때에 이 말을 깊이 음미(吟味)해보시면 반드시 척연(惕然)히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맹장(猛將)이 적을 시살(撕殺)하고 혹리(酷吏)가 죄수를 추감(推勘)하듯이 하여 일호(一毫)도 사욕(私慾)을 끼이지 말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연후에야 마음이 넓어지고 몸도 편안하여 청명한 기운을 몸에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는 희노(喜怒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희노란 사람으로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야 할 때에 기뻐하고 성내야 할 때에 성을 낸 연후에야 밖에 발현(發現)되더라도 모두 절도(節度)에 맞을 것입니다. 성인(聖人)의 마음은 명경 지수(明鏡止水)와 같아서 사물(事物)이 오면 순응(順應)할 따름이니, 무슨 희노가 있겠습니까? 근일(近日)에 일후(日候)로써 증험해 보건대 한 겨울의 쌀쌀한 기운이 나타나야 할 때에 도리어 우로(雨露)의 은택이 있었으니 수장(收藏)의 효험을 이룰 수가 없었고, 바야흐로 봄별이 화창해야 할 절후에 도리어 상설(霜雪)의 징후가 있으니, 발육(發育)의 공(功)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학(大學)》에서 이른바 ‘마음에 희락(喜樂)하는 바가 있으면 바른 것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분내고 조급함이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에 대하여 대비(待備)한 말입니다.”

하니, 왕세자가 대답하기를,  
 “근래에 재앙과 이변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어서 송구스럽고 걱정하는 중에 시절의 기운마저 상도(常道)에 어긋나서 심지어 감선(減膳)의 명이 있었다. 이는 내가 불초(不肖)하고 불민(不敏)하여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면한 네 가지 조목은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니, 내가 매우 가상(嘉尙)히 여기는 바이다. 능척(懷惕)한 마음이 더욱 간절하니, 마땅히 심

吏之推勘，何一毫私慾，無得以間之。然後心廣體胖，淸明在躬矣。四曰愼喜怒。臣聞喜怒者，人之所不能無者也。然當喜而喜，當怒而怒，然後發而皆中節矣。聖人之心，如明鏡止水，物來順應而已，何喜怒之有哉？試以近日日候證之，大冬霽發之時，反有雨露之澤，則不能成收藏之效，方春陽和之節，反有霜雪之候，則無以致發育之功。《大學》所謂‘心有所喜樂則不得其正，心有所忿懣則不得其正者，’正爲準備語也。”王世子答曰：“近來災異無歲無之，悚懷之中，時氣乖常，至有減膳之命。寔余不肖不敏，不能仰體聖意之致。陳勉四條，言甚切至，余甚嘉尙。尤切懷惕，當銘諸心骨。”

	<p>골(心骨)에 새기겠다.” 하였다.</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3월 14 일(갑오) 3번째기사 함안각에 나가 대신을 소견하고 평안 감사 민백상의 장계를 처리 하다</p>	<p>임금이 함안각(咸安閣)에 나아가 대신(大臣)을 불러 보았다. 승지에게 평안 감사 민백상(閔百祥)의 장계(狀啓)를 읽으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선천부(宣川府)에서 보고한 바 점마(點馬)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태복시(太僕寺)로 하여금 10년을 한정하여 &lt;점마를 하지 말라.&gt; 옛사람이 말의 수를 세어 대답했으니, 마정(馬政)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비록 기한 안이라도 때때로 간혹 주품(奏稟)토록 하고 추첨해 적간(摘奸)하되 점마는 하지 말고 다만 근만(勤慢)만을 살피도록 하라. 강계(江界)의 인삼(人蔘)에 대한 일은 비록 장문(狀聞)에는 없었지만 어찌 모르겠느냐? 지금 장문을 보니 민인(民人)의 괴로운 정상을 보는 것과 같다. 관동삼(關東蔘)의 원가(元價)에 대해서는 이미 호판(戶判)으로 하여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으니 등대(登對)하여 품(稟)하도록 하라. 지금까지 사들인 20근에 대해서는 전 호판이 관서미(關西米)를 얻어 그 값을 계산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뜻은 진실로 옳았다. 그러기 때문에 허락한 것인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쌀로써 값을 첨부해 주겠느냐?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세삼(稅蔘) 외에 중간에 가수(加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20근은 곧 가수한 중에 또 더한 것이니, 어찌 상례(常例)를 따른 것이라고 하겠느냐? 관서(關西)의 세미(稅米) 중에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참량(參量)하여 더해 주어서 조금이나마 민폐(民弊)를 덜도록 하라. 장문 중에 군정(軍政)은 이정(釐正)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채로(債路)에 있어서는 전후의 도신(道臣)이 구처(區處)한 것이 진실로 옳았다. 혹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어찌 도신이라고 해서 관용(寬容)하겠느냐? 조적(糶糶)에 대해서는 도신의 장문이 의견(意見)이 있으니 반드시 이 법으로써 영구히 준행(遵行)토록 하라. 관서에 전정(田政)이 문란한 것은 오로지 양전(量田)을 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비국(備局)으로부터 도신에게</p>	<p>上御咸安閣，召見大臣。命承旨，讀平安監司閔百祥狀啓，教曰：“宣川府所報點馬之弊若此，令太僕，以十年爲限，而古人數馬而對，馬政，國之重事。雖限內，時或奏稟，抽牲摘奸，勿爲點馬，只察勤慢。江界人蔘事，雖不狀聞，豈不知之？而今覽狀聞，若見民人之狀。元價關東蔘，已令戶判，就議大臣，登對以稟。至於今買二十斤，前戶判以其請得關西米，計給其價者，意成是矣。故許之，今何爲以此米添價，雖然本稅蔘外，中間加數，已不獲已，而今二十斤，乃加數中又加者也，豈循常例？關西稅米中，令備局參量加給，少除民弊。狀聞中，軍政則以爲釐正，而於債路，則前後道臣區處誠是。或有不守此法者，予豈以道臣而寬之？其於糶糶，則道臣狀聞，儘有意見，必以此法，永久遵行。關西田政之紊亂，專由於未量而然，自備局申飭道臣，次第舉行。頃年特遣宰臣，兵營之久遠債券，既用馮驩之例，監營亦豈無此弊乎？道臣既詳明，何用馮</p>

	<p>신칙(申飭)하여 차례로 거행토록 하라. 지난해에 특별히 재신(宰臣)을 보내어 병영(兵營)에 오래된 채권(債券)에 대하여 이미 풍환(馮驩)14555)의 예(例)를 썼으니 감영(監營)에서도 또한 어찌 이러한 폐단이 없었겠느냐? 그러나 도신이 이미 자세하고 분명하니, 어찌 풍환의 예를 쓰겠느냐? 도신으로 하여금 채권 중에 오래되어 징수하기 어려운 것은 그 채권을 취하여 대동강(大同江)에 던져버린 뒤에 장문(狀聞)토록 하라.”</p> <p>하였다.</p>	<p>驩? 令道臣債券中久遠難徵者, 取其券, 投諸大同江後狀聞。”</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3월 16일(병신) 4번째기사 영의정이 정사하여 산반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 슬프다고 하다</p>	<p>임금이 말하기를, “석년(昔年)에 선온(宣醞)하실 때에 교유(教諭)하시기를, ‘선조(先朝)의 기구(耆舊)로는 다만 김 봉조하(金奉朝賀)와 유 영상(兪領相)이 있어서 나라의 의망(倚望)이 된다.’고 하셨는데, 영상(領相)이 정사(呈辭)하여 생각건대 산반(散班)에 참여할 것이니, 마음에 실로 척연(慼然)하다.”</p> <p>하였다.</p>	<p>上曰: “昔年慈聖宣醞時, 教曰: ‘先朝耆舊, 只有金奉朝賀。 兪領相, 而爲國之倚望矣,’ 領相呈辭, 想參於散班, 心實感然。”</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4월 4일(갑인) 3번째기사 함안각에서 예조 판서가 입시하자 효소전 부모의 윤음을 내리다</p>	<p>임금이 함안각(咸安閣)에 나아가니 대신과 예조 판서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효소전(孝昭殿)을 부모(祔廟)하는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묘(廟)에 부(祔)하는 예(禮)를 고례(古禮)에서 자세히 상고하니 성묘(成廟) 이전에 정묘(定廟)·광묘(光廟) 양조(兩朝)에서는 모두 납향(臘享)으로 인하여 달을 넘겨서 행하였고 성묘 이후에는 모두 단월(禫月)에 행하였다. 정희 왕후(貞熹王后)는 5월에 부모를 하였는데, 이때 처음에는 성묘(成廟)에서 맹추(孟秋)의 향일(享日)에 거행하라는 하교가 계셨다. 이런 때문에 이번에는 선왕(先王)의 전헌(典憲)을 지키고자 하니 의조(儀曹)로 하여금 즉시 길일(吉日)을 가려 들이게 하라. 아! 이번에 처음에는 두 달을 넘어서 행하기로 내정(內定)하여 미칠 수 없는 슬픔을 조금이나마 펴려고 하였는데, 이번에 진정(進定)하여 나의 기운으로써 장차 11실(十一室)에 4위(四位)을 함께 모시는 성의(盛儀)를 목도(目觀)하게 되었으니 다시 무슨 여감(餘憾)이 있겠느냐? 연려(輦輿)와 의물(儀物)을</p>	<p>上御咸安閣, 大臣禮曹判書入侍。 上, 下孝昭殿祔廟綸音曰: “祔廟之禮, 詳考古禮, 成廟以前, 定廟光廟兩朝, 皆因臘享, 踰月而行, 成廟以後, 皆以禫月行之。 而貞熹王后五月祔廟時, 初則成廟有孟秋享日舉行之教。 故今番欲遵先王典憲, 其令儀曹, 卽爲擇吉以入。 噫! 今番初擬, 踰二月而行, 莫逮之痛, 庶可少伸, 于今進定, 以予之氣, 將觀十一室四位同奉之盛儀, 復何餘憾? 輦輿儀物, 皆是昔年所御者, 一依因山時例, 勿爲新備, 因舊用之。”</p>

	<p>物)은 모두 석년(昔年)에 쓰던 것인데, 한결같이 인산(因山) 때의 예(例)에 의하여 새로 갖추지 말고 옛 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아! 지난해에 영휘전(永徽殿)을 중수(重修)할 때에 우리 자성(慈聖)께서 선미(膳米)로써 도감(都監)을 도우셨는데, 하물며 지금의 대례(大禮)이겠느냐? 대내(大內)에서 내린 은자(銀子)는 탁지(度支)에 부치고, 선미(膳米) 1백 석(石)은 도감에 부쳐서 내가 자성을 우러러 깊이 유념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p> <p>하였다.</p>	<p>噫! 頃年永禧殿重修時，我慈聖，以膳米助都監，況今大禮乎？內下銀子，付諸度支，膳米一百石，付諸都監，以示予仰體慈聖之意。”</p>
<p>영조 93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6월 18일(정묘) 3번째기사 장마의 징조가 보이자 감선하라고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 “반가운 비가 내린 나머지에 장마를 이룰 징조가 있으니 백성을 위하여 마음에 걱정이 된다. 이러한 때에 풍성(豐盛)한 일은 더욱 절작(節約)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감선(減膳)을 한다면 반상(盤床)과 봉과(封裹)14586) 를 어느 겨를에 말하겠느냐? 그리고 이미 이 뜻을 보인 뒤에는 어찌 상례(常例)를 필요로 하겠느냐? 모든 행례(行禮)와 접대(接待)에 있어 유밀과(油蜜果)는 제하도록 하고 상화(床花)는 1반(盤)에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대반(大盤)은 제하도록 하라. 이것은 대개 예(禮)를 꺾(闕)할 수 없는 뜻에서이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승지(承旨)·도감(都監)의 당상(堂上)·낭청(郎廳) 밖에 내외(內外)의 반상(盤床)은 비록 봉명(奉命)한 중관(中官) 이하라 하더라도 일례(一例)로 제하도록 하라. 봉과에 이르러서는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바에 의하여 정사·부사 외에는 일체(一體)로 제하도록 할 것이며, 이 밖에 안에서나 밖에서 만약 정식(定式) 밖에 징봉(徵捧)하는 일이 있으면 당해 차지 중관(次知中官)을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써 신칙(申飭)하여 나가 백성을 위해 풍성한 것을 제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p> <p>하였다.</p>	<p>敎曰：“喜雨之餘，仍有成霖之徵，爲民用心。此時豫大之事，尤宜節約。其若減膳，盤床封裹，何暇道哉？而既示此意之後，何須常例？凡於行禮接待，除油密果，床花無過一盤，除大盤。此蓋禮不可闕之意，正副使承旨，都監堂郎外，內外盤床，雖奉命中官以下，一例除之。至於封裹，則禮文所載，正副使外，一體除之，此外於內於外，若有定式外徵捧之事，則當該次知中官重繩。以此申飭，以示予爲民除豫大之意。”</p>
<p>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7월 27</p>	<p>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찬(饌)을 하사하도록 명하고 제주 사람 김후련(金厚鍊)에게도 찬을 하사하도록 하였으니, 섬사람이기 때문이었다.</p>	<p>上命賜饌諸臣，濟州人金厚鍊亦賜饌，以島人也。</p>

<p>일(을해) 4번째기사 여러 신하와 제주인 김후련에게 찬을 하사 토록 하다</p>		
<p>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 (乾隆) 24년) 8월 7일 (갑신) 1번째기사 약원의 신하들에게 생 선 한마리도 민력이기 때문에 먹기를 억제하 다</p>	<p>임금이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병중에 간혹 별미(別味)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늘 힘써 억제하 였으니, 대개 한 움큼의 풀이나 한 마리의 생선(生鮮)이 비록 지극히 미미한 것 같으나 백성의 힘이 미치는 바이니, 역시 용이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 다.” 하였다.</p>	<p>甲申/上謂藥院諸臣曰：“予於病中，或 有思嘗之味，每強抑之，蓋一握之草， 一尾之魚，雖甚至微，民力所及，亦不 容易矣。”</p>
<p>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 (乾隆) 24년) 8월 9일 (병술) 1번째기사 경향의 과거 보러 온 유생들에게 유시한 윤 음</p>	<p>임금이 윤음(綸音)을 내려 경향(京鄉)에서 과거를 보러 온 유생들에게 유시 (諭示)하기를, “삼대(三代) 이후에는 사도(師道)가 있었다. 나는 덕(德)이 얇고 무능한 사람 으로서 군도(君道)에도 오히려 능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사도이겠는가? 아! 30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방기(邦畿)14619) 에는 양양(洋洋)한 명성(名 聲)이 없었고, 현관(賢關)14620) 에서는 제제(濟濟)한 효험이 없었으니, 늘 너 희들을 대하면 마음이 먼저 부끄럽다. 내가 비록 정성이 얇으나 청금(靑 衿)14621) 을 위하는 마음이 자나 깨나 어찌 해이(解弛)하겠느냐? 장보(章 甫)14622) 를 복돋아 기르는 것은 곧 열성조(列聖朝)의 융성한 덕인데도 능 히 계술(繼述)하지 못하였다. 알성(謁聖)하는 날에 수레를 머무르고 시골 선비 들이 오는 것을 물었는데 간혹 도착하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곧 날짜를 앞당 겨 정한 때문이었다. 엇그제 태학(太學)14623) 에 물으니, 지금 이미 모두 도 착하였다고 하였다. 6일 동안 세 번이나 탕약(湯藥)을 먹은 것은 역시 너희들</p>	<p>丙戌/上降綸音，諭京鄉赴舉儒生曰： “三代以後，師道在下。以予涼德無 能，於君道尙未能，況師道乎？噫！卅 載臨御，邦畿無洋洋之聲，賢關無濟濟 之效，每對爾等，心先靦然，予雖誠淺， 爲靑衿之心，宿食奚弛？培養章甫，卽 列朝之盛德，而亦莫能繼述。謁聖之 日，駐輿而問鄉儒之來，或有未到者， 卽進定而然也。昨日問於太學，今已 齊到云。六日之內三服湯，亦爲爾等 而然也，昨今差愈，何可不臨？噫！於 予之道，召爾等未見其面，豈不缺然於 爾之心，裹糧以來，亦不見君，豈不悵 然？奚特鄉儒，京儒一也。雖無德無</p>



	<p>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어제 오늘 조금 나왔으니 어찌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 나의 도리에 너희들을 불러놓고 그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음에 어찌 결연하지 않겠으며, 너희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또한 임금을 보지 못하면 마음에 어찌 창연(愴然)하지 않겠느냐? 어찌 특히 시골 선비뿐 이겠느냐? 서울 선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록 덕이 없고 무능하여 심히 군사(君師)의 의리에 부끄러우나 내일은 마땅히 몸소 나아가 우리의 많은 선비들을 위로하고 또 무사(武士)와 군병(軍兵)에게도 선유(宣諭)할 것이다.” 하였다.</p>	<p>能，深愧君師之義，明當親臨，慰我多士，又宣諭武士軍兵。”</p>
<p>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8월 20일(정유) 1번째기사 돈화문에 나가 명릉에 수가한 군병을 호궤하다</p>	<p>임금이 돈화문(敦化門)에 나아가 명릉(明陵)에 수가(隨駕)한 군병(軍兵)을 호궤(犒饋)14640) 하였다.</p>	<p>丁酉/上御敦化門，犒饋明陵隨駕軍兵。</p>
<p>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9월 14일(신유) 4번째기사 왕세자가 10일간 감선(減膳)토록 하다</p>	<p>왕세자가 10일 동안 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p>	<p>王世子，命減十日膳。</p>
<p>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11월 20일(병인) 3번째기사 제주에서 유자를 진상</p>	<p>임금이 제주(濟州)에서 유자(柚子)를 진상한 사람을 소견(召見)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쌀과 벼를 제급(題給)하도록 하였다.</p>	<p>上召見濟州柚子進上人，令該曹，米布題給</p>

한 자를 소견하고 쌀과 베를 제급토록 하다		
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11월 24일(경오) 3번째기사 영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호남의 진상·보미를 감하도록 하다	영의정 김상로(金尙魯)가 홍봉한(洪鳳漢)의 진달한 바로 인하여 호남(湖南)의 진상·보미(進上保米) 1천 석을 본도로 하여금 양감(量減)하도록 하라고 우러러 청하자,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領議政金尙魯，因洪鳳漢所陳，仰請湖南進上保米一千石，令本道量減，上從之。
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11월 24일(경오) 5번째기사 홍정당에서 영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10일간의 감성한 명령을 정지하다	임금이 홍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영의정 김상로(金尙魯)를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조경(躁競)하여 사람을 탄핵하는 일이 많으니, 이것은 역시 나의 정성이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10일 동안 감선(減膳)하도록 명하자, 김상로가 환수(還收)하도록 힘써 청하였는데 밤중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허락하였으니, 당시에 홍술해(洪述海)가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홍낙순(洪樂純)을 논핵(論劾)하였기 때문이었다.	上御興政堂，召見領議政金尙魯。上曰：“諸臣多以躁競劾人，此亦予之誠不孚也。”命減膳十日，尙魯力請還收，至半夜後始許，時洪述海，以私怨，論劾洪樂純也。
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乾隆) 24년) 12월 9일(을유) 3번째기사 포졸에게 주금을 범한 자를 규포토록 하다	임금이 포졸(捕卒)에게 명하여 주금(酒禁)을 범한 자를 규포(窺捕)할 때에 현장에서 잡은 두 사람은 특별히 투비(投畀)의 율을 시행하고, 이 뒤로는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추적하여 잡도록 하되, 주금을 범하여 술을 빚은 자는 추조(秋曹)로 이송(移送)하도록 하였다.	上命捕卒，窺捕犯酒者時，現捉者二人，特施投畀之典，此後令捕廳推捉，犯釀者，移送秋曹。
영조 95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중용》을 강하였다. 시독관 엄인(嚴麟)이 말하기를,	上御熙政堂，晝講《中庸》。侍讀官嚴麟曰：“歲首宣諭，甚懇惻，而尙有

<p>(乾隆) 25년) 1월 9일 (을묘) 3번째기사 주장을 열고 《중용》 을 강하다. 시독관 엄 인과 세수에 내린 선 유에 대해 문답하다</p>	<p>“세수(歲首)에 내리신 선유(宣諭)는 매우 간절하였으나, 아직도 죄를 입고서 석방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천시(天時)에 순응하는 의의에 흠이 있을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중용》에 비록 능하지 못하나,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법이다.”</p> <p>하였다. 엄인이 말하기를, “조경(躁競)하여 경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꼭 박절한 말씀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약을 먹어서 아릿하지 않다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주자(朱子)는 대승기탕(大升氣湯)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러한 약을 쓴 다음에야 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p>	<p>被罪未放之人，恐有欠於順天時之義矣。”上曰：“予於《中庸》，雖不能，惟仁人能愛人，能惡人矣。”璘曰：“躁競浮囂，雖不無其人，而不必加以迫切之言。”上曰：“若藥不瞑眩，厥疾不瘳，朱子以大升氣湯爲言，‘用此等藥而後，可以救之’矣。”</p>
<p>영조 95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1월 18 일(갑자) 2번째기사 연향대에서 칙사를 전 송하고, 선무사에 들러 치제를 명하다</p>	<p>임금이 연향대(宴享臺)에 거둥하여 칙사를 전송하였다. 먼저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 배례를 행하고 기사 당상(耆社堂上)을 소견한 다음, 승지·사관·시위 제신 및 기사 당상에게 각각 말을 하사하고, 그 중 67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가자(加資)하였으니, 이에 이태화(李泰和)·유건(柳謩)·학성군(鶴城君) 이유(李楡)가 모두 자급이 올라갔다. 이어 연향대에 거둥하여 칙사를 전송하고, 돌아올 때에 선무사(宣武祠)에 들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생각이 있어서이다.”</p> <p>하고, 이어 치제(致祭)를 명하였다. 임금이 인정전 월대(月臺)로 돌아와서 2품 이상의 문무관 및 오부(五部)의 기민(耆民)을 불러다 놓고 전정(殿庭)에 서서 선유(宣諭)를 한 다음, 전정에 들어온 67세 이상의 기민에게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판서 김성응(金聖應)의 어머니 윤씨(尹氏)에게 특별히 옷감과 식물(食物)을 하사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92세였다.</p>	<p>○上幸宴享臺，送勅。先詣靈壽閣，行拜禮，召見耆社堂上，承史侍衛諸臣及耆堂賜馬，其中六十七歲人，特爲加資，於是李泰和·柳謩·鶴城君楡皆陞資。仍幸宴享臺，餞勅，回鑾時，歷臨宣武祠。上曰：“今日臨此，意有在也。”仍命致祭。上還御仁政殿月臺，召文武二品以上及五部耆民，立殿庭宣諭，入庭耆民年六十七歲以上，命加資。判書金聖應母尹氏，特賜衣資食物，年九十二也。</p>
<p>영조 95권, 36년</p>	<p>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주장하여 《대학(大學)》을 강하였는데, 시독관 엄인</p>	<p>庚辰/上御熙政堂，書講《大學》，侍</p>

<p>(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2월 5일 (경진) 1번째기사 주강을 행하자 시독관 엄인이 궁내의 제정 경비의 유출 금지에 대해 아뢰다</p>	<p>(嚴璘)이 말하기를, “한 문제(漢文帝) 때에 해마다 천하의 전조(田租)를 삭감하였는데,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몸소 검은 색의 비단 옷을 입고 노대(露臺)를 건축하지 않은 14743) 효과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구중(九重) 안의 의복과 음식이 지나치게 검소하여 자못 한 문제의 미칠 바가 아닌데도 재정을 맡은 관원이 매번 경비가 다하였다고 걱정하니, 신은 전하께서 한갓 절약만 하시고 모르게 새어나가는 것은 금지하지 못하는 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안복준(安復駿)의 글을 읽게 한 다음, 임금이 말하기를, “시호를 청한 일은 참으로 오활하다. 이는 대신(臺臣)으로서 청할 일이 아니다.” 하고, 이어 〈왕세자의〉 하답(下答)을 읽게 한 다음 임금이 말하기를, “잘 하답하였고 정신이 담겨 있다. 내가 답변을 하더라도 다시 더할 말이 없겠다.” 하였다.</p>	<p>讀官嚴璘曰：“漢文時，比年減天下田租，先儒以爲，‘身衣弋綈，不築露臺之效’，今九重之內，服用膳御，過於儉薄，殆非漢文之所可及，而掌財之臣，每以經費之匱乏爲憂，臣恐殿下，徒爲節約，而尾閭之洩，有不能禁制者也。”上命承旨，讀安復駿書。上曰：“請諡事，誠迂闊矣。此非臺臣所請。”仍命讀下答，上曰：“善爲而有精神。予雖當之，更無所加耳。”</p>
<p>영조 95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2월 19일(갑오) 1번째기사 영희전에서 친제하고 쌀과 감곽을 준천소에 내려 역군의 호궤에 쓰도록 명하다</p>	<p>임금이 영희전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내고, 쌀 20석(石)과 감곽(甘藷) 6백근(斤)을 준천소(濬川所)에 내주어 내일 역군(役軍)의 호궤(犒饋)에 쓰도록 하라고 명하였다.</p>	<p>甲午/上詣永禧殿親祭，以米二十石，甘藷六百斤，命給濬川所，以饋明日役軍。</p>
<p>영조 95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2월 20</p>	<p>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흥인문에 들어서 말하기를, “탐라인(耽羅人)과 공인(貢人)이 또한 모두 몸소 앞장서 부역에 나왔다. 재작년 능역(陵役)에 몸소 그 성의를 보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힘쓰고 있으니,</p>	<p>乙未/上回鑾時，歷臨興仁門，上曰：“耽羅人與貢人，亦皆挺身赴役。再昨年陵役，躬覩其誠，今又若此，此乃於</p>

<p>일(을미) 1번째기사 흥인문에 들러 능역에 자원한 탐라인과 공인 에게 상을 내리다</p>	<p>이는 바로 임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식처럼 찾아와 일하던 옛날의 성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눈으로 직접 본 이상 어떻게 한 그릇 밥만 먹여서 돌려보 내랴? 도청·낭청·패장(牌將)에게는 각기 궁시(弓矢)를 내려 주고 내하미(內下米) 15석을 나누어 주라. 오늘날 부역을 자원한 제주(濟州) 사람 6명에게는 회량(回糧)을 넉넉히 주고 갑주미(甲冑米) 6백 석을 본소(本所)에 더 내려주 어서 부역에 온 도민(都民)들에게 더 나누어 주며, 집이 헐린 냇가의 인민은 진휼청에서 돌보아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戲不忘之誠，子來昔年之意也。 旣已目覩，豈可饋一盂飯而回乎？ 都廳郎廳牌將，各賜弓矢，內下米十五石分給。 今日自願赴役人濟州人六名， 厚給回糧，甲冑米六百石，加下本所，加給赴役都民，川邊人家之毀撤者，令賑廳顧恤。”</p>
<p>영조 95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2월 27 일(임인) 1번째기사 희정당에서 소대하여 《성학집요》를 강하 고 준천시 드러난 유 골을 묻어줄 것을 명 하다</p>	<p>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소대하여 《성학집요(聖學輯要)》를 강하였다. 하고하기를, “해골을 묻어 주는 정치는 문왕(文王)도 행하였다. 내가 비록 탕왕(湯王)의 덕이 짐승에까지 미친 것에는 부끄러우나, 어찌 차마 해골이 노출된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준천(濬川)할 때에 오래 된 잔해(殘骸)가 더러 흙에 섞여 나오는 것이 있거든 베로 싸서 지대가 높고 깨끗한 곳에 묻어 주고 준천을 마친 뒤에 수문(水門) 밖에 제단을 설치하여 사제(賜祭)토록 하라. 이로 인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굶주림 끝에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어서 거두어 묻지 못한 자야말로 어찌 여기에 견줄 수나 있겠는가? 그러한 해골을 생각할 때 나도 몰래 측은하여진다. 만약 노출된 해골이 있거든 즉시 베로 싸서 묻을 것을 비변사에서 오부(五部)와 제도(諸道)에 신칙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넓은 집에 살면서 쌀밥을 먹는 것은 곤궁한 백성의 생활에 비교할 때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 제도의 관찰사는 진휼 정치를 펼 때 군주가 친림한 것이나 다름없이 착실히 거행하라.” 하였다.</p>	<p>壬寅/上御熙政堂召對， 講《聖學輯要》。 教曰：“掩骼之政，文王行之。予雖愧於湯德之及禽獸，豈忍見枯骨之暴露？如濬川時，久遠殘骸之或有與土同濬者，以布掩埋於高潔處，濬川畢後，水門外設壇賜祭。因此思之，荐飢之餘，顛連溝壑，不能收瘞者，奚比於此殘骨？不覺惻隱。若有暴露者，卽爲裹埋事，令備局申飭五部諸道。” 又曰：“居廣廈對玉食，比諸窮民，判若霄壤。咨！諸道臣，其所賑政，視若君臨，着意舉行。”</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p>	<p>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갔다. 영의정 김상로(金尙魯)가 공조 당상이 왕세자가 강위(江上)에 도착하였을 때 대령하지 못한 때문에 과직하기를 청하</p>	<p>辛酉/上御崇賢門。 領議政金尙魯，以工曹堂上， 未及待令於王世子到江上</p>

<p>(乾隆) 25년 7월 19일(신유) 1번째기사 영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공조 당상을 파직시키고, 경현당에서 소대하다</p>	<p>니, 임금의 허락하였다. 부관(部官)에게 명하여 채전(菜田)을 호소한 사람을 거느리고 들어오게 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성(城) 안에 경작을 금한 것은 옛 법을 지키려 한 것인데, 그 채전은 모두 사부(士夫) 집 물건이고 이 백성은 작자(作者)14822)가 아니니 반드시 청탁을 받고 온 것이다. 십백(十百)의 백성이 모두 도롱이와 삿갓을 착용하였으니, 그것도 공동(恐動)하는 피이기 때문에 대령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들건대, 장두(狀頭)14823)는 바로 수어군(守禦軍)인데 군복(軍服)을 버리고 농의(農衣)를 입었으니, 그 버릇이 무상(無狀)하다. 수어사(守禦使)를 추고(推考)하고 장두를 결곤(決棍)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손(世孫)이 나를 떠난 지 이미 오래이므로 때로 눈물이 나며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내일 데리고 와서 보고자 한다.” 하고, 이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서 소대(召對)14824) 하였다.</p>	<p>時，請罷職，上許之。命部官，率菜田呼訴人入來，上曰：“頃者禁耕城內，欲守舊法，而彼菜田，皆士夫家物也，此民非作者，則必是受囑而來。十百民人，皆着蓑笠，其亦恐動之計，故使之待令。今聞狀頭，卽守禦軍，而棄軍服着農衣，其習無狀。守禦使推考，狀頭決棍。”上曰：“世孫離予已久，故有時泣思。予明欲率來見之。”仍御景賢堂，召對。</p>
<p>영조 94권, 35년 (1759 기묘 / 청 건륭 (乾隆) 24년) 11월 23일(기사) 1번째기사 희정당에서 삼복을 행하고, 3일간 감선과 법관을 월봉 3등을 명하다</p>	<p>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삼복(三覆)14705)을 행하였는데, 형조 판서 김상익(金尙翼)이 말하기를, “주금(酒禁)을 범하여 술을 빚은 자로서 갇혀 있는 죄수가 지금 무려 1백여인에 이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정성이 백성들에게 믿음직하지 않기 때문이니, 어찌 심상한 것으로 보겠는가? 3일 동안 감선(減膳)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임금이 감선을 하니, 법관(法官)은 월봉(越俸) 3등을 하고, 오부(五部)의 관원은 잡아다가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己巳/上御熙政堂，行三覆，刑曹判書金尙翼曰：“犯釀滯囚，今至百餘人矣。”上曰：“此予之誠，不孚於民也，豈可尋常視之？減膳三日。其君減膳，法官越俸三等，五部官員拿處。”</p>
<p>영조 95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p>	<p>임금이 사직단에 나아가서 재숙하고 단소를 봉심한 뒤에 이어 성기(省器)와 성생(省牲)을 한 다음 전교하기를,</p>	<p>甲戌/上，詣社稷齋宿，奉審壇所後，仍省器省牲，教曰：“昔年親享後，月餘</p>

<p>(乾隆) 25년) 6월 2일 (갑술) 1번째기사 사직단에 나가 재숙하고 봉심한 뒤 성기·성생하고 희생으로 양육을 쓰겠다고 하다</p>	<p>“옛날 친향(親享) 뒤에 달포 동안 쇠고기를 들지 않는 것을 내가 우러러 본적이 있다. 지금 제기를 봉심하려고 신주(神廚)의 문에 들어서니 희생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소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고 못사람들이 빙 둘러 서 있었다. 이는 희생을 도살(屠殺)하려고 그러한 것이니 보기에 불쌍하기가 제 선왕(齊宣王)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불쌍히 여긴 심정 정도가 아니었다. 번육(膳肉)을 받는 것도 중대한 예식인 만큼 희생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양육(羊肉)만 올려서 지난날의 성덕(聖德)을 본받겠다는 나의 뜻을 내보이라.” 하였다.</p>	<p>不御牛肉，予嘗仰觀。今欲奉審祭器，入神廚門，犧牲已捧，牛在其中，衆人環立。此將爲宰牲而然也，看來矜惻，奚徒齊宣之心。受膳體[禮]重，不可闕也，今番只封羊肉，以示予體昔年盛德之意。”</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7월 10 일(임자) 2번째기사 석음재에 나가 약방의 세 제조를 인견하고 왕세자의 환후를 묻다</p>	<p>임금이 석음재(惜陰齋)에 나아가서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를 인견(引見)하고 이후(李譽)에게 묻기를, “경이 동궁(東宮)을 친히 보았는가?” 하니, 이후가 말하기를, “신이 비로소 종처(腫處)를 보니 혹은 종(腫)을 이루었고 혹은 곪아 터졌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의관(醫官)들은 무엇이라고 이르던가?” 하니, 이후가 말하기를, “온천에 목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효과가 있을지라도 종종 다시 재발하니, 장차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하고, 또 말하기를, “어제 온천 목욕을 금하는 교시를 내렸는데, 이제 내 아들임으로써 문득 허락하면 백성들이 나를 믿는다고 이르겠는가?”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p>	<p>上御惜陰齋，引見藥房三提調問李譽曰：“卿親見東宮乎？”譽曰：“臣始見腫處，或成腫或破決矣。”上曰：“諸醫云何？”譽曰：“溫浴爲宜云矣。”上曰：“雖有效，種種復發，將何以繼之乎？”又曰：“昨下禁浴之教，而今以吾子旋許，則百姓謂予信乎？”仍教曰：“元良尙在調攝中，心切悶焉，聞諸醫，皆請溫浴云。此意予已有之，或有效而不許，是豈爲父之道？以此水炭交中，食不甘而寢不便。諸醫之言若此，則夫何持難，茲當盛暑，調攝之中，何以驅馳？軍兵之勞傷，農民之待候，若恫在己。不可不顧，處暑生涼後，擇日舉行。”</p>

	<p>“세자[元良]가 아직 조섭(調攝)하는 중에 있으니 마음에 간절히 민망스러운데, 들은즉 여러 의원들이 모두 온천 목욕을 청한다고 한다. 이 뜻은 내가 이미 있었고, 혹시 효력이 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는 어찌 아버지가 된 도리이겠는가? 이로써 빙탄(氷炭)이 마음속에 섞여서 음식이 맛이 없고 잠자리도 편치 않다. 여러 의원의 말이 이와 같으면 무릇 어찌 버티고 어려워하겠는가 마는, 이제 한더위를 당하여 조섭하는 중에 어떻게 말을 몰고 달리겠는가? 군병(軍兵)의 노상(勞傷)과 농민의 대후(待候)는, 아픔이 몸에 있는 것과 같다. 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니, 처서(處暑)가 지나고 생량(生涼)한 뒤에 날을 가려 거행하라.”</p> <p>하였다.</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乾隆) 25년) 7월 25일(정묘) 2번째기사 동몽 교관에게 학동들을 거느리고 입시하여 《소학》을 읽게 하고, 상을 내리다</p>	<p>임금이 동몽 교관(童蒙教官)에게 명하여 학동(學童)들을 거느리고 입시(入侍)하여 《소학(小學)》을 읽게 하였다. 잘 대답한 자 아홉 사람에게 각각 지필묵(紙筆墨)을 내려 주고 동몽 교관은 칙려(飭勵)한 공이 있음으로써 또한 각각 녹피(鹿皮)를 내려 주기를 명하였다. 또 대사성 서지수(徐志修)에게 명하여 서재(書齋)의 유생을 거느리고 서로 논난(論難)하게 하였다. 이어 여러 유생들에게 수박[西瓜]과 제호탕(醞酬湯)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서지수에게 이르기를,</p> <p>“세손(世孫)은 의젓함이 성인(成人)과 같으니, 보도(輔導)하는 방법에 더욱 뜻을 더함이 마땅하다.”</p> <p>하니, 서지수가 말하기를,</p> <p>“세손이 명덕장(明德章)14828) 을 강(講)하였는데, 신이 그 뜻을 우러러 물으니, 답하기를, ‘나의 덕을 밝혀서 다른 사람의 덕을 밝히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신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p> <p>하였다.</p>	<p>上命童蒙教官，率學童入侍，使讀《小學》。善對者九人，各賜紙筆墨，以教官有飭勵之效，亦命各賜鹿皮。又命大司成徐志修，率齋生相爲論難。仍賜諸生西瓜及醞酬湯。上謂志修曰：“世孫儼若成人，輔導之道，尤當加意。”志修曰：“世孫講明德章，臣仰問其義，答以‘明我之德，以明人之德’，臣心實驚異矣。”</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p>	<p>임금이 흥태문(興泰門)에 나아가서 대신(大臣)과 북한산(北漢山)에 수가(隨駕)한 비국 당상을 불러 보고 북한산에 성(城)을 쌓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를</p>	<p>上御興泰門，召見大臣及北漢隨駕備堂，問北漢築城便否，命治北漢小南門</p>



<p>(乾隆) 25년) 8월 22일(계사) 2번째기사 홍태문에 나가 대신들과 북한산의 축성 여부 등을 묻고 이창수 등을 파직시키다</p>	<p>물었고, 북한산 소남문(小南門) 산길을 닦기를 명하였다. 연용대(鍊戎臺) 백성을 불러 보고 폐막(弊瘼)을 물으니, 백성이, ‘세력가의 사나운 노예가 훈조가(燠造價)14868) 를 주지 아니하고 정채(情債)를 강제로 받는다.’ 우러러 대답하니, 임금이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신칙하여 그 가장(家長)은 도년(徒年)의 율(律)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전 병조 판서 이창수(李昌壽), 한성 판윤 홍계희(洪啓禧), 전 판의금(前判義禁) 홍상한(洪象漢), 전 장령(前掌令) 이홍직(李弘稷)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는데, 대저 백성이 고하기를, ‘거동할 때 하례(下隸)들이 대가(大駕)를 인도한다고 핑계대면서 함부로 정채를 거두었다.’고 한 때문이다. 북한산의 부모(父老) 네 사람에게 미포(米布)를 내려 주기를 명하였는데, 숙종 임진년(14869) 거동 때에 공경히 맞이한 자이기 때문이다.</p>	<p>山路。 召見鍊戎臺民人， 問弊瘼， 民人‘以勢家悍奴， 不給燠造價， 勒捧情債’， 仰對， 上命嚴飭有犯者， 家長施以徒年之律。 命罷前兵曹判書李昌壽、 漢城判尹洪啓禧、 前判義禁洪象漢、 前掌令李弘稷之職， 蓋民人告以‘動駕時下隸， 稱以導駕， 濫捧情債’故也。 命賜北漢父老四人米布， 以肅廟壬辰動駕時， 祇迎者也。</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9월 21일(임술) 4번째기사 재이로써 3일간 감선을 명하고 왕세자도 거행토록 명하다</p>	<p>임금이 재이(災異)로써 3일의 감선(減膳)을 명하고 또 동궁(東宮)에도 일체로 거행하기를 명하였다.</p>	<p>上以災異， 命三日減膳， 又命東宮， 一體舉行。</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 (乾隆) 25년) 10월 14일(을유) 6번째기사 재이로써 6일간 감선하고 왕세자도 감선토록 하다</p>	<p>임금이 재이(災異)로써 6일 동안 감선(減膳)하고 왕세자도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으며, 비국(備局)에 좌기(坐起)를 신칙하였다.</p>	<p>上以災異， 減膳六日， 亦令元良， 一體舉行， 申飭備局坐起</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p>	<p>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서 기사 당상(耆社堂上)14923) 과 친공신(親功臣) 자손을 불러 보고 면식(麵食)을 내려 주었으며, 어제(御製)로 그 일을 기록하고</p>	<p>己丑/上御景賢堂， 召見耆社堂上及親功臣子孫， 賜麪食， 以御製紀其事， 歷</p>

<p>(乾隆) 25년) 10월 18일(기축) 1번째기사 경현당에서 기사 당상, 친공신 자손을 불러 보고 면식을 내려주다</p>	<p>공신(功臣)의 이름을 낱낱이 들어서 총전(寵典)을 보였다. 기사 당상 정형복(鄭亨復)이 말하기를, “예전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의복과 음식을 맥구 노인(麥丘老人)에게 내려 주매, 노인이 ‘국중(國中)의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내려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신도 또한 신 등에게 면식(麵食)을 내리는 뜻으로써 일국의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추급(推及)하도록 할 것을 원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고, 특별히 초모(貂帽)를 하사하여 가상(嘉尙)한 뜻을 보였다.</p>	<p>舉功臣之名，以示寵典。 耆社堂上鄭亨復曰：“昔齊桓公，以衣食賜麥丘老人，老人願賜國中飢寒者，臣亦願以宣麪臣等之意，推及於一國之飢寒者。” 上曰：“好矣。” 特賜貂帽，以示嘉尙之意。</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乾隆) 25년) 10월 20일(신묘) 2번째기사 복선하는 날의 의식에 대해 하교하다</p>	<p>하교하기를, “복선(復膳)하는 날에 만약 다시 제성(提醒)하면 그 나라가 흥(興)하겠는가? 차대(次對)를 하는가 입대(入對)를 하는가? 비국(備局)이 있는가 정원(政院)이 있는가? 칙교(飭教)가 보람이 있는가? 오늘부터 또 찬품을 줄여서 10일에 준(準)하라.” 하였다.</p>	<p>教曰：“復膳之日，若復提醒，其國興乎？爲次對乎？爲入對乎？有備局乎？有政院乎？飭教有效乎？自今日又爲減膳，準十日。”</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乾隆) 25년) 10월 22일(계사) 2번째기사 흥화문에 나가 유민에게 죽을 먹이고, 각도에 보홀토록 유시하다</p>	<p>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나아가서 유민(流民)에게 죽을 먹이고 또 보홀(保恤)하라는 뜻으로써 도신(道臣)과 유수(留守)에게 유시를 내렸으니, 대저 정형복(鄭亨復)의 ‘맥구 노인(麥丘老人)’이란 말에 감동한 것이다.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고 옷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제주(濟州) 사람으로 공물(貢物)을 들이는 자에 대하여 공시인(貢市人)으로 하여금 그 폐막(弊瘼)을 진달하게 하였으며, 이어 비국(備局)과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다시 품(稟)하게 하였다.</p>	<p>上御興化門，饋粥流民，又以保恤之意，下諭于道臣留守，蓋感於鄭亨復麥丘老人之說也。 命釋輕囚賜衣。 濟州人入貢者，使貢市人，陳其弊瘼，仍使備局賑廳，消詳更稟。</p>
<p>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乾隆) 25년) 10월 24일(을미) 2번째기사</p>	<p>김양행(金亮行)을 사옹원 주부(司饗院主簿)로 삼았다. 김양행은 성품이 온화하고 자량(慈良)하며, 학문에 대한 조예(造詣)가 정밀하고 심오하여 처음에 초선(抄選)으로 자의(諮議)에 제수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음과(蔭窠)로 6품에 올랐다.</p>	<p>以金亮行爲司饗主簿。 亮行溫和慈良，造詣精深，初以抄選除諮議，至是以蔭窠陞六。</p>

김양행을 사옹원 주부로 삼다		
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乾隆) 25년) 10월 25일(병신) 1번째기사 선전관에게 거지들을 진청에 보내 죽을 먹이게 하다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유개(流丐)를 거느리고 진청(賑廳)에 넘겨주어 죽을 먹이게 하였다.	丙申/命宣傳官，領率流丐。付於賑廳饋粥。
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乾隆) 25년) 11월 3일(계묘) 2번째기사 제주에서 온 진상자에게 옷과 양식을 주라고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제주에서 진상하는 물건이 또 올라오거든 가지고 온 사람에게 옷을 지어서 주고 내려갈 때에 경유하는 고을로 하여금 양식을 주게 하라.” 하였다.	教曰：“濟州進上，又有上來，領來人，製衣以給，下往時，使所經邑，給糧。”
영조 96권, 36년 (1760 경진 / 청 건륭(乾隆) 25년) 11월 6일(병오) 3번째기사 선전관에게 종로의 거지 아이들을 선혜청에 보내 죽을 먹이도록 하다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종가(鍾街)14938)의 거지 아이를 적간(摘奸)하여 거느리고 선혜청(宣惠廳)에 넘겨주어 죽을 먹이고 안접(安接)하게 하였다.	令宣傳官，摘奸鐘街乞兒，領付惠局，饋粥安接。
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임금이 각 관사에 영(令)을 내려 15일 이전에는 패(牌)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또 농사를 권장하고 백성을 진휼하는 뜻으로 전교(傳教)를 써서 팔도(八	上令各司十五日以前，毋得用牌，又以勸農賑民之意，書傳教，下諭于八道道

<p>(乾隆) 26년) 1월 1일 (신축) 2번째기사 각 관사의 패(牌) 사용에 관하여 유사하다. 각도의 농사를 권장하고, 가자를 행하다</p>	<p>道)의 도신(道臣)과 양도(兩都)의 유수(留守)에게 하유(下諭)하였다. 나이 80세인 사람을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지주(知奏)하게 하여 모두 가자(加資)하도록 하고, 일찍이 승지(承旨)·참의(參議) 및 곤수(閫帥)를 거친 사람의 아버지나 시종신(侍從臣)의 아버지로 나이가 많은 이에 대한 가자를 즉시 거행하도록 하였다. 병조 판서 김성응(金聖應)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나이가 94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후하게 내려 주도록 하였다.</p>	<p>臣兩都留守。年八十人，令大臣知奏，并加資，曾經承旨參議及閫帥父侍從臣父，年滿者加資，卽爲舉行。兵曹判書金聖應母尹氏，年至九十四歲，故特令該曹，厚賜衣資食物。</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월 3일 (계묘) 1번째기사 철원·태안의 호장에게 농사 권장의 방법에 관하여 묻다</p>	<p>임금이 승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입직(入直)한 내금위 장(內禁衛將) 및 금군(禁軍)을 호궐(犒饋)14997) 하고, 철원(鐵原)과 태안(泰安)의 호장(戶長)을 불러들여 농사를 권장하는 방법을 하순(下詢)하자, 태안 호장이 아뢰기를, “군수(郡守) 및 호장이 가볼 만한 곳에 가서 농사를 권장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가 같은 군(郡)인데 어느 곳이 가볼 만한 곳이며 어느 곳이 가볼 수 없는 곳인가? 한 사람 호장을 경계하여 3백 60고을을 힘쓰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전배(前排)를 들어오도록 하여 &lt;태안 호장에게&gt; 경계를 한 뒤에 끌어내도록 명하였다.</p>	<p>癸卯/上御崇賢門，犒饋入直內禁將及禁軍，召入鐵原·泰安戶長，下詢勸農之道，泰安戶長曰：“郡守及戶長，可往處往見而勸農矣。”上曰：“同是一郡，何處是可往處，何處是不可往處耶？飭一戶長，以勵三百六十州可也。”命入前排，戒飭後拿出。</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월 8일 (무신) 6번째기사 친경전 수확물의 사용에 관하여 명하다</p>	<p>임금이 친경전(親耕田)에 갈고 씨를 부린 구곡(九穀)에서 당연히 자성(稟盛)15010) 으로 쓸 것은 정밀하게 갖추어서 제공하도록 명하였으며, 부족한 것은 남은 전지의 바칠 것으로 더 보태도록 하고, 그 나머지 피당두태(皮唐豆太)는 종자(種子)를 제하고 봉진(封進)하게 하여 자성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그 풍년이 들 것과 흉년이 들을 알게 한다는 것으로 보충해서 바치지 말게 하였다.</p>	<p>上命以親耕田耕種九穀，應爲稟盛者，精備以供，不足者，以餘田所捧添補，其餘皮唐豆太，除種子封進，以示重稟盛之意。亦以知其豐歉，勿爲充補以進。</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p>	<p>예조 판서 한익모(韓翼謨)가 말하기를, “왕세자의 관례(冠禮) 때에는 사부(師傅)·빈객(賓客)과 서로 향하여 두 번 절</p>	<p>禮曹判書韓翼謨曰：“王世子冠禮時，與師傅賓客，有相向再拜之禮，亦有傳</p>

<p>(乾隆) 26년) 2월 23일(계사) 3번째기사 예조 판서 한익모가 왕세자의 관례에 관하여 아뢰다</p>	<p>하는 의식이 있고 또 사부가 교서(敎書)를 받드는 절차가 있는데, 왕세손의 관례 때에도 역시 의당 여기에 의거하여 마련하고 유선(諭善)으로 대행(代行)하게 하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한익모가 말하기를, “왕세자의 관례 때에는 사용원(司饗院)의 부제조(副提調)를 작례 집사(酌禮執事)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어느 관원을 작례 집사로 삼아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용원의 첨정(僉正)으로 삼도록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을 간행한 뒤에 오영(五營)이 지금의 오위(五衛)가 되었는데, 친열(親閱)과 상조(常操) 때의 인기(認旗)와 수기(手旗)는 아직도 이정(釐正)하지 않고 있다. 이 뒤를 오군문(五軍門)에는 각기 해영(該營)의 인기를 비치하고, 병조 판서가 오군문의 상조 때에는 납음 인기(納音認旗)를 소지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입시(入侍)나 동가(動駕) 때, 그리고 친열 때에는 해영의 수기를 소지하게 하는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奉敎書之節，而王世孫冠禮時，亦當依此磨鍊，以諭善代行似宜矣。” 上可之。 翼謦曰：“王世子冠禮時，司饗副提調爲酌禮執事，今則以何官作酌禮執事乎？” 上曰：“以僉正爲之。” 上曰：“《續兵將圖說》刊行後，五營今爲五衛矣，親閱與常操，認旗手旗，尙不釐正。 此後五軍門，各置該營認旗，兵判五軍門常操時，持納音認旗，凡入侍動駕時親閱時，持該營手旗，定式施行。”</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3월 14일(계축) 1번째기사 평시서 제조 홍봉한 등과 공시의 폐단에 대하여 논의하다</p>	<p>임금이 승현문(崇賢門)에 나아가 평시서 제조(平市署提調) 홍봉한(洪鳳漢)으로 하여금 공시인(貢市人)을 거느리고 입시(入侍)하도록 하였는데, 호조 판서 윤동도(尹東度)와 한성 판윤 남태제(南泰齊)도 참여하였다. 임금이 공시(貢市)의 폐단[弊瘼]에 대하여 하순하고 모두 이정(釐正)하게 하였다. 이어서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비국 당상을 소견(召見)하고 유사 당상인 홍인한(洪麟漢)으로 하여금 각도(各道)의 장본(狀本)을 아뢰도록 하였는데, 강화 유수(江華留守)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군항미(軍餉米) 1천 석(石)을 영남(嶺南)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배로 운반하여 보내도록 허락하였으며, 강원 감사(江原監司)의 장청으로 인하여 잡곡(雜穀) 2백 석을 영월(寧越)의 관혜(官廩)를 수리</p>	<p>癸丑/上，御崇賢門，令平市提調洪鳳漢，率貢市人入侍，戶曹判書尹東度、漢城判尹南泰齊亦與焉。 上，下詢貢市弊瘼，皆令釐正。 仍御景賢堂，召見備堂，使有司堂上洪麟漢，奏各道狀本，因江華留守狀請，軍餉米一千石，許令嶺南道臣，船運以送，因江原監司狀請，以雜穀二百石，俾助寧越官廩修改之資，因平安監司狀請，人蔘十五</p>

	<p>하는 밀거리로 돕게 하였고, 평안 감사(平安監司)의 장청으로 인해서 인삼(人蔘) 15근을 북도(北道)에다 나누어 정하도록 하였다. 통영(統營) 사람 이만삼(李萬森)이 북을 쳐서 사정을 하소연한 것으로 인하여 어세전(漁稅錢) 1만 냥(兩)을 10년 동안 기한하여 정퇴(停退)하도록 하였으며, &lt;세금을&gt; 징수할 길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탕감(蕩減)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에 만약 긴급한 일이 있으면 유사 당상이 구대(求對)하여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는데, 대체로 당시에 삼공(三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p>	<p>斤，使之分定於北道。因統營人李萬森擊鼓原情，漁稅錢一萬兩，限十年停退，指徵無處者，特令蕩減。上曰：“此後如有緊急事，有司堂上求對舉行。”蓋時無三公故也。</p>
<p>조 97권, 37년(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3월 21일(경신) 1번째기사 채제공의 청으로 죽산·안성 등지의 보리 등을 팔 등으로 바꾸도록 명하다</p>	<p>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비국 당상이 입시하였다. 죽산(竹山)·안성(安城)·이천(利川)·음죽(陰竹)·적성(積城)·삭녕(朔寧) 등 고을의 보리로 환상(還上)한 것을 적당하게 헤아려 팔[小豆]으로 바꾸도록 하고, 양성(陽城)·금천(衿川)·과천(果川) 등 고을의 밀[小麥]은 절반을 벼[租]로 바꾸도록 명하였는데, 채제공(蔡濟恭)이 아뢴 바로 인해서였다.</p>	<p>庚申/上御景賢堂，備堂入侍。命竹山安城利川陰竹積城朔寧等邑牟還，量宜以小豆換作，陽城衿川果川等邑小麥，折半作租，因蔡濟恭所奏也。</p>
<p>영조 97권, 37년(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3월 25일(갑자) 1번째기사 김상익을 분제조로 삼다</p>	<p>김상익(金尙翼)을 분제조(分提調)로 삼도록 명하였다. 일차(日次)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에게 입시(入侍)하도록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하교(下敎)한 뒤에도 역시 문후(問候)하지 말도록 하라는 영(令)이 없었는가? 내가 하교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지금은 제조(提調)가 대궐 아래서 대령(待令)하고 있으며 세 차례 탕제(湯劑)를 올리니, 원량(元良)의 일차 문후(日次問候)는 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甲子/命金尙翼爲分提調。日次已過，其令入侍，上曰：“下敎之後，亦無勿爲問候之令，予當敎之。今則提調闕下待令，三進湯劑，元良日次問候勿爲。”</p>
<p>영조 97권, 37년</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p>	<p>乙丑/上御思賢閣，藥房入侍。上曰：</p>

<p>(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3월 26 일(을축) 1번째기사 닭기름 진현, 현관에서 의 강회, 지방 대신의 체임 등에 관하여 명하다</p>	<p>기를, “내일부터는 닭기름[鷄膏]을 달여서 들이도록 하되, 전인(塵人)에게 분부하여 알을 품고 있는 닭은 가져다 바치지 말도록 하라. 옛날에 병시중[侍湯]을 들 때에 머리가 푸른 오리를 들여보내도록 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알을 품고 있는 오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지 말게 하였다.” 하고, 전교(傳敎)를 써서 수의(首醫)를 방면하여 보내도록 명하였으며, 전교를 써서 현관(賢關)에서의 강회(講會)에 대해 신칙(申飭)하고, 강서원(講書院)에 신칙하여 전례대로 잇달아 강서(講書)하도록 하였다. 지방에 있는 대신(臺臣)을 체임(遞任)하도록 허락하고, 유관현(柳觀鉉)을 장령으로 삼았다.</p>	<p>“自明日鷄膏煎入，而分付塵人，抱(卯) [卯] 者勿使來納。昔年侍湯時，有青頭鴨得納之敎，而抱(卯) [卯] 者勿使來進矣。” 命書傳敎，放送首醫，命書傳敎，申飭賢關講會，申飭講書院，依例連爲講書。在外臺臣許遞，以柳觀鉉爲掌令。</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3월 27 일(병인) 1번째기사 과를 가져와 배에 붙이게 하다. 약방 직속과 관련 승지 등을 체차하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자 약방(藥房)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과[蔥]를 따뜻하게 하여 들여오도록 명하여 잇달아 복부(腹部)에다 붙이게 하고, 세 도위(都尉)에게 명하여 직속(直宿)하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약방의 관원에게 유문(留門)15071) 하도록 하여 들어와 직속하게 한 하교 또한 이미 너무 일찍하였다면 조정(朝廷)의 정후(庭候)를 해가 높이 솟은 뒤에 기거(起居)하도록 하는 영(令)을 내게 한 신하는 특별히 과직하게 하고, 정원에서 분부를 잘하지 못하여 정후 또한 너무 늦은 데에 관계되었으니, 부제조를 제외한 여러 승지는 일체로 체차(遞差)하게 하라.” 하고, 김상중(金尙重)·심발(沈爕)·이수득(李秀得)·유한소(兪漢蕭)·이정철(李廷喆)을 승지로 삼고, 왕세손에게 진현(進見)하도록 명하였다.</p>	<p>丙寅/上御思賢閣，藥房入侍，命入葱熨，連爲付貼於腹部，命三都尉直宿。敎曰：“藥房留門入來，直宿下敎，亦已差早，則朝廷庭候日高後爲之，其出令起居之臣，特爲罷職，政院不能分付，庭候亦涉差晚，副提調外，諸承旨一併遞差。” 以金尙重·沈爕·李秀得·兪漢蕭·李廷喆爲承旨，命王世孫進見。</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3월 27 일(병인) 2번째기사 분제조 김상익 등이 대조께 진현하는 일에 관하여 왕세자에게 아</p>	<p>분제조(分提調) 김상익(金尙翼), 승지 박사눌(朴師訥), 사서(司書) 이창임(李昌任)이 소조(小朝)에 구대(求對)하여 예후(睿候)가 더욱 심해졌는가를 우러러 물으니, 하령하기를, “치통(齒痛)과 두통(頭痛) 및 복부(腹部)가 당기어 기동(起動)을 할 수가 없다.” 하자, 김상익과 박사눌이 말하기를, “약원(藥院)의 관원과 도위(都尉)가 아울러 직속(直宿)하고 있으니, 저하(邸下)</p>	<p>分提調金尙翼，承旨朴師訥，司書李昌任，求對於小朝，仰問睿候之添重，令曰：“齒痛頭痛及腹部牽引，不能起動矣。” 尙翼·師訥曰：“藥院都尉，竝直宿，則邸下進見之節，不可不爲也。” 令曰：“然則軍兵當草記而發矣。” 昌任曰：“不可拘於節次，只以</p>

<p>되다</p>	<p>께서 진현(進見)하는 의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그렇다면 군사들을 초기(草記)15072) 하여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이창임이 말하기를,  “절차에 구애받을 것은 없지만, 단지 시위(侍衛)로 빨리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박사눌은 말하기를,  “만약 초기를 들여보낸다면 대조께서 &lt;소조의&gt; 병을 근심하여 아마도 허락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하고, 김상익은 말하기를,  “신이 보호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예후(睿候)가 억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연(輦)을 타고 떠나려 하는데, 누울 수 있겠는가?”  하자, 김상익이 말하기를,  “모장(毛帳)으로 가리면 반드시 바람에 닿을 염려가 없을 것이며, 누워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니, 이창임이 말하기를,  “신이 진현 초기(進見草記)를 정원에 올려야 하는데,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하령하기를,  “단지 진현(進見)하겠다는 뜻을 정원의 &lt;승지로&gt; 하여금 은미하게 품(稟)하게 하되, 더디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였다. 정원에서 진현하겠다는 하령(下令)으로써 품계(稟啓)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p>	<p>侍衛，斯速行之可也。” 師訥曰：“若入草記，則大朝以惟疾之憂，恐有不許之慮。” 尙翼曰：“臣在保護之地，非不知睿候之難強，而不得不如是矣。” 令曰：“乘輦作行，可以容臥耶？” 尙翼曰：“遮以毛帳，必無觸風之慮，亦可以臥而行也。” 昌任曰：“臣當以進見草記，呈于政院，而措語何以爲之乎？” 令曰：“只以進見之意，使政院微稟，亦不宜遲之也。” 政院以進見下令稟啓，上，教曰：“調理云而來，則予尤用心。承旨下去卽諭，勿爲舉行。” 承旨以傳教，仰達于小朝，令曰：“卽今非言病之時，而大朝既有用心之教。強而行之，若或添重，大朝尤豈不用心耶？” 昌任曰：“臣已以乘輿出宮，微稟於大朝，今不可還寢也？” 文學嚴璘曰：“大朝用心之教，不過惟疾之憂。今以睿候之差勝，請行進見之禮，則大朝必嘉悅矣。” 令曰：“若從嚴璘之言，是欺大朝也。” 璘曰：“雖以禮家言之，父兄病中，子弟有病，父兄使休息，則子弟亦以權辭，稱以病愈，不懈侍湯。邸下以焦迫之心，欲爲進見，則今雖權辭，顧何妨耶？邸下不可以欺之一字，</p>
-----------	---	--



	<p>“조리(調理)한다고 하면서 오는 것은 내가 더욱 마음이 쓰인다. 승지는 가서 즉시 유시하여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p> <p>하므로, 승지가 전교로써 소조에게 우리러 진달하니, 하령하기를,  “지금은 병을 말할 시기가 아니지만 대조께서 이미 마음이 쓰인다는 하교가 계셨다. 그런데 억지로 거행하다가 만약 혹시라도 &lt;병이&gt; 더 심해진다면 대조께서 어떻게 더욱 마음을 쓰시지 않겠는가?”</p> <p>하자, 이창임이 말하기를,  “신이 승여(乘輿)가 이미 궁(宮)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으로 대조께 은미하게 품(稟)하였으니, 지금은 도로 정지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문학(文學) 엄인(嚴麟)이 말하기를,  “대조께서 마음이 쓰인다고 하신 하교는 &lt;소조의&gt; 병을 염려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후(睿候)가 조금 낫다는 것으로 진현하는 예를 거행한다고 청한다면 대조께서도 틀림없이 아름답게 여기며 기뻐하실 것입니다.”</p> <p>하니, 하령하기를,  “만약 엄인의 말을 따른다면, 이는 대조를 속이는 것이다.”</p> <p>하자, 엄인이 말하기를,  “비록 예가(禮家)로써 말한다 하더라도, 부형(父兄)의 병중(病中)에 자제(子弟)에게 병이 있어 부형이 그로 하여금 휴식(休息)하도록 할 경우 자제 또한 임시 방편의 말로 병이 나았다고 핑계대면서 병시중[侍湯]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하께서 초조하고 박절한 마음으로 진현(進見)하려고 한다면, 지금 비록 임시 방편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보건대, 무슨 방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저하께서 ‘속인다[欺]’는 한 글자로 의심하거나 우려를 두는 것은 불가합니다.”</p> <p>하니, 하령하기를,  “내가 한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병이 만약 더 심해져서 다시 대조께서 마</p>	<p>有所疑慮。” 令曰：“非余惜一身，病若添重，更加大朝之用心，則豈非憂悶乎？” 麟曰：“邸下經年未得進見之餘，又當大朝患候直宿之時，不爲進見，則民情抑鬱矣。” 令曰：“此時何言民情？余非爲觀瞻，則民情二字，極爲非矣，推考可也。” 令曰：“當行進見，頭痛昏眩，難以平坐，分付太僕，椅子待令。” 上，教曰：“元良方在調理，其在體孔聖謂孟武伯之語，進見今不可論，而今聞講官之言，只率入直堂郎而來云，舉措亦涉異常。其將波蕩都下人心。承旨春坊，一不提稟，矇然受令，承旨朴師訥，司書李昌任罷職，使宣傳官，馳傳于小朝。” 令曰：“余非不欲進見，而聖教如此，在子弟之道，可不奉承乎？” 遂寢進見之令。 工曹正郎李宗明，以兼史入直于昌德宮，陳書請進見，語甚切直，間多不擇，政院不捧。</p>
--	---	--

음을 더 쓰시게 된다면, 어떻게 염려하며 민망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하자, 엄인이 말하기를,  
 “저하께서 한 해가 지나도록 진현하지 못한 나머지 또 대조의 환후(患候)를 당하여 직숙(直宿)하는 때에 진현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民情]에 답답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이러한 때에 어찌 백성의 마음을 말하는가? 내가 지켜보는 바가 아니니, ‘백성의 마음[民情]’이란 두 글자는 매우 잘못이다. 추고(推考)하는 것이 옳다.”  
 하고, 하령하기를,  
 “진현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두통(頭痛)으로 혼미하고 어지러워 바로 앉아 있기가 어려우니, 태복시(太僕寺)에 분부하여 의자(椅子)를 대령(待命)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임금이 하교하기를,  
 “원량(元良)이 바야흐로 조리(調理)하는 가운데 있으니, 공자(孔子)가 맹무백(孟武伯)에게 일러준 말(15073)을 체득하는 데에 있어서 진현은 지금 논할 수 없는데도 지금 강관(講官)의 말을 들으니 단지 입직(入直)한 당상관과 낭청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데, 행동이 또한 이상스러운 데에 관계된다. 장차 도하(都下)의 인심(人心)을 소란스럽게 하려는 것인가? 승지와 춘방(春坊)에서 한 차례도 제기하거나 품(稟)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 영(令)을 받아들였으니, 승지 박사들과 사서 이창임은 파직하도록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소조(小朝)에 치전(馳傳)하게 하라.”  
 하였다. 하령하기를,  
 “내가 진현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성교(聖教)가 이와 같으니, 자제(子弟)된 도리에 있어서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진현하는 영(令)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공조 정랑 이종명(李宗

	<p>明)이 겸사(兼史)로 창덕궁(昌德宮)에 입직(入直)하면서 글을 올려 진현하기를 청하였는데, 말이 매우 절실하고 정직하였지만 가끔 가리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므로 정원에서 올리지 않았다.</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3월 28일(정묘) 2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여 탕제를 올릴 것을 청하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탕제(湯劑)를 하루에 세 차례 달여서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上御思賢閣，藥房入診，請以湯劑日三煎進，上許之。</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3월 28일(정묘) 3번째기사 정원에서 왕세자의 진현을 청하다</p>	<p>(전략) 보기를 마치자 하교하기를, “세자가 이와 같이 &lt;병이&gt; 더함이 있다니, 그로 하여금 오지 말게 한 것은 내가 정말 옳았다. 그리고 의약청(議藥廳)에서는 단지 도기탕(導氣湯)만 그전대로 지어서 들이도록 하라. 오늘날은 문구(文具)의 세계(世界)라고 말할 만하다. 분제조(分提調) 김상익(金尙翼)을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규채(李奎采)가 말하기를, “초책(草冊) 가운데는 원래 ‘더함이 있다[有加]’는 두 글자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이규채에게 그 초책을 읽도록 명하였는데, 머리 부분이 엉킨 듯 무겁다는 내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더함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돌아다보고 두루 가리려 하니,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본이다. 오늘 도승지는 잠자코 가만히 있는 것이 가하거늘, 무슨 마음으로 미봉(彌縫)하려 드는가?” 하고, 특별히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또 주서(注書) 황박(黃樸)이 전혀 기초(記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중히 조치하게 하고, 승지 이심원(李心源) 또한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원(廚院)15074) 으로 옮겨서 직속하게 하고, 약원 도제조(藥院都提調) 김상로(金尙</p>	<p>(전략)敎曰：“世子若是有加，其令勿來，予果是矣。議藥只導氣湯，依前製入。今日可謂文具世界。分提調金尙翼罷職。”李奎采曰：“草冊中元無有加二字也。”上，更命奎采讀其草冊，至頭部凝重之語，上曰：“此豈非有加云乎？顧瞻周遮，此亡國之根柢也。今日都承旨默默可也，何心彌縫？”特命罷職。又以注書黃樸之全不記草，令該府嚴處，承旨李心源，亦命罷職。自今日命移直廚院，藥院都提調金尙魯在江郊，漠無動靜，命罷職不敘。以洪鳳漢拜相，仍兼扈衛大將藥院都提調。復以振紀綱、舉賢能、鎮囂習、濟元元、一公心。同寅協六條勉諭，特除李章吾爲禁衛大將。</p>

	<p>魯)가 강교(江郊)에 있으면서 아득히 동정(動靜)이 없다고 하여 과직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홍봉한(洪鳳漢)을 정승으로 제배하고 그대로 호위대장(扈衛大將)과 약원 도제조를 겸임하게 하였다. 다시 기강(紀綱)을 진작시키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이를 기용하며, 시끄러운 풍습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공정한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서로 공경하고 협력하기를 함께 하라는 여섯 가지 조목을 가지고 힘쓰도록 유시하였으며 특별히 이장오(李章吾)를 금위 대장(禁衛大將)에 제배하였다.</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4월 21일(경인) 2번째기사 술을 엄중히 금지하다</p>	<p>입금이 거듭 주금(酒禁)을 엄중히 하면서 하교하기를, “각 궁(各宮)과 내수사(內需司)에서 만약 범(犯)하는 바가 있으면 차지 중관(次知中官)에게는 월봉(越俸) 3등을 하고, 누룩[麴]을 맡은 궁노(宮奴)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장(杖) 백 대를 집행하게 하며, 내사(內司)의 차지(次知)는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가장(家長)을 다스리는 형률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上申嚴酒禁， 敎曰：“各宮與內需司， 若有所犯， 次知中官， 越俸三等， 麴主宮奴， 令該曹決杖一百， 內司次知， 施以士夫家家長之律。</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4월 25일(갑오) 1번째기사 우의정 홍봉한이 금지된 술을 범한 한국증의 처를 용서하도록 청하다</p>	<p>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사족(士族)의 부녀(婦女)가 주금(酒禁)을 범(犯)했다는 것으로 정배(定配)하는 것은 매우 민망스럽게 여길 만하다고 우러러 진달하니, 한국증(韓國曾)의 처(妻)에 대하여 특별히 분간(分揀)하도록 명하였다.</p>	<p>甲午/右議政洪鳳漢， 以士族婦女， 犯酒禁定配， 極爲可悶仰陳， 命韓國曾妻， 特爲分揀。</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4월 28일(정유) 2번째기사 동궁의 진현을 청하는</p>	<p>사학(四學)의 유생(儒生) 황만석(黃萬錫) 등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틀, “지난번 성상의 체후가 편찮으셔서 약원(藥院)에서 직숙(直宿)하는 장소를 옮기고 대소(大小)의 관원이 초조하게 애를 태우며 중외(中外)에서 놀라고 허둥대는데도 유독 저하(邸下)께서만 &lt;어버이의 환후 중에 자식이&gt; 약(藥)을 맞</p>	<p>四學儒生黃萬錫等上書， 略曰： “乃者聖體愆和， 藥院移直， 大小焦煎， 中外驚惶， 而獨邸下失嘗藥之禮焉。 及夫天祐宗祚， 玉體康復， 神人胥悅， 八域同慶， 而獨邸下闕獻賀之禮焉。</p>

사학 유생 황만석 등의 상서

보는 예(禮)를 빠뜨렸습니다. 대저 하늘이 종쟁(宗祚)15093) 을 도와 성상의 옥체(玉體)가 편안하게 회복되어서는 신인(神人)이 서로 기뻐하며 팔도[八域]가 함께 경사스러워하는데, 유독 저하께서만 하례(賀禮)를 드리는 의식을 빠뜨리셨습니다. 모르기는 합니 다만, 저하께서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대저 인자(人子)의 직분은 오직 마땅히 효도하는 도리에 이르도록 할 따름이고 부모(父母)가 자신의 몸을 염려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예(禮)를 편리하게 폐기하며 단지 부모의 명이라고 하여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신 등의 어리석음으로 가만히 오늘날의 일을 생각하건대, 저하께서 대조(大朝)의 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면서 오직 저하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김은 부당하니, 품명(稟命)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진현(進見)하는 예를 행함이 옳습니다.

아! 삼공(三公)은 사보(師保)의 임무를 겸하였지만 팔짱을 낀 채 남보듯하며 바로잡아 구제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위가 재상(宰相)의 열에 있으면서 진언(進言)하는 자는 몇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각(臺閣)은 직임이 말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한 마디 말이 없으니, 이는 맹자(孟子)가 이른바, ‘말을 해야 하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 벽을 뚫거나 담을 뛰어넘는 줌도둑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내가 고질병으로 인하여 약(藥)을 맛보는 의식과 하례를 드리는 의절(儀節)을 모두 잘 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나의 불효(不孝)와 불초(不肖)함 때문이니 초조하게 애를 태우며 송구스럽고 민망히 여기면서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장보(章甫)의 글을 보니 내용이 매우 절실하고 극진하여 가상(嘉賞)하는 가운데도 실로 마음에 부끄럽다. 어떻게 마음과 뺨속에 새겨두지 않겠는가?”

하였다. 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유생이 상서한 글 뜻을 가지고 의금부에서

未知 邸下有何故而然耶? 大抵人子之職, 惟當止孝之道而已, 不當以父母憂念己身之故, 而便廢在己之禮, 直以爲父母之命, 不可違云爾。 臣等之愚, 竊以爲今日之事, 邸下不當以不得大朝之命爲托, 而惟盡在邸下之道, 不待稟命而亟行進見之禮可也。 嗚呼! 三公兼師保之任, 而袖手越視, 不欲匡救, 位在宰列而進言者, 不過數人。 而所謂臺閣, 職在可言之地, 而無一言, 此孟子所謂可以言而不言, 皆穿窬之類者也。”

王世子答曰: “余因沈痾, 嘗藥之禮, 獻賀之節, 俱不能行焉。 寔余之不孝不肖, 焦煎悚悶, 夙宵靡懈, 而今覽章甫之章, 言甚切至, 嘉賞之中, 實忸怩于中。 豈不銘諸心骨焉?” 右議政洪鳳漢, 以儒書辭意, 胥命金吾, 令曰: “大臣入對。”

	<p>명을 기다리니, 하명하기를, “대신은 입대(入對)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5월 7일 (을사) 1번째기사 우의정 홍봉한이 통신 사가 갈 때에 소용되 는 인삼과 그 값에 관 하여 아뢰다</p>	<p>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통신사(通信使)가 갈 때에 소용되는 인삼(人蔘) 15근(斤)을 북도(北道)의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 나누어 정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본 뒤에 그대로 따랐다. 홍봉한이 또 관서(關西)의 세소미(稅小米) 2만 석(石)과 별향고 전(別餉庫錢) 2만 냥(兩)과 무명[木] 1백 동(同)을 구획(區劃)하여 그것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본도(本道)의 인삼 값으로 내려 주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 편리함에 따라 북도의 인삼 값으로 옮겨서 보충하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옥당(玉堂) 김중정(金鍾正)이 전임지(前任地)였던 의성(義城)에 있을 때에 사옹원(司饗院)의 퇴목(退木)을 돈으로 바친 폐단을 우려러 진달하니, 임금이 해당 당상관은 파직하고 해당 낭관은 도태시켜 버리도록 명하였다.</p>	<p>乙巳/上御景賢堂，引見大臣備堂。右議政洪鳳漢，以信使時所用人蔘十五斤，請分定於北道三甲，上，下詢諸臣後從之。鳳漢又以關西稅小米二萬石，別餉錢二萬兩，木一百同區劃，使之作銀，用下於本道蔘價，其餘前頭從便移充於北道蔘價，上從之。玉堂金鍾正，以前任義城時，司饗院退木捧錢之弊仰陳，上命該堂罷職，該郎汰去。</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5월 10일(무신) 1번째기사 황단의 망배례를 행하다. 한촌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하사하다</p>	<p>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황단(皇壇)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승지를 보내어 선무사(宣武祠)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효묘(孝廟)께서 한인(漢人)을 데리고 와서 본궁(本宮)의 담장 밖 한촌(漢村)에 살도록 명하셨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 지금 이날을 당하여 어찌 풍천(風泉)15103 을 외기만 하겠는가? 한촌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해칭(該廳)으로 하여금 특별히 식물(食物)을 지급하도록 하여 옛날을 추사(追思)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p>	<p>戊申/上御崇政殿行皇壇望拜禮，遣承旨看審宣武祠。上曰：“昔年孝廟率漢人而來，命居本宮牆外漢村，尚今存焉。今逢此日，奚徒風泉之誦。漢村居民，令該廳特給食物，以示追思昔年之意。”</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5월 22일(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기민(飢民)을 소견(召見)하였는데, 말라버린 보리를 가지고 온 자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가져다 보고 말하기를, “정말로 참혹하다. 차마 좋은 음식[玉食]이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p>	<p>庚申/上御建明門，召見飢民，有持枯麥而來者，上取覽曰：“誠慘忍。玉食豈下咽乎?” 命捧秋牟還四分之一，春牟還五分之一。加分還穀一萬石，以</p>

<p>기민을 불러 보고, 곡식 1만 석으로 경기와 삼남의 백성을 구제하게 하다</p>	<p>하고, 추모환(秋牟還) 중에서 4분의 1을, 춘모환(春牟還) 중에서 5분의 1을 받아들이도록 명하였다. 거기에다 환곡(還穀) 1만 석(石)을 나누어 주어 경기(京畿)의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으며, 또 삼남(三南)에도 일체(一體)로 거행하도록 하였다.</p>	<p>救畿民，又令三南，一體舉行。</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5월 22일(경신) 3번째기사 우의정 홍봉한이 백성 구휼을 위한 곡식 1만 석의 마련에 관하여 아뢰다</p>	<p>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1만 석을 구분하여 나누어 주라는 명이 있으신데, 해서(海西)의 상정 대소미(詳定大小米) 2천 석, 관향곡 절미(官餉穀折米) 1천 5백 석, 진휼청 대소미(賑恤廳大小米) 1천 석,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각각 쌀[米] 2백 50석,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군향미(軍餉米) 1천 석, 대흥 향미(大興餉米) 5백 석을 옮겨다 조곡(糶穀)으로 지급하되, 해서의 곡식은 아마도 기한에 맞추어 운반해 오기가 어려울 듯하니, 호조(戶曹)의 콩[太] 1천 석과 진휼청의 콩 5백 석을 우선 밀어 주어 그 숫자를 채우게 하고, 그 대신 해서에서 보내오는 쌀로 도로 갚도록 하소서. 해서의 곡식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따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각기 쌀을 받아들이게 하되, 해서의 곡식과 진휼청의 쌀은 성상의 하교대로 고을에다 바치게 하여 유치(留置)해 두고 인해서 영진곡(營賑穀)으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p>	<p>右議政洪鳳漢奏曰：“有萬石區劃之命矣，海西詳定大小米二千石，管餉穀折米一千五百石，賑廳大小米一千石，禁衛營御營廳各米二百五十石，北漢餉米一千石，大興餉米五百石，移轉給糶，而海西穀，恐難及期盡來，戶曹太一千石，賑廳太五百石，爲先推移，以充其數，其代以海西米還報。而海西穀，令道臣，別定差員，待秋各納出米營邑，而海西穀與賑廳米，依聖教捧留邑，仍作營賑穀宜矣。”上從之。</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6월 13일(경진) 4번째기사 안국동 인현 왕후의 사제에 가다</p>	<p>임금이 안국동(安國洞)의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왕비의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의 사제(私第)에 나아갔는데, 승지 조영진(趙榮進)이 말하기를, “신이 어렸을 때에 신의 어미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성후(聖后)께서 기거하셨던 방을 보니 들은 것과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사년(15124) 이 갑술년(15125)에 있어서서는 바로 6년의 오랜 세월이었으나, 마치 제(帝)가 방주(房州)에 있었던 것(15126)과 같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上詣安國洞仁顯王后遜位時私第，承旨趙榮進曰：“臣兒時，聞臣母之言，今見聖后所御之室，如所聞矣。”上曰：“己巳之於甲戌，卽六年之久，而有若帝在房州。”上曰：“予於昨年，奉覽手筆，復見六年所御寢室，庶無餘憾。”命召入閔氏諸人及聖后親屬，名其室曰感古堂，以御筆，題其額，使之</p>

	<p>“내가 지난해에 〈인현 왕후의〉 수필(手筆)을 받들어 열람하고서 다시 6년 동안 거쳐하신 침실(寢室)을 보았으니, 거의 유감이 없다.”</p> <p>하고, 민씨(閔氏) 여러 사람과 성후(聖后)의 친속(親屬)을 불러 들이도록 명하고, 그 침실을 감고당(感古堂)이라고 이름을 짓고 어필(御筆)로 그 편액(扁額)을 써서 새겨서 걸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태어난 것이 마침 갑술년이었는데, 바로 성후(聖后)께서 복위(復位)되던 해였다. 이런 일 때문에 신축년(15127)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부류들은 나에게 대해 감심(甘心)해 왔다.”</p> <p>하고, 임금이 조영진(趙榮進)을 특별히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제배하도록 명하고 여러 사람에게는 모두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으며, 고 현감(縣監) 민진영(閔鎭永)의 처(妻)에게는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내려 주게 하였다. 지나는 길에 육상궁(毓祥宮)에 전배(展拜)하였는데, 길가에 있는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 집안의 정문(旌門)을 보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p> <p>사신(史臣)은 말한다. “조영진은 성후(聖后)의 가까운 족속(族屬)으로 그 고사(故事)를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앞장서서 인도하며 어느 방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성후가 거쳐한 곳이라고 말하였는데, 대개 민씨 집안에서 전해지는 말을 들으면 조영진이 가리키며 인도한 것과는 일체 서로 반대가 된다. 인신(人臣)이 임금에게 아뢰에 있어 감히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감히 그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구덩이로 빠져드는 것을 달갑게 여기니, 비록 이것으로 연유하여 높은 직질(職秩)에 발탁되고 임금의 은총을 견고하게 하기는 하였지만, 그 한 세대에서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유독 부끄럽지 않은가?”</p>	<p>鑄揭。 上曰：“予之誕降，適在甲戌，乃聖后復位之歲也。 以此之故，自辛丑至于今日，而一種之類，尤於予甘心矣。” 上命趙榮進特除漢城右尹，諸人皆賜賚有差，故縣監閔鎭永妻，賜以衣資食物。 歷拜毓祥宮，路傍見忠愍公李鳳祥家旌門，命遣禮官致祭。</p> <p>【史臣曰：“趙榮進，以聖后近屬，謂以知其故事，自爲先導，指某室曰。此乃聖后之所御，而蓋聞閔氏傳家之言，則與榮進指導者，一切相反。 人臣告君，不敢虛謾爲辭，而乃敢強其不知，甘自陷於誣罔之科，雖由是擢華秩固寵靈，其於一世之嗤點，獨不愧乎？”】</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p>	<p>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도승지로 하여금 어제 상(賞)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하고, 이어서 음식물을 내려 주게 하였다. 우의정 홍봉한</p>	<p>上御景賢堂，使都承旨，率入昨日受賞人，仍賜饌。 右議政洪鳳漢，以王世</p>



<p>(乾隆) 26년) 6월 14일(신사) 3번째기사 어제 상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 음식물을 하사하다</p>	<p>(洪鳳漢)이, 왕세자가 감기가 들었다고 하여 조정에서 기거(起居)하는 절차를 앙품(仰稟)하니, 임금의 그대로 허락하였다.</p>	<p>子感候，仰稟朝廷起居之節，上許之。</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6월 19일(병술) 6번째기사 약방 제조가 진후하다</p>	<p>약방 제조(藥房提調)가 여러 의원(醫員)을 거느리고 삼시(三時)로 진후(診候)하였는데, 탕제(湯劑)를 오늘부터는 세 차례 달이도록 하고, 제조 한 명이 직숙(直宿)하게 하였다. 각사(各司)에서는 전례대로 개좌(開坐)하되 가을 보리[秋牟]와 새끼 꿩[兒雉]과 송이(松茸) 등의 물품은 대령(待令)하지 말도록 하여 기민(飢民)들의 폐단을 없애게 하고, 이 뜻을 또한 팔도(八道)에 반포하도록 하였다.</p>	<p>藥房提調率諸醫，三時診候，湯劑自今日三煎，提調一員直宿。各司依例開坐，秋牟兒雉松茸等物，勿爲待令，以除飢民之弊，此意亦令頒布於八道。</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6월 20일(정해) 5번째기사 유신을 불러 《전한사》를 강독하게 하다</p>	<p>유신(儒臣)을 명소(命召)하여 《전한사(前漢史)》를 강독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양(張良)이 비록 지모(智謀)가 있다 하더라도 사호(四皓)의 일을 만들어 낸 것(15135)과 같이 그 임금을 속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도리이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한나라 문제(文帝)가 밤에 송창(宋昌)을 제배한 것(15136)은 오히려 진평(陳平)과 주발(周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서인데(15137), 이미 제위(帝位)에 오른 뒤에 무슨 의심할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어제 차대(次對)하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참았었는데, 만약 아프다는 소리를 내게 되면 여러 신하들이 반드시 놀랄 것이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다.” 하고, 파를 붙여서 병구완하는 것[蔥慰]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p>	<p>命召儒臣，讀《前漢史》。上曰：“張良雖有謀，若做出四皓，以謾其君，是豈臣道耶？”又曰：“文帝夜拜宋昌，猶未信平。勃故也，既立之後，又何有可疑乎？”又曰：“昨日次對，予甚耐過，若出痛聲，諸臣必驚，故忍之矣。”命止蔥慰。</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藥房)에서 삼시(三時)로 진후(診候)하고 연달아 탕제(湯劑)를 올렸다.</p>	<p>庚寅/上御思賢閣，藥房三時診候，連進湯劑。</p>

<p>(乾隆) 26년) 6월 23일(경인) 1번째기사 약방에서 진찰하고 탕제를 올리다</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6월 24일(신묘) 3번째기사 이조 판서 김상복에게 대간으로 통의한 임의 중·박대유에 대하여 묻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藥房)에서 삼시(三時)로 진후(進候)하고 연달아 탕제(湯劑)를 올렸다. (하략)</p>	<p>上御思賢閣，藥房三時進候，連進湯劑。(하략)</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6월 25일(임진) 1번째기사 이창의를 병조 판서로 삼다. 백성의 구휼에 관하여 명하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藥房)에서 삼시(三時)로 진후(診候)하고 연달아 탕제(湯劑)를 올렸다. 이창의(李昌誼)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임금이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고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도록 권면하고, 또 비국(備局)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경기(京畿) 백성들의 곤궁한 상황을 들으니, 마음이 몹시 슬프다. 그래서 충주(忠州)의 저치미(儲置米) 5백 석(石), 양진창 미(楊津倉米) 5백 석, 강도미(江都米) 5백 석, 남한 산성 미(南漢山城米) 5백 석을 특별히 더 지급하게 하고 그 구역을 넓거나 좁게 나누는 것은 대신과 도신(道臣)이 이미 하고(下教)를 받았으니, 이것을 즉시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장문(狀聞)한 것을 가지고 진곡(賑穀) 2천 석을 더 획급(劃給)하기를 양청(仰請)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 건너 있는 지역에 만약 흑시라도 부족하면 비록 후회한들 어떻게 미치겠는가? 2천 4백 석을 즉시 배로 운반하도록 하되, 신중히 하여 시기를 넘기</p>	<p>壬辰/上御思賢閣，藥房三時診候，連進湯劑。以李昌誼爲兵曹判書。上召見守令，勉以竭誠爲治，又命備局有司堂上入侍。上曰：“今聞畿民困窮之狀，心甚慘惻。忠州儲置米五百石，楊津倉米五百石，江都米五百石，南漢米五百石，特爲加給，其所區劃闊狹，大臣道臣既承下教，以此卽爲分付。”右議政洪鳳漢，以濟州牧使狀聞，仰請賑穀加劃二千石，上曰：“越海之地，若或不足，雖悔何及？以二千四百石，卽令船運，慎勿過時。”鳳漢以黃海監司狀聞，金川等六邑春秋牟一并停退，待秋作租事仰請，上從之。鳳漢請以</p>

	<p>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 홍봉한이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장문(狀聞)을 가지고 금천(金川) 등 여섯 고을의 봄보리와 가을보리를 한결같이 정퇴(停退)하게 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벼로 환산하게 하는 일을 양청(仰請)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홍봉한이 2천 냥(兩)을 오흥 국구(鰲興國舅)15143)의 제택(第宅)에 더 도와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二千兩添助鰲興國舅第宅，上許之。</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6월 26 일(계사) 2번째기사 약방에서 진후하고 탕 제를 올리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藥房)에서 아침 저녁으로 진후(診候)하고 탕제(湯劑)를 올렸다.</p>	<p>上御思賢閣，藥房朝夕診候，進湯劑。</p>
<p>영조 97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6월 27 일(갑오) 2번째기사 약방에서 진후하고 탕 제를 올리다</p>	<p>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진후하고 두 차례 탕제를 올렸다.</p>	<p>上，御思賢閣，藥房朝夕診候，再進湯劑。</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4일 (경자) 2번째기사 약방에서 진찰하고 탕 제를 올리다</p>	<p>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진찰하고 탕제를 올렸다.</p>	<p>上御思賢閣，藥房診候，進湯劑。</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진찰하고 탕제 드실 것을 청하니, 임금이 세 번 맛보고 얻어버렸다. 여러 신하가 굳이 청하니,</p>	<p>上御思賢閣，藥房朝夕診候，請進湯劑，上三嘗而覆之。諸臣固請，上曰：</p>

<p>(乾隆) 26년) 7월 6일 (임인) 2번째기사 약방에서 진찰하고 탕제를 청함에 불허하다</p>	<p>임금이 말하기를, “향소(享所)에 참여하지 않고 누워서 약을 먹는 것이 어찌 인자(人子)의 도리이겠는가?”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유신(儒臣)을 불러 《봉주강감(鳳洲綱鑑)》을 읽게 하였다.</p>	<p>“不參享所， 偃臥服藥， 豈人子之道乎?” 終不許。 召儒臣， 讀《鳳洲綱鑑》。</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7월 7일 (계묘) 3번째기사 약방에서 진찰하고 탕제를 올리다. 종묘 제사에 정성을 다하도록 명하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진찰하고 탕제를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堯)·순(舜)의 도는 효·제(孝悌)일 뿐이다. 내가 옛날에 효·제를 능히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비록 뒤쫓아 하려고 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조금이나마 작은 정성을 펴는 것은 오직 사전(祀典)에 있는데, 봄과 여름이 이미 지나고 초가을이 거의 반이나 되었는데도 한번도 몸소 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효라 하겠는가? 그 비록 섭행(攝行)하라고 명하였으나 마음은 단문(丹門)15152)에 걸려있다. 이번에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는 반드시 나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난도(鑿刀)15153)로 모혈(毛血)을 취하고 여러 축사(祝史)가 솥을 받들어 올리는 것도 또한 친히 제사를 지내는 예(例)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닌가? 대종백(大宗伯)이 희생(犧牲)을 살피고 소종백(小宗伯)이 제기(祭器)를 살펴보는 것은 예가 지극한 것인데 형식에 지나지 않게 하고 있다. 서계(誓戒)15154)의 글은 귀로 비록 듣고도 마음으로 능히 행하지 못하니, 이와 같이하면 비록 종고(鍾鼓)를 아뢰더라도 어찌 강림함이 있겠으며 비록 옥帛(玉帛)을 드리더라도 어찌 흠향하기를 바라겠는가? 또한 내가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은 마음을 본받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lt;이 말을&gt; 본서(本署)의 향대청(香大廳)에 써 붙이고 각기 스스로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p>	<p>上御思賢閣， 藥房朝夕診候， 進湯劑。 上曰：“堯。 舜之道， 孝悌而已。 余則於昔， 孝未能悌未盡， 今雖欲追， 其何及乎? 少伸微忱， 惟在祀典， 春夏已過， 孟秋將半， 一未躬行， 是曰孝乎? 其雖命攝， 心懸丹門。 今番獻官諸執事， 必體余心， 尤爲致誠。 鑿刀取毛血， 諸祝史舉鼎， 亦依親祭例行之否? 大宗伯之省牲， 小宗伯之省器， 禮則至矣， 而不過文具。 誓戒之文， 耳雖聽， 心不能行， 若此， 雖奏鍾鼓， 有何來假， 雖獻玉帛， 何望其歆。 亦體予如不祭之心， 少勿放忽。 書于本署香大廳， 令各自勉。”</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진찰하고 탕제를 올렸다. 유신(儒臣)을 불러 《봉주강감》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홍봉</p>	<p>乙巳/上御思賢閣， 藥房朝夕診候， 進湯劑。 召儒臣， 命讀《鳳洲綱鑑》。</p>

<p>(乾隆) 26년) 7월 9일 (을사) 1번째기사 우의정 홍봉한이 왕세자 병환의 회복으로 약방에 상전을 내리도록 청하다</p>	<p>한이 왕세자의 환후(患候)가 점점 쾌차하여 가자 기축년(1515)의 규례에 의하여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에게 상전(賞典)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서계(書啓)를 들여보내라고 명하였다.</p>	<p>右議政洪鳳漢， 以王世子患候漸臻差復， 依己丑年例， 藥院諸臣， 請施賞典， 上命入書啓。</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11일(정미) 1번째기사 진휼청에서 제주에 내보낸 양대·감곽의 치폐로 탕감을 청하다</p>	<p>진휼청에서 상달하기를, “제주(濟州)에서 내보낸 양대(涼臺)와 감곽(甘藿)이 대양(大洋)에서 치패(致敗)되었으니 법전에 의하여 탕감하소서.” 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p>	<p>丁未/賑恤廳達曰： “濟州出送涼臺甘藿， 大洋致敗， 依法典蕩減。” 令曰：“依。”</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12일(무신) 1번째기사 약방에 시상하다. 홍봉한이 경흥 개시에 관하여 아뢰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진찰하고 탕제는 오늘부터 한첩만을 올린다고 하였다. 숙직을 파하여 도제조 이하에게 모두 시상(施賞)하고 정시(庭試) 일체를 합하여 설행하며 망제(望祭)에 겸하여 고묘(告廟)를 행할 것을 명하였다.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이달 15일에 함께 경축(慶祝)하는 뜻으로 8도와 양도(兩都)에 하유(下諭)하고 16일에는 대신과 의금부와 형조당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옛 규례를 따라 방면할 만한 자를 서계(書啓)하게 하였다. 우의정 홍봉한이 함경 감사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우러러 진달하기를, “경흥 개시(慶興開市)에 관하여 본부(本府)로 하여금 대동포(大同布)는 다른 예에 의하여 이식(利殖)을 취하고 그 남은 이자를 더 획급(劃給)하여 우가(牛價)의 부족한 숫자를 보충하게 하고 삼아문(三衙門)의 정곡(正穀) 80석을 획급하여 백성에게 거두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p>	<p>戊申/上御思賢閣， 藥房診候， 湯劑自今進一貼。 命罷直宿， 都提調以下， 并施賞， 庭試一體合設， 望祭兼行告廟。 令政院， 今十五日以同慶之意， 下諭八道兩都， 十六日， 大臣金吾秋堂， 會于賓廳， 遵舊例， 可放者書啓。 右議政洪鳳漢， 以咸鏡監司狀本仰陳：“慶興開市， 令本府大同布， 依他例取殖， 其剩加劃， 作牛價不足之數， 劃給三衙門正穀八十石， 以除斂民之弊。” 上從之。</p>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13 일(기유) 1번째기사 소조의 평복으로 약방 에 상전을 베푼다	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진찰하고 탕제를 올렸다. 소조(小朝)께서 평복(平復)된 경사로 인하여 분제조(分提調) 이하에게 모두 상전(賞典)을 베풀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 약원 숙직은 10일이 차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무릇 제반 일을 모두 기축년(15160) 구례(舊例)를 좇아 외람되고 잔단 데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己酉/上御思賢閣, 藥房診候, 進湯劑。 以小朝平復之慶, 分提調以下并施賞典。 上曰: “此後院直, 未滿十日, 凡諸等事, 并遵己丑舊例, 毋至濫厝。”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15 일(신해) 2번째기사 약방에서 진찰하다	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진찰하고 오늘부터는 탕제를 다려서 드리며 문후(問候)는 3일을 일차(日次)로 삼는다고 하였다.	御思賢閣, 藥房診候, 自今日湯劑煎入, 問候以三日爲日次。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18 일(갑인) 1번째기사 향을 지영하다. 여염집 탈입을 금하다. 제주인 을 불러 보고 위로하다	임금이 승현문에 나아가 향(香)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헌관(獻官) 이익보(李益輔)가 향축(香祝)을 받들어 모시는 데 조금도 정성스러운 뜻이 없으므로 파직하라고 명하고 약방 제조 김상복(金相福)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어서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주장하여 《대학(大學)》을 강하였다. 오부 관원(五部官員)을 입시(入侍)하라고 명하고 여염집을 탈입(奪入)한 것을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찾아내어 아뢰게 하였다. 제주도(濟州島) 사람을 불러 들어서 진홀청으로 하여금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주게 하고, 하교하기를, “경자년(15161) 에 능침(陵寢)을 역사할 때 저 섬 백성들이 지성으로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자성(慈聖)께서 또한 상을 내려 주셨으니, 내가 주는 것도 또한 옛날 일에 감동한 뜻이다.” 하였다.	甲寅/上御崇賢門, 行香祇迎禮。 獻官李益輔奉陪香祝, 少無虔誠之意, 命罷職, 以藥房提調金相福代之。 仍御景賢堂, 晝講《大學》。 命五部官員入侍, 申飭閭家奪入, 使之搜訪以奏, 召入濟州人, 令賑廳, 衣資食物題給, 教曰: “庚子陵役時, 彼島民至誠効力, 故慈聖亦給賞賜, 予之題給, 亦感舊之意也。”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20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망묘례(望廟禮)를 행하였는데, 전(殿) 안에 들어와 제기(祭器)를 살피고 전 밖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폈다. 그런데 하나의 희생이 체구가 작다는 것으로 봉진(封進)한 목사(牧使)를 해부로 하여금 처치	丙辰/上詣太廟, 行望廟禮, 入殿省器, 出殿省牲。 以一犧牲體小, 封進牧使, 令該府處之, 該署提調罷職, 陪進郎

<p>일(병진) 1번째기사 태묘에 나아가 망묘례 를 행하고, 불참인을 파직하다</p>	<p>하게 하고 해서(該署) 제조(提調)는 파직하며, 배진(陪進)한 낭청(郎廳)은 일이 지난 뒤에 해부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였다. 조신(朝臣)으로서 관직이 1품(品) 에 있으면서 조복(朝服)을 입지 않은 자와 경재(卿宰)로서 실직(實職)에 있으 면서 배반(陪班)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모두 파직을 명하였다.</p>	<p>廳，事過後令該府處之。 朝臣職在一 品，不着朝服者，及卿宰有實職不參陪 班者，并命罷職。</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24 일(경신) 3번째기사 부제학 서명응이 묘당 관계 일을 위곡하게 말한 장령 신근을 탄 핵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장령 신근(申晞)이 북영(北營)에서 각 읍(各邑)으로 하여금 해물(海物)을 무역하여 바치게 한 일로써 묘당(廟堂)에 하순(下詢)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니, 부제학 서명응(徐命膺)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견이 있으면 일에 따라 곧바로 청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에 묘 당에 하순하라는 것으로써 위곡(委曲)하게 말을 하였으니, 대간의 체모에 손 상됨이 있습니다. 청컨대 중추(重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과 관계되는 바 때문에 이런 청이 있었던 것인데, 부제학의 말은 지나치 다.” 하였다. 서명응이 말하기를, “신이 말씀 드린 바는 체통이나 규례에 대한 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성상의 하교는 언로(言路)를 부식(扶植)하는 데 두셨으니, 신이 마땅히 지나치다고 함 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한 바가 옳다.” 하였다.</p>	<p>上引見大臣備堂。 掌令申晞，以北營 之使各邑貿納海物事， 請下詢廟堂處 之， 副提學徐命膺曰：“苟有意見， 隨 事直請可也， 而乃以下詢廟堂， 委曲爲 說， 有損臺體。 請重推。” 上曰：“廟 堂所關， 故有此請， 副學之言過矣。” 命膺曰：“臣所言不過體例問事， 而聖 教則在扶植言路， 臣當受以爲過矣。” 上曰：“所陳是矣。”</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7월 25 일(신유) 2번째기사 헌부에서 금천 현감 이사국을 거듭 탄핵하</p>	<p>헌부(憲府) 【장령 신근(申晞)이다.】에서 전달(前達)을 거듭 상달하였으나, 따 르지 않았다. 또 상달하기를, “금천 현감(衿川縣監) 이사국(李思國)은 오디[桑葢]를 민호(民戶)에서 나누어 받아들였으니 진실로 이미 해괴한 데에다가 진흙미를 획급(劃給)하면서 직접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하리(下吏)에게 위임하여 나누어주게 하여 원성이 길에 뒤덮혀 있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p>	<p>憲府 【掌令申晞。】申前達， 不從。 又達：“衿川縣監李思國， 分捧桑葢於 民戶， 固已可駭， 而劃給賑米， 不爲親 檢， 專委下吏而分俵， 怨聲載路， 請罷 職不敘。” 上曰：“爲先令該府拿問口 招。” 上以三司之緘默， 司諫李壽德遞</p>

<p>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여 공초(供招)하게 하라.”  하고, 임금이 삼사(三司)의 함구 묵언(緘口默言)한 것으로써 사간 이수덕(李壽德)을 체차(遞差)하고, 부제학 서명응(徐命膺)은 추고(推考)하며, 시장원(侍講院)·강서원(講書院)의 주서 겸춘추관은 죄다 일산(日傘)을 펼친 것으로써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였다</p>	<p>差, 副提學徐命膺推考, 侍講院講書院注書兼春秋, 皆以張傘, 并命罷職。</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7월 28일(갑자) 1번째기사  영암 등지에 해일, 삼화 등지에 우박의 재해가 발생하다</p>	<p>영암(靈巖) 등 고을에 해일(海溢)과 벌레와 게[蟹]가 재해를 입혔으며, 삼화(三和) 등 고을에는 우박이 내렸다.</p>	<p>甲子/靈巖等邑, 海溢蟲蟹爲災, 三和等邑雨雹。</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7월 29일(을축) 2번째기사  우의정 홍봉한이 생복의 복정을 청함에 불허하다</p>	<p>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우의정 홍봉한이 생복(生鰓)에 대해 복정(卜定)15168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민폐(民弊)가 있다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한 마리의 말에 실는 것이 무슨 민폐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건복(半乾鰓)을 규례에 의하여 진상(進上)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황해 감사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수사 심의회(沈義希)를 파직하였으니, 그가 요망장(瞭望將)을 검칙(檢飭)하지 못한 죄 때문이었다. 복도 어사 김중정(金鍾正)이 균역청 당상 홍계희(洪啓禧)와 더불어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이정(釐正)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안악 군수(安岳郡守) 이관상(李觀祥)이 일찍이 수사를 지낸 것은 사체(事體)가 무엇한 것 같다는 것으로써 특별히 체개(遞改)할 것을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세자(世子)와 중자(衆子)의 봉작(封爵)은 적서(嫡庶)를 물론하고 취부(就</p>	<p>上御景賢堂, 藥房入診。 右議政洪鳳漢, 請生鰓卜定, 上以有民弊, 不許。 鳳漢曰: “一馬所馱, 有何民弊乎?” 上曰: “半乾鰓, 依例進上可也。” 因黃海監司狀聞, 水使沈義希罷職, 以其不能檢飭瞭望將之罪也。 命北道御史金鍾正, 與均堂洪啓禧, 商確釐正節目。 上以安岳郡守李觀祥, 曾經水使, 事面似如何, 特命遞改。 教曰: “世子衆子封爵, 勿論嫡庶, 命以就傅年爲限。”</p>



	傳)15169) 하는 나이로 한정을 삼으라.” 하였다.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8월 28 일(갑오) 1번째기사 금리를 구타하고 능침 을 범하였다고 무고한 천광복을 정의현에 정 배하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전배(展拜)하고, 이어서 태복시(太僕寺) 에 나아가 천광복(千光福)을 국문하여 정의현(旌義縣)에 정배(定配)하였다. 천 광복의 집이 명릉(明陵) 봉현(蜂峴) 밖 산기슭에 있는데, 그 이웃 사람이 양주 (釀酒)를 범한 자가 있어 금리(禁吏)에게 잡히게 되었다. 이에 천광복이 금리 를 구타하여 그 이웃 사람을 피신(避身)하게 하고는 그 금리의 폐사(斃死)를 염려하여 금리가 봉현 막중한 곳으로 길을 경유하였다고 능관(陵官)에게 무고 (誣告)하여 다시 예조에 보고하게 하고 이어서 또 격고(擊鼓)하였다. 임금께서 능침을 범하였다는 말씀으로써 진전(眞殿)에 구주(口奏)하고 친히 국문하여 유배하라는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다.	甲午/上, 詣昌德宮, 展拜眞殿, 仍御太僕, 鞫千光福, 配旌義縣。光福家在明陵蜂峴外麓, 其隣人有犯釀者, 被執於禁吏。光福毆打禁吏, 以脫其隣人, 而慮其吏之斃也, 謂以禁吏路由蜂峴莫重之地誣告, 陵官轉報禮曹, 仍又擊鼓。上以語犯陵寢, 口奏于眞殿, 至有親問流配之舉。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9월 17 일(임자) 1번째기사 구일제를 행하다. 세손 에게 제목의 뜻을 묻 다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고 여곽(藜藿)을 먹 으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쌀을 지고 온 것을 부(賦)의 제목으로 삼고 임금이 세손에게 이르기를, “부(賦) 제목의 뜻을 너는 모름지기 말하라.”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자로(子路)15206) 는 가난하여 봉양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여곽(藜藿)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능히 쌀을 져다가 아버지를 봉양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너는 반드시 오늘의 질문한 것을 생각하라.” 하였다.	壬子/上御金商門, 設九日製, 以欲食藜藿, 爲親負米爲賦題, 上謂世孫曰: “賦題之義, 汝須言之。”世孫曰: “子路貧無養, 故雖食藜藿, 猶能負米。”上曰: “後日汝須思今日問也。”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9월 17 일(임자) 2번째기사 과차를 정하고 음식물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 시관(試官)이 입시하자 과차(科次)를 정하 고, 여러 신하들에게 찬(饌)을 하사하였다.	上御景賢堂。試官入侍科次, 賜饌諸臣。

<p>을 하사하다</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9월 29일(갑자) 4번째기사 왕세자가 약방의 진찰을 거절하다. 홍봉한 등이 복선과 환내를 청하다</p>	<p>약방에서 동궁에 청대(請對)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어떻게 진찰할 것을 허락하겠는가?”  하였다. 홍봉한이 2품(品) 이상을 데리고 동궁에게 청대하여 복선(復膳)과 환내(還內)할 것을 청하니, 하령(下令)하기를,  “철선(撤膳)과 노좌(露坐)로서는 오히려 옛날의 잘못을 스스로 속죄(贖罪)하기에 부족하다. 아무리 사부(師傅)의 청원이라도 결단코 따를 수가 없다.”  하였는데, 여러 신하가 힘써 청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저하(邸下)께서 이런 거조를 하신다면 어찌 대조(大朝)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하령하기를,  “지금 ‘대조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豈不貽憂於大朝]’라고 한네 글자의 말[貽憂大朝]을 들으니 더욱 황송함을 깨닫겠다. 마땅히 영항(永巷)15212)에서 대죄(待罪)하고 오늘부터는 감선하는 것으로 거행하겠다.”  하였다.</p>	<p>藥房請對於東宮， 令曰：“當此之時， 何可許診？” 洪鳳漢率二品以上， 請對於東宮， 請復膳還內， 令曰：“撤膳露坐， 猶不足自贖舊愆。 雖師傅之請， 決不可從。” 諸臣力請， 鳳漢曰：“邸下此舉， 豈不貽憂於大朝乎？” 令曰：“今聞貽憂四字， 尤覺惶悚， 當待罪永巷， 而自今日以減膳舉行。”</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10월 2일(정묘) 2번째기사 영의정 홍봉한이 왕세자의 일에 관하여 아뢰다</p>	<p>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소조(小朝)께서 노좌(露坐)·철선(輟膳)하던 것을 비록 바꾸어 감선(減膳)으로 하였으나 신 등이 초조하고 민박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정성이 감히 잠시도 늦추어지지 않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 등의 사람답게 되는 방도를 지시(指示)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단문(丹門)15214)에 들어가기 전에 문득 방편(方便)의 명을 내린다면 선왕께서 반드시 굽어보실 것이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겠는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선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지낸 뒤에 신 등이 마땅히 다시 소조(小朝)에게 우러러 청해야 하겠습니까?”</p>	<p>上御景賢堂， 藥房入診。 領議政洪鳳漢曰：“小朝露坐輟膳， 雖變爲減膳， 而臣等焦迫罔措之忱， 不敢暫弛。 伏願殿下， 指示臣等爲人之道。” 上曰：“予於未入丹門之前， 遽有方便之命， 則陟降必俯視矣， 予豈爲此乎？” 鳳漢曰：“然則姑俟大享後， 臣等當復仰請於小朝乎？” 上許之。</p>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0월 3 일(무진) 3번째기사 태묘와 영녕전에 나아 가 제기와 희생을 살 피다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단문(丹門) 밖에서 부복하여 구주(口奏)하고 드디 어 도보(徒步)로 들어가서 면복(冕服)을 갖추고 봉심한 뒤에 제기(祭器)를 살 펴보고 이어서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처음의 예와 같이 하였다. 단상(壇上) 에 서서 희생(犧牲)을 살펴보았는데 양(羊) 한 마리가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자 해서(該署)의 제조(提調)를 중추(重推)하라고 명하였다.	上詣太廟，俯伏丹門外口奏，遂徒步以 入，具冕服奉審後省器，仍詣永寧殿如 初禮。立于壇上省牲，有一羊不齊， 命重推該署提調。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0월 10 일(을해) 3번째기사 약방에서 진후하고 탕 제를 올리다	임금이 복부(腹部)에서 치밀어 오르는 증세(症勢)로서 약방에서 의관(醫官)을 데리고 3차(次) 진후(診候)하고 탕제(湯劑)를 올리니, 또 곽향정기산(藿香正氣 散)을 달여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上以腹部上升之氣，藥房率醫官，三次 診候，進湯劑，又命煎進藿香正氣散。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0월 11 일(병자)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흥 봉환이 도당록·흥문록 등에 관하여 아뢰다	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의관(醫官)을 데리고 3차 입진 (入診)하고 잇따라 탕제를 올렸다(후략)	丙子/上御思賢閣，藥房率醫官，三次 入診，連進湯劑。(후략)
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1월 2 일(병신) 1번째기사 유신에게 명하여 《중 요, 천도(天道)로써 말하건대, 건도(乾道)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性命)을 바로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유신(儒臣)에 게 명하여 주강(晝講)하여 《중용(中庸)》을 강하게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인배(李仁培)가 말하기를, “충(忠)과 서(恕)가 도(道)에 어김이 멀지 않다는 것은 학자(學者)의 충과 서 요, 천도(天道)로써 말하건대, 건도(乾道)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性命)을 바로	丙申/上御景賢堂，藥房入診。命儒 臣，晝講《中庸》。侍讀官李仁培曰： “忠恕違道不遠，學者之忠恕，以天道 言之，乾道變化，各正性命，聖人之忠 恕也。”上曰：“於穆不已，聖人之忠

<p>용》을 강하다. 영의정 홍봉한이 삼값에 관하여 아뢰다</p>	<p>잡는 것은 성인(聖人)의 충과 서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 심원(深遠)하여 마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의 충과 서이다.”  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평안 감사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양진(仰陳)하기를,  “금년에 마땅히 사야 할 85근(斤)의 삼가(蔘價)에 대해 다시 9천 5백 20냥(兩)을 더 계획하여 고르게 배정(排定)해서 첨급(添給)하고, 명년에는 마땅히 전과 같이 거행할 것입니다. 미삼(尾蔘)에 있어서는 원래 정해진 매 근(每斤)마다 70냥의 값이 이미 적지 않으며, 전에 체삼(體蔘) 값 가운데 본도(本道)에서 가감(加減)하려는 뜻에 분부한 바가 있고 이제 또 이렇게 더 첨급한 것이 있으니 더욱 논할 것이 없습니다. 또 북도(北道)에 분정(分定)한 삼은 바로 이 관서(關西)에서 옮겨 사온 것으로 금년에 마땅히 15근을 사올 값을 관서의 값 원수(元數) 가운데 본도에서 마련한 데 의하여 우선 수송(輸送)해야 하겠습니까.”  하였고, 우의정 윤동도(尹東度)가 말하기를,  “사신이 이미 삼 무역을 물려서 양년(兩年)에 나누어 하게 되었으니, 일시에 모두 첨가(添價)를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더 계획한 가운데에서 먼저 금년에 마땅히 사야 할 수효를 조치하여 주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우선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홍봉한이 조돈지(趙墩之)를 외방에 보직(補職)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는 것으로써 우러러 진달하니, 임금이 내직으로 옮기라고 명하였다.</p>	<p>怨也。” 領議政洪鳳漢以平安監司狀本仰陳。” 今年當買八十五斤蔘價，則更以九千五百二十兩加劃，以爲均排添給，明年則當依前舉行。 至若尾蔘則元定每斤七十兩之價，已自不小，前以體蔘價中，自本道闊狹之意，有所分付，今又有此添給，則尤無可論，且北道分定之蔘，乃是自關西移買者，今年當買十五斤價，以關西價元數中，依本道磨鍊，爲先輸送焉。” 右議政尹東度曰：“信使既退蔘買，分兩年爲之，則不必一時并許添價。 就已添劃中，先令措備今年當買之數，其餘姑待明秋，更爲商量處之宜矣。” 上從之。 鳳漢以趙墩之外補已久仰陳，上命內移。</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11월 19</p>	<p>하교하기를,  “각도(各道)에서 물선(物膳) 공상(供上)은 분등(分等)의 제도가 있는데, 탐라(耽羅)의 감유(柑柚) 공상은 이제 들은즉 세손궁(世孫宮)에도 있다고 하니, 이</p>	<p>教曰：“各道物膳供上，分等有制，而耽羅柑柚供上，今聞世孫宮有之，此後勿爲供上，永爲定式。”</p>

<p>일(계축) 2번째기사 탐라의 감유 공상에 관하여 하교하다</p>	<p>뒤로는 공상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히 정식(定式)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1월 20 일(갑인) 1번째기사 영의정 홍봉한이 호서 의 생복을 공물로 정 할 것을 청하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호서(湖西)에 생복(生鰯)을 복정(卜定)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어공(御供)은 또한 백성의 폐단이 되고 또 산 물건을 차마 진어(進御)하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는 백성의 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저치미(儲置米)를 탕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간략하게 봉진(封進)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의대(衣櫛)가 두텁지 않은 듯하니, 아마도 조섭(調攝)하는 도리에 손상이 있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배양(培養)하기를 이와 같이 했으니, 만약 두터우면 기거(起居)하는 즘에 불편하다.” 하였다.</p>	<p>甲寅/上御思賢閣，藥房入診。領議政洪鳳漢，請卜定湖西生鰯，上曰：“此等御供，亦爲民弊，且活物不忍進御。”鳳漢曰：“此非民弊，乃儲置米蕩減者。”上曰：“然則略略封進。”鳳漢曰：“衣櫛似不厚，恐有損於調攝之道。”上曰：“予則培養如此，若厚則不便於起居之際。”</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 (乾隆) 26년) 12월 29 일(계사) 1번째기사 공물 곶이 올라와 진 전 등에 배알하다</p>	<p>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영의정 홍봉한에게 명하기를, “공물(貢物)의 곶이 마침 올라왔다. 처음에는 세초(歲初)에 진알(展謁)하려 생각하였는데, 만약 곧 거행하지 못하면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대신 아뢰려고 하였다. 만약 3일이 지나도록 이 곶을 드리지 않는다면 아들 된 도리가 아니니, 내가 친히 가서 진전(眞殿)에 과일을 드려야 하겠다. 그런데 만약 세손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세손을 보기 위하여 가려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는 것이니, 경은 마땅히 대신 가서 안후(安候)를 살펴보고 오</p>	<p>癸巳/上詣昌德宮，命領議政洪鳳漢曰：“貢橘適來，初意歲初展謁，若未卽行，欲令中官替奏，而如過三日，不薦此橘，非子道也，予爲親往薦果于眞殿，而若見世孫，人必謂予爲世孫而去，故予則不見，卿當替往審候而來。”仍動駕，拜眞殿，仍詣毓祥宮，使承旨往審</p>

	<p>라.”</p> <p>하였다. 이어서 동가(動駕)하여 진전에 배알하고, 이어서 옥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승지로 하여금 경복전(景福殿)에 가서 봉심(奉審)하게 하였다. 경현당(景賢堂) 월대(月臺)에 나아가 승지에게 세모(歲暮)에 대한 탄회(歎懷)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p> <p>“한 해가 이미 다 가고 내 나이가 이미 늙어만 간다. 세상에서 아버이를 모신 자는 제석(除夕)과 원조(元朝)에 아버이를 받들고 즐거워 하건만 나는 인간 세상에 한 궁인(窮人)이라. 용루(龍樓)15286)에서 기쁨을 받든 것이 이미 꿈을 이루었네. 조금이나마 작은 정성을 펴는 것은 오직 전례(展禮)에 있다. 탐라(耽羅)에서 바친 두 가지 과일이 마침 도착하였도다. 이는 옛날 씨를 주어 탐라 공인(貢人)에게 심으라고 명하였는데, 금년에 마침 도착하였다. 일찍 동가(動駕)를 서둘러 진전에 배알하고 과일을 천신(薦新)했노라. 비록 정례(情禮)는 폄으나 어찌 옛날과 같을손가? 옛날의 모습을 보려고 하나 그 쉽겠는가?”</p> <p>하였다.</p>	<p>景福殿，御景賢堂月臺，命承旨書歲暮歎曰：“歲已暮矣，年已暮矣。世之奉親者，除夕元朝，奉親而樂，予則人間一窮人，龍樓承歡，已作夢焉，少伸微忱，惟在展禮。耽羅之貢，兩果適到，卽昔年授核，命耽羅貢人植之者也，今年適到，星言夙駕，拜殿薦果，雖伸情禮，豈若昔年？欲觀昔年，其可易乎。</p>
<p>영조 98권, 37년 (1761 신사 / 청 건륭(乾隆) 26년) 12월 30일(갑오) 1번째기사</p> <p>제주의 공인을 불러 제주의 진휼에 관하여 묻다</p>	<p>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친히 향(香)을 전하였다. 제주(濟州)의 공인(貢人)을 불러서 제주의 진휼(賑恤)하는 모든 절차를 하문(下問)하고, 비국(備局)에 명하여 1천 석(石)을 더 주되 봄을 기다려 포장하여 운송(運送)하게 하였다. 승지에게 명하여 기회문(紀懷文)을 불러서 쓰게 하였으며, 진휼청으로 하여금 떠도는 거지들을 수색 탐문하여 죽을 끓여서 먹이게 하였다.</p>	<p>甲午/上御景賢堂，親傳香，召濟州貢人，下詢濟州賑恤凡節，命備局，加給一千石，待春裝運，命承旨，呼災紀懷文，令賑廳，搜問流丐，煮粥以饋。</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1월 9일 (계묘) 2번째기사</p>	<p>임금이 부로(父老)와 서민(庶民)을 불러들여 폐단을 묻고, 면식(麵食)을 내렸다. 전교하기를,</p> <p>“조참(朝參)과 대조회(大朝會)에는 마땅히 예필(禮畢)15301)이 있어야 하는데도 의례의 절목에 빠짐이 있으니, 해방(該房) 승지는 체차하고, 통례(通禮)</p>	<p>上召入父老民庶，下詢弊瘼，賜麪食。教曰：“朝參大朝會，宜有禮畢，而儀節有闕，該房承旨遞差，通禮汰去。”</p>

<p>부로와 서민을 불러 폐단을 묻다</p>	<p>는 도태시키라.” 하였다.</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10 일(갑진) 1번째기사 한익모 등이 왕세자를 권면하다</p>	<p>왕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 좌정하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윤동도(尹東度)가 감선(監膳)을 너무 늦게 했다는 것으로써 감선 부제조(監膳副提調)를 파직하기를 청하니, 하령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한익모(韓翼謨)가 양청하기를, “덕(德)을 닦고, 정사에 부지런하시어 천휴(天休)를 이어받고, 동정(動靜)과 언행(言行)은 반드시 대조(大朝)의 심법(心法)을 본받으소서.” 하고, 김양택(金陽澤)은 청하기를, “더욱 예로써 대우하고, 불러들여 초선(抄選)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니, 윤동도가 말하기를, “병조 판서의 아람이 실로 급선무입니다.” 하였다.</p>	<p>甲辰/王世子坐時敏堂， 引接大臣備堂。 右議政尹東度以監膳之太晚， 請罷監膳副提調， 令曰：“可。” 韓翼謨仰請：“修德勤政， 以承天休， 動靜云爲， 必體大朝之心法。” 金陽澤請：“益加禮待， 招致抄選。” 東度曰：“兵判所達， 實爲先務。”</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20 일(갑인) 1번째기사 복부에 산기가 왕래하는 증세가 나타나다</p>	<p>임금의 복부(腹部)에 산기(疝氣)가 왕래하는 증세가 있어 하루에 건공탕(建功湯)을 네 차례 올렸다. 이때에 임금이 이미 나이가 높은데다가 우환(憂患) 중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매양 종일 낮과 밤을 새워도 스스로 피로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징후가 있게 된 것이다.</p>	<p>甲寅/上有腸部疝氣往來之症， 一日四進建功湯。 時上春秋已高， 而憂勤不懈， 每終日達夜而不自疲焉， 故有此候。</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21 일(을묘) 1번째기사 약방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시하다</p>	<p>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의 세 제조(提調)가 탕제(湯劑)를 가지고 와서 입시하였다.</p>	<p>乙卯/上御思賢閣， 藥房三提調， 持湯劑入侍。</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22 일(병진) 1번째기사 지난 정사에서 유신으 로 대관에 제수된 자 는 다시 옥당으로 의 망하게 하다</p>	<p>임금이 사헌합에 나아가니, 약방의 세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진(入診)하였 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비록 체통이 중하지만 그래도 논사(論思)하는 관직과는 같지 않다. 전번 정사(政事)15310) 에서 유신으로 대직(臺職)에 이배(移拜)된 자는 다시 옥당(玉堂)으로 의망함이 옳다.” 하였다.</p>	<p>丙辰/上御思賢閣, 藥房三提調持湯劑 入診。 上曰: “臺臣雖體重, 而猶不若 論思之職。 前政中儒臣之移拜臺職者, 還擬玉堂可也。”</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23 일(정사) 1번째기사 약방 제조가 입진하다</p>	<p>임금이 사헌합에 나아가니, 약방의 세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진하였고, 승 지에게 문답(問答)한 것을 불러 베끼라고 명하였다.</p>	<p>丁巳/上御思賢閣, 藥房三提調持湯劑 入診, 命承旨, 呼寫問答。</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24 일(무오) 1번째기사 약방 제조가 입진하다</p>	<p>임금이 사헌합에 나아가니, 약방의 세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진하였다.</p>	<p>戊午/上御思賢閣, 藥房三提調持湯劑 入診。</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25 일(기미) 1번째기사 약방 제조가 입진하다</p>	<p>임금이 사헌합에 나아가니, 약방의 세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진하였다.</p>	<p>己未/上御思賢閣, 藥房三提調持湯劑 入診。</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월 26</p>	<p>임금이 사헌합에 나아가니, 약방의 세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진하였다.</p>	<p>庚申/上御思賢閣, 藥房三提調持湯劑 入診。</p>



<p>일(경신) 1번째기사 약방 제조가 입진하다</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2월 12 일(병자) 2번째기사 금주를 신칙하다. 모여 술을 마신 역관을 교 등 등지에 충군시키다</p>	<p>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형조 당상을 소견하여 금주(禁酒)를 신칙하였다. 회음(會飲)한 역관(譯官)을 교동(喬桐)과 영종(永宗) 등지에 충군(充軍)하라고 명하였다.</p>	<p>上御景賢堂，召見刑曹堂上，申飭酒禁。命會飲譯官，喬桐永宗等地充軍。</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3월 1일 (갑오) 2번째기사 예당을 불러 황단의 희생에 관하여 논의하 다</p>	<p>임금이 예당(禮堂)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단에는 흑생(黑牲)을 써야 한다.” 하니, 김시묵(金時默)이 말하기를,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해 보았더니, 흑우(黑牛)를 썼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황우(黃牛)를 쓰는데, 단지 우두(牛頭)와 양(羊)·시(豕)를 각 하나씩만 쓰고 있으니, 대개 하늘을 제사할 때에 특생(特牲)을 쓰는 뜻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일찍이 황단에서 육일(六佾)15338) 을 쓰는 것은 예(禮)가 아니라 고 의심해 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사(土)를 제사하는 뜻이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섭행하기를 힘써 청하는데, 황은(皇恩)에 보답하는 도리는 오직 황단에 제사하는 데에 있다. 더군다나 금년은 〈명나라 의종이 몰(歿)한〉 갑신년 15339) 〈2주갑(周甲)〉과는 1년의 간격(間隔)이 있어 내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섭행해야 되겠는가?” 하였다.</p>	<p>上召見禮堂。上曰：“皇壇用黑牲可也。”金時默曰：“考出《大明集禮》，則用黑牛矣。”上曰：“今用黃牛，而只用牛頭羊豕各一，蓋出於享天用特之意耶？予嘗疑皇壇六佾之非禮，更思之，乃祭以土之義也。”上曰：“大臣力請攝行，而皇恩報答之道，惟在於皇壇將事。況今年距甲申只一年，此心難抑，何可攝行乎？”</p>
<p>영조 99권, 38년</p>	<p>임금이 승정문(崇政門)에 나아가 향(香)을 친히 전하였다. 임금이 행소(行素)</p>	<p>辛丑/上御崇政門，親傳香。上以行</p>

<p>(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3월 8일 (신축) 1번째기사 탕제를 들지 않다. 순화방·여경방의 노인들에게 쌀과 비단을 내리다</p>	<p>하기 때문에 탕제를 들지 않았는데,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간쟁했으나 되지 않았다. 하교하기를, “불초(不肖)의 정성이 천박하여 자성(慈聖)의 성대한 덕과 선빈(先嬪)의 어진 마음을 하나도 드날리지 못하고 있으니, 효(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위에서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면 백성들이 효(孝)를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록 한 가지 일이지마는 또한 성대한 덕과 어진 마음을 본받은 것이다. 순화방(順化坊)과 여경방(餘慶坊) 사인(士人)으로 나이 60세 이상과 서민으로 나이 70세 이상인 자는 내일 마땅히 친림하여 쌀을 내리겠다. 사인(士人) 및 중서인(中庶人)으로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자 역시 비단을 내리고, 사부(士夫)의 부녀와 일찍이 실직을 지낸 사람의 처와 비록 실직은 없으나 천호(賤戶)의 처가 아닌 자는 그 자손으로 하여금 대신 받아가게 하라.” 하였다.</p>	<p>素，故不進湯劑，藥院諸臣爭之不得。教曰：“不肖誠淺，慈聖盛德，先嬪仁心，無一揄揚？可謂孝乎？人子當以親心爲心。傳曰，‘上老老而民興孝’，此雖一事，亦體盛德仁心之意。順化坊·餘慶坊士人年六十以上，庶民年七十以上，明日當親臨賜米。士人及中庶，曾經實職者，亦爲賜帛，士夫婦女曾經實職人妻，與雖無實職，非賤戶妻，令其子代受。”</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4월 16일(기묘) 2번째기사 의소묘에 거동하다. 농민에게 전지를 갈게 하고 살피다</p>	<p>임금이 의소묘(懿昭墓)에 거동하였다. 환궁할 때에 농민으로 하여금 전지(田地)를 갈게 하고, 이어서 술을 내리고 그 가는 것을 살폈다.</p>	<p>上幸懿昭墓。回鑾時，使農民耕田，仍賜酒省耕。</p>
<p>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5월 23일(병진) 2번째기사 친국을 파하다. 세자가 금천교 가에서 대명하</p>	<p>임금이 친국(親鞫)을 파한 후, 걸어서 문안청(問安廳)에 나아가 도제조(都提調) 신만(申晩)의 손을 베고 굳게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대내로 돌아가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고, 또 탕제(湯劑)를 올렸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 임금이 대내(大內)로 돌아갔다. 세자가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이르기까지 금천교(禁川橋) 가에서 대명(待命)하고, 늦은 후에야 보련(步輦)으로 창덕궁에 돌아왔다. 임금이 명하기를,</p>	<p>上親鞫罷後，步詣問安廳，枕都提調申晩之手，堅臥不起。大臣諸臣，固請還內，上不應，又進湯劑，上不服。向午後，上還大內，世子撤夜至朝，胥命于禁川橋邊，晚後以步輦還昌德宮。上命罷昌德宮前後入直騎省堂郎，以其</p>

다	“창덕궁의 전후 입직한 기성 당랑(騎省堂郎)을 과직하라.” 하였는데, 잡인의 출입을 금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不能禁雜人之出入也
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5월 28 일(신유) 2번째기사 교동 어사 홍지해를 불러 보다. 탕제 들기 를 거절하다	임금이 교동 어사(喬桐御史) 홍지해(洪趾海)를 소견하였다. 도제조 신만(申晩)과 제조 김상복(金相福)이 탕제(湯劑) 들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上召見喬桐御史洪趾海。 都提調申晩, 提調金相福, 請進湯劑, 上終不許。
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윤5월 23일(을유) 1번째기사 담체의 징후로 인하여 약원에서 유직하다	임금이 담체(痰滯)의 징후가 있어 약원(藥院)에서 유직(留直)하였다.	乙酉/上有痰滯之候, 藥院留直。
영조 99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6월 17 일(무신) 3번째기사 태묘 친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간 홍술해 가 전생 제조의 파직 을 청하다	사간 홍술해가 전생 제조(典牲提調)를 파직하기를 계청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니, 태묘(太廟) 친제(親祭) 때 염소와 양의 몸통이 작았기 때문이었다.	司諫洪述海啓請典牲提調罷職, 上從之, 以太廟親祭時, 羔羊體小也。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7월 9일	임금이 미령(靡寧)하시니, 약방(藥房)에서 여러 의원을 데리고 하루에 세 번 진찰하였다	己巳/上候違和, 藥房率諸醫, 日三診候。

<p>(기사) 1번째기사 약방에서 진찰하다</p>	<p>지평 곽진순(郭鎭純)이 상소하기를, “지금 종사(宗社)의 계획은 단지 전하의 몸을 보호하는 데 있으니, 전하의 몸은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위와 비와 큰 추위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어 쇠약해지는 기운을 스스로 절제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정사(政事)가 있다 해도 진실로 크고 긴요한 일이 아니라면 마땅히 묘당(廟堂)에 맡기어 그 성과와 효험을 책임지게 하신다면, 정신과 기운을 적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일은 오직 세손을 보양(輔養)하는 데 있으니, 단지 산림(山林)을 초치(招致)할 뿐 아니라 궁료(宮僚)를 가려 뽑아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의 방도를 다하고 전하께서도 일에 따라 인도하여 주신다면, 억만년의 무궁한 아름다움이 실로 이에 기본할 것입니다. 지금 조정을 돌아보면 시정(市井)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많아 사대부의 풍도를 볼 수 없습니다. 분경(奔競)이 세상에 가득하고 탐오함이 풍속이 되어 염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알지 못하니, 어찌 예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함경 감사 조영진(趙榮進)은 음관(蔭官) 출신으로 본래 비루하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갑자기 은대(銀臺)에 들어갔지만 명칭함을 드러냈고, 잠깐 서쪽의 방백(方伯)을 맡겨보았으나 또한 염치가 부족했습니다. 북도의 감영은 중요한 곳인데 어찌 또 이런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마땅히 개차(改差)해야 합니다. 옥당(玉堂)은 청현직(淸顯職)이니, 반드시 문학(文學)에 바탕이 있고 공의(公議)가 허락한 뒤에야 가히 이 선발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된 심욱지(沈勗之)는 평소 문학이 부족하고 인망도 얻지 못했으니, 생각건대 개정해야 합니다. 또 무부(武夫)에 대해 논할 것 같으면 재물을 탐내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 더욱 심한 자들이 반드시 좋은 관직을 얻게 됩니다. 예컨대</p>	<p>持平郭鎭純上疏言： “目今宗社之計，都在於保畜聖躬，殿下下一身，不容自輕。而暑雨祁寒，烏可任情，而不思自節於向衰之氣乎？雖於庶政，苟非至大至繁，則宜付廟堂，責其成效，而使神氣少費。今日萬事，惟在導養世孫，非但招致山林，選擇宮僚，以盡朝夕納誨之方，殿下亦宜隨事誘掖，則億萬年無疆之休，實基於此。顧今朝廷之上，率多市井之習，未見士夫之風。奔競溢世，貪墨成俗，不復知廉恥之爲何如事，尚何禮義之可論哉？咸鏡監司趙榮進，自爲蔭官，素多鄙瑣之諂，乍入銀臺，已著儻侗，薄試西藩，又乏廉聲。北藩重地，又何必畀於此人耶？謂宜改差。玉署淸顯，必也地望文學，允叶公議，然後可膺是選。而新除沈勗之，素乏文學，人望不叶，謂宜改正。若論武夫，則孰非貪饕之人，而其中尤甚者，必得好官。如李禧遠之慘被臺劾，而晏然雄府，幾滿其瓜，李觀祥之爲南闕也，撲殺無故之妓女，劫奪晉州富人之錢，傳說狼</p>
---------------------------------	--	--

	<p>이희원(李禧遠)은 대간의 탄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연히 부유(富裕)한 고을을 맡아 거의 임기가 다 찼으며, 이관상(李觀祥)은 남곤(南關)으로 있을 때 무고한 기녀(妓女)를 때려 죽이고 진주(晉州)의 부자의 돈을 겁탈했다는 소문이 낭자하여 사람들이 모두 욕하고 있는데, 겨우 남곤(南關)에서 체차되어 바로 북병사(北兵使)의 임무가 주어졌으니, 신은 그옥이 통탄하게 여깁니다. 이희원은 마땅히 삭탈 과직의 율을 시행하시고, 이관상은 빨리 조사할 것을 명하시어 중률(重律)로써 처단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조영진·심옥지·이희원의 일은 따르지 않았으며, 이관상의 일은 바로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히 신문하여 구초(口招)15427) 를 받아서 등대(登對)하여 아뢰게 하였다.</p>	<p>藉，人皆唾罵，纔遞南關，旋授北鎖，臣竊痛之。李禧遠宜施削罷之典，李觀祥亟令行查，繩以重律。”上賜批優容，趙榮進沈昂之李禧遠事不從，李觀祥事，今該府嚴問，口招登對以奏。</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7월 14일(갑술) 5번째기사 남양 어사 강필리가 백성들이 먹는 해홍채를 바치다</p>	<p>남양 어사(南陽御史) 강필리가 백성들이 먹는 해홍채(海紅菜)를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것을 먹고 산다니 매우 측은하다.”</p> <p>하고, 봉(封)하여 정원에 두라고 명하였다. 남양 부사 김치귀(金致龜)를 잡아 오도록 명하였는데, 어사의 아뢰므로 인한 것이니, 기우제(祈雨祭) 때에 재실(齋室)에서 사사로이 간음(奸淫)했으며, 악형(惡刑)을 가하여 백성들이 많이 이산(離散)한 때문이었다.</p>	<p>南陽御史姜必履，進民人所食海紅菜，上曰：“食此爲生，甚可惻也。”命封置政院。命拿致南陽府使金致龜，因御史所陳，以其祈雨時，私奸齋室，民多離散，施以惡刑故也。</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7월 30일(경인) 3번째기사 내수사와 궁가의 이문안을 조사하여 술을 수색하다</p>	<p>임금이 말하기를, “궁방(宮房)과 부중(府中)은 일체(一體)이다.”</p> <p>하고, 오부(五部) 관원에게 명하여 내수사(內需司)와 여러 궁가(宮家)의 이문(里門) 안을 조사하여 모두 술을 수색(搜索)해 오도록 하였다.</p>	<p>上曰：“宮府一體。”命部官，摘奸內司及諸宮里門內，并搜酒以來。</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p>	<p>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거둥하여 추수(秋收)하는 것을 관람하였다. 임금이 원유관(遠游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먼저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진</p>	<p>庚戌/上幸先農壇觀刈。上具遠游冠絳紗袍，先詣昌德宮，展拜眞殿後，詣</p>

<p>(乾隆) 27년) 8월 20일(경술) 1번째기사 선농단에 거동하여 추수를 관람하다</p>	<p>전에 전배한 뒤에 단(壇)에 나아가, 음악을 연주하라 명하였다. 예조 판서 신회(申晦)가 앞에 나와 적전(籍田)의 추수 관람을 고하고 백인환(白仁煥)으로 하여금 도량(稻梁) 베는 것을 고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전은 농민으로 하여금 베고 거두게 함이 옳다. 기민(耆民)은 20명인가?” 하니, 윤동섭(尹東漚)이 말하기를, “40명이니, 농민과 합하여 80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자성(棗盛)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다. 내가 기미년(15457)에 처음 밭갈고 계유년(15458)에 두번째로 해 보았는데, 그 때에 전답은 처음이었고 지금은 1백 묘(畝)의 밭이 되었다. 당시에는 자성에 쓸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경적사(耕籍使) 김치인(金致仁)이 추수한 기장을 바쳤고, 승지 정광한(鄭光漢)이 받들어 향안(香案) 앞에 바치니, 임금이 또 자리에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받았으며, 경적사가 또 추수한 벼를 바치니, 임금이 또 자리에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받았다. 이세택(李世澤)이 말하기를, “정전법(井田法)15459)은 천하에서 거의 없어지고 오직 우리 나라의 평양(平壤)에만 홀로 기자(箕子)가 만든 정전의 제도가 남아 있으나 지금 거의 없어지려 합니다. 이제 이 적전(籍田)을 만약 평양 정전(井田)의 유제를 모방해서 한다면 기자의 법이 비록 피국(彼國)에서는 폐해졌어도 이쪽에서는 행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도 또한 그 제도를 행할 수 있겠느냐?” 하니,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지세(地勢)가 좁아서 그 제도를 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매,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임금이 늙은 백성들에게 찬(饌)을 내리고 가장</p>	<p>壇所，命作樂。禮曹判書申晦進前，告觀刈籍田，令白仁煥告刈稻梁。上曰：“籍田令率農民刈取可也。耆民二十耶？”尹東漚曰：“四十名，合農民爲八十人。”上曰：“予以重棗盛，故着此服矣。予初耕於己未，再耕於癸酉，其時田疇猶草創矣，今成百畝田。當時未能知用於棗盛，今則不然矣。”耕籍使金致仁，進刈梁，承旨鄭光漢，奉進於香案前，上降位跪受。耕籍使又進刈稻，上又降位跪受。李世澤曰：“井田之法，盡廢於天下，惟我東平壤，獨有箕子井田之制，今幾湮沒。今此籍田，若倣平壤井田之遺制，則箕子之法，雖廢於彼，而可行於此矣。”上曰：“此處亦可以行其制乎？”左議政洪鳳漢曰：“地勢狹側，難行其制矣。”上然之。上賜耆民饌，最老者賜木，又賜饌。諸臣禮畢還宮。</p>
--	--	---

	나이 많은 자에게는 무명을 하사하였으며, 또 찬을 내려 주었다. 여러 신하가 예를 마치자 환궁하였다.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0월 28 일(정사) 4번째기사 남한 산성의 어공미를 없애도록 명하다	임금이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어공미(御供米)란 명색(名色)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하교하기를, “산성(山城)은 말할 나위도 없고, 비록 이 성 안이라 하더라도 삼군(三軍)과 도민(都民)이 함께 고락을 같이 할 때인데, 결단코 차마 홀로 갱미(粳米)를 먹을 수 없다. 더구나 산성이겠는가? 향미(餉米) 또한 쌀이며 유사시에는 스스로 먹을 쌀이 있는데, 더구나 아무 일이 없는 때에 소민(小民)들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지금부터 이후로는 특별히 ‘어공’ 두 글자를 없애도록 하라. 그리고 이천(利川)에서 납공하는 쌀은 전례에 의거하여 탁지(度支)에 속하게 하고, 북한 산성(北漢山城)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하며, 강도(江都) 또한 이 이름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上聞南漢有御供米名色，敎曰：“莫云山城，雖此城之中，與三軍與都民同甘苦之時，決不忍獨食粳米。況山城乎？餉米亦米也，有事之時，自有米也，況無事之時，貽小民之弊乎？自今以後，特除御供二字。利川所納之米，依前屬之度支，北漢亦依此例，江都亦除此名。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3 일(신유) 1번째기사 제주의 공납 과일을 진전에 올리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제주에서 공납한 과일을 진전(眞殿)에 올렸다.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7 일(을축) 2번째기사 제주의 기근에 진곡을 내리다	제주에 기근(饑饉)이 들었으니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견하고, 진곡(賑穀) 4천 석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濟州告飢，上召見大臣備堂，命賜賑穀四千石。
영조 100권, 38년	빈청(賓廳)에서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는 정성으로 서로 이끌고 나아가 진하	賓廳以學國同慶之忱，相率陳籲，上

<p>(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11월 11일(기사) 2번째기사 빈청에서 진하함에 백성들의 구제를 명하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초(國初) 〈갑신년15499) 태조(太祖)의〉 성주(聖壽)와 옛날의 〈계사년15500) 숙종(肅宗)께서 즉위한 지 40년이 됨에 대한〉 성덕(聖德)은 곧 《중용》에 이른바 ‘대덕(大德)은 반드시 수(壽)를 얻는다.’는 이치이며, 《시경(詩經)》에서 이른바 ‘어찌 장수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인데, 외람되이 어려운 일을 이어받아 하나도 계술(繼述)한 것이 없었다. 아! 예전에 대단히 어진 혜택이 중외(中外)에 넘쳤으나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을 사서(史書)에 능히 기록하지 못했고 다만 계사년15501)의 전례(典例)가 있을 따름이다. 나 같은 불초한 사람을 추상(追上)하여 칭양(稱揚)함에 있어 어찌 헤아리는 글자가 넓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릇 문자에 대해서 마음 속으로 항상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덟 글자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또 여덟 글자이겠는가? 한 글자로 결정한다면 연중(筵中)에서 이미 유지한 ‘고(固)’ 자이다. 이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고(固)’가 아니라 택하여 잡는다는 ‘고(固)’ 자이다. 이 기전(畿甸)과 삼남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음식인들 어찌 달겠는가? 아! 군신(君臣)이 강론하며 갈고 닦아 내 백성들을 구제한다면 어찌 장황(張皇)하게 형식(形式)에 응하는 여덟 글자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였다.</p>	<p>曰：“國初聖壽，昔年聖德，即傳所云大德必得之理。經所云遐不壽考之義也，叨承艱業，無一繼述。嗚呼！昔年深仁惠澤，洋溢中外，盛德大業，史不能書，而只有癸巳典例。渺予不穀，追上揄揚，何云計字之不廣乎？凡於文字，心常悚然慙焉者，八字猶然，況又八字乎？以一字結之，即筵中已諭之固字也。此非固必之固，即擇執之固也。顧此畿甸三南之民，玉食豈甘？吁嗟！君臣講磨若濟吾民，豈不愈於張大應文之八字乎？”</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11월 11일(기사) 3번째기사 각도의 굶주린 백성을 소견하다</p>	<p>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각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소견(召見)하여 국수를 먹이고 유의(襦衣)를 하사한 뒤 해당 읍으로 호송하게 하였다.</p>	<p>上御崇賢門，召見各道飢民，饋麪羹，給襦衣，使之護送本邑。</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11월 18</p>	<p>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감귤을 나눠주고 선비들을 시험하여 으뜸을 차지한 이성원(李性源)에게는 고강(考講)한 뒤에 급제를 내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찬(饌)을 내려 주었다.</p>	<p>丙子/上御金商門，頒柑試士，居首李惟源考講後賜第，宣饌諸臣</p>



<p>일(병자) 1번째기사 금상문에 나아가 감찰 을 나눠주고 선비들을 시험하다</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23 일(신사) 2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p>	<p>임금이 사현함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고, 세 정승이 같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오적산(五積散)15509) 을 진어(進御)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래가 응결되어 없힌 것 같은 증상이 있으나 추위를 만나 응어리진 것에 불과한 듯하니, 정후(庭候)는 하지 말라.” 하였다.</p>	<p>上御思賢閣，藥房入診，三相同爲入侍，進御五積散。上曰：“膈痰凝結，有壅滯之候，不過遇寒而凝者，勿爲庭候。”</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26 일(갑신)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p>	<p>임금이 사현함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여 건공탕(建功湯)을 하루 세 번 진어(進御)하였다.</p>	<p>甲申/上御思賢閣，藥房入診，建功湯日三進御。</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26 일(갑신) 3번째기사 북도 곡식의 호남 운 송, 어공과 백관 급료 의 감축을 명하다</p>	<p>하교하기를, “북도(北道)의 곡식을 호남으로 운송하는 일은 이미 하교하였으니, 마땅히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듯 하라. 포항창(浦項倉)의 5만 석은 호남에 배로 운반한 뒤에 마땅히 북곡(北穀)으로 보충하게 하되 특별히 김종정(金鍾正)을 차출(差出)하여 감운 어사(監運御史)로 삼아 곧바로 거행케 하고, 북평사(北評事) 김상익(金相翊)을 북도 독운 어사(北道督運御史)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공(御供)을 먼저 줄인 뒤에야 백관의 급료를 감할 수 있으니, 어공(御供) 1백 석 이상은 30석을 줄이고 1백 석 이하는 10석을 줄이라. 백관의 급료는 신축년(15510)의 예(例)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삼남(三南)의 농사가 풍년이</p>	<p>敎曰：“北穀輸運湖南事，已爲下敎，而宜若拯溺浦項米五萬石，船運湖南後，當以北穀充報，特差金鍾正爲監運御史，卽爲舉行，北評事金相翊，爲北道督運御史。”上曰：“御供先減，然後百官廩祿當減，御供百石以上，減三十石，百石以下，減十石。百官料，依辛丑年例舉行，待三南年事稍登，卽爲復舊。”</p>

	들기를 기다려 곧바로 복구하라.” 하였다.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27 일(을유)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여 건공탕(建功湯)을 하루 에 세 번 진어(進御)하였다.	己 [乙] 酉/上御思賢閣, 藥房入診, 建功湯日三進御。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27 일(을유) 5번째기사 진상 붕어를 기르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푸주를 멀리한다 하였으니, 나 또한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 진상한 붕어 같은 것은 궁 안의 연못에서 기르도록 하라.” 하였다.	上曰: “君子遠庖廚, 予亦見其生而不 忍食其肉。 如進上鮒魚之屬, 輒養之 內池矣。”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28 일(병술)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여 건공탕(建功湯)을 하루 세 번 진어(進御)하였다	丙戌/上御思賢閣, 藥房入診, 建功湯 日三進御。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1월 29 일(정해)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고, 건공탕을 하루 세 번 진어 (進御)하였다.	丁亥/上御思賢閣, 藥房入診, 建功湯 日三進御。
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2월 1	임금이 사현합(思賢閣)에 나아가니,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고, 건공탕 (建功湯)을 하루 세 번 진어하였다.	○朔己丑/上御思賢閣, 藥房入診, 建 功湯日三進御。

<p>일(기축)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2월 1 일(기축) 2번째기사 태묘에 나가다. 신독개 를 떨어뜨린 궁위령을 정배하다</p>	<p>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니, 종묘 도제조(宗廟都提調) 신만(申晩)이 청대(請對)하고 입시하여 말하기를, “태묘의 삭제(朔祭) 때에 제2실(室)의 신독개(神櫛蓋)를 궁위령(宮闈令)이 떨어뜨려 틈이 생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곧바로 나아가 살펴보고 친림하여 희생(犧牲)을 살폈으며, 밤이 되어서야 환궁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해당 궁위령을 먼 변방으로 정배(定配)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上詣太廟，宗廟都提調申晩請對入侍曰：“太廟朔祭時，第二室神櫛蓋，宮闈令墜落，有罅隙矣。”上卽詣奉審，親臨省牲，侵夜還宮。兩司請當該宮闈令，邊遠定配。上允之。</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2월 3 일(신묘)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p>	<p>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고 건공탕을 하루 세 번 진어하였다.</p>	<p>辛卯/上御思賢閣，藥房入診，建功湯日三進御。</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2월 4 일(임진)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백 성 구제에 관하여 말 하다</p>	<p>임금이 사현합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고 건공탕을 하루 세 번 진어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집사(安集使) 홍인한(洪麟漢)이 아뢰 바를 들으니, 굶주려 누렇게 뜬 얼굴들이 잠시도 지탱하기 어려운 모습을 마치 친히 보는 듯하다. 진곡(賑穀)은 어디에서 나오며 농사 양식은 또한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기운이 빠진다. 산산창(蒜山倉)의 남겨 둔 쌀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적당량(適當量)을 헤아려 백성을 구제케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북도의 교제창(交濟倉) 곡식의 조운은 한시가 급한데도 북평사(北評事) 김상익(金相翊)은 그 오는 것이 더딘지 빠르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인배(李仁培)를 북도 독운 어사(督運御史)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p>	<p>壬辰/上御思賢閣，藥房入診，建功湯日三進御。引見大臣備堂，上曰：“聞安集使洪麟漢所奏，浮黃菜色，頃刻難支之狀，若親觀焉。賑穀從何以生，農糧亦何接濟？思之及此，不覺氣短。蒜山倉留米，其令道臣，量宜濟民。” 上曰：“北道交濟倉穀漕運，一時爲急，而北評事金相翊，其來遲速未可知，以李仁培爲北道督運御史。”</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2월 5 일(계사)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 홍 봉한이 범월자의 형률 적용에 관하여 아뢰다</p>	<p>임금이 사현함에 나아가니, 약방이 입진하였고 건공탕을 하루 세 번 진어하였 다. 좌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평안 감사의 장계를 보니 범월(犯越)한 사람을 이미 잡았다고 합니다. 해당 병사(兵使)나 변장(邊將)은 마땅히 죄를 논해야 하고 강계 부사(江界府使) 이 윤덕(李潤德)도 한결같이 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癸巳/上御思賢閣，藥房入診，建功湯 日三進御。左議政洪鳳漢曰：“卽見平 安監司狀啓，犯越人既已捕捉。當該 兵使邊將，宜爲論罪，江界府使李潤 德，不可不一體勘律矣。”上從之。</p>
<p>영조 100권, 38년 (1762 임오 / 청 건륭 (乾隆) 27년) 12월 7 일(을미) 1번째기사 약방에서 입진하다</p>	<p>임금이 사현함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고 건공탕을 하루 세 번 진어하 였다</p>	<p>乙未/上御思賢閣，藥房入診，建功湯 日三進御。</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월 14 일(임신) 2번째기사 홍술해가 이방좌의 비 행을 아뢰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북도 감진 어사(北道監賑御史) 홍 술해(洪述海)를 입시하라 명하였다. 홍술해가, ‘병사(兵使) 이방좌(李邦佐)가 역지로 세포(細布)를 바꾸어 강계(江界)로 운반해 들였고 심술이 바르지 못하 여 오로지 꾀비(詭秘)한 것만을 일삼는 정상’을 상세히 논하였다. 또 말하기 를, “강계에 있을 때 한 고을의 호삼(戶蔘)을 남김없이 죄다 받았으니, 청컨대 엄 중하게 구핵(究覈)하여 탐오(貪汚)와 교활함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중하게 신문하여 아뢰게 하였다.</p>	<p>上引見大臣備堂，命北道監賑御史洪述 海入侍。述海備論兵使李邦佐勒換細 布，運入江界，心術不正。專事詭秘 之狀。又言在江界時，一邑戶蔘，無 遺盡捧，請嚴加究覈，以懲貪猾。上 令該府，嚴問以奏。</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월 20 일(무인) 2번째기사 정술조가 상정을 휴양</p>	<p>장령 정술조(鄭述祚)가 상소하여 맨 먼저 성정(性情)을 휴양(休養)하는 도리를 진달하고, 또 왕세손을 교도(教導)하는 방도를 논하기를, “전하께서 몸소 교술(教率)하시되 반드시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어떤 물건 을 만나면 이를 태자(太子)에게 가르치는 것[遇物之論]처럼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옥식(玉食)을 대해서는 반드시 ‘밭 가운데에서 땀방울을</p>	<p>掌令鄭述祚上疏，首陳休養性情之道， 又論王世孫教導之道曰： “莫如殿下，躬以率之，必如唐宗遇物 之誨。對玉食則必曰田中汗滴，粒粒 皆辛苦而得也，御錦衣則必曰機上裂</p>

<p>하는 도리와 왕세손을 교도하는 방법을 상소하다</p>	<p>흘러가며 날날이 모두 신고(辛苦)하여 얻은 것이다.’라고 하시고 금의(錦衣)를 입을 적에는 반드시 ‘베를 위에서 손가락이 터져가며 울음이 모두 수고를 쌓아 이룬 것이다.’라고 하시며, 넓은 집에 거처할 적에는 반드시 ‘우리 백성들 중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시어 일마다 물건마다 교회(教誨)하신다면 그것이 보고 느끼는 도리에 얻음이 있을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p>	<p>指，絲絲皆積累而成也，處廣廈則必曰吾民之靡室靡家者，何以爲生，事事而教，物物而誨，則其有得於觀感之道者，豈淺淺乎？”上賜優批。</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1월 21일(기묘) 1번째기사 어기를 훔친 유득·상옥·강시현 등을 친국하다</p>	<p>임금이 내사복(內司僕)에 나아가 어기(御器)를 훔친 죄인 유득(有得)·상옥(尙郁)·강시현(康時賢)·이성래(李聖來)를 친국(親鞫)하였다. 국문(鞫問)을 마치자, 경중을 나누어 혹은 정법(正法)하고 혹은 작처(酌處)하였다. 유득은 중관(中官) 김중광(金重光)의 종으로서 고군(雇軍)으로 금중(禁中)에 드나들다가 집상전(集祥殿)에 둔 금은(金銀) 어기를 훔쳐 가졌던 것이다. 일이 발각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곧 심양(瀋陽)에서 얻은 것으로 궐내(闕內)에서 1백여 년 동안 세전(世傳)하던 물건이다.”</p> <p>하고,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기형(譏詞)하게 하여 과연 유득 등을 잡았던 것이다. 국청(鞫廳)을 설치해 자복(自服)을 받은 뒤, 유득을 본부(本府)에 내려 정법하고, 상옥은 종성부(鍾城府)의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강시현은 삼수부(三水府)의 종으로 삼고, 이성래는 울진현(蔚珍縣)에 년수(年數)를 한정하지 말고 정배(定配) 하도록 하였으며, 그 나머지 관계된 사람인 박창윤(朴昌潤)·김명현(金明鏡)·조덕창(趙德昌)·김명오(金明五) 등은 모두 수직(守直)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여 모두 산배(散配)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p> <p>“진도(珍島)의 종으로 삼은 죄인 김중광은 범한 죄를 이미 용서할 수 없는데다가, 그 당시의 차비 중관(差備中官)으로서 복식(服飾)과 기명(器皿)을 훔쳐가지고는 그 중 유득을 시켜 방자하게 팔도록 하였으니, 감운 어사(監運御史)</p>	<p>己卯/上御內司僕，親鞫偷竊御器罪人有得·尙郁·康時賢·李聖來。鞫罷，分輕重或正法或酌處。有得，中官金重光奴也，以雇軍，出入禁中，偷取集祥殿所置金銀器。事發，上曰：“此乃得自瀋中，爲闕內百餘年世傳之物。”令左右捕廳譏詞，果捕有得等。設鞫取服，有得下本府正法，尙郁，鐘城府爲奴。時賢，三水府爲奴，聖來，蔚珍縣勿限年定配。其餘干連人朴昌潤·全明鏡·趙德昌·金命五等，皆以不謹守直，竝散配。仍教曰：“珍島爲奴罪人金重光，所犯已罔赦，而其時以差備中官，偷取服飾器皿，使其奴有得，放恣發賣，令監運御史，嚴刑三次，黑山島爲奴。”</p>

	로 하여금 엄하게 세 차례 형(刑)을 가하고 흑산도(黑山島)의 종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월 21 일(기묘) 2번째기사 간원과 헌부가 상옥도 처단할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간원【대사간 홍자(洪梓)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죄인 상옥(尙郁)이 유득(有得)과 정(情)을 통하고는 도둑질을 가르쳐 이익을 나누고, 손으로 도금을 한 금기(禁器)를 마구 쓴 정상을 그가 이미 자복(自服) 하였으니, 유득이 정법(正法)된 뒤 의당 홀로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거해 처단(處斷)토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헌부【장령 정술조(鄭述祚)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죄인 상옥이 유득과 함께 금기를 훔쳐내어 도금을 녹여 이익을 나누는 정상을 그가 이미 자복하였으니, 청컨대 유득과 함께 똑같이 정법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죄인 김중광(金重光)은, 차비 중관(差備中官)이었을 때 금기를 훔쳐 내어 그 중을 시켜 몰래 스스로 관 정상이 이미 죄인의 조사(招辭)에 나왔으니, 형(刑)을 더하여 배소(配所)를 옮기는 데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하게 국문(鞫問)하여 정법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諫院【大司諫洪梓。】申前啓，不允。 又啓：“罪人尙郁，與有得通情，誨盜分利，爛用手鑿禁器之狀，渠既自服，有得正法之後，宜無獨道之理，請依律處斷。” 不允。 憲府【掌令鄭述祚。】申前啓，不允。 又啓：“罪人尙郁，與有得偷出禁器，消鑿分利之狀，渠既自服，請與有得，一體正法。” 不允。 又啓：“罪人金重光，其爲差備中官之時，偷出禁器，使其奴潛自發賣之狀，已發於罪人之招，不可加刑移配而止。請令王府，嚴鞫正法。” 依啓。
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2월 20 일(무신) 7번째기사 송명흠에게 음식물을 하사하다	전 찬선(贊善) 송명흠(宋明欽)에게 식물(食物)을 하사하였다. 송명흠이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賜前贊善宋明欽食物。 明欽上疏辭，不許。
영조 101권, 39년	하유(下諭)하여 초선(抄選)한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급하지 아니한 경비를 줄	下諭召抄選諸人，減不急之費，從前贊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2월 26일(갑인) 2번째기사  
 송명흠이 절용할 것을 청하자 긴요하지 않은 경비를 줄이라고 명하다

이게 하니, 전 찬선 송명흠의 말을 따른 것이다. 애초에 지돈녕 윤봉구(尹鳳九), 전 참의 김원행(金元行)·신경(申暲), 집의 김양행(金亮行), 진선(進善) 홍계능(洪啓能), 전 장령 이양원(李養源), 전 지평 이봉상(李鳳祥)·최재흥(崔載興), 자의(諮議) 송덕상(宋德相)은 모두 경학(經學)으로 초선(抄選)되었는데, 누차 징소(徵召)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 이때에 와서 송명흠이 부름을 받들어 맨 먼저 기덕(耆德)을 마땅히 불러야 함을 말하고, 이미 전석(前席)에 올라서는 다시 재주가 빼어난 선비를 널리 불러 동궁을 보도(輔導)하는 방도로 삼을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기덕이 누구냐고 묻자, 송명흠이 윤봉구·김원행이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에 사관(史官)을 보내 부르면서 아울러 여러 사람들까지 언급했던 것이다. 이때 삼남(三南)에 기근이 들어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났다. 송명흠이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마땅히 먼저 절용(節用)하시어 민력(民力)을 넉넉히 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여러 가지 긴요하지 아니한 경비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삼길가(蓼苦價) 및 삼명일(三名日)15563)의 갑주가미(甲冑價米)와 각군문(軍門)에서 해를 걸러 받는 월과미(月課米)를 모두 풍년이 들 때까지 한정해서 감제(減除)하고, 올해 증광시(增廣試)와 내년 식년과(式年科)의 강제시(講製試)의 책(冊) 및 무릇 여러 곳에 쓰이는 종이는 등급을 낮추며, 긴요하지 않은 것은 제감하게 하였다. 선혜청(宣惠廳)의 호표피가(虎豹皮價)로 이미 내린 것 외에는 풍년이 들 때까지 한정하여 정지시키도록 하고,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묘묘(廟墓) 이하 경외(京外)의 도회(塗灰)·포진(鋪陳) 등의 물건은 풍년이 들 때까지 한정하여 수개(修改)하지 말게 하였으며, 비록 3년 안이라 하더라도, 묘묘(廟墓)의 도회·포진·장병(帳屏)·유둔(油菴) 등의 물건을 또한 수개하지 말게 하였다. 종부보략(宗簿譜略)으로서 마땅히 수정(修正)해야 할 것은 풍년이 들 때까지 품(稟)하지 말게 하였고, 종부시(宗簿寺)·돈녕부(敦寧府)의

善宋明欽言也。 初敦知寧尹鳳九、前參議金元行·申暲、執義金亮行、進善洪啓能、前掌令李養源、前持平李鳳祥·崔載興、諮議宋德相、皆以經學、被抄選、累徵不起。 至是明欽承召、首言耆德之當招、既登前席、復請廣招才俊之士、以爲輔導東宮之道、上問耆德爲誰、明欽以鳳九·元行對。 上乃遣史官召之、竝及諸人。 時三南饑饉、而國儲罄竭。 明欽又言：“自上宜先節用、以爲寬民力之本。” 上遂命減諸不繁之費。 蓼苦價及三名日甲冑價米、各軍門間年月課米、竝限年豐減、除今年增廣及明年式年科講製試冊、及凡諸所用紙減等、不繁者減除。 惠廳虎豹皮價已下者外、限年豐停止。 孝章廟墓以下京久塗灰鋪陳等物、限年豐勿爲修改、雖三年內、廟墓塗灰鋪陳帳屏油菴等物、亦勿修改。 宗簿譜略當修正者、年豐間勿稟、宗簿寺敦寧府加現錄、兼行於後式年。 凡諸各司雖在定例、不獲已者外、一竝置之。 內弓房半白雕羽、啓下者外永減。 排設房書房色定例應下者、限明春減半。 內局封進唐麝香永減、唐雀舌減三分之二。

	<p>가현록(加現錄)은 다음 식년(式年) 때에 곁해서 행하도록 하였다. 무릇 여러 각사(各司)는 비록 정례(定例)에 들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것 외에는 한결같이 모두 그대로 두게 하였다. 내궁방(內弓房)의 반백조우(半白雕羽)는 계하(啓下)한 것 외에는 영원히 줄이고, 배설방(排設房)의 서방색(書房色)에서 정례(定例)로 응하(應下)하는 것은 내년 봄까지 한정하여 반을 줄이게 하였다. 내국(內局)에서 봉진(封進)하는 당사향(唐麝香)은 영원히 줄이고 당작설(唐雀舌)15564) 은 3분의 2를 감하게 하였다. 송명흠이 ‘나라를 다스리는 급무는 보도(輔導)하는 방도와 절성(節省)하는 도리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두 가지 일을 진달하였는데, 임금의 모두 따랐던 것이다, 송명흠이 물러날 때 임금이 다시 손을 잡고 돈면(敦勉)하였다.</p>	<p>明欽以爲國之急務，莫如輔導之方，節省之道，故陳此兩事，上皆從之。明欽臨退，上復執手敦勉。</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3월 3일 (경신) 3번째기사 송명흠이 제사에 술을 쓸 것을 청하다</p>	<p>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이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경연관(經筵官) 송명흠(宋明欽)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옛날 성현(聖賢)이 전수(傳授)한 심법(心法)을 오늘 다 말하도록 하라.” 하니, 송명흠이 말하기를, “제왕의 학문은 ‘인(仁)’이란 한 글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이란 글자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논어》를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또 ‘효제 순덕(孝悌順德)’이라고 말한 것은 대개 효(孝)가 인(仁)의 단서이고 인이 효의 본체(本體)이기 때문이니, 인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제(孝悌)로부터 공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언 영색(巧言令色)·강의 목눌(剛毅木訥) 두 장(章)을 참고해 본다면 인의 체단(體段)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남이 자기보다 나으면 싫어하게 되니, 하우(下愚)는 비록 자기보다 나은 벗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만 못하다고 여긴다.” 하니, 대답하기를,</p>	<p>上御晝講。儒臣陳文義訖，上顧謂經筵官宋明欽曰：“古聖賢傳授心法，今日盡言之。”明欽曰：“帝王之學，莫過於一仁字。而欲識仁字之義，舍《論語》何求哉？且如孝悌順德云者，蓋孝是仁之端，仁是孝之體，爲仁者必從孝悌上做去。參觀於巧令剛訥二章，則可知仁之體段矣。”上曰：“凡人勝己則厭之，下愚則雖勝友，必謂之不如己也。”對曰：“《孟子》曰，‘好臣其所教，不好臣其所受教。’夫人君之用人，必於所受教之人，如禹之拜昌言，舜之察邇言，則豈有厭其勝己之患哉？”明欽仍進曰：“臣聞釀酒爲國大禁，以至不用於太廟，此恐大違於禮也。</p>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자기가 가르친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신하 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대저 인군(人君)이 사람을 씬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우왕(禹王)이 옳은 말에 절을 하고 순제(舜帝)가 비근한 말을 살폈던 것처럼 한다면, 어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송명흠 이어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술을 빚는 것이 나라의 큰 금법(禁法)이 되어 태묘(太廟)에 술을 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예(禮)에 크게 어긋나는 것인 듯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 구수한 향기여.’라고 하였고, 《서경》에는 이르기를, ‘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고 하였으니, 흠향하는 도리는 오로지 울창주(鬱鬯酒)를 따루어 강신(降神)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神州)15570) 를 바라보매 백년 동안 육침(陸沈)하여 술 향기가 날 곳이 없으니, 저 양양(洋洋)하게 척강(陟降)하는 혼령도 또한 반드시 동토(東土)15571) 를 돌아보아 단소(壇所)에 강림(降臨)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시향(時享)이 멀지 아니한데 번국(藩國)에서 금한다 하여 막중한 제사에 쓰지 않는다면 아주 예의(禮意)가 아닙니다. 신은 사사로이 술을 빚어서 회음(會飲)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향사(享祀)에만 쓴다면 진실로 마땅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사에 맑은 술을 쓰는 것을 어찌 내가 하고 싶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단지 예락(禮酪)15572) 만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예주(醴酒)를 쓰고 있는데, 초밀(椒蜜)로 빚어 맑고 깨끗함이 지주(旨酒)보다 낫다. 경영관의 말을 나는 들 어줄 수 없다.”

하였다. 송명흠이 또 말하기를,

“권극(權極)은 ‘살(殺)’자로 인군(人君)을 인도하였으니, 신은 권극을 죄주어

《詩》云, ‘飴彼馨香,’ 書云: ‘祀效酒,’ 敬格之道, 專在於灌鬯。而顧瞻神州, 百年陸沈, 芬苾無所, 其洋洋陟降之靈, 亦必眷顧於東土, 而降格於壇所矣。況今時享不遠, 而以藩國之禁, 不用於莫重之祀, 殊非禮意。臣以爲痛禁私釀會飲, 用之於享祀, 則誠得宜矣。” 上曰: “祭用清醑, 豈予所欲? 古者只有醴酪, 故方用醴酒, 釀以椒蜜, 清冽過於旨酒。經筵官之言, 予不可聽矣。” 明欽又曰: “禁酒用極律, 人猶犯之。臣謂依前減律, 然後法可行矣。” 上是之。明欽又曰: “權極以殺字導人君, 臣謂宜罪極, 以慰枉死者。” 上曰: “予既用法, 豈云枉殺乎?” 明欽曰: “尹九淵罪在令前, 故臣敢達, 而言涉妄發矣。” 又言: “殿下用臣言, 前後以言獲罪者, 多蒙放宥, 而金時祭·尹著東·徐迥修·柳憲等, 則尙在罪籍矣。” 上不悅曰: “勿復言。今日風氣甚惡, 經筵官所達, 可爲今日風日之驗矣。” 旋命明欽進前曰: “勿以言不用而過其歸也。” 仍執手敦勉。

	<p>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이미 법을 쓴 것인데, 어찌하여 억울하게 죽었다 하는가?”</p> <p>하였다. 송명흠이 말하기를,</p> <p>“윤구연(尹九淵)의 죄는 영(令) 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진달한 것인데, 말이 망발에 관계되었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전하께서 신의 말을 쓰셨기에 전후에 걸쳐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들이 많이 석방되어 사면을 받았는데, 김시찬(金時燾)·윤시동(尹蓍東)·서형수(徐迥修)·유당(柳憺) 등은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p> <p>“다시 말하지 말라. 오늘 바람 기운이 몹시 나쁘더니, 경연관이 진달한 바가 오늘 바람부는 날씨의 징험이 될 만하다.”</p> <p>하였다. 잠시 후에 송명흠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말하기를,</p> <p>“말을 쓰지 않는다 하여 급작스레 돌아가지 말라.”</p> <p>하고, 이어 손을 잡으며 돈면(敦勉)하였다.</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3월 6일 (계해) 2번째기사 대보단에 나아가 봉심 한 뒤 친림하여 희생을 살피보다</p>	<p>임금이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봉심(奉審)한 뒤 친림(親臨)하여 희생을 살피 보고, 다시 재실(齋室)로 들어갔다.</p>	<p>上詣大報壇，奉審後，親臨省牲，還入齋室。</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3월 28</p>	<p>사흘 동안 감선(減膳)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호남 도신(道臣)의 계본(啓本)을 보았는데, 기민(飢民)의 총수가 많게는 48만 3천 7백 10여 구(口)에 이르 고, 53고을에서 죽은 자가 4백 50여 명이나 되니, 크게 슬퍼하며 하교하기</p>	<p>命減膳三日。上覽湖南道臣啓本，飢民總數多至四十八萬三千七百十餘口，而五十三邑殞命者，四百五十餘人，大</p>

<p>일(을유) 4번째기사 사흘 동안 감선할 것 을 명하다</p>	<p>를, “옛날 이윤(伊尹)은 한 사람이라도 알맞은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삼았는데, 하물며 인군(人君)이 되어 능히 한 도(道)의 백성을 살리지 못하여 죽은 자가 5백 명이나 되게 했으니, 이것은 척강(陟降)하신 조종(祖宗)을 저버린 것이다. 만약 스스로 경책(警責)함이 없다면 어떻게 우러러 답할 것인가? 스스로 신칙하고 아랫사람들을 신칙함이 마땅하다. 오늘부터 특별히 사흘 동안 감선하도록 하고, 해도(該道)의 도신은 석 달 동안 월름(月廩)을 3분의 1을 감하도록 하라. 아! 세전(歲前)에 이미 진휼(賑恤)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더욱이 몇 백명이 물고(物故)하였으니, 어찌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는가마는, 교묘하게 명목(名目)을 꾸며 죄과(罪過)를 면하고자 하니, 또한 근거가 없는 데 관계된다.” 하고, 마침내 기민의 많고 적음을 보아 해읍(該邑) 수령의 월름을, 혹은 3분의 2를 혹은 3분의 1을 감하여 칙벌(飭罰)을 보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또 하고하기를, “이번의 이 일은 한편으로는 척강하는 조종에게 사죄하고 한편으로는 굶주려 죽은 혼령을 위로코자 하는 것이니, 수령이 된 자가 만약 소홀하게 하다면 어찌 청구(靑丘)15592)의 신하라 할 것인가?” 하고, 비국으로 하여금 기전(畿甸)과 삼남(三南)에 신칙하게 하였다.</p>	<p>加傷惻，教曰：“昔之伊尹，以一夫不獲爲己過，況爲人君而未能活一道之民，死者半千，此負陟降也。若無自警，何以仰答？宜自飭而飭下。自今日特爲減膳三日，該道道臣三朔月廩，減三分之一。噫！歲前既不設賑，其前餓莩，其豈無也？況幾百物故，豈無一人餓死者，而巧作名目，欲免罪過，亦涉無據。遂命視飢口多寡，減該邑守令月廩或三分二或三分一，以示飭罰。又教曰：“今者此舉，一以謝陟降，一以慰飢魂，爲守令，其若放忽，豈曰靑丘臣子？”令備局申飭畿甸三南。</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4월 17 일(갑진) 5번째기사 삼남의 여러 도에 교 제창을 두다</p>	<p>삼남(三南)의 여러 도(道)에 교제창(交濟倉)을 두었다. 처음에 삼남에 큰 기근이 들자 임금이 북관(北關) 교제창의 곡식 10여 만 석을 배로 운반하여 진휼(賑恤)하라 명하였는데,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 왕왕 표류하거나 진북되었다. 그래서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북도의 예에 의거하여, 양남(兩南)에 각각 좌우 두 창(倉)을 두고 호서에는 마땅히 한 창을 두며, 관동은 남북 사이에 또한 마땅히 한 창을 두어 흉년에 대비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p>	<p>○置三南諸道交濟倉。初三南大饑，上命船運北關交濟倉穀十餘萬石以賑之，海道險遠，往往漂覆。左議政洪鳳漢請依北道例，兩南各置左右兩倉，湖西當置一倉，關東間於南北，亦當置一倉，以備凶荒，上從之。</p>
<p>영조 101권, 39년</p>	<p>여러 도(道)에 우택(雨澤)을 장문(狀聞)한 것을 재촉하라 명하였다. 하고하기</p>	<p>命催促諸道雨澤狀。教曰：“目今所</p>

<p>(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4월 18일(을사) 3번째기사 여러 도에 우택을 장문한 것을 재촉하라 명하다</p>	<p>를, “지금 바라는 바는 오로지 양맥(兩麥)15606) 에 있을 뿐인데, 가뭄이 들 징조가 없지 않다. 은하수를 바라보매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밤에 별을 보매 더욱 몹시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때에 때맞추어 내리는 비가 갑자기 쏟아진다면 우리 백성들이 거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나, 나의 한결같은 마음이 어찌 비를 얻었다 하여 해이해질 수 있겠는가? 기영(畿營)에 분부하여 우택의 장문을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듣는 대로 아뢰게 할 것이며, 또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여러 도에 똑같이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p>	<p>望，惟在兩麥，而不無旱徵。瞻望雲漢，此心憧憧，夜來見星，尤切悶焉。此際時雨忽降，吾民庶幾，以予恒日之心，豈可得雨而敢弛乎？分付畿營，雨澤狀聞，勿俟齊到，隨聞以啓，亦令備局，諸道一體申飭。”</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4월 23일(경술) 5번째기사 간원에서 어사 홍양한의 사인을 밝힐 것을 청하다</p>	<p>간원【대시간 한사직(韓師直)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점때 어사 홍양한(洪亮漢)이 태인현(泰仁縣)에 당도하여, 아전의 포흠(逋欠)이 많게는 수천 여 석에 이름을 듣고 여러 방면으로 형찰(巡察)하여 장차 출도(出道)·안치(按治)하려고 하던 즈음에 점심밥을 먹는 것으로 인해 갑자기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전해지는 말이 낭자합니다. 청컨대 어사가 데리고 간 서리(書吏)를 형조(刑曹)로 하여금 잡아 가두어 사문(查問)케 하고, 태인의 주인(主人)도 또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하게 핵문(覈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형조에서 그 서리와 겸인(僉人) 등을 사문했더니, 그 공사(供辭)에 이르기를, ‘어사는 단지 탕반(湯飯) 몇 숟갈을 먹었을 뿐이고, 남은 밥은 겸인들이 먹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 공사를 보고 모두 풀어주라 명하였다.</p>	<p>諫院【大司諫韓師直。】申前啓，不允。又啓言：“向來御史洪亮漢，行到泰仁縣，聞吏逋多至累千餘石，多般詞探，將欲出道按治之際，因食午飯暴死，人多致疑，傳說狼藉。請御史帶去書吏，令秋曹捉囚查問，泰仁主人，亦令道臣覈覈。”上可之。秋曹查問其書吏僉人等，其供辭以爲，御史只食湯飯數匙，餘飯僉人食之云。上覽其供，皆命放送。</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4월 23</p>	<p>호남(湖南) 여러 고을의 굶어 죽은 사람에게 홀전(恤典)을 시행하라 명하였다. 이때 삼남(三南)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호남이 더욱 심하여 임금이 북관(北關)의 곡식을 배로 운반해 진휼(賑恤)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방백(方伯)과</p>	<p>命施湖南諸邑餓死人恤典。時三南大饑，湖南尤甚，上命船運北關穀賑之。申飭方伯守令，極意賑濟，軍民賦役並</p>

<p>일(경술) 8번째기사 호남의 굶어 죽는 사람에게 홀전을 행하라고 명하다</p>	<p>수령에게 뜻을 다하여 주재(賙濟)할 것을 신칙했는데, 군민(軍民)의 부역(賦役)을 모두 견감(蠲減)해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하여 길에는 유개(流丐)가 없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없도록 하였다. 이때에 와서 보리가 익자, 도신(道臣)이 상문(上聞)했는데, 한 도(道)의 기민(飢民)으로서 죽은 자가 도합 1백 17명이었다. 임금이 그래도 측은히 여기며 마음 아파하고 관(官)에서 그 시체의 매장을 도와주라고 명하였다.</p>	<p>蠲減，民得安意自活，道無流丐，野無餓殍。至是麥熟，道臣上聞，一道飢民死者，合爲一百十七名。上猶惻然傷之，命官助其葬埋。</p>
<p>영조 101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4월 28일(을묘) 2번째기사 여러 도에 창고를 설치한 뒤 곡식이 줄어들어 있으면 처벌하라고 명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하교하기를, “나리포(羅里舖)는 전적으로 탐라(耽羅) 제주(濟州)를 위한 것이니, 양곽(涼藿) 등의 물건이 나온 뒤에라야 곡식을 갖출 수 있다. 만약 본주(本州)를 접제(接濟)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수응(酬應)할 수 있으니, 비록 설치한 법은 아름다우나 기강이 무너져 준행(遵行)하지 아니하여 본포(本舖)에 곡식이 없어 다른 관청에서 곡식을 운반하는 폐단이 있게 만들었다. 차후로 본포에 엄중히 신칙하여, 만약 곡식이 텅 비게 만든다면 도신(道臣)은 중죄(重罪)로 다스리고, 해당 현령(縣令)에게는 금고(禁錮)의 형률을 시행케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남쪽의 포항창(浦項倉)과 북쪽의 교제창(交濟倉)은 곧 남과 북이 서로 구제하는 뜻이었는데, 올해는 심지어 양호(兩湖)의 곡식까지 운반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몇 달 동안 애를 써서 속을 태우게 하였다. 지금 남과 북에 각각 창고가 있고 또 다른 도에도 창고를 둘 것을 명하였으니, 그것이 서로 고대(苦待)하는 것보다는 남쪽의 곡식으로 남쪽을 구제하고 북쪽의 곡식으로 북쪽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차후로는 남과 북을 논할 것 없이 창고를 설치할 곳은 상평창(常平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모두 ‘제민창(濟民倉)’이라 이름하라. 비록 ‘교(交)’자는 없지만, 이것은 곧 서로 널리 구제하는 뜻이다.” 하고,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여러 도(道)에 신칙하여 창고를 설치한 뒤 창고의 곡식이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줄어들어 있으면 도신과 지방관을 나리포의</p>	<p>上引見大臣備堂。教曰：“羅里舖，專爲耽羅濟州，涼藿等物出來，然後可以備穀。若有接濟本州之事，則自可酬應，雖設置法美，綱頽不遵，本舖無穀，致有他官運穀之弊。此後嚴飭本舖，其若朽然，道臣重繩，該縣令施以禁錮之律。”又教曰：“南之浦項，北之交濟，卽南北相濟之意，而今年甚至於運穀兩湖，使其君幾月焦心。而今則南北各有倉，又命他道設倉，與其互相苦待，曷若南穀濟南，北穀濟北之爲愈哉？此後則勿論南北設倉處，依常平倉例，皆名曰濟民。雖無交字，此乃相爲廣濟之意。”令備局申飭諸道，設倉之後，倉穀或有欠縮者，道臣地方官，依羅里舖例，重繩。</p>

	예에 의해 다스리게 하였다.	
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6월 16 일(임인) 1번째기사 장마가 그치지 않으니 3일 동안 감선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영제(祭)를 이미 지냈는데도 장마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3일 동안 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 기간이 되자 예조에서 복선(復膳)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장마가 개지 않았다는 것으로 또 3일 동안 감선하라고 명하였다.	壬寅/上以祭既行，而淫霖不止，命減膳三日。及期，禮曹請復膳，上以雨未霽，又命減三日
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6월 16 일(임인) 2번째기사 윤동도·이창수·한광조를 파직시키다	우의정 윤동도(尹東度), 이조 판서 이창수(李昌壽), 도승지 한광조(韓光肇)를 파직시켰는데, 이는 부응교 홍술해(洪述海)가 약원(藥院)의 일로써 상소하여 논핵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대가(大駕)가 창덕궁(昌德宮)에 거둥하였을 적에 탕제(湯劑)를 드실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는데도 즉시 올리지 않았다. 이는 미처 달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10일이 지났는데도 홍술해가 달이는 것을 감독하지 않고서 드실 것만 권한 것은 약을 맛보는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성실히 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으로 세 제조(提調)를 모두 공격(攻斥)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삼사(三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임금이 홍술해도 또한 그때 삼사로 있었으면서도 즉시 논계(論啓)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러 날 헤아리다가 권위(權威)를 빙자하여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경알(傾軋)하고 고감(敲滅)하는 습관을 부렸다는 것으로 노하여 나무라고 이어서 삭직(削職)시켰는데, 승지 이담(李潭)이 독계(獨啓)를 올려 간쟁하니, 임금이 또한 체직시켰다. 그리고 논한 것이 국체(國體)에 관계된다는 것으로 약원의 여러 신하들까지 모두 파직시켰다. 홍봉한(洪鳳漢)을 다시 좌의정에 임명하고 서지수(徐志修)를 이조 판서로, 이득중(李得宗)을 대사헌으로, 이의철(李宜哲)을 대사간으로, 이시정(李蓍廷)을 헌납으로, 김치양(金致讓)을 수찬으로 삼았다.	罷右議政尹東度、吏曹判書李昌壽、都承旨韓光肇職，副應教洪述海、以藥院事疏論之也。先是駕幸昌德宮，藥院請進湯劑，上許之而不即進。蓋未及煎故也。至是過一旬，述海以不監煎而徒勸進，失嘗藥之責，有不誠之罪，請罪三提調并斥，不言三司。上以述海亦其時三司，而不即論啓，揣摩多日，藉所重斥異已，以售傾軋敲滅之習，怒責之，仍削其職，承旨李潭獨啓爭之，上亦遞之。以所論關國體，并罷藥院諸臣。以洪鳳漢復拜左議政、徐志修爲吏曹判書、李得宗爲大司憲、李宜哲爲大司諫、李蓍廷爲獻納，金致讓爲修撰。
영조 102권, 39년	헌부 【지평 구상(具庠)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憲府【持平具庠。】申前啓，不允。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6월 23  
일(기유) 2번째기사  
헌부에서 대망에 대해  
아되고 통의하라고 한  
하교를 거둘 것을 청  
하다

송문현(宋文鉉)·이세호(李世壕)의 일은 아된 대로 하게 하였다. 이어서 왕부(王府)에 명하여 문안(文案)을 조사하여 아뢰어 율명(律名)을 정하게 하였다. 다 아된 다음 구상(具庠)이 또 소회를 아뢰기를,  
“지난번 대망(臺望)에 대해 먼저 아뢰고나서 통의(通擬)하라고 하신 하교는 실로 대각(臺閣)의 관원을 신중히 가리려는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간(臺諫)의 통망에 대해서는 유사(有司)가 있는 것이니, 잘못 가렸을 경우에는 책벌(責罰)을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가리지 못할까 우려하여 반드시 재품(裁稟)을 거치게 한다면 이는 국체(國體)에 손상이 있게 됩니다. 청컨대 앞서의 하교를 환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간의 체통에 맞는 말이라는 것으로 윤허하였다. 구상이 또 아뢰기를,  
“금주령(禁酒令)을 범한 사람을 일률(一律)15639)로 처단하게 한 성의(聖意)는 반드시 범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엄중한 법과 가혹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이것은 사율(死律)이 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죽인 자와 같은 죄를 주는 것을 영구한 상전(常典)으로 만드는 것은 후손들에게 너그러움을 전하는 모유(謨猷)가 아닙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금주령을 범한 무리들은 감사(減死)로 감단(勘斷)하여 조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곧바로 감사할 것을 청하는 것을 나는 그르게 여기고 있지만, 대체(大體)는 옳다.”  
하고, 드디어 법조(法曹)에 명하여 금주령을 범한 술의 양의 다과(多寡)로써 등급을 나누어 죄를 정하게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권극(權極)이 금주령을 범한 사람은 효시(梟示)할 것을 청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남태회(南泰會)가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윤구

文鉉·世壕事依啓。 仍命王府，考文案持奏，定其律名。 啓畢，庠又以所懷奏曰：“向有臺望先稟後通之教，實慎簡臺閣之聖意也。 然臺通，卽有司存，不擇則責罰可也，爲慮不擇，必經裁稟，則國體損矣。 請還收前教。” 上以得臺體，允之。 庠又奏曰：“犯釀者之斷以一律，聖意必欲其毋犯。 而利之所在，雖嚴法峻刑，民不從令，況此非死律。 而與殺人者同罪，以爲永久之常典，非垂裕之謨。 請自今犯釀之徒，減死勘處。” 答曰：“直請減死，予雖謂非，大體則是。” 遂命法曹，此後以犯釀多寡，分等定罪。  
【史臣曰：“權極請犯釀者梟示，未幾南泰會啓言，南兵使尹九淵犯禁，上命宣傳官往搜之，只得空壺。 九淵因此被誅，而犯者猶相續，前後死者甚多，朝野惴恐莫敢言。 而庠能以一言，感回上聽，始有減律之議，識者多之。”】

	<p>연(尹九淵)이 법을 범했다.’고 아뢰니, 임금이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수색하여 오게 하였으나 단지 빈 술병 뿐이었다. 그러나 윤 구연은 이 때문에 주참(誅斬)되었다. 그런데도 범하는 사람이 서로 계속 잇따라서 전후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매우 많았으므로 조야(朝野)가 모두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구상이 능히 한마디 말로 임금의 마음을 감회(感回)시켜 비로소 감률(減律)하라는 의논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식자(識者)들이 &lt;구상을&gt; 훌륭하게 여겼다.”</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7월 9일 (갑자) 1번째기사 동몽 교관에게 학도들을 데리고 입시하도록 명하고 동궁에게 시좌하게 하다</p>	<p>동몽 교관(童蒙教官)에게 학도(學徒)들을 데리고 입시하도록 명하고 동궁(東宮)에게 시좌(侍坐)하라고 명하였다. 동몽 교관에게 《소학(小學)》을 강하게 한 다음 동궁에게 글 뜻을 질문하게 하였다. 찬물(饌物)을 선사(宣賜)하고 상으로 지필(紙筆)을 차등 있게 주었다.</p>	<p>甲子/命童蒙教官，率學徒入侍，命東宮侍坐。童蒙講《小學》，使東宮問文義。宣饌賞紙筆有差。</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7월 21일(병자) 3번째기사 홍봉한이 원공을 혁파하여 절약하는 뜻을 보일 것을 청하다</p>	<p>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태상시(太常寺)의 맥아(麥芽)는 원공(元貢)인데 &lt;그 대가(代價)로&gt; 쌀 2백斛(斛)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술을 만드는 것을 파하고 단술을 만들고 있으므로 소용되는 것이 30석(石)에 불과합니다. 적전(籍田)에서 거두는 것만으로도 그 소용에 잇대기에 충분하니, 청컨대 원공을 혁파하여 절약하고 줄이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근래 과일(果)을 제기(祭器)에 벌여놓는 높이가 척수(尺數)의 정식(定式)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청컨대 이정(釐整)하여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식자(識者)들은 홍봉한이 제수(祭需)의 감손을 청하였다는 것으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공격(攻斥)하였는데. 그것이 국체(國體)를 손상시켰기 때문이었다.</p>	<p>領議政洪鳳漢奏曰：“太常麥芽元貢，給米二百斛，而罷酒爲醴，則所用當不過三十石。籍田所收者，足繼其用，請革罷元貢，以存節省之意。且近來造果之器上高排，有違於尺數定式，請釐改。”上可之。識者以鳳漢之請減祭需，譁然攻之，以其損國體也。</p>
<p>영조 102권, 39년</p>	<p>경기 감사 홍명한(洪名漢)을 파직시키고 광주 부윤 김응순(金應淳)을 잡아다</p>	<p>命罷京畿監司洪名漢，拿問廣州府尹金</p>



<p>(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7월 21일(병자) 5번째기사 홍명한을 파직시키고, 김응순을 잡아다 신문하게 하다</p>	<p>신문하게 하였다. 부민(府民)이 금주령(禁酒令)을 범했기 때문이다.</p>	<p>應淳。以府民犯釀也。</p>
<p>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8월 2일(병술) 3번째기사 홍봉한이 영희전의 제향과 각릉의 기신제에 쓰는 그릇을 교정할 것을 청하다</p>	<p>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영희전(永禧殿)의 다섯 번 제향(祭享)에 쓰이는 과품(果品)이 다르고 승수(升數)도 같지 않은데 각릉(各陵)의 기신제(忌辰祭) 때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다섯 번의 제향과 각릉 기신제에 들어가는 것은 2승(升) 3홉(合)을 기준으로 삼고 고제(告祭)에 쓰는 것은 1승(升) 반을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각종 유과(油果)를 높이 벌여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척수(尺數)가 있으니, 이를 담은 그릇과 되는 두승(斗升)을 모두 교정(校正)하여 그 고하(高下)를 고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領議政洪鳳漢奏言：“永禧殿五享果品參差，升數不同，各陵忌辰祭亦然。五享及各陵忌辰祭所入，以二升三合爲準，告祭所用，以一升半爲準。且各樣油果之高排，既定尺數，其所盛之器與所量之斗升，竝令較正，均其高下。”上可之。</p>
<p>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8월 5일(기축) 2번째기사 홍봉한에게 향사의 품식을 이정하고 법제로 정하게 하다</p>	<p>영의정 홍봉한에게 향사(享祀)의 품식(品式)을 이정(釐正)하고 이어서 법제(法制)로 정하여 태상시(太常寺)15661)와 예조(禮曹)에 보관하게 하였다. 처음 태상사에서 쓰는 유밀(油蜜)의 공미(貢米)가 점점 증가되어 거의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식(定式)하니, 해마다 공미 수천 곡(斛)이 줄어들었다.</p>	<p>命領議政洪鳳漢，釐正享祀品式，仍爲定制，藏于太常及禮曹。初太常所用油蜜貢米漸增，殆不可支，至是定式，歲省貢米累千斛。</p>
<p>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8월 8일(임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나리포(羅里鋪)에 대한 일은 이제 절목(節目)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하순(下詢)하니, 모두들 절목이 잘 만들어졌다고 대답하자, 절목을 즉시 계하(啓下)하라고 명하였다. 탐라(耽羅)에</p>	<p>壬辰/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洪鳳漢奏曰：“羅里鋪事，今已成節目矣。”上博詢諸臣，皆以節目善成爲對，命節目卽爲啓下。耽羅出來涼藿及物種，</p>

<p>홍봉한이 나리포에 대한 절목이 완성되었음을 아뢰다</p>	<p>서 나오는 양곽(涼藿)과 기타 물종(物種)을 절반은 양호(兩湖)의 각 고을에 주고 절반은 본포(本鋪)에서 발매(發賣)하게 하되 때에 따라 신축성 있게 하라는 것으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일체로 행회(行會)하게 하였다.</p>	<p>半授兩湖各邑，半自本鋪發賣，而隨時闊狹事，令備局一體行會。</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9월 16일(경오) 1번째기사 경조의 사민들 가운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쌀을 하사하다</p>	<p>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친림(親臨)하여 경조(京兆)의 사민(四民)들 가운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등 있게 쌀을 하사하였다. 하교하기를, “왕자(王者)가 백성을 보살핌에 있어 어떻게 서울과 지방을 달리할 수 있겠는가?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분부하여 경오년(15699)의 전례에 의거하여 저치미(儲置米)와 상진미(常賑米)로 서울과 똑같이 사민(四民)을 구휼하게 하라.” 하였다.</p>	<p>庚午/上親臨興化門，集京兆四民之無告者，賜米有差。教曰：“王者視民，京外何異？分付八道兩都，依庚午年例，以儲置米常賑米，一體顧恤四民。”</p>
<p>英祖 102卷, 39年 (1763 癸未 / 청 건륭(乾隆) 28年) 9月 16日(庚午) 2번째기사 함경 감사 이창의가 녹용을 봉진 하면서 올린 장계를 열람하다</p>	<p>임금이 함경 감사 이창의(李昌誼)가 녹용(鹿茸)을 봉진(封進) 하면서 올린 장계(狀啓)를 열람하고나서, 하교하기를, “제사에 녹해(鹿醢)를 쓰던 것을 장해(獐醢)로 대신하도록 할 것을 《태상지(太常誌)》에까지 기재하였는데, 이는 매우 명분을 바르게 하는 뜻이 아니다. 이제 녹용의 봉진으로 인하여 사슴이 없는데도 녹용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따라서 《태상지》 가운데 노루로 대신하게 한 한 구절은 말거(抹去)하도록 이정(釐整)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가(貢價)를 참작하여 더 내림으로써 제향(祭享)에는 명분이 바르지 않은 탄식이 없게 하고 공인(貢人)에게는 억울함을 일컫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뒤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사슴은 노루와 달라서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황단(皇壇)과 종사(宗社)·문묘(文廟) 이외에는 청컨대 전대로 대봉(代捧)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上覽咸鏡監司李昌誼鹿茸封進狀啓，教曰：“祭用鹿醢，代以獐醢，至載於《太常誌》，甚非正名之義。今因鹿茸封進，乃覺豈無鹿而獨有茸乎。不可不釐正《太常誌》中代獐一節抹去。貢價參酌加下，於祭享無名不正之歎，於貢人無稱冤之弊。後領議政洪鳳漢奏曰：“鹿異於獐，不可多得。皇壇及宗社文廟外，請依前代捧。”上從之。</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乾隆) 28년) 10월 19</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갑산(甲山) 등 고을에서 육사(六司)에 바치는 인삼(人蔘)·황기(黃芪)와 세폐(歲幣)를 감하라고 명하였는데, 도신(道臣)의 장청(狀請)을 따른 것이다.</p>	<p>壬寅/上引見大臣備堂。命減甲山等邑六司所納蔘黃及歲幣，從道臣之狀請也。</p>

<p>일(임인) 1번째기사 갑산 등 고을에서 바 치는 인삼·황기와 세 폐를 감하라고 명하다</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0월 25 일(무신) 1번째기사 인경 왕후의 기신제에 쓸 향을 맞이하고, 술 대신 꿀을 내리다</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지영(祇迎)하였다. 이어서 문무과(文武科) 출신(出身)들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은 국기(國忌)여서 재계(齋戒)하는 중이기 때문에 술을 하사할 수가 없다. 대신 꿀(橘)을 내리겠다.” 하고, 손수 사언(四言) 한 구(句)를 써서 조덕성(趙德成)·서명선(徐命善)·김귀주(金龜柱) 등에게 각기 하사하였는데, 모두 예전에 면칙(勉飭)한 뜻을 생각해서였다.</p>	<p>戊申/上詣崇政殿月臺，祇迎仁敬王后忌辰祭香。仍召見文武出身。教曰：“今日以國忌齋戒，不得賜酒。代之以橘矣。”手書四言一句，各賜趙德成·徐命善·金龜柱等，皆念舊勉飭之意也。</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2월 2 일(갑신) 3번째기사 제주의 삼명일 진상은 내년 가을까지 봉진을 정지시키라고 명하다</p>	<p>제주(濟州)의 삼명일(三名日) 진상(進上)은 내년 가을까지 봉진(封進)을 정지시켜 진자(賑資)에 보태게 하고 내년의 공마(貢馬)도 일체 봉진을 정지시키라고 명하였다. 본도(本島)에 흉년이 들어서 목사(牧使)가 장청(狀請)한 때문이었다.</p>	<p>命濟州三名日進上，限明秋停封，以補賑資，明年貢馬，一體停封。因本島歉荒，牧使狀請也。</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2월 2 일(갑신) 4번째기사 호남에 우역이 발생하 여 죽은 소가 1만 마 리나 되다</p>	<p>호남(湖南)에 우역(牛疫)이 발생하여 죽은 소가 1만 마리나 되었다. 제도(諸道)에 명하여 소잡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p>	<p>湖南有牛疫，死以萬數。上命諸道禁屠。</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2월 9 일(신묘) 1번째기사 탐라에서 귤을 진공하 다</p>	<p>탐라(耽羅)에서 귤을 진공(進貢)하였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 귤을 친신(薦新)하였다. 옥상궁(毓祥宮)에 들러 배알하였고 저녁에 환궁(還宮)하였다.</p>	<p>辛卯/耽羅進貢柑。上幸昌德宮，薦柑于璿源殿，歷拜毓祥宮夕還宮。</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2월 10 일(임진) 1번째기사 귤을 반사하고 나서 시사하다</p>	<p>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귤을 반사(頒賜)하고 나서 시사(試士)하였다. 으뜸은 진사(進士) 권엄(權巽)이었는데,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이날 밤 시관(試官)들을 불러서 찬선(饌膳)을 베풀고 나서 이어서 하고하기를, “옛날 송나라 태조(太祖)는 설야(雪夜)의 고사(故事)15766)가 있었는데, 이제 군신(君臣)이 한 전당(殿堂)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옛날과 지금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오늘 함께 음식을 먹는 지금한 뜻을 잊지 말라.” 하였다.</p>	<p>壬辰/上御金商門，頒柑試士，居首進士權巽，命直赴殿試。是夜召諸試官宣饌，仍教曰：“昔宋祖有雪夜故事，今者君臣一堂同餐，古與今奚異也？其毋忘共餐之至意。”</p>
<p>영조 102권, 39년 (1763 계미 / 청 건륭 (乾隆) 28년) 12월 10 일(임진) 4번째기사 면시를 폐지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두다</p>	<p>임금이 일찍이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기를, “강(講)과 면시(面試)를 아울러 행할 수는 없으니, 그 가운데 불편한 것을 폐지시켜야 한다.” 하니, 지경연 윤급(尹汲)이 면시가 불편하다고 극언(極言)하자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장차 폐지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불가하다고 하니, 임금이 드디어 둘 다 그냥 두었다. 이 때 법령을 경장(更張)하는 것이 많았는데 과제(科制)와 금주(禁酒)를 더욱 엄밀히 하였다.</p>	<p>上嘗問諸臣曰：“講與面試，不可並行，當罷其不便者。”知經筵尹汲極言面試不便，上然之，將罷之。領議政洪鳳漢以爲不可，上遂兩存之。時法令多更張，而科制及酒禁，尤嚴密。</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1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입직 군사에게 떡과 고기를 내리다</p>	<p>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입직 군사에게 떡과 고기를 내렸으니, 세수(歲首)에 호궐(犒饋)15786) 하는 것은 상례이다.</p>	<p>甲寅/上御崇賢門，賜入直軍餅肉，歲首犒饋，例也。</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1월 24 일(병자) 2번째기사 석강을 행하다. 부마의 혼구를 감하라고 명하 다</p>	<p>석강을 행하였다. 부마(駙馬)의 혼구(婚具)를 감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나라의 용도는 날로 소모되는데, 궁중의 혼사는 장차 거듭 겹치게 되어 임금이 지나친 사치를 없애고자 준촉(樽燭)·향화(香花)·조각·옷칠·도금(鍍金) 등의 제도를 혹은 없애고 혹은 감하였으며, 식품도 단지 다섯 그릇에만 그치게 하였다. 그러나 한 번의 혼사를 치루는 비용이 1만 냥을 넘었다 한다.</p>	<p>行夕講。命減駙馬婚具。時國用日耗，而宮婚將稠疊，上欲祛其侈濫，凡樽燭香花刻鏤髹鍍之制，或蠲或減，而食品亦只五器而止。然一婚之費，猶過萬金云。</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1월 29 일(신사) 2번째기사 선원전의 개수를 명하 고, 영흥 부사 이계상 을 파직시키다</p>	<p>선원전(璿源殿)의 개수(改修)를 명하고, 영흥 부사(永興府使) 이계상(李啓祥)을 파직하였다. 당초에 허준영(許俊永)이란 자가 본전의 수복(守僕)으로서 밤에 전내에 들어가 제기(祭器)를 훔쳤는데, 일이 발각되어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니, 임금이 수토(守土)의 신(臣)을 파직하고 어사 이석재(李碩載)를 보내어 허준영을 배었으며, 그의 숙부 허세찬(許世贊)도 공모하였기 때문에 형장을 가한 뒤에 외딴 섬에 정배하였다. 대사헌 이규채(李奎采)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역적의 처자식들이 서로 오가며 체결(締結)하는 것을 전연 단속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 거지를 임의로 하도록 맡겨 두었으니, 청컨대 제주(濟州)의 양읍 수령을 원방에 정배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대사간 홍양한(洪良漢)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무신년(15812) 역적 박미귀(朴美龜)의 연좌(連坐)에 해당하는 죄인을 궁방(宮房)의 구사(丘史)(15813) 로써 관문(關文)을 발송했으니, 흐리멍덩함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판결사(判決事) 박도원(朴道源)을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p>	<p>命修改璿源殿，罷永興府使李啓祥。初許俊永者，爲本殿守僕，夜入殿內，偷祭器，事發道臣狀聞，上罷守土之臣，遣御史李碩載，誅俊永，其叔世贊與之同謀，故刑配絕島。大司憲李奎采申前啓，不允。又啓：“以逆孥往來網繆者，全不管束，任其行止，請濟州兩邑守令遠竄。”依啓。大司諫洪良漢申前啓，不允。又啓：“戊申賊美龜應坐罪人之以宮房丘史發關，未免矇然。請罷判決事朴道源職。”依啓。</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2월 4일</p>	<p>임금이 사복시에 나아가 강익주(姜翊周)를 국문하였다. 강익주도 역시 제주(濟州) 사람으로 조영득(趙榮得)의 첩 월중매(月中梅)의 아버지이다. 조영득과 결탁하여 소를 잡아 회음(會飲)한 자로 이어대(李汝大)의 원인(援引)한 바 되</p>	<p>上御太僕，鞫姜翊周。翊周亦濟州人，而榮得妾月中梅之父也。與榮得交結，椎牛會飲者，而爲汝大所援引，至是就</p>

<p>(병술) 2번째기사 사복시에 나가 강익주를 국문하다</p>	<p>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잡아다 국문하게 되자 강익주가 완강하게 참고 불복하다가 드디어 장폐(杖斃)되었다.</p>	<p>拿，翊周頑忍不服，遂杖斃。</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3월 19 일(경오) 1번째기사 황단에서 망배례를 행 하다</p>	<p>임금이 황단에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이어 단소(壇所)에 나아가 신탭(神榻)에 봉안(奉安)한 친제(親製) 열천지(冽泉志)를 몸소 살피고 오시(午時)가 되어 상선(常膳)을 들지 않으니,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굳이 들기를 청하자, 임금이 오열(嗚咽)하며 말하기를, “옛날 만세산(萬歲山)15869)의 일을 생각하면 음식이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하고, ‘황조 일월 아동 대명(皇朝日月我東大明)’의 여덟 자를 써 내리면서 인쇄하여 배제(陪祭)한 여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제물의 돼지가 살찌지 않았다고 하여 전생서령(典牲署令)과 해서(該署)의 제거(提舉)를 파직하였다.</p>	<p>庚午/上行望拜禮于皇壇，仍詣壇所，親審神榻奉安，親製《冽泉志》，日至午，不御常膳，藥院諸臣固請，上嗚咽曰：“緬昔萬壽山之事，食豈下咽？”書下皇朝日月我東大明八字，印頒陪祭諸臣。以豕牲不肥臚，罷掌牲令及該署提舉。</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4월 17 일(무술) 3번째기사 재실에 있는 관학 유 생을 소견하고 하교하 다</p>	<p>임금이 승현문(崇賢門)에 나아가 거재(居齋)하는 관학 유생(館學儒生)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내가 비록 임금으로서의 덕은 없다마는 너희들은 마땅히 열성조에서 선비를 배양한 은덕을 생각하고, 또 오늘 고기[肉]를 내린 뜻을 깊이 유념하여 소회가 있으면 글을 올려 나를 면계하고 경망한 자들을 따라 이번에 소를 올린 유생들과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니, 여러 유생들이 배복(拜伏)하여 진사(陳謝)하였다.</p>	<p>上御崇賢門，召見館學居齋儒生，教曰：“予雖無君師之德，宜思列朝培養之恩，且體今日賜肉之意，有懷則陳章而勉予，毋隨浮躁者，如今者疏儒爲也。”諸生拜伏陳謝。</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4월 23 일(갑진) 1번째기사 정언 구상이 태묘에 술을 올릴 것을 청하</p>	<p>임금이 주장(晝講)을 행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정언 구상(具庠)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옛날 성왕(聖王)이 일찍이 술을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나 제사에 있어서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저 술이 생긴 이후로부터 비록 혹 백성들의 양조함을 금하기는 하였으나 신도(神道)에 향사(享祀)하</p>	<p>甲辰/上行晝講。憲府申前啓，不允。正言具庠申前啓，不允。又啓：“古之聖王，未嘗不以酒爲戒，而至於祭祀，固未嘗闕焉。故自夫有酒以來，雖或禁民之釀，未嘗廢神之享。三代以後，臣不欲引以爲言，以出於《酒誥》者觀</p>

다

는 것을 폐한 일은 없었습니다. 신은 삼대(三代)15890) 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무왕(武王)의 금주령은 지극히 엄절하여 말미에 가서는 ‘내가 죽일 것이다.’라고까지 하였으나 그래도 오히려 말하기를, ‘문왕(文王)이 서방(庶邦)·서사(庶士)에게 칙계(勅戒)하기를, 「제사에는 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하늘이 명을 내려 비로소 우리 백성에게 술을 만들게 한 것은 큰 제사를 위해서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문왕도 일찍이 술을 금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제사에는 술을 쓰도록 하여 심지어 하늘이 백성으로 하여금 술을 만들게 한 것은 오직 큰 제사를 위한 것뿐이라고 하였으니, 술을 금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또 제사에는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예(禮)는 오로지 성(誠)과 경(敬)에 있고 제물에 있지 않다고 하겠으나 헌수(獻酬)하는 예와 관장(裸將)15891) 하는 절차는 그 까닭이 신명과 접하고 화기를 인도하는 데에는 술을 주로 하여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商)·주(周)의 묘사(廟祀)의 악가(樂歌)에는 번번이 청주(淸酒)를 일컬었던 것인데 선유(先儒)가 ‘제사의 예에 관천(慣薦)이 소중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천승(千乘)의 높은 자리에서도 증삼(曾參)과 민자건(閔子騫)같은 효행을 몸소 실천하시므로 출천(出天)의 성효는 백왕(百王)에 뛰어나시어 종묘의 제사에 예(禮)와 경(敬)이 두루 지극하시고, 악무(樂舞)와 조천(俎薦)15892) 을 직접 살피어 신칙하지 않음이 없으시며 의절(儀節)과 예수(禮數)를 지극히 융숭하게 하면서도 유독 고례(古禮)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으시니, 이는 성상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대체로 감주[醴]의 유래는 오래입니다. 감주로 술을 대신하여도 진실로 신(神)을 강림(降臨)케 하는 도리에는 흠이 없겠고 또 술의 해로움은 기어코 금하지 않아서는 안되느니만치 태묘(太廟)에 쓰지 않은 다음에야 바야흐로 나라 안에 술이 없게 될 터이니 이는 실로 전하의 부득이한

之, 武王禁酒之令, 至爲嚴截, 末乃以爲予其殺之, 而猶曰文王詰誥庶邦庶士曰, ‘祀茲酒’, 又曰, ‘惟天降命肇我民, 惟元祀,’ 是則文王亦嘗禁酒, 而猶於祭祀, 使之用酒, 至以爲天之令民作酒者, 惟爲大祭祀而已, 酒之不可不禁, 而又不可不用於祭祀者, 於此可驗矣。夫祭祀之禮, 雖曰專在於誠敬, 不在於物, 而獻酬之禮, 裸將之節, 所以接神明而導和氣者, 莫不以此爲主。故商周廟祀之樂歌, 輒稱淸酒, 而先儒以爲享祀之禮, 裸薦爲重者, 正謂此也。伏觀我殿下莅千乘之尊, 而躬曾閔之行, 出天誠孝, 卓越百王, 宗廟之享, 禮敬兼至, 樂舞俎薦, 無不董飭, 儀文度數, 極其隆摯, 而獨於古禮之所重者, 尙未復舊, 此非聖慮之未及於斯耳。蓋以醴卽古也, 以醴代酒, 固無欠於格神之道, 且酒之爲害, 不可不必禁乃已, 則不用於太廟, 然後方可以國中無酒, 此實殿下不得已之苦心, 而第伏念儀禮兩尊, 周官五齊, 皆見其酒醴并設, 而未見其以醴代酒。蓋玄酒醴酒之設, 則便是不忘報之義, 而至於釀五穀之精, 取郁烈之氣, 以之灌(池)

고심이겠습니까만, 삼가 생각하건대 《의례(儀禮)》의 양준(兩存)15893) 과 《주례(周禮)》의 오제(五齊)15894) 는 모두 술과 감주를 병설하였지 감주로 술을 대신하였음은 볼 수 없습니다. 대체로 현주(玄酒)15895) 나 감주를 진설했던 것은 문득 이는 보본(報本)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고, 오곡의 정(精)을 빚어 매우 향기로운 기운을 취하여 땅에 붓고 신에게 바쳐 화창한 기운이 서로 접하게 하는 데에는 술을 당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삼대(三代)의 예에서도 언제나 술로 근본을 삼았던 것입니다. 또 종묘의 예는 지극히 존귀하고 성대한 것이어서 설사 술을 써서 금령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서 짐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또 왕공(王公)과 사서(士庶)의 예는 높고 낮음이 현격한 만큼 태묘에만 쓰고 사서의 제사에는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한스러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묘향(廟享)에서 쓰는 것은 사실 금령에 방해로울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백성들이 마시는 것은 금하고 오직 제사에서만 썼던 것이 전부터 성왕들의 일찍이 행해 온 바로써 서로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나라 안에는 술이 있는데도 묘향에서만 권한다고 한다면 정례(情禮)의 결함과 사체의 휴손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아! 자고로 술을 금하는 영이 전하처럼 시종 불변한 때가 있지 않았고 또 전하처럼 은위(恩威)를 병행한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률(減律)의 법은 참으로 영구히 폐단이 없다고 말할 만하니, 누라서 감격하고 추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감주를 쓰는 한 절차만은 아직도 흠전(欠典)이 되어서 일국의 신민들이 모두 이것 때문에 애를 태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술과 감주의 뜻을 모르는 자라도 혹은 ‘금주령 때문에 심지어 종묘의 제향에도 쓰지 않으니 범법자는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더러는 ‘금령은 비록 늦출 수 없지만 종묘의 제향에 술을 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한할 것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대저 술을 쓰건

[地] 獻神, 和暢交接者, 莫如酒, 故三代之禮, 未嘗不以酒爲本。 且宗廟之禮, 至尊且盛, 設令用酒而有妨於禁令, 其於輕重, 固當有斟酌之道。 且王公士庶之禮, 隆殺懸絕, 但用之太廟, 則士庶之祭, 雖不得用, 固無恨矣。 以此言之, 廟享之用, 固無害於禁令。 況禁民之飲, 而惟祀之用, 自是聖王之所嘗行, 而不相悖者乎? 萬一國中有酒, 而只闕於廟享, 則其情禮之缺, 事面之虧, 當如何哉? 噫! 自古禁酒之令, 未有如殿下之終始不撓, 亦未有如殿下之恩威并行。 減律之法, 誠可謂永久無弊, 孰不感頌, 而用禮一節, 尙爲欠典, 一國臣民, 莫不以此耿耿。 雖下民之不知酒禮之義者, 猶或以爲以禁令之故, 至於廟享, 闕用犯酒之類, 殺固無惜, 又或以爲禁令, 雖不可弛, 而廟享無闕, 何所恨焉? 夫用酒用禮, 於渠有何利害, 而猶復如是者, 此眞秉彝之心, 而用酒之不容但已者, 可以見矣。” 答曰: “諫臣所引經義, 言雖是也, 太廟之用禮用玄, 其不忘本一也。 今大廟用旨酒, 使卿大夫不用, 則非絜矩之義也。 上下俱用酒, 則禁



	<p>감주를 쓰건 저들에게는 하등의 이해가 없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상정(常情)이기 때문이니, 단연코 술을 쓰지 않을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하겠습니까.”</p> <p>하니, 답하기를,</p> <p>“간신(諫臣)이 경의(經義)를 인용하여 한 말은 비록 옳다 하겠으나 태묘에 감주를 쓰건 현주를 쓰건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이다. 지금 태묘에는 술을 쓰면서 경대부(卿大夫)더러 쓰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혈구(絜矩)15896)의 도리가 아니다. 위와 아래에서 다 술을 쓴다면 금령이 해이(解弛)할 것이므로 이미 태묘에 교유하였는데, 어찌 번거롭게 하느냐?”</p> <p>하고, 윤택하지 않았다.</p>	<p>令蕩然，既奏于廟，何敢瀆乎？”不允。</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4월 24일(을사) 1번째기사 조강을 행하여 《맹자》를 강하다</p>	<p>임금이 조강을 행하였다. 《맹자(孟子)》를 강하여 일양 일계장(日攘一鷄章)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담응증(痰凝症)이 있는데, 의원(醫員)은 고양이 가죽이 양약(良藥)이라고 말하나 내가 고양이 가죽을 쓰면 온나라가 본받아서 장차 고양이가 멸종될 것이다. 비록 음식이라 해도 또한 그러하다. 전에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도요새[桃腰鳥]를 나에게 보내 왔으나 나는 놓아보냈다. 사슴 꼬리[鹿尾]나 메추리 고기[鶻肉]도 내가 전에 즐겼던 것들이나, 올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역시 민폐를 끼칠까 두려워해서이다.”</p> <p>하였다. 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乙巳/上行朝講，講《孟子》，至[月]攘一鷄章，上曰：“予有痰凝之症，醫者以猫皮爲良藥，而予用猫皮，則一國效之，其將無猫矣。雖飲食亦然。昔年東平尉鄭載崙，以桃腰鳥餉予，而予放之。鹿尾鶻肉，亦予所嘗嗜者，然不命進者，亦恐貽民弊也。”憲府申前啓，不允。</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5월 14일(을축) 2번째기사 국용이 고갈되어 절약하라고 명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때에 국용(國用)은 더욱 고갈하였는데 쓸데없는 비용은 다단(多端)하여 효장궁(孝章宮)과 효순궁(孝純宮) 및 선의 왕비전(宣懿王妃殿)15908)의 궁인으로 아지(阿只)라는 명칭을 가진 자가 명칭은 있어도 실지는 없는데 공상(供上)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으니, 임금이 모두 제감(除減)하라고 명하고, 또 선혜청(宣惠廳)에서 올리는 생물(生物)의 공상도 쓸모가 없거나 명목이 바르지 못한 것은 제감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上行晝講，引見大臣備堂。時國用益耗，糜費多端，孝章·孝純宮及宣懿王妃殿宮人之以阿只名者，名存實無，而供上則至今不罷，上并命除減，且於惠廳進御生物之供，亦減其無用而名不正者。領議政洪鳳漢曰：“節省之方，非不欽仰，而殿下則有節省之意，經費則</p>

	<p>“절생(節省)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흠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절생하시려는 뜻은 계시나 경비(軍費)는 뒷구멍으로 소모되는 것이 많으니, 이 점은 절실히 반성해야 할 일이며, 이번의 제감은 실로 성덕(盛德)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p> <p>하였다. 홍봉한이 또 총융사(摠戎使) 구선복(具善復)의 논계대로 장산(長山)의 8둔(墩) 이외에 한두 둔대(墩臺)를 더 설치해서 새로 이속(移屬)된 과주(坡州)의 1개 면(面)의 민호(民戶)를 군오(軍伍)로 환정(換定)하여 궤액(闕額)에 보충하고 또 장산과 임진(臨津)의 두 진영으로 기각(掎角)15909)의 형세를 이루어 완급(緩急)이 있을 때에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허락하였다.</p>	<p>多尾閭之洩，此可以猛省者，然今者除滅，實盛德事也。”鳳漢又請依摠戎使具善復之論啓，長山八墩之外，加設一二墩臺，以新屬坡州之一面民戶，換定軍伍以補闕額，且以長山臨津兩鎮，爲犄角之形，以爲緩急備禦之圖，上許之。</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5월 20일(신미) 2번째기사 사직단에 나가 비를 빌다</p>	<p>임금이 보여(步輿)로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또 친히 비를 빌었다. 금초(禁草)가 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서(該署)의 제조(提調)를 파직하고, 감찰(監察) 송가상(宋可相)을 정의(旌義)로 귀양보냈다. 임금이 탕제(湯劑)를 물리치고 듣지 않았으며,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가 구대(求對)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p>	<p>上以步輿又親禱雨于社壇。以禁草不嚴，罷該署提調，竄監察宋可相于旌義。却湯劑不御，藥院諸臣求對，亦不許。</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5월 27일(무인) 1번째기사 홍봉한이 한양 백성의 공납을 덜어서 북도 백성에게 징수하기를 청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이어 비국(北國)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전에 북도(北道)에서 바치던 대구어(大口魚)를 민폐가 된다고 하여 경공(京貢)으로 만들었는데, 당년조(當年條)의 연조(年條)를 앞당겨서 미리 값을 지급하는 것이 이미 그릇된 규례(規例)가 되었습니다. 본도(本道)의 어떤 명목의 곡물이든지 덜어내서 백성들에게 거둬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약간의 포(布)만 당연히 내야 하는 북도 백성에게서 거두어 당해 공물(貢物)의 부족액만 보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소치(小齒)가 빠졌었는데 다시 나고, 머리가 이미 희었었는데 다시 검</p>	<p>戊寅/上行晝講，仍引見大臣備堂。頒議政洪鳳漢曰：“前以北道所納大口魚爲民弊，已作京貢，而當年條之引年預下，已成謬例。劃出本道某樣穀，毋使疊徵於民，只以略干布疋，收於當納之北民，以補該貢不足之數好矣。”上許之。上曰：“予之小齒既落而復生，頭髮已白而還黑，此異事也。”諸臣曰：“此稀有之事，實宗社無疆之福也。”</p>

	<p>어지니 이상한 일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이는 희귀한 일이니 실로 종사(宗社)의 무강(無疆)한 복이옵니다.”  하였다.</p>	
<p>영조 103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6월 13  일(계사) 1번째기사  의릉의 기신일에 친히  향을 전하겠다고 하고  하다</p>	<p>임금이 주장을 행하였다. 의릉(懿陵)의 기신일(忌辰日)에 친히 향을 전하겠다는 하교를 쓰라고 명하고 이어 서글픈 얼굴로 말하기를,  “오늘은 아우 연령(延齡)의 회갑(回甲)이 되는 날이다. 옛날 함께 용루(龍樓)15953) 를 모시던 생각을 하니 지금 어떻게 나의 마음을 억제하겠느냐? 해조(該曹)에 명하여 그 집에 음식물을 실어 보내게 하고 예조에 명하여 왕손(王孫)으로 그 뒤를 이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癸巳/上行畫講，命書懿陵忌辰日親傳香下教，仍愀然曰：“今日乃延齡介弟初度日也。憶昔同侍龍樓，今何以抑予懷？其命該曹，輸送食物于其家，其命禮曹，以王孫繼其後，俾奉其祀。憲府申前啓，不允。</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7월 5일  (을묘) 4번째기사  홍봉한이 통영이 피폐  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연초에 궤유를 금지하  라고 청하다</p>	<p>이때에 연이어 빈대(賓對)를 행하였는데, 부서 기회(簿書期會)15965) 가 아니면 대신이 건의한 경우가 없었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은 통영(統營)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수(歲首)에 궤유(饋遺)를 금지할 것을 청하고, 우의정 김상복(金相福)은 독서당(讀書堂)이 기울어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수리하기를 청하였다. 대체로 영곤(營關)15966) 이 용도를 절약하는 방법이 어찌 세수 궤유의 유무(有無)에 달려 있겠으며, 성조(聖朝)에서 문학을 숭상하는 정치가 독서당의 수리 여부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근본을 버리고 말단에서만 구제하려고 한단 말인가? 묘당의 모유(謀猷)가 이처럼 잔달았다.</p>	<p>時連行賓對，非簿書期會，則大臣無建白者。領議政洪鳳漢，以統營凋弊，請禁歲饋，右議政金相福以讀書堂傾圮，請加修葺。夫營關節用之方，豈在於歲饋之有無，聖朝右文之治，何關於堂宇之改否？而捨本救末，廟謨之瑣屑如此。</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8월 2일  (신사) 4번째기사  제사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김응순과  조엄의 상소</p>	<p>좌승지 김응순(金應淳)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월대(月臺)의 강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직접 도움되는 말을 구하는 하교를 받들었는데, 정녕 말씀이 간곡하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격동되어 감히 우(虞)나라와 하(夏)나라의 못 신하들이 서로 권면하는 말로 전하게 한번 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러나 신료들을 따라가 정원의 의계(議啓)에 참여하였습니다. 태상시(太常寺)에서 제수(祭需)를 줄여 정한 것은 옛날의 관례가 아니라고 여겨 예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려고 한 자가 있었으나, 그 사이에 의견</p>	<p>左承旨金應淳上疏，略曰：  “臣於月臺，叨陪法講，親承求助之下教，丁寧懇惻，自不覺寸忱之倍激，乃敢以虞夏群臣交勉之語，爲殿下一誦之，退而隨僚臣後，參院議之啓，以太常之減定享需，謂非古例，有欲援禮以陳者，而其間自有參差之見，議遂寢</p>

이 일치하지 않아 그 논의가 정지되고 말았는데, 신의 미혹(迷惑)한 견해에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우연히 고 참판 신(臣) 한성우(韓聖佑)의 묘도 문자(墓道文字)16004) 를 보았는데, 선왕조에서 제수를 줄여 정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한성우가 의논을 드리면서 주자(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지금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해 위아래에 쓸데없이 드는 경비를 모두 감하거나 혁파함에 있어 먼저 제수를 감한다는 것은 어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반도 채 살피지 못하고 무연(無然)히 두렵고 황연(恍然)히 깨달아 자기 스스로 속으로 말하기를, ‘고인이 임금을 섬길 때에 일마다 주자의 글을 인용하여 예를 잃지 않기를 기필하였다. 그런데 신과 같은 불초한 자는 견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그 말할 기회를 잃었으니, 만약 오늘날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정론(定論)을 뒤흔드는 사람이 될 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의 마음을 저버린 것이니, 어찌 묵묵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길은 절약해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감해야 할 것을 감하지 않는다든지 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감하는 것은 모두가 절약하는 요령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감해야 될 위아래의 쓸데없는 경비를 어찌 태상사에서 감하는 데에 그치고 말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 정한 제수는 매우 적당하게 정해졌으므로 다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체로 일국의 부유함으로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이때문에 그 당시 여러 신하들이 예전(禮典)을 참고하여 정식(定式)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절약한다는 뜻에서 갑자기 다식(茶食)과 다과(茶果)의 수량을 줄이고 또 진말(眞末)16005) 을 몇 말 줄이고 유청(油淸)을 몇 되 줄인다 하더라도, 줄이는 양은 몇 말 몇 되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1년의 공가(貢價)로 계산해 보더라도 2천 석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한 천승의

焉, 臣之迷見, 不知其爲大失矣。 偶於日昨, 伏見故參判臣韓聖佑墓道文字, 則先王朝有減定享需之議, 而聖佑獻議, 引朱子之說曰, ‘今不能大計, 上下冗費, 悉行減罷, 而先減享需, 豈不未安,’ 臣看未半, 憮然而懼, 恍然而悟, 私竊自語於心曰, ‘古人事君, 尙能動引朱書, 期不失禮, 如臣無似, 乃反識未及此, 失其可言, 若使此日, 不得見此, 則幾乎爲沮撓定論之人也,’ 臣既知其誤了, 而終又不能一言, 則是負臣心也, 豈可泯默而已乎? 噫! 裕國之道, 莫先於節用, 而當減而不減, 不當減而減, 俱未得爲省約之要, 則顧今上下冗費之可減者, 豈但止於太常之所減? 而伏況我朝享需所定, 至爲的當, 無容更議, 蓋以一國之富, 欲致隆於享祀之典, 則夫豈有限節乎? 此當日諸臣之所以參攷禮典, 著爲定式也。 今以節省之意, 遽減茶食茶果之數, 眞末而減幾斗, 油淸而減幾升, 所減不出於數斗數升, 而計除其一年貢價, 亦不過二千石云, 則夫以堂堂千乘之國, 豈可爲二千石而遽減其不當減也? 雖以各司冗費言之, 騎省之衛所軍價, 不能察

나라로서 어찌 2천 석을 줄이기 위해 대뜸 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각 관아에서 드는 쓸데없는 경비로 말하더라도, 기성(騎省)16006 위소(衛所)의 군가(軍價)가 얼마나 되는지 살피지 못했고, 군문(軍門)의 군색(軍色)을 대여해 준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탁지의 잡물색(雜物色)과 선혜청의 원잉미(原剩米)들이 모두 남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려(尾閭)의 누설이 되는 것들이 몇 천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미루어 계산하여 궁중과 부중에서 꼭 써야 될 것들만 남겨 두고 그 나머지는 모조리 감하거나 혁파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오히려 여전히 지탱해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백관의 녹봉을 감해도 되며 지방 관원의 녹봉을 감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또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모저모로 깊이 생각해 보면 별도의 방도가 없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매우 구차스러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고전(故典)대로 회복하게 하소서.”

하였다. 한성 좌윤 조엄(趙巖)이 또 상소하여 이 문제에 대해 잇따라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제수를 고쳐 바로잡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위아래의 의논이 비록 고르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고 규정 외의 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나왔으나, 필경에 고쳐 바로잡는 것이 감하기만 하였지 더해진 것은 없고 풍성하게 하려 했으나 풍성한 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정(雅正)할 즈음에 털끝만큼이라도 구례에 위배된다면 사전(祀典)을 중히 하는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제수 가운데 척기(尺器)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감하고 변두(饗豆)가 남는다는 이유로 감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능침(陵寢)의 기신제(忌辰祭) 때에 다식(茶食) 다섯 그릇을 전부 감하였으니, 오례(五禮)의 도식(圖式)으로 볼 때에 어찌 크게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지금 국가의 경비

也, 軍門之軍色貸下, 不能禁也, 度支之雜物色, 惠廳之原剩米, 率皆歸於濫用, 而此外尾閭之洩, 可合查減者, 不知其爲幾千萬, 推是而計, 至於宮中府中, 只存其不得已者, 餘悉減罷, 此猶不可支過, 則百官之祿俸可減也, 各邑之廩料可減也, 如是而又患難繼, 則長慮却顧, 豈無別般道理, 而乃爲十分苟簡之舉乎? 願殿下, 更命廟堂稟議, 以復故典焉。” 漢城左尹趙巖, 又上疏繼論之, 其疏略曰:

“享需之校正, 固知聖意之攸在, 而當初上下之論, 雖出於欲齊其參差不齊而已, 欲節其格外濫費而已, 畢竟校正者, 只有減而無所加, 欲其豐而未見豐。 苟於釐正之際, 一毫有違於舊例, 則於重祀典之道, 何如也? 伏聞享需中, 以尺器之不同而減之, 邊豆登之有餘而減之, 固已未安, 況陵寢忌辰祭時, 茶食五器則竝全減之, 其視五禮圖式, 豈不大違也? 顧今國家經用, 果能隨處減削, 尾閭之洩, 濫觴之弊, 一一盡防乎? 既未能盡防, 則此朱夫子所謂‘先減享需, 爲未安’者也, 《禮記》曰, ‘祭用數之仂’, 又曰, ‘祭豐年不侈, 凶

	<p>를 곳에 따라 삭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려(尾閭)의 누설과 남상(濫觴)16007)의 폐단을 일일이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왕 다 막을 수 없다면 이는 주자가 ‘먼저 제수를 감함은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며, 《예기(禮記)》에 ‘제사의 비용은 1년의 경비 중 10분의 1을 쓴다.’고 한 것이고 또 ‘제사는 풍년이라고 하여 사치하게 지내지 않으며 흉년이라고 하여 검소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옛날 성왕(聖王)의 사전(祀典)은 대체로 후한 쪽을 따랐으며 바꿀 수 없는 규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성에서 우러난 전하의 큰 효성과 신명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지성으로 어찌 사전이나 의절에 혹시라도 위배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전례를 널리 상고하여 지당(至當)한 데 돌아가도록 힘쓰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영의정 홍봉한이 또 차자를 올려 변론하였다. 임금이 김응순의 상소한 의논이 공물인(貢物人) 무리들이 근거없는 말을 하게 동요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직책을 체차하고, 아울러 태상시 및 전생서 공물인들을 먼 곳에 귀양 보냈다. 얼마 안되어 이들을 방면하고 이어서 태상시의 제수와 다식 다과를 옛날과 같이 회복하라고 명하였다.</p> <p>아! 근본에 보답하고 선조를 추모하는 성상의 정성에 나무랄 데가 없었으니, 제수를 줄이는 것을 임금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일을 맡은 신하들이 절약하는데 급급하여 경중을 참작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제수를 줄이는 것을 의논하였으니, 어찌 김응순·조엄과 같은 사람의 말이 없겠는가? 그리하여 심지어는 죄없는 공물인으로 하여금 귀양가는 형률을 받게 함으로써 결국 지나치게 처분을 내리게끔 하였다. 그러나 필경에 제수를 옛날처럼 회복한 것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p>	<p>年不儉’, 終古聖王之祀典, 蓋有從厚之義, 不易之規, 以殿下出天之太孝, 格神之至誠, 豈或有違於祀典儀文之間乎? 乞命禮官, 博攷典禮, 務歸至當焉。” 領議政洪鳳漢又陳筭辨之, 上以應淳疏論, 動於貢人輩浮言, 遞其職, 竝竄太常及典牲署貢物人等于遠地, 尋卽放之, 仍命復太常享需茶食果。噫! 聖上報本追遠之誠, 無所間然, 則非敢以省減享需, 爲君上之過也。任事之臣, 急於節省, 不量輕重, 遽議省減, 安得無金應淳趙曦之言? 而至使無罪之貢人, 反被刑配之律, 終不免處分之過當。然畢竟享需之復舊, 則未必不由於其言也。</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8월 13</p>	<p>임금이 명릉(明陵)의 기신에 쓸 향을 인정전 월대에서 지영하였다. 봉상시 도제조 홍봉한과 제조 구윤명(具允明)을 소대하고 하교하기를, “자나깨나 줄곧 사전(祀典)에 대해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들쭉날쭉하여 일정</p>	<p>壬辰/上祇迎明陵忌辰香于仁政殿月臺, 召見奉常都提調洪鳳漢、提調具允明, 教曰: “夙宵一念, 祀典也, 參差不齊,</p>

<p>일(임진) 1번째기사 명릉의 기신제에 쓸 향을 맞이하다. 제수를 감하는 것에 대해 하 교하다</p>	<p>하지 않으면 불경한 것이고, 많이 준비하기만 하고 정갈하게 하지 않는 것도 불경이라고 본다. 선조(先朝) 신미년(1608)에 공가(貢價)가 7천 석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1만 3천여 곡(斛)이나 되니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제수를 감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 두렵기만 하다.” 하였다, 구윤명이 소매 속에서 능전(陵殿)과 원묘(園墓)에 제물을 차리는 도식을 꺼내 올리니, 임금이 가져다 보고 한참 있다가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삼을 것을 명한 다음 태상시로 하여금 전교를 정례(定例)의 머리글에다 써서 후손에게 보이라고 하였다.</p>	<p>非敬也，濫而不精，亦非敬也。先朝辛未，貢價不過七千石，而今則爲一萬三千餘斛，有加矣無減矣，而遽聞減享之說，至今稟然也。”允明袖出陵殿園墓祭物圖式上之，上取覽良久，仍命定爲式，令太常，書傳教于定例之首，以示後昆。</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8월 27 일(병오) 3번째기사 강계 부사 이수봉이 강계의 삼의 폐단에 대해 진술하다</p>	<p>강계 부사 이수봉(李壽鳳)이 본부의 삼(蔘) 폐단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진술한 다음 본부 은점(銀店)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호조에다 납부하지 말고 이를 강계 백성들이 삼을 무역하는 돈에다 보태 주어 민폐를 없앨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p>江界府使李壽鳳，疏陳本府蔘弊甚悉，請以本邑銀店之所收稅，不納地部，而添給江民貿蔘之價，以除民弊，上許之。</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9월 11 일(경신) 1번째기사 금주령에 대한 폐단 등을 논한 정언 박상 로의 상소</p>	<p>정언 박상로(朴相老)가 상소하여 술의 금주령에 대한 폐단을 극구 논하고 10개 조항의 문답을 만들어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종묘와 사직에 술을 쓰지 않아 예절에 위배되는 것이 첫째요, 빈객과 의약에 술을 쓰지 않아 인정에 위배되는 것이 둘째이며, 이웃에게 연좌법을 적용하는 것이 셋째요, 포도청이 금지하는 것을 맡는 것이 넷째이며, 차출한 관원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 다섯째요, 수령들이 이로 인해 자주 바뀌는 것이 여섯째이며, 법제가 이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일곱째요, 형벌과 옥사가 이로 인해 많이 남용되는 것이 여덟째이며, 언로가 이로 인해 막히는 것이 아홉째요, 민심이 이로 인해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열째입니다.” 하였다. 이를 반복해서 조목조목 말하였는데, 거의 천여 자(字)가 되었다. 끝</p>	<p>庚申/正言朴相老上疏，極論禁酒之弊，設爲十條問答以進，其疏略曰：“廟社之不用酒，違於禮一也，賓客醫藥，不用酒，違於情二也，切隣連坐三也，捕廳主禁四也，官差作挈五也，守令因此而數易六也，法制因此而屢變七也，刑獄因此而多濫八也，言路因此而將塞九也，民心因此而將散十也。”反復條陳，殆千百言，而末云“既復舊制之後，亦有次第件事。李敏坤先事之諫，可</p>

	<p>에 가서 말하기를,  “이미 옛날의 제도를 회복한 뒤에 또한 차근차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민곤(李敏坤)이 일이 있기 전에 간하였던 것을 포상해야 하고, 권극(權極)이 망언(妄言)을 한 것에 대해 형률을 시행해야 하며, 윤구연(尹九淵)이 사령(赦令)을 반포하기 전에 한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서유원(徐有元)의 과감히 말하는 기풍을 권장해야 하며, 남태회(南泰會)에게 공도 없이 준 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간범(干犯)되어 귀양간 무리들을 일체로 방면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임금의 말하기를,  “박상로가 연소한 대각의 신하로서 바깥 고을에서 들어오자마자 백성을 위해 소를 올렸으니 가상하기는 하나, 오로지 술을 금지한 폐단을 논하며 장황하게 문답을 늘어놓아 나의 금령을 어지럽혔다. 또 수령을 자주 체차하는 것을 지금의 폐단이라고 하였는데, 자주 체차하는 폐단이 술을 금지하는 폐단과 경중(輕重)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한가? 더구나 효시하였던 윤구연을 북수(北帥)라고 칭하였으니, 왜 이다지도 방자하단 말인가? 그에게 사적에서 삭제하는 형률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소는 채용되지 않았으나,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p>	<p>以褒矣、權極妄言之律，可以舉矣，尹九淵令前之事，可以有矣，徐有元敢言之風，可以獎矣，南泰會罔功之資，可以還收矣，干犯刑配之類，可以一竝放釋矣。”疏入，上曰：“相老以年少臺臣，才遞外邑，爲民陳章，其雖嘉矣，專論酒弊，張皇問答，亂我禁令。且以守令數遞爲時弊，數遞之弊與酒弊輕重，果何如也？況臬示之九淵，稱以北帥，何放恣若是？其施刊版之典。”疏雖不用，人多稱之。</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9월 19일(무진) 2번째기사  어원에 나가 벼를 베는 것을 보다</p>	<p>임금이 어원(御苑)에 나아가 벼를 베는 것을 직접 보고 선혜청으로 하여금 벼를 베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p>	<p>上臨御苑，親視刈稻，令惠廳，給刈稻者糧資。</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9월 23일(임신) 3번째기사</p>	<p>좌의정 윤동도(尹東度)가 사정을 들어 상소하면서 약원의 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고 청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순제군(順悌君) 이달(李烜)이 소를 올려 태묘에 술을 쓸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술도 술이다. 술을 금한 것은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 있기 때문</p>	<p>左議政尹東度，引情勢上疏，乞免藥院之任，上優批不許。順悌君烜，疏請太廟用酒，上曰：“醴亦酒也。禁酒係國之興亡，豈一二臣所敢請？”批責</p>



<p>좌의정 윤동도가 약원의 책을 면하게 해 달라고 상소하다</p>	<p>이다. 어찌 한두 신하가 감히 청할 일이겠는가?” 하고, 비답을 내려 책망하였다.</p>	<p>之。</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9월 29일(무인) 1번째기사 영세추모록을 짓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 한림 권림을 거행하라고 명하다</p>	<p>임금이 태묘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인정문에서 지영하였다. 이날은 곧 인원성모(仁元聖母)의 탄신이었으므로 탕제(湯劑)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임금이 영세추모록(永世追慕錄)을 친히 짓고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들을 불러서 한권(翰圈)16041) 을 빨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권이 완성되었는데, 한권에 들어간 자는 15명이었다. 그런데 임금이 오히려 널리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권을 주관한 사람을 모두 삭직하고 즉시 도당(都堂)에 회권(會圈)16042) 하도록 명하여 27명을 뽑았다.</p>	<p>戊寅/上祇迎太廟朔祭香于仁政門。以是日，卽仁元聖母誕辰也，不御湯劑。親製《永世追慕錄》，仍引見大臣備堂，命促行翰圈。翌朝始完圈，被圈者十五人。而上猶以爲不廣主圈人，竝削職，卽命都堂會圈，取二十七人。</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10월 13일(신묘) 1번째기사 홍봉한이 강화 어정포의 땅을 경작하는 것 등을 청하다</p>	<p>임금이 주장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강화 유수 김상익(金尙翼)이, 어정포(漁汀浦)의 땅은 곡식을 심을 수 있는데 목장 때문에 빈터로 버려두고 있으니, 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어 백성들이 경작해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인구를 늘리고 방어를 공고히 하는 계책으로 보아 질질 끌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아는 신하를 보내어 살펴보게 한 다음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 해서에 재해를 입은 4천 결의 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청하였다. 홍봉한이 또 말하기를,  “삼남에 제민창(濟民倉)을 설치한 뜻이 중대합니다. 선혜청으로 하여금 영남의 미곡 대금 1만 5천 냥을 떼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기한 내에 1만 곡(斛)의 곡물로 마련하여 흉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헌부【대사헌 신위(申暉)이다.】에서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감선(減膳)하라는 하교는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지체하였으니 온당하지 않습</p>	<p>辛卯/上行畫講，引見大臣備堂。領議政洪鳳漢曰：“江華留守金尙翼以魚汀浦土宜生穀，而以牧場之故，爲空棄之地，移設牧場，許民耕食爲請，生聚固圉之策，不必靳持。送識務之臣，往審許施好矣。”上許之。又以海西加請許給災四千結。鳳漢又曰：“三南濟民倉設置意重。令惠廳，劃給嶺南米代錢一萬五千緡，使卽限萬斛作穀，以爲荒年之備好矣。”上竝許之。憲府【大司憲申暉。】申前啓，不允。又啓：“減膳下教，何等重大，而稽滯未安。請承旨李昌儒罷職。”允之。又以所懷，略陳遇災修省，平心應物之要，答曰，留意。諫院【大司諫洪名</p>

	<p>니다. 승지 이창유(李昌儒)를 파직하소서.”</p> <p>하니, 윤택하였다. 또 자신의 소회로서 재이를 만나 수성(修省)하는 것과 공평한 마음으로 사물을 수용하는 요점에 대해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유의하겠다고 답하였다. 간원【대사간 홍명한(洪名漢)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소회를 진단하기를,</p> <p>“간략하지 않으면 넓은 도량을 오래 지속할 수 없고 묵중(默重)하지 않으면 굳건함을 세울 수가 없으니, 간략과 묵중한 도리는 넓고 굳건하게 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그옥이 보견대 전하께서 하전(夏鼐)16058)에서 자문하시다가 더러 자잘한 일을 친히 처리하시기도 하고 분부를 내릴 적에 더러 번거로운 데에 이르러 일을 하실 때에 조금의 걱정이 많고 정사를 하시는 사이에 자주 반복하는 후회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넓고 굳건한 공력이 이로 말미암아 중단을 면하지 못하고 맙니다. 전하께서는 어느 때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반드시 간략하고 묵중한 것에 힘쓰신다면 넓고 굳건한 공력에 딱 들어맞아 조금도 간격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p> <p>“경의 아버지를 계승하여 경계의 말을 해 주었는데, 경의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겼다. 비록 쇠약해졌지만 더욱 힘쓰겠다.”</p> <p>하였다.</p>	<p>漢。】申前啓，不允。又陳所懷曰：“不簡則無以久其弘，不重則無以立其毅，簡重之道，乃是做得弘毅之本。竊觀殿下，詢諮廈甄，或親細務，宣布絲綸，或至煩複，施爲之際，每多忙急之患，政令之間，輒致頻復之悔。弘毅之工，未免由是而間斷。惟殿下，隨時隨處，必以簡重爲務，則弘毅之工，可以沕然而無間也。”上曰：“繼卿父而陳戒，聞卿言而嘉賞。雖衰，當益勉也。”</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10월 14일(임진) 2번째기사 경상 감사 정존겸이 분등의 장계를 올리다</p>	<p>경상 감사 정존겸(鄭存謙)이 분등(分等)의 장계를 올렸는데 그 소청이 매우 간단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그 장계를 보니 그 사람을 본 것 같다. 70개 고을을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관계된 일이므로 날짜를 넘길 수가 없다.”</p> <p>하고, 대신을 불러 그의 청에 따라 허락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비황곡(備荒穀) 2만 곡(斛)을 청하여 백성을 구제할 밀천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으며, 묵은 환곡은 절반을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환곡은 절반만 대신 받아들이자</p>	<p>慶尙監司鄭存謙，進分等狀啓，其所請甚簡約。上曰：“今覽其啓，如見其人。七十州何憂哉？事係民情，不可踰日也。”命召大臣，依其請許之。蓋請備荒穀二萬斛，以補賑資，舊還則折半停捧，新還則折半代捧者也。</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10월 21 일(기해) 2번째기사 정원에서 경계의 말씀 을 드리다</p>	<p>는 것이었다.  정원에서 경계의 말씀을 아뢰니, 답하기를, “이미 감선(減膳)하라는 분부를 유지하고 나서 내 지금 스스로 힘쓰고 있다. 아! 후원(喉院)16076) 도 왕명 출납을 정성껏하는 도리를 닦아서 용(龍)에게 는 명하였던 뜻16077) 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p>	<p>政院陳戒， 答曰：“已諭於減膳之教， 予方自勉。 吁嗟！ 喉院， 亦修惟允之 道， 莫替命龍之意也。”</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10월 22 일(경자) 2번째기사 천둥의 변고로 6일 동 안 감선하라고 명하고 백성을 보호할 대책을 하문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임금이 때아닌 천둥의 변고가 거듭 발생하였다고 하 여 자신을 책망하는 분부를 내리고 6일 동안 감선(減膳)하라고 명하였다. 하 교하기를, “오늘부터 복선(復膳)하는 날까지 일을 품(稟)하지 말고 대신이 여러 재신들 을 거느리고 날마다 입시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강구하도록 하라. 이른바 강구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대책이고 구전(舊典)을 닦 아 거행하는 뜻인 것이다. 6일 사이에 비록 하루에 한 가지 일을 들어 강구 하더라도 어찌 만년의 정사에 도움이 없겠는가?” 하고, 이어서 비국의 여러 당상들을 불러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 문하였다. 지사 홍계희(洪啓禧)는 공물을 변통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고, 호조 판서 김상철(金尙喆)은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였는데, 다른 사람 은 말이 없었다. 임금이 각사(各司) 가운데 원역(員役)의 수가 많은 곳은 줄이 고 각 고을에 제언(堤堰)을 잘 파지 않은 자들을 중하게 감단(勘斷)하라고 명 하였다. 장령 조태명(趙台命)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어 도성 안에 무뢰배들이 기생을 데리고 거리에서 노니는 폐단을 금하게 할 것을 청하고, 장령姜시현(姜始顯)은 조정을 바로잡아 공평한 도리를 넓힐 것과 혜택을 베풀어서 못 생민들을 구제할 것과 법을 지켜 무너진 기강을 진 작시킬 것과 뛰어난 인재를 구하여 사로(仕路)를 참신하게 할 것을 청하고, 집의 유수진(柳脩進)은 하늘의 견책을 실지로 응하는 도리와 백성을 구제할</p>	<p>上行晝講。 上以雷異荐臻， 下責躬之 教， 命減膳六日。 教曰：“自今日至復 膳日， 視事勿稟， 大臣率諸宰， 鎮日入 侍， 講究治道。 所謂講究者無他， 卽 懷保元元之策， 亦修舉舊典之意。 六 日之間， 雖日舉一事， 豈不少補於暮政 乎？ 仍召備局諸堂， 問懷保小民之策。 知事洪啓禧， 陳貢物變通之方， 戶曹判 書金尙喆， 陳擲節經費之策， 餘無所 言。 上命減各司員役之數多者， 重勘 各邑堤堰之不善疏鑿者。 掌令趙台命 申前啓， 不允。 又啓請禁京城無賴挾 娼遊衍之弊， 掌令姜始顯， 請正朝廷， 以恢公道， 布仁惠以濟群生， 守法條以 振頹綱， 求俊又以清仕路， 執義柳脩進 應天以實之道， 及商確調賑之策， 上并 優答之。</p>

	대책을 상확(商確)할 것을 말하였는데, 임금의 대답이 모두 우악하게 답하였다.	
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10월 26일(갑진) 3번째기사 홍봉한이 이례들에게 능료를 주는 것에 대해 말하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법부의 이례들에게 이미 요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변통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장례원(掌隸院)을 추조에 예속시킨 다음 명칭을 보민사(保民司)라 불리고 각 도에서 받아들인 속전(贖錢)과 관서의 소미(小米)16090) 를 돈으로 바꾼 것으로 이례의 수를 계산하여 달마다 능료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속전은 폐단이 있을 것이니, 다만 관서의 미곡을 획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領議政洪鳳漢：“以法府吏隸，既給料布，則他無以變通。 掌隸院屬之秋曹，名曰保民司，以各道贖錢及關西小米之作錢者，計其吏隸之數，月給廩料。” 上曰：“贖錢其有弊也，只以關西米劃給也。”
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11월 7일(갑인) 5번째기사 홍봉한이 돈삼계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홍봉한이 돈삼계(墩蓼契)의 폐단에 대해 아뢴 다음 지부(地部)16092)에 있는 것으로 각 궁(宮)에다 분배하고, 대전과 중궁전에만 공물로 진상하여 공인(貢人)들의 폐단을 덜어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領議政洪鳳漢，以墩蓼契弊瘼仰奏，請以地部所在者，進排於各宮，只大殿中宮殿，則以貢進排，以紓貢人之弊，上許之。
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11월 11일(무오) 1번째기사 관윤 홍계희가 태묘에 단술을 쓰는 것이 미안하다고 아뢰다	임금이 주장을 행하였다. 한성 관윤 홍계희(洪啓禧)가 태묘에 예주(醴酒)16095) 를 쓰는 것은 미안(未安)하다고 아뢰었다. 또 말하기를, “법령은 자주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벼슬을 구하려고 쫓아다니지 않고 시종 한결같이 한다면 비록 법을 범한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처럼 많은 데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戊午/上行畫講。 漢城判尹洪啓禧，以太廟用醴之未安仰奏。 又曰：“法令不可數變。 然不競不絀，終始如一，則雖犯禁者，必不至如此之多也。” 上然之。
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乾隆) 29년) 12월 16	임금이 12월에 공물로 바치는 산토끼의 수량을 감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옛날에 월령(月令)16114) 으로 인습해 오던 머리가 푸른 오리의 진상을 그만두라고 분부하신 것을 내가 이미 보았는데, 비록 미물이지만 차마 많이 죽	上命減臘貢生兔，教曰：“昔年因月令，命罷青頭鴨之貢獻者，予已仰觀，雖微物，不忍多殺。 宋宗避蟻之仁，可法

<p>일(계사) 3번째기사 12월에 공물로 바치는 산토끼의 수량을 감하 도록 명하다</p>	<p>이지 못하겠다.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개미를 피해 걸어간 인자함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였다.</p>	<p>也。”</p>
<p>영조 104권, 40년 (1764 갑신 / 청 건륭 (乾隆) 29년) 12월 29 일(병오) 2번째기사 정월에 권농 유음을 내리고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방면하라고 명 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정월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리고 여러 도에 유 시하라고 하였으며,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방면하라고 하였고 현방(懸 房)16119) 의 속전(贖錢) 15일치를 감하라고 명하였다.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거기에서 떠돌아다니는 유개(流丐)16120) 들을 불러모아 선혜청으로 하여금 죽을 먹이고 양식을 주어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경재(卿宰)와 시종(侍從)들 가운데 전후로 죄를 입어 파직된 자들을 아울러 서용하라고 하였다.</p>	<p>上行晝講。 書下歲首勸農綸音， 下諭 諸道， 命放輕囚， 減懸房贖錢十五日。 命宣傳官， 招集流丐之在街路者， 令惠 廳饋粥， 及糧還送故土。 竝敍卿宰侍 從之前後罪罷者。</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월 7일 (계축) 1번째기사 홍봉한 등이 예조 당 상을 거느리고 설연 진하하기를 청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등이 또 예조 당상(禮曹堂上) 을 거느리고 설연 진하(設宴陳賀)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지경연사(知經筵事) 김양택(金陽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의 아버지는 병술년16134) 진연(進宴)을 청하였을 때에 이론(異論)을 내 세웠는데 경은 매우 힘써서 청하니, 어찌 고집(固執)이 경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 그런가?”  하니, 김양택이 말하기를,  “경사에는 전후의 구별이 없지마는, 때는 고금(古今)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빙그레 웃었다. 대개 고(故) 중신(重臣) 김진규(金鎭圭)는 바로 김양택의 아버지로서, 숙종(肅宗) 병술년 여러 신하들이 진연을 청하였을 때</p>	<p>癸丑/上行晝講。 領議政洪鳳漢等， 又 率禮堂， 請設宴陳賀。 上顧謂知經筵 事金陽澤曰：“卿父立異於丙戌進宴之 請， 而卿則請之甚力， 豈固執不如卿父 而然乎?” 陽澤曰：“慶無前後之別， 而 時有古今之異也。” 上哂之。 蓋故重 臣金鎭圭乃陽澤之父， 而肅宗丙戌年諸 臣請宴之時， 鎭圭獨抗疏陳其豐豫。 故上教及之</p>

	<p>에 김진규가 홀로 항소(抗疏)하여 그 풍예(豐豫)16135) 함을 진달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의 하교가 이에 미쳤다.</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월 9일 (을묘) 1번째기사 왕세손이 식음을 전폐하며 진소하자 15일에 하례를 행하라 명하다</p>	<p>빈청(賓廳)에서 또다시 아뢰면서 진청(陳請)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왕세손이 진소(陳疏)하였으나 윤택을 얻지 못하매, 성례(誠禮)를 펼 수가 없었으므로 마음이 민울(憫菴)하여 식음을 전폐한 지 네 때가 되었다. 여러 신하들이 듣고 모두 감읍(感泣)하였으며, 임금도 역시 근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아 억지로 여러 사람들의 뜻에 따랐다. 15일에 하례(賀禮)를 행하라 명하고 의식대로 포고(布告)하게 하였으며, 제도(諸道)의 방물(方物)을 정지하고 봉전(封箋)만은 허락하게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p> <p>“세손의 성효(誠孝)가 이와 같으니, 종국(宗國)의 경사이다. 나는 근심할 것이 없다.”</p> <p>하였다.</p>	<p>乙卯/賓廳又再啓陳請，上不許。王世孫陳疏，未蒙允許，以不得伸誠禮，至於憫菴廢食者爲四時。諸臣聞者皆感泣，上亦憂念不已，勉從群情。命以十五日行賀禮，布告如儀，停諸道方物，只許封箋。仍教曰：“世孫誠孝如此，宗國之慶也。予無憂矣。”</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월 11일(정사) 2번째기사 건명문에 친림하여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위로하다</p>	<p>이날 또 건명문(建明門)에 친림(親臨)하여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하는 군병(軍兵)들에게 호궐(犒饋)16138) 하고, 하교하기를,</p> <p>“이 사람들은 석년(昔年)에 애휼(愛恤)하던 백성들이다.”</p> <p>하고, 그들에게 공궐(供饋)한 국을 가져오라 명하여 친히 맛보았는데, 대개 그들과 달고 쓴 것을 함께 하겠다는 성의(聖意)였다. 승지(承旨) 장지항(張志恒)을 발탁하여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로 올리고 부총관(副總管)으로 특별 제수하였는데, 그 할아버지 장봉익(張鵬翼)을 추념(追念)하여서였다. 또 전병사(兵使) 이방좌(李邦佐)를 서용(敍用)하라 명하였다. 이방좌는 청렴 결백한 것으로 일컬어졌는데,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된 지 수년(數年)에 뇌물 꾸러미 [苞苴]를 권문 세가(權門勢家)에 바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받</p>	<p>是日，又親臨建明門，犒饋闕內入直軍兵，教曰：“此昔年愛恤之民也。”命取其所饋羹，親嘗之，蓋同其甘苦之聖意也。擢承旨張志恒階嘉善，特授副總管，追念其祖鵬翼也。又命敍前兵使李邦佐。邦佐以廉白稱，爲江界府使數年，苞苴不及於權門，由是見忤，在北闕爲洪述海所摺摭，至被錮律，至是始敍，因領議政洪鳳漢請也。</p>

	<p>았으며, 북곤(北關)16139) 에 있을 때에 홍술해(洪述海)의 탄핵한 바 되어 금고율(禁錮律)까지 입게 되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서용되었으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청으로 인한 것이었다.</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월 16일(임술) 1번째기사 잠저 근방의 백성과 경중의 떠돌이 거지들에게 음식물을 주게 하다</p>	<p>임금이 승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선혜 당상(宣惠堂上)에게 명하여 잠저(潛邸) 근방의 백성과 경중(京中)의 떠돌이 거지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차등에 따라 죽을 먹이고 쌀을 주게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빈한한 자에게는 유의(襦衣)16153) 를 주게 하였다. 경현당(景賢堂)에 돌아와서 석강(夕講)을 행하였다.</p>	<p>壬戌/上御崇賢門，命惠堂，率入潛邸近坊民人及京中流丐，饋粥給米有差，而其中最寒者，命給襦衣。還御景賢堂，行夕講。</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2월 18일(갑오) 2번째기사 말사를 도모하여 다툼 수문장 등을 파직하다</p>	<p>헌부 【대사헌 조영진(趙榮進)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수문장(守門將)이 말사(末仕)를 도모(圖謀)하여 다투니, 입직(入直)한 혼졸(閹卒)이 위력(威力)에 눌러 금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그 수문장을 조사하여 도태(淘汰)시키고, 그날 신척시키지 못한 기조(騎曹)16184) 의 입직 당랑(入直堂郎)도 파직하며, 종신(宗臣) 중에 현방(懸房)16185) 터를 강제로 사서, 텃세[垞稅]를 남봉(濫捧)한 자도 조사해 내서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p>	<p>憲府【大司憲趙榮進。】申前啓，不允。又啓：“守門將圖末仕爭，入直閹卒，披靡至不能禁。請查汰其守門將，罷伊日不飭之騎曹入直堂郎，宗臣之勒買懸房家基，濫捧垞稅者，查出罷職。”上并允之。</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윤2월 13일(무오) 1번째기사 ‘미자지명’을 강하게</p>	<p>임금이 주장과 석강을 행하였다. 이어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왕세손(王世孫)이 시좌(侍坐)하였다. ‘미자지명(微子之命)’을 강하게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조손(祖孫)이 《서경(書經)》을 같이 강하는 것도 역시 드문 일이다.”</p>	<p>戊午/上行晝夕講。仍引見大臣備堂，王世孫侍坐。命講《微子之命》，上曰：“祖孫同講《書經》，亦稀有也。”仍下問文義曰：“蕃王室之蕃字，何義也？”世孫曰：“如人家之有藩籬也。”</p>

<p>하고 왕세손에게 문의 를 하문하다</p>	<p>하고, 이어서 문의(文義)를 하문(下問)하기를,  “번왕실(蕃王室)’의 ‘번(蕃)’ 자는 무슨 뜻이냐?”  하니, 세손이 말하기를,  “사람 사는 집에 울타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네가 이미 울창주(鬱鬯酒)를 주관하게 되었으니, 무엇으로 조선(朝鮮)을 번병(蕃屏)하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덕(德)을 숭상하고 어진 이를 법 받으면 거의 우리 나라를 번병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덕을 누리면 자손들도 역시 대대로 그 덕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p>	<p>上曰：“汝既主鬯，何以蕃朝鮮乎？”對曰：“崇德象賢，則庶可以蕃吾國也。”  上曰：“一人享德，子孫亦世世享之否乎？”對曰：“子孫不能善繼，則何以享其德也？”上稱善。又教曰：“旅獒一微物也，而召公戒之何也？”對曰：“大舜亦大聖，而禹以毋若丹朱戒之，爲臣之道，豈可以君之聖而不益加勉乎？”  上曰：“文義則已與世孫相問難，講官不必更陳也。”</p>
-------------------------------	--	---



	<p>“자손이 능히 잘 이어받지 못하면, 어찌 그 덕을 누리겠습니까?”</p> <p>하매, 임금이 잘하였다고 칭찬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여오(旅獒)16210) 는 하나의 미물(微物)인데도 소공(召公)16211) 이 경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대순(大舜) 역시 대성(大聖)인데도 우(禹)가 단주(丹朱)16212) 와 같이 〈오만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니, 신하된 도리는 어찌 임금이 성인이라고 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p> <p>“문의(文義)는 이미 세손과 함께 서로 어려운 점을 물어 보았으니, 강관(講官)은 다시 진달할 필요가 없다.”</p> <p>하였다.</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3월 30일(을사) 2번째기사 위험한 바다를 건너 봉공한 박사석을 우직</p>	<p>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호남(湖南)의 세선(稅船)은 취재(臭載)한 것이 많은데 공진(貢津)의 조선(漕船)은 일제히 와서 정박하였으니, 해당 현감 박사석(朴師錫)의 위험한 바다를 건너 봉공(奉公)한 것이 상줄 만하다고 하매, 임금이 우직(右職)에 조용하라고 명하였다. 홍봉한이 또 대양(大洋)의 기선(騎船)을 과만(瓜滿)16260) 으로 한정한다면 합하여 6차(次)가 되는데, 이는 아랫사람들을 체휼(體恤)하는 정사가 아니니, 3년으로 한정을 하여 성적을 고과하여</p>	<p>領議政洪鳳漢，以湖南稅船多臭載，而貢津漕船一齊來泊，該縣監朴師錫之涉危奉公，可賞也，上命調用右職。鳳漢又以大洋騎船，限以及瓜，則合爲六次，非體下之政也，宜以三年爲限，考績許陞。上許之</p>

에 조용하게 하다	승진(陞進)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매, 임금이 윤택하였다.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4월 7일 (임자) 1번째기사 《해동악장》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다</p>	<p>자정전(資政殿)에서 세 대신(大臣)과 예조 판서 윤급(尹汲)·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홍계희(洪啓禧)·홍문 제학(弘文提學) 서명응(徐命膺)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p> <p>“주송(周頌)은 선왕(先王)의 덕을 칭송하여 백세(百世)에 내려 준 것이다. 지금 우리 열조(列朝)에도 모두 악장(樂章)이 있으니, 한 질의 책으로 만들어서 《해동악장(海東樂章)》이라고 이름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맡을 만한가?”</p> <p>하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p> <p>“홍계희·서명응·구상(具庠)이 가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홍봉한이 또 한 자리의 낭관(郎官)을 뽑기를 청하고 윤시동(尹蓍東)을 추천하니, 우의정 김상복(金相福)이 또 김치양(金致讓)을 추천하였다. 임금이 김상복의 말을 좇아 김치양으로써 아울러 차임하였다. 또 《황조집례(皇朝集禮)》에 실려 있는 바를 모방하여 하향 대제(夏享大祭)로부터는 〈제향에 쓸〉 정화수와 〈희생(犧牲)을 삶을〉 솥을 살펴보는 예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壬子/召見三大臣及禮曹判書尹汲、知中樞府事洪啓禧、弘文提學徐命膺于資政殿，教曰：“《周頌》所以頌先王之德，而垂之百世者也。今我列朝，皆有樂章，欲裒成一帙，名之曰《海東樂章》，誰可任其事者？”領議政洪鳳漢曰：“洪啓禧·徐命膺·具庠可也。”上允之。鳳漢又請更選一郎官，薦尹蓍東，右議政金相福，又薦金致讓。上從相福言，以致讓并差之。又命倣《皇朝集禮》所載，自夏享行眡明水省鑊之禮。</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4월 9일 (갑인) 1번째기사 왕세손과 태묘에 나가 하향 대제를 거행</p>	<p>임금이 왕세손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아갔으니, 장차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희생(犧牲)을 살피고 제기(祭器)들을 살피는 일을 의식과 같이 하였다.</p>	<p>○甲寅/上率王世孫詣太廟，將行夏享也。省牲省器如儀。</p>

<p>하기 위한 희생과 제기를 살피다</p>	<p>애초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호남의 저치미(儲置米)는 허류(虛留)한 것이 많다고 하여 비국 낭청(備局郎廳)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기를 청하고 최익남(崔益男)을 문랑청(文郎廳)으로 삼아 아뢰어 보내었는데, 이에 이르러 복명(復命)하고 허류(虛留)한 상태를 의논드렸다. 또한 전미(田米)의 걸벼[租]가 서로 섞여서 환롱(幻弄)함이 많은데, 그 중에도 광주(光州)·남원(南原)·영암(靈巖)·담양(潭陽)·정읍(井邑) 다섯 고을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임금이 다섯 고을의 수령을 해도(海島)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p> <p>사신은 말한다. “저치미는 바로 국가에서 뜻밖의 변란(變亂)을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조정에서 죄인을 적발하여 안치(按治)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징려(懲勵)16277)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령이 조금만 세력이 있는 자는 먼저 낭관(郎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미봉하며, 그가 친한 사람이면 비록 법을 범하였더라도 애당초 문죄하지도 않고, 필경에 가서 책임을 메꾸는 것은 불과 2, 3인의 음무(蔭武)에서 그칠 뿐이니, 한갓 주전(廚傳)16278)의 폐단만 끼칠 뿐이다. 그러나 속속들이 파헤쳐야 하는 정사에 어긋남을 식자(識者)들이 한탄하였다.”</p> <p>홍봉한이 선혜청(宣惠廳)의 돈으로 호남(湖南)의 연변(沿邊)에서 모맥(牟麥)을 사들여 진자(賑資)로 준비하여 두자고 청하였다. 또 고(故) 상신(相臣) 허욱(許頊)·고 판서(判書) 윤돈(尹墩)·고 하남군(河南君) 정승조(鄭崇祖)·고 판추(判樞) 정광적(鄭光績)에게 사시(賜諡)하는 은전에 대하여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대개 그 사람들은 백년(百年) 전에 있던 사람으로 비록 응당 사시(賜諡)할 자이나, 반드시 대신(大臣)의 연품(筵稟)을 기다려서 비로소 허</p>	<p>初領議政洪鳳漢，以湖南儲置多虛留，請遣備郎摘奸，以崔益男爲文郎廳，奏遣之，至是復命，論虛留狀。且田米租相雜，幼弄多端，其中光州·南原·靈巖·潭陽·井邑五邑爲尤甚，上命竄五邑守令于海島。</p> <p>【史臣曰：“儲置，乃國家所以備不虞者，而朝廷之欲爲摘發按治者，意在懲勵。然守令之稍有勢者，先聞郎官之來，預爲彌縫，其所親者，雖有犯，初不問，畢竟所塞責者，不過二三蔭武而止。徒貽廚傳之弊。有乖綜核之政，識者嘆之。”鳳漢請以惠廳錢，質牟於湖沿，以備賑資。又請故相臣許頊，故判書尹墩，故河南君鄭崇祖，故判樞鄭光績賜諡之典，上并可之。蓋其人在於百年之前，則雖應賜諡者，必待大臣筵稟而始許之者，乃故事也。然此人者，位雖崇顯，無甚表著，而只以後屬之顏私，輕請節惠之殊典，此豈所以闡幽潛而聳聽聞者哉？】</p>
--------------------------	--	---

	<p>락한 것은 곧 고사(故事)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위(位)가 비록 승현(崇顯)에 있기는 하지만은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었는데, 다만 후손들의 사사 인정에 의하여 절혜(節惠)의 특전을 경솔히 청하였으니, 이 어찌 잠재된 사실을 밝혀서 듣는 사람을 고무시키도록 하는 일이겠는가?</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4월 29 일(갑술) 1번째기사 향군과 공시인을 불러 모맥의 풍흉과 폐막의 유무를 묻다</p>	<p>임금이 태묘(太廟)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승현문(崇賢門)에서 지영(祇迎)하였다. 향군(鄉軍)과 공시인(貢市人)16293) 을 불러들여 모맥(牟麥)의 풍흉과 폐막(弊瘼)의 유무를 물었다. 이때 큰비가 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시인(市人)은 이르기를, ‘시치(市直)16294) 가 점점 싸진다.’고 하고, 공인(貢人)은 ‘한 가지의 폐단도 없다.’고 하였다.</p>	<p>甲戌/上祇迎太廟朔祭香于崇賢門。 召入鄉軍及貢市人，問牟麥豐歉，弊瘼 有無。時大雨翻盆，市人則曰，市直 漸歇，貢人則曰，無一弊端云。</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5월 27 일(신축) 1번째기사 적전에서 베어 온 보 리를 자정전에서 친히 받다</p>	<p>임금이 적전(籍田)16330) 에서 베어 온 보리를 자정전(資政殿)에서 친히 받았다. 이어서 석강을 행하였다. 간원【헌납 권영(權穎)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근사록(近思錄)》은 성인(聖人)의 전체 대용(全體大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강(講)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넓고 공평하게 하여 물건에 따라 순응하는 도리를 가지고 성학(聖學)을 더욱 힘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辛丑/上親受籍田刈麥于資政殿。仍 行夕講。諫院【獻納權穎。】申前啓， 不允。又啓：“《近思錄》，爲聖人之 全體大用。今講是書，宜以廓然大公， 物來順應之道，加勉聖學。”上嘉納 之。憲府申前啓，不允。</p>
<p>영조 105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5월 29 일(계묘) 4번째기사 제주에 흉년이 들었으</p>	<p>제주(濟州)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진곡(賑穀) 3천 석(石)을 주라고 명하였으며, 탐라(耽羅) 백성으로서 장계(狀啓)를 가지고 입경(入京)한 자를 초견(招見)하고 위유(慰諭)하였다.</p>	<p>濟州饑，命給賑穀三千石，招見耽羅民 持狀啓入京者，慰諭之。</p>

<p>므로 진곡 3천 석을 주라고 명하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7월 20일(계사) 2번째기사 호서 감영에 2만곡을 획급하고 취모하여 지용토록 하다</p>	<p>호서(湖西) 감영(監營)의 빚을 감면한 이후에 감영의 모양이 잔박(殘薄)해졌다고 하여, 도신(道臣)이 곡물(穀物)을 구획해 줄 것을 장청(狀請)하니, 임금(支用)이 비국 당상에게 자문하여 2만 곡(斛)을 획급하고 취모(取耗)16358 하여 지용(支用)토록 하였으며, 또 호남의 곡물 2천 곡을 탐라(耽羅)로 운반하여 기민(饑民)을 진휼하도록 명하였다.</p>	<p>以湖西營減債之後，營樣殘薄，道臣狀請區劃藥物，上詢于備堂，劃二萬斛，俾取耗支用，又命運湖南穀二千斛于耽羅，以賑饑民。</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8월 28일(신미) 2번째기사 영수각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다</p>	<p>임금이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였는데, 왕세손이 또한 수행하였다. 세손이 먼저 장수를 축하하는 술잔을 드리고, 여러 기신(耆臣)들에게 차례로 술잔을 드리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술잔을 잡고 장수를 기원하며 말하기를, “덕(德)은 선성(先聖)에 짝하시고 공(功)은 열조(烈祖)에 빛나십니다. 소신(小臣)이 술잔을 드리오니, 남산(南山)과 같이 장수(長壽)를 누리소서.” 하였다. 여러 종신(宗臣)들도 또한 차례로 술잔을 드렸다. 임금이 봉조하 유척기(兪拓基)·전 판서 이태화(李泰和)·지사(知事) 박치화(朴致和)가 모두 숙묘(肅廟)를 생전에 섬겼다고 하여, 그 아들에게 벼슬을 주었다. 육상궁에 들러 배알하고, 저녁에 환궁하였다. 사서(士庶)의 90, 80세된 자에게 비단과 고기를, 입직한 향군(鄕軍)에게 유의(襦衣)를 내리라고 명하였다.</p>	<p>上詣靈壽閣，行展拜禮，王世孫亦隨之。世孫先進壽酌，命諸耆臣，以次進酌。領議政洪鳳漢執酌獻壽曰：“德配先聖，功光烈祖。小臣獻酌，南山之壽。”諸宗臣亦以次進酌。上以奉朝賀兪拓基·前判書李泰和·知事朴致和，皆逮事肅廟，官其子。歷拜毓祥宮，夕還宮。命賜士庶年九八十者帛肉，及入直鄕軍襦衣。</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8월 29일(임신) 2번째기사</p>	<p>임금이 흥태문(興泰門)에 나아가 늙은 백성들을 초견하고 쌀을 주어 보냈다. 임금이 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하의(賀儀)를 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종신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樞) 등이 여러 종실들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진연(進宴)할 것을 한사코 청하였으</p>	<p>上御興泰門，招見耆老民人，賜米以遣。上又引見大臣備堂。諸臣請行賀儀，上不許。宗臣綾昌君樞等，率諸宗上疏，固請進宴，亦不許</p>

<p>홍태문에 나아가 늙은 백성들을 조건하고 쌀을 주어 보내다</p>	<p>나,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8월 30일(계유) 3번째기사 홍봉한 등이 탄신 하례를 청하니 외방 물선을 폐지하며 봉전만 하도록 하다</p>	<p>영의정 홍봉한 등이 2품의 여러 재신들을 이끌고 빈청(賓廳)에 나아가 탄신 하례(誕辰賀禮)를 행할 것을 계청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입시하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탄신은 무슨 마음으로 축하하는가? 결코 받을 수가 없다. 갑진년(1636) 이 달 30일은 곧 내가 등극(登極)한 날이니, 해는 비록 같지 않으나, 날은 서로 일치하니, 이날로써 축하하면 또한 경들의 정례(情禮)를 족히 펼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하였다. 임금이 초하룻날 축하를 베풀고, 외방 물선(物餼)을 폐지하며 단지 봉전(封箋)만 하도록 하고, 도·류(徒流)의 형을 받은 자는 모두 사면하도록 하며, 고묘(告廟)·반교(頒教)는 예에 따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領議政洪鳳漢等，率二品諸宰，詣賓廳，陳啓請行誕辰賀禮，上并命入侍，教曰：“誕辰則何心稱賀？決不可受。而甲辰今月三十日，卽予登極之日也，年雖不同，日則相符，以此日稱賀，亦足伸卿等之情禮也。”諸臣頓首稱謝。上命於初一日設賀，外方物餼置之，只令封箋，徒流者竝施有赦，告廟頒教依例舉行。</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9월 22일(을미) 1번째기사 강화도에서 실록을 고증하고 온 한림의 별단을 읽고 사각에 간직하게 하다</p>	<p>강화도에 가서 실록을 고증하고 돌아온 한림(翰林)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별단(別單)을 보고 하교하기를,  “성조(聖祖)께서 한양에 도읍을 도로 옮긴 후로 성적(盛蹟)이 지금과 부합된 것이 많으니, 참으로 기이하다.”  하였다. 읽다가 ‘우리 집안이 어찌 나라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겠는가?’라는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크도다. 성인(聖人)의 말씀이여.”</p>	<p>乙未/江華實錄考來翰林復命。上覽別單，教曰：“聖祖復都漢京後，盛蹟與今相符者多，誠異矣。”讀至我家豈有得國之心乎？上曰：“大哉，聖人之言也。”讀至九月十三日，上曰：“誠奇矣。”讀至十月十一日，上曰：“此還都之日也。”讀至議政府獻壽，上曰：“太平世界矣。”讀至義安大君獻壽，上曰：“宗臣聞此而必喜動矣。”讀至賜酒，上曰：“與予之賜饌九十老</p>

	<p>하였으며, 읽다가 9월 13일자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기이하다.”</p> <p>하였고, 읽다가 10월 11일자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환도한 날이다.”</p> <p>하였다. 읽다가 의정부에서 헌수(獻壽)한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태평 세계로다.”</p> <p>하였고, 읽다가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이 헌수한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종신(宗臣)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p> <p>하였으며, 읽다가 술을 하사한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90노인에게 음식을 내린 일과 서로 부합한다.”</p> <p>하였고, 읽다가 금주령(禁酒令)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 또한 부합한다.”</p>	<p>人，相符矣。” 讀至禁酒令，上曰：“此亦符矣。” 讀至大上殿設宴歡甚，上曰：“好矣好矣。” 讀至與群臣宗臣設宴，上曰：“此則古之《鹿鳴詩》之意也。” 讀至賑濟州民，上曰：“何多相符也。” 仍命藏于史閣。</p>
--	--	--

	<p>하였다. 읽다가 대상전(大上殿)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함이 컸다는 데에 이르러 임금의 말하기를,</p> <p>“좋도다. 좋도다.”</p> <p>하였고, 읽다가 못 신하와 종신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다는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옛 녹명(鹿鳴)16377) 시(詩)의 뜻이다.”</p> <p>하였으며, 읽다가 제주민을 진휼했다는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p> <p>“어찌면 상부(相符)함이 이처럼 많은가?”</p> <p>하고, 이어 사각(史閣)에 간직하도록 명하였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9월 23일(병신) 1번째기사 재이로써 놀라고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구휼할 것을 하교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재이(災異)로써 놀라고 두려워하여 하교하기를,</p> <p>“저번에 실록의 어제(御製) 가운데에 ‘깊은 연못에 임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 경계한다.’라는 구절이 있음을 보았다. 오늘날 대소 신료들은 전날 찬품(饑品)을 줄인 때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가 거의 다스려질 것이니, 마땅히 을유년의 고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무릇 중외의 효자·절부를 찾아내어 보살피 구휼하고, 혼인하지 못한 남녀에게 혼수를 도와주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에게도 또한 보살피 구휼하는 은전을 베풀어 국초(國初)의 성덕</p>	<p>丙申/上引見大臣備堂。 上以災異驚惕，教曰：“頃見實錄，御製中有臨深履薄之句。 今日大小臣僚，無忘前日減膳之時，則吾國其庶幾矣，當遵乙酉故事。 凡中外孝子節婦，搜訪顧恤，男女未婚嫁者，助給婚需，窮而無告者，亦施顧恤之典，毋負國初盛德。”</p>



	<p>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p> <p>하였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0월 4일(병오) 1번째기사</p> <p>세손이 여러 날 음식을 폐하자 11일에 경현당에서 진연을 행하게 하다</p>	<p>빈청에서 또 아뢰어 진연을 청하였다. 왕세손이 또 상소하기를,</p> <p>“신이 연달아 글을 올려 누누이 간청하여 천청(天聽)을 돌이키시기를 바랐으나, 비답을 받음에 이르러 윤희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빈청에서 아뢰는 데 대한 비답을 엿드려 보건대 사연(辭緣)이 지성스럽고 간절하시니, 신은 진실로 당황스럽고 두려워 애가 탔으며, 곧이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성상의 추모하는 효사(孝思)를 신이 어찌 우러러 본받지 않겠습니까마는, 그옥이 엿드려 생각하건대 계해년(16387) 에도 또한 이 예를 행하였는데, 그때에 전하의 굳은 마음으로서 못 신하의 청을 애써 따르신 것은 곧 옛날의 뜻을 이어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에는 성상의 춘추가 이미 높으시어 이 예를 응당 행하는 것은 더욱이 그때에 비할 바가 아니니, 그러한즉 전하께서 소손의 간절함을 힘써 좇으심이 또한 옛날의 뜻을 우러러 본받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추모함을 가지고 하교하시지만, 신은 생각건대 추모의 도리는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박한 정리에 견디지 못하여 감히 다시금 아뢰오니, 엿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정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신의 청을 허락하여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손수 써서 비답하기를,</p> <p>“네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한 갑절 더하다. 마땅히 시좌(侍坐)할 때에 유지할 것이다.”</p>	<p>丙午/賓廳又啓, 請進宴。 王世孫又上疏曰: “臣連章屢懇, 冀回天聽, 及奉批旨, 不賜允許。 且伏見賓啓之批, 辭旨諄懇, 臣誠惶悶焦迫, 繼以感涕也。 惟我聖上追慕之孝思, 臣豈不仰體? 而竊伏念癸亥年, 亦行此禮, 其時以殿下之固心, 勉從群下之請者, 乃所以奉承昔年之志也。 況今聖壽彌高, 此禮之當行, 尤非其時之比, 則殿下勉循小孫之懇者, 亦所以仰體昔年也。 殿下以追慕爲教, 而臣則以爲追慕之道, 實在於此也。 衷情所迫, 敢復冒陳, 伏乞聖上, 憫臣之情, 許臣之請, 千萬幸甚。” 上手書答曰: “爾祖之心, 今日一倍。 當諭於侍坐時矣。” 上命王世孫侍坐, 賓廳二品以上, 并命入侍于景賢堂。 上以世孫屢日廢食, 憂念之, 始許受爵, 命以十一日, 行于景賢堂, 凡諸儀節, 務從節省。 蓋景賢, 卽己亥錫宴之舊堂也。 上親製戒太康樂章四句, 命樂工習之。 命勿設油蜜果醴酒, 代以蜜水, 御饌毋過十器, 諸</p>

하였다. 임금이 왕세손에게 명하여 시좌토록 하고, 빈칭 2품 이상을 모두 경현당에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세손이 여러 날 음식을 폐하고 있음을 근심하여 비로소 술잔 받기를 허락하고, 11일에 경현당에서 진연(進宴)을 행하도록 명하였는데, 무릇 모든 의식과 절차는 검소하고 절약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다. 대개 경현당은 곧 기해년(16388)에 잔치를 내린 구당(舊堂)이었다. 임금이 태강(太康) 16389을 경계하는 악장(樂章) 4구(句)를 지어 악공에게 익히도록 명하였다. 유밀과와 단술[醴酒]을 베풀지 말고 꿀물로 대신하며, 어찬(御饌)은 열 그릇을 넘지 않게 하고, 여러 신하의 경우는 다섯 그릇을 넘지 않게 하며, 구작(九爵)의 예는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손·대신·국구·의빈, 종친부·충훈부의 유사 당상, 9경(卿)이 각기 일작(一爵)씩 올리고, 참석한 여러 신하에게는 각기 일배(一盃)씩 내리되, 입참(入參)할 사람은 대신·국구·의빈, 기로사의 여러 신하, 종신(宗臣) 문무 1품 이상, 육조·경조의 장관, 비변사 당상, 충훈부 유사 당상, 여섯 승지, 여러 한림, 시임 옥당, 양사와 시위, 세손 배위관·계방 관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으며, 시위는 운보검(雲寶劍)에 도총부(都摠府)와 병조(兵曹)의 당상 낭청 각 2원(員)씩 하도록 하였다. 진작(進爵)은 은잔(銀盞)을 쓰고 사배(賜盃)는 사잔(砂盞)을 쓰되 주원(廚院) 16390에서 취하여 쓰며, 선전관(宣傳官)과 무겸 선전관(武兼宣傳官) 각 5인을 입참케 하니, 무릇 잔치에 참여한 자가 1백 19인이고, 어제와 어필을 받은 자가 67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잔치가 아니니, 내외연(內外宴)의 명칭을 가히 논할 바가 아니며, 또한 구작의 예도 없거늘, 지난번 기묘년(16391) 효소전(孝昭殿)에 아뢰어 가례(嘉禮)를 행할 때에 어찌 오늘이 있을 줄 알았겠는가? 하물며 가례의 해를 헤아리니 곧 7년째이고, 나 또한 7순인데, 세손의 정리로써 어찌 단지 나에게만 술잔을 올리겠는가? 반드시 쥘내에서 찬구(饌具)를 간략하게 베풀어야 한다.

臣母過五器，九爵之禮，非可論。世孫大臣國舅儀賓宗親勳府有司堂上九卿，各進一爵，進參諸臣則各賜一盃，而入參人則大臣國舅儀賓耆社諸臣宗臣文武一品以上，六曹京兆長官，籌司堂上，勳府有司堂上，六承旨諸翰林，時任玉堂兩司侍衛，世孫陪衛官桂坊官員，餘皆勿論，侍衛則雲寶劍摠府騎曹堂郎各二員。進爵用銀盞，賜盃用砂盞，而取用廚院，宣傳官武兼各五員入參，凡參宴者一百十九人，受御製御筆者六十七人。上曰：“此非宴也，內外宴之名，非所可論，亦無九爵之禮，而頃者己卯年，奏孝昭殿，行嘉禮時，豈知有今日？況計嘉禮之年，卽七年也，予亦七旬也，以世孫之情，豈只奉爵於予？必也自內略設饌具。若行內外宴，當分排兩日，此則二日之內當兼行，省文禮備，不亦美乎？此當自內爲之者，而諸臣必有抑鬱，如是下教焉。”上始命除簪花，教世孫曰：“汝祖不簪花，而汝獨簪花，於汝心安乎？”世孫對曰：“然則爲小孫，聖上亦不可不簪花也。”上笑曰：“渠欲簪花，反請其祖之簪花，此乃古老萊斑衣之意也。誠孝如此，

	<p>만약 내외연을 행하면 마땅히 양일(兩日)을 분배해야 하는데, 이는 하루 안에 겸행하면 형식(形式)은 줄이고 예(禮)는 갖춰지게 되니,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것은 마땅히 궐내에서 할 일인데, 여러 신하들이 반드시 억울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므로 이같이 하교하는 것이다.”</p> <p>하였다. 임금이 처음에 잠화(簪花)를 제거하라고 명하였는데, 세손에게 하고하기를,</p> <p>“네 할아버지는 잠화를 꽃지 않았는데 너만 유독 잠화를 꽃았으니, 네 마음에 편안한가?”</p> <p>하니, 세손이 대답하기를,</p> <p>“그렇다면 소손을 위하여 성상께서도 잠화를 꽃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p> <p>“네가 잠화를 꽃고 싶어서 도리어 할아버지에게 잠화를 꽃도록 청하니, 이는 곧 옛날 노래자(老萊子)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뜻(16392) 이라, 정성과 효성이 이와 같으니, 내가 마땅히 힘써 허락하겠다.”</p> <p>하고, 이어서 잠화 꽃기를 허락하라고 명하였다.</p>	<p>予當勉許之。” 仍命許簪花。</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0월 10</p>	<p>임금이 몸소 ‘임연 이빙(臨淵履氷)’ 녀 자(字)를 써서 벽 위에 붙였다. 또 몸소 효억편(效抑篇)을 지어 등가악장(登歌樂章)에 대신하였으며, 술잔을 받을 때에 생강차로 술을 대신하도록 명하였다.</p>	<p>上親書‘臨淵履氷’四字，付之壁上，又親製《效抑篇》，以代《登歌樂章》，受爵時，命以薑茶代酒</p>

<p>일(임자) 3번째기사 술잔 받을 때에 생각 차로 술을 대신하게 하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0월 10 일(임자) 4번째기사 대동미를 줄여 백성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하여 아뢰게 하다</p>	<p>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힘써 여러 사람을 따라서 차로써 술에 대신케 하였지만, 제도(諸道)의 농사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중외에 의지할 곳 없는 백 성이 더욱 가궁하다. 옛날 병술년에 잔치를 드릴 때, 고(故) 상신(相臣) 김우 항(金宇杭)이 백성을 구휼할 것을 청하여, 선혜청으로 하여금 종가(鍾街)에서 구걸하는 자를 찾아가 묻고 죽을 먹이게 하였었는데, 대동미를 줄여서 백성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비국이 강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上曰：“其雖勉循群情，以茶代酒，念 諸道穡事，予心何安？中外無告之民， 尤可矜也。在昔丙戌進宴時，故相臣 金宇杭，有恤民之請，其令惠廳，尋問 鍾街之有乞丐者，饋以粥，大同之有減 數而可爲民惠者，令備局講究以聞。</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0월 11 일(계축) 1번째기사 경현당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받다</p>	<p>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받았다. 이날 임금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자리에 올랐으며, 승지·사관(史官)이 시위(侍衛)하여 좌우로 나뉘어 앞으로 나아오고, 악사는 존호를 창(唱)하였다. 악장이 끝나자 상례(相 禮)가 왕세손을 인도하며, 익선관과 현곤포(玄袞袍)를 갖추고 들어와 절하는 자리에 나아왔다. 치사례(致詞禮)를 행하고 사배(四拜)를 올리매, 악이 연주되 고 곧 그쳤다. 인의(引儀)가 동반과 서반을 나누어 인도하며, 들어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먼저 치사(致詞)를 하였는데, 치사에 이르기를,  “세손 신(臣) 이산(李祿)은 이에 수성(壽星)이 동쪽에 비추임을 만났으니 성상 의 연세가 높으시고, 종국(宗國)에 경사가 넘치니 팔방(八方)에 기쁨이 가득합 니다. 삼가 생각건대 지행 순덕 영모 의열 장의 흥륜 광인 돈회 체천 건극 성 공 신화 주상 전하께서 다스리신 지 사기(四紀)에 교화가 나라에 퍼졌습니다.</p>	<p>癸丑/上御景賢堂，親受爵。是日上具 翼善冠袞龍袍陞座，承史侍衛分左右進 前，樂師唱尊號。樂章訖，相禮引王 世孫，具翼善冠玄袞袍，入就拜位。 行致詞禮四拜，樂作小止。引儀分引 東西班，入就拜位，先致詞，致詞曰： “世孫臣某，茲遇壽星東照，寶筭靈長， 慶溢宗國，歡均八方。恭惟至行純德 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 聖功神化主上殿下，臨御四紀，化覃區 域。至孝至仁，乃聖乃哲。一念敬 慎，每存謙抑，皇天眷德，堯齡躋八，</p>

지극히 효성스럽고 어지시며, 거룩하고 밝으십니다. 한결같은 생각이 공경하고 삼가며 매양 겸손하고 억제하는 마음을 간직하셨으므로, 황천(皇天)이 덕 있는 자를 도와 주어 높으신 연세 8순에 이르러서, 언덕과 같고 구릉과 같이 시며 소나무와 같고 잣나무와 같으신데, 다행히 경사스런 모임을 당하매 오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더욱 절실합니다. 보잘것없는 간절한 마음을 힘써 좇으시어, 정성과 예(禮)가 모두 화합하게 되었는데, 이날 잔을 받들어 선열을 더욱 빛내니, 신은 경사롭고 기쁜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천천세(千千歲) 장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하였다. 아림을 마치자 앞의 의식과 같이 사배를 행하였다. 왕세손이 못 신하를 이끌어 세 번 고두(叩頭)하고 산호(山呼)하였으며, 예를 마치자 각기 자리로 나아갔다. 사옹원 제조 장계군(長溪君) 이병(李棟)이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 휘건(揮巾)을 받들어 어선(御膳)을 드리고, 내시가 화반(花盤)을 드렸으며, 사옹원 제조 해운군(海運君) 이연(李漣)이 왕세손의 휘건과 공선(供膳)을 드렸다. 집사가 여러 신하에게 하사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꽃을 흩뿌리니, 여러 신하가 모두 자리를 떠나 무릎꿇고 받음을 마치자, 왕세손이 어탑(御榻) 앞에 나아가매, 등가악이 연주되고 문무무(文武舞)가 함께 나아갔다. 이병(李棟)이 초미(初味)를 드리고, 이연(李漣)이 왕세손의 미수(味數)를 드렸으며, 집사가 여러 신하에게 미수를 나누어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큰 덕이 장수할 수 있다고 하나, 나는 실로 부끄럽다. 계해년 자교(慈教)를 추억하자니,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오늘의 일은 충자(沖子)가 경(卿)들과 더불어 권하여 이룬 것이다.”

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如崗如陵，維松維栢，幸值嘉會，彌切愛日。微懇勉循，誠禮俱叶，茲辰奉觴，益彰先烈，臣不勝慶忭之忱，敢祝千千歲壽。奏訖行四拜如上儀。王世孫率群臣，行三叩頭山呼，禮訖各就位。司饗院提調長溪君棟，詣御座前，奉揮巾進御膳，內侍進花盤，司饗提調海運君漣進王世孫揮巾及供膳。執事分供諸臣賜饌散花，諸臣皆離位跪受訖，王世孫詣御榻前，登歌樂作，文武舞并進。棟進初味，漣進王世孫味數，執事分賜諸臣味數。上曰：“大德得壽，予實愧矣。追憶癸亥慈教，不勝愴慕。今日之事，沖子與卿等勸成者也。”領議政洪鳳漢曰：“聖祖乙酉故事，有政府歌謠，故臣等以七章，倣古以進矣。”上命讀奏之。其歌曰：“吾王受爵，上帝錫祿。赫監明明，聿懷翼翼。日升月恒，大德攸得，斟以北斗，俾千俾億。吾王受爵，祖宗垂隴。誠孚神明，道闡精一。于前有光，允謨允烈，宜其壽考，維孝之達。吾王受爵，文孫致慶。撫之以慈，誨之以正，庸嘉良能，勉循固請，於萬斯年，愛日祝聖。吾王受爵，臣工歡

“성조(聖祖)의 을유년 고사(故事)에 대하여 의정부의 가요(歌謠)가 있으므로, 신(臣)들이 7장(章)으로써 옛 것을 본떠 드렸습니다.”

하니, 임금(王)이 그것을 읽어 아뢰라고 명하였다. 그 노래에 이르기를,

“우리 왕께서 잔을 받으시니, 상제(上帝)가 녹(祿)을 내리셨도다. 빛나게 살펴 밝고 밝으시며, 품으신 마음 공손하고 삼가셨네. 해가 솟고 달이 비치는 것은 큰 덕이 얻으신 바이니, 북두(北斗)로 잔질하면 천이 되고 억이 된다. 우리 왕께서 잔을 받으시니, 조종(祖宗)이 음덕(蔭德)을 드리웠도다. 정성은 신명(神明)께 믿음을 받았고 도(道)는 정일(精一)하게 드러났다. 앞에는 빛이 있어 그 계책이 아름다웠고, 장수(長壽)함이 마땅하니 오직 효성이 달하였다. 우리 왕께서 잔을 받으시니, 아름다운 손자가 축하를 올렸도다. 자애로써 어루만지시고 올바름으로써 깨우치시며, 양능(良能)을 가상히 여기시고 한사코 칭하는 바를 힘써 좇으시니, 만년을 모실 수 있도록 축성(祝聖)한다. 우리 왕께서 잔을 받으시니, 신하들이 기쁘고 즐겁다. 구주(九疇)가 극치(極致)를 이루었고, 만휘(萬彙)가 크게 변화하였다. 도주(陶鑄)가 생성(生成)되어 공적(功績)이 널리 퍼지고 교화가 두루 미친다. 남산(南山)처럼 이지러지지 않고 오래 사시어서, 길이 이런 잔치를 모시리로다. 우리 왕께서 잔을 받으시니, 백성들이 복을 치고 춤을 춘다. 은혜와 덕택이 스며 나오매 내가 먹고 자란다. 태화(太和)의 동산에서 거닐어 그 베풀어짐이 이처럼 넓었으니, 화봉(華封)의 송축(頌祝)이 동토(東土)에 가득했노라. 우리 왕께서 잔을 받으시니, 오직 옛날 을유의 해로다. 새 도읍이 정해진 지 갑자(甲子)가 여섯 번 돌아왔다. 이달 이날에 성사(盛事)가 다시 이어지고, 만수(萬壽)를 비는 헌수(獻壽)에 한수(漢水)가 아득히 흘러간다. 우리 왕께서 잔을 받으시니 큰 복록이 양양(洋洋)하다. 왕

怵。九疇會極，萬彙丕變。陶鑄生成，功溥化遍。南山不騫，永侍斯讌。吾王受爵，黎民鼓舞。惠澤滲漉，我哺我乳。囿以太和，厥施斯普。華封之頌，匝于東土。吾王受爵，維乙之歲。神京定鼎，星甲六屆。是月是日，盛事復繼，萬壽之獻，漢水瀾瀾。吾王受爵，介福洋洋。王曰傲哉，無已太康，聖不自有，謙而益光。惟日乾乾，眉壽無疆。”上親製四言一句曰：“續承鴻業，淵冰戒深。”命王世孫以下廣進。又以追念舊臣之意，親寫四言八字，分賜入侍諸臣曰：“表予不忘之意也。”次第進爵訖，樂止，文武舞退，處容舞進，樂作。小頃舞退樂止，司饗提調撤御饌，樂師唱御製太康章訖，領議政洪鳳漢進曰：“臣等既醉且飽，惠民之政，亦宜行之也。”上曰：“強抑初心，今受茶爵。噫！一則追述乙酉盛事，一則追慕癸亥慈音，自顧初心，悚慙勝言？粵昔丙戌，侍宴仰觀，今予之意，願將此茶，遍沾元元。意已若此，豈忍踰月？八道舊逋中最久二年條，特爲蠲減，貢人舊遺在，依己卯數減給，市民二朔所捧

	<p>께서는 즐거움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셨다. 성인(聖人)으로 자처(自處)하지 않으니, 겸양하여 더욱 빛이 나신다. 날마다 힘써 쉬지 않았으니, 천지가 무궁(無窮)토록 장수하리이다.”</p> <p>하였다. 왕이 몸소 사언 일구(四言一句)를 지어 이르기를,</p> <p>“큰 업적을 이어 받아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경계했노라.”</p> <p>하고, 왕세손 이하에게 화답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또 옛 신하를 추념하는 뜻으로 몸소 사언(四言) 여덟 글자를 써서 입시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며 말하기를,</p> <p>“나의 잊지 못하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p> <p>하였다. 차례로 술잔을 드리고 나자, 음악이 그치고 문무무가 물러났으며, 처용무(處容舞)가 나아가니, 음악이 연주되었다. 잠시 후 무(舞)가 물러나고 음악이 그치매 사옹원 제조가 어찬을 거둬가고, 악사(樂師)가 어제(御製) 태강장(太康章)을 창하기를 마치자, 영의정 홍봉한이 나아가 말하기를,</p> <p>“신 등은 이미 취하고 배가 부르니, 백성에게 은혜로운 정사를 또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及懸房贖，一體蠲減，以示予體昔年顧恤之意。知中樞府事徐志修進曰：“今茲之辰，太平盛事，歡忭之忱，大小同情，推惠八方，尤爲急務。而以臣所見，三南災結分俵者太小矣。”上曰：“此政若予意，明日大臣備堂，講確以奏。”志修又曰：“樂之道，與政通，所關誠重，而三代以後，禮壞樂廢，固無挽回之望矣。第近世民間俗樂，皆是繁音促節，有不堪觀，今番奏樂時，俗樂亦未免繁音。我國與民樂，實是和平之音也，今使俗樂節奏，皆從與民樂，爲和平之音，而一切禁其繁音，則其於政教，似爲有助矣。且臣待罪成川時見之，則其樂亦是繁音，而一曲將終，必以緩聲收之，此必近古之遺法。若倣此意而行之於京師，以至傳布八方，使皆歸於和平，而無繁促之患，則誠似好矣。”上命申飭樂院。禮畢，引儀引東西班就位，相禮引王世孫就位。樂作行四拜。禮訖，相禮引王世孫出，上還大內，賞司饗院提調諸臣有差。以《受爵賡韻錄》命刊進，頒賜諸臣。</p>
--	--	--

“당초의 마음을 억지로 누른 채 지금 찻잔을 받았다. 아! 한편으로는 을유년의 성사(盛事)를 추술(追述)하고, 한편으로는 계해년의 자음(慈音)을 추모한 것이니, 스스로 당초의 마음을 돌이켜 보건대 황송하고 부끄러움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오랜 옛날 병술년에 잔치에서 모시고 우러러보았는데, 지금 나의 뜻은 이 차(茶)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뜻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 차마 달을 넘기겠는가? 팔도(八道)의 옛 포흠(逋欠) 가운데 가장 오랜 2년 조(條)를 특별히 감해 주고, 공인(貢人)의 오랜 유재(遺在)는 기묘년 액수에 의거하여 감해 주며, 시민(市民)이 두 달간 바쳐야 할 것과 현방(懸房)의 속전(贖錢)을 일체 감해 주어, 내가 지난날의 고홀(顧恤)을 본받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지중추부사 서지수(徐志修)가 나아와 말하기를,

“오늘날 태평 성사(太平盛事)에 대한 즐겁고 기쁜 정성은 대소 신료(臣僚)가 같은 마음이니, 은혜를 팔방(八方)에 미루어 시행함이 더욱 급선무입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삼남(三南)의 재결(災結)을 나누어 준 것이 매우 적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나의 뜻과 같으니, 내일 대신과 비국(秘閣) 당상이 정확한 계획을 강구하여 아뢰라.”

하였다. 서지수가 또 말하기를,

“악(樂)의 도(道)는 정사(政事)와 통하니, 관련됨이 진실로 중(重)한데, 삼대



	<p>(三代) 이후로 예(禮)가 무너지고 악(樂)이 폐하여져 진실로 만회할 희망이 없습니다. 단지 근세 민간의 속악은 모두 음(音)이 변쇄하고 절조(節調)가 급하여 감히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악(樂)을 연주할 때의 속악도 또한 음이 변쇄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민락(與民樂)은 실로 화평한 음(音)이니, 지금 속악의 절주(節奏)도 모두 여민락을 따라 화평한 음이 되게 하고, 그 변쇄한 음을 일체 금하면, 정교(政教)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신이 성천(成川)에서 대죄(待罪)할 때에 보니, 그 악이 또한 변쇄하였는데, 한곡(曲)이 장차 끝나려 하매 반드시 완성(緩聲)으로써 수습하였으니, 이는 필시 옛날의 유법(遺法)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뜻을 본받아 경사(京師)에서 행하고 팔방에 널리 퍼뜨리어 모두 화평한 지경에 돌아가 변쇄하고 조급한 걱정이 없게 되면 진실로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장악원(掌樂院)에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예(禮)를 마치자, 인의(引儀)가 동반과 서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상례(相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음악이 연주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예를 마치자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임금은 대궐 안으로 돌아와 사옹원 제조와 여러 신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수작갱운록(受爵賡韻錄)》을 간행하여 올리고 여러 신하에게 반사(頒賜)하도록 명하였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0월 14일(병진) 2번째기사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게 하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고심(苦心)을 억누르고 힘써 하례를 받았으니, 한편으로는 열조(烈祖)의 성덕(盛德)을 드러내며, 한편으로는 충자(沖子)의 지극한 정성을 힘써 좇은 것이다. 이를 미루어 넓히지 않으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는가? 한(漢)나라</p>	<p>上行晝講，仍引見大臣備堂。上曰：“強抑苦心，勉受賀禮，一則揄揚烈祖之盛德也，一則勉循沖子之至誠也。其不推廣，豈不自惡。漢文云非肉不飽，絜矩之道，思傳亦云。朝臣宰列以上父年六十以上及侍從以上父年七</p>

	<p>문제(文帝)가 이르기를, ‘노인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기 마음으로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리는 《중용(中庸)》에 또한 말하였다. 조신(朝臣) 재열(宰列) 이상의 아버지로서 나이 60이상인 자 및 시종(侍從) 이상의 아버지로서 나이 70이상인 사람은 특별히 쌀과 고기를 하사하여 그 아들이 헌수(獻壽)하는 자료(資料)를 돕도록 하고, 사서(士庶)로서 나이 90 이상인 자는 병술년의 사연(賜宴)한 고례(故例)에 의거하여 또한 쌀과 고기를 내리도록 하라. 인군(人君)이 똑같이 사랑함이 경외(京外)가 어찌 다르겠는가? 외읍(外邑)에도 또한 쌀과 고기를 지급토록 할 것이다. 문무(文武)의 홍패(紅牌)를 가진 채 나이가 70에 이른 자는 팔도와 양도(兩都)로 하여금 찾아내어 보고토록 하고, 그 자금(資級)을 더하여 노인을 대접하는 옛날의 성의(盛意)를 본받음을 보이도록 하라. 어의동(於義洞)·추모동(追慕洞)·대은암(大隱巖)·연화방(蓮花坊)·연추문(延秋門)에 거주하는 부로(父老)로서 나이 70인 자도 또한 쌀과 고기를 하사토록 하라.”</p> <p>하였다.</p>	<p>十以上人，特賜米肉，以助其子獻壽之具，士庶年九十以上者，依丙戌賜宴故例，亦賜米肉。人君一視，京外何異？其令外邑，亦給米肉。文武抱紅牌而年至七十者，令八道兩都，搜訪以聞，加其資以示體昔年老老之盛意。於義洞·追慕洞·大隱巖·蓮花坊·延秋門父老之年七十者，亦賜米肉。</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0월 26일(무진) 1번째기사 겸춘추 김성유의 어머니의 나이가 72세라고 하자 즉시 내려가 헌수하고 오게 하다</p>	<p>임금이 진연(診筵)에서 겸춘추 김성유(金聖猷)에게 어머니의 나이가 몇인지 물었는데, 김성유가 72세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관서(關西)가 비록 멀고 직명(職名)이 비록 낮지만, 인군(人君)의 시혜(施惠)가 어찌 멀고 가까움이 있겠느냐?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뜻으로써 또한 쌀과 고기를 하사하니, 즉시 내려가서 헌수(獻壽)하고 오도록 하라.”</p> <p>하였다.</p>	<p>戊辰/上於診筵，問兼春秋金聖猷母年幾何？聖猷對以七十二。上曰：“關西雖遠，職名雖卑，人君施惠，豈有遐邇？以絜矩之義，亦賜米肉，其卽下去，獻壽而來也。”</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p>	<p>임금이 지난달에 잔을 받은 뒤에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짐작하는 뜻을 미루어, 여러 신하로서 늙은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 술잔을 베풀어 그 아버지의</p>	<p>上於前月受爵之後，推絜矩之義，命諸臣有老親者，皆設酌以壽其親，自卿宰</p>

<p>(乾隆) 30년) 11월 2일(계유) 3번째기사 늙은 아버지가 있는 신하들에게 술잔을 베풀어 그 장수를 빌게 하다</p>	<p>장수를 빌도록 명하고, 경재(卿宰)로부터 시종(侍從)에 이르기까지 나이 70살이 된 자에게 관(官)에서 쌀과 고기를 지급하여 그 비용을 보조하게 했다. 이때 좌의정 김상복(金相福)의 아버지 김원택(金元澤)이 나이 80을 넘었는데, 임금이 그 잔치 베풀을 듣고 사언(四言) 2구(句)를 손수 써서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그 집에 가서 전하게 하니, 김상복이 전문(箋文)을 올려 진사(陳謝)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의 집에서 날을 나누어 잔치를 베풀고, 비록 나이가 70에 미치지 않은 자들도 또한 소문(所聞)을 전해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여향간의 백성들도 또한 모두 이를 본따서 관현(管絃)의 소리가 곳곳마다 연이어 들리니, 이때에 일컫기를 태평 성사(太平盛事)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적으나, 살갗은 심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 나의 덕을 힘입어 국인(國人)이 장수를 누리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은 진실로 우습다.”</p> <p>하니, 원인손(元仁孫)이 말하기를,</p> <p>“옛날에 태평 성세[春臺壽域]라 일컬었으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합니다.”</p> <p>하였다.</p>	<p>至侍從年七十者，官給米肉，以助其需。時左議政金相福父元澤，年踰八十，上聞其設宴，手書四言二句，命史官往宣于其家，相福上箋陳謝。於是諸臣家分日設宴，雖年未及七十者，亦莫不聞風而行之，閭巷小民，亦皆效之，管絃之聲，處處相聞，時稱太平盛事。上曰：“予飲啖絕小，而肌膚則不甚減矣。人或謂賴予之德，國人多有享壽云者，此言誠可笑矣。”元仁孫曰：“古稱春臺壽域，理固然矣。”</p>
<p>영조 106권, 41년(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3일(갑술) 3번째기사</p>	<p>임금이 탐라의 공과(貢果)가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음으로써 풍랑을 걱정하여 여러 도(道)에 탐문토록 명하였고, 또한 여러 도의 농사 형편이 구매농사[穴農]가 되었음으로써 흉년의 조세 감면과 적곡(糶穀)을 받아들임이 혹 고르지 않을까 걱정하여 비국으로 하여금 여러 도에 신칙케 하였다.</p>	<p>上以耽羅貢果過期不來，慮其漂風，命諸道探問，又以諸道農形爲穴農，俵災捧糶，慮或不均，令備局飭諸道。</p>

<p>탐라의 공과가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여러 도에 탐문하게 하다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3일(갑술) 3번째 기사</p> <p>탐라의 공과가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여러 도에 탐문하게 하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5일(병자) 2번째기사</p> <p>육상궁에 나아가 중삭제를 행하고 아버이를 모신 신하들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다</p>	<p>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중삭제(仲朔祭)를 모소 행하였다. 이때에 날이 차가웠으나 난모(煖帽)를 쓰지 않았고, 수행하는 군사들이 밤새워 수고함을 생각하여 죽(粥)을 쭈어 먹이고 위문하였다. 재실(齋室)에 들어와 하교하기를,</p> <p>“인자(人子)는 아버이의 마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 금년에 여기에 온 것도 또한 생각 밖의 일이다. 세간에서 아버이를 모신 자를 보면 마음에 항상 감탄하여 부러워하였다. 자식된 마음은 한가지이니, 어찌 아버이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겠는가? 내가 능히 하지 못한 바로써 신하에게 베풀고자 하니, 오늘 아침 신문(神門)에 들어온 여러 집사(執事)·승지·한림·주서(注書)·도위(都尉) 이하 아버이를 모시는 자는 그 나이를 논하지 말고 모두 쌀과 고기를 하사하여 그 아버지에게 장수를 빌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에 앞서 여러 신하로서 쌀과 고기를 받은 자는 다만 늙은 아버가</p>	<p>上詣毓祥宮，親行仲朔祭。時日寒，上不御煖帽，念隨駕軍兵之經宿勞苦，設粥以饋，勞問之。入齋室，教曰：“人子以親心爲己心。今年來此，亦料表也。世間奉親者，心常歎羨。人子之心一也，豈在親年之多少？以予所未能者，欲施于臣，今朝入神門諸執事承旨翰注都尉以下奉親者，勿論其年，并賜米肉，以壽其親。”先是諸臣受米肉者，只是有老父者，而有偏親者則不與焉，蓋以恩典之無以遍及，而至是特下是命。又命賜鰥興府院君金漢家，及同敦寧尹勉教家米肉，勉教妻，仁元王后之弟，而漢壽爲國舅，與諸臣有別</p>

있는 자였고, 편모(偏母)만 있는 자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대개 은전(恩典)이 두루 미치지 못한 때문이었는데, 이에 이르러 특별히 이 명(命)을 내린 것이다. 또 오흥 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耇)의 집과 동돈녕(同敦寧) 윤면교(尹勉教)의 집에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으니, 윤면교의 처는 인원 왕후(仁元王后)의 아우이고, 김한구는 국구(國舅)로서 여러 신하와는 구별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어 경은 부원군 김주신(慶恩府院君金柱臣) 집과 증(贈) 영상(領相) 집에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는데, 경은 부원군 김주신은 곧 인원 왕후의 아버지이고, 증 영상은 바로 화경 숙빈(和敬淑嬪)의 아버지인 때문이었다. 창(彰)의 궁(彰義宮)에 역림(歷臨)하여 연추문(延秋門) 부근의 부로(父老)를 소견하였으니,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풍패(豐沛)의 고사(故事)를 본뜬 것이었다. 몸소 대풍가(大風歌) 2장(章)을 지었는데, 그 1장(章)에 이르기를,

“옛 잠저에 오니, 황홀함이 전날과 같구나. 부족한 덕으로 <왕위를> 이어받으니, 조심스런 마음뿐이다. 한결같은 마음은 백성에게 있으니, 풍년이 들기만 바라노라.”

하였고, 2장에 이르기를,

“망팔(望八)의 나이가 되매 옛날을 돌이켜본다. 특별히 못 노인들을 불러 모두들 앞에 모였는데, 음식을 내리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하였다. 일한재(一閑齋)에서 대신과 여러 신하를 소견하였는데, 재(齋)는 옛 잠저이며, 상석(床席)·궤장(几杖)은 모두가 옛날 은사(恩賜)하신 것이었다. 임금이 정축년(16397) 에 그린 어용 장자(御容障子)를 내어 보이고 여러 신하에게 우러러보도록 명하니, 여러 신하가 말하기를,

也。仍命致祭于慶恩府院君家及贈領相家。慶恩卽仁元王后考，而贈領相，乃和敬淑嬪之父也。歷臨彰義宮，召見延秋門父老，效漢高豐沛故事。親製大風歌二章，其一曰：“來故邸兮，恍若前。涼德續承兮，臨深淵。一心在民兮，願豐年。”其二曰：“望八來兮，憶昔年。特召群老兮，咸聚前，仍爲賜饌兮，豈偶然?” 召見大臣諸臣于一閑齋，齋是昔日潛邸也，床席几杖，盡是昔年恩賜者。上出示丁丑所寫御容障子，命諸臣仰瞻，諸臣曰：“其鬢髮黑白雖差異，天顏如昔無少減矣。”上命宣饌數器而止，教曰：“君臣同樂於舊邸，今日之饌，勝於向日受爵矣。”盡歡而罷，夜深始還宮。

	<p>“빈발(鬢髮)이 검고 흰 것의 차이는 있으나, 천안(天顏)은 옛날과 같아 조금의 감축(減縮)도 없으십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음식을 내렸는데 몇 그릇에 그치도록 하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p> <p>“군신(君臣)이 옛 잡저에서 함께 즐기며, 오늘의 음식은 저번에 받은 술잔보다 낫다.”</p> <p>하였다. 극진히 즐거하다가 자리를 파하니, 밤이 깊어 비로소 환궁하였다.</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7일(무인) 1번째기사 제주의 공감을 가져온 사람을 소견하고 식량을 주어 보내다</p>	<p>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제주(濟州)의 공감(貢柑)을 가져온 사람을 소견하고 식량을 주어 보냈다.</p>	<p>戊寅/上行晝講。 召見濟州貢柑領來人, 給糧以遣。</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9일(경진) 1번째기사 조관·사서에 세찬의 예에 의거하여 쌀과 고기를 하사하다</p>	<p>임금이 저경궁(儲慶宮)의 중삭제(仲朔祭)에 쓸 향(香)을 승정전(崇政殿) 뜰에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경외(京外)를 막론하고 조관(朝官)·사서(士庶)에게 한결같이 세찬(歲饌)의 예(例)에 의거하여 쌀과 고기를 하사하도록 명하고, 향간(巷間)에서 아버이를 위해 잔치하면서 음약을 베푸는 자는 법사(法司)에서 금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도신(道臣)과 수령으로서 아버이를 모시는 자도 또한 헌수(獻壽)하게 하였다.</p>	<p>庚辰/上祇迎儲慶宮仲朔香于崇政殿庭。 命勿論京外朝官士庶, 一依歲饌例賜米肉, 閭巷之爲親宴而設樂者, 法司勿禁, 道臣守令之有奉親者, 亦令獻壽。</p>
<p>영조 106권, 41년</p>	<p>경기 도신(京畿道臣)이 노인으로서 식물(食物)을 하사받을 자를 정리하여 아</p>	<p>京畿道臣, 修啓老人之賜食物者, 而年</p>

<p>(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11일(임오) 4번째기사 경기 도신이 노인으로서 식물을 하사받으려 자를 아뢰니 자급을 더하고 동중추에 부치게 하다</p>	<p>되었는데, 나이 1백 8세된 자가 1인이요, 1백 4세된 자가 1인이며, 1백 2세된 자가 1인이요, 1백 1세된 자가 6인이요, 1백 세된 자가 2인이었다. 임금이 모두 자급(資級)을 더하도록 하고, 예(例)에 따라 동중추(同中樞)에 부치게 명하였다. 그 중에는 비록 나이를 속인 자도 없지 않겠으나, 기전(畿甸)이 이와 같으면 다른 도(道)는 가히 미루어 알 것이니, 비록 태평 성세라 하여도 가하겠다.</p>	<p>百八者一，百四者一，百二者一，百一者六，一百者二人。上并命加資，依例付同樞。其間雖不無冒年者，而畿甸如此，他道可推而知，雖謂之壽域可也。</p>
<p>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13일(갑신) 3번째기사 술잔 받을 때의 빈계 등을 엮어 1책으로 하게 하고 이름을 《광효록》이라 하다</p>	<p>술잔을 드린 후에 하사받은 여러 신하가 선조(先朝)의 추은(推恩) 때에 고(故)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 등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한 예(例)에 의거하여, 이조 판서 박상덕(朴相德)을 대표로 하여 봉전(封箋)하여 사은(謝恩)하니, 임금이 몸소 이를 받고 하교하기를,  “선조의 고사(故事)를 본받고, 여러 신하가 전문(箋文) 올리는 것을 보니, 또한 성사(盛事)이다.”  하고, 술잔 받을 때의 빈계(賓啓)와 왕세손의 상소와 갹운시(賡韻詩)를 엮어서 1책(冊)으로 하도록 명하고, 홍계희(洪啓禧)에게 그 일을 맡아 진행토록 명하였으니, 이름을 《광효록(廣孝錄)》이라 하였다.</p>	<p>進爵後受賜諸臣，依先朝推恩時，故相臣金壽恒等，進箋謝恩之例，以吏曹判書朴相德爲首，封箋以謝，上親受之，教曰：“倣先朝之故事，見諸臣之進箋，亦盛事也。”仍命受爵時賓啓及王世孫上疏賡韻詩編爲一冊，命洪啓禧，任其事彙進之，名曰《廣孝錄》。</p>
<p>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16일(정해) 2번째기사 엄인 등이 병사를 단속하는 데는 평사로서 충분함을 아뢰다</p>	<p>임금이 승지 엄인(嚴麟)과 옥당 홍술해(洪述海)에게 묻기를,  “승지·유신(儒臣)은 모두 감시 어사(監市御史)를 지냈는데, 저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던가?”  하니, 엄인 등이 말하기를,</p>	<p>上問承旨嚴麟，玉堂洪述海曰：“承旨儒臣，俱經監市御史，彼人皆遵約束乎？”麟等曰：“別無他弊，而御史供億，最爲北路巨弊矣。評事爲北關幕官，兵使雖有不法之事，難於刺舉，故遣御史，所以尊體統，而評事足矣。遣御史無益也。”上亦然之。後以評</p>

	<p>“다른 폐해는 별로 없지만, 어사를 위한 공궤(供饋)가 북로(北路)에서 가장 큰 폐해입니다. 평사(評事)는 북곤(北闕)의 막관(幕官)이라, 병사(兵使)가 비록 불법한 일이 있더라도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사를 보낸 것이니, 체통을 존엄하게 하려는 소치이지만, 평사로서도 충분합니다. 어사를 보내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p> <p>하니, 임금도 또한 그렇게 여겼다. 후에 평사로써 어사를 겸하였다.</p>	<p>事兼御史。</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21일(임진) 2번째기사 형옥을 결단할 때 신중히 살피고 사죄라 하더라도 반복 사핵하여 생의에 부치게 하다</p>	<p>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초복(初覆)16404) 을 행하였는데, 이 해에 사형수가 단지 4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바로 술을 금지한 효과이다.”</p> <p>하였다. 임금이 형옥(刑獄)을 결단할 때마다 반드시 신중히 살피고, 비록 법에 있어 마땅히 사죄(死罪)라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반복 사핵(查覈)하여 생의(生議)에 부쳤으므로, 4인 가운데 또한 사죄에서 감형된 자가 있었다.</p>	<p>上御景賢堂，行初覆，是歲斷死囚只四人。上曰：“此乃禁酒之效也。”上每於斷獄之際，必加審慎，雖在法當死，亦必反復參究，傳之生議，故四人之中，亦有減死者。</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27일(무술) 1번째기사 약원 제조 심수가 장계군 이병의 집에서 등나무 지팡이를 얻어 바치다</p>	<p>임금이 담(痰)으로 당기는 증세가 있어 행보(行步)하기가 자못 전과 같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이 지팡이를 붙들고 다니기를 청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다가 후에 내국(內局)에 지팡이를 구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약원 제조(藥院提調) 심수(沈鏞)가 장계군(長溪君) 이병(李棟)의 집에서 등나무 지팡이 하나를 얻어서 바치며 아뢰기를,</p> <p>“이 등나무는 이름하여 만년등(萬年籐)이라 하는 것입니다.”</p>	<p>戊戌/上有痰候牽引之症，行步頗不如前。諸臣請扶杖而行，上始難之，後命內局，求杖以進。藥院提調沈鏞，得一籐筇於長溪君棟家，以進之，奏曰：“此籐名之曰萬年籐云者也。”</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27일(무술) 1번째기사 약원 제조 심수가 장계군 이병의 집에서 등나무 지팡이를 얻어 바치다</p>	<p>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고(故) 상신(相臣) 이덕형(李德馨)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토록 명하였다.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당(唐)나라 헌</p>	<p>上引見大臣備堂。命錄用故相李德馨奉祀孫。右議政金致仁，請依唐憲宗</p>



<p>(乾隆) 30년) 11월 28일(기해) 2번째기사 김중서의 옛집을 속환하여 그 자손에게 주다</p>	<p>중(憲宗)이 위징(魏徵)의 옛집을 속환(贖還)해 준 고사에 의거하여 단종조(端宗朝)의 충신 김중서(金宗瑞)의 옛집을 속환하여 그 자손에게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고 무신년(1640)의 충신 이봉상(李鳳祥)의 집에 식물(食物)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p>	<p>贖魏徵舊第故事，贖還端宗朝忠臣金宗瑞舊第而與其子孫，上并許之，仍命賜食物于戊申忠臣李鳳祥家。</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1월 28일(기해) 5번째기사 경중의 노인으로서 쌀과 고기를 하사받은 자가 1천 7백여 인이 되다</p>	<p>한성부에서 경중(京中)의 노인으로서 쌀과 고기를 하사받은 자를 뽑아 아뢰니, 그 수가 무릇 1천 7백여 인이 되었다.</p>	<p>○漢城府抄啓京中老人之賜米肉者，其數凡爲一千七百餘人</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2월 1일(임인) 1번째기사 약원에서 세손에게 곽령산(藿苓散)을 올리다</p>	<p>약원에서 세손에게 곽령산(藿苓散)을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손은 나의 병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닮았다. 나는 반총산(蟠蔥散)으로 주인(主人)을 삼았는데, 세손은 곽령산을 복용하니, 증세가 이미 같고 약도 또한 같다. 나는 평상시에 내 몸 기르기를 심히 박약하게 하기 때문에 저 창호(窓戶)에 틈을 바르지 않은 것도 또한 그대로 둔 채 참고 지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는 성덕(聖德)의 일입니다.” 하였다.</p>	<p>○朔壬寅/藥院進藿苓散于世孫。上曰：“世孫不但類我病，亦肖予。予以蟠蔥散爲主人，而世孫則服藿苓散，症既同而藥亦同也。予於常時，自奉甚薄，故彼窓戶之不瑾者，亦仍舊而耐過也。” 諸臣曰：“此聖德事也。”</p>
<p>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2월 2일(계묘) 5번째기사</p>	<p>전라 감사 원인손(元仁孫)이 사퇴(辭陞)하였다. 임금이 원인손 부자(父子)가 전후하여 이 도(道)를 안렴(按廉)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여 면칙(面勅)하여 보내고, 그 노모(老母)에게 식물(食物)을 하사토록 명하니, 원인손은 원경하(元景夏)의 아들이고 원경하는 은우(恩遇)를 가장 많이 입었기 때문이었</p>	<p>全羅監司元仁孫辭陞。上以仁孫父子前後按此道，非偶然也，面勅以遣，命賜其老母食物，仁孫，景夏之子，而景夏最被恩遇故也。</p>

전라 감사 원인손이 사폐하다	다.	
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2월 12일(계축) 2번째기사 탐라에서 공과가 올라왔으므로 다음날 진진에 올릴 것을 명하다	탐라에서 공과(貢果)가 올라왔으므로 명일 진진(眞殿)에 몸소 올릴 것을 명하였다.	耽羅貢果來，命以翌日親薦眞殿。
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2월 13일(갑인) 1번째기사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에 글을 올리고 옥상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어가로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 글을 올리고, 이어 옥상궁(毓祥宮)에 거둥하였다가 저녁에 환궁하였다.	甲寅/上駕詣昌德宮，薦柑于璿源殿，仍幸毓祥宮，夕還宮
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2월 15일(병진) 1번째기사 송현문에 친림하여 감제를 시행하다	임금이 송현문(崇賢門)에 친림(親臨)하여 감제(柑製)를 시행하여 선비들을 시험하고, 진사(進士) 오준근(吳濬根)을 취하여 전시(殿試)에 곧바로 나아가게 하였다. 글을 나눠 줄 때에 유생들이 글을 움켜 쥐려고 분주(奔走)하는 자가 많았다. 이산(尼山)의 한 유생은 또 땅에 엎드려 그 고을에 궐리(闕里)의 이름이 있다 하면서 진장(陳章)하여 부자묘(夫子廟)를 세울 것을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선비의 습속이 심히 놀랍다 하여 이름을 물어 정거(停舉)시키고 사유(師儒)의 장(長)을 문비(問備)하였다.	丙辰/上親臨崇賢門，設柑製試士，取進士吳濬根命直赴殿試。頒柑時儒生，多奔走攫柑者。尼山一儒生，又伏地以其邑有闕里名，欲陳章請建夫子廟，上以士習甚駭，問名停舉，問備師儒之長。
영조 106권, 41년 (1765 을유 / 청 건륭	제주 목사 윤시동(尹著東)이 장계하여 육지의 관곡(官穀) 6천 석(石)을 얻어 굶주린 백성을 살리도록 청하고, 또 말하기를,	濟州牧使尹著東狀啓，請得陸地官穀六千石，以活饑民，且言前牧使李明運，

<p>(乾隆) 30년) 12월 16일(정사) 5번째기사 제주 목사 윤시동이 육지의 관곡을 얻어 굶주린 백성을 살리도록 청하다</p>	<p>“전 목사(牧使) 이명운(李明運)이 명색은 비록 기민(飢民)을 진휼했다고 하나, 굶주려 죽은 백성이 6천여명에 이르렀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여러 대신들에게 물었는데, 홍봉한(洪鳳漢)이 호남의 곡식 5천斛(斛)을 먼저 보내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청한 바를 모두 허락하고, 이명운을 종성부(鍾城府)에 충군(充軍)시키며, 향축(香祝)을 보내어 탐라의 굶어 죽은 백성들을 제사지내도록 명하였다.</p>	<p>名雖賑饑，民人死亡，至於六千餘口云。上問于諸大臣，洪鳳漢請先送湖南穀五千斛。上命盡許其所請，充軍李明運于鍾城府，遣香祝，祭耽羅飢死之民。</p>
<p>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 / 청 건륭(乾隆) 30년) 12월 29일(경오) 2번째기사 기곡제를 몸소 행하지 못하므로 축시를 지나서 잠들겠다고 하다</p>	<p>임금이 말하기를,</p> <p>“오늘밤 기곡제(祈穀祭)를 이미 몸소 행하지 못하니 마음에 심히 꺼림칙하다. 제사를 행할 때에 또한 금원(禁苑)에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승지·사관(史官)과 더불어 함께 이 밤을 새우다가 축시(丑時)를 지나서 비로소 잠자리에 들어야 하겠다.”</p> <p>하고, 주시관(奏時官)에게 시각(時刻)을 들어와 고하도록 명하였다. 인시(寅時) 초(初)를 알린 연후에 임금은 비로소 승지와 사관에게 물러 나가도록 명하고, 입직 도감(入直都監)의 장관(將官) 및 내금위 장(內禁衛將) 등을 함문(閤門) 밖에 불러서 효유하기를,</p> <p>“신년(新年) 초두에 마땅히 군사들에게 호궤(犒饋)를 행해야 하지만 내가 조용히 조섭(調攝)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였으니,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 나의 뜻을 펴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上曰：“今夜祈穀之祭，既未親行，心甚決然。行祭時，又不能從禁苑望見，當與承旨史官，共經此夜，過丑時始可就寢也。”命奏時官，入告時刻。報寅初然後，上始命承史退出，召入直都監將官及內禁將衛將等於閤外，諭之以歲初，當行餼饋，而以予靜攝，未之能焉，使中官替行，其布予意也。</p>
<p>영조 106권, 41년</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제조(提調)에게 천안(天顏)을 우러러</p>	<p>藥房入診。上命提調仰瞻天顏，咸曰：</p>

<p>(1765 을유 / 청 건륭 (乾隆) 30년) 12월 29일(경오) 3번째기사 여러 의원들이 1년간 진여한 인삼이 거의 20근임을 아뢰다</p>	<p>보도록 명하니, 모두 말하기를, “옥색(玉色)이 화창하시어 실로 그전보다 못하시다는 탄식이 없고, 성수(聖壽)를 또 더하시어도 수염과 머리카락이 조금도 쇠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건공(建功)의 효과(效果)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내가 얻은 것은 인삼(人蔘)의 정기(精氣)인데, 1년간 진여(進御)한 것이 몇 근(斤) 정도인가?” 하니, 여러 의원(醫院)들이 말하기를, “거의 20여 근입니다.” 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가령 인삼이 선단(仙丹) 영액(靈液)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책(史冊)에 써서 후세의 법으로 삼는다면, 어찌 재물을 다 허비(虛費)하여 민망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p>	<p>“玉色韶華，實無非昔時之歎，而聖壽又添，鬚髮少不衰，此建功之效也。” 上曰：“予之所得者，人蔘精氣，而一年所進御，爲幾許斤乎？”諸醫曰：“幾二十餘斤矣。”上曰：“假使人蔘，爲仙丹靈液，書之史冊，爲後世法，則豈不糜財而爲可悶乎。”</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1월 8일 (무인) 2번째기사 담후가 있기 때문에 제조 한 사람을 직숙하게 하다</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담후(痰候)가 있기 때문에 제조(提調) 한 사람을 직숙(直宿)하라고 명하였다.</p>	<p>內局入侍。以痰候，命提調一員直宿。</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1월 15일(을유) 1번째기사 탐라의 과일을 바친</p>	<p>탐라(耽羅)16421)의 과일을 바친 사람 19명에게 혜청(該廳)과 지나가는 각 고을에서 각각 양식을 주고 본주(本州)에 돌아간 뒤에는 본주 목사(牧使)로 하여금 장문(狀聞)하게 하라고 명하였다.</p>	<p>乙酉/命耽羅貢果人十九名，該廳及所經各邑，各給糧，回到本州後，令本牧狀聞。</p>

<p>사람에게 지나는 각 고을에서 양식을 주게 하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1월 20 일(경인) 1번째기사  도제조 김치인이 탕제를 술로 씻고 볶을 것을 청하였으나 거절하다</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탕제(湯劑)는 술로 씻고 볶는 재료가 많은데 금령(禁令)에 얽매어서 예주(醴酒)16422) 로 볶고 씻으니, 약효가 미치지 못합니다. 청컨대 내국에서 술 두어 되[升]를 빚어서 씻고 볶는 자료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태묘(太廟)에도 &lt;술을&gt; 쓰지 아니하는데, 비록 약을 초세(炒洗)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찌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것에는 굳게 지키겠다.”</p> <p>하고, 사관(史官)에게 이를 쓰라고 명하였다. 부제조(副提調) 이경호(李景祐)에게 춘방(春坊)의 진달한 말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춘방은 누구인가?”</p> <p>하니, 이경호가 대답하기를, “송지연(宋志淵)·홍구서(洪九瑞)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지연은 누구인가?”</p> <p>하니, 이경호가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손자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린 손자가 병이 나아가니, 글에 힘쓰기를 권하는 것이 바로 이때이다. 이제 춘방(春坊)이 어린 손자에게 써서 들인 것을 보니, 말이 매우 절실(切實)하다. 오늘 입직(入直)한 춘방에게 특별히 활[弦弓]을 내려 주어서 내 뜻을 보이게 하라.”</p> <p>하였다.</p>	<p>庚寅/內局入侍。 都提調金致仁曰：“湯劑多洗炒之材，而拘於禁令，以醴酒炒洗，藥效不逮。請自內局，釀數升，以爲洗炒之地。”上曰：“既不用於太廟，雖炒洗之物，豈可用之乎？予於此則牢守矣。”命史官書之。命副提調李景祐讀春坊達辭，上問：“春坊誰也？”景祐以宋志淵·洪九瑞對，上曰：“志淵誰也？”景祐曰：“先正臣宋浚吉孫也。”上曰：“沖子向差，文字勸勉，政當此時。今覽春坊書納沖子者，言涉切實。今日入直春坊，特賜弦弓，以示予意。”</p>
<p>영조 107권, 42년</p>	<p>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치인(金致仁)이</p>	<p>丙申/內局入侍。 藥房都提調金致仁，</p>

<p>(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1월 26 일(병신) 1번째기사 약방 도제조 김치인 등이 통순산을 술로 조제할 것을 청하자 허락하다</p>	<p>‘통순산(通順散)은 바로 술과 물을 반(半)씩 쓰는 약제(藥劑)인데 단술로 대용한 까닭으로써 그 효력이 신기하지 못하다.’고 하여,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좌의정 김상복(金相福), 영부사(領府事) 윤동도(尹東度)와 더불어 같은 소리로 술로 조제(調製)할 것을 힘써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인하여 내국(內局)에 명하여 병자년(1642) 이후 임오년(1645) 이전의 정한 법에 의하여 거행하되, 청대죽(靑大竹)의 예(例)로써 사서(士庶)를 물론하고 아버이를 위하는 자는 술로써 조제(調製)해 가기를 허락하였다.</p>	<p>以通順散，卽酒水相半之劑，而以醴代之故，其效未神，與領議政洪鳳漢，左議政金相福，領府事尹東度，齊聲力請酒製，上許之。仍命內局，依丙子以後壬午以前定式舉行，以靑大竹例，勿論士庶，爲親者，特許酒製以去。</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2월 26 일(병인) 1번째기사 약원에 명해 사용원에 직숙을 옮겨 국구·도위를 직숙하게 하다</p>	<p>약원(藥院)에 명하여 주원(廚院)에 직숙(直宿)을 옮겨서 국구(國舅)·도위(都尉)를 일체로 직숙하게 하였다.</p>	<p>丙寅/命藥院，移直廚院，國舅都尉，一體直宿。</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3월 15 일(갑신) 2번째기사 진하하고 반교하다</p>	<p>진하(陳賀)하고 반교(頒敎)하였다. 그 반교문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동궁(東宮)이 깊은 병에 걸리자 뜻밖이라서 근심이 바야흐로 간절하였는데, 하늘이 보살펴서 나올 것이라고 기쁨이 먼저 점쳤었다. 이에 과궁(寡躬)이 조섭(調攝)하는 때를 당하여, 먼저 여러 지방에 널리 고하는 법을 거행한다. 생각하건대 내가 흰 머리 늙은 나이에 오직 작고 어린 세손(世孫)만 의지하였다. 지난 가을에 선릉(先陵)에 수행하여 참배하였으니 선왕(先王)의 영혼(靈魂)이 기뻐하실 것이라 우리러 생각하였고, 전일에 축수하는 술잔을 올리기를 간청하였으니 효성이 순수하고 깊음을 볼 수 있다. 영특하고 슬기로운 자질(姿質)이 숙성(夙成)하여 다행히 나라를 부탁할 바가 있고, 돌보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간절하여 오직 병이 있을 것을 근심하였었는데, 뜻밖에 동궁[甲觀]이 편치 못하여 내 잠자리에 근심을 끼쳤었다. 처음에는 한</p>	<p>陳賀頒敎。“王若曰，儲闈嬰病，憂方切於无妄，皇穹降隲，喜先占於乃瘳。茲當寡躬靜攝之餘，先舉多方播告之典。念予皤然晚景，惟依藐爾冲孫。前秋隨謁於先陵，仰惟陟降之悅豫，向日瀝懇於壽酌，可見誠孝之純深。英睿之姿夙成，幸付托之有所，眷愛之念常切，惟疾病之是憂，不意甲觀之愆和，幾多丙枕之貽慮？初如一時之例感，蓋緣節宣之乖宜。居然屢朔之彌留，久稽藥餌之奏效。問寢之禮久曠，呻吟何堪？止慈之情采深，寤寐難忘。</p>

	<p>때의 예사로운 감기와 같았으니 조리[節宣]를 잘못된 데에 말미암았다. 그대로 여러 달을 병이 낫지 않고 오랫동안 약효(藥效)가 지체되었었다. 문안(問安)하는 예(禮)를 오래 폐했으니, 신음(呻吟)하는 고통을 어찌 견디겠는가? 사랑하는 정(情)이 더욱 깊어서 자나 깨나 잊기 어렵다. 다행히 열조(列祖)의 묵묵히 도움을 힘입어, 동궁의 건강이 회복됨을 얻었다. 신기(神氣)가 바야흐로 되살아나서 천화(天和)16450) 가 몇 달 동안 약을 쓰는 즈음에 돌아왔고, 영위(榮衛)가 이미 건강하니 내 마음을 여러 날 병상 사이에 위로하였다. 매양 아침저녁으로 곁에 모심을 보니, 갑자기 병이 몸에 있음을 잊겠다. 후반(候班)16451) 을 아직 궁중에서 견지 아니하여, 비록 섭양(攝養)하는 때를 당하였을지라도, 이미 동궁이 상膳(常膳)16452) 을 회복하였으니, 어찌 기쁨을 꾸미는 도리를 늦추겠는가? 기쁜 마음이 바야흐로 간절하니 깊은 병이 일시에 없어지는 것 같았고, 경하(慶賀)하는 예(禮)를 먼저함은 몇몇한 법을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아보건대 성대한 행사는 스스로 차례가 있으니, 오직 이 일만 또한 과장(誇張)함이 아니다. 보위(寶位)에 임한 지 42년이니 드물게 있는 경사를 얻어 보았고, 만백성의 천만세(千萬歲)를 축수함이 드높았으니 누가 기뻐하는 정성이 없겠는가? 구갑(舊甲)이 술잔을 올리는 날에 거듭 돌아오니 옛일을 읊어 감회가 일어났고, 어린 나이는 바로 15세[志學]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때에 미쳐서 공부에 착념(着念)할 것이다. 이미 종묘(宗廟)에 삼가 고유하고, 이어서 온 나라에 널리 유시(諭示)한다. 아! 착한 단서는 반드시 병이 나은 뒤에 싹트니 마땅히 확충(擴充)하는 방법을 힘쓸 것이며, 혜택을 성(城) 안에 고르게 입혔으니 다시 광탕(曠蕩)의 은전(恩典)을 베푼다.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자세히 알도록 하라.”</p> <p>하였다. 【예문 제학(藝文提學) 정실(鄭實)이 지어 올렸다.】</p>	<p>何幸列祖之默佑， 獲覩睿質之快康。 神氣方蘇， 返天和於幾月湯秤之際， 榮衛已健， 慰予懷於多日床第之間。 每見晨昏之侍傍， 忽忘桐關之在己。 候班未撤於紫禁， 縱值攝養之辰， 常膳已復於青宮， 詎稽飾喜之道。 嘉悅之心方切， 悅沈痾之頓祛， 慶賀之禮亟先， 蓋彝典之難緩。 顧盛典自有次第， 惟此舉亦非誇張。 臨寶辰於四十二春， 得見稀有之慶， 騰輿祝於百千萬歲， 孰無獻忱之忱？ 舊甲重回於稱觴， 詠在昔而興感， 沖齡正值於志學， 宜及時而着工。 既虔告於闕宮， 繼誕諭於率土， 於戲！ 善端必萌於病後， 宜勉擴充之方， 惠澤均沾於城中， 更施廣蕩之典。 故茲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鄭宗製進。】</p>
영조 107권, 42년	상후(上候)가 광란[癡氣]때문에 편찮았으므로, 내국(內局)에서 입진(入診)하고	乙酉/上候以癡氣未寧， 內局入診， 連

<p>(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3월 16 일(을유) 1번째기사 상후가 편찮았으므로 내국에서 입진하고 정기산 등을 올리다</p>	<p>연달아 정기산(正氣散)·소합원(蘇合元)·반총산(蟠蔥散)을 올렸다. 이날부터 조정 문안을 연달아 설행하였다.</p>	<p>進正氣散蘇合元蟠蔥散。 自是日連設朝廷問安</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 (乾隆) 31년) 3월 23 일(임진) 1번째기사 고홀할 만한 자를 단자를 써서 들이고 푸줏간의 속전을 10일 동안 면제하게 하다</p>	<p>내국(內局)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늙은 백성의 무리가 대궐 밖에서 초조하여 당황한다고 한다.” 하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이는 떳떳한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치인(金致仁)은 말하기를, “어제부터는 여대 하천(輿僮下賤)들이 모두 기뻐서 날뛰다고 하니, 민정(民情)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부덕(否德)으로 인하여 며칠 동안 도성 백성의 마음을 수고롭게 하였으니, 비록 하루라도 마음에는 백일과 같다. 어찌 공시인(貢市人)의 창의궁(彰義宮) 일과 다르겠는가? 그 가운데 고홀(顧恤)할 만한 자는, 해조(該曹)16453)와 해청(該廳)16454) 으로 하여금 비국(備局)에 물어서 내일 안으로 단자(單</p>	<p>○壬辰/內局入診。 上曰：“聞耆民輩會于闕外焦遑云矣。” 領議政洪鳳漢曰：“此秉彝之天矣。” 都提調金致仁曰：“昨日以後，輿僮下賤，皆歡欣踴躍云，民情大可見矣。” 上曰：“因予否德，數日都民勞心，其雖一日，心若百日。 何異於貢市人彰義宮事乎？其中可以顧恤者， 令該曹該廳， 問于備局， 明日內單子書入， 自明日特除懸房贖十日。”</p>



	<p>子)를 써서 들이게 하며, 내일부터 현방(懸房)16455)의 속전(贖錢)을 10일 동안 특별히 면제하게 하라.”</p> <p>하였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6월 11일(기유) 1번째기사 이만식을 직부에 전시하게 하고 뒤에 예로 삼지 말 일을 《승정원일기》에 신도록 하다</p>	<p>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계유일기(癸酉日記)》를 가지고 들어오라 명하고, 이만식(李萬軾)의 아버지 이혼(李混)을 신설(伸雪)한 일을 읽게 하였다. 하교하기를,</p> <p>“이지억(李之億)은 제2인(第二人)으로서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고, 임석헌(林錫憲)도 또한 그러하였다.”</p> <p>하고, 드디어 이만식을 전시(殿試)에 직부하라고 명하고, 뒤에 예(例)로 삼지 말 일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신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과제(科第)는 지극히 중하다 하여 더 깊이 생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p> <p>“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시동(尹蓍東)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작년에 옮겨 보낸 곡식 값을 지금 바야흐로 고기[魚]·미역·양대(涼臺)16505)로써 전례에 의하여 해포(該舖)에 거두어 보냈는데, 금년 봄에 옮겨 보낸 곡식 값을 일시에 아울러 독촉하면 진실로 가공(可矜)하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가까운 규례에 의하여 명년 봄을 기다려 거두어 보내게 하소서.”</p> <p>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장령(掌令) 정환유(鄭煥猷)가 전계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간(司諫) 임성(任城)이 전계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p>	<p>己酉/引見大臣備堂。 上命持入《癸酉日記》，讀李萬軾父混伸雪事。 教曰：“李之億，以第二人直赴，林錫憲亦然矣。” 遂命李萬軾直赴殿試，後勿爲例事，命載《政院日記》。 領議政洪鳳漢，以科第至重，請加深思，上不納。 鳳漢曰：“濟州牧使尹蓍東狀啓以爲，上年移轉穀價，今方以魚藿涼臺，依例收送該舖，而今春移轉穀價，一時竝督，誠可矜，請依近例，待明春收送。” 允之。 掌令鄭煥猷傳前啓，不允。 司諫任城傳前啓，不允。 又啓：“尹鵬舉之特除承旨，雖出於雨露不擇地之聖意，而雖曰北關之人，比諸魏朱兩族，地閥尤微，掌憲改正之請，曾已蒙允，則承宣之職，出納惟允，責任甚重，不可人人而猥授。 請還收尹鵬舉除授之命。” 答曰：“人君用人，奉三無私。 宇宙肇判，人生於初時，其豈某人爲士，某人爲庶，預爲分排乎？” 不允。 城引嫌，命勿辭，亦勿退待。</p>

	<p>“윤봉거(尹鵬舉)를 승지(承旨)로 특별히 제수한 것은 비록 우로(雨露)가 땅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 같은 성상의 뜻에서 나왔으나, 아무리 북관(北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魏)·주(朱) 두 씨족(氏族)에 비하면 지체와 문벌이 더욱 미천(微賤)하여 장헌(掌憲)16506) 을 개정하라는 요청을 전에 이미 윤희를 얻었은즉, 승선(承宣)16507) 의 직무는 왕명(王命)을 출납하여 책임이 심히 중하니, 사람마다 외람되이 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윤봉거를 제수하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은 삼무사(三無私)16508) 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주(宇宙)가 처음 창조되고 사람이 처음 날 때에 어찌 아무 사람은 선비가 되고 아무 사람은 서인(庶人)이 될 것을 미리 분배(分排)하였는가?”</p> <p>하고, 윤희하지 아니하였다. 임성이 인혐(引嫌)하니, 사임하지 말고 또 물러가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영조 107권, 42년 (1766 병술 / 청 건륭(乾隆) 31년) 6월 15 일(계축) 1번째기사          승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교서를 반포하다</p>	<p>임금이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배(展拜)를 마치고 대신(大臣)에게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으며, 묘사(廟司)·전사(殿司)를 승서(陞敍)하고 수복(守僕)에게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라고 명하고 인하여 환궁(還宮)하였다.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교서(敎書)를 반포하기를,</p> <p>“왕은 말하노라. 몸이 불편하여 영위(榮衛)가 회복되지 아니하니, 미류(彌留)16518) 하는 근심이 오래 간절하였고, 전례(展禮)를 행하여 효성(孝誠)을 펴니, 다행히 병이 낫는 경사로움을 보았다. 곧 아름다운 법을 거행하여 널리 덕음(德音)을 드날렸고, 생각하건대 나의 작은 몸으로 큰 업적(業績)을 이어받</p>	<p>癸丑/上詣太廟永寧殿展拜訖，命大臣奉審，命廟司殿司陞敍，守僕米布題給，仍還宮。御崇政殿，受賀頒敎：“王若曰，愆和而榮衛未復，久切彌留之憂，展禮而孝思克伸，幸見乃瘳之慶。載稱懿典，誕揚德音，念予眇躬，叨承丕緒。躋七十三歲之壽，敢忽節宣之方。續四百餘年之基，每存臨履</p>

왔다. 73세의 장수(長壽)에 이르렀으니, 절선(節宣)의 방도를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4백여 년의 기업(基業)을 이었으니, 매양 살얼음을 밟는 두려움이 있다. 전번에 동궁(東宮)이 조섭(調攝)을 잘못하여 병에 걸렸으니, 과궁(寡躬)이 근심이 쌓여서 병을 이루었다. 조손(祖孫)이 서로 의지하는 마음으로써 밤낮으로 애가 타서 손상을 입었고, 나이가 더욱 높은 지경에 당하여 봄·여름 동안 질질 끌면서 편치 못하였다. 중간에 격체(隔滯)한 증후가 먼저 나왔으니 칭하(稱賀)를 비록 허락하였으나, 시종(始終) 각부(脚部)의 담(痰)이 병이 되어 걷기가 오히려 어려웠다. 제향(祭享)을 친히 행하지 못하니 묘전(廟殿)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더하고, 조회(朝會)를 오랫동안 정지했으니 침석(枕席)에 있으면서 탄식이 일어난다. 다행히 조종(祖宗)의 도우심을 힘입어 문득 탕환(湯丸)16519)의 효력을 얻었다. 진전(眞殿)에 길이 사모하는 슬픔을 펴고 인하여 육상궁(毓祥宮)에 역배(歷拜)하였으며, 태실(太室)에 삼가 배알하는 의식을 행하고 또 동궁과 더불어 함께 하였다. 몇 달을 오래 끌던 병이 쾌히 나았으니, 어찌 처음에 이를 생각이나 했겠는가? 해를 지나도록 오래 꺾(闕)한 예(禮)를 몸소 행했으니, 이는 조종(祖宗)께서 묵묵히 도우심을 힘입었다. 지난 역사를 찾아도 보기 드문 일이었고, 못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쁨을 함께 하였다. 태묘(太廟)의 영(靈)이 복을 내리시니 보좌(寶座)에 임하여 발걸음이 편안하여 어긋남이 없으며, 재계하여 효성을 펴니 난여(鑾輿)에 오르는데 발자취를 땀이 평상시와 같았다.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빛나니 장차 밝은 복을 종사(宗社)에 보답할 것이며, 떳떳한 법을 이에 행하니 기뻐하고 사랑하는 정성은 신린(臣隣)에게 위로될 만하다. 이미 종묘(宗廟)에 고유(告由)하고 다시 넓은 전정(殿庭)에서 유시(諭示)한다. 아! 하례를 받는 것은 신(神)의 도움을 빛내는 바이니 이미 기쁨을 꾸미는 뜻을 보였고, 고명(誥命)을 선포함은 백성의 마음을 보답하는 바이니 경사를 반포하는 뜻을 편다.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

之懼。頃貳極失攝而邁疾，致寡躬積慮而成痾。以祖孫相依之心，焦日夜而受損，當年歲彌高之境，闕春夏而欠安。中間膈滯之候先瘳，稱賀雖許，終始脚部之痰爲祟，運步猶艱。裸薦莫親，望廟殿而增惕，燕朝寢曠，在枕席而興嘆。幸荷祖宗之垂休，旋獲湯丸之奏效。眞殿伸永慕之痛，仍歷拜於祥宮，太室行祇謁之儀，又與偕於离邸。幾朔淹延之候夫祛，夫豈始料？經年曠闕之禮克修，寔賴默佑。溯往牒而罕覩，揆群情而同歡。穆清降禧，莅黼辰而安趾靡錯，齊明申孝，升鑾輿而布武如常。顯休用章，蓋將答昭明之祉於宗社，彝典是迪，庶可慰歡愛之誠於臣隣。旣闕宮之告由，復廣庭之布諭。於戲！受賀所以章神佑，旣示飾喜之情，宣誥所以答民心，用敷頒慶之意。故茲敎示，想宜知悉。”【大提學黃京源製進。】命禮房承旨尹得雨·左通禮李命俊·相禮趙台命·太僕正朴師海·弼善邊得讓加資，右通禮準職，入侍承旨致詞官半熟馬，翰注兒馬賜給，贊儀守令除授，通禮院下人米布題給，內局提調李昌壽熟馬，首醫李泰

	<p>하였다.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이 지어 올렸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윤득우(尹得雨), 좌통례(左通禮) 이명준(李命俊), 상례(相禮) 조태명(趙台命), 태복시 정(太僕寺正) 박사해(朴師海), 필선(弼善) 변득양(邊得讓)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우통례(右通禮)는 준직(準職)하며, 입시(入侍)한 승지(承旨)와 치사관(致詞官)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한림(翰林)·주서(注書)에게는 아마(兒馬)를 주고, 찬의(贊儀)는 수령(守令)을 제수하며, 통례원(通禮院) 하인(下人)은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고, 내국 제조(內局提調) 이창수(李昌壽)에게는 숙마(熟馬)를, 수의(首醫) 이태원(李泰遠)에게는 숙마를 면급(面給)하라고 명하였다.</p>	<p>遠熟馬面給。</p>
--	--	---------------